

최
보
고
서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81-01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산업동물 진료체계 개편 및 방역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연구기관

강원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산업동물 진료체계 개편 및 방역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년 12 월 9 일

책임연구원	강원대학교	김 두
연 구 원	충북대학교	모 인 필
연 구 원	서울대학교	박 봉 균

차 례

요약문	1
I. 수의사처방제 도입시 필요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인원 수 예측	3
1.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3
가.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3
나. 각 축종별 연간 질병 발생 조사	3
다. 각 축종별 가축환산단위 설정	4
라.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5
2.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실태 조사	5
가. 현 진료체계에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수적 적정성	6
3.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6
4.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7
가. 처방제 전면적 실시 시 과부족 지역의 해소 방안	7
나. 신규 수의사의 보충 방안	8
다. 미국의 산업동물 수의사 수의사 유치 사례	10
II.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13
1.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13
가. 소 분야	13
나. 돼지 분야	14
다. 가금 분야	14
2.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15
가. 소 분야	15
나. 돼지 분야	16
다. 가금 분야	17

III.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18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18
가. 소 분야	18
나. 돼지 분야	19
다. 가금 분야	20
2.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21
가. 소 분야	21
나. 돼지 분야	22
다. 가금 분야	23
IV.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 적 연계 방안 연구	25
1. 산업동물과 관련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25
가. 소 분야	25
나. 돼지 분야	27
다. 가금 분야	29
2. 산업동물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30
가. 소 분야	30
나. 돼지 분야	31
다. 가금 분야	32
V. 종합 제언	34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산업동물 진료체계 개편 및 방역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서론	37
연구 목적	38
연구 방법	39

I. 우리나라 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조사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시 필요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적정 인원수 예측 41

<소 분야>

1.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42
가.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42
나. 젖소와 한우의 연간 질병 발생 조사	43
다. 가축환산단위 설정	48
라. 소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50
2. 소진료수의사의 실태 조사	50
3. 소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51
가. 수의사 처방제 전면 실시 시에 과부족 산출	51
나. 현 제도에서 소진료수의사의 과부족 산출	53
4. 소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53
가. 처방제 전면적 실시 시 과부족 해소 방안	53
나. 신규 수의사의 보충 방안	54
다. 미국의 산업동물 수의사 유치 사례	55

<돼지 분야>

1. 돼지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58
가. 돼지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59
나. 돼지의 연간 질병 발생	62
다. 시도별 돼지단위 설정	67
라. 돼지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70
마. 돼지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적정인원수 조사	70
2. 돼지진료수의사의 실태조사	74
3. 돼지진료수의사의 기초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77
4. 돼지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80

<가금 분야>

1.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81
가. 가금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81
나. 가금의 연간 질병 발생 조사	82
다. 가금환산단위 설정	82

라. 가금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적정인원수 산출	83
2. 가금진료수의사의 실태조사	84
3. 현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적 적정성	92
4. 가금진료수의사의 기초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92
5. 가금진료수의사 과부족 해소방안	94
가. 미국 가금진료수의사의 필요량과 부족 해소방안	94
나. 우리나라 가금진료수의사의 부족 해소방안	95
II.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99
<소 분야>	
1.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 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100
2. 우리나라 소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114
가. 산업동물임상교육원(가칭)의 설립	115
나. 소 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	117
다. 면허취득 후 재교육의 강화	117
라. 수의학교육평가인증제의 도입	118
마) 신규 및 중견 소진료수의사 임상 연수 표준 스케줄	201
<돼지 분야>	
1.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130
2.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133
<가금 분야>	
1. 양계선진국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134
2. 가금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136
III.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139
<소 분야>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소 임상체계 분석·비교	139
2. 우리나라의 소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142

가. 우리나라의 소 임상체계 개편 방향	142
나.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의 설립	143
<돼지 분야>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돼지 임상체계 분석·비교	146
2. 우리나라의 돼지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150
가. 우리나라의 돼지 임상체계 개편 방향	150
나. 돼지질병진료센터 설립(안)	151
<가금 분야>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가금 임상체계 분석·비교	152
2. 우리나라의 가금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158
가. 현 개업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익구조 향상	158
나. 단기적으로는 다인병원체제와 인턴제도의 도입 필요	158
다. 가금질병통합진료센터의 구축	160
라. 가금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과 국가방역 참여	162
IV.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	
 적 연계 방안 연구	165
<소 분야>	
1. 소 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165
2. 소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167
<돼지 분야>	
1. 양돈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170
2. 돼지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173
<가금 분야>	
1. 가금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174
2. 가금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176
처방수가 산정방안	182
참고문헌	183

첨부자료

첨부 1. 전국 시군별 가축 통계	185
첨부 2. 전국 시군별 젖소 단위	199
첨부 3. 전국 시군별 적정 수의사 수와 부족한 수의사 수	204
첨부 4. 전국의 소전문동물병원의 개업 실태 조사	209
첨부 5. 말진료수의사 명단	250
첨부 6. 소진료수의사 설문지	253
첨부 7. 소진료수의사 설문지 해석	261
첨부 8. 수의과대학 학생 취업분야 설문지	276
첨부 9. 가금진료수의사 설문지	278
첨부 10. 일본의 가축공제제도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283
첨부 11. 영국과 미국의 식품생산동물수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 보고서	331
첨부 12. 각국의 전문수의사 제도 운영 실태와 국내의 전문수의사 준비 상황	350
첨부 13. 각국의 수의사면허체계	399
첨부 14. 농업 재해 보상법	411
첨부 15. 농업 재해 보상법 시행령	492
첨부 16. 농업 재해 보상법 시행규칙	501
첨부 17. 각국의 수의처방대상 약제의 현황	535

표 차례

표 1. 국립축산과학원 사육 가축의 질병 발생률	43
표 2. 성우 젖소의 질병발병률 및 치료횟수(2008, 국립축산과학원)	44
표 3. 젖소 육성 및 자우의 발병률 및 치료회수(2008, 국립축산과학원)	46
표 4. 한우 성우의 발병률 및 평균 치료횟수(2007, 국립축산과학원)	47
표 5. 한우 육성 및 자우의 발병률 및 치료회수(2007, 국립축산과학원)	48
표 6. 광역시/도 단위별 젖소 단위 환산 가축 수	49
표 7. 전국 광역단위별 적정 수의사 수와 부족한 수의사 수	52
표 8. 전국 수의과대학 3~4학년생의 졸업 후 진출 희망 분야	58
표 9. 전국 시군별 돼지 사육 호수 및 두수	59
표 10. 최근 돼지전염병 시도별 발생 통계 (2004~2009)	63
표 11. 시도별 최근 4년간 주요 돼지법정전염병 발생현황	64
표 12. 연도별 주요 돼지질병 진단	66
표 13. 전국의 연령별 돼지 사육 두수	68
표 14. 전국의 시도별 돼지 단위 사육 두수	69
표 15. 전국의 시군별 적정한 돼지진료수의사 수	71
표 16. 전국 시도별 활동 중인 돼지진료수의사 수	74
표 17. 전국 시도별 돼지진료수의사의 과부족	77
표 18. 국내 가금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2008.12)	81
표 19. 닭의 가축환산단위(미국 미네소타)	83
표 20. 가금진료수의사의 기초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93
표 21. 각국의 소진료수의사 및 소전문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	101
표 22. 미국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	102
표 23. 영국 Royal Veterinary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의 교과과정	106
표 24. 일본 오비히로 수의과대학 교과과정	108
표 25.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과과정	109
표 26. 미국의 수의전문의 통계 (AVMA, 2008. 12월)	111
표 27. 유럽의 수의전문의 통계 (2008. 1월)	113
표 28. 각국의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	131

표 29. 양계선진국의 가금진료수의사 양성과정 비교	135
표 30. 미국 ACPV 전문의 과정 시험과목	136
표 3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소 임상체계 분석·비교	141
표 32. 통합동물병원의 시설 및 기자재	144
표 33. 각국의 돼지 임상체계 비교 및 시사점	149
표 34. 진료대상 동물에 따른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분포 (2006)	155
표 35.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병원운영형태별 분포 (2006)	156
표 36. 소 분야 방역 업무와 운영 예산	166

그림 차례

그림 1. 가금진료수의사의 지역적 분포	85
그림 2. 가금진료수의사의 연령 분포	85
그림 3. 가금진료수의사의 개업 년한 분포	86
그림 4. 가금진료수의사의 진료대상 분포	87
그림 5. 가금진료수의사의 평균 진료 농장수 및 사육규모	88
그림 6. 가금진료수의사의 주간 평균 진료건수	89
그림 7. 가금진료수의사의 평균 왕진거리	89
그림 8. 가금진료수의사의 평균근무시간	91
그림 9. 국내 가금산업 임상체계 개편에 따른 단기 및 장기 대책	163
그림 10. 국내 가금산업 임상체계 개편(안) 모식도	164
그림 11. 소의 진료와 국가 방역업무의 시군 단위 통합 관리 모형	169
그림 12. 국내 가금산업의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모식도	181

요 약 문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정부는 '07년 12월 6개 관련부처의 참여로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① 우리나라 산업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조사·과약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②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양성 방안(학교·민간·관련협회별 역할 구분, 교육기준 제시 등),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③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④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연구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김두교수는 한육우, 젓소, 말, 산양, 면양, 사슴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진료수의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모인필교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관상조, 타조, 꿩 등의 가금진료수의사를 조사하였으며, 박봉균교수는 돼지 진료수의사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과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및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의 제시를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유럽연합국가, 일본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수의학교육과 임상체계에 대한 문헌과 법규 등을 조사하였으며 식품생산

동물 진료체계 개편 방안, 수의사 처방제 도입, 수의사면허 및 진료 전문화 체계 구축방안 등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한 정책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산업동물병원의 수의사와 축산 농가를 방문하거나 전화 설문을 통하여 현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동물 수의사들의 진료 여건과 동물병원 운영형태 및 동물병원 통합에 대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소진료수의사와 가금진료수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수의과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 직후와 졸업 10년 후에 진출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 수의사처방제 도입시 필요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인원 수 예측

1.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가.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주요가축은 2008년 12월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지역의 기타 가축은 2008연도에 조사된 자료가 없어 2007년 12월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시/군/구 단위로 주요가축과 기타가축의 2008년도 12월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였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주요가축의 전국적인 사육두수는 한·육우는 181,196호에서 2,430,389두, 젖소는 7,000호에서 445,754두, 돼지는 7,681호에서 9,087,434두, 닭은 3,196호에서 119,783,943수 이었다. 각 광역시도와 시군의 가축 수에서 통계청 통계자료와 행정통계 통계자료는 수치에 차이가 있었으며 행정통계의 가축 수가 통계청 발표의 가축 수보다 약 10% 정도 많게 조사되었다

나. 각 축종별 연간 질병 발생 조사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될 경우 각 축종별로 필요한 진료수의사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축종별로 질병발생률을 정부의 통계자료와 동물병원과 각 축종의 사육 농장의 질병발생 또는 치료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질병통계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주요 법정전염성질병을 중심으로 집계하고 있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AIMS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보고하는 전염병 위주의 질병발생통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 법정전염병은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들의 직접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가방역체계에 의하여 관리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

의사처방제 실시 시에 진료수의사의 산출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기 어려웠다.

산업동물 동물병원과 축산 농가에서는 질병발생에 대한 기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질병의 발생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은 드물었고 기록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어려웠다. 그나마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체계적으로 질병발생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

다. 각 축종별 가축환산단위 설정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될 경우 각 축종별로 필요한 진료수의사를 산출하기 위하여, 치료대상이 되는 각 가축의 사육두수를 표준화하는 환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OIE나 FAO 가축단위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토지나, 조사료 섭취량 등을 표시한 가축단위를 발표하였을 뿐 질병치료를 기준으로 하는 가축단위를 발표한 자료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 경영 형태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에서는 약 60년간의 가축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 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 청구의 기준이 되는 가축단위와 축산과학원의 젖소와 한우의 질병 발생 자료 및 소진료수의사의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젖소(1)를 기준으로 하여 한육우는 0.3, 말은 1, 돼지는 0.1, 산양은 0.05, 면양은 0.05, 사슴은 0.1로 가축단위를 설정하였다. 돼지의 경우는 미국 미네소타주 농업국의 동물단위계산법을 활용하였으며 닭의 경우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가금환산단위를 계종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동물에 관련된 가축질병통계자료가 있으나 극히 일부의 전염병 통계만 제시되어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가축 환산단위와 비교하여 처방제 실시 시에 필요한 수의사 수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궁극적으로 가축의 환산단위는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적정인원수를 산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금분야에서는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인원수를 산출하였다.

소진료수의사가 담당하는 한육우와 젖소를 젖소단위로 환산한 결과, 전국의 젖소단위는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는 1,203,369두, 행정통계 기준으로는

1,314,833두이었으며, 돼지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 농업국의 동물단위계산법에 따라 산출하였을 때, 2,115,443단위가 되었다.

라.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소 산업의 경우 각 시군별로 환산한 가축단위를 소 진료전문수의사당 담당두수로 나누어 적정 인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진료수의사당 젖소단위 1,250두를 설정하여 각 광역단위와 시군별로 적정 수의사를 산출하였다. 통계청 가축통계에 근거한 소진료수의사의 적정 수는 전국적으로 963명이 필요하며 행정통계의 가축통계에 근거한 적정 수의사 수는 1,052명으로 산출되었다. 전국적으로 말 사육 두수는 24,951두로서 말 전문 수의사는 20명이 필요하였다.

돼지진료수의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양돈장의 영세성, 수의사의 진료축종의 겸업 등을 감안할 경우 30개 정도의 양돈장관리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양돈장 30개를 기준으로 1명의 돼지진료수의사가 필요한 기준으로 전면적인 수의사 처방제 실시 시에 필요한 수의사 수를 산정하였을 경우 180명의 돼지진료수의사가 필요하였다.

가금진료수의사의 경우 양계장 수, 진료건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방제가 실시될 경우 필요한 수의사의 수는 94명으로 산출되었다.

2.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실태 조사

2009년 8월 말 현재 각 시군 행정조직 단위로 활동 중인 산업동물진료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실태를 현장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진료수의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935명이었으며 말 진료수의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30명이었다.

돼지 진료수의사는 2008년 한국양돈수의사회의 회원명부와 대한수의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의사의 진료종목 및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155명의 수의사가 돼지질병의 진료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가금진료수의사는 대부분 양계수의사회(회장: 하봉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개업을 하고 있는 가금진료수의사는 34명으로 조사되었다.

가. 현 진료체계에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수적 적정성

농가의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현 제도 하에서 현재 활동 중인 소진료수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진료수의사들은 수의사당 젖소는 약 3,000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한우는 10,000두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문 응답하였다. 전국 단위로 분석할 경우 현재의 활동 수의사당 1,406두의 젖소단위를 진료하고 있어 실제 진료할 수 있는 젖소 단위 3,000두의 절반 정도 밖에 관리하고 있지 못하여 수의사가 약 2배 정도 과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단위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의 시/군(강화군, 삼척시, 이천시, 여주군, 고양시, 연천군, 완주군, 예산군, 청원군)이 수의사당 젖소단위 3,000두 이상이었으나 이러한 지역은 인근 시/군의 수의사들이 진료를 일부 담당하고 있었다.

현 제도 하에서 돼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의 수는 230여명(2008년 말 기준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원명부에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함)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에 필요한 수의사의 수를 75명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 하에서는 돼지진료수의사의 인프라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양계수의사회에 가입한 수의사는 78명이며 업무분야로 나누면 개업 34명, 컨설팅 2명, 제약회사 종사 27명, 공무원 2명, 교육 5명, 기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금진료수의사의 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현재 가금진료수의사는 적절한 수준 혹은 평형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소 산업에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2009년 6월 기준으로 소진료문수의사는 전국적으로 통계청 가축 통계 기준으로는 28명 부

족, 행정통계의 기준으로는 117명이 부족하였다. 말 진료 전문수의사는 전국적으로 10명이 과잉이었다. 광역행정단위에서 소진료수의사가 과잉인 지역은 행정통계 가축 기준으로 경상남도 34명, 경상북도 11명, 제주도 11명, 광주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2명, 울산광역시 2명, 부산광역시 1명이 과잉이었다. 소 진료전문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행정통계 가축 기준으로 경기도 92명, 충청남도 39명, 전라북도 24명, 충청북도 17명, 강원도 11명, 전라남도 9명, 인천광역시 4명이 부족하였다. 각 시군단위로는 수의사가 없는 시군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도시화되어 가축사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 단위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인근 시군에서 활동하는 수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축 수가 적은 지역에 수의사가 과잉인 경우는 인근의 다른 시군의 가축 진료를 맡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신안군의 경우에는 3명의 소 진료 전문수의사가 필요하였지만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가 없어 인근 시군의 수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행정단위별 적정 돼지진료수의사의 수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돼지진료수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5명의 수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2009년 12월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가금진료수의사는 전국적으로 60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가. 처방제 전면적 실시 시 과부족 지역의 해소 방안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소진료수의사는 전국적으로 통계청 가축 통계 기준으로는 28명 부족, 행정통계의 기준으로는 117명이 부족하였으며, 지역 간에 수의사의 과부족 상태에 편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의사가 부족한 시/군으로 동물병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물병원시설 지원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규 수의사의 보충 방안

2009년 11월에 실시한 전국의 수의과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현재 매년 졸업 인원 600명 중 약 76명이 산업동물 진료수 의사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수의사 처방제의 전면적인 실시 시에 부족한 인원을 처방제의 실행단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 산업에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가축의 행정통계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 117명을 점진적으로 보충하고 매년 은퇴하는 수의사를 보충하기 위한 수의사는 감안할 때, 소 분야에서 매년 약 50명 정도의 신규 수의사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의과대학 졸업생 중 매년 55명 정도가 소진료수의사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어 처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부족한 수의사와 은퇴하는 수의사의 교체에 필요한 인원을 졸업하는 수의사들로 점진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 분야에는 매년 8명 정도의 졸업생이 진출을 희망하여 부족한 수의사 25명을 5년에 걸쳐 충원할 수 있다. 가금산업에는 매년 7명 정도의 졸업생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족한 가금진료수의사 60명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수의사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소전문수의사 의 부족 해소 방안

가)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희망 진출 분야는 사회적 또는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소 진료 분야에 진출하고자하는 유능한 수의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소전문동물병원 개원 시에 시설자금 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학생들이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를 전망의 대상으로 하려면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좋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수의과대학 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동물 전문 동물병원에서 진료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시군 단위로 소전문동물병원을 통합하여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규 수의사를 유치한다.

2) 돼지전문수의사의 부족 해소 방안

가) 혼합진료병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비방문 진료 및 치료약 처방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필요한 양돈전문수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학위과정 중 학비를 보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무를 조건으로 산업동물분야 관련 수의사의 양성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위하여 대학원과정이나 전문과정의 개설로 양돈전문 수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돼지전문수의사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양돈전문수의사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수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라) 졸업후 일정기간 양돈관련분야에 종사하였거나 대학원 등 전문과정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전문 Board를 취득케 하여 돼지전문수의사로써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산업현장에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3) 가금진료수의사 부족 해소방안

가) 현재 양계수의사회에 가입된 가금진료수의사의 수는 총 78명으로서 개업이 34명이며 나머지는 비개업 수의사로 이들은 개업요건이 좋아지면 항상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가금진료수의사의 개업 유도를 통하여 부족한 수의사를 충당하도록 재정적 또는 운영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나) 기존 가금전문병원에 대한 인턴 전문인력 배치 및 보조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진료수의사의 과부족 예상은 가금전문병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가금진료수의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의임상체계가 일인 진료가 아닌 다인진료체계로 변하는 만큼, 가금전문병원도 여러 명의 수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을 하면 과부족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에

서 1인 체제의 병원에서 다인체제의 병원으로 변경할 때 경제적, 행정적 보조를 해주면 현재의 병원들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금진료수의사 양성 대학원과정 수정 및 신설

현재 기본적인 가금질병에 관련된 수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은 크게 변경될 것은 없지만 가금진료수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과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원과정은 학위위주로 되어 있으나 선진외국처럼 임상전문수의사를 위한 현장위주의 대학원과정으로 수정 혹은 신설이 필요하다.

라) 공중보건수의사의 가금전문병원 배치

대부분의 졸업생은 국가기관에서 공중보건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산업동물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금전문병원에서 근무할 기회를 줌으로서 산업동물진료수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미국의 산업동물 수의사 수의사 유치 사례

미국에서는 식품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수의사가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임무를 갖고 식품공급수의학연합(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 이하 FSVMC)이 2004년에 결성되었다. FSVMC의 전제는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은 수의사가 생산과 가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향후 2016년까지 12.64%의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수의사가 부족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FSVMC는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11가지의 권장사항을 제시되었다.

1)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수의사의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group들(미국수의과대학협회, 미국수의사회, 캐나다수의사회 및 각 주수의사회, 미국소수의사회, 미국돼지수의사회, 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사이에 그 긴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식품생산동물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을 활발하게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야 한다. 논리가 정연하고 정력적인 연설가 그룹을 결성하여 다양한 학생, 직업소유자 및 산업체 그룹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것을 제안한다.
- 4)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교육을 저학년에서 실시하여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학부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졸업할 때 식품생산동물 진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졸업한 수의사들에게는 감독과 mentorship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수의과대학 예비학과 (우리나라는 예과과정이 이에 해당)에 참여하는 학생과 수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 (우리나라의 본과1학년에 해당)에게 식품생산동물 취급기술을 훈련시켜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 활동할 때의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拂拭)시켜 주어야 한다.
- 6) 겸임교수로서 유능한 개업 수의사의 지원을 받는다.
- 7) 학생의 훈련을 위해 산업체의 지원을 받는다(예: 장학금, 지도교수제도, 산업체와 대학의 internship).
- 8) 동물병원의 규모를 키워서 동물의 종별로 전문수의사가 서너 명씩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축산농가에게 건강 및 생산관리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개체진료 서비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료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의보조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 9) 수의과대학에서 식품생산동물을 위한 고급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10)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된 졸업생에게 근무 했수를 기준으로 학자금을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도록 촉구한다.
- 11) 식품생산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졸업생들에게 진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FSVMC의 권장에 따라 미국수의사회(AVMA)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수의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National Veterinary Medical Service Act”의 실질적인 시행과 연방정부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농업부장관이 정한 저개발 낙후지역 진료수의사 혹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비 대부 및 채무변제 프로그램(Loan repayment program, debt forgiveness)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등 긴급 방역이 필요할 경우 일선 수의사 등을 활용한 Veterinary National Guard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 혹은 생산자단체에서도 시골 등 오지에서 일정 기간 식품생산동물 진료 업무 수행을 약속한 수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비 대부 및 채무 변제 프로그램(Veterinary loan repayment program)을 운영 중에 있는데 2008. 8월 기준으로 조지아주, 캔자스주, 루이지애나주, 미주리주, 마인주, 네브라스카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다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바니아주,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 13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Kentucky 주는 새로 개업하는 수의사에게 10만 달러까지 저리로 15년간 대출해 주는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FDA의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도 10주 과정의 인턴과정(Summer Interim Program, 급여수준 \$4,455~6,105)을 운영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외국학생 및 미국 수의과대학 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FDA의 활동 소개 및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가금산업에서 경제적 규모가 가장 큰 남부의 조지아에 위치한 조지아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업동물수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 한 예가 Georgia offering veterinary incentive program이다.

II.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1.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가. 소 분야

각국의 수의과대학 교과과정 중 수의학 기본교육에 필요한 이론 강좌 대부분이 개설되어 있어 큰 차이가 없으나 임상 실기 교육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보다 많은 학기를 할애하여 임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소진료수의사를 교육시키는 임상교육기관이 없어 각 동물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소진료수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문의 교육제도를 두어 소분야에서 임상을 전문화할 수의사를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 미국은 1951년부터 전문수의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20개의 전문분야에서 9,305명의 전문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럽은 1990년부터 수의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전문분야에서 2,113 명의 전문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소 분야에서 전문의를 획득한 수의사는 일반개업수의사로 활동하기 보다는 주로 수의과대학이나 전문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조직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위한 소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지 못한 임상실기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의과대학에서는 주로 이론교육만을 시키고 충분한 임상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소 전문수의사를 교육시킬 교육 프로

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소 전문수의사들은 소 전문 동물병원에서 약 1년 정도 임상연수를 받고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수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나. 돼지 분야

유럽에서는 산업동물분야에 관심을 수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갖도록 학비보조제도를 도입하여 5년 정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도포기자 또는 의무미이행자 등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의과대학이 없는 주(South Dakota 및 North Dakota의 경우 아이오와주립대 또는 미네소타주립대, 위스콘신주립대와 결연)에서 주에서 필요한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및 특별입학 등 지역특례제도를 인근의 수의과대학이 있는 주와 결연하여 오래전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덴마크, 네델란드)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돼지전문수의사의 책임과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미네소타주립대에서 돼지전문수의사 인증교육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학부 또는 대학원과정에서는 특별히 통합적으로 돼지전문수의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나, 학부에서는 예과과목 또는 선택과목 형태로 운영 중이다.

다. 가금 분야

미국 조지아대학의 경우 매년 4명(2명은 자국민, 2명은 외국인)을 Master of Avian Medicine 과정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가금진료수의사로서 양성을 하고 있다. 이 중 2명은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주로 자국민들이 선정되고 있다. 가금전문의 과정의 경우 국내나 일본은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국은 오랜 전에 도입이 되어 현재 약 270명이 자격증을 획득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금전문수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수의과대학도 현재는 6년제로서 다른 선진 양계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국내의 경우 분야별 진료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 분야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을 찾아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시스템으로

경험과 여러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질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2.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가. 소 분야

1)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의 부속동물병원에서는 소 진료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소 질병에 대한 임상실습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도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대체로 소전문동물병원에서 임상연수를 약 1년 정도 실시하고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수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의사 처방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산업동물임상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각 축종별로 신규수의사와 중견수의사에 대한 임상실기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산업동물 임상교육을 집중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산업동물에 대한 기본이론 교육을 학부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졸업 후에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수의사들에게만 산업동물별로 심화교육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전문의 교육제도를 두어 소 분야에서 임상을 전문화할 전문수의사를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소전문수의사는 수의과대학 졸업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케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 소전문수의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리고 소전문수의사만이 인턴 수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수의임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수의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학문별/직능별 교육 프로그램과 수련과정(internship 과 residency)을 개발하고, 인정

기준과 자격부여 법령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아니라, 사람의 전문 의제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수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대한수의사, 한국우병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에서 개최하는 강습회, 연례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면허취득 후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4) 수의학교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제를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수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제 기준에 걸 맞는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육성한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한국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등록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을 이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로 소 분야의 임상에 종사할 수의사가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program을 제시하였다.

나. 돼지 분야

1) 돼지전문수의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 후 돼지전문수의사가 되려고 하는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과과정(돼지생산시스템, 돼지 질병진단 및 치료·예방, 역학 및 통계, 양돈기록관리, 돈사디자인 및 돈군평가기법, 돼지영양학, 양돈경제 및 경영)을 설치 운영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재학생의 교육비용과 각종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준다.

2) 한국양돈수의사회의 연례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면허취득 후 재교육(Continued education in swine medicine)의 기회로 활용한다.

3) 돼지전문수의사 Board제도의 도입으로 수의과대학 졸업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케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 Diploma를 수

여함으로써 돼지전문수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자기발전
을 위한 교육과 사회공헌을 유도한다.

다. 가금 분야

1) 학부과정에서의 가금전문 현장교육 강화. 우리나라 수의과대학 학부과정은
교과과정에서 양계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교과 운영상에서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임상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논문 없는 가금진료석사과정의 신설과 국가에서의 보조. 양계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금전문수의사 양성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원과정에서
가금진료수의사 과정의 유무이다. 국내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석사과정에
현장중심의 가금진료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과정의 신설은 현재의
수의과대학 현실을 감안하여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3) 가금진료전문수의사제도의 도입. 이미 양계선진국에서는 가금전문의 제
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전문의 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도입하
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가. 소 분야

1) 미국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산업동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1인의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한 동물병원에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 유럽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소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여러 명의 수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혼합 진료하는 체제이다. 소진료수의사는 개체 동물의 치료와 함께 HACCP-like program과 herd control를 실시하며 animal welfare의 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의 수입이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보다 낮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영국에서는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일본은 가축공제제도를 통해 가축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축산농민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가축공제에 가입한 축산농민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염가에 제공 받고 있으며 공제제도에 의한 소의 진료는 산업동물의 건강·복지 및 동물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생산단계에서 지켜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국가는 가축공제제도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소와 말의 경우 50%, 돼지의 경우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군(群, herd) 건강관리 사업에는 60%를 지원해주어 축산분야에 연간 약 550억엔(2005년)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공제조

합에서는 가축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축진료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북해도연합회에서는 임상연수소(研修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소의 지원으로 인해 진료소 수의사들의 실력은 미국 수의사들과 대등하며 2005년 현재 전국 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진료소 설치,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북해도에서는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며, 수의사 1인당 젖소단위로 환산하여 약 1,250두를 담당하고 있다.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소에는 매년 80명 정도의 신규수의사가 조합에 취직하여 정년퇴직하거나 사직하는 수의사를 대체하고 있다.

나. 돼지 분야

1) 유럽과 북미 지역의 돼지전문동물병원은 과거 1인 경영체제에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미국 중서부 파이프스톤시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프스톤가축병원(Pipestone Vet Clinic)과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일본 가나가와현 아즈기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요우라동물병원의 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돼지전문동물병원의 기능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미국에서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파이프스톤 양돈시스템(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사우스다코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주 등 5개주에 분포하고 있으며, 45개의 번식전문농장을 중심으로 143,000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2009년 현재 전미 5위의 규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파이프스톤동물병원(Pipestone Veterinary Clinic)은 1942년에 설립된 복합진료병원(소, 양, 돼지, 소동물 등)으로 본원은 파이프스톤시에 있으며 아이오와주에 분원을 두고 있다. 전체 소속 수의사는 18명으로 돼지전문수의사는 종돈장, 번식농장 및 개별농장의 질병과 위생에 대한 컨설팅, 지역수의사 컨설팅 교육 등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관리사를 두어 번식농장 경영총괄(생산, 직원고용/교육/배치, 환경문제, 전산관리, 재정, 보험, 종돈의 선정/공급, 교배방식, 돈육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일본에서는 돼지전문동물병원은 1970년대에 돼지 개체치료가 중심이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예방위생의 주체로써 예방주사업무가 주였다. 그러

나 1990년대부터 위생관리지도의 주체가 되면서 위생관리 프로그램작성이 주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경영지도를 포함한 종합 컨설턴트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도요우라동물병원은 1982년 3명의 돼지전문수의사가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최초 설립하였으나 2003년 가나가와현 아즈기시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4명의 돼지전문수의사가 일하고 있다. 일본전역의 양돈장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으며, 약 50개 농장 22,000두의 모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육돈을 관리하고 있다.

다. 가금 분야

1) 미국에서는 현재 약 270명의 가금진료수의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육종회사, 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 등 산업계와 연관된 직종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개인병원 혹은 컨설팅으로 전환을 하는데 주로 다인 체제의 병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에서의 문제점은 가금진료수의사를 위시한 축산전문수의사의 노령화와 공급원 부족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동물수의진료연합회(FSVMC: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금진료수의사를 포함한 산업동물수의사 양성 및 진료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 미국 가금진료수의사의 업무분야는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업무로 나누면 개인진료, 사료회사 및 동물약품회사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육종회사 및 대규모 농장에서의 자체진료, 국가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방역업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병성감정 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다.

3) 영국에서도 대부분 가금진료수의사는 산업체에 근무하지만 최근 다인 체제의 병원체제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내어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수의사로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가금전문병원이 ST. David's poultry team이다. 이 병원에는 수의사가 6명이며 일반직원도 실험실요원 4명, 행정요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가. 소 분야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소 진료 전문동물병원이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대적인 축산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사들 자신도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반경 약 35km 마다 시군 단위로 소 전문동물병원을 통합하여 수의사 처방제 실시 시에 부합되도록 동물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동물병원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동물병원 통합운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규모의 확대와 현대화로 업무능력을 향상, 2) 수의사처방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 3) 서비스 영역의 확대, 4) 체계적인 가축질병 방역 담당, 5) 동물병원 운영경비 절감, 6) 동물병원 소득의 증가, 7) 농민의 요구에 부합, 8) 수의사의 삶의 질 향상, 9) 신규 수의사 인력 흡수 용이 등이다.

2) 소 전문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4.3%가 시군 단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여 대부분의 소 전문수의사들은 수의사 처방제의 실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통합하여 시대에 맞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3) 시/군 단위로 통합된 통합동물병원은 주 업무로서 젖소와 한우를 비롯한 반추수의 진료를 담당하며 24시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응급진료에 대처한다.

4) 시군 단위 통합동물병원은 말, 돼지와 양계 전문동물병원이 없는 시군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타 축종의 전문동물병원과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1차 진료를 담당하거나 간접처방을 실시한다.

5)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은 반추수에 대한 질병발생 예찰업무, 질병 consulting, 예방접종, 채혈 등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방역 업무

를 보조한다. 또한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6) 통합동물병원의 공간이나 시설 장비의 규모는 일본의 가축공제조합 진료소의 시설과 유사하게 수술실과 진단장비를 갖추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7)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가축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통합된 동물병원을 가축공제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돼지 분야

1) 국가지원 컨설팅제도(생산성향상 및 HACCP운용)를 조기에 확산 정착시키고, 국가지원 예방접종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케하여 모든 양돈농가에 이에 참여토록하고 이를 통한 양돈생산성의 재고 및 항생제의 남용 등 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토록 유도한다.

2) 양돈생산자단체의 지원 및 전문진료승인제도의 도입으로 돼지만을 전문으로 진료·치료하는 양돈진료수의사의 활동을 보장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국가, 돼지생산자, 양돈진료수의사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질병진료센터를 설립하여 특정지역 또는 계약된 관련 양돈장을 관리케함으로써 돼지진료수의사의 활동을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준다.

4) 돼지전문수의사제도를 조기에 도입정착하여 돼지진료 수의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 및 예방약물의 과다사용 및 불법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5) 양돈전문종합컨설팅그룹을 육성하므로써 다수의 분야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양돈장의 문제를 해결토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가금 분야

1) 현 개업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익구조 향상. 현재 개업한 가금진료수의사 대부분은 진료에 의한 약품판매로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따라서 가금산업의 임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단기적으로는 다인 병원체제와 인턴제도의 도입 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영국의 David's poultry team처럼 다인 병원체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인 병원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업수의사들의 연합체제가 필요하고 또한 개업 준비된 수의사들이 이 체제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에서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제도의 도입과 국가방역 참여의 확대 필요. 전문성이 높은 가금진료수의사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금진료전문수의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가금진료전문수의사제도는 산업동물, 반려동물 등의 모든 축종에 해당됨으로 기본적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주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가금질병통합진료센터의 구축. 가금질병통합진료센터는 모든 계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역업무는 주로 국가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실적 기능을 수행하여 현재 수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청검사, 미생물검사, 환경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진료센터의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진료목적과 방역업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통합진료센터의 운

영인력은 진료수의사, 행정요원, 실험실요원으로 구성하며 수는 각 통합진료센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는 가금산업에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여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통합진료를 하게 되면 기존 개개인의 가금진료수의사의 경험이 모여 좀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료센터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병성감정지정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진료활동에 대한 보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금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통계를 좀 더 정확하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방역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연구

1. 산업동물과 관련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가. 소 분야

1) 농장에서 질병발생 시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함.

가) 현 시점에서 가축의 질병발생 시에 자가치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대부분 축주가 자가치료를 한 이후에 차도가 없을 때 수의사에게 진료요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일 경우에 조기 진단 및 조기 방역조치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국가적 방역업무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에 의한 자가치료 시에 수의사에 의해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일반 질병이 만성화되어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될 수 있다.

나) 현재와 같이 자가치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각 농장에서 수의사에게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의 방역이나 질병관리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3) 소에 대한 국가방역사업이 주로 구제역, 부르셀라병, 우결핵과 같은 일부 법정전염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타 법정전염병이나 일반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2) 가축 질병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나 정보의 부족

가) 현재 소의 일부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생통계와 혈청학적 항체보유 상태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를 접할 수 있지만 일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발생통계는 거의 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방역과 축산분야의 국가정책을 설정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소의 방역과 관련된 업무와 예산의 분산

가) 소 전문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소 질병의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루셀라 진단용 채혈 등과 같은 국가의 방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단위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1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이 이러한 방역업무를 개별적으로 맡고 있어 방역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 내의 전반적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나) 소의 방역과 관련되어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며 그 예산의 출처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어 부과될 수 있고 지역 내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그 예로 공수의사가 수행하는 질병예찰 업무는 가축질병 consulting과 농장 HACCP을 수행하는 수의사의 업무의 일부와 중복될 수 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업무는 수의사들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 1인 정도 배치되어 홀로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시군 단위로 1~2명 정도의 공수의사를 배치하는 하는 경우 공수의사의 활동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전 시군 지역의 방역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왕진을 다니는 전 수의사를 방역요원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국가방역정책에 대한 feedback 과정의 미흡

가) 국가 방역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건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나) 목장 진료를 담당하는 개업수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축 가검물을 농민이 직접 국가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국가의 검사기관이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여 질병관리에서 수의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농민의 자가치료를 유도하고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국가방역에 활용을 차단하는 행위이다. 가축질병 방역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약품이

나 소독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물용 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게 되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예산낭비의 경우가 많다. 질병 consulting 사업이나 목장 HACCP 사업의 운영시에 해당 시군의 수의사가 배재된 채 외부 경력 있는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축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수의사들의 개선의 건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소 산업에서 지적되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국가 방역업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고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시군 단위의 방역업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나. 돼지 분야

1)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수입사료에 기본한 가공형으로써 돼지사육의 규모화, 집단지화, 소비지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밀집사육 등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2002년 5~7월에 발생한 돼지의 구제역에서 일관된 3km 내외 농가의 살처분 정책으로 1,429여억원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고, 2003년에는 돼지열병의 재발로 국가방역정책이 백신정책으로 역행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후에는 돼지소모성질병의 창궐로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2008년에는 모돈당 출하두수가 연간 13.8두라는 최악의 생산성을 기록한 바 있다. FTA 협상 이후 개방된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예방대응시스템, 양돈생산자 보호대책, 안전성이 강화된 양돈방역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선진국과 같은 형태, 즉 모든 돼지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정보와 전국 농가 및 돼지사육 기본정보를 활용한 모의실험모델과 전문가시스템 모델을 기초한 국가수의정책의 결정과, 질병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토대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국내외 돼지질병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돼지

질병에 대한 역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돼지질병 신고 및 진단주체는 일선방역담당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가현장에서의 자율적 신고, 진단조직 및 체계에 관한 지역별 육성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정부의 행정조직 의존적인 신고·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4) 컨설팅제도가 그룹컨설팅(영양, 시설환기, 질병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최소 3인 단위)이 아닌 개별 전문가단위로 수행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5)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의 예측 불가능성, 광역화 등을 감안할 때, 행정조직체계만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방역조직과 현장(농장)단위의 자율방역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민간방역체계는 업무와 조직의 비효율성 및 중복업무에 따른 예산 낭비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축산 형태가 단일 축종 위주로 농가가 형성된 점을 참작하여 중앙방역 주체별로 축종위주로 분리하고 전문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민간방역체제의 전제가 되는 자조금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에 의존하여 용역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간방역 수준이다. 그리고 병성감정 지정기관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및 공인 진단액(Kit)의 공급조차 원활하지 못해 수의과대학과 민간연구소의 병성감정실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단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의 자율적 방역 및 경제적 부담(자조금)을 토대로 한 민간방역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현재 지방행정조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축용 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처리될 경우 해당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행정조직의 차별화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축산단지 인근이 도시화되면서 질병발생시 동물의 이동제한을 장기간 실시하기가 어렵고, 밀사에 대한 해결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충분한 이동제한기간

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축장의 규모나 수를 생산현장의 공급에 맞게 재편함으로써 방역대의 조성 및 도축장 경영의 합리화로 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금 분야

1) 농장에서 질병발생 시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음. 국내의 가금질병 통계는 2곳에서 관리되고 있다. 첫 번째 통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계하는 것으로 ND, AI 등 주요 전염성질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통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AIMS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보고하는 질병발생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질병들이 이 두 통계시스템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다.

2) 관급백신으로 인하여 비전문적 백신프로그램의 적용. 관급백신이 공급된 이유는 국내의 주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다. 최근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제공하고 있는 전염성F낭병 백신의 경우 백신의 종류 및 접종시기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인데 농장의 상황에 따라 백신이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관급백신 제공으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다시 이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농가에서 경제적 피해가 큰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방법이 관급백신을 제공하는 것 보다 방역정책상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국가방역정책에 대한 현장에서의 Feed back 기능 미흡. 국가방역정책이 수행이 되면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응이 정확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백신의 무상공급과 같이 애초에 목표한 기준에 미달이 되어도 현장에서는 안주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 농장 개개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과연 현재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정책을 그래도 개인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방역당국은 현장에서의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나 생각들을 여과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방역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산업동물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가. 소 분야

1) 시군단위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 설치와 방역업무 통합

가) 지역 내의 신속한 질병 발견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방역조직을 시군 단위의 통합된 동물병원에 통합하여 수의사와 관련된 직원 모두가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방역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된 동물병원에 국가 방역 업무가 주어질 때 전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져 지역의 방역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반경 약 35km 단위(시군구 단위)로 가축의 질병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가칭)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가축의 치료, 공수의 업무, 가축집단의 군건강관리,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루셀라 진단용 채혈, 수정업무 등 국가의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시군구 단위 방역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다)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흡수하여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라) 그동안 분산되어 지급되던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채혈 시술비,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등 국가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시군 단위로 통합된 동물병원에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던 동물병원 업무와 공동방역사업 업무,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시군구 출장소 업무를 통합된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나. 돼지 분야

돼지질병의 치료뿐 만아니라 돼지집단의 군건강관리, 돼지질병 consulting, 양돈장 HACCP, 전염성 돼지질병의 예찰 업무 등 국가의 돼지질병 방역정책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지전문 동물병원 또는 돼지전문수의사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양돈장 HACCP제도를 조기에 확산하여 돼지전문수의사의 양돈장 정기방문을 제도화하여 돼지집단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의 컨설팅 및 치료뿐만 아니라 돼지의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보고케함으로써 국가의 돼지질병 방역정책에 연계되도록 한다.

2) 돼지생산자단체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돼지전문수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양돈장의 정기방문 및 질병관리를 정례화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가 생산되도록 한다.

3) 민간병성감정기관의 돼지질병검사를 국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하여 주요 돼지질병의 검사결과를 공개 또는 보고케하여 국가의 돼지질병 방역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4) 돼지전문진료센터와 국가가축방역기관 및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업무공유를 통하여 양돈장의 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업무공유체계를 구축한다.

5) 농협, 방역지원본부, HACCP기준원, 지역 공방단 등에 맡겨진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가방역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산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6) 돼지와 같은 산업동물의 경우 가축공제제도의 도입은 수의사의 의무이행과 생산자의 방역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으로 이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다. 가금 분야

1) 가금산업에서 국가방역은 부화장, 도축장, 종계장이며 중심에 가금진료수의사제도가 있다. 소규모로 거래가 되는 재래시장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모든 닭과 오리는 부화장에서 태어나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다.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에도 도축 시에는 노계전문 도축장 2곳에서 도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금산업에서의 국가방역은 부화장과 도축장을 제어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질병발생 등 방역관련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화장과 도축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의 현장감독이 필요하다.

2) ND 국가방역(1일령 부화장 접종)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현재 국가에서는 1일령, 10일령 ND백신접종을 위하여 관급백신을 전국의 부화장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여부에 대한 검사는 부화장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접종여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가 지역의 부화장에 대한 1일령 백신접종 여부 및 도축장에서의 시료채취 등을 수행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관급백신공급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ND 국가방역(10일령 농장 접종)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현재 농가에 자체 ND백신접종을 위하여 관급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도축장에서 혈청을 채취하여 지자체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역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생독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100%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체검사가 절대적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금진료수의사가 필요하다.

4) HACCP 인증 가금농장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의 현장 감시. 현재 많은 가금농장들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3년 내에 1,500개 이상의 농장들이 HACCP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ACCP 인증 후 매년 가금이 입식되었을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가 매년 농장을 방문하여 HACCP 인증 후에 농장에서의 HACCP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면 여러 가지로 잇점이 있다.

5) 도축장에서의 혈청 및 미생물검사시료 채취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 역할. 현재는 도축장에서 농장별로 혈청을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관에서 ND에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청채취가 도축장 자체검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례적으로 채취가 될 수도 있다. 가금진료수의사가 이러한 일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가치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재의 도축검사원은 대부분 가금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 전문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금진료수의사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일반 가금농장 및 종계장에서의 임상검사를 통한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국내의 모든 양계장 및 종계장에 대하여 가금진료수의사가 위생 및 방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모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금산업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부화장과 도축장이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만 일반 가금농장과 종계장을 모두 감시할 필요는 없다.

7) 국가방역사업에 참여하는 가금진료수의사의 책임과 의무. 국가방역사업에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금진료수의사의 의지에 맡겨주어야 한다. 만약 참여를 한다면 국가에서 그에 맞는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 국가방역당국에서는 가금진료수의사들이 충분히 이러한 제도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진양계국가들이 산업동물진료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V. 종합 제언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 및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본 연구의 소, 돼지, 가금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제언한다.

1. 소, 돼지, 가금을 비롯한 산업동물 임상 분야에 관심을 갖는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졸업 후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을 유도하도록 장학금을 비롯한 학비보조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50여명의 신규 수의사가 산업동물분야에 진출이 필요하므로 한국낙농유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의 생산자 단체에서는 각 축종별로 매년 필요한 신규 수의사 숫자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각 산업동물 분야별 수의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각 수의과대학은 산업동물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각 대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대학원 과정이나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소, 돼지, 가금을 비롯한 각 축종별 수의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3.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신규수의사와 기존에 산업동물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산업동물 임상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이 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재원을 마련하고 전국의 수의과대학, 대한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소, 돼지, 가금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전문수의사를 양성한다.

4. 소 전문 진료수의사, 돼지 전문 진료수의사, 가금 전문 진료수의사와 같이 축종별 전문 진료수의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의과대학이나 산업동물

임상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에게만 자격을 주며, 산업동물 전문 진료수의사를 획득한 수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하는 인증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5. 산업동물 임상 분야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국의 수의과대학과 대한수의사회가 각 축종별 전문의(Board)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6. 현재 영세한 우리나라의 소 진료 전문동물병원을 수의사 처방제 실시 에 부합되고 현대적인 축산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경 약 35km 마다 시군 단위로 소 전문동물병원을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에서는 동물병원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분산되어 지급되던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채혈 시술비,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등 국가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시군 단위로 통합된 동물병원에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7.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또는 가금질병진료센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특정지역 또는 계약된 관련 양돈장 또는 양계장을 관리케 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는 돼지 또는 양계 전문수의사의 활동을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준다.

8. 돼지전문종합컨설팅그룹과 가금전문종합컨설팅그룹을 육성함으로써 다수의 분야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양돈장과 양계장의 문제를 해결토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9. 국가지원 컨설팅제도(생산성향상 및 HACCP운용)를 조기에 확산 정착 시키고, 국가지원 예방접종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합된 동물병원이나 돼지 전문종합컨설팅 그룹과 가금전문종합컨설팅 그룹에서 담당케하여 모든 농장의 정기방문 및 질병관리를 정례화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한다.

10. 반경 약 35km 단위(시군구 단위)로 가축의 질병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가칭)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소의 치료, 공수의 업무, 가축집단의 군건강관리,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등 국가의 동물질병 방역정책의 시군구 단위 방역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정부는 지원한다.

11. 가축질병의 방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축종의 전문수의사의 농장에 대한 방역 감시 활동과 함께 도축장 또는 도계장의 혈청검사 등과 같은 방역관리의 참여도 요청된다.

12. 농협, 방역지원본부, HACCP기준원, 지역 공방단 등에 맡겨진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가방역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산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13.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가축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통합된 동물병원을 가축공제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각 생산자 단체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산업동물 진료체계 개편 및 방역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서 론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절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축수산용 항생제 연간 사용량은 약 1,457톤('04년 기준)이며 육류 생산량 1톤당 항생제 사용량은 0.66kg으로 스웨덴의 22배, 덴마크의 19배, 미국의 2.6배, 일본의 1.4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용되는 항생제의 축종별 사용 실태로서 돼지에서 57%, 닭에서 20%, 수산용 16%, 소 8%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자가치료/예방용으로 50%가 사용되고 있고 배합사료첨가용으로 44%가 사용되고 있으며 수의사 진료용으로 단지 6%만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 사용량의 94%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되고 있어 항생제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식육 중 잔류문제, 내성균 출현문제 등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대는 축산물의 항생제의 잔류 위반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축산물 내 동물약품(항생제 등) 잔류 위반율은 2000년 0.11%에서 2001년 0.17%, 2002년 0.14%, 2003년 0.20%, 2004년 0.25%, 2005년 0.25%, 2006년 0.26%, 2007년 0.23%로 7년 동안 2배로 증가하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분리되는 병원성 세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소, 돼지, 닭에서 분리된 세균들이 축산에서 흔히 사용되는 tetracycline과 ampicillin에 높은 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돼지와 닭에서 분리되는 세균의 경우 내성율이 현격하게 높는데, 이는 이들 축종에

서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그 결과 내성율도 높게 나타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용 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제도적인 예방대책이 없어 국내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생제의 축산물 내 잔류와 항생제에 대한 내성 문제의 예방을 위한 동물약품 안전사용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OIE·FAO는 1999년에 항생제 사용의 원칙으로 “항생제는 치료용으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WHO는 2002년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관리를 권고하였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정부는 '07년 12월 6개 관련부처의 참여로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수행할 전담수의사의 수급에 대한 준비와 진료체계의 정비 등이 요청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① 우리나라 산업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조사·과약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②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양성 방안(학교·민간·관련

협회별 역할 구분, 교육기준 제시 등),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③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④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산업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조사·파악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김두교수는 한·육우, 젖소, 말, 산양, 면양, 사슴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진료수의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모인필교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관상조, 타조, 꿩 등의 가금진료수의사를 조사하였으며, 박봉균교수는 돼지진료수의사를 조사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은 주요 가축으로 분류하였으며, 말, 산양, 면양, 사슴, 개, 토끼,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는 기타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 돼지, 닭 및 기타 가축의 진료를 담당하는 축종별 전문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통계(농가, 두수)를 기초행정(시군) 단위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주료가축은 2008년 12월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지역의 기타 가축은 2008연도에 조사된 자료가 없어 2007년 12월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시/군/구 단위로 주료가축과 기타가축의 2008년도 12월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였다.

둘째,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과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및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의 제시를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유럽연합국가, 일본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수의학 교육과 임상체계에 대한 문헌과 법규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식품생산동물 진료체계 개편 방안, 수의사 처방제 도입, 수의사면허 및 진료 전문화체계 구축방안 등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한 정책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산업동물병원의 수의사와 축산 농가를 방문하거나 전화 설문을 통하여 현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청취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동물 수의사들의 진료 여건과 동물병원 운영형태 및 동물병원 통합에 대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소진료수의사와 가금진료수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만을 진료하는 수의사와 반려동물을 혼합진료를 하는 수의사 815명에게 설문지를 보냈으며 229부가 기간 내에 회수되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금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금진료수의사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명이 응답을 하여 55.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금진료수의사, 병원 및 진료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의 수의과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졸업 직후와 졸업 10년 후에 진출할 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511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 우리나라 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조사·과약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산업동물 진료 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이 보고서에서는 고기, 젖(乳), 알(卵) 및 꿀을 생산하는 동물을 ‘산업동물(industrial animal) 또는 식품생산동물(food producing animal)’이라고 칭하며, 산업동물 또는 식품생산동물의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수의사를 ‘산업동물 수의사 또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 식품생산동물에 대한 의학을 ‘식품생산동물 수의학(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동물’은 식품생산동물 또는 산업동물을 의미한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식품생산동물 또는 산업동물 수의사는 식품생산동물의 직접적인 진료를 직업으로 하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의 전염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중독성질병 등에 관한 연구, 교육, 위생검사, 검역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식품생산동물의 직접적인 진료를 직업으로 하는 수의사와 그들과 관련된 진료업을 위주로 기술한다. 이 보고서에서 ‘산업동물 또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사’로 기술한다. 산업동물과 대조적인 단어로 흔히 사용되는 애완동물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기술한다. ‘대동물’이라는 표현은 가금류와 별 같은 작은 동물을 제외한 식품생산동물과 말이 포함될 때 사용하였다. 혼합동물병원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함께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칭한다. 소진료수의사는 산업동물 수의사 중에 젓소와 한우를 비롯한 반추수를 주 치료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를 칭하고 다른 축종이나 여러 동물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수의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돼지진료수의사는 돼지만을 전문적으로 진료·치료·컨설팅하는 수의사를 말하며 가금진료수의사는 닭을 비롯한 산업화된 가금을 주 진료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의사를 칭한다. 소, 돼지, 또는 가금 전문수의사(specialist)는 현재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임상수의학교육협의회에서 의학분야의 전문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진료과목

에 대하여 다른 수의사보다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진 등록된 수의사를 말한다. 전문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진보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소 분야>

1.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전문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현대적인 축산에서는 각 축종별로 사육방식이 전문화되면서 질병의 치료와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도 각 축종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진료수의사는 한육우, 젖소, 말, 산양, 면양, 사슴을 전문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가금진료수의사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관상조, 타조, 꿩 등의 조류의 진료를 담당하며, 돼지진료수의사를 돼지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산업동물 진료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 각 축종별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소, 돼지, 닭 및 기타 가축의 진료를 담당하는 축종별 전문 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통계(농가, 두수)를 기초행정(시군) 단위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주योग축은 2008년 12월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지역의 기타 가축은 2008연도에 조사된 자료가 없어 2007년 12월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시/군/구 단위로 주योग축과 기타가축의 2008년도 12월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였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주योग축의 전국적인 사육두수는 한·육우는 181,196호에서 2,430,389두, 젖소는 7,000호에서 445,754두, 돼지는

7,681호에서 9,087,434두, 닭은 3,196호에서 119,783,943수 이었다. 인천광역시와 각 도의 통계청 통계자료와 행정통계 통계자료는 수치에 차이가 있었으며 행정통계의 가축 수가 통계청 발표의 가축 수보다 약 10% 정도 많게 조사되었다(첨부 1).

나. 젖소와 한우의 연간 질병 발생 조사

각 축종별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병 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질병발생에 대한 기록이 잘 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연간 질병 발생률을 조사하였다(표 1).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평균 질병발생률은 젖소 성우는 15.13%, 젖소 육성자우는 12.83%이었으며 한우 성우는 0.30%, 한우 육성자우는 5.26%로서 젖소 성우는 한우 성우보다 질병 발생률이 50.4배 높았으며, 육성 자우는 젖소가 한우보다 2.44배 높았다.

표 1. 국립축산과학원 사육 가축의 질병 발생률

년도	질병발생율 (%)				성돈	육성자돈
	젖소 성우	젖소육성자우	한우 성우	한우육성자우		
2005	14.55	14.38	0.4	5.49	16.1	4.44
2006	15.70	11.38	0.2	5.03	13.05	4.39
2007	15.29	13.90	0.67	3.00	4.46	1.34
평균	15.13	12.88	0.30	5.26	14.57	4.42

1) 성우 젖소의 질병발병률 및 치료횟수

2008년도 질병별 발생 조사에서 젖소 성우에서는 유방질환이 6.05% 발생하여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산과질환 4.06%, 외과질환 1.47%, 소화기질환 0.87%, 영양대사성질환 0.84%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기타 질환이 2.38% 발생하였다(표 2).

표 2. 성우 젖소의 질병발병률 및 치료횟수(2008, 국립축산과학원)

병명	발병건수	발병률(%)	질병비율(%)	치료회수
유방질환	201	6.05	38.57	630
유방염	122	3.67	23.41	432
준입상형유방염	62	1.86	11.90	145
혈유	7	0.21	1.34	14
유방부종	7	0.21	1.34	25
유방습진	2	0.06	0.38	10
유방화농	1	0.03	0.19	4
산과질환	135	4.06	25.91	328
후산정체	25	0.75	4.79	75
난산	6	0.18	1.15	6
사산	12	0.36	2.30	12
자궁내막염	50	1.50	9.59	140
난소종양	1	0.03	0.19	15
중격결손	1	0.03	0.19	1
질열상	10	0.30	1.91	10
난소휴지	7	0.21	1.34	7
난포낭종	8	0.24	1.53	8
황체낭종	5	0.15	0.95	7
자궁축농증	10	0.30	1.91	47

병명	발병건수	발병률(%)	질병비율(%)	치료회수
외과질환	49	1.47	9.40	137
외상	10	0.30	1.91	20
체염	5	0.15	0.95	10
체저궤양	9	0.27	1.72	18
염좌	2	0.06	0.38	8
지간피부염	18	0.54	3.45	60
근염	2	0.06	0.38	10
골절	1	0.03	0.19	5
화농	2	0.06	0.38	6
소화기질환	29	0.87	5.56	99
고창증	4	0.12	0.76	12
식체	1	0.03	0.19	5
4위전위	4	0.12	0.76	12
1위무력증	1	0.12	0.19	5
요내병	15	0.45	2.87	45
장염	4	0.12	0.76	20
영양대사성질환	28	0.84	5.37	82
산후허약	27	0.81	5.18	78
유열	1	0.03	0.19	4
기타질환	79	2.38	15.16	178
내과관찰	32	0.96	6.14	65
식피개선충	18	0.54	3.45	36
각막궤양	2	0.06	0.38	6
폐렴	8	0.24	1.53	25
오연성폐렴	2	0.06	0.38	8
결막염	2	0.06	0.38	8
수술	15	0.45	2.87	30
계	521	15.70	100.0	1,454

2) 젓소 육성 및 자우의 발병률 및 치료회수

2008년도 질병별 발생 조사에서 젓소 육성 및 자우에서는 소화기질환이 6.43% 발생하여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호흡기질환 2.83%, 외과질환 0.35%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기타 질환이 1.75% 발생하였다(표 3).

표 3. 젖소 육성 및 자우의 발병률 및 치료회수(2008, 국립축산과학원)

병명	발병건수	발병률(%)	질병비율(%)	치료회수
호흡기질환	63	2.83	24.90	180
폐렴	51	2.29	20.15	135
기관지폐렴	12	0.53	4.74	45
외과질환	8	0.35	3.16	39
신경손상	2	0.08	0.79	18
화농	3	0.13	1.18	9
외상	3	0.13	1.18	12
소화기질환	143	6.43	56.52	408
장염	136	6.11	53.75	380
패혈증	5	0.22	1.97	22
식체	2	0.08	0.79	6
기타질환	39	1.75	15.41	138
내과관찰	21	0.94	8.30	66
탈모	2	0.08	0.79	15
허약	14	0.62	5.53	45
피부염	2	0.08	0.79	12
계	253	11.38	100.0	765

3) 한우 성우의 질병발병률 및 치료회수

2007년도 질병별 발생 조사에서 한우 성우에서는 근골격계 및 외과질환이 0.17% 발생하여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산과 및 비뇨생식기질환 0.08%, 호흡기질환 0.07%, 소화기질환 0.05%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기타 질환이 0.03% 발생하였다(표 4).

4) 젖소 육성 및 자우의 발병률 및 치료회수

2007년도 질병별 발생 조사에서 한우 육성 및 자우에서는 소화기질환이 4.69% 발생하여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호흡기질환 0.73%, 근골격계 및 외과질환 0.07% 순으로 발생하였다(표 5).

표 4. 한우 성우의 발병률 및 평균 치료횟수(2007, 국립축산과학원)

병명	발병건수	발병율(%)	질병비율(%)	평균치료횟수
소화기질환	4	0.05	13.3	2.3
식체	2	0.03	6.7	1.5
고창증	1	0.01	3.3	3
탄수화물과식증	1	0.01	3.3	3
근골격계및외과질환	13	0.17	43.3	3.4
체염	3	0.04	10	1.7
농양	3	0.04	10	6.3
부종	6	0.08	20	3.2
외상	1	0.01	3.3	1
호흡기질환	5	0.07	16.7	3.4
폐렴	5	0.07	16.7	3.4
산과및비뇨생식기질환	6	0.08	20	2.8
후산정체	5	0.07	16.7	2.2
요결석	1	0.01	3.3	6
기타질환	2	0.03	6.7	2.5
내과관찰	1	0.01	3.3	3
결막염	1	0.01	3.3	2
총계	30	0.4	100	3.1

표 5. 한우 육성 및 자우의 발병률 및 치료회수(2007,국립축산과학원)

병명	발병건수	발병율(%)	질병비율(%)	평균치료횟수
소 화 기 질 환	141	4.69	85.5	2.1
장염	141	4.69	85.5	2.1
근골격계 및 외과질환	2	0.07	1.2	4.5
골절	1	0.03	0.6	4
화농	1	0.03	0.6	5
호흡기 질환	22	0.73	13.3	2.6
폐염	22	0.73	13.3	2.6
총계	165	5.49	100	2.2

다. 가축환산단위 설정

소진료수의사가 담당하는 축종인 젖소, 한육우, 산양, 면양, 사슴의 질병발생 실태를 바탕으로 가축단위(livestock unit)를 설정하여 처방제 도입 시에 필요한 소진료수의사 적인 인원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축단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OIE나 FAO 가축단위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토지나, 조사료 섭취량 등을 표시한 가축단위를 발표하였으나 질병치료를 기준으로 하는 가축단위를 발표한 자료가 없었다. 축산 경영 형태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에서는 약 60년간의 가축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 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 청구의 기준이 되는 가축단위로 젖소를 기준(1)으로 하여 육우 0.3, 말 1, 돼지 0.1로 설정하였다(첨부 11).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농업공제조합 가축공제 운영 실태, 축산과학원의 젖소와 한우의 질병 발생 자료와 소진료수의사의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젖소(1)를 기준으로 하여 한육우는 0.3, 말은 1, 산양은 0.05, 면양은 0.05, 사슴은 0.1로 가축단위를 설정하였다.

소진료수의사가 담당하는 각 시군의 젖소 단위는 첨부 2와 같이 환산하였다. 전국의 젖소단위는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는 1,203,369두, 행정통계 기준으로는 1,314,833두이었으며 경기도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았다(표 6).

표 6. 광역시/도 단위별 젖소 단위 환산 가축 수 (2008년 12월 통계청 자료 기준)

시군별	한옥우		젖소단위		젖소		산양		젖소단위		면양		젖소단위		사슴		젖소단위		젖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전국	2,430,389	729,117	445,754	372,447	18,622	1,800	90	97,856	9,786	1,203,369										
서울특별시	417	125	99	155	8															
광주광역시	4,821	1,446	684	771	39	0														
대구광역시	16,895	5,069	3,035	3,205	160	0														
대전광역시	4,866	1,460	10	988	49	20														
부산광역시	1,874	562	619	1,564	78	0														
울산광역시	23,589	7,077	1,088	3,077	154	0														
인천광역시	17,877	5,363	3,648	3,261	163															
강원도	196,820	59,046	16,766	18,310	916	1,071														
경기도	240,428	72,128	174,992	17,001	850	45														
경상남도	258,240	77,472	28,056	56,960	2,848	64														
경상북도	486,847	146,054	41,320	39,599	1,980	20														
전라남도	404,882	121,465	31,619	55,436	2,772	148														
전라북도	273,862	82,159	34,278	62,844	3,142	134														
제주도	26,814	8,044	4,907	921	46	24														
충청남도	308,312	92,494	81,711	32,698	1,635	58														
충청북도	163,845	49,154	22,922	29,225	1,461	52														

라. 소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각 시군 단위별로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필요한 소진료수의사의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환산한 가축단위를 소진료수의사당 담당두수로 나누어 적정 인원수를 산출하였다. 소진료수의사 1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젖소단위는 질병발생이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의 경우는 젖소 1두당 년 2.8회 치료를 실시하여 수의사 1명당 1,250(지역에 따라 900~1,600)두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는 않아 자가치료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지역의 경우 젖소 1두당 년 1.04회 치료를 실시하여 수의사 1인당 젖소 3,000두를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면, 수의사의 왕진 후 진단에 따라 처방과 1차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한 상황으로 젖소 두수당 치료횟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사육형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현재 처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유사하게 수의사 1인당 1,250두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모든 치료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될 경우는 일본과 유사한 가축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의사 처방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일부의 약품만이 처방제의 대상이 될 2011년과 같은 초기에는 소진료전문수의사당 가축단위를 더 높게 설정하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진료수의사당 젖소단위 1,250두를 설정하여 각 광역단위와 시군별로 적정 수의사를 산출하였다(첨부 3 및 첨부 4). 통계청 가축통계에 근거한 적정 소진료전문수의사 수는 전국적으로 963명이 필요하며 행정통계의 가축통계에 근거한 적정 수의사 수는 1,052명으로 산출되었다. 전국적으로 말 사육 두수는 24,951두로서 말 전문 수의사는 20명이 필요하였다.

2. 소진료수의사의 실태 조사

2009년 8월 말 현재 각 시군 행정조직 단위로 활동 중인 소진료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실태를 현장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첨부 5). 전국에

서 활동하고 있는 소진료수의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935명이었으며 말진료수의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30명이었다(첨부 6). 소진료수의사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180명이 활동하고 있어 수의사당 1,176두의 젓소단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경기도는 116명이 활동하며 수의사당 2,244두의 젓소단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23명의 소진료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수의사당 696두의 젓소단위를 담당하였다.

3. 소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가. 수의사 처방제 전면 실시 시에 과부족 산출

각 시군별 가축단위와 소진료수의사의 활동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수의사 처방제의 전면적인 실시에 필요한 각 광역단체 및 시군별 수의사의 과부족 상태를 산출하였다(표 7 및 첨부 3).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소진료수의사는 전국적으로 통계청 가축 통계 기준으로는 28명 부족, 행정통계의 기준으로는 117명이 부족하였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말 진료 전문수의사는 전국적으로 10명이 과잉이었다.

광역행정단위에서 소진료수의사가 과잉인 지역은 행정통계 가축 기준으로 경상남도 34명, 경상북도 11명, 제주도 11명, 광주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2명, 울산광역시 2명, 부산광역시 1명이 과잉이었다. 소진료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행정통계 가축 기준으로 경기도 92명, 충청남도 39명, 전라북도 24명, 충청북도 17명, 강원도 11명, 전라남도 9명, 인천광역시 4명이 부족하였다.

각 시군단위로는 수의사가 없는 시군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도시화되어 가축사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 단위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인근 시군에서 활동하는 수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축 수가 적은 지역에 수의사가 과잉인 경우는 인근의 다른 시군의 가축 진료를 맡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신안군의 경우에는 3명의 소진료수의사가 필요하였지만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가 없어 인근 시군의 수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표 7. 전국 광역단위별 적정 수의사 수와 부족한 수의사 수

시군별	적정 수의사 수	적정 수의사 수	실제 수의사 수	부족인원	부족인원	부족인원	부족인원	수익사 당기축수	수익사 당기축수	
	(통계청자료기준) 두수	(행정통계기준) 두수	(통계청) 명	(통계청) 명	(행정통계) 명	(행정통계) 명	(통계청) 명	(통계청) 두수	(행정통계) 두수	
전국	1,203,369	1,314,833	963	1,052	935	28	117	▽ 28~117	1,287	1,406
서울특별시	246	246	0	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2,189	2,189	2	2	12	-10	-10	△ 10	182	182
대구광역시	8,291	8,291	7	7	16	-9	-9	△ 9	518	518
대전광역시	1,535	1,571	1	1	3	-2	-2	△ 2	512	524
부산광역시	1,305	1,305	1	1	2	-1	-1	△ 1	653	653
울산광역시	8,431	8,431	7	7	9	-2	-2	△ 2	937	937
인천광역시	9,341	10,384	7	8	4	3	4	▽ 3~4	2,335	2,596
강원도	77,704	80,947	62	65	54	8	11	▽ 8~11	1,439	1,499
경기도	249,639	260,277	200	208	116	84	92	▽ 84~92	2,152	2,244
경상남도	109,146	126,910	87	102	136	-49	-34	△ 34~49	803	933
경상북도	190,121	211,762	152	169	180	-28	-11	△ 11~28	1,056	1,176
전라남도	156,784	167,894	125	134	125	0	9	▽ 0~9	1,254	1,343
전라북도	120,410	130,031	96	104	80	16	24	▽ 16~24	1,505	1,625
제주도	13,084	16,002	10	13	23	-13	-10	△ 10~13	569	696
충청남도	177,379	204,839	142	164	125	17	39	▽ 17~39	1,419	1,639
충청북도	74,370	83,754	59	67	50	9	17	▽ 9~17	1,487	1,675

나. 현 제도에서 소진료수의사의 과부족 산출

농가의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현 제도 하에서 현재 활동 중인 소진료수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첨부 6과 첨부 7 참조, 815명 발송 중 229명 응답)에서 소진료수의사들은 수의사당 젖소는 약 3,000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한우는 10,000두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전국 단위로 분석할 경우 현재의 활동 수의사당 1,406두의 젖소단위를 진료하고 있어 실제 진료할 수 있는 젖소 단위 3,000두의 절반 정도 밖에 관리하고 있지 못하여 수의사가 약 2배 정도 과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와 도 단위로 분석하였을 때, 인천광역시는 수의사당 2,596두를 관리하고 있어 가장 많은 젖소단위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광주광역시는 수의사당 182두를 관리하고 있어 가장 적은 두수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주광역시 수의사는 시 주변지역의 소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단위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의 시/군(강화군, 삼척시, 이천시, 여주군, 고양시, 연천군, 완주군, 예산군, 청원군)이 수의사당 젖소단위 3,000두 이상이였으나 이러한 지역은 인근 시/군의 수의사들이 진료를 일부 담당하고 있었다.

4. 소 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가. 처방제 전면적 실시 시 과부족 해소 방안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소진료수의사는 전국적으로 통계청 가축 통계 기준으로는 28명 부족, 행정통계의 기준으로는 117명이 부족하였으며, 지역 간에 수의사의 과부족 상태에 편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표 7 및 첨부 3). 광역행정단위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수의사는 과잉이었으며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는 수의사가 부족하여 수의사가 과잉인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에 수의사를 재배치하는 방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의사가

부족한 시/군으로 동물병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물병원시설 지원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의사 부족 수치는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 실시되어 수의사당 젓소단위 1,250두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부족 인원이다. 처방제 실행 단계에서 처방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첫 해재인 2011년에 수의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사 당 젓소단위 1,500두를 설정한다면 전국적으로 소진료수의사가 802명 필요하게 되어 현재 활동 중인 수의사가 935명으로 133명의 수의사가 과잉으로 계산된다. 현재 활동 중인 소진료수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첨부 6과 7 참조)에서 소진료수의사들은 현재 수의사당 일일 5.2두를 진료하고 있으나 하루 최대 진료 가능한 진료 두수는 9.5두로 응답하여 현재 활동 능력에 비하여 진료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처방제 실시로 인하여 진료 건수가 2배 정도로 증가할 경우에도 진료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규 수의사의 보충 방안

2009년 11월에 실시한 전국의 수의과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511명의 응답자 중 47명(9.2%)은 졸업 후 소 진료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었으며 졸업 후 10년 후에 50명(9.8%)은 소 분야의 진료에 종사하겠다고 응답하였다(표 8, 첨부 8 참조). 이러한 수치는 현재 매년 졸업 인원 600명 중 약 55명이 소진료수의사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수의사 처방제의 전면적인 실시 시에 부족한 인원을 처방제의 실행단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진료수의사의 수급에서 고령 수의사의 은퇴에 대비하여 대체 인원도 매년 충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소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935명의 수의사가 65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약 35년간 진료분야에 종사하게 되므로 연간 약 27명의 대체 수의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론 적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가축의 행정통계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 117명을 점진적으로 보충하고 매년 은퇴하는 수의사

를 보충하기 위한 수의사는 감안할 때, 소 분야에서 매년 약 50명 정도의 신규 수의사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의과대학 졸업생 중 매년 55명 정도가 소진료수의사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어 처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부족한 수의사와 은퇴하는 수의사의 교체에 필요한 인원을 졸업하는 수의사들로 점진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희망 진출 분야는 사회적 또는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소 진료 분야에 진출하고자하는 유능한 수의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소전문동물병원 개원 시에 시설자금 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미국의 산업동물 수의사 유치 사례

미국에서는 식품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수의사가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임무를 갖고 식품공급수의학연합(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 이하 FSVMC)이 2004년에 결성되었다. FSVMC의 전제는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은 수의사가 생산과 가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향후 2016년까지 12.64%의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수의사가 부족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FSVMC는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11가지의 권장사항을 제시되었다(첨부 12 참조).

- 1)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수의사의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group들(미국수의과대학협의회, 미국수의사회, 캐나다수의사회 및 각 주수의사회, 미국소수의사회, 미국돼지수의사회, 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사이에 그 긴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식품생산동물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을 활발하게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야 한다. 논리가 정연하고 정력적인 연설가 그룹을 결성하여 다양한 학생, 직업소유자 및 산업체 그룹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것을 제안한다.
- 4)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교육을 저학년에서 실시하여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학부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졸업할 때 식품생산동물 진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졸업한 수의사들에게는 감독과 mentorship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수의과대학 예비학과 (우리나라는 예과과정이 이에 해당)에 참여하는 학생과 수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 (우리나라의 본과1학년에 해당)에게 식품생산동물 취급기술을 훈련시켜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 활동할 때의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拂拭)시켜 주어야 한다.
- 6) 겸임교수로서 유능한 개업 수의사의 지원을 받는다.
- 7) 학생의 훈련을 위해 산업체의 지원을 받는다(예: 장학금, 지도교수제도, 산업체와 대학의 internship).
- 8) 동물병원의 규모를 키워서 동물의 종별로 전문수의사가 서너 명씩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축산농가에게 건강 및 생산관리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개체진료 서비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료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의보조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 9) 수의과대학에서 식품생산동물을 위한 고급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10)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된 졸업생에게 근무 했수를 기준으로 학자금을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도록 촉구한다.
- 11) 식품생산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졸업생들에게 진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FSVMC의 권장에 따라 미국수의사회(AVMA)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수의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National Veterinary Medical Service Act”의 실질적인 시행과 연방정부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농업부장관이 정한 저개발 낙후지역 진료수의사 혹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비 대부 및 채무변제 프로그램(Loan repayment program, debt forgiveness)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등 긴급 방역이 필요할 경우 일선 수의사 등을 활용한 Veterinary National Guard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 혹은 생산자단체에서도 시골 등 오지에서 일정 기간 식품생산동물 진료 업무 수행을 약속한 수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비 대부 및 채무 변제 프로그램(Veterinary loan repayment program)을 운영 중에 있는데 2008. 8월 기준으로 조지아주, 캔자스주, 루이지애나주, 미주리주, 마인주, 네브라스카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다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펜실바니아주,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등 13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Kentucky 주는 새로 개업하는 수의사에게 10만 달러까지 저리로 15년간 대출해 주는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FDA의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도 10주 과정의 인턴과정(Summer Interim Program, 급여수준 \$4,455~6,105)을 운영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외국학생 및 미국 수의과대학 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FDA의 활동 소개 및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표 8. 전국 수의과대학 3~4학년생의 졸업 후 진출 희망 분야

졸업 직후			졸업 10년 후		
진출분야	명	비율(%)	진출분야	명	비율(%)
소	47	9.2	소	50	9.8
돼지	7	1.4	돼지	6	1.2
닭	6	1.2	닭	5	1.0
말	5	1.0	말	4	0.8
반려동물	209	40.9	반려동물	222	43.4
야생동물	9	1.8	야생동물	13	2.5
연구직공무원	28	5.5	연구직공무원	36	7.0
행정직공무원	42	8.2	행정직공무원	53	10.4
일반기업	32	6.3	일반기업	24	4.7
농협·마사회 등	5	1.0	농협·마사회 등	5	1.0
교육기관	51	10.0	교육기관	34	6.6
군장교	28	5.5	군장교	2	0.4
공익수의관	14	2.7	공익수의관	0	0
기타	25	4.9	기타	37	7.2
무응답	3	0.6	무응답	20	3.9
계	511	100.0	계	511	100.0

<돼지 분야>

1. 돼지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우리나라에서 “돼지진료수의사”라는 용어가 채택된 것은 약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며, 이는 국내의 양돈이 산업화의 길을 걸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진료형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컨설팅전문양돈수의사로 돼지의 생산성향상과 양돈산업의 성장·유지와 관련하여 종합컨설팅(질병진단, 처방, 백신프로그램의 작성, 사양프로그램, 시설·환기 등)을 수행하는 경우, 둘째 동물약품의 취급하면서 돼지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컨설팅과 동물약품취급을 병행하는 경우, 그리고 농협 등 단체, 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 양돈장 등에 소속되어 일정급여를 받으면서 마케팅과 관련된 테크니컬매니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돼지진료수의사로써의 짧은 역

사와 국내 양돈산업 구조 속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넓어지고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산업 속에서 수의사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의 구축 정도나 수익구조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6년제 졸업생의 배출과 함께 전문성을 띤 수의사의 배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시스템의 부재로 돼지를 전문으로 하려는 수의사와 양돈산업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 돼지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200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양돈농가는 7,681호이며, 9,087,434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1,800여 농가에서 각각 210만두 이상을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뒤를 이어 경남, 경북이 각각 1,100여 농가에서 120만두 이상을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시에서는 소규모 부업형 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도와 제주도가 50여 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전국 시군별 돼지 사육 호수 및 두수

시군별	돼 지		시군별	돼 지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전국	7,681	9,087,434	강원도	555	482,802
서울특별시	0	0	춘천시	48	25,136
광주광역시	15	5,866	원주시	63	68,990
광산구			강릉시	40	60,647
광산구외			동해시	-	-
대구광역시	30	23,163	태백시	10	4,540
달성군			속초시	4	1,718
달성군외			삼척시	23	4,212
대전광역시	21	3103	홍천군	51	44,863
동 구	3	1832	횡성군	31	59,038
중 구	0	0	영월군	14	7,860
서 구	7	1050	평창군	26	6,643
유성구	9	159	정선군	17	2,776
대덕구	2	62	철원군	86	125,047
시군별	돼 지		화천군	41	16,047

	호 수	두 수	양구군	21	14,787
부산광역시	61	12,210	인제군	29	8,066
기장군			고성군	30	7,031
기장군외			양양군	21	25,401
울산광역시	19	44,196	시군별	돼 지	
울주군				호 수	두 수
울주군외			경기도	1814	2152826
인천광역시	126	56,379	수원시	6	2133
중구	6	87	성남시	4	24
동구			부천시	2	69
남구			안양시	4	560
연수구	2	437	안산시	11	2774
남동구	5	970	용인시	198	228353
부평구	0	0	평택시	101	126183
계양구	5	2,220	광명시	12	2162
서구	4	7,700	시흥시	23	2980
강화군	95	43,764	군포시	0	0
옹진군	9	1,201	화성시	161	180149
이천시	194	351778	창녕군	34	66137
김포시	44	59791	고성군	64	90920
광주시	9	2543	남해군	10	13044
안성시	147	276813	하동군	38	39005
하남시	0	0	산청군	116	47567
의왕시	1	1000	함양군	160	73940
오산시	2	3600	거창군	56	63418
여주군	115	165536	합천군	140	165392
양평군	53	58451	시군별	돼 지	
과천시	0	0		호 수	두 수
고양시	34	26062	경상북도	1107	1373174
의정부	2	200	포항시	47	36013
남양주	33	12868	경주시	109	139488
파주시	153	110503	김천시	53	46893
구리시	0	0	안동시	71	93422
포천시	222	259710	구미시	36	45333
양주시	147	141910	영주시	56	68565
동두천	23	15883	영천시	106	161910
가평군	18	14199	상주시	61	53481
연천군	95	106592	문경군	25	40602
시군별	돼 지		경산군	65	52005
	호 수	두 수	군위군	63	122669

경상남도	1209	1259138	의성군	57	79511
창원시	22	21060	청송군	18	6396
마산시	39	42900	영양군	14	1760
진주시	83	66403	영덕군	30	12947
진해시	10	2083	청도군	35	46150
통영시	12	7060	고령군	56	143840
사천시	40	92431	성주군	62	108023
김해시	157	191947	칠곡군	45	33534
밀양시	48	68392	예천군	49	40533
거제시	16	4414	봉화군	30	28719
양산시	69	73783	울진군	19	11380
의령군	38	46258	울릉군	0	0
함안군	57	82984			
시군별	돼지		진안군	50	48,092
	호수	두수	무주군	19	13,979
전라남도	1842	929998	장수군	59	49,935
목포	1	756	임실군	71	77,072
여수	176	25689	순창군	39	24,824
순천	85	57446	고창군	40	109,240
나주	188	179552	부안군	32	37,115
광양	31	11338	시군별	돼지	
담양	29	33687		호수	두수
곡성	53	18455	제주도	326	502,358
구례	53	19218	제주시	218	336,149
고흥	57	16192	서귀포시	108	166,209
보성	65	22677	충청남도	1,788	2165135
화순	105	48139	천안시	99	142,884
장흥	46	20195	공주시	79	103,772
강진	58	18440	보령시	114	218,058
해남	122	48263	아산시	129	171,767
영암	66	44231	서산시	113	62,100
무안	100	138193	논산시	183	194,190
함평	52	74328	계룡시	2	3,500
영광	52	85343	금산군	35	22,982
장성	27	28596	연기군	54	68,423
완도	236	4024	부여군	66	93,709
진도	162	3536	서천군	42	20,725
신안	78	31700	청양군	54	49,906
시군별	돼지		홍성군	358	461,814
	호수	두수	예산군	137	186,114
전라북도	1,277	952,010	태안군	34	14,729
전주시	14	4,152	당진군	289	350,462

군산시	39	40,167	시군별	돼지	
				호수	두수
익산시	312	226,285	충청북도	519	654,842
정읍시	150	269,375			
남원시	529	94,686	청주시	7	3,048
김제시	168	235,125	충주시	67	64,488
완주군	65	82,220	제천시	32	28,004
청원군	95	107,791			
보은군	41	28,441			
옥천군	25	15,483			
영동군	30	28,023			
증평군	24	32,080			
진천군	78	148,511			
괴산군	63	89,414			
음성군	39	99,897			
단양군	18	9,662			

나. 돼지 연간 질병 발생 조사

2004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전국의 돼지질병발생상황을 보면, 건수로는 경남, 경기, 충남 순으로 102건, 83건, 82건 등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수로는 충남, 경남, 경북 순으로 31,267두, 14,064두, 11,422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10). 전체적으로 509건에 83,609두의 발생을 보여 연평균 90여건에 14,000여두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나, 연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질병의 유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전염병 중에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와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돼지열병 등 대부분의 질병은 산발적인 발생을 나타내어 향후 청정화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003년 이래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10대 질병으로는 대장균증, PRRS, PED, PCV-2감염증, 살모넬라감염증, 포도상구균감염증, 글래서병, 파스튜렐라페렴, 돼지이유후소모성증후군, 흉막페렴 등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2).

표 10. 최근 돼지전염병 시도별 발생 통계 ('04. 01. 01. ~ '09. 08. 17.) 발생두수(발생건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2004							25 (1)	2,587 (20)		469 (4)	2,433 (14)	2,390 (19)	1,174 (6)	1,366 (4)	5,337 (43)	102 (2)	15,883 (113)
2005				30 (1)			5 (1)	669 (7)	350 (2)	810 (2)	845 (2)	753 (12)	755 (4)	983 (9)	4,864 (27)	798 (12)	10,862 (79)
2006							1,100 (2)	2,997 (17)	640 (5)	30 (1)	3,724 (9)	1,177 (6)	373 (7)	6,438 (17)	1,932 (11)	197 (5)	18,608 (80)
2007							270 (2)	2,767 (14)	2,412 (6)	76 (3)	7,640 (15)	132 (4)	431 (8)	1,372 (5)	569 (9)	13 (7)	15,682 (73)
2008								64 (15)	2 (1)	8 (3)	12,363 (24)	13 (5)	151 (4)	63 (4)	1,183 (8)	10 (7)	13,857 (71)
2009								605 (10)	100 (3)	517 (4)	4,262 (18)	1,651 (17)	36 (7)	1,200 (1)	179 (4)	167 (29)	8,717 (93)
합계				30 (1)			1,400 (6)	9,689 (83)	3,504 (17)	1,910 (17)	31,267 (82)	6,116 (63)	2,920 (36)	11,422 (40)	14,064 (102)	1,287 (62)	83,609 (50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 제공

표 11. 시도별 최근 4년간 주요 폐지법정진염병 발생현황(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 제공)

[단위 : 발생두수(발생건수)]

질병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폐지혈병	'05									800 (1)		11 (4)					811 (5)
	'06													1,024 (1)	50 (1)		1,074 (2)
	'07						50 (1)				6 (3)	2 (1)					58 (5)
	'08									5 (2)	3 (1)	6 (2)		50 (1)	35 (1)		99 (7)
P R R S	'05						217 (4)			10 (1)			720 (3)	100 (1)	580 (4)	798 (12)	2,425 (25)
	'06						1,111 (12)	103 (3)		30 (1)	602 (4)	1,094 (3)	170 (5)		64 (2)	197 (5)	3,371 (35)
	'07						155 (4)	1,042 (3)		1 (1)			381 (7)	2 (1)	2 (2)	13 (7)	1,596 (25)
	'08						64 (15)	2 (1)		3 (1)	120 (5)	1 (1)	151 (4)	13 (3)	525 (4)	9 (6)	888 (40)
P E D	'05							450 (2)	340 (1)		845 (2)	723 (6)		880 (7)	384 (6)		3,652 (25)
	'06						50 (1)	1,886 (5)	530 (1)		3,122 (5)	80 (2)		4,390 (15)	200 (1)		10,258 (30)
	'07						250 (1)	2,562 (9)	1,370 (3)	75 (2)	7,634 (12)	80 (2)	50 (1)	1,220 (3)	483 (3)		13,724 (36)
	'08										12,190 (17)	5 (1)			336 (3)		12,531 (21)
폐지단독	'05												35 (1)				35 (1)
	'06																
	'07																
	'08										50 (1)						50 (1)
'05																	

R	'06																		2 (1)
	'07																		
데지브루셀단병	'08																		1 (1)
	'05																		
A D	'06																		
	'07																		
J E	'05																		
	'06																		
T G E	'06																		
	'07																		
	'08																		
	'05																		
	'06																		
	'07																		
	'08																		
	'05																		
	'06																		
	'07																		
	'08																		

* 법정돼지전염병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은 구제역,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돼지수포병, 돼지오제스키병(AD, Aujeszky's disease), 돼지위축성비염(AR, Atrophic rhinitis),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돼지일본뇌염(JE, Japanese encephalitis), 돼지전염성위장염(TGE,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돼지열병, 돼지텃센병, 브루셀라병, 소렙토스피라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16종이며,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는 7종의 질병통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12. 연도별 주요 돼지질병 진단

(단위 : 건수)

Disease	'03	'04	'05	'06	'07	'08	'09 1/4분기
Colibacillosis	852	860	555	860	1,464	1,476	327
Porcine circovirus(PCV-2)	138	666	509	543	823	1,521	328
Salmonellosis	241	286	263	407	533	460	115
Streptococcosis	171	226	137	119	349	453	75
Glasser's disease	172	270	142	157	174	268	38
Pasteurellosis	97	70	183	254	238	320	47
PMWS	276	67	72	184	91	59	12
Pasteurella pneumonia	166	283	83	49	80	45	5
Pleuropneumonia	136	206	55	57	99	55	10
PPV	122	137	78	78	90	58	15
PRDC	168	177	57	22	38	33	15
Lawsoia infection	47	16	67	76	108	154	33
SEP(Swine enzootic pneumonia)	72	247	63	38	20	0	0
APP(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51	17	58	28	81	102	41
Coccidiosis	48	44	41	24	47	31	7
EMC	123	27	32	22	17	5	3
Edema disease	24	8	17	9	7	3	1

다. 시도별 돼지단위 설정(2009년 2/4분기 기준, 통계청)

동물단위계산법(Animal Unit Calculation) (미국 미네소타주 농업국, Minnesota Department of AGRICULTURE 참고)

돼지(Swine)

1. 체중300파운드이상(Over 300 pounds)	0.4
2. 체중55~300파운드까지(Between 55 and 300 pounds)	0.3
3. 체중55파운드이하(Under 55 pounds)	0.05

따라서

1. 6개월령 이상(체중 약136Kg이상)	0.4
2. 2개월령이상 6개월령미만 (체중25~136Kg)	0.3
3. 2개월령미만(체중 약25Kg미만)	0.05로 계산하였다.

2009년 2/4분기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두수 9,043,709두를 미국 미네소타주 농업국의 동물단위계산법에 따라 산출하였을 때, 2,115,443단위가 되었다. 2개월 미만은 2,769,324두로 138,466단위, 2~6개월령은 5,327,768두로 1,598,330단위, 6개월령 이상은 946,617두로 378,646단위로 계산되었다 (표 13, 표 14).

표 13. 전국의 연령별 돼지 사육 두수

시도별	2009 2/4										
	합계	2개월미만	2~4개월	4~6개월	6~8개월: 계	6~8개월: 암컷	6~8개월: 수컷	8개월이상: 계	8개월이상: 암컷	8개월이상: 수컷	
전국	9,043,709	2,769,324	2,823,950	2,503,818	88,253	81,768	6,485	858,364	838,684	19,680	
서울특별시	54	24	10	12	0	0	0	8	7	1	
부산광역시	11,896	2,731	3,815	3,911	194	179	15	1,245	1,176	69	
대구광역시	20,245	6,687	6,761	4,455	153	153	0	2,189	2,085	104	
인천광역시	43,797	12,357	13,797	12,793	380	380	0	4,470	4,338	132	
광주광역시	6,017	1,968	1,923	1,449	69	69	0	608	587	21	
대전광역시	2,188	685	714	536	20	20	0	233	213	20	
울산광역시	28,102	5,936	11,082	9,285	89	89	0	1,710	1,655	55	
경기도	1,790,326	521,754	584,470	507,652	14,148	13,463	685	162,302	159,158	3,144	
강원도	389,036	121,772	114,503	108,911	3,976	3,744	232	39,874	39,013	861	
충청북도	525,816	154,617	161,361	156,993	4,046	3,924	122	48,799	47,934	865	
충청남도	1,668,006	523,277	525,879	437,632	18,358	15,582	2,776	162,860	159,778	3,082	
전라북도	1,080,555	321,655	369,659	278,336	11,205	10,191	1,014	99,700	97,544	2,156	
전라남도	779,336	252,915	220,624	215,837	10,821	9,747	1,074	79,139	76,705	2,434	
경상북도	1,099,434	344,274	317,668	322,587	10,919	10,753	166	103,986	101,639	2,347	
경상남도	1,098,777	343,888	330,342	310,047	9,972	9,815	157	104,528	102,060	2,468	
제주도	500,124	154,784	161,342	133,382	3,903	3,659	244	46,713	44,792	1,921	

표 14. 전국의 시도별 돼지 단위 사육 두수

시도별	2009 2/4									
	합계	Total Swine Unit	2개월미만	소계	2~6개월	소계	6개월이상	소계		
전국	9,043,709	2,115,443.4	2,769,324	138,466.2	5,327,768	1,598,330.4	946,617	378,646.8		
서울특별시	54	11	24	1.2	22	6.6	8	3.2		
부산광역시	11,896	3,029.95	2,731	136.55	7,726	2,317.8	1,439	575.6		
대구광역시	20,245	4,635.95	6,687	334.35	11,216	3,364.8	2,342	936.8		
인천광역시	43,797	10,534.85	12,357	617.85	26,590	7,977	4,850	1,940		
광주광역시	6,017	1,380.8	1,968	98.4	3,372	1,011.6	677	270.8		
대전광역시	2,188	510.45	685	34.25	1,250	375	253	101.2		
울산광역시	28,102	7,126.5	5,936	296.8	20,367	6,110.1	1,799	719.6		
경기도	1,790,326	424,304.3	521,754	26,087.7	1,092,122	327,636.6	176,450	70,580		
강원도	389,036	90,652.8	121,772	6,088.6	223,414	67,024.2	43,850	17,540		
충청북도	525,816	124,375.05	154,617	7,730.85	318,354	95,506.2	52,845	21,138		
충청남도	1,668,006	387,704.35	523,277	26,163.85	963,511	289,053.3	181,218	72,487.2		
전라북도	1,080,555	254,843.25	321,655	16,082.75	647,995	194,398.5	110,905	44,362		
전라남도	779,336	179,568.05	252,915	12,645.75	436,461	130,938.3	89,960	35,984		
경상북도	1,099,434	255,252.2	344,274	17,213.7	640,255	192,076.5	114,905	45,962		
경상남도	1,098,777	255,111.1	343,888	17,194.4	640,389	192,116.7	114,500	45,800		
제주도	500,124	116,402.8	154,784	7,739.2	294,724	88,417.2	50,616	20,246.4		

라. 돼지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적정인원수 산출근거

- 1) 양돈장당 현장방문 횟수 : 분기별 1회 (년4회) * 현장방문시 처방
- 2) 양돈장 비방문 처방횟수 : 월 1회(년 8회)
- 3) 현장방문시 필요시간 : 평균 4시간(이동, 관찰, 부검 등 포함)
- 4) 비방문처방시 필요시간 : 평균 1시간(병력청취, 실험실검사 등 포함)
- 5) 돼지진료수의사의 일평균 근무시간 : 일평균 8시간
- 6) 돼지진료수의사의 연간 근무일수 : 250일(교육, 학회참가, 휴가 등 제외)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 1) 양돈장 1개당 : (정기방문 4회/년 × 4시간) + (비방문처방 8회/년 × 1시간) = 24시간/년
- 2) 돼지진료수의사 1인의 연간 근무가능시간 : 250일/년 × 8시간 = 2,000시간/년

따라서 2008년 12월 기준으로

$7,681\text{농가} \times 24\text{시간} \div 2,000\text{시간/인} = 92.172\text{인}$ 의 돼지진료수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지역의 여건, 양돈장의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돼지진료수의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양돈장의 수는 80개 이내로 다음과 같이 필요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마. 돼지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적정인원 수 조사

돼지진료수의사가 전업으로 양돈장을 관리할 경우 80개 이내로 나타나나, 실제 돼지진료수의사로 활동하는 수의사의 수가 30명 이내일 것으로 잠정 추정되는 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양돈장의 영세성, 수의사의 진료축종의 겸업 등을 감안할 경우 30개 정도의 양돈장관리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30개를 기준으로 1명의 돼지진료수의사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두고 산정하였을 경우 180여명의 돼지진료수의사를 필요로 한다(표 15).

표 15. 전국의 시군별 적정한 돼지진료수의사 수

시군별	돼 지		시군별	돼 지	
	호 수	수의사		호 수	수의사
전국	7,681	180	강원도	555	11
서울특별시	0		춘천시	48	1
광주광역시	15	1	원주시	63	1
광산구			강릉시	40	1
광산구외			동해시	-	
대구광역시	30	1	태백시	10	
달성군			속초시	4	
달성군외			삼척시	23	1
대전광역시	21	1	홍천군	51	1
동 구	3		횡성군	31	1
중 구	0		영월군	14	
서 구	7		평창군	26	1
유성구	9		정선군	17	
대덕구	2		철원군	86	1
시군별	돼 지		화천군	41	1
	호 수	수의사	양구군	21	
부산광역시	61	1	인제군	29	1
기장군			고성군	30	1
기장군외			양양군	21	
울산광역시	19	1	시군별	돼 지	
울주군				호 수	수의사
울주군외			경기도	1814	26
인천광역시	126	2	수원시	6	1
중구	6		성남시	4	
동구			부천시	2	
남구			안양시	4	
연수구	2		안산시	11	
남동구	5		용인시	198	3
부평구	0		평택시	101	2
계양구	5		광명시	12	
서구	4		시흥시	23	
강화군	95	2	군포시	0	

용진군	9		화성시	161	2
이천시	194	3	창녕군	34	1
김포시	44	1	고성군	64	1
광주시	9		남해군	10	
안성시	147	2	하동군	38	1
하남시	0		산청군	116	2
의왕시	1		함양군	160	2
오산시	2		거창군	56	2
여주군	115	2	합천군	140	2
양평군	53	1	시군별	돼 지	
과천시	0			호 수	수의사
고양시	34		경상북도	1107	19
의정부	2		포항시	47	1
남양주	33		경주시	109	2
파주시	153	2	김천시	53	1
구리시	0		안동시	71	1
포천시	222	3	구미시	36	1
양주시	147	2	영주시	56	1
동두천	23		영천시	106	2
가평군	18		상주시	61	1
연천군	95	2	문경군	25	
시군별	돼 지		경산군	65	1
	호 수	수의사	군위군	63	1
경상남도	1209	20	의성군	57	1
창원시	22		청송군	18	
마산시	39	1	영양군	14	
진주시	83	1	영덕군	30	
진해시	10		청도군	35	1
통영시	12		고령군	56	1
사천시	40	1	성주군	62	1
김해시	157	2	칠곡군	45	1
밀양시	48	1	예천군	49	1
거제시	16		봉화군	30	1
양산시	69	1	울진군	19	
의령군	38	1	울릉군	0	
함안군	57	1			

시군별	돼지		진안군	50	1
	호수	수의사	무주군	19	
전라남도	1842	31	장수군	59	1
목포	1		임실군	71	1
여수	176	3	순창군	39	1
순천	85	1	고창군	40	1
나주	188	3	부안군	32	1
광양	31	1	시군별	돼지	
담양	29	1		호수	수의사
곡성	53	1	제주도	326	5
구례	53	1	제주시	218	3
고흥	57	1	서귀포시	108	2
보성	65	1	충청남도	1,788	29
화순	105	2	천안시	99	2
장흥	46	1	공주시	79	1
강진	58	1	보령시	114	2
해남	122	2	아산시	129	2
영암	66	1	서산시	113	2
무안	100	2	논산시	183	3
함평	52	1	계룡시	2	
영광	52	1	금산군	35	1
장성	27		연기군	54	1
완도	236	4	부여군	66	1
진도	162	2	서천군	42	1
신안	78	1	청양군	54	1
시군별	돼지		홍성군	358	5
	호수	수의사	예산군	137	2
전라북도	1,277	23	태안군	34	1
전주시	14		당진군	289	4
군산시	39	1	시군별	돼지	
익산시	312	4		호수	수의사
정읍시	150	2	충청북도	519	9
남원시	529	7	청주시	7	
김제시	168	2	충주시	67	1
완주군	65	1	제천시	32	1
청원군	95	2			
보은군	41	1			
옥천군	25				
영동군	30	1			
증평군	24				
진천군	78	1			
괴산군	63	1			
음성군	39	1			
단양군	18				

2. 돼지진료수의사의 실태조사

2008년 한국양돈수의사회의 회원명부와 대한수의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의사의 진료종목 및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155명 정도의 수의사가 돼지질병의 진료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 돼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의 수는 230여명(2008년 말 기준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원명부에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함)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에 필요한 수의사의 수를 75명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한 수의사의 인프라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전국 시도별 활동 중인 돼지진료수의사 수

시군별	돼 지		시군별	돼 지	
	호 수	수의사		호 수	수의사
전국	7,681	155	강원도	555	7
서울특별시	0	21	춘천시	48	2
광주광역시	15	2	원주시	63	
광산구			강릉시	40	1
광산구외		2	동해시	-	
대구광역시	30	0	태백시	10	
달성군			속초시	4	
달성군외			삼척시	23	
대전광역시	21	10	홍천군	51	
동 구	3	1	횡성군	31	2
중 구	0		영월군	14	
서 구	7		평창군	26	
유성구	9	7	정선군	17	
대덕구	2	2	철원군	86	1
시군별	돼 지		화천군	41	1
	호 수	수의사	양구군	21	
부산광역시	61	0	인제군	29	
기장군			고성군	30	
기장군외			양양군	21	
울산광역시	19	0	시군별	돼 지	

울주군				호 수	수의사
울주군외			경기도	1814	37
인천광역시	126	2	수원시	6	1
중구	6	1	성남시	4	2
동구			부천시	2	
남구			안양시	4	2
연수구	2		안산시	11	4
남동구	5		용인시	198	2
부평구	0		평택시	101	1
계양구	5		광명시	12	
서구	4		시흥시	23	
강화군	95	1	군포시	0	
옹진군	9		화성시	161	
이천시	194	11	창녕군	34	
김포시	44		고성군	64	
광주시	9		남해군	10	
안성시	147	5	하동군	38	
하남시	0		산청군	116	3
의왕시	1	3	함양군	160	
오산시	2		거창군	56	
여주군	115	1	합천군	140	
양평군	53		시군별	돼 지	
과천시	0			호 수	수의사
고양시	34	2	경상북도	1107	4
의정부	2		포항시	47	
남양주	33		경주시	109	
파주시	153	1	김천시	53	
구리시	0		안동시	71	1
포천시	222	2	구미시	36	
양주시	147		영주시	56	
동두천	23		영천시	106	
가평군	18		상주시	61	1
연천군	95		문경군	25	
시군별	돼 지		경산군	65	2
	호 수	수의사	군위군	63	
경상남도	1209	11	의성군	57	
창원시	22	1	청송군	18	
마산시	39		영양군	14	
진주시	83		영덕군	30	

진해시	10		청도군	35	
통영시	12		고령군	56	
사천시	40	1	성주군	62	
김해시	157	3	칠곡군	45	
밀양시	48		예천군	49	
거제시	16		봉화군	30	
양산시	69	3	울진군	19	
의령군	38		울릉군	0	
함안군	57				
시군별	돼지		진안군	50	
	호수	수의사	무주군	19	
전라남도	1842	7	장수군	59	
목포	1		임실군	71	1
여수	176		순창군	39	
순천	85		고창군	40	1
나주	188	3	부안군	32	1
광양	31		시군별	돼지	
담양	29			호수	수의사
곡성	53		제주도	326	16
구례	53		제주시	218	15
고흥	57		서귀포시	108	1
보성	65		충청남도	1,788	21
화순	105	1	천안시	99	6
장흥	46		공주시	79	
강진	58	1	보령시	114	
해남	122		아산시	129	4
영암	66		서산시	113	
무안	100	1	논산시	183	2
함평	52		계룡시	2	
영광	52	1	금산군	35	
장성	27		연기군	54	
완도	236		부여군	66	
진도	162		서천군	42	
신안	78		청양군	54	
시군별	돼지		홍성군	358	6
	호수	수의사	예산군	137	1
전라북도	1,277	11	태안군	34	
전주시	14		당진군	289	2
군산시	39	2	시군별	돼지	
익산시	312	1		호수	수의사
정읍시	150	1	충청북도	519	6
남원시	529		청주시	7	2

김제시	168	2	충주시	67	1
완주군	65	2	제천시	32	
청원군	95				
보은군	41				
옥천군	25				
영동군	30				
증평군	24				
진천군	78				
괴산군	63				
음성군	39	3			
단양군	18				

3. 돼지진료수의사의 기초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2008년을 기준으로 행정단위별 적정 돼지진료수의사의 수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돼지진료수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5명의 수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7).

표 17. 전국 시도별 돼지진료수의사의 과부족

시군별	돼 지		시군별	돼 지	
	호 수	수의사		호 수	수의사
전국	7,681	-25	강원도	555	-4
서울특별시	0	+21	춘천시	48	+1
광주광역시	15	+1	원주시	63	-1
광산구			강릉시	40	0
광산구외			동해시	-	
대구광역시	30	-1	태백시	10	
달성군			속초시	4	
달성군외			삼척시	23	-1
대전광역시	21	+9	홍천군	51	-1
동 구	3		횡성군	31	+1
중 구	0		영월군	14	
서 구	7		평창군	26	-1
유성구	9		정선군	17	
대덕구	2		철원군	86	0
시군별	돼 지		화천군	41	0
	호 수	수의사	양구군	21	

부산광역시	61	-1	인제군	29	-1
기장군			고성군	30	-1
기장군외			양양군	21	
울산광역시	19	-1	시군별	돼지	
울주군				호수	수의사
울주군외			경기도	1814	+11
인천광역시	126	0	수원시	6	0
중구	6	+1	성남시	4	+2
동구			부천시	2	
남구			안양시	4	+2
연수구	2		안산시	11	+4
남동구	5		용인시	198	-1
부평구	0		평택시	101	-1
계양구	5		광명시	12	
서구	4		시흥시	23	
강화군	95	-1	군포시	0	
옹진군	9		화성시	161	-2
이천시	194	+8	창녕군	34	-1
김포시	44	-1	고성군	64	-1
광주시	9		남해군	10	
안성시	147	+3	하동군	38	-1
하남시	0		산청군	116	-1
의왕시	1	+3	함양군	160	-2
오산시	2		거창군	56	-2
여주군	115	-1	합천군	140	-2
양평군	53	-1	시군별	돼지	
과천시	0			호수	수의사
고양시	34	+2	경상북도	1107	-15
의정부	2		포항시	47	-1
남양주	33		경주시	109	-2
파주시	153	-1	김천시	53	-1
구리시	0		안동시	71	0
포천시	222	-1	구미시	36	-1
양주시	147	-2	영주시	56	-1
동두천	23		영천시	106	-2
가평군	18		상주시	61	0
연천군	95	-2	문경군	25	
시군별	돼지		경산군	65	-1
	호수	수의사	군위군	63	-1

경상남도	1209	-9	의성군	57	-1
창원시	22	+1	청송군	18	
마산시	39	-1	영양군	14	
진주시	83	-1	영덕군	30	
진해시	10		청도군	35	-1
통영시	12		고령군	56	-1
사천시	40	0	성주군	62	-1
김해시	157	+1	칠곡군	45	-1
밀양시	48	-1	예천군	49	-1
거제시	16		봉화군	30	-1
양산시	69	+2	울진군	19	
의령군	38	-1	울릉군	0	
함안군	57	-1			
시군별	돼지		진안군	50	-1
	호수	수의사	무주군	19	
전라남도	1842	-24	장수군	59	-1
목포	1		임실군	71	0
여수	176	-3	순창군	39	-1
순천	85	-1	고창군	40	0
나주	188	0	부안군	32	0
광양	31	-1	시군별	돼지	
담양	29	-1		호수	수의사
곡성	53	-1	제주도	326	+11
구례	53	-1	제주시	218	+12
고흥	57	-1	서귀포시	108	-1
보성	65	-1	충청남도	1,788	-8
화순	105	-1	천안시	99	+4
장흥	46	-1	공주시	79	-1
강진	58	0	보령시	114	-2
해남	122	-2	아산시	129	+2
영암	66	-1	서산시	113	-2
무안	100	-1	논산시	183	-1
함평	52	-1	계룡시	2	
영광	52	0	금산군	35	-1
장성	27		연기군	54	-1
완도	236	-4	부여군	66	-1
진도	162	-2	서천군	42	-1
신안	78	-1	청양군	54	-1
시군별	돼지		홍성군	358	+1
	호수	수의사	예산군	137	-1
전라북도	1,277	-12	태안군	34	-1
전주시	14		당진군	289	-2
군산시	39	+1	시군별	돼지	

익산시	312	-3		호수	수의사
정읍시	150	-1	충청북도	519	-3
남원시	529	-7	청주시	7	+2
김제시	168	0	충주시	67	0
완주군	65	-1	제천시	32	-1
청원군	95	-2			
보은군	41	-1			
옥천군	25				
영동군	30	-1			
증평군	24				
진천군	78	-1			
괴산군	63	-1			
음성군	39	+2			
단양군	18				

4. 돼지진료수의사의 과부족 해소 방안

전국적으로 필요한 돼지진료수의사의 수가 180여명으로 추정되나 실제 155명 정도가 전문적으로 양돈장과 관련하여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25명의 돼지진료수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부족 돼지진료수의사의 파악에서 공무원, 수의과대학 및 민간기업의 고위직 등에 소속되어 있는 돼지진료수의사는 실제 양돈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돼지진료수의사이나 집계에서는 배제하였다. 따라서 과부족 해소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진료병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비방문 진료 및 치료약 처방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필요한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학위과정중 학비를 보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무를 조건으로 산업동물분야 관련 수의사의 양성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위하여 대학원과정이나 전문과정의 개설로 돼

지진료수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돼지진료수의사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돼지진료수의사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수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라. 졸업후 일정기간 양돈관련분야에 종사하였거나 대학원 등 전문과정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전문Board를 취득케 하여 돼지전문수의사로써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산업현장에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가금 분야>

1.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 산출

가. 가금 사육 농가 및 사육두수

국내 가금사육농가 및 사육두수는 광역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산출한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기준은 2008년 12월로 하였다. 실제 사육두수와 통계자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 통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였다(표 18).

표 18. 국내 가금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2008.12)

	전체 (가구수)	전체 (마리수)	종계 (가구수)	종계 (마리수)	산란 (가구수)	산란 (마리수)	육계 (가구수)	육계 (마리수)
전국	3,196	119,783,943	241	6,136,533	1,711	59,167,945	1,255	54,479,465
광역시	69	1964165	1	13000	47	1187835	22	763330
경기도	724	28295292	62	1519000	387	16240943	279	10535349
강원도	117	4153971	2	50800	84	2887441	32	1215730
충북	221	8225858	18	533180	107	3757608	97	3935070

충남	529	21397602	85	2170453	203	9268945	241	9958204
전북	399	16213793	48	1332490	118	3253853	233	11627450
전남	258	12043000	7	159000	115	4234151	136	7649849
경북	609	18972221	11	251560	465	12452636	135	6268025
경남	218	7198040	7	107050	153	4911932	60	2179058
제주	52	1320001	0	0	32	972601	20	347400

나. 가금의 년 간 질병 발생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자료가 있으나 전체 질병 발생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부 전염성질병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가금질병발생통계로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축환산단위에 활용할 가금의 년간 질병 발생상황 자료는 첨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금환산단위 설정

가금, 특히 양계산업에 있어서 가축환산단위는 현재 국내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기구 혹은 양계선진국에서 설정한 가축환산단위를 국내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국제기구인 OIE와 FAO의 가축단위 (Livestock unit)를 참조하였으나 이 가축단위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토지나, 조사료 섭취량 등을 표시한 가축단위로서 질병치료를 기준으로 하는 가축단위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일본의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에서는 약 40년간의 가축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 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 청구의 기준이 되는 가축단위로 젖소를 기준(1)으로 하여 육우 0.3, 말 1, 돼지 0.1로 설정하였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닭에 대한 가축환산단위를 계종별로 나누어 아래 표 19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19. 닭의 가축환산단위(미국 미네소타)

구분	가축환산단위
산란계 및 육계(액비계군처리)	0.033
육계(5 Lb 이상)	0.005
육계(5 Lb 이하)	0.003

그러나 국내에서는 닭 질병에 관련된 공식자료는 농림부의 가축질병통계 자료가 있으나 극히 일부의 전염병 통계만 제시되어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가축환산단위와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궁극적으로 가축의 환산단위는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인원수를 산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금분야에서는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인원수를 산출하였다.

라. 가금진료수의사의 행정단위별 적정인원 수 산출

국내의 가금은 닭과 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금진료수의사는 대부분 닭을 진료함으로서 실제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 인원수는 닭을 위주로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수의사의 수는 수의사처방제에 대비하여 각 기초 행정단위별로 산출한다.

국내의 가금산업, 특히 양계산업에 있어서 처방제가 실시될 경우 필요한 가금진료수의사의 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이 수는 앞에서 기술한 국내의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 양계장당 현장방문횟수: 5.3회/분기

- 평균관리농장수: 52.5

- 평균주간진료건수: 21.3 건

* 산출근거

- 21.3 건x52 주/52.5 농가/4 분기=5.3 회

- 일평균근무시간: 9.8 시간

- 연간근무일수:297.4 일 (주 1.3 일 휴무)

*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적정)

- 3,196농가 × 85.2시간 ÷ 2,914.5시간/인 = 93.4인

* 따라서, 2008.12월 가금통계를 기본으로 할 때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필요한 가금진료수의사 수는 94명으로 추산되었다.

2. 가금진료수의사의 실태조사

현재 가금진료수의사는 대부분 양계수의사회(회장: 하봉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양계수의사회에 가입한 수의사는 78명이며 업무분야로 나누면 개업 34명, 컨설팅 2명, 제약회사 종사 27명, 공무원 2명, 교육 5명, 기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 중 43.6%가 양계전문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있다(첨부 10).

국내의 양계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금진료수의사를 대상으로 2009년 8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가금진료수의사 34명 중 19명이 응답을 하여 55.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가금진료수의사, 병원 및 진료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 가금진료수의사 개요

현재 가금진료수의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34명 중 강원 2명, 경기 14명, 경남 3명, 경북 2명, 전남 1명, 전북 5명, 제주 1명, 충남 4명, 충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응답을 한 19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충남 3명, 경남 1명, 경기 6명, 경북 1명, 전북 5명, 강원 2명, 충북 1명이었다. 응답한 가금진료수의사의 지역적 비율과 현재 개업한 가금진료수의사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비록 제주, 전남에서는 응답이 없었지만 지역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19명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대가 4명, 40대가 11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4.6세로 높은 수준이었다. 개업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이하 1명, 6-10년 7명, 11-15년 7명 21년 이상이 4명이었으며 평균 종사기간이 13.8년으로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되었다.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년도는 1980년대가 9명, 1990년대 9명, 2000년대 1명으로 대부분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15년 이상인 가금진료수의사가 90% 이상이었다.

19명의 응답자 중 다른 직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수의사가 6명으로 31.5%을 차지하였으며 1-5년이 6명, 6-10년이 6명으로 비교적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 분야의 경험은 주로 동물약품회사, 반려동물진료로서 가금진료수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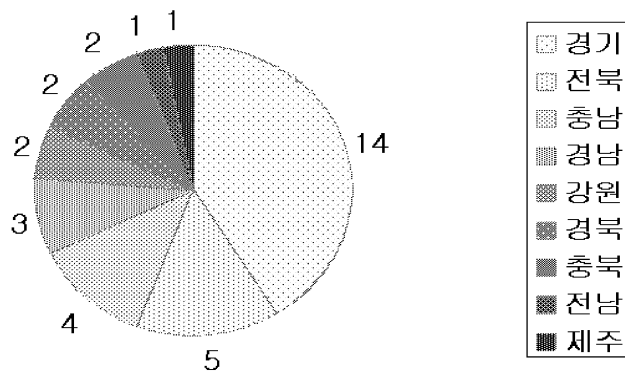


그림 1. 가금진료수의사의 지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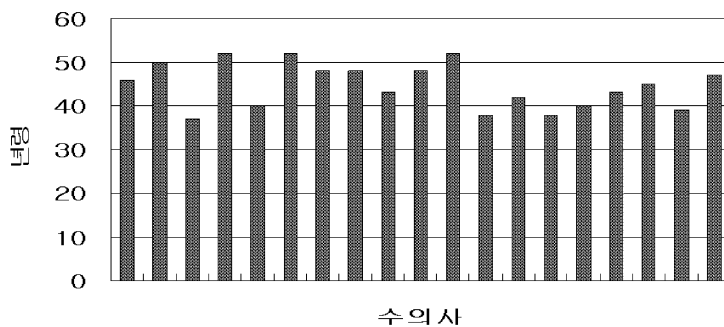


그림 2. 가금진료수의사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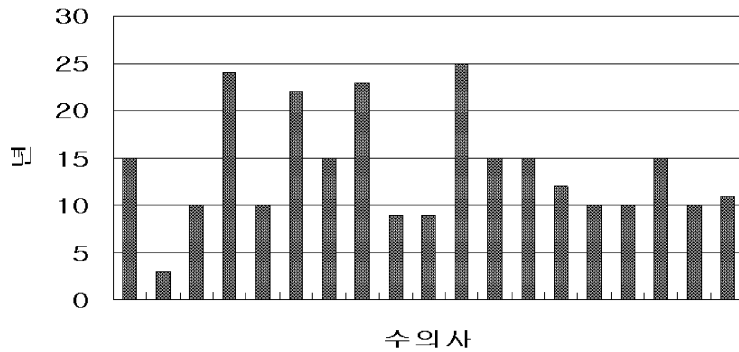


그림 3. 가금진료수의사의 개업 년한 분포

■ 진료지역

응답한 가금진료수의사의 근무지역은 경기도 6명, 전북 5명, 충남 3명, 경북 2명, 강원 2명, 충북 1명이었다. 경남, 전남 및 제주도는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 3-4개의 인접 군에 대한 왕진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지역에 대한 문제는 별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9명의 가금진료수의사 중 인접진료지역에 대한 설문조사에 2 사람이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1명의 가금진료수의사는 전국 규모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었다. 즉, 총 19명 중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의사가 18명으로 94.7%이었으며 전국 규모로 진료활동을 하는 가금진료수의사는 1명이었다.

■ 진료대상 및 규모

총 19명 중 양계를 전문으로 하는 가금진료수의사는 16명으로 84.2%이었으며 반려동물, 소,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는 3명이지만 진료의 대부분은 가금진료를 전문으로 하였다. 가금진료 중 주 대상 계종은 산란계가 13명, 육계가 4명, 종계가 2명으로 응답자 중 68.4%가 산란계 진료를 주로 하였다. 대부분의 가금진료수의사가 한 가지 계종을 진료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진료종목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보조계종은 육계가 10명, 종계가 3명, 산란계가 3명이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3명의 수의사는 혼합진료를 하였다. 따라서, 국내 가금진료수의사는 주로 산란계를 주로 진료하며 보조진료로서 육계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가금진료수의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장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25개 이하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2명, 26-50개 농장이 9명, 51-75개 농장이 6명, 76-100개 농장이 2명으로 파악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가금진료수의사의 78.9%인 15명의 수의사가 51-100개 농장을 수의사 1명당 평균 52.5개의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농장의 사육규모는 수의사 1인당 평균 248.9만수였으며 100만수 이하를 관리하는 수의사가 3명, 101-200만수 7명, 201-300만수가 5명, 301-400만수가 2명, 400만수 이상이 2명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가금진료수의사의 63.1%인 12명이 100만에서 300만수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400만수 이상을 관리하는 수의사도 2명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응답한 가금진료수의사가 관리하는 농장의 총 사육규모는 47,300,000 수이었으며 수의사 1인당 평균 2,489,000수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농가당 평균 사육수수는 47,409수로 국내 평균사육수인 34,580수와 약 13,000수가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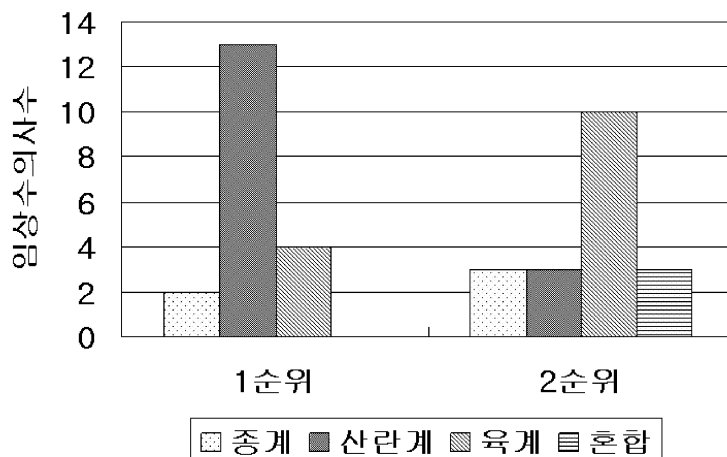


그림 4. 가금진료수의사의 진료대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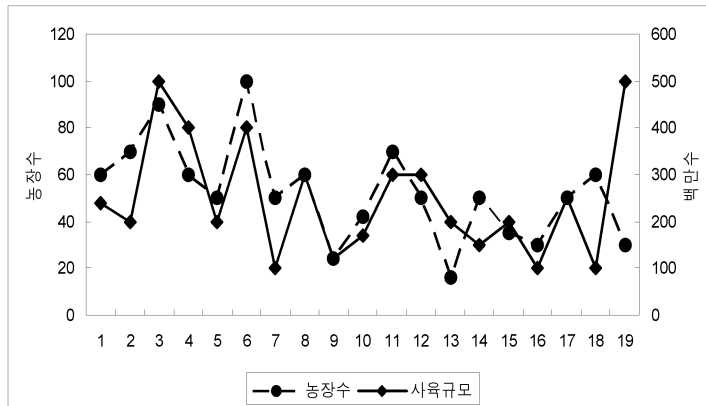


그림 5. 가금진료수의사의 평균 진료 농장수 및 사육규모

■ 주당진료건수

가금진료수의사의 주진료 및 보조진료 모두를 포함하였을 때 종계를 진료하는 수의사는 7명, 산란계 16명, 육계 1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종계를 진료하는 수의사 7명 중 1주에 1-5회 진료를 하는 수의사는 5명, 6-10회 진료를 하는 수의사는 2명으로 대부분 5회 이하를 진료하였으며 평균 4.3회이었다. 산란계의 경우 주당 수의사 1명당 12.5회 진료를 하였다. 이 중 5회 이하가 6명, 6-10회 4명, 11-15회 1명, 16-20회 2명, 26-30회 2명이었으며 주당 31회 이상의 진료를 하는 수의사도 1명 있었다. 물론 이 경우 가금진료 병원당 횡수이기 때문에 고용 혹은 동업수의사를 포함하면 다소 적어질 것이다. 육계의 경우 모두 16명이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주당 5회 이하 진료를 하는 가금진료수의사가 10명, 6-10회가 5명으로 전체 수의사의 93.8%가 주당 10회 이하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26-30회 진료를 하는 수의사도 1명 있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닭 이외의 반려동물 등을 진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주당 7.4회 정도이었으며 모든 진료건수를 종합하였을 때 주당 평균 진료건수는 가금진료수의사당 21.3회로 평가되었다.

가금진료수의사의 진료범위를 분석하면 백신접종관리, 질병관리, 생산성관리, HACCP 관리, 기타로 나눌 수 있었다. 19명의 가금진료수의사 중 4개 항목 중 4개 모두를 진료하는 수의사가 11명, 3항목이 6명으로 3항

목이상을 진료하는 수의사는 17명으로 89.4%를 차지하여 국내 가금진료 수의사는 대부분 다양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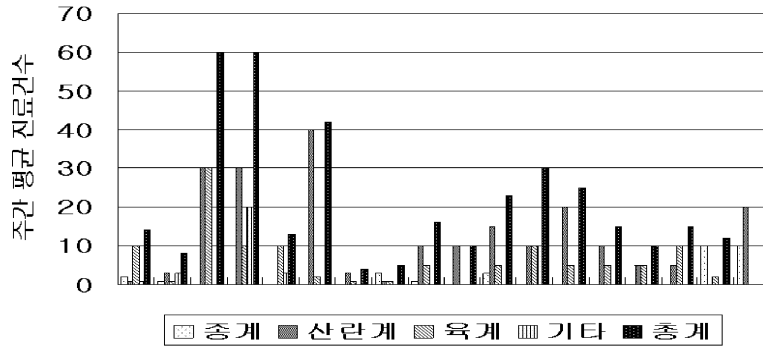


그림 6. 가금진료수의사의 주간 평균 진료건수

■ 주당 평균 왕진 거리

주당 평균 왕진거리는 1,178.9km로서 매우 넓은 범위를 진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당 500km 이하가 4명, 500-1000 km이 9명, 1001-1,500 km가 2명, 1501-2000 km 1명, 2001-2500 km 1명, 2500 km 이상도 2명이 있었다. 또한, 왕진 횟수도 평균 18.3회로서 앞에서 분석한 총 진료 평균건수 21.3회의 85.9%가 왕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주당 10회 이하가 10명, 20회 이하가 5명, 30회 이하가 1명, 40회 이하가 1명, 50회 이하 1명이었으며 50회 이상도 1명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수의사 1명에 의한 진료는 아니며 고용 혹은 동업 수의사 진료횟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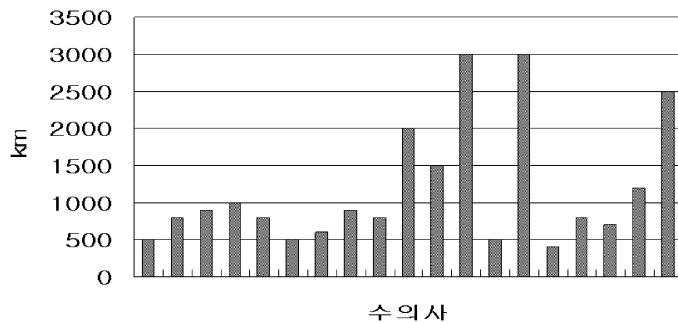


그림 7. 가금진료수의사의 평균 왕진거리

■ 월간 수입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입은 현재 약품판매수입, 국가방역활동에 의한 방역수입, 순수 진료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품판매수입은 실제 진료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품판매가에 진료 및 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진료수입의 경우에는 처방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월간 수입도 이러한 분류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1) 약품판매수입

19명의 약품판매에 의한 월간 평균 수입은 629.4만원이었으며 5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기록한 의사가 7명, 500에서 1000만원 이하가 6명, 3000만원 이상이 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약품판매 수입이 없는 의사도 3명이 있었다.

2) 방역수입

국가 방역을 수행하는데 동원된 의사에게 일정액의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다. 가금진료수의사의 월평균 방역활동에 의한 수입은 831,000이었으며 방역활동에 의한 수입이 없는 의사도 8명이 있었다. 50만원 이하가 2명, 100만원 이하 3명, 200만원 이하 2명, 300만원 이하 1명, 500만원 이하로 분석되었다. 방역활동에 의한 수입은 적게는 50만원으로 최대 수입에 비하여 10%에 불과하였다.

■ 진료수입순위

가금진료병원의 실제 수입과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내 혹은 다른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때 자신의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본인의 수입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3명, 중등급이 7명, 하등급이 4명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모른다고 대답한 의사가 5명 이었다.

■ 동물병원의 의사수

응답한 19명의 가금진료수의사 중 동업을 하고 있는 의사는 오직 1

명이었으며 나머지 18명은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동업은 아니지만 수의사를 피고용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병원이 2곳이 있었으며 한곳은 1명, 다른 병원은 4명의 수의사가 있었다. 이 병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곳으로 유일하였다. 수의사 이외의 일반 직원수는 평균 1.6명으로 대부분의 병원은 일반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일반직원도 없는 병원이 4곳, 1명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이 7곳, 2명이 5곳, 3명이 1곳, 5명이 2곳으로 파악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가금진료동물병원은 대부분 2명 정도의 일반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 평균근무시간

가금진료수의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8시간 이하가 7명, 9-10시간이 7명,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수의사도 5명이나 되었다. 실제로 양계질병진단의 특성상 외부왕진이 많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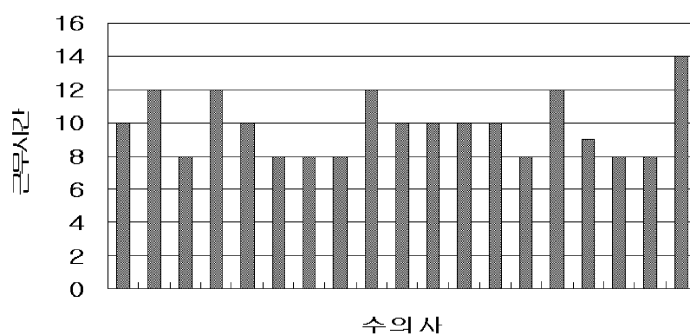


그림 8. 가금진료수의사의 평균근무시간

■ 휴일수

가금진료수의사는 1주에 약 1.3일 휴일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수의사 중 78.9%는 1주일에 1일을 휴일로 하고 있었으며 2일이 2명, 3일 이상이 되는 수의사도 1명이 있었다.

3. 현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적 적정성

2009년 8월 현재 가금진료수의사는 대부분 양계수의사회(회장: 하봉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양계수의사회에 가입한 수의사는 78명이며 업무분야로 나누면 개업 34명, 컨설팅 2명, 제약회사 종사 27명, 공무원 2명, 교육 5명, 기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 중 43.6%가 가금전문병원을 개업하고 있다. 이들을 지역별로 나누면 경기도 14명, 전북 5명, 충남4명, 경남3명, 강원, 충북, 경북 각 2명, 전남, 제주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개업수의사 중 41%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이다. 실제 경기도에 속해있는 전국대비 농가 수(23%), 마리 수(24%)에 비하여 개업수의사 수가 2배정도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도에 개인농장 단위의 산란계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육계가 주종인 계열회사의 분포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여간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농가에 균일한 수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금진료수의사의 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적절한 수준 혹은 평형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만약 실제 소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적으면 제약회사의 가금진료수의사수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업수의사의 지속근무기간도 13.8년으로 다소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업한 가금진료수의사의 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4. 가금진료수의사의 기초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각 시군별 가축의 사육현황과 가금진료수의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산출된 가금진료수의사는 앞에서 기 설명한 바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기준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닭 진료수의사는 전국적으로 60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시

군별로 과부족을 산출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수의사수에서 행정단위별 수의사수에서 계산과 적정의 수가 다른 것은 계산은 가구 수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수의사수는 산란계, 육계, 종계 사육수와 계열회사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사육농가 수나 사육 수수로 보면 경기도, 충남, 경북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개업한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에서는 3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단위별 적정 수의사수를 산출하였다.

표 20. 가금진료수의사의 기초 행정단위별 과부족 산출

구분	전체 (가구수)	전체 (마리수)	수의사수 (계산)	수의사수 (적정)	수의사수 (현재)	수의사수 (부족)
전국	3196	119783943	94	94	34	60
광역시	69	1964165	-	-	-	-
경기도	724	28295292	21	30	14	16
강원도	117	4153971	3	3	2	1
충북	221	8225858	6	6	2	4
충남	529	21397602	18	15	4	11
전북	399	16213793	12	10	5	5
전남	258	12043000	8	7	1	6
경북	609	18972221	18	15	2	13
경남	218	7198040	6	6	3	3
제주	52	1320001	2	2	1	1

5. 가금진료수의사 과부족 해소방안

가. 미국 가금진료수의사의 필요량과 부족 해소방안

미국 가금진료수의사의 적정수가 정확하게 발표된 자료는 검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수의사회(AVMA)에서 산업동물관련 수의사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언급된 가금질병수의사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아래와 같다. 이 조사에서는 북미대륙(미국, 캐나다)에서 지역별로 여러 팀을 구성하여 통계학적 접근을 통하여 산업동물수의사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 향후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수요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식품에 대한 공중위생 측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감시, 정부의 감시프로그램의 증가, 인수공통전염병, 가금위생, 비수의사에 의한 처방 순이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이러한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식품의 안전성관련 업무였으며 다음으로는 동물복지, 정부감시업무, 수출입업무, 해외전염병, 공중위생의 분야 순이었다. 따라서 향후 가금진료수의사 등 가금산업에 필요한 수의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이유와 업무영역으로서 대부분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감시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감시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향후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한 이유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의 예산삭감 및 부족, 다음으로는 가금산업 내에서의 회사 간 합병, 수의조직에 대한 정부예산 삭감, 가금산업의 이익창출의 저조, 수의진료비용의 부담, 수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약품의 증대, 가금산업조직의 대형화, 가금진료 수의사의 질 저하 등의 순이었다.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로서는 백신접종과 약품투여 영역에 있어서 비수의사에 의한 처방과 질병의 자가진단에 따른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감소가 지적되었다.

나. 우리나라 가금진료수의사의 부족 해소방안

■ 가금진료수의사 희망 학생의 유치 및 교육

북미 국가들은 가금진료수의사의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의학 학부 과정에서부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금진료수의사를 선망의 대상으로 하려면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좋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수의학부 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금전문병원에서 진료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조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의학부생들에 대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수의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수의사에게 가금진료수의사로서 전업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판단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가금진료수의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갓 졸업한 수의사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의 가금전문동물병원에서 실습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때 반드시 주급 혹은 월급을 제공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실습에 기존의 가금진료수의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정부나 수의과대학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된 사항으로는 수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수의과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이러한 학생들은 이미 축산물생산 혹은 농산물생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국내에서도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으며 최근 입학사정관제도가 있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대책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수의과대학에서는 축산에 관련된 과목을 가능한 일찍 학생들에게 노출을 시켜 학생들

이 관심과 흥미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방학 등을 이용하여 월급을 주는 가금진료동물병원에서의 실습기회를 가능한 많이 부여하여야 한다. 실제 미국의 가금산업에서 경제적 규모가 가장 큰 남부의 조지아에 위치한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산업동물수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 것이 바로 Georgia offering veterinary incentive program 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국별 가금산업관련 특이사항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기존 가금질병전공 수의사의 개업 유도

현재 양계수의사회에 가입된 가금질병을 전공하는 수의사의 수는 총 78명으로서 개업한 가금진료수의사가 34명, 컨설팅 2명, 제약 27명, 공무원 2명, 교육 5명, 기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제약 27명, 컨설팅 2명과 기타에 포함된 농장수의사 8명은 개업요건이 좋아지면 항시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현재 가금진료수의사 부족분 60명 중 잠재인원 37명 중 50%가 개업을 하여도 19명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과부족은 41명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단, 개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업을 위한 환경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개선에는 처방전제도 시행제도, 경제적 뒷받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금산업 진료제도편에서 다시 기술할 것이다.

■ 기존 가금전문동물병원에 대한 인턴 전문인력 배치 및 보조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진료수의사의 과부족 예상은 가금전문동물병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가금진료수의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의임상체계가 일인 진료가 아닌 다인 진료체제로 변하는 만큼, 가금전문동물병원도 여러 명의 수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을 하면 과부족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에서 1인 체제의 동물병원에서 다인 체제의 동물병원으로 변경할 때 경

제적, 행정적 보조를 해주면 현재의 병원들이 손쉽게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가금진료수의사가 일시에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소될 수는 없지만 수의과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병원에서 바로 보조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인력은 100%의 가금진료수의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70-80%만 발휘하여도 농장방문 등의 왕진진료가 많은 가금진료 특성상 오히려 가금진료수의사의 능력을 100%에서 120%로 증가시킬 수 있어 실제로 과부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보조인력은 인턴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어 미래 가금진료수의사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인턴인력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판단된다.

■ 가금진료수의사 양성 대학원과정 수정 및 신설

수의사 처방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부족된 가금진료수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양성은 본 제도가 시행되면서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적인 가금질병에 관련된 수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은 크게 변경될 것은 없지만 가금진료수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과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원과정은 학위위주로 되어 있으나 선진외국처럼 임상전문수의사를 위한 현장위주의 대학원과정으로 수정 혹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른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가금진료수의사로서의 진로가 확대되면 바로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중방역수의사의 가금전문동물병원 배치

현재 전국의 수의과대학 졸업생은 공중방역수의사 혹은 군 장교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대부분의 졸업생은 국가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 중 산업동물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들에게는 가금전문병원에서 근무할 기회를 줌으로서 산업동물진료

수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에서 다른 공중방역수의사와 마찬가지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뒤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가금전문동물병원에서 국가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이 공중방역수의사를 국가방역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서 제도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산업동물 진료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소 분야>

1.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소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수의과대학 교과과정 중에서 소진료수의사를 위한 필수 또는 선택교과목을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 그리고 수의과대학 졸업 후의 소진료수의사의 수련과정을 각 국가별로 비교 검토하였다(표 21).

각국의 수의과대학 교과과정(표 22, 표 23, 표 24, 표 25) 비교에서 각국은 수의학 기본교육에 필요한 이론 강좌 대부분이 개설되어 있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상 실기 교육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보다 많은 학기를 할애하여 임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소진료수의사를 교육시키는 임상교육기관이 없어 각 동물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소진료수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문의 교육제도를 두어 소 분야에서 임상을 전문화할 수의사를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표 25와 표 26, 첨부 13, 첨부 14 참조). 미국은 1951년부터 전문수의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20개의 전문분야에서 9,305명의 전문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럽은 1990년부터 수의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전문분야에서 2,113 명의 전문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소 분야에서 전문의를 획득한 수의사는 일반개업수의사로 활동하기 보다는 주로 수의과대학이나 전문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조직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위한 소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지 못한 임상실기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대한수의사회, '식품생산동물 진료체계 개편방안, 2006' 참조).

우리나라의 수의과대학에서는 산업동물에 대하여 주로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충분한 임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소진료수의사를 교육시킬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소진료수의사를 희망하는 수의사들은 대체로 소전문동물병원에서 임상연수를 약 1년 정도 실시하고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수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 각국의 소진료수의사 및 소진문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정규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과대학의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상실기교육 정규프로그램은 없음. 	<p>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으로 수의과대학에서는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준의 임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은 1학년 1학기부터 임상기본실습을 5개 학기 실시하며,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임상실습 로테이션을 실시하여 각 동물에 대한 임상실습을 실시하고 선택과목으로 학생이 진출할 분야의 동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임상실습을 실시한다. 	<p>영국의 Rotal Veterinary College는 1~2학년 동안 이론 중심의 기초수의학 강의와 12주 동안의 축산관련 과목을 교육시킨다. 3~4학년 동안은 임상강의와 각 동물에 대한 임상실기 교육을 실시한다. 5학년 동안에는 강의 없이 임상실습만을 실시하는데 학생이 진출할 분야의 동물에 대한 집중적인 임상로테이션을 실시한다.</p>
수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임상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 한국우병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대한수의사회, 각 시도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나 세미나에서 소진료수의사를 위한 이론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연수소에서 공제조합 신규 수의사를 위한 7주간의 임상교육과 중견수의사 기술교육을 위한 연수회를 매년 수차례 개최한다. -일본에서는 아직 전문수의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소진료수의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음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s에서 Beef cattle, dairy, Food animal 분야의 전문의 양성, -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ACVIM)에서 Large Animal Internal Medicine 분야의 전문의 양성 -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ACVS)에서 Large animal 전문의 양성 - 미국소수의사회 연례세미나, Annual Meeting of American Association of Bovine Practitioners (매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소진료수의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 European College of Bovine Health Management에서 소 질병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22. 미국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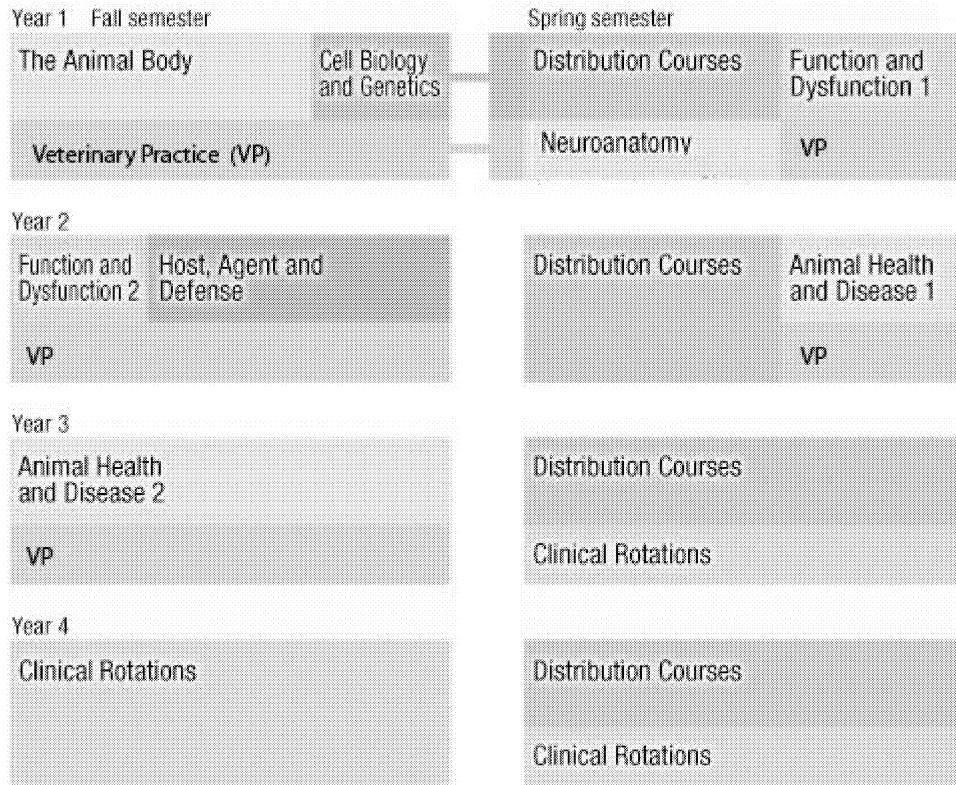


표 22 연속

Cornell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과학에 기반을 두며 과학적 지식과 임상 의학의 첨단을 반영한다. 수의학은 전문직으로 다양한 경력의 길을 추구하는 수의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모든 전통적인 과목에서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전문의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더 나은 전문지식 분야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체 의학과 임상학 과목의 튼튼한 기반에 덧붙여 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 관계, 윤리, 공중보건, 병원 경영, 직업의 개발과 같은 수의학에서 중요한 관련 주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22 연속

Cornell 대학의 교과과정의 목표는:

- 각 학생들에게 전문직에서 경력을 쌓는데 기반을 다지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호기심을 조성한다.
- 문제를 해결하는 철저한 접근 방식을 심어 준다.
- 수의학의 근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강조한다.
- 자기 교육과 평생 학습의 습관을 조성한다.
- 치료의학뿐 아니라 질병예방에 역점을 둔다.
- 윤리적 행동과 사회에서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민감성을 고취시킨다.
- 각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일반적인 수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수의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 중 관심 영역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이 그들의 기술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추가 자원과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목표는 교과과정 설계와 Foundation and Distribution 과정의 융통성 있는 구조를 통해 달성한다. 특히 소규모 그룹 학습과 공동 작업의 교육 구성 방식은 자기 교육과 문제 해결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돕는다. 의학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적 원리를 강조하는 한편 전임상 과정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을 조장하기 위해 임상 사례를 활용한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교수진, 동료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하는 일)하는 학습을 위한 풍부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추가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평생 학습의 습관을 조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넬대학교는 최신과 우수한 설비를 갖춘 교육과 임상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교사와 지도자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자원을 학생들이 모든 시간에 쉽게 이용가능하다. Cornell University Hospital for Animals(CUHA)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게 가장 최신의 진단과 치료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임상 교수진의 지도 하에 학생들은 동물의 의료서비스와 CUHA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표 22 연속

기본교과과정 (Foundation Courses)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이 과정들은 4년 교육과정의 약 70%를 차지한다:

The Animal Body: gross anatomy, histology, radiology and imaging, introduction to surgical approaches

Neuroanatomy and Clinical Neurology: structure and anatomic basis for the diagnosis of disease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ir differential diagnosis

Cell Biology and Genetics: cell biology, cell signaling, medical genetics, and cancer biology

Function and Dysfunction: physiology and homeostasis, biochemistry and cell biology, cell injury and repair, histology, hematology, and principles of pharmacology

Host, Agent, and Defense: inflammation and infection, the immune system and immunopathology, histology, bacteriology and mycology, parasitology, virology, antimicrobial therapy, and disease outbreak investigation

Animal Health and Disease: integration of pathology, applied anatomy, clinical pharmacology, medicine, surgery, nutrition, and related clinical disciplines

Veterinary Practice: physical examination, ethics and animal care, communication skills, public health and preventative medicine, introduction to clinical procedures, professional development

Clinical Rotations: 3학년에 시작하여 4학년까지 계속되는 Cornell University Hospital for Animals에서 교수진의 감독 하에 임상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12개의 핵심 rotation, 8개의 pathway rotation과 3개의 선택 rotation을 포함하는 총 23 rotation을 완료해야 한다. 학생들은 핵심 임상 rotation을 순서를 정해 돌며 그들이 선택한 수의학 분야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pathway 중 하나를 선택한다.

표 22 연속

The core clinical rotations: ambulatory medicine, anesthesiology, dermatology and behavior, large animal medicine, large animal surgery: soft tissue, ophthalmology, pathology, imaging, community practice service and small animal theriogenology, small animal medicine, small animal surgery: soft tissue, and small animal emergency and critical care medicine. 모든 핵심 rotation은 Cornell University Hospital for Animals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위에 열거된 핵심 rotation에 추가하여, Cornell 교수진은 각 pathway의 rotation을 권장한다. 학생들은 pathway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pathway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두 pathway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Cornell University Hospital for Animals에서 8개 중 6 pathway rotation을 완료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3개의 선택 rotation을 완료해야 한다. 이 rotation은 학생들의 핵심과 pathway rotation에서 이미 수강한 rotation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가능한 rotation: small animal dentistry and small animal behavior. 선택 rotation은 Cornell University 나 다른 동물병원 또는 teaching hospital을 방문하여 마칠 수 있다.

선택교과과정 (Distribution Courses)

교육과정의 약 30%가 세트로 구성된 Distribution courses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각 세트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각 세트의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별한 관심을 추구할 추가적인 유연성과 기회를 제공하거나 더 심도 있게 특정한 주제나 동물에 대해 지식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있다.

Distribution 학점은 다음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rotation으로 채울 수 있다: theriogenology, cardiology, exotic animal medicine, oncology, laboratory animal medicine, and equine primary care. 또한 학생들은 캠퍼스 밖(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 또는 특수 임상이나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점 이수를 위한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다. Cornell 학생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목표와 관심에 따라 광범위한 경험을 추구한다.

표 23. 영국 Royal Veterinary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의
교과과정

학년	장소 Location	과목	Comments
1-2	Camden Campus (Pre-clinical)	기초수의학 Basic Veterinary Sciences	임상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신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르친다.
		Animal health and handling (visits to the Hawkshead Campus for lectures and practicals)	정상 환경에서 건강한 동물 말, 식품생산동물과 반려동물의 취급과 진단검사의 기본 기술
	방학 동안에 12 주간	동물사양관리 외부실습 (AHEMS)	젓소와 양, 돼지 농장, 말 훈련소와 고양이 사육장과 같은 곳에서 다양한 실제 문제를 다룬다.
3-4	Hawkshead Campus (Clinical)	임상학: ● 이론Knowledge ● 실기 Practical Skills	RVC와 개인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 실습에서 완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
		임상실기 Clinical Skills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안전한" 환경에서 최신의 기술을 실습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이 과목은 임상 현장실습을 시작하는 이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Research project	4학년 동안 적어도 8주를 수의학의 관심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할 것이다. 스스로의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의 도움과 지지를 받기 위해 감독관이 배정될 것이다.
		병원 내 Rotations (IMR) - RVC clinics에서 직접 동물을 치료한다	우리 동물병원은 매년 20,000건 이상이나 되는 진료 케이스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부기관 임상수련	모든 수의학과 학생들이 임상 경험을 위해 교외시간을 보내야하는 필수시간이다. 3, 4학년과 5학년 동안에 general veterinary practices, specialist veterinary centres,

			the State Veterinary Service, research institutes and the Veterinary Laboratory Agency (VLA)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통해 26주의 clinical Extra Mural Studies를 완료해야 한다.
5	Hawkshead Campus (Clinical)	Lecture free final ye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기 ● Problem Based Learning 	강의가 없는 마지막 해에는 RVC's hospital과 개인 동물병원 실습을 통해 임상 기술과 problem based learning을 개발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표 24. 일본 오비히로 수의과대학 교과과정

학년 / 학기	교과목	학점 (단위)	필수	학년 / 학기	교과목	학점 (단위)	필수
3	수의해부학I	2	필수	7	실험동물학	2	필수
3	수의해부학실습I	1	필수	10	실험동물학실습	1	필수
3	수의해부학II	2	필수	5	수의원충병학	2	선택
3	수의해부학실습II	1	필수	6	수의기생충병학	2	필수
4	수의해부학III	2	필수	6	수의기생충병학실습I	1	필수
4	수의해부학실습III	1	필수	7	수의전염병학I	2	필수
4	수의해부학IV	2	선택	8	수의전염병학II	2	필수
4	수의해부학실습IV	1	필수	10	어병학	2	필수
5	수의병리학총론I	2	필수	10	수의축산법규	1	필수
5	수의병리학총론II	2	필수	7	수의내과학I	2	필수
6	수의병리학각론I	2	필수	8	수의내과학실습I	1	필수
6	수의병리학각론II	2	필수	8	수의내과학II	2	필수
6	수의병리학실습I	1	필수	9	수의내과학실습II	1	필수
7	수의병리학실습II	1	필수	9	수의내과학III	2	필수
4	수의생리학I	2	필수	7	수의외과학I	2	필수
5	수의생리학실습I	1	필수	8	수의외과학실습I	1	필수
5	수의생리학II	2	필수	8	수의외과학II	2	필수
6	수의생리학실습II	1	필수	9	수의외과학실습II	1	필수
6	수의생리학III	1	필수	9	수의외과학III	2	필수
5	수의생화학	2	필수	7	수의임상변식학I	2	필수
6	수의생화학실습	1	필수	7	수의임상변식학실습I	1	필수
7	수의약리학	2	필수	8	수의임상변식학II	2	필수
7	수의약리학실습	1	필수	8	수의임상변식학실습II	1	필수
9	수의임상약리학	2	필수	10	수의방사선학	2	필수
4	방사선생물학	2	필수	10	수의방사선학실습	1	필수
8	독성학	2	필수	10	임상병리학	2	필수
9	독성학실습	1	필수	10	임상병리학실습	1	필수
7	수의공중위생학I	2	필수	11	가축위생학	1	필수
7	수의공중위생학실습I	1	필수	9	종합임상학I	2	필수
8	수의공중위생학II	2	필수	9	종합임상학실습I	1	필수
8	수의공중위생학실습II	1	필수	10	종합임상학II	2	필수
10	식품위생학실습	1	선택	10	종합임상학실습II	1	필수
4	수의미생물학총론	2	필수	11	종합임상학III	2	선택
5	수의미생물학각론	2	필수	11	종합임상학실습III	1	필수
5	수의미생물학실습I	1	필수	9	전공실험실습I	2	필수
6	수의미생물학실습II	1	필수	10	전공실험실습II	1	필수
10	가금질병학	2	필수	11	전공실험실습III	1	필수
				12	전공실험실습IV	1	필수
계		57				58	

표 25.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과과정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1-1	전필	수의해부학 및 실험 I	4
		수의생화학 및 실험 I	3
		수의생리학 및 실험 I	4
		수의발생학 및 실험 I	2
		수의조직학 및 실험 I	3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I	4
	전선	상담 및 전공세미나	1
1-2	전필	수의해부학 및 실험 II	4
		수의생화학 및 실험 II	3
		수의생리학 및 실험 II	4
		수의조직학 및 실험 II	3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II	4
		발생공학 및 실험 II	2
	전선	상담 및 전공세미나	1
2-1	전필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 I	3
		수의병리학 및 실험 I	4
		수의약리학 및 실험 I	3
		수의독성학 및 실험 I	2
		수의임상진단학 및 실습	2
		환경위생학	3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I	2
		조류질병학 및 실험 I	1
2-2	전필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 II	3
		수의병리학 및 실험 II	4
		수의약리학 및 실험 II	3
		수의독성학 및 실험 II	2
		수의임상병리학 및 실습 I	2
		조류질병학 및 실험 II	2
		수생동물질병학	3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II	1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3-1	전필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I	2
		수의내과학 및 실습 I	4
		수의외과학 및 실습 I	4
		수의산과학 및 실습 I	4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 I	2
		수의임상병리학 및 실습 II	2
		식품위생학 및 실험	3
3-2	전필	수의내과학 및 실습 II	4
		수의외과학 및 실습 II	4
		수의산과학 및 실습 II	4
		수의영상진단학 및 실습	2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II	3
		야생동물질병학 및 실습	2
		역학·인수공통 질병학 및 실습	2
4-1	전필	실험설계론	3
		기초·예방수의종합실습 I	8
		임상수의종합실습 I	8
		소동물내과학특론	2
	전선	기초·예방수의학통합강의 I	2
		응용미생물학	2
		동물실험방법론	2
		병성감정기법	2
		수의분자병리기전학	2
		입상세미나 I	2
		산업동물 임상특론	2
		수의안과학	2
		젖소정기변식검진	2
		심혈관의생명공학 개론 I	3

4-2	전필	전공세미나	1
		수의법규	2
		기초·예방수의종합실습 II	8
		임상수의종합실습 II	8
		소동물 일반외과학	2
	전선	기초·예방수의학통합강의 II	2
		신경과학	2
		식품의 안전성 관리	2
		야생동물기생충학	2
		수의입상면역·약리학	2
		입상세미나 II	2
		증거위주 임상진단학	2
		수의외과방사선학특론	2
		야생동물관리학 및 실습	2
		심혈관의생명공학 개론 II	3

표 26. 미국의 수의전문의 통계 (AVMA, 2008년 12월 현재, 총 9,305명)

Recognized Veterinary Specialty Organizations (RVSO)	Number of Diplomates*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s (ABVP)	831
<i>Avian</i>	129
<i>Beef Cattle</i>	13
<i>Canine & Feline</i>	453
<i>Dairy</i>	36
<i>Equine</i>	80
<i>Feline</i>	77
<i>Food Animal</i>	21
<i>Swine Health Management</i>	22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Toxicology (ABVT)	94
Americ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ACLAM)	718
American College of Poultry Veterinarians (ACPV)	270
American College of Theriogenologists (ACT)	342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Anesthesiologists (ACVA)	170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Behaviorists (ACVB)	45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Clinical Pharmacology (ACVCP)	48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Dermatology (ACVD)	187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Emergency & Critical Care (ACVECC)	263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ACVIM)	1,894
<i>Cardiology</i>	164
<i>Small Animal Internal Medicine</i>	969
<i>Large Animal Internal Medicine</i>	449
<i>Neurology</i>	161
<i>Oncology</i>	224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Microbiologists (ACVM)	163
<i>Bacteriology/Mycology</i>	35
<i>Immunology</i>	46
<i>Microbiology</i>	63
<i>Virology</i>	59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Nutrition (ACVN)	53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Ophthalmologists (ACVO)	319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ACVP)	1,524
<i>Anatomic Pathology</i>	1,275
<i>Clinical Pathology</i>	284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 (ACVPM)		607
	<i>Epidemiology</i>	60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Radiology (ACVR)		338
	<i>Radiation Oncology</i>	68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ACVS)		1,228
	<i>Small Animal</i>	208
	<i>Large Animal</i>	120
American College of Zoological Medicine (ACZM)		112
American Veterinary Dental College (AVDC)		99

*Some diplomates are certified in more than one specialty or specialty organization.

표 27. 유럽의 수의전문의 통계

(2008년 1월 현재)

Abbrev.	Full Name	Provisional recognition	Full recognition	No. of Diplomates
<u>ECAMS</u>	European College of Avian Medicine and Surgery	1993	2005	24
<u>ECAR</u>	European College of Animal Reproduction	1998	2004	168
<u>ECBHM</u>	European College of Bovine Health Management	2003	Not yet received	3
<u>ECEIM</u>	European College of Equine Internal Medicine	2002	Not yet received	40
<u>ECLAM</u>	Europ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2000	Not yet received	74
<u>ECPHM</u>	European College of Porcine Health Management	2004	Not yet received	1
<u>ECPVS</u>	European College of Poultry Veterinary Science	2008	Not yet received	
<u>ECSRHM</u>	European College of Small Ruminant Health Management	2008	Not yet received	
<u>ECVAA</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Anaesthesia and Analgesia	1994	2003	74
<u>ECVBM-CA</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Behavioural Medicine - Companion Animals	2002	Not yet received	6
<u>ECVCN</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Comparative Nutrition	1999	Not yet received	33
<u>ECVCP</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2002	2007	
<u>ECVD</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Dermatology	1992	2006	47
<u>ECVDI</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Diagnostic Imaging	1994	2002	62
<u>ECVIM-CA</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 Companion Animals	1994	2002	142
<u>ECVN</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Neurology	1993	2002	58
<u>ECVO</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Ophthalmology	1992	2003	41
<u>ECVP</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y	1995	2007	263
<u>ECVPH</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Public Health	2000	Not yet received	216
<u>ECVPT</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Pharmacology and Toxicology	1997	Not yet received	53
<u>ECVS</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Surgery	1991	2000	21
<u>EVDC</u>	European Veterinary Dentistry College	1998	Not yet received	20
<u>EVPC</u>	European Veterinary Parasitology College	2003	Not yet received	19

2. 우리나라 소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의 부속동물병원에서는 소 진료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소 질병에 대한 임상실습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진료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개업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물병원들의 수의사의 숫자나 시설이 빈약하여 교육 동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도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대체로 소전문동물병원에서 임상연수를 약 1년 정도 실시하고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수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 산업동물임상교육원(가칭)의 설립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로 소 분야의 임상에 종사할 수의사는 대학에서 이론과 실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환축을 원활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에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의사 처방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소진료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동물임상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신규수의사와 중견수의사에 대한 임상실기와 평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양일석, ‘산업동물 임상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대한수의사회지 45: 341-345, 2009 참조).

1) 산업동물임상교육원 설립의 필요성

- 현재 전국의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약 40%는 졸업 후에 반려동물 임상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약 30%의 학생들은 공중보건, 공무원, 축산관련 산업체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12.8% 정도만이 소, 돼지, 가금을 포함한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다(표 7).

-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수의사의 모든 분야에 숙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기대이며, 현실적인 수의학교육 학습목표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

의 위생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 수의학의 교육연한이 6년이라 하여도 대학마다 학부과정에서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학원은 임상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닌 연구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 각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출 희망이 많은 분야에 교육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임상교육에서 산업동물보다는 반려동물 임상 교육에 더 치중하는 실정이다.

- 학부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산업동물 임상교육을 집중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산업동물에 대한 기본과정을 학부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졸업 후에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의사들에게만 산업동물별로 심화교육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교육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2)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교육 대상

-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 수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
- 공중방역수의사의 현장 배치 전에 산업동물에 대한 기본 업무교육을 시킨다.

-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산업동물임상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상교육 수련을 희망하는 사람

- 산업동물 개업수의사로 현장에서 필요한 심화과정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의사

- 축산관련 산업계(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 목장, 양돈장, 양계장 등)의 현장 근무자

3)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설립 효과

- 10개 수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산업동물에 대한 실습병원을 갖추는 것보다 국가예산을 한 곳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 산업동물 진료수의를 희망하는 의사를 한 곳에 모아 축종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축종별 진료수의사의 양성이 가능하다.

- 산업동물에 대한 적당한 임상교육기관이 없어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을 꺼리던 미래의 산업동물 수의사를 유치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 중견 진료수의사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축종별 전문수의사를 양성하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축산업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나. 소 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전문의 교육제도를 두어 소 분야에서 임상을 전문화할 수의사를 교육·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소전문수의사는 수의과대학 졸업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케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 소전문수의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리고 소전문수의사만이 인턴 수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수의임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수의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의와 연계하여 학문별/직능별 교육 프로그램과 수련과정(internship 과 residentship)을 개발하고, 인정기준과 자격부여 법령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아니라, 사람의 전문의제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수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첨부 14.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전문화체계 구축방안, 2008’ 참조).

다. 면허취득 후 재교육의 강화

대한수의사, 한국우병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에서 개최하는 강습회, 연례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면허취득 후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라. 수의학교육평가인증제의 도입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수의학교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모든 수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며 국제 기준에 걸 맞는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육성하는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 수의학교육은 식품안전, 새로운 인수공통질병 발생, 동물복지와 윤리 실천, 건강한 실험동물 생산,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 FTA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 요구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수의학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력 있는 유능한 수의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수월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 2008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고등교육법(법률 제 9356호) 제11조의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852호)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19호)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대학의 시설, 구조, 행정, 예산, 교수, 학생, 교과과정 등에 관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반드시 매년 12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고등교육인 의학(KIMEE), 치의학(KIDEE), 간호학(KABON), 한의학(KOMEET), 공학(ABEEK), 경영학(KABEA), 건축학(KAAB), 무역학(KTEA) 등을 비롯하여 고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을 인증 평가하는 많은 인증평가기관들이 있으며, 현재 활발하게 자기의 전문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미국(AVMA), 유럽(EAEVE), 호주와 뉴질랜드(VSAAC), 카리브해 15개 국가(CAAM), 일본(JUAA), 필리핀(AACCUP), 멕시코(CONEVET), 영연방국(RCVS) 등이 이미 수의학교육의 최저기준의 제시와 이에 대한 인증평가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수의사회(WVA)에서는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2)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목적

수의학교육평가인증제는 수의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졸업 후 교육의 효율성 증대,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 향상, 수요자의 알 권리의 충족, 대학의 자율성 신장, 사회적 요구에 부응,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서 경쟁력 강화,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 교육 환경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 평가인증 항목

평가인증의 기준은 외국과 국내 평가인증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① 대학운영체계(대학행정 및 운영체계, 대학 재정, 발전전략, 국제화현황 등), ② 교육목표와 교육과정(기초, 임상, 응용), ③ 수업방법과 수업평가(학습 평가와 성과), ④ 학생(지도체계, 복지, 진로지도), ⑤ 교수(교수충족률, 연구 및 학술활동), ⑥ 시설 및 설비(교육, 연구 및 지원시설), ⑦ 산학연협동(대응자금, 기술이전, 창업), ⑧ 직원(서무, 교무, 학생, 병원 현황), ⑨ 동창회 활동, ⑩ 취업률 등이 주요 요소이다.

4)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우수한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모든 수의과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결과는 수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해당대학에 권고할 수 있고, 교육수요자에게 해당대학의 교육 능력과 교육의 질적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서 관련 산업계, 연구소 및 동물병원의 졸업생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부여나 특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처럼 각종 연구비 지급 기관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 용역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고등교육법 (법률 제9356호) 11조의 2에 의한 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의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5)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효과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를 요약해 보면 양질의 교육을 위한 자율평가, 우수한 수의사 양성에 대한 자기평가, 인력수급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수의사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관리, 교육인력 및 시설의 확충, 의료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보장체계 확립, 중립적이며 공개적인 평가, 대외경쟁력 강화 및 의료 시장개방에 대한 전략 구축 등이다.

6) 평가인증제의 도입 준비상황

2005년 12월 말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개최한 “수의사의 수급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인증제 도입이 제안되었고, 2007년 10월에 대한수의학회가 주최한 “FTA대비 전략 심포지엄”과 12월에 주최한 “수의사 진료 전문화 체계 구축 심포지엄”에서 수의학교육 인증제 도입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과 수의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2008년 2월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수의학교육인증제 도입을 총의로서 결의하였고 4월에는 수의학교육인증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8일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된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수의학 교육인증제 도입”에 따른 수의계의 이해득실이 논의된 바 있다. 한편 2009년 4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9 차 아시아수의과대학협의회 (Asian Association of Veterinary Schools, AAVS) 연례 총회에서는 아시아 7개국 대표 37명 (국내 16명, 외국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 간에 수의학교육을 서로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수의학 분야에서 수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충분히 인지되었고 각 분야에서 활동할 우수한 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수의학교육평가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한국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등록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학교육평가인증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을 이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 신규 및 중견 소진료수의사 임상 연수 표준 스케줄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로 소 분야의 임상에 종사할 수의사가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교육을 7주간 실시하며,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중견수의사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신규 소 전문 진료수의사 임상 연수 표준 스케줄

<제 1주>

1. 오리엔테이션
2. 우사실습
3. 직장검사
4. 진찰 및 진단
5. 보정 및 일반 진료 실습
6. 진료부 작성
7. 채혈, 주사법
8. 혈액검사의 해석
9. 수액요법(탈수, 당 대사장애)
10. 산-염기 평형
11. 저칼슘혈증

<제 2주>

1. 우사 실습
2. 직장검사
3. 항균성 물질 요법
4. 세균검사
5. 수술 전 conference
6. 번식생리
7. 번식장애

<제 3주>

1. 우사 실습
2. 직장검사
3. 수술 전 conference
4. 시험적 개복술

5. 외상치유의 기본
6. 진료부 작성
7. 채혈, 주사법
8. 혈액검사의 해석
9. 수액요법(탈수, 당 대사장애)
10. 산-염기 평형
11. 저칼슘혈증

<제 4주>

1. 우사 실습
2. 직장검사
3. 유방염의 치료
4. 유방염의 방제(1)
5. 유방염의 방제(2)
6. 유방염의 방제(3)
- 7.群的 세균검사

<제 5주>

1. 우사 실습
2. 직장검사
3. 수술 전 conference
4. 자우의 수술
5. 말의 진료
6. 화상진단
7. 방정중절개술
8. 분만 시 emergency

<제 6주>

1. 우사 실습
2. 직장검사
3. MPT

4. 유우의 영양관리(1)
5. 유우의 영양관리(2)
6. 영양관리의 실제

<제 7주>

1. 우사 실습
2. 육우 실습
3. 수의사 처방제 설명
4. 자우 해부
5. 수료식

<신규수의사 임상 연수과목>

1. 진료부의 작성법
2. 진찰의 방법
 - 1) 전체의 관찰
 - (1) 우사환경에 관하여
 - (2) 동거동물에 관하여
 - 2) 품고의 청취
 - 3) 개체의 관찰
 - (1) 망진
 - (2) 촉진
 - (3) 타청진
3. 진단의 방법
4. 보정법
 - 1) 동물의 포획
 - 2) 로프 보정
 - 3) 기립보정
 - (1) 두부
 - (2) 다리
 - (3) 코보정(소)
 - (4) 코보정(말)
 - (5) 송아지, 망아지의 보정

- 4) 소 넘어뜨리는 법
- 5) 횡와보정
- 6) 양와보정
- 5. 외과수술의 기본
 - 1) 소독법
 - (1) 전 처치
 - (2) 소독약
 - (3) 소독
 - 2) 외과기구의 사용법
 - 3) 봉합법
 - (1) 봉합법의 종류
 - (2) 운침
 - 4) 지혈법
- 6. 외과치료의 기본
 - 1) 외상의 진찰, 진단, 예후판정
 - 2) 창상의 병태와 치유과정
 - 3) 창상의 치료
 - 4) 포대법
- 7. 주사법
 - 1) 피하주사
 - 2) 근육내주사
 - 3) 정맥내주사
 - 4) 동맥내주사
 - 5) 관절내강주사
 - 6) 미추경막외주사
 - 7) 척추경막외주사
 - 8) 기관내주사
 - 9) 체강내주사
 - (1) 복강내주사
 - (2) 흉강내주사
 - (3) 난소직접주사
 - (4) 낭종내직접주사
 - (5) 음순점막하주사
 - (6) 유방실질내주사
 - (7) 설내주사

- (8) 결막하주사
- (9) 조직실질내주사

8. 채혈법

- 1) 정맥혈
 - (1) 미정맥채혈
 - (2) 경정맥채혈
 - (3) 전대정맥채혈
- 2) 동맥혈
 - (1) 경동맥
 - (2) 이동맥

9. 수혈법

- 1) 적합검사
- 2) 채혈
- 3) 수혈
- 4) 효과
- 5) 부작용

10. 마취법

- 1) 진정
- 2) 전신마취
 - (1) 처방
 - (2) 마취관리
 - (3) 우변구급법
- 3) 국소마취
 - (1) 침윤마취
 - (2) 전달마취

11. 투약

- 1) 경구투여
- 2) 경비투여

12. 세정

- 1) 안세정
- 2) 질세정
- 3) 유방세정
- 4) 방광세정
- 5) 위세정

- 6) 자궁세정
- 13. 암법
 - 1) 냉암법
 - 2) 온암법
 - 3) 약제암법
- 14. 침구요법
- 15. 관장
- 16. 도뇨
- 17. 사혈
- 18. 자궁 내 약제주입
- 19. 황체제거
- 20. 유방송풍
- 21. 제병 치료
- 22. 안과 수술
- 23. 정치
- 24. 발치
- 25. 기관 절개
- 26. 식도 이물 제거
- 27. 식도 절개
- 28. 습벽 교정술
- 29. 천자술
 - 1) 천흉
 - 2) 천위
 - 3) 천장
- 30. 제왕절개
 - 1) 술식
 - 2) 송아지 소생법
 - 3) 신생송아지 관리
- 31. 미이라 변성 태아 적출술
- 32. 장관 수술
- 33. 제1위 절개술
- 34. 제2위 절개술
- 35. 제3위 절개술
- 36. 제4위 절개술
- 37. 제 4위 질환

- 1) 발생기전
- 2) 치료
 - (1) 외과적 정복
 - (2) 내과요법
38. 시험적개복술
39. 허니아 정복술
 - 1) 서혜 허니아
 - 2) 음낭 허니아
 - 3) 복벽 허니아
 - 4) 음문 허니아
 - 5) 횡격막 허니아
 - 6) 제 허니아
40. 자궁탈 정복
41. 직장탈 정복
42. 난산 보조
43. 태아의 실위 정복
44. 자궁염전 정복
45. 태반정체 제거
46. 난소 활거
47. 유방 절개 수술
48. 유두 수술
49. 방광 수술
50. 요도 절개 수술
51. 골절 정복
 - 1) 내고정
 - 2) 외고정
52. 탈구 정복
53. 거세
 - 1) 소
 - 2) 말
54. 검사
 - 1) 혈액 일반검사
 - (1) 혈산
 - (2) PCV측정
 - (3) Fib 간이측정

- (4) 혈액도말 작성, 검경
- (5) 혈액가스 측정
- 2) 초음파 검사
 - (1) 개론
 - (2) 체강내 장기 검사
 - (3) 생식기의 검사
 - (4) 조기 임신 감정
- 3) X-선 검사
 - (1) 개론
- 4) 내시경 검사
- 5) 분변검사
- 6) 뇨검사
- 7) 미생물학적검사
 - (1) 유방염
 - (2) 호흡기병
 - (3) 외상
- 55. 보액 요법
 - 1) 당대사 장애
 - 2) 탈수증
 - 3) 산-염기 평형 이상
 - 4) 전해질 이상
- 56. 저 칼슘 혈증
 - 1) 유열
 - 2) 저칼슘혈증
- 57. 항균성물질 요법
 - 1) 기초지식
 - 2) 약사법
 - 3) 공중위생상의 책무
- 58. 병리 해부
 - 1) 증례
 - 2) 송아지

<유방염>

- 58. 유방염원인균의 검사

- 1) 동정법
- 2) 약제 감수성 시험
59. 유방염의 치료
 - 1) 원인균의 병성
 - 2) 치료지침
60. 유방염 control
 - 1) 올바른 착유수순과 착유위생
 - 2) 원인균의 특징
 - 3) control 방법
 - 4) 착유기의 기본구조
 - 5) 유검체세포수 정보의 활용
 - 6) 착유입회
 - 7) 균을 대상으로 한 세균검사
 - 8) bulk 유 검사

<변식>

61. 변식생리
62. 변식장애의 진단과 치료법
63. 직장검사와 질검사
64. 群질병 system

<사양관리>

65. 유우의 영양
 - 1) 관련 용어
 - 2) 사료의 특성
 - (1) 조사료
 - (2) 농후사료
 - 3) 비유 cycle과 영양에 관한 생리적 변동
 - 4) 영양 밸런스
 - 5) 사료계산법
66. 대사프로필 테스트
 - 1) 원리와 실제
 - 2) 문제 우군에 있어서 MPT의 특징

- 67. Body condition score
- 68. 유검성적의 판독법
- 69. 문제 해결을 위한 착안점

2) 중견수의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우균검진 현지 연수

- 농가를 방문하여 혈액검사와 사료급여 상황으로부터 질병의 발생 원인을 진단
- 진단 결과나 대책을 지도서에 기재하고, 사후 협의회를 거쳐 농가를 지도
- 수강생은 검사부터 지도까지를 실기로서 연수한다.
- 연수의 개최기간은 2주간이며, 절반은 강의로, 나머지는 농가에서의 실습

2) 유방염 방제 대책 연수

- 목장에서 우사환경, 착유시설, 착유기기 및 착유방법을 확인하는 외에 모든 착유우에 대한 우유의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유방염 발생 원인을 진단한다.
- 검사결과나 대책을 지도서에 기재하고, 사후 협의회를 거쳐 농가를 지도한다.
- 수강생은 검사부터 지도까지를 실기로서 연수한다.
- 연수의 개최기간은 2주간이며, 절반은 강의로, 나머지는 농가에서의 실습이다.

3) 내과 및 외과 연수

- 내과진단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강의와 실기로 연수한다.
- 외과수술을 강의로 연수한 후, 이것을 상정한 수술 실기를 연수한다.
- 연수회의 개최기간은 1주간이며, 연수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4) 번식기 관리 및 영양관리 연수

5) 특정 유행 질병에 대한 연수

<돼지 분야>

1.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수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돼지진료수의사를 위한 필수 또는 선택교과목을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 그리고 수의과대학 졸업 후의 돼지진료수의사의 수련과정을 각 국가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유럽에서는 수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산업동물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학비보조제도를 도입하여 5년 정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도 포기자 또는 의무 미이행자 등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의과대학이 없는 주(South Dakota 및 North Dakota의 경우 아이오와주립대 또는 미네소타주립대, 위스콘신주립대와 결연)에서 주에서 필요한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및 특별입학 등 지역특례제도를 인근의 수의과대학이 있는 주와 결연하여 오래전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덴마크, 네델란드)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돼지전문수의사의 책임과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미네소타주립대에서 돼지전문수의사 인증교육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학부 또는 대학원과정에서는 특별히 통합적으로 돼지진료수의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나, 학부에서는 예과과목 또는 선택과목 형태로 운영 중이다.

표 28. 각국의 돼지 전문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정규교육 과정	예과과목 또는 선택과목을 일부 이수할 수는 있으나 정규프로그램(학부 또는 대학원)은 없음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이며, 수의학부생실습을 일본양돈수의사회에서 지원함	Certificate Program in Swine Medicine (미네소타주립대 실치운영 양돈수의사인증프로그램) - 최소5과목 이수해야 함 -부검, Necropsy(swine focus) -대동물의학실습, Directed Study in Large Animal Medicine -해외연수, Externship(performed in a foreign country) -역학 및 통계, Epidemiology and Biostatistics(swine focus) -돈사디자인 및 돈군평가기법, Advanced Building Design and herd Evaluation -돼지질병진단, 치료 및 예방, Swine Disease Diagnostics, Therapeutics, and Prevention -돼지생산시스템, Swine Production System -돼지농장실습, Training in Swine Production -양돈경제, 재무 및 마케팅, Swine Economics, Financial Management, and Marketing -양돈기록관리, Swine Records -고급돼지질병학, Advanced Swine Disease -고급돼지영양학Advanced Swine Nutrition 미국양돈수의사회 학생세미나Student Seminar	미국과 같이 돼지전문수의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음

			of AASV Annual Meeting(매년3월 연례세미나 개최)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및 웰레세미나(매년)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Annual Meeting of American Association of Swine Veterinarians(매년3월)	미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Annual Meeting of American Association of Swine Veterinarians(매년3월)	Diploma of the European College of Pig Health Management(유럽수	
폐지전문수의사제(한국양돈수의사회, 2008년도입)	정회원 연수회 및 학술 발표회(The Japanese Association of Swine Veterinarians)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ABVP) certification in swine health management(미국돼지수의사회 돼지건강관리 전문수의자격, www.ABVP.com)	의과대학 인증 돼지 건강관리 전문수의 자격)	
수련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RS컨트론티에 대하여 -법정전염병의 관리와 수사 역할 -양돈장기록관리 개선방안 -조식백신에 대한 현장적용 사례 			

2. 돼지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돼지진료수의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수의과대학 졸업 후 돼지진료수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돼지진료수의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 후 돼지진료수의사가 되려고 하는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과과정(돼지생산시스템, 돼지 질병진단 및 치료·예방, 역학 및 통계, 양돈기록관리, 돈사디자인 및 돈군평가기법, 돼지영양학, 양돈경제 및 경영)을 설치 운영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재학생의 교육비용과 각종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준다.

나. 한국양돈수의사회의 연례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면허취득 후 재교육(Continued education in swine medicine)의 기회로 활용한다.

다. 돼지전문수의사 Board제도의 도입으로 수의과대학 졸업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케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 Diploma를 수여함으로써 돼지전문수의사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과 사회공헌을 유도한다.

<가금 분야>

1. 양계선진국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양성과정 비교조사

가금진료수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전문의 과정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수의과대학도 현재는 6년제로서 다른 선진 양계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물론 학부과정에서의 과목 수 학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문수의사 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과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 점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장수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대학원 과정에 있다는 것과 가금전문의 과정이 있어 분야별 전문수의사 양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분야별 진료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각 분야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을 찾아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시스템으로 경험과 여러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질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의 경우 매년 4명(2명은 자국민, 2명은 외국인)을 Master of Avian Medicine과정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가금진료수의사로서 양성을 하고 있다. 이 중 2명은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주로 자국민들이 선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현장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가금질병 전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이 실무형식 혹은 현장실습으로 되어 있어 충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가금전문의 과정의 경우 국내나 일본은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은 오랜 전에 도입이 되어 현재 약 270명이 자격증을 획득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금전문수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국제기업이나 미국 내 일반 가금산업 관련 기업에서 가금전문수의사 자격증(ACPV: America College of Poultry Veterinarian)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양계국가에서는 가금진료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과정서부터 다른 수업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수업과정 중에 장래 전문의시험을 대비하여 case report 등을 발표하게 된다. 전문의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는 각 수의과대학 혹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가금진료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년 중 개설되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주로 수의과대학의 교수들에 의하여 방학 중에 실시된다. 시험은 매년 미국가금질병수의학회 개최기간 중에 실시된다.

표 29. 양계선진국의 가금진료수의사 양성과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학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년제로서 수학과목, 수학내용 등 학부과정에서 진료수의사 양성에 관련되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석·박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졸업 후의 석·박사과정은 특별한 차이가 없음. • 단, 미국의 경우 자국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수의사에게 석사과정은 요구하지 않고 박사과정으로의 선발하고 있음. 		
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우 여러 대학교에서 실무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실무석사과정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avian medic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Georgia - 18개월 전문과정 - 매년 2명은 국가에서 보조 - 현장중심 과정(논문 없음)
전문의 과정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가금진료전문의제도('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VP: 831 명 -Avian: 129 명 -ACPV(가금전문): 270 명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교육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행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임. • 단, 질적인 면이나 지향하는 목적은 다소 다른 것으로 판단됨. 		

표 30. 미국 ACPV 전문의 과정 시험과목

구분	내용	형식
Basic examination	Clinical poultry medicine	multiple-choice questions
Applied examination	1 Gross or microscopic lesions, figures, laboratory findings, production history and data, descriptions of clinical signs and lesions.	projected images
	2 Diagnoses, recommending therapeutic, preventive or management action. knowledge of the pathogenesis, diagnosis, and control of diseases of commercial poultry,	written questions

2. 가금진료수의사의 양성과 질 향상·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 학부과정에서의 가금전문 현장교육 강화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수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의 차이는 양계선진국과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단,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수의과대학의 대부분은 학교별 차이가 있지만 졸업 전에 전문실험실별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부3학년 혹은 4학년 때 1년 정도의 시간을 전문실험실에서 논문 준비를 하는데 이 때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등 연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의 경험이 후에 대학원 가금전문과정을 선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논문 없는 가금진료전문 석사과정의 신설과 국가에서의 보조

양계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금진료수의사 양성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원과정에서 가금진료수의사 과정의 유무이다. 국내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석사과정에 현장중심의 가금진료과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과정의 신설은 현재의 수의과대학 현실을 감안하여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현재의 석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을 case report로 대체를 하고 이수과목 중에 현장과목을 삽입하면 될 것이다. 전체적인 수업의 개념은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총 2년의 수업 년 한 중에 1년은 학교에서 기본과목을 이수를 하며 6개월은 부검, 진단(미생물학, 병리학 등) 등 현장과 관련된 실제 service와 양계장(육계, 산란계)과 부화장에서 실습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직접 현장 가금진료수의사(개업)와 근무를 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 수업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석사과정 중에는 실질적으로 가금진료분야의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세계적으로 공급이 줄고 있는 가금진료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보조가 있어야 수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들이 가금전문과정을 선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Master of Avian Medicine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학교 당 2-4명씩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당 매년 2명씩 총4명 전국적으로 40명에 대한 학비를 지원한다면 현재 국내에서의 질병에 의한 손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금진료전문제의도의 도입

가금진료수의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단방법은 가금질병 전문제의도를 확립하여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고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가금산업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만큼 가금진료전문수의사 제도는 향후 가금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미 양계선진국에서는 가금진료전문수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ACPV(American College of Poultry Veterinarian. www.acpv.info)제도가 있으며 현재 약 270명이 전문의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전문의 제도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도입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도입될 전문의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외국선진국의 예를 활용하면 된다. 전문의제도에 있어서 규정되어
져야 할 항목은 시험응시자격, 시험주관,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현재 양계수의사회와 조류질병교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가금진료전문수의사는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중방역수의사가 가금전문동물병원에서 근
무를 하게 되면 가금진료전문수의사 자격 혹은 시험과목에서 그에 대한 가
산점 등을 부여하면 산업동물에서 전문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분석·비교,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소분야>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소 임상체계 분석·비교

일본, 미국, 유럽의 산업동물 임상체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임상체계와 비교검토하여 요약한 것은 표 31과 같다.

가. 미국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산업동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인의 수의사가 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한 동물병원에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유럽에서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소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여러 명의 수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혼합 진료하는 체제이다. 소진료수의사는 개체 동물의 치료와 함께 HACCP-like program과 herd control를 실시하며 animal welfare의 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의 수입이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보다 낮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영국에서는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첨부 12 참조).

다. 일본의 가축공제 제도와 산업동물 임상체계

일본은 가축공제제도를 통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축산농민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첨부

14, 첨부 15, 첨부 16 참조). 가축공제에 가입한 축산농민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염가에 제공 받고 있으며 공제제도에 의한 소의 진료는 산업동물의 건강·복지 및 동물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생산단계에서 지켜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가축공제제도는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농업공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에 가입한 축산농민으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가축이 폐사 또는 질병에 걸려 농민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그 손실을 공제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소와 말의 경우 50%, 돼지의 경우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군(群, herd) 건강관리 사업에는 60%를 지원해주는데 축산분야에 연간 약 550억엔(2005년)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공제조합에서는 가축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축진료소(이하 진료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북해도연합회에서는 임상연수소(研修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수소의 지원으로 인해 진료소 수의사들의 실력은 미국 수의사들과 대등하며 2005년 현재 전국 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진료소 설치,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북해도에서는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며, 수의사 1인당 젖소단위로 환산하여 약 1,250두를 담당하고 있다(첨부 10 참조).

북해도의 경우 농가 45,000호 중 40,000호(89%)가 가입하고, 가축 233만두 중 175만(75%)두가 가입해 있다. 공제제도를 1948년 처음 실시할 때 농민의 가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이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공제제도를 환영하며, 농민들은 '공제제도가 없으면 일본의 축산업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소에는 매년 80명 정도의 신규수의사가 조합에 취직하여 정년퇴직하거나 사직하는 수의사를 대체하고 있다.

표 3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소 임상체계 분석·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소 임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동물병원에서 소 진료를 담당 - 대부분 1인의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 -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수의사를 고용하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현대적인 축산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농업공제제도의 실시 - 전국 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 - 부해도에서는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며, 수의사 1인당 젖소단위로 환산하여 약 1,250두를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동물병원에서 산업동물의 진료를 담당 - 1인 수의사의 개인 체제에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체제로 변화 -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진료에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동물병원에서 산업동물의 진료를 담당 - 여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혼합 진료하는 체제 - 소 전문수의사는 개체 동물 의 치료와 함께 HACCP-like program과 herd control를 실시하며 animal welfare의 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가. 우리나라의 소 임상체계 개편 방향

1) 세계적으로 소 사육 규모가 확대되고 축산업이 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소 전문동물병원들은 1인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가축공제 조합에 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전국 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진료소를 설치하여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면서 수준 높은 진료를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소전문동물병원이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대적인 축산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사들도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소전문동물병원을 반경 약 35km 마다 시군별로 소전문동물병원을 통합하여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부합되도록 동물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동물병원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3) 소 진료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9명 중 183명(84.3%)이 시군 단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며 34명(15.7%)은 현재와 같이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소 진료수의사들은 수의사 처방제의 실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통합하여 시대에 맞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나.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의 설립

1) 업무체계

- 시/군 단위로 통합된 통합동물병원은 주 업무로서 젓소와 한우를 비롯한 반추수의 진료를 담당한다. 통합동물병원은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과거의 1인 체제의 동물병원에서 신체검사만으로 진단하던 체제에서 임상병리 검사 등 통합동물의 운영체계의 도움을 받아 수준 높은 진료를 실시한다. 통합동물병원은 여러 명이 근무하는 체계로서 야간과 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응급진료에 대처한다.

-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은 말, 돼지와 양계 전문동물병원이 없는 시/군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시 타 축종의 전문동물병원과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1차 진료를 담당하거나 간접처방을 실시한다.

-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은 반추수에 대한 질병발생 예찰업무, 예방접종, 채혈 등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방역 업무를 보조한다. 또한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시설 및 기자재 필요현황

- 소 전문 통합동물병원이 업무를 이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 업무와 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여야 한다. 통합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시설과 장비는 표 32와 같다.

- 통합동물병원의 시설이나 기자재의 규모는 수 십년 동안 진료소를 운영해 온 일본의 가축공제조합 진료소의 시설과 유사하게 수술실 등 시설과 과 진단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운영인력 현황

- 시/군 단위 통합동물병원의 운영인력은 시/군의 가축 수에 비례하며 젓

소단위 1,250두에 수의사 1명을 둔다. 국내의 시/군 단위로 보았을 때 평균 5명 정도의 수의사가 필요할 것이며 인턴수의사 1명, 실험실 테크니션 1명, 사무원 1명, 수정사 1~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시군구 출장소) 업무담당 1명으로 구성하지만 시/군의 가축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증감시킨다.

표 32. 통합동물병원의 시설 및 기자재

통합동물병원 신설시 필요한 시설	소요량
건물 (용도별 시설 필요)	200평(600m ²)
진료 차량	5대
자동혈구검사기	1
생화학 분석기	1
현미경	1
미생물 배양시설	1
임상 원심분리기	1
PCV 분석용 원심분리기	1
뇨분석기	1
혈액가스분석기	1
냉장고	3
체중계	1
자동현상기	1
엑스선 촬영장치	1
대동물 유압식 보정틀	1
전기 메스	2
수술기구	5세트
대동물 마취기	1
심전계	1
초음파진단장치	1
산과용 초음파 진단장치	2
산과기구 세트	5
검안검이경	2
체온보온펌프	2
고압증기멸균기	1
건열멸균기	1

4) 제도 도입시 효과

- 1인 체제로 운영하던 소 전문 동물병원을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확대와 현대화로 진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물병원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처방제 실시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것이다.

- 시/군 단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보고가 한 곳에서 처리되어 국가의 가축질병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산업동물 질병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통합동물병원에 cluster를 형성함으로써 정보의 교환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동물병원 운영경비가 절감으로 동물병원 소득의 증가와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수의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 산업동물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규 수의사 인력 흡수가 용이하게 되고 체계적인 인턴교육으로 산업동물 수의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다.

- 산업동물 병원의 통합 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될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그동안 같은 지역 내에서 다소의 갈등관계에 있었던 수의사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느냐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동물병원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해체되었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합동물병원의 운영방식과 수입분배 방법 등이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수의사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통합 실패와 성공 사례를 잘 분석하여 이 시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돼지 분야>

1. 수의사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돼지 임상체계 분석·비교

유럽과 북미를 대표하여 미국 중서부 파이프스톤시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프스톤가축병원(Pipestone Vet Clinic)과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요우라동물병원의 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돼지전문진료병원의 기능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가. 파이프스톤동물병원(Pipestone Veterinary Clinic)

미국에서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파이프스톤 양돈시스템(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사우스다코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주 등 5개주에 분포하고 있으며, 45개의 번식전문농장을 중심으로 143,000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2009년 현재 전미 5위의 규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파이프스톤동물병원(Pipestone Veterinary Clinic)의 진료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혁

- 1942년에 설립된 복합진료병원(소, 양, 돼지, 소동물 등)으로 본원은 파이프스톤시에 있으며 아이오와주에 분원을 두고 있다

- 전체 소속 수의사는 18명으로 돼지전문수의사는 종돈장, 번식농장 및 개별농장의 질병과 위생에 대한 컨설팅, 지역수의사 컨설팅 교육 등 수행

- 경영관리사를 두어 번식농장 경영총괄(생산, 직원고용/교육/배치, 환경문제, 전산관리, 재정, 보험, 종돈의 선정/공급, 교배방식, 돈육품질관리 등) 업무수행

2) Pipestone 가축병원의 구성 및 기능

- 일반 가축진료 수의사 18명

- 돼지전문수의사 14명 - Pipestone 시스템 및 일반 자영 생산자 진료

- Pipestone 경영관리회사 보유

3) 업무의 범위

- 생산목표의 설정 및 성적평가
- 기록 등 전산관리
- 맞춤형 사양프로그램
- 효율적 방역위생관리
- 물품중앙관리

4) 수의 컨설팅

- 정기적 농장방문
- 지역농장 수의사 대상 수의사 대 수의사 컨설팅
- 종축공급사 수의사에 대한 수의사 대 수의사 컨설팅
- 스태프 수의사
 - 계열 수의사
 - 업계 수의사
 - 대학/학계 관련

나. 도요우라동물병원

1970년대에는 돼지개체 치료가 중심이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예방위생의 주체로써 예방주사업무가 주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위생관리지도의 주체가 되면서 위생관리 프로그램작성이 주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경영지도를 포함한 종합 컨설턴트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1) 연혁

1982년 3명의 돼지전문수의사가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최초 설립하였으나 2003년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4명의 돼지전문수의사가 일하고 있다. 일본전역의 양돈장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으며, 약 50개 농장 22,000두의 모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육

돈을 관리하고 있다.

2) 주요업무

- 양돈장의 위생컨설팅
- 세미나 등 교육
- 농장HACCP 추진
- 돼지전문수의사의 육성
- 관련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3) 진료형태

- 정기방문은 고객에 맞춰 1개월에 1~3회 또는 2개월에 1회 실시하나,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방문하고 있다.

- 농장내 체크는 농장내 각 생산시스템을 순회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며, 이전 방문에서 지적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체크를 한다

- 위생프로스램작성은 백신실시, 투약프로그램 등 관리
- 위생시스템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돈육품질제고를 위한 생산시스템 제안

- 기타 영양, 유전, 축사환경 등 자문
- 임신감정, 예방주사, 처방전 발행, 진단검사 실시

표 33. 각국의 돼지 임상체계 비교 및 시사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돼지 임상 체계	수의사를 비롯하여 킨선티트,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약물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돼지전문수의사가 경영지도를 포함한 종합킨선티트업무를 이행하고 있음(양돈장의 위생킨선티팅, 세미나활동, GCP시험, 농장의 HACCP추진, 돼지수의사 육성, 관련 검사기관의 기술서포트) 정회원 28명 일반회원 73명 학생회원 14명 찬조회원 35명	돼지전문수의사의 활동이 정착된 국가로써 생산자가 수의사의 지시를 믿고 따라와 동시에 질병진단 및 예방연구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수의사치방 체도를 실시하고 있음.	EU국가간 돼지전문수의사의 활동, 질병진단 및 연구 등이 보장되고 생산자단체의 인증제도 등으로 더욱 강화된 체계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며, 수의사치방체도를 실시하고 있음.
시사점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와 돼지킨선티트의 자질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동시에 불만을 제기함	전국의 8,158호 양돈농가 중 일본돼지수의사회 정회원과의 계약 농가는 511호로 6.2%에 지나지 않으나 전국모돈두수 대비 912,811두 중 202,475두를 차지하여 22.2%에 이름	수출지향적 양돈산업의 형태로 질병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맞춤형, 고품질, 고생산성을 지향적 양돈산업의 형태로 위생과 질병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돼지 임상체계 개편 방향 제시

가. 우리나라의 돼지 임상체계 개편 방향

우리나라에 적합한 돼지임상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되기를 제안한다.

가. 국가지원 컨설팅제도(생산성향상 및 HACCP운용)를 조기에 확산 정착시키고, 국가지원 예방접종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케하여 모든 양돈농가에 이에 참여토록하고 이를 통한 양돈생산성의 재고 및 항생제의 남용 등 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토록 유도한다.

나. 양돈생산자단체의 지원 및 전문진료승인제도의 도입으로 돼지만을 전문으로 진료치료하는 돼지진료수의사의 활동을 보장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국가, 돼지생산자, 돼지진료수의사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다. 일정규모 이상의 돼지질병진료센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특정지역 또는 계약된 관련 양돈장을 관리케함으로써 돼지진료수의사의 활동을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준다.

라. 돼지전문수의사 제도를 조기에 도입정착하여 돼지진료 수의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 및 예방약물의 과다사용 및 불법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마. 양돈전문종합컨설팅그룹을 육성하므로써 다수의 분야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양돈장의 문제를 해결토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돼지질병진료센터 설립(안)

1) 일반업무체계

- 양돈장의 위생·방역 컨설팅(생산성 향상 부분 포함)
- 돼지질병의 예방(백신의 접종 및 투약프로그램), 치료 및 처방전 발급
 - 세미나 등 현장교육
 - 양돈장의 HACCP 추진 및 관리
 - 돼지진료수의사의 육성
 - 돼지질병의 진단 및 국가위탁 방역활동 전개
 - 관련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2) 시설필요현황

- 사무실 50 m²
- 상담실 및 회의실 100 m²
- 실험실 50 m²
 - * 냉장고, 냉동고, 원심기, 현미경, 무균작업대, 세균배양기 등
- 약제실 40 m²
- 창고 200 m²

3) 운영인력현황 : 돼지전문수의사 3인을 기준으로 한 인력의 구성이므로 수의사의 수에 따라 전산관리자나 테크니션의 수는 비례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 돼지전문수의사 3인
- 유전, 육종학자 1인
- 영양학자 1인
- 전산관리자 1인
- 실험실관리자(테크니션) 1인

4) 제도 도입시 효과

가) 전문 인력이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문화, 체계화를 통한 종합컨설팅이 가능해지며, 고객의 욕구를 one-stop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나) 진료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통하여 돼지전문수의사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의사의 전문교육 및 예비수의사 등 후속세대의 인턴교육 등 현장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다) 국가정책 중 방역·위생과 관련한 정책을 위탁수행하거나 방역·위생의 한 축으로써 돼지의 질병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센터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라) 규모화된 진료센터를 육성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지도나 경쟁력 등 컨설팅의 질적·양적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가금 분야>

1. 수의사 처방제 실시 국가들의 가금산업 임상체계 비교

미국에서는 현재 약 270명의 가금전문수의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진출은 산업계에 진출을 하고 있다. 즉, 개인병원을 개업하기 보다는 사료회사, 육종회사, 대단위가금농장, 국제적 동물약품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개업보다는 산업체 근무를 하는 이유는 산업체에서 가금전문수의사의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농장들이 이러한 가금관련 산업체로부터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병원 혹은 컨설팅으로 전환을 하는데 주로 다인체제의 병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에서의 문제점은 가금전문수의사를 위시한 산업동물

전문수의사의 노령화와 공급 부족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동물수의진료연합회(FSVMC: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금진료전문수의사를 포함한 산업동물진료수의사 양성 및 진료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 미국의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의 현황

미국에서 FSVMC는 2004년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매 단계마다 식품관련 수의사가 필요하며 그들의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됨에 따라 식품생산동물수의사(산업동물수의사 포함)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현재 이 협의회에 포함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The Academy of Veterinary Consultants
- 2) American Association of Avian Pathologists
- 3) American Association of Bovine Practitioners
- 4) American Association of Food Hygiene Veterinarians
- 5) American Association of Small Ruminant Practitioners
- 6) American Association of Swine Veterinarians
- 7)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 8) Association of American Veterinary Medical Colleges
- 9) USDA--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이와 같이 미국의 산업동물 관련 모든 조직이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식품관련 수의전문가들이 가까운 장래에 매우 부족한 실정에 이를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식품관련 수의사들이 부족할 경우 식품의 안전,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과대학 학생과 수의사들이 식품관련수의사, 특히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효율적

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부과된 가장 큰 임무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동물수의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수를 예측하고 수의학부 학생때부터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의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를 확보하는데 있다. FSVMC에서 조사한 후 완료된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으며 미국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 Attracting students into careers in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Kevin P. Gwinner, PhD J. Bruce Prince, PhD David M. Andrus, PhD. JAVMA, Vol 228, No. 11, June 1, 2006

2) Future demand, probable shortages, and strategies for creating a better future in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J. Bruce Prince, PhD David M. Andrus, PhD Kevin P. Gwinner, PhD. JAVMA, Vol 229, No. 1, July 1, 2006

■ 미국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분포

New England 주에서 2006년에 조사한 임상수의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산업동물진료수의사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표 34). 이 표에서 보면 산업동물 관련 진료수의사가 조사대상 7개주에서 0.6%에서 16%로 분포되었지만 실제 Vermont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에 지나지 않아 실제적으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진료대상 동물에 따른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분포 (2006)

Area	Food Animal	Companion Animal	Mixed Animal	Equine	No answer	Total
Connecticut	19 (2.7%)	630 (89.2%)	21 (3.0%)	34 (4.8%)	2 (0.3%)	706
Maine	18 (5.1%)	300 (84.3%)	29 (8.1%)	7 (2.0%)	2 (0.6%)	356
Massachusetts	22 (2.0%)	1,006 (90.7%)	31 (2.8%)	42 (3.8%)	8 (0.7%)	1,109
New Hampshire	12 (3.2%)	314 (83.7%)	32 (8.5%)	15 (4.0%)	2 (0.5%)	375
Rhode Island	1 (0.6%)	160 (92.5%)	3 (1.7%)	9 (5.2%)	0 (0%)	173
Vermont	44 (16.5%)	180 (67.7%)	26 (9.8%)	15 (5.6%)	1 (0.4%)	266
New England (Total)	116 (3.8%)	2590 (85.5%)	142 (4.7%)	122 (4.0%)	15 (0.5%)	3,031

■ 미국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병원운영형태별 분포

가금진료수의사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가금진료수의사를 포함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에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와 마찬가지로 New England 주에서 2006년도에 실시한 산업동물수의사의 병원운영형태를 보면 전체 보조수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31%에서 57.9%로 2인 이상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는 출장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병원운영형태별 분포 (2006)

Area	Veterinarians	Owner	Associate	Other Clinician	Other/ No Info
Connecticut	19	31.6%	57.9%	5.3%	5.3%
Maine	18	61.1%	38.9%	0.0%	0.0%
Massachusetts	22	54.5%	31.8%	0.0%	13.6%
New Hampshire	12	58.3%	41.7%	0.0%	0.0%
Rhode Island	1	100.0%	0.0%	0.0%	0.0%
Vermont	44	52.3%	38.6%	4.5%	4.5%
New England	116	51.7%	40.5%	2.6%	5.2%

■ 미국 가금진료수의사의 진료 분야

미국 가금진료수의사의 업무분야는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업무로 나누면 개인진료, 사료회사 및 동물약품회사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육종회사 및 대규모 농장에서의 자체진료, 국가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방역업무(포괄적의미),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병성감정서비스(미국에서는 질병의 진단서비스를 대부분 수의과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가금진료수의사가 근무하는 곳이 가금산업과 연계된 사료회사 및 동물약품회사, 국제적 육종회사 혹은 대규모 농장이다. 미국에서의 가금산업은 대부분 국제적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가금진료수의사는 국제적으로 수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다. 이러한 점이 우리 국내 가금진료수의사의 업무환경과 다른 점이다.

■ 각국별 가금진료관련 특이 사항

-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프로그램

조지아 대학교에서는 Georgia offering veterinary incentiv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동물 수의사가 향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매년 산업동물 수의사가 4-6%가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에 처음 시작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의과대학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 체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일단 일반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 후 수의과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는 일반대학에 진학했을 때 부터 시작되는데 주로 축산과, 가금과, 낙농과 재학생이 대상이 된다. 방학 중에 산업동물 수의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병원에서의 인턴 기회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수의진료법에 의하여 향후 농촌지역에서의 진료 활동을 근거로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aes.uga.edu/academics/FoodAnimalVIP.html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수의과대학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 영국 다인체제 가금진료전문병원 ST. David's poultry team

영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가금진료수의사는 산업체에 근무하지만 최근 다인체제의 병원체제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내어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수의사로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가금전문병원이 ST. David's poultry team (<http://www.stdavids-poultryteam.co.uk/>)이다. 이 병원에는 수의사가 6명이며 일반직원도 실험실요원 4명, 행정요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종류도 부검, 살모넬라 검사, 혈청검사, 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농장도 종계, 육계, 산란계, 부화장 등 모든 가금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의 다인체제 병원도 궁극적으로는 St. David's poultry team을 기본 모델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가금산업 임상체계 개편 방향

국내의 가금질병 임상체계의 개편은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적확보와 질적 향상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수의사양성에 있어서의 제도적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금질병에 특화되어 개업을 하고 있는 가금진료수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들 개업수의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병원의 수익으로서 현재의 수익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금진료수의사의 질과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여야 한다.

가. 현 개업 가금진료수의사의 수익구조 향상

현재 개업한 가금진료수의사들의 대부분 수익은 약품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별 실제 수익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수익구조는 약품판매가 88%, 진료가 12%로 나타났다. 즉, 순수한 진료에 의한 수익은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은 진료에 의한 약품판매로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수의사 처방제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약품판매권에 대한 보장 없이 수의사 처방제가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가금진료수의사는 수익상의 어려움으로 전업을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새로운 가금진료수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금산업의 임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단기적으로는 다인병원체제와 인턴제도의 도입 필요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영국의 David's poultry team 의 다인 병원체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과거 우리나라 변호사 개업이 개인에서 최근에는 로펌으로 변화가 왔듯이

전문성이 강조될수록 개인으로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인병원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개업수의사들의 연합체제가 필요하고 또한 개업 준비된 의사(약품판매회사, 사료회사 의사 등)들이 이 체제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인병원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다인체제로 병원을 개편할 때는 국가에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가방역 사업 등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관급백신의 입찰에 있어서 현재는 개인개업수의사는 참여가 안 되지만 다인병원의 경우는 참여를 할 수 있게 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관급백신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는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의사 처방제는 유명무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급백신의 공급은 중단되어야 하며 농가에 혜택은 살처분보상금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개업수의사 혹은 신규개업을 하는 가금진료수의사가 다인체제의 병원으로 구성을 하고 싶어도 지역적, 경제적, 인적 요소에 의하여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기간 개업수의사로부터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턴제도를 도입하면 다인에 의한 병원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인체제병원으로 손쉽게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시작은 인턴이지만 후에 자격요건이 되면 동업파트너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인체제병원구성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물론, 인턴제도에 있어서는 공중방역수의사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가금전문수의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 공중방역수의사와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근무한 인턴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 가금질병통합진료센터의 구축

1) 업무체계

- 통합진료센터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에 따라 업무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첫 번째 기능은 일반 가금진료기능이며 두 번째 기능은 방역업무이다.

- 일반가금진료기능은 현재의 1인 진료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국내 가금진료수의사의 현황을 조사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금진료수의사는 계종(종계, 산란계, 육계 등)에 따른 주 종목을 설정하고 보조계종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료센터에서는 모든 계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질병진단도 단순한 부검을 위시하여 다양한 실험실적 검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제도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제도에 알맞은 행정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방역업무수행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궁극적으로 통합진료센터는 모든 계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역업무는 주로 국가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실험실적 기능을 수행하여 현재 수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청검사, 미생물검사, 환경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설 및 기자재 필요현황

- 통합진료센터의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진료목적과 방역업무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시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항에 지정되어 있다.

- 시설은 부검실, 소각실 혹은 소각로 및 실험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기자재는 필수기자재와 권장기자재로 나누어 있으며 필수기자재는 현미경 등 22종류, 권장기자재는 형광현미경 등 11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실험에 관련된 시약 등 물품도 규정되어 있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겠지만 축종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

3) 운영인력 현황

- 통합진료센터의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진료수의사, 행정요원, 실험실요원으로 구분이 된다.

- 운영인력도 각 통합진료센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인력은 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병성감정보조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최소한 4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

- 따라서 통합진료센터의 운영인력은 최소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최소인력 4명에 수의사 1명, 행정요원 1명, 실험실요원 추가 1명 총 7명 정도가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요건에 더하여 본 통합진료센터의 취지에 맞게 향후 가금진료전문수의사제도가 시행이 되면 통합진료센터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가금전문수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4) 제도 도입 시 효과

- 본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는 가금산업에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여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통합진료를 하게 되면 기존 개개인의 가금진료수의사의 경험이 모여 좀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실험실적 진료가 통합진료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질병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합진료병원에 관련된 농가의 수가 개인진료제도와 비교할 때 훨씬 많기 때문에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손쉽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농가에 정보를 전파될 수 있어 질병의 조기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 현재 국내 가금질병방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의 질병발생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만약 통합진료센터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병성감정지정기관으로 선정이 된다면 진료활동에 대한 보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금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통계를 좀 더 정확하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방역정책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장기적으로는 가금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과 국가방역 참여 확대필요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가금진료수의사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금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가금전문수의사 제도는 사전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동물 전문수의사 제도는 산업동물, 반려동물 등의 모든 축종에 해당됨으로 기본적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주관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수의사회 산하에는 축종별로 수의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종별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수의사회의 경우 가금전문수의사 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시험과 사전교육은 조류질병교수협회의 협조를 얻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양계수의사회와 조류질병교수협회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가금전문수의사 제도를 관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장 업무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주관 등이 될 것이다. 응시자격에 있어서는 기존 수의사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하며 그 외 시험과목 등도 초기에는 기존 수의사를 배려하여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가금전문수의사 제도에서는 4종류의 전문수의사가 구성되어져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수의사의 수적, 양적 향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금진료

수의사의 수익구조를 일정 부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국가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다인체제 가금진료수의사를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공수의제도가 있어 부분적으로는 국가방역사업에 투입이 되고 수입이 있지만 비중은 5% 이내로 매우 적은 편이다. 만약 가금진료수의사의 국가방역사업의 참여가 높아 수입이 전체의 50% 정도 보장이 된다면 가금진료수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가금진료수의사가 국가방역사업에 참여되면 국내 가금질병의 정확한 발생현황이 파악되어 국가방역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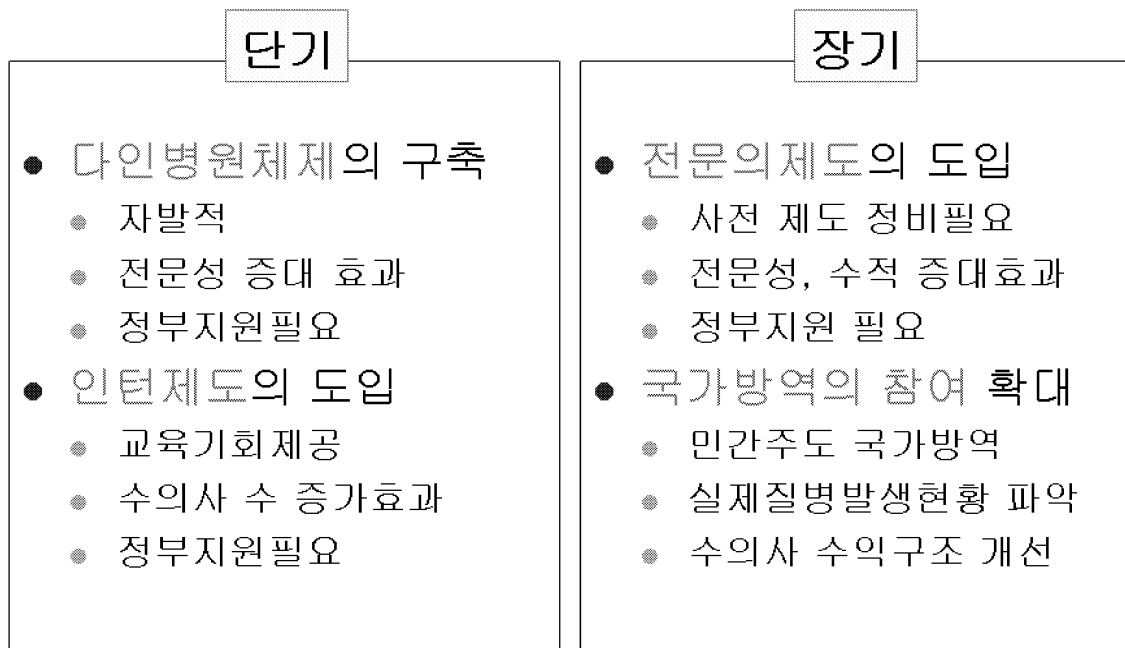


그림 9. 국내 가금산업 임상체계 개편에 따른 단기 및 장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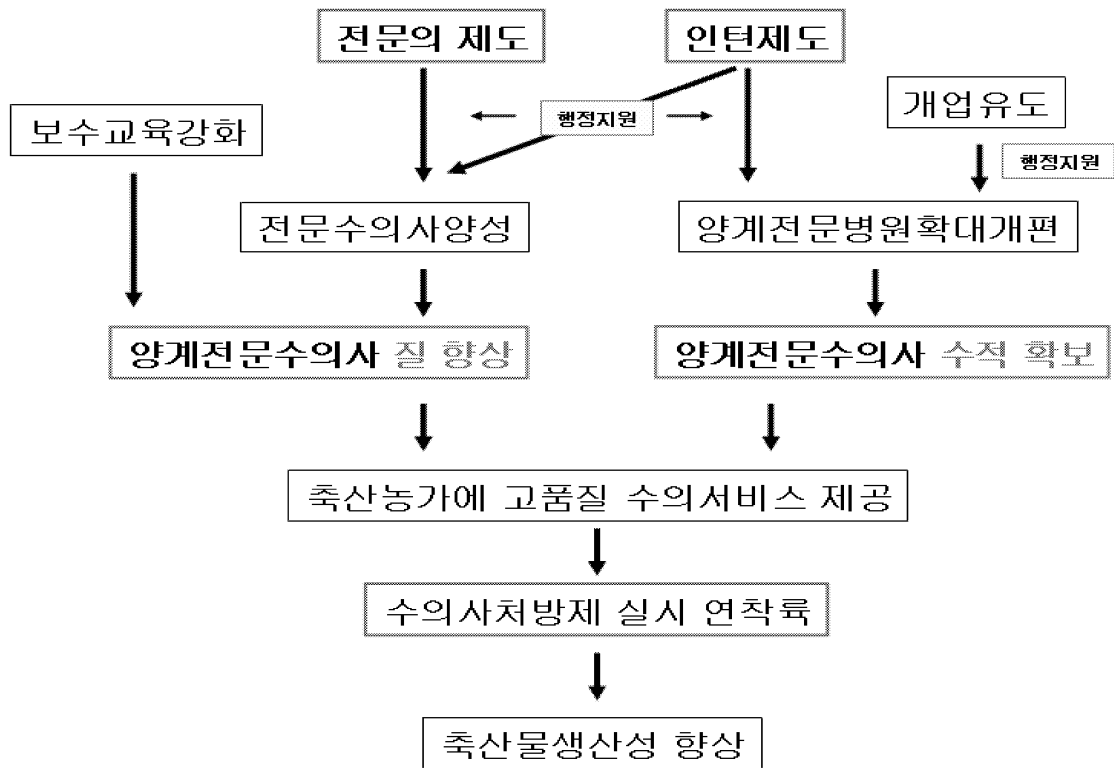


그림 10. 국내 가금산업 임상체계 개편(안) 모식도

IV. 우리나라의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과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연구

<소 분야>

1. 소 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가. 농장에서 질병발생 시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함

1) 현 시점에서 가축의 질병발생 시에 자가치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대부분 축주가 자가치료를 한 이후에 차도가 없을 때 수의사에게 진료요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일 경우에 조기 진단 및 조기 방역조치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국가적 방역업무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에 의한 자가치료 시에 수의사에 의해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일반 질병이 만성화되어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될 수 있다.

2) 현재와 같이 자가치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각 농장에서 수의사에게 진료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의 방역이나 질병관리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3) 소에 대한 국가방역사업이 주로 구제역, 부르셀라병, 우결핵과 같은 일부 법정전염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타 법정전염병이나 일반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나. 가축 질병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나 정보의 부족

1) 현재 소의 일부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생통계와 혈청학적 항체보유 상태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를 접할 수 있지만 일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발생통계는 거의 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방역과 축산분야의 국가정책을 설정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소의 방역과 관련된 업무와 예산의 분산

1) 소 전문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소 질병의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루셀라 진단용 채혈 등과 같은 국가의 방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단위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1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이 이러한 방역업무를 개별적으로 맡고 있어 방역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지역 내의 전반적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2) 소의 방역과 관련되어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며 그 예산의 출처도 다양하다(표 36). 그러므로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어 부과될 수 있고 지역 내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그 예로 공수의사가 수행하는 질병예찰 업무는 가축질병 consulting과 농장 HACCP을 수행하는 수의사의 업무의 일부와 중복될 수 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업무는 수의사들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 1인 정도 배치되어 홀로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시군 단위로 1~2명 정도의 공수의사를 배치하는 하는 경우 공수의사의 활동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전 시군 지역의 방역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왕진을 다니는 전 수의사를 방역요원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36. 소 분야 방역 업무와 운영 예산

조직	업무	운영비
공수의사	질병예찰, 예방접종, 채혈	국비 및 지방비
가축질병 consulting	질병예방관리	국비 및 지방비
농장 HACCP	농장위생관리	국비 및 지방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	채혈 및 일부 질병 방역활동	국비 및 지방비
농협의 공동방역사업단	회원 농가의 방역 조력	농협자금
지역 농축협 동물병원	회원 농가의 진료 및 약품 판매	회원 조합 자금

라. 국가방역정책에 대한 feedback 과정의 미흡

1) 국가 방역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건의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2) 목장 진료를 담당하는 개업수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축 가검물을 농민이 직접 국가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국가의 검사기관이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여 질병관리에서 수의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농민의 자가치료를 유도하고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국가방역에 활용을 차단하는 행위이다. 가축질병 방역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약품이나 소독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물용 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게 되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예산낭비의 경우가 많다. 질병 consulting 사업이나 목장 HACCP 사업의 운영시에 해당 시군의 수의사가 배제된 채 외부 경력 있는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축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수의사들의 개선의 건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소 산업에서 지적되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국가 방역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고 통합된 동물병원에서 시군 단위의 방역업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2. 소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가. 시군단위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 설치와 방역업무 통합

1) 지역 내의 신속한 질병 발견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방역조직을 시군 단위의 통합된 동물병원에 통합하여 수의사와 관련된 직원 모두가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방역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1). 통합된 동물병원

에 국가 방역 업무가 주어질 때 전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져 지역의 방역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반경 약 35km 단위(시군구 단위)로 가축의 질병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가칭)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가축의 치료, 공수의 업무, 가축집단의 군건강관리,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루셀라 진단용 채혈, 수정업무 등 국가의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시군구 단위 방역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3) 시군 단위의 통합동물병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구 출장소의 직원도 흡수하여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비정부 가축방역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4) 그동안 분산되어 지급되던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채혈 시술비,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등 국가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시군 단위로 통합된 동물병원에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던 동물병원 업무와 공동방역사업 업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군구 출장소 업무를 통합된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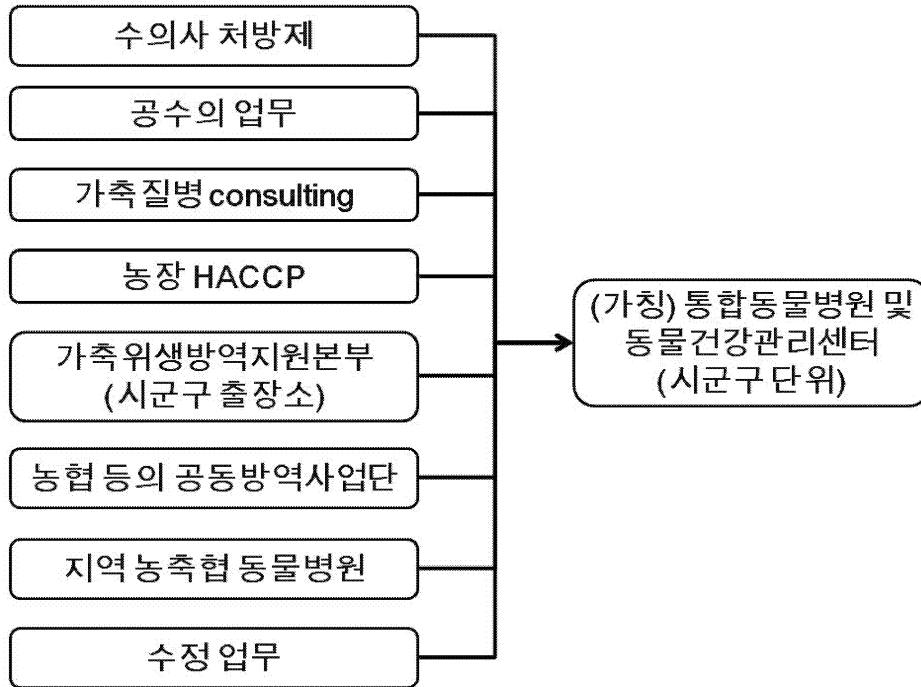


그림 11. 소의 진료와 국가 방역업무의 시군 단위 통합 관리 모형

나. 통합동물병원 및 동물건강관리센터 설치와 방역업무 통합 운영 효과

1) 통합동물병원의 수의사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내의 질병발생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방역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동물의 진료, 수정, 질병발생 예찰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루셀라 진단용 채혈 등 가축방역과 관련된 시군 단위의 모든 업무가 한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장의 방역이나 질병관리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와 방역업무 자료를 전산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가축방역 및 축산과 관련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전염성 가축질병의 예찰 업무, 가축질병 consulting, 농장 HACCP, 브

루셀라 진단용 채혈 등 다양한 국가 방역 업무를 통합된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이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시군 단위 전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소의 방역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지원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중복을 피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피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장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돼지분야>

1. 양돈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가. 양돈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수입사료에 기본한 가공형으로써 돼지사육의 규모화, 집단화, 소비지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밀집사육 등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2002년 5~7월에 발생한 돼지의 구제역에서 일관된 3km 내외 농가의 살처분 정책으로 1,429여억원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고, 2003년에는 돼지열병의 재발로 국가방역정책이 백신정책으로 역행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후에는 돼지소모성질병의 창궐로 생산성이 크게 낮아져 2008년에는 모돈당 출하두수가 연간 13.8두라는 최악의 생산성을 기록한 바 있다. FTA 협상 이후 개방된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예방대응시스템, 양돈생산자 보호대책, 안전성이 강화된 양돈방역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선진국과 같은 형태, 즉 모든 돼지질병에 대한 역학조사정보와 전국 농가 및 돼지사육 기본정보를 활용한 모의실험모델과 전문가시스템 모델을 기초한 국가수의정책의 결정과, 질병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토대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국내외 돼지질병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의 수입 또는 국내지역별 이동시 이동동물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가축질병예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가축의 거래 시마다 가축이동증명서와 검역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질병통제의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돼지질병 신고 및 진단주체는 일선방역담당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가현장에서의 자율적 신고, 진단조직 및 체계에 관한 지역별 육성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정부의 행정조직 의존적인 신고·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4) 개별 전문가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컨설팅제도를 그룹컨설팅(영양, 시설 환기, 질병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최소 3인 단위)체도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양돈질병실태조사에서 질병, 환기, 시설, 영양 순으로 컨설팅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5)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의 예측 불가능성, 광역화 등을 감안할 때, 행정조직체계만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방역조직과 현장(농장)단위의 자율방역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민간방역체계는 업무와 조직의 비효율성 및 중복업무에 따른 예산 낭비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축산 형태가 단일축종 위주로 농가가 형성된 점을 참작하여 중앙방역 주체별로 축종위주로 분리하고 전문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예; 한우 및 젓소, 돼지, 양계 및 오리, 기타 동물). 또한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 기능이 없어 능동적으로 질병을 파악할 수 없으며, 농가방문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one-stop) 피드백(feedback)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민간방역체계의 전제가 되는 자조금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에 의존하여 운영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간방역 수준이다. 그리고 병성감정지정기관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및 공인 진단액(Kit)의 공급조차 원활하지 못해 수의과대학과 민간연구소의 병성감정실적이 제대로 파악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단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의 자율적 방역 및 경제적 부담(자조금)을 토대로 한 민간방역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현재 지방행정조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축용 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처리될 경우 해당 단체장의 의지와 지역행정조직의 차별화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축산단지 인근이 도시화되면서 질병발생시 동물의 이동제한을 장기간 실시하기가 어렵고, 밀사에 대한 해결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충분한 이동제한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축장의 규모나 수를 생산현장의 공급에 맞게 재편함으로써 방역대의 조성 및 도축장 경영의 합리화로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정부에서는 축산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수단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1997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 축산물 HACCP는 1997년 HACCP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든 단계 즉 가축사육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가공장, 운반업, 보관업, 집유업, 판매업 등에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농장에서 포크까지(from Farm to Fork)”의 위생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가축사육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일차적인 필수사항이므로 사육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는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이를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가축 사육단계의 축종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토록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축 사육단계의 HACCP 적용으로 과거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축산물 항생제 잔류 및 내성 문제도 감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여 단계별 교육, 인증, 방역, 위생, 품질, 생산, 기록 등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는 우수농장인증제도로 볼 수 있다.

2. 돼지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돼지질병의 치료뿐 만아니라 돼지 집단의 군건강관리, 돼지질병 consulting, 양돈장 HACCP, 전염성 돼지질병의 예찰 업무 등 국가의 돼지 질병 방역정책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지전문동물병원 또는 돼지진료수의사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양돈장HACCP제도를 조기에 확산하여 돼지전문수의사의 양돈장 정기 방문을 제도화하여 돼지집단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의 컨설팅 및 치료뿐만 아니라 돼지의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보고케함으로써 국가의 돼지질병 방역정책에 연계되도록 한다.

나. 돼지생산자단체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돼지전문수의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양돈장의 정기방문 및 질병관리를 정례화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가 생산되도록 한다.

다. 민간병성감정기관의 돼지질병검사를 국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하여 주요 돼지질병의 검사결과를 공개 또는 보고케하여 국가의 돼지질병 방역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라. 돼지전문진료센터와 국가가축방역기관 및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업무공유를 통하여 양돈장의 불필요한 방문을 제한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업무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마. 농협, 방역지원본부, HACCP기준원, 지역 공방단 등에 맡겨진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가방역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산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바. 돼지와 같은 산업동물의 경우 가축공제체도의 도입은 수의사의 의무이행과 생산자의 방역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으로 이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가금 분야>

1. 가금산업에서 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가. 농장에서 질병발생 시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음

1) 국내의 가금질병 통계는 2곳에서 관리되고 있다. 첫 번째 통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계하는 것으로 ND, AI 등 주요 전염성질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통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AIMS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보고하는 질병발생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질병들이 이 두 통계시스템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금산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들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방역당국에 전달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방역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나. 관급백신으로 인하여 비전문적 백신프로그램의 적용

1) 관급백신이 공급된 이유는 국내의 주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다. 가금산업의 경우 부화장 및 농장에 관급백신을 공급하고 있지만 백신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뉴캐슬백신의 경우 시중에 허가된 백신 어느 것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접종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제공하고 있는

전염성F낭병 백신의 경우 백신의 종류 및 접종시기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 만별인데 농장의 상황에 따라 백신이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문제 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가금진료수의사의 경우 자체에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급백신이 공급된 농장에 백신접종프로그램을 작성할 의무를 느끼지 않아 실제적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캐슬병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발생이 많아 관급백신이 제공되었고 항체 양성율이 80% 이상이 되면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오히려 관급백신은 모든 백신종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방역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2) 관급백신제공으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다시 이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농가에서 경제적 피해가 큰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방법이 관급백신을 제공하는 것 보다 방역정책상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감해 주면서 현장의 질병발생현황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국가방역정책에 대한 현장에서의 Feed back 기능 미흡

1) 앞서서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국가방역정책이 수행이 되면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응이 정확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애초에 목표한 기준에 미달이 되어도 현장에서는 안 주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 농장 개개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과연 현재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정책을 그래도 개인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는 IBD백신, 생균제 제공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제하기 위하여 농가에 생균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농가 모두 인지를 한다. 하지만 생균제가 제공됨으로서 가금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공된 생균제를 투여할 뿐인 것이다.

2)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현장에서의 생각이 정확하게 방역당국에 전달

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방역당국은 현장에서의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나 생각들을 여과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방역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가금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가. 가금산업에서 국가방역은 부화장, 도축장, 종계장이며 중심에 가금진료수의사가 있다.

소규모로 거래가 되는 재래시장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모든 닭과 오리는 부화장에서 태어나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다.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에도 도축 시에는 노계전문 도축장 2곳에서 도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금산업에서의 국가방역은 부화장과 도축장을 제어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예로서 국가가금질병통계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으로서 이는 현장에서의 질병검색이 국가방역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질병발생 등 방역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화장과 도축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의 현장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금진료수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국가방역을 수행하게 한다면 효율성, 전문성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가 될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이미 부화장,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을 위하여 많은 국가재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금진료수의사를 이 업무에 투입하여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의 방역당국에서 적은 인원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의 대체 효과 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부화장은 50개소 미만, 도축장도 50개소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가금진료수의사가 본 연구보고의 예측대로 94명이 충원된다면 충분히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을 현재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역사업을 중심으

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가장 강조가 되어야 할 부분은 방역사업의 중심에는 가금진료수의사가 있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사업에 참여가 돼야 종합적인 방역활동과 방역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화장과 도축장에서는 자체검사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에 묶여 병아리 품질을 따지지 못하는 양계농가 및 자체수의사에 의하여 품질검사가 되어져 나오는 도계품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영검사체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중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금진료수의사이다.

1) ND 국가방역(1일령 부화장 접종)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현재 국가에서는 1일령, 10일령 ND백신접종을 위하여 관급백신을 전국의 부화장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검사는 부화장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접종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통하여 항체 여부로 판단하지만 생독백신의 특성상 분명히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가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역가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에서 백신접종 현황을 서류 혹은 다른 증거로서 판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관적이다. 1일령 백신접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주일에 2회 병아리가 생산되며 하루 종일 백신을 접종하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ND백신을 관급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가 지역의 부화장에 대한 1일령 백신접종 여부 감시업무를 수행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관급백신 공급에 따른 정확한 접종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화장에서 감시를 하여도 전문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가금진료수의사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국가에서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를 들면 부화장에서 병아리 품질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획득이다. 난계대전염에 의한 병아리 품질이 저하되었을 때 가금진료수의사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수의사는 거의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ND 국가방역(10일령 농장 접종)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현재 농가에 자체 ND백신접종을 위하여 관급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도축장에서 혈청을 채취하여 지자체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축시 일정 수준의 역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제도의 맹점은 생독백신을 접종하면, 특히 분무 혹은 음수로 접종하면 항체가 100%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체검사가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육기간 동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금진료수의사가 필요하다. 특히 처방전제도가 시행이 되면 생물학적 제제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농가의 입장에서 생독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병아리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금진료수의사가 판단하여 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병아리 ND백신접종에 따른 계군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를 가금진료수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훌륭한 방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난계대질병이 병아리에 이행이 되었을 경우 10일령 전후에 충분히 그 임상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병아리 건강을 살필 수 있고 종계장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 HACCP 인증 가금농장에서의 가금진료수의사의 현장 감시

현재 많은 가금농장들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3년 내에 1,500개 이상의 농장들이 HACCP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ACCP 인증 후 매번 가금이 입식되었을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금진료수의사가 매번 농장을 방문하여 HACCP 인증 후에 농장에서 HACCP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면 여러 가지로 잇점이 있다. 농장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관리수의사를 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농장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이나 방역수준에 대한 조언을 가금진료수의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잇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방역당국, HACCP 인증기관(현재는 HACCP 관리기준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가금진료수

의사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전국 농장의 방역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양계선진국에서는 농장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의 일환으로 육계의 경우 일정 이상의 폐사(0.5% 이상/주), 산란계의 경우 일정 이상의 산란율 하락(1% 이상/주)이 있으면 담당 수의사가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을 국내에도 적용(강제조항이 아님)을 하여 가금진료수의사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도축장에서 혈청 및 미생물검사시료 채취 시 가금진료수의사 역할

현재는 도축장에서 농장별로 혈청을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관에서 ND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청채취가 도축장 자체검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례적으로 채취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농장의 혈청을 채취하지만 대부분 계열농가이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도축검사원이 의지대로 검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축장에서의 혈청채취는 육계든 노계도축장의 산란계 및 종계든 그 효용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특히 육계에서의 혈청채취는 사육기간 동안 질병감염여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혈청채취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계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같이 동봉되어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만약 가금진료수의사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한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역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장 내의 도축검사원과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충돌이나 인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축검사원은 자체검사원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특히 방역 및 위생업무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외부 가금진료수의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입지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실제 현재의 도축검사원은 대부분 과거 경력상 가금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낮을 수 있어 가금진료수의사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라. 일반 가금농장 및 종계장에서 임상검사 시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

국내의 모든 양계장 및 종계장에 대하여 가금진료수의사가 위생 및 방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모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금 산업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부화장과 도축장이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만 일반 가금농장과 종계장을 모두 감시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종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아리 품질은 부화장과 ND 추가 백신접종 때 농장에서 감시하면 될 것이다. 일반 산란가금농장의 경우에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50만수에 대한 혈청검사사업을 강화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가금진료수의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및 방역보고를 의무화하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제도들이 가동을 하면 가금진료수의사는 국가방역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방역에 관련된 사항을 의무화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제도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방역업무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금농장과 종계장에 대해서는 가금진료수의사의 역할은 개인업무 수준에서 추진을 하며 이를 서면 보고화 하고 국가방역사업에서는 HACCP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국가방역사업에 참여하는 가금진료수의사의 책임과 의무

국가방역사업에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금진료수의사의 의지에 맡겨주어야 한다. 만약 참여를 한다면 국가에서 그에 맞는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 가금진료수의사의 책임은 각 분야별 방역사업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의무는 모든 수행업무

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가금진료수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이러한 책임과 의무보다 개인적 진료활동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크다면 국가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방역당국에서는 가금진료수의사들이 충분히 이러한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실행해야 한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선진양계국가들이 산업동물진료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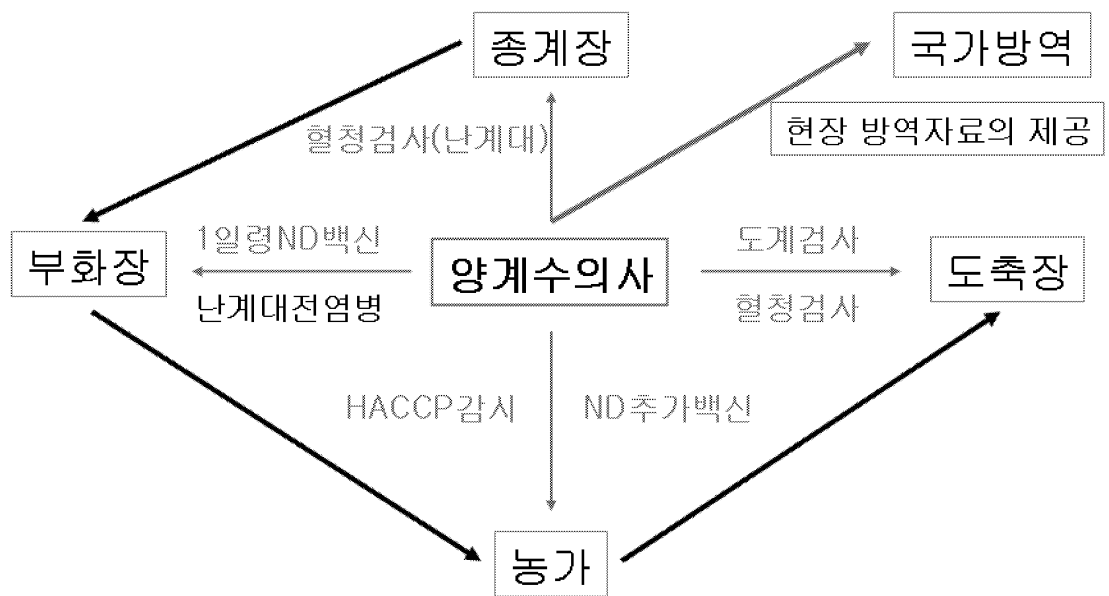


그림 12. 국내 가금산업의 임상체계와 국가 동물 질병 방역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모식도.

처방수가 산정방안(예)

소 진료수의사 처방수가 산정방안(예)

1. 왕진비

기본거리 (4 Km 이내)	30,000원
추가거리 Km당	2,000원 추가

2. 진료 및 컨설팅

시간당	100,000원
-----	----------

3. 처방 30,000원

4. 각종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보수 규정에 따른다.

돼지 및 가금 진료수의사 처방수가 산정방안(예)

1. 현장방문시

1) 이동경비

기본거리(20Km 이내)	50,000원
추가거리(5Km당)	10,000원 추가

2) 진료 및 컨설팅

1시간당	100,000원
------	----------

3) 처방 30,000원

2. 내원처방 또는 전화상담 등 간접처방시

1) 처방상담료(30분 이내) 50,000원

2) 처방 30,000원

참고문헌

1. Anderson DE & Rings DM. Current Veterinary Therapy. Food Animal Practice. Saunders Elsevier, 2009.
2. Maddison J, et al. Small animal clinical pharmacology. WB Saunders, 2002.
3. Prescott JF, et al. Antimicrobial therapy. Iowa State University Press, 2000.
4. 김덕환, 김두. 일본의 가축공제제도 소개. 대한수의사회지 42(10): 905-922. 2006.
5. 김두. 산업동물 임상 의 활성화 방안. 대한수의사회지 42: 445-453. 2006. 5.
6.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방안. 2001.
7. 대한수의사회. 식품생산동물 진료체계 개편방안. 2006.
8.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따른 영향 평가. 대한수의사회지. 44: 124-139, 2008.
9. 류일선. 국내 대동물 임상수의사의 현황, 진료방향과 전망. 대한수의사회지. 43: 648-657, 2007.
10. 배상호. 수의업무체제의 미래. 대한수의사회지. 44: 901-912, 2008.
11. 양일석. 산업동물 임상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대한수의사회지. 45: 341-345, 2009.
12. 이상진. 08년도 상반기 가축질병 발생동향 및 역학적 특징 분석. 대한수의사회지. 44: 654-664, 2008.
13. 이인호. 수의사에 의한 항생제의 신중사용은 대세이다. 대한수의사회지. 43: 185-188, 2007.
14. 이인호. 항생제의 사용절감전략과 수의사의 역할. 대한수의사회지. 43: 360-373, 2007.
15. 이인호. 일본과 한국의 배합사료용 할생물질 감축과정을 둘러싼 차이점

- 의 비교. 대한수의사회지. 44: 466-477, 2008.
16. 이홍식, 이승욱, 김은주, 박은경. 우리나라 수의사의 수요-공급 추계 및 실태조사. 대한수의사회지. 43: 797-810, 2007.
17. 이홍식. 수의학교육의 인증평가제 도입은 국내 모든 수의과대학이 WCU가 되는 지름길이다. 대한수의사회지. 45: 444-463, 2009.

첨부 1. 전국 시군별 가축 통계(2008년 12월 기준)

시군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한육우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전국	181,196	2,430,389	7,000	445,754	7,681	9,087,434	3,196	119,783,943	1,291	24,951	27,555	372,447	156	1,800	7,937	97,856	7,131	297,659	617,716	1,917,709
서울특별시	14	417	2	99	0	0	0	0	2	33	2	155	0	0	8	145	1	210	144,171	158,528
광주광역시	301	4,821	8	684	15	5,866	3	120,000	3	37	51	771	0	0	16	205	40	667	14,478	24,405
대구광역시	1,210	16,895	56	3,035	30	23,163	7	296,100	2	76	131	3,205	0	0	23	270	15	340	15,554	25,745
대전광역시	381	4,893	2	38	21	3,103	308	170,273	6	50	56	988	15	20	22	149	72	1049	14,152	28,986
동구	55	257	-	-	3	1,832	60	2,810	0	0	3	200	0	0	1	2	15	130	3,360	6,540
중구	31	632	-	-	-	-	30	848	0	0	4	243	0	0	5	26	3	69	4,093	5,568
서구	146	2,076	-	-	7	1,050	52	60,903	2	5	12	107	0	5	2	34	11	214	2,296	7,466
유성구	112	1,851	2	38	9	159	98	103,812	4	45	19	228	0	0	12	74	22	356	1,414	3,816
대덕구	40	101	-	-	2	62	68	1,900	0	0	18	210	15	15	2	13	21	280	2,989	5,596
시군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부산광역시	138	1,874	11	619	61	12,210	6	60,300	9	944	59	1,564	0	0	28	456	20	402	28,935	42,545
울산광역시	2,130	23,589	17	1,088	19	44,196	15	431,950	7	65	117	3,077	0	0	54	1,124	50	4,008	6,192	19,538
인천광역시	687	20,158	79	4,006	126	56,379	1,280	1,369,732	11	111	151	3,261	0	0	120	1,672	62	1,149	243	21,734
중구	12	316	0	0	6	87	66	4,508	2	14	7	168	0	0	9	201	0	0	8	349
동구	0	0	0	0	0	0	7	29	0	0	0	0	0	0	0	0	2	17	0	0
남구	0	0	0	0	0	0	8	210	0	0	0	0	0	0	0	0	0	0	0	0
연수구	2	6	0	0	2	437	32	3,032	0	0	0	0	0	0	1	20	3	5	0	0
남동구	11	191	7	377	5	970	9	12,800	2	44	6	96	0	0	6	178	0	0	9	351
부평구	0	0	0	0	0	0	33	746	0	0	0	0	0	0	1	19	11	26	5	280
계양구	23	649	19	827	5	2,220	6	110,000	2	34	2	120	0	0	3	38	0	0	17	900
서구	30	577	3	372	4	7,700	32	124,533	3	12	5	147	0	0	16	258	5	701	28	4,146
강화군	581	18,278	50	2,430	95	43,764	852	1,105,128	4	8	41	483	0	0	73	626	37	251	161	15,279
옹진군	28	141	0	0	9	1,201	235	8,746	2	5	90	2,247	0	0	11	332	7	42	15	429
시군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강원도	15,178	196,248	356	20,181	555	482,802	8,091	7,588,409	53	394	1,012	18,310	25	1,071	738	9,230	564	13,078	30,089	115,162
춘천시	1,320	19,072	20	1,052	48	25,136	716	1,066,566	1	10	37	2,282	0	0	83	709	32	504	4,442	12,948

원주시	897	12,088	40	1,475	63	68,990	906	1,334,120	6	57	77	1,820	0	0	46	483	57	4,128	4,139	13,980
강릉시	815	8,941	16	846	40	60,647	856	319,720	6	22	93	1,300	0	0	46	659	38	265	3,375	9,416
동해시	153	1,583	0	0	0	0	308	3,398	1	3	40	369	1	4	7	137	61	463	1,002	3,773
태백시	106	1,536	0	0	10	4,540	86	36,869	0	0	20	355	0	0	24	727	7	734	307	1,023
속초시	74	594	0	0	4	1,718	68	1,178	0	0	5	52	0	0	5	116	5	30	224	892
삼척시	995	10,839	0	0	23	4,212	470	820,196	0	0	111	1,160	0	0	39	468	33	240	1,363	3,506
홍천군	2,619	24,460	46	2,002	51	44,863	963	672,110	3	21	41	935	0	0	98	805	54	273	3,417	10,593
횡성군	1,920	38,813	52	3,103	31	59,038	650	727,503	1	1	38	896	0	0	24	541	9	246	1,841	10,010
영월군	1,053	11,276	0	0	14	7,860	665	312,112	2	25	212	2,303	0	0	30	285	43	496	1,778	4,652
평창군	848	15,008	20	2,269	26	6,643	518	16,965	19	186	117	2,315	12	961	53	1,021	52	387	1,645	4,044
정선군	995	8,950	2	67	17	2,776	429	15,592	2	10	60	1,286	9	77	20	174	20	113	928	3,199
철원군	568	11,881	154	9,062	86	125,047	209	948,337	4	8	16	682	3	29	58	616	53	983	1,765	14,442
화천군	524	6,314	5	272	41	16,047	235	674,206	0	0	45	748	0	0	127	1,357	18	179	665	6,020
양구군	563	7,106	0	0	21	14,787	194	229,357	1	3	8	62	0	0	16	257	13	252	511	3,739
인제군	521	5,344	1	33	29	8,066	210	300,906	4	45	20	593	0	0	33	323	13	358	622	7,065
고성군	573	7,024	0	0	30	7,031	217	104,030	1	1	26	612	0	0	16	342	14	93	863	2,840
양양군	634	5,419	0	0	21	25,401	391	5,244	2	2	46	540	0	0	13	210	42	3,334	1,202	3,020
시군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마 필		산 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경기도	8,893	249,052	#####	183,043	1,814	2,152,826	3,702	45,645,540	136	3264	540	17001	40	45	1067	16658	395	98645	99561	444319
수원시	18	537	16	602	6	2,133	29	5,551	0	0	5	107	1	1	1	30	3	62	3317	3604
성남시	4	54	0	0	4	24	34	54470	2	2	0	0	0	0	3	21	6	61	9383	12656
부천시	8	182	1	52	2	69	5	120	2	64	2	26	0	0	4	33	1	30	6629	7927
안양시	2	42	0	0	4	560	0	0	0	0	0	0	0	0	1	30	0	0	4814	8337
안산시	60	1,286	13	726	11	2,774	13	8,115	3	73	11	419	0	0	18	527	0	0	9492	21803
용인시	295	11,356	54	3,239	198	228,353	331	3,171,887	11	173	84	2,831	1	4	69	1275	70	3676	7311	29722
평택시	371	11,274	278	16,902	101	126,183	148	3,156,030	6	20	26	485	0	0	45	710	25	1442	5373	22360
광명시	44	1,199	2	96	12	2,162	23	2,598	0	0	3	37	0	0	7	91	2	6	3093	6509
시흥시	172	3,045	17	817	23	2,980	21	21,212	11	110	16	364	0	0	21	345	2	12	2133	9188
군포시	17	554	1	17	0	0	8	930	3	71	2	130	0	0	12	255	0	0	4000	4400
화성시	795	19,934	512	29,327	161	180,149	325	4,258,317	18	278	118	4,420	5	7	106	1606	51	17832	4349	34585
이천시	507	16,537	299	22,445	194	351,778	298	3,229,516	12	186	30	811	0	0	64	949	53	769	2105	32391
김포시	251	7,072	60	2,750	44	59,791	132	1,299,321	4	19	0	-	0	0	29	315	1	2	1927	17335
광주시	179	4,402	33	1,426	9	2,543	218	815,283	3	30	8	125	0	0	47	685	8	85	3388	14270

안성시	1,542	74,032	263	16,969	147	276,813	202	4,098,301	5	95	26	806	28	33	74	666	36	6947	5573	24387
하남시	12	512	6	315	0	0	0	0	9	97	1	300	0	0	9	72	1	230	1840	6070
의왕시	12	312	2	75	1	1,000	12	4,487	0	0	1	4	0	0	5	100	0	0	1504	3671
오산시	26	561	6	268	2	3,600	31	103,251	1	30	0	0	0	0	2	38	6	48	1389	5885
여주군	652	14,280	191	12,195	115	165,536	254	3,734,611	5	9	23	991	0	0	25	550	14	140	1342	33236
양평군	1,291	19,948	95	4,457	53	58,451	422	3,161,038	2	9	6	219	0	0	83	1591	5	1521	1788	12577
과천시	8	380	1	22	0	0	11	1,972	3	1520	0	0	0	0	6	76	1	255	2366	3638
고양시	115	4,997	83	5,205	34	26,062	282	579,210	1	4	11	201	0	0	18	447	2	25	85	2981
의정부	13	234	10	178	2	200	3	27,950	1	5	23	889	0	0	12	204	0	0	3016	5170
남양주	377	10,050	154	6,324	33	12,868	87	371,952	4	45	39	627	0	0	74	1313	6	160	410	13882
파주시	368	11,150	265	15,273	153	110,503	290	1,482,969	8	105	27	936	4	0	73	1017	21	218	4509	20178
구리시	2	108	5	178	0	0	0	-	1	16	1	25	0	0	3	21	0	0	1438	2863
포천시	603	11,250	328	16,651	222	259,710	225	6,581,734	12	201	44	1236	0	0	122	1678	37	38950	2408	36046
양주시	218	7,305	195	11,002	147	141,910	75	1,973,405	3	36	4	239	1	0	43	631	10	15830	378	14041
동두천	41	918	25	1,143	23	15,883	10	296,300	0	0	1	10	0	0	12	235	11	8800	1899	6090
가평군	605	8,326	69	3,193	18	14,199	56	2,264,900	1	3	16	523	0	0	47	778	14	103	2037	10792
연천군	285	7,215	211	11,196	95	106,592	157	4,940,110	5	63	12	240	0	0	32	369	9	1441	265	17725
시군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경상남도	32,378	304,669	477	31,892	1,209	1,259,138	7,947	12,501,164	45	222	6,884	56,960	7	64	383	7665	508	7074	39864	123386
창원시	315	4,993	42	2,665	22	21,060	196	170,018	4	17	38	1,225	0	0	10	219	12	41	3427	7107
마산시	775	6,928	18	911	39	42,900	241	88,948	2	15	102	1,878	0	0	13	222	20	110	5594	8820
진주시	1,046	11,188	37	2,225	83	66,403	814	898,616	2	3	580	6,495	0	0	57	1254	19	246	4135	13820
진해시	19	327	-	-	10	2,083	140	5,042	2	6	77	807	0	0	9	222	15	184	2207	5534
통영시	473	2,988	-	-	12	7,060	165	37,715	1	2	391	5,065	0	0	5	229	6	29	1396	3461
사천시	1,665	14,207	47	3,574	40	92,431	409	174,043	2	11	730	4,175	0	0	17	411	21	98	1637	5053
김해시	848	22,846	42	2,293	157	191,947	183	959,461	3	24	32	727	0	0	14	305	10	166	1329	7714
밀양시	2,095	24,710	16	1,269	48	68,392	262	760,760	7	42	258	3,313	0	0	14	216	24	201	1829	4975
거제시	555	4,392	-	-	16	4,414	342	423,772	7	43	347	1,724	0	0	20	334	62	355	1050	3735
양산시	399	4,543	45	2,208	69	73,783	196	1,427,726	1	21	87	1,317	7	64	32	762	35	2167	1137	12471
의령군	1,669	14,019	30	2,443	38	46,258	611	500,356	0	0	198	1,643	0	0	16	263	20	81	1260	4228
함안군	1,326	12,553	51	2,996	57	82,984	259	756,570	4	10	60	1,638	0	0	27	345	1	2	698	4127
창녕군	2,192	24,667	35	2,861	34	66,137	219	1,605,763	0	0	43	687	0	0	6	192	9	287	1859	6419
고성군	3,337	25,067	49	3,293	64	90,920	287	623,776	0	0	537	2,916	0	0	15	476	8	53	1412	4568

남해군	2,451	15,729	6	508	10	13,044	515	68,612	1	7	1,726	7,717	0	0	12	153	68	410	1940	4312
하동군	2,105	20,164	18	1,831	38	39,005	1,243	94,305	2	6	480	3,493	0	0	16	414	12	83	2905	7945
산청군	1,926	12,586	16	1,074	116	47,567	486	982,403	5	9	487	4,200	0	0	40	802	45	933	1357	4061
함양군	1,415	13,960	7	562	160	73,940	505	239,427	0	0	270	2,933	0	0	25	464	17	603	1421	3888
거창군	3,032	30,668	12	915	56	63,418	507	1,456,704	1	5	205	2,771	0	0	10	84	94	848	1499	5398
합천군	4,735	38,134	6	264	140	165,392	367	1,227,147	1	1	236	2,236	0	0	25	298	10	177	1772	5750
시군별	한옥우		첫 소		돼 지		닭		마 필		산 양		면 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경상북도	39,343	559,619	732	41,130	1,107	1,373,174	7,897	25,785,173	85	466	2,126	39,599	1	20	567	7655	583	29829	22324	121793
포항시	1,583	19,921	48	1,844	47	36,013	278	606,819	7	41	35	1,180	0	0	24	462	23	5324	2128	6828
경주시	6,031	63,109	230	13,450	109	139,488	409	2,027,080	10	89	23	1,437	0	0	41	765	26	986	1194	7388
김천시	1,806	27,153	58	4,341	53	46,893	261	3,562,294	4	5	99	4,538	0	0	28	562	21	1285	834	14041
안동시	2,508	41,882	8	540	71	93,422	456	1,786,089	3	6	141	2,468	0	0	34	435	18	204	1480	7389
구미시	1,761	34,160	27	1,364	36	45,333	299	511,526	10	42	45	980	0	0	30	295	6	231	483	10885
영주시	2,269	41,576	22	1,340	56	68,565	350	3,013,781	2	27	69	777	0	0	28	458	15	60	888	2516
영천시	2,183	33,502	46	2,793	106	161,910	204	1,462,217	13	23	59	2,162	0	0	26	331	46	466	1238	6028
상주시	3,664	55,345	53	3,101	61	53,481	861	3,043,687	3	48	250	2,169	0	0	85	774	86	744	2720	8898
문경군	1,968	27,615	40	2,105	25	40,602	411	888,351	4	51	106	2,406	0	0	46	456	35	243	1010	4870
경산군	1,186	28,114	65	2,991	65	52,005	104	368,669	1	14	91	1,384	0	0	20	180	9	71	513	3471
군위군	998	13,116	17	1,024	63	122,669	269	1,132,090	0	0	16	218	0	0	9	273	29	249	1161	4238
의성군	1,992	30,233	11	848	57	79,511	869	2,184,185	0	0	90	1,047	0	0	30	436	53	528	2382	5204
청송군	456	5,928	8	430	18	6,396	145	255,071	1	15	35	548	0	0	5	47	7	235	95	2512
영양군	264	4,053	2	224	14	1,760	231	15,222	2	4	256	4,521	0	0	19	331	24	189	489	2829
영덕군	434	5,694	4	257	30	12,947	158	108,277	1	8	41	741	0	0	6	125	10	139	179	2909
청도군	1,548	22,280	24	932	35	46,150	159	323,138	1	3	103	1,589	0	0	14	108	39	15317	727	2946
고령군	1,279	16,537	13	742	56	143,840	133	216,242	4	18	20	342	0	0	7	80	12	60	415	2345
성주군	810	13,419	19	986	62	108,023	346	825,069	5	7	143	3,453	1	20	16	446	27	694	612	9855
칠곡군	532	11,751	18	1,021	45	33,534	306	1,500,339	2	8	53	2,056	0	0	16	331	17	2249	458	5080
예천군	3,785	39,821	15	641	49	40,533	655	499,051	5	14	102	2,745	0	0	24	232	26	165	1637	4545
봉화군	1,197	14,729	4	156	30	28,719	702	1,437,396	3	35	239	2,104	0	0	46	379	19	161	1146	2946
울진군	1,023	8,978	-	-	19	11,380	242	17,996	4	8	61	340	0	0	12	128	31	208	489	3987
울릉군	66	703	-	-	-	-	49	584	0	0	49	394	0	0	1	21	4	21	46	83
시군별	한옥우		첫 소		돼 지		닭		마 필		산 양		면 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전라남도	35,178	424,940	529	36,712	1,842	929,998	12,595	27,985,974	33	194	3,976	55,436	14	148	731	9212	737	9999	38138	131960	
목포	36	455	-	-	1	756	3	1,250	0	0	16	566	0	0	1	30	1	50	2815	5145	
여수	2,216	10,153	-	-	176	25,689	914	660,539	0	0	640	5,083	0	0	35	251	16	81	2569	7864	
순천	2,406	17,677	73	4,542	85	57,446	1,666	602,788	2	9	257	1,493	0	0	33	332	29	337	2392	9264	
나주	1,931	33,928	135	8,845	188	179,552	267	4,921,469	9	52	52	1,822	2	6	59	1089	55	2569	1460	9620	
광양	764	5,203	4	202	31	11,338	1,108	65,914	1	2	228	3,943	0	0	18	167	23	394	1189	4543	
담양	1,416	27,726	25	1,521	29	33,687	439	679,021	1	2	85	1,151	10	79	25	450	81	867	1903	5114	
곡성	1,034	12,029	19	1,357	53	18,455	725	1,615,805	1	2	143	1,131	0	0	19	269	28	268	1398	4675	
구례	968	8,400	5	410	53	19,218	717	410,461	1	5	221	1,718	0	0	12	172	44	418	1023	3003	
고흥	4,086	30,735	37	1,854	57	16,192	1,386	52,564	3	12	243	2,055	0	0	68	630	41	498	2121	4673	
보성	2,404	20,362	31	2,547	65	22,677	1,075	208,477	0	0	496	5,139	1	50	68	655	25	244	1984	4358	
화순	1,175	10,675	20	1,334	105	48,139	706	772,101	1	3	296	7,310	0	0	33	678	79	780	2107	12736	
장흥	2,682	44,803	4	441	46	20,195	322	765,912	1	1	326	2,288	0	0	33	501	40	306	1587	4588	
강진	1,931	24,947	5	267	58	18,440	550	1,067,804	2	15	152	2,573	1	13	42	217	43	522	2056	4414	
해남	1,713	25,579	14	1,491	122	48,263	593	1,329,436	0	0	104	900	0	0	42	272	32	347	2666	8570	
영암	1,132	29,958	47	4,151	66	44,231	241	3,071,944	3	14	73	3,998	0	0	24	383	45	436	1425	4771	
무안	1,902	34,851	11	857	100	138,193	140	4,220,944	1	16	60	1,971	0	0	19	342	8	268	468	5114	
함평	1,790	28,240	62	4,577	52	74,328	256	4,523,134	0	0	26	847	0	0	41	668	52	630	1277	5769	
영광	1,289	17,203	19	1,417	52	85,343	267	2,413,925	1	4	35	1,670	0	0	57	593	36	443	704	4710	
장성	1,404	15,644	18	899	27	28,596	410	552,393	3	48	83	2,031	0	0	52	965	44	424	1833	10487	
완도	1,318	11,613	-	-	236	4,024	249	4,342	0	0	245	1,887	0	0	7	201	4	33	843	1427	
진도	244	3,490	-	-	162	3,536	105	22,168	3	9	15	188	0	0	7	131	5	44	2646	7912	
신안	1,337	11,269	-	-	78	31,700	456	23,583	0	0	180	5,672	0	0	36	216	6	40	1672	3203	
시군별	한옥우		꽃소		대지		담		마필		삼양		면양		사슴		토끼		개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전라북도	16,132	294,147	518	39,728	1,587	1,312,267	1,106	38,121,953	45	538	1,734	29,908	16	150	480	5,561	1,329	40,370	41,859	180,779	
전주시	66	579	2	108	14	4,152	16	150,582	2	53	7	447	1	6	9	243	27	463	4,999	12,313	
군산시	217	4,576	16	1,060	39	40,167	25	640,881	1	3	76	625	0	0	21	232	146	11,428	6,630	18,448	
익산시	1,080	25,775	33	2,481	312	226,285	155	6,029,554	9	38	79	2,604	0	0	60	389	117	1,104	6,653	27,102	
정읍시	2,586	60,190	118	8,716	150	269,375	154	6,738,015	11	212	55	743	14	142	81	663	116	1,383	3,405	34,078	
남원시	1,501	32,099	46	3,171	529	94,686	138	5,829,357	2	34	316	2,742	0	0	10	173	59	1,034	2,752	8,570	
김제시	1,510	35,828	30	2,980	168	235,125	158	4,478,950	3	19	77	1,276	1	2	42	676	199	3,671	3,647	17,893	
완주군	1,210	24,167	29	2,866	65	82,220	56	1,764,905	5	7	63	1,352	0	0	32	391	42	1,855	1,264	12,032	
진안군	838	7,795	13	1,043	50	48,092	83	2,287,795	2	3	202	2,989	0	0	38	261	94	1,421	1,494	5,226	

무주군	842	6,879	9	440	19	13,979	8	121,850	0	0	73	1,398	0	0	16	180	35	388	758	2,437
장수군	1,572	24,859	4	192	59	49,935	22	709,008	4	138	209	2,993	0	0	23	224	37	420	1,103	3,664
임실군	1,560	18,268	76	5,013	71	77,072	113	2,063,700	2	3	245	5,623	0	0	10	182	52	12,940	1,708	11,023
순창군	1,165	17,870	19	1,118	39	24,824	39	1,661,215	0	0	260	6,267	0	0	27	281	117	1,233	1,696	6,168
고창군	1,010	15,294	85	8,473	40	109,240	86	4,639,810	0	0	55	705	0	0	36	291	141	1,672	3,106	11,250
부안군	975	19,968	38	2,067	32	37,115	53	1,006,331	4	28	17	144	0	0	75	1,375	147	1,358	2,644	10,575
시군별	한옥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제주도	1,049	34,869	57	5,408	326	502,358	115	1,541,352	954	20,956	23	921	3	24	34	857	23	2,556	10,392	32,534
제주시	600	20,790	53	5,110	218	336,149	81	1,290,476	660	14,660	15	561	3	24	28	657	21	2,538	7,986	22,751
서귀포시	449	14,079	4	298	108	166,209	34	250,876	294	6,296	8	360	0	0	6	200	2	18	2,406	9,783
시군별	한옥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충청남도	23,548	372,604	1,444	89,883	1,788	2,165,135	6,889	44,903,566	70	229	3,114	32,698	11	58	1,439	15,367	924	27,155	36,014	193,466
천안시	521	11,832	292	15,430	99	142,884	349	4,668,888	5	20	50	1,393	0	0	84	915	65	1,646	3,043	17,814
공주시	2,948	47,219	90	5,534	79	103,772	405	3,308,623	7	25	123	1,677	0	0	173	1,897	49	7,993	2,263	17,603
보령시	1,605	20,262	70	4,137	114	218,058	556	3,605,230	1	9	390	2,507	0	0	113	777	35	1,390	2,752	10,361
아산시	582	16,981	234	11,203	129	171,767	234	4,508,889	3	3	91	2,862	0	0	215	3,228	37	732	2,449	20,019
서산시	2,109	31,231	67	3,727	113	62,100	620	1,883,019	5	15	460	3,906	0	0	77	957	138	2,808	3,942	17,380
논산시	1,293	17,649	52	4,954	183	194,190	439	3,886,031	10	38	82	1,972	0	0	103	730	40	717	2,659	15,100
계룡시	35	578	0	0	2	3,500	43	2,622	0	0	19	1,548	0	0	6	29	11	196	139	7,292
금산군	684	8,330	20	1,951	35	22,982	359	394,925	7	18	69	2,340	0	0	26	294	90	764	3,328	12,595
연기군	784	19,021	52	3,911	54	68,423	326	2,093,611	3	4	50	821	0	0	22	360	48	621	1,393	9,211
부여군	1,625	20,715	45	3,118	66	93,709	621	3,821,022	3	9	389	2,812	2	14	105	994	72	6,323	3,001	11,165
서천군	813	11,155	24	1,725	42	20,725	586	1,948,759	5	20	288	2,005	0	0	95	681	61	800	1,630	7,574
청양군	1,950	21,025	9	561	54	49,906	335	2,132,120	3	3	155	2,017	0	0	58	541	36	312	1,775	5,435
홍성군	3,552	59,011	81	5,392	358	461,814	375	2,852,679	5	7	315	2,110	0	0	164	1,724	66	708	1,922	10,594
예산군	2,043	46,701	202	12,219	137	186,114	349	2,906,220	7	49	85	613	0	0	73	1,255	61	742	2,152	8,406
태안군	991	10,553	48	3,005	34	14,729	801	331,284	5	8	281	1,705	1	2	37	248	37	280	1,634	8,257
당진군	2,013	30,341	158	13,016	289	350,462	491	6,559,644	1	1	267	2,410	8	42	88	737	78	1,123	1,932	14,660
시군별	한옥우		젖소		돼지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수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충청북도	12,625	188,861	432	24,801	519	654,842	5,001	19,981,729	51	210	1,839	29,225	3	52	832	8,310	1,270	26,580	26,893	153,310
청주시	231	2,664	19	573	7	3,048	49	53,785	2	5	33	1,144	0	0	17	94	18	182	3,403	7,883

충주시	1,493	23,438	24	1,528	67	64,488	1,321	4,182,670	11	44	360	7,085	0	0	120	1,704	255	4,568	5,400	35,866
제천시	1,184	13,064	9	382	32	28,004	614	970,925	3	38	295	3,581	1	20	36	461	86	537	2,480	10,075
청원군	2,215	49,186	168	9,500	95	107,791	636	2,932,281	14	42	253	3,629	1	2	110	634	203	5,315	3,989	27,726
보은군	1,641	23,669	35	2,435	41	28,441	209	1,373,210	7	27	96	1,720	0	0	58	651	92	6,022	1,731	8,056
옥천군	1,293	15,089	10	549	25	15,483	351	1,192,187	1	2	55	1,034	0	0	43	349	170	2,640	2,122	9,535
영동군	768	8,719	21	1,179	30	28,023	371	816,525	1	8	82	2,109	0	0	49	981	127	917	1,736	6,664
증평군	300	4,020	12	740	24	32,080	79	524,677	2	5	50	486	0	0	44	153	25	229	307	1,621
진천군	1,147	14,452	70	4,361	78	148,511	289	1,335,665	2	2	64	1,973	1	30	125	1,344	52	3,451	1,271	15,508
괴산군	1,129	14,338	13	671	63	89,414	519	2,247,386	5	33	347	3,397	0	0	110	914	128	1,123	1,860	10,607
음성군	680	15,890	50	2,840	39	99,897	243	3,787,396	2	3	81	1,454	0	0	99	735	77	971	1,392	15,885
단양군	544	4,332	1	43	18	9,662	320	565,022	1	1	123	1,613	0	0	21	290	37	625	1,202	3,884

첨부 1. 전국 시군별 가축 통계(2008년 12월 기준)

시군별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전국	7,184	10,513,308	713	10,892	1,241	13,747	173	12,648,033	36,217	1,889,514	367	111,593	231	2,770	123	5,977	269	625,545	12	3,553	101	357,994
서울특별시	3	87	0	0	0	0	0	0	177	28,895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47	287,646	2	3	10	80	5	153,000	243	36,950	6	891	0	0	0	0	1	256	0	0	0	0
대구광역시	42	3,167	0	0	0	0	2	215,000	596	41,682	21	361	0	0	0	0	2	18,750	0	0	0	0
대전광역시	52	1322	6	14	17	282	0	0	236	25630	14	433	5	44	0	0	0	0	0	0	0	0
동 구	10	278	0	0	2	48	0	0	15	3972	2	20	0	0	0	0	0	0	0	0	0	0
중 구	3	70	0	0	1	25	0	0	35	4646	0	0	0	0	0	0	0	0	0	0	0	0
서 구	4	66	0	0	4	12	0	0	41	6777	0	0	2	2	0	0	0	0	0	0	0	0
유성구	17	199	4	12	9	195	0	0	55	4746	5	348	2	33	0	0	0	0	0	0	0	0
대덕구	18	709	2	2	1	2	0	0	90	5489	7	65	1	9	0	0	0	0	0	0	0	0
시군별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부산광역시	58	24,920	2	15	9	305	0	0	122	18,323	19	2,145	1	2	0	0	1	300	0	0	19	15,881
울산광역시	85	7,488	5	17	16	62	1	150,000	484	25,120	0	0	1	5	1	15	14	11,988	0	0	0	0
인천광역시	150	4,705	33	88	33	88	52	383,179	69	9,550	52	383,179	2	13	0	0	52	383,179	0	0	0	0
중구	10	416	0	0	0	0	0	0	1	300	0	0	0	0	0	0	0	0	0	0	0	0
동구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구	2	6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수구	9	564	0	0	0	0	4	5	0	0	4	5	1	9	0	0	4	5	0	0	0	0
남동구	2	62	2	7	2	7	2	35	20	3,870	2	35	1	4	0	0	2	35	0	0	0	0
부평구	9	214	0	0	0	0	25	48	9	1,272	25	48	0	0	0	0	25	48	0	0	0	0
계양구	1	20	0	0	0	0	0	0	9	1,060	0	0	0	0	0	0	0	0	0	0	0	0
서구	8	2,541	2	7	2	7	8	220,023	10	1,560	8	220,023	0	0	0	0	8	220,023	0	0	0	0
강화군	92	705	22	52	22	52	13	163,068	20	1,862	13	163,068	0	0	0	0	13	163,068	0	0	0	0
옹진군	16	114	7	22	7	22	0	0	1	140	0	0	0	0	0	0	0	0	0	0	0	0
시군별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강원도	785	24,573	122	528	163	1,123	4	123,000	5,067	149,168	63	1,668	7	94	23	535	29	46,526	2	200	5	23,010
춘천시	64	6,063	7	30	7	13	0	0	430	9,914	2	282	1	2	0	0	7	44,117	0	0	1	4,960

원주시	85	591	17	64	13	45	0	60,000	297	20,315	6	130	1	2	1	15	3	1,320	0	0	1	10,600
강릉시	102	5,231	5	19	21	75	0	0	234	9,809	2	66	2	76	6	161	0	0	2	200	0	0
동해시	42	307	14	32	15	34	1	30,000	73	4,526	25	217	0	0	1	38	5	21	0	0	0	0
태백시	5	65	6	20	5	13	0	0	94	2,471	6	80	1	2	0	0	1	2	0	0	0	0
속초시	14	208	2	3	2	3	0	0	16	805	1	10	0	0	0	0	0	0	0	0	0	0
삼척시	49	498	6	15	9	36	0	0	354	7,644	0	0	1	10	8	265	0	0	0	0	0	0
홍천군	77	5,375	17	75	18	38	0	0	859	10,720	2	410	0	0	0	0	1	300	0	0	1	6,000
횡성군	48	355	8	31	10	673	2	33,000	497	11,212	2	148	0	0	0	0	3	675	0	0	1	250
영월군	60	392	9	23	6	21	0	0	298	11,832	0	0	0	0	1	11	2	12	0	0	0	0
평창군	24	280	3	6	15	48	0	0	464	8,499	9	43	0	0	1	10	2	21	0	0	0	0
정선군	24	136	-	-	2	4	0	0	341	7,224	0	0	0	0	1	8	4	28	0	0	0	0
철원군	30	581	8	19	5	8	0	0	104	12,440	0	0	0	0	1	10	0	0	0	0	1	1,200
화천군	40	2,698	3	124	5	12	0	0	204	4,978	0	0	0	0	1	2	0	0	0	0	0	0
양구군	11	116	2	4	3	7	0	0	136	8,346	2	250	0	0	0	0	1	30	0	0	0	0
인제군	14	222	-	23	3	7	0	0	440	9,277	0	0	1	2	0	0	0	0	0	0	0	0
고성군	53	870	5	31	13	53	0	0	68	2,307	6	32	0	0	1	10	0	0	0	0	0	0
양양군	43	585	5	9	11	33	0	0	158	6,849	0	0	0	0	1	5	0	0	0	0	0	0
시군별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끝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경기도	507	629927	79	6914	89	443	50	3801000	1911	109,556	38	11,519	43	691	8	1848	36	94860	0	0	0	0
수원시	8	98	2	23	0	0	3	94,000	42	9,214	1	55	1	18	0	0	0	0	0	0	0	0
성남시	7	213	2	19	0	0	0	0	44	3,959	0	0	0	0	0	0	1	104	0	0	0	0
부천시	3	110	1	3	1	3	0	0	11	1,350	0	0	1	2	0	0	0	0	0	0	0	0
안양시	1	2,500	0	0	0	0	0	0	15	1,800	0	0	0	0	0	0	0	0	0	0	0	0
안산시	4	300	1	2	0	0	0	0	32	3,028	0	0	0	0	0	0	6	11550	0	0	0	0
용인시	54	55,161	5	20	8	53	3	149,000	99	4,598	5	1,883	2	60	0	0	5	2084	0	0	1	
평택시	15	10,100	3	6	7	103	0	0	42	4,250	1	1,500	1	2	0	0	2	28000	0	0	0	0
광명시	8	390	2	9	4	11	0	0	7	619	5	270	2	6	0	0	1	300	0	0	0	0
시흥시	11	4,170	1	10	1	4	0	0	20	2,563	0	0	1	14	0	0	5	10550	0	0	0	0
군포시	3	140	0	0	0	0	0	0	5	334	0	0	0	0	0	0	0	0	0	0	0	0
화성시	83	74,242	16	3,075	19	63	0	0	127	6,115	3	34	7	199	2	1102	8	26514	0	0	5	
이천시	32	141,788	4	13	7	21	2	128,000	69	6,213	0	0	5	98	0	0	1	1000	0	0	2	
김포시	30	13,490	6	22	5	13	8	890,000	15	780	0	0	2	19	0	0	0	0	0	0	0	0
광주시	32	923	3	21	1	4	1	80,000	91	5,594	1	45	0	0	2	24	1	1	0	0	0	0

안성시	32	122,298	3	1,504	7	58	0	0	104	6,278	1	5	2	2	1	2	2	14500	0	0	0	0
하남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왕시	2	62	0	0	0	0	0	0	27	2,750	0	0	2	4	0	0	0	0	0	0	0	0
오산시	4	13	1	2	1	1	0	0	9	618	0	0	0	0	0	0	0	0	0	0	0	0
여주군	11	43,571	3	8	1	2	18	1,325,000	115	8,218	0	0	1	15	0	0	1	27	0	0	6	0
양평군	19	10,316	4	26	5	9	7	400,000	351	4,442	3	250	4	30	0	0	0	0	0	0	0	0
과천시	2	112	1	19	0	0	0	0	13	441	2	16	0	0	0	0	0	0	0	0	0	0
고양시	9	35,336	3	16	2	27	1	100,000	8	1,344	2	4	3	6	1	650	0	0	0	0	0	0
의정부	1	800	0	0	0	0	0	0	44	3,703	0	0	0	0	0	0	0	0	0	0	0	0
남양주	17	25,518	2	6	1	2	4	290,000	73	6,115	1	29	1	3	0	0	0	0	0	0	0	0
파주시	37	2,130	13	2,100	8	22	1	85,000	60	3,404	5	5461	5	115	0	0	3	230	0	0	1	
구리시	0	0	0	0	0	0	0	0	15	1,525	0	0	0	0	0	0	0	0	0	0	0	0
포천시	50	27,118	0	0	4	12	1	200,000	69	4,977	5	98	2	58	0	0	0	0	0	0	0	0
양주시	10	55,800	0	0	0	0	0	0	20	2,264	1	100	1	40	1	30	0	0	0	0	0	0
동두천	0	0	0	0	1	20	0	0	33	1,705	0	0	0	0	0	0	0	0	0	0	0	0
가평군	9	39	1	6	2	7	0	0	276	5,900	1	780	0	0	1	40	0	0	0	0	0	0
연천군	13	3,189	2	4	4	8	1	60,000	75	5,455	1	989	0	0	0	0	0	0	0	0	0	0
시군별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끝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경상남도	488	307993	55	270	122	517	14	1810000	5460	270903	54	30308	18	233	22	1006	23	100507	0	0	29	78763
창원시	23	934	2	4	5	23	2	300000	113	12792	4	119	0	0	0	0	1	300	0	0	0	0
마산시	21	231	1	1	15	68	0	0	126	6438	5	164	0	0	0	0	3	2315	0	0	0	0
진주시	31	37825	7	113	8	15	2	170000	232	29002	3	2023	2	13	1	8	0	0	0	0	0	0
진해시	28	927	8	30	7	15	2	50000	43	6446	4	25	1	2	0	0	1	9	0	0	0	0
통영시	15	78	5	14	5	15	0	0	59	2545	1	1	0	0	0	0	0	0	0	0	0	0
사천시	37	10585	1	3	3	21	0	0	148	6037	3	704	1	10	1	5	0	0	0	0	0	0
김해시	22	16377	2	8	4	13	1	50000	97	9763	0	0	0	0	0	0	2	4000	0	0	22	60625
밀양시	13	1302	2	8	2	4	1	100000	443	12863	4	120	1	3	1	3	4	4270	0	0	0	0
거제시	26	293	6	16	12	33	0	0	96	1178	4	1294	1	8	2	65	2	52	0	0	0	0
양산시	19	611	1	3	8	20	3	320000	79	2666	0	0	4	4	0	0	5	29510	0	0	1	300
의령군	20	799	5	11	9	18	1	400000	289	11322	5	2031	0	0	3	60	2	20010	0	0	0	0
함안군	23	7448	1	3	1	1	0	0	88	3382	2	207	3	62	0	0	0	0	0	0	2	3661
창녕군	10	35600	2	12	5	128	1	390000	174	23998	16	18607	2	22	1	50	1	40	0	0	1	3967
고성군	22	164	2	10	2	2	0	0	197	7749	0	0	0	0	1	20	0	0	0	0	0	0

남해군	13	1268	1	3	1	2	0	0	129	1178	0	0	0	0	0	0	0	0	0	0	0	0	0
하동군	46	249	2	3	10	24	0	0	446	16842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청군	34	228	2	2	5	14	1	30000	749	34920	0	0	2	101	10	681	1	40000	0	0	0	0	0
함양군	30	5811	0	0	7	45	0	0	935	31391	0	0	1	8	0	0	1	1	0	0	0	2	7900
거창군	42	187168	5	26	11	51	0	0	386	16599	0	0	0	0	0	0	0	0	0	0	0	1	2310
합천군	13	95	0	0	2	5	0	0	631	33792	3	5013	0	0	2	114	0	0	0	0	0	0	0
시군별	오 리		칠면조		거 위		메추리		꿀 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누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경상북도	433	169551	67	424	107	460	20	1811415	7707	402481	12	2996	18	75	19	1597	49	124589	1	4	2	5586	
포항시	33	1041	1	2	2	22	1	10000	398	16389	0	0	1	5	0	0	0	0	0	0	0	0	0
경주시	25	43379	5	7	1	2	8	579400	371	24510	3	714	1	1	0	0	0	0	0	0	0	0	0
김천시	13	1143	1	2	4	19	0	0	508	20047	0	0	0	0	4	460	0	0	0	0	0	0	0
안동시	25	575	9	73	11	69	1	80000	611	33309	1	125	3	5	5	213	8	8974	1	4	0	0	0
구미시	11	2222	1	5	1	10	0	0	268	22241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주시	13	102	6	13	4	8	0	0	260	1557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천시	15	19395	2	7	2	4	2	550000	435	15637	2	1540	1	3	1	150	5	2910	0	0	0	0	0
상주시	53	483	11	33	17	39	1	65000	580	31845	0	0	3	8	1	13	2	14	0	0	1	2644	
문경군	19	3354	3	36	3	8	0	0	254	11506	1	250	0	0	0	0	1	1200	0	0	0	0	0
경산군	8	3218	0	0	0	0	1	20000	102	5198	1	300	1	2	0	0	13	42000	0	0	0	0	0
군위군	17	252	0	0	5	26	0	0	334	22961	0	0	0	0	0	0	1	20000	0	0	0	0	0
의성군	30	306	2	6	16	42	0	0	508	31128	1	39	1	1	1	17	4	2200	0	0	0	0	0
청송군	10	136	0	0	1	3	0	0	94	3988	0	0	1	8	1	7	0	0	0	0	0	0	0
영양군	16	76	1	1	2	11	0	0	261	13236	0	0	0	0	2	29	1	19	0	0	0	0	0
영덕군	15	2660	1	2	1	2	0	0	271	23166	0	0	0	0	3	68	0	0	0	0	0	0	0
청도군	7	132	1	4	4	14	0	0	215	11065	0	0	2	17	0	0	3	6116	0	0	0	0	0
고령군	8	4007	0	0	2	50	0	0	156	7231	1	10	0	0	1	640	2	11000	0	0	0	0	0
성주군	16	6326	5	41	6	61	1	15	816	40408	2	18	1	3	0	0	4	116	0	0	0	0	0
칠곡군	23	1753	1	4	4	13	5	507000	386	15699	0	0	0	0	0	0	2	30025	0	0	1	2942	
예천군	23	73113	7	27	13	37	0	0	318	16792	0	0	0	0	0	0	2	12	0	0	0	0	0
봉화군	38	5645	8	154	5	15	0	0	379	7060	0	0	3	22	0	0	1	3	0	0	0	0	0
울진군	13	226	2	7	2	4	0	0	159	12892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릉군	2	7	0	0	1	1	0	0	23	603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군별	오 리		칠면조		거 위		메추리		꿀 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누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전라남도	1048	5764912	51	202	134	394	10	492000	4508	219918	30	38883	18	286	17	844	20	28277	0	0	4	19163
목포	0	0	0	0	0	0	0	0	34	11428	0	0	0	0	0	0	0	0	0	0	0	0
여수	37	451	0	0	2	3	0	0	80	2434	3	360	2	26	0	0	0	0	0	0	0	0
순천	27	130743	2	3	1	9	1	50000	297	9219	4	177	3	10	0	0	0	0	0	0	0	0
나주	106	1431097	4	10	16	52	0	0	295	14412	1	30000	0	0	4	295	1	150	0	0	1	11300
광양	32	678	4	48	6	13	0	0	206	10141	2	17	3	5	3	17	3	10035	0	0	0	0
담양	31	127716	1	4	6	16	0	0	127	9056	1	7000	0	0	1	6	3	16004	0	0	0	0
곡성	34	261847	2	4	1	3	3	205000	352	26214	4	392	0	0	1	4	2	129	0	0	0	0
구례	45	349684	0	0	1	2	0	0	692	20982	0	0	0	0	0	0	0	0	0	0	0	0
고흥	91	28775	0	0	3	24	0	0	203	8333	0	0	0	0	0	0	0	0	0	0	0	0
보성	92	147012	5	13	19	41	0	0	395	16010	0	0	2	21	1	56	1	100	0	0	0	0
화순	47	1127	7	18	9	30	5	227000	492	13547	0	0	1	2	1	100	0	0	0	0	0	0
장흥	55	705304	5	32	5	12	0	0	208	7587	6	300	0	0	0	0	2	115	0	0	2	6210
강진	81	137768	1	2	8	20	0	0	161	6677	0	0	0	0	2	12	0	0	0	0	0	0
해남	69	84424	4	20	13	50	0	0	156	12722	3	45	1	1	1	45	3	12	0	0	0	0
영암	73	1080984	0	0	4	6	0	0	94	7631	1	20	1	2	0	0	0	0	0	0	0	0
무안	36	478570	1	3	1	2	0	0	96	10127	0	0	0	0	0	0	0	0	0	0	0	0
함평	46	533807	6	17	20	57	0	0	147	8968	3	44	2	167	3	309	2	220	0	0	1	1653
영광	46	62187	5	13	10	29	0	0	132	7181	0	0	1	32	0	0	0	0	0	0	0	0
장성	52	91806	4	15	1	4	1	10000	268	8768	2	528	0	0	0	0	3	1512	0	0	0	0
완도	13	286	0	0	0	0	0	0	10	812	0	0	0	0	0	0	0	0	0	0	0	0
진도	9	96006	0	0	1	2	0	0	31	5305	0	0	1	1	0	0	0	0	0	0	0	0
신안	26	14640	0	0	7	19	0	0	32	2364	0	0	1	19	0	0	0	0	0	0	0	0
시군별	오 기		칠면조		거 위		메추리		꿀 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전라북도	3,234	6,149,072	454	3,047	769	5,985	70	6,797,224	14,718	1,025,075	36	17,656	21	571	9	220	31	54,932	0	0	7	12,462
전주시	18	2,419	6	46	6	43	0	0	90	18,173	2	250	3	7	1	1	5	119	0	0	0	0
군산시	57	4,654	14	204	35	130	0	0	69	3,670	8	1,383	0	0	0	0	3	720	0	0	0	0
익산시	28	13,194	4	21	16	89	0	0	185	13,247	3	513	1	8	0	0	1	5	0	0	3	8,403
정읍시	76	553,625	5	15	6	30	2	170,000	283	19,356	0	0	2	453	0	0	0	0	0	0	0	0
남원시	71	623,162	4	9	4	7	0	0	654	50,747	5	1,069	0	0	1	10	3	48,001	0	0	0	0
김제시	51	234,932	3	8	9	31	1	300,000	81	6,012	5	13,059	1	36	0	0	1	12	0	0	1	1,700
완주군	33	1,225	5	25	4	13	2	320,000	218	20,978	3	358	1	3	1	20	2	5,010	0	0	1	1,650
진안군	55	30,545	15	116	14	65	2	400,000	342	16,106	5	41	6	48	3	7	5	206	0	0	1	49

무주군	35	7,447	0	0	0	0	0	0	156	4,803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15	90,560	1	2	5	15	0	0	336	9,572	0	0	2	3	1	2	0	0	0	0	0	0
임실군	37	26,355	7	15	9	26	0	0	351	16,117	4	903	2	5	1	130	0	0	0	0	0	0
순창군	37	112,282	3	31	8	17	1	28,000	653	17,578	1	80	0	0	0	9	851	0	0	0	0	0
고창군	53	430,831	10	18	11	27	1	70,000	221	14,901	0	0	3	8	0	0	2	8	0	0	0	0
부안군	58	338,271	3	27	8	26	1	42,000	91	9,685	0	0	0	0	1	50	0	0	0	0	1	660
시군별	오 리		칠면조		거 위		메추리		꿀 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제주도	22	38,890	2	14	4	606	1	50,500	409	66,912	3	535	9	162	7	93	10	43,093	0	0	2	1,996
제주시	19	38,676	2	14	4	606	1	50,500	159	22,149	3	535	6	148	5	73	6	16,093	0	0	2	1,996
서귀포시	3	214	0	0	0	0	0	0	250	44,763	0	0	3	14	2	20	4	27,000	0	0	0	0
시군별	오 리		칠면조		거 위		메추리		꿀 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충청남도	752	372,700	100	844	184	1,351	19	1,899,112	2,450	162,652	37	7,188	30	216	4	14	11	10,255	3	941	0	0
천안시	34	190,929	3	41	14	101	3	180,000	120	12,316	7	190	0	0	1	6	0	0	0	0	1	
공주시	40	10,386	3	33	13	35	3	635,000	326	16,676	2	356	2	34	0	0	1	10,000	0	0	0	0
보령시	65	2,527	5	7	7	21	0	0	97	5,134	2	791	0	0	1	3	0	0	0	0	1	
아산시	30	47,851	7	40	8	33	3	380,000	70	11,709	3	404	2	4	0	0	0	0	0	0	2	
서산시	94	20,824	13	26	33	65	1	12	161	4,905	4	74	5	14	1	3	1	21	0	0	1	
논산시	21	21,607	8	40	12	143	5	400,100	207	17,244	6	2,212	4	74	0	0	2	18	0	0	0	0
계룡시	13	5,297	1	5	0	0	0	0	37	4,42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산군	63	1,996	13	40	2	5	0	0	247	10,310	2	3	1	2	1	2	0	0	0	0	0	0
연기군	34	22,581	5	324	10	60	0	0	115	8,539	2	22	4	15	0	0	2	195	1	933	0	0
부여군	65	3,648	6	14	6	13	0	0	285	15,711	4	416	2	5	0	0	3	10	0	0	0	0
서천군	47	488	9	32	17	60	1	20,000	172	8,789	1	18	3	6	0	0	0	0	2	8	0	0
청양군	41	20,548	10	33	11	36	0	0	160	9,471	0	0	1	2	0	0	0	0	0	0	0	0
홍성군	74	18,263	4	55	7	191	0	0	173	12,121	1	2	0	0	0	0	0	0	0	0	1	
예산군	45	4,942	3	134	13	448	1	54,000	157	11,896	1	1,200	2	4	0	0	1	6	0	0	4	
태안군	40	458	3	5	11	91	1	150,000	20	947	1	500	2	53	0	0	0	0	0	0	0	0
당진군	46	355	7	15	20	49	1	80,000	103	12,464	1	1,000	2	3	0	0	1	5	0	0	3	
시군별	오 리		칠면조		거 위		메추리		꿀 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뉴트리아		지렁이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군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충청북도	531	1,428,195	85	397	129	776	10	784,000	2,635	172,501	39	6,021	18	122	8	126	26	11,092	2	700	0	0
청주시	8	7,703	3	14	3	12	0	0	77	16,388	5	245	2	19	0	0	0	0	0	0	0	0

충주시	136	115,855	19	62	31	196	0	0	393	24,617	10	996	1	3	1	7	8	5,609	1	450	0	0
제천시	35	3,778	5	31	8	25	0	0	225	8,642	0	0	0	0	1	50	2	13	1	250	0	0
청원군	88	110,319	20	120	25	313	2	330,000	358	36,478	0	0	3	6	1	2	6	212	0	0	0	0
보은군	13	205	0	0	9	81	1	110,000	238	20,538	2	1,505	1	5	0	0	1	2	0	0	0	0
옥천군	27	561	6	11	8	17	1	100,000	243	14,353	4	138	1	2	1	2	4	5,203	0	0	1	
영동군	17	19,157	9	48	11	47	0	0	354	9,422	3	150	1	2	0	0	1	25	0	0	1	
증평군	10	7,112	2	22	6	17	1	24,000	32	3,301	0	0	1	2	1	25	0	0	0	0	0	0
진천군	58	417,273	4	10	7	14	0	0	125	7,305	1	17	3	13	0	0	0	0	0	0	0	0
괴산군	40	42,278	8	51	12	35	0	0	215	12,417	7	1,535	1	9	3	40	1	5	0	0	2	
음성군	68	703,579	6	17	4	8	5	220,000	120	12,597	4	1,409	1	52	0	0	1	7	0	0	1	
단양군	31	375	3	11	5	11	0	0	255	6,443	3	26	3	9	0	0	2	16	0	0	0	0

첨부 2. 전국 시군별 젖소 단위 (2008년 12월 기준)

시군별	한육우	젖소단위	젖소	산양	젖소단위	면양	젖소단위	시슴	젖소단위	젖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전국	2,430,389	729,117	445,754	372,447	18,622	1,800	90	97,856	9,786	1,203,369
서울특별시	417	125	99	155	8		0	145	15	246
광주광역시	4,821	1,446	684	771	39	0	0	205	21	2,189
대구광역시	16,895	5,069	3,035	3205	160	0	0	270	27	8,291
대전광역시	4,866	1,460	10	988	49	20	1	149	15	1,535
대전광역시	4893	1,468	38	988	49	20	1	149	15	1,571
동 구	257	77	0	200	10	0	0	2	0	87
중 구	632	190	0	243	12	0	0	26	3	204
서 구	2076	623	0	107	5	5	0	34	3	632
유성구	1851	555	38	228	11	0	0	74	7	612
대덕구	101	30	0	210	11	15	1	13	1	43
시군별	한육우	젖소단위	젖소	산양	젖소단위	면양	젖소단위	시슴	젖소단위	젖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부산광역시	1,874	562	619	1564	78	0	0	456	46	1,305
울산광역시	23,589	7,077	1,088	3077	154	0	0	1124	112	8,431
인천광역시	17,877	5,363	3,648	3,261	163		0	1,672	167	9,341
인천광역시	20,158	6,047	4,006	3,261	163		0	1,672	167	10,384
중구	316	95	0	168	8		0	201	20	123
동구		0			0		0		0	0
남구		0			0		0		0	0
연수구	6	2	0	0	0		0	20	2	4
남동구	191	57	377	96	5		0	178	18	457
부평구	0	0	0	0	0		0	19	2	2
계양구	649	195	827	120	6		0	38	4	1,032
서구	577	173	372	147	7		0	258	26	578
강화군	18,278	5,483	2,430	483	24		0	626	63	8,000
옹진군	141	42	0	2,247	112		0	332	33	188
시군별	한육우	젖소단위	젖소	산양	젖소단위	면양	젖소단위	시슴	젖소단위	젖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강원도	196,820	59,046	16,766	18,310	916	1,071	54	9,230	923	77,704
강원도	196,248	58,874	20,181	18,310	916	1,071	54	9,230	923	80,947
춘천시	19,072	5,722	1,052	2,282	114	0	0	709	71	6,959
원주시	12,088	3,626	1,475	1,820	91	0	0	483	48	5,241
강릉시	8,941	2,682	846	1,300	65	0	0	659	66	3,659
동해시	1,583	475	0	369	18	4	0	137	14	507
태백시	1,536	461	0	355	18	0	0	727	73	551
속초시	594	178	0	52	3	0	0	116	12	192
삼척시	10,839	3,252	0	1,160	58	0	0	468	47	3,357
홍천군	24,460	7,338	2,002	935	47	0	0	805	81	9,467
횡성군	38,813	11,644	3,103	896	45	0	0	541	54	14,846
영월군	11,276	3,383	0	2,303	115	0	0	285	29	3,526
평창군	15,008	4,502	2,269	2,315	116	961	48	1,021	102	7,037
정선군	8,950	2,685	67	1,286	64	77	4	174	17	2,838
철원군	11,881	3,564	9,062	682	34	29	1	616	62	12,723
화천군	6,314	1,894	272	748	37	0	0	1,357	136	2,339
양구군	7,106	2,132	0	62	3	0	0	257	26	2,161
인제군	5,344	1,603	33	593	30	0	0	323	32	1,698

고성군	7,024	2,107	0	612	31	0	0	342	34	2,172
양양군	5,419	1,626	0	540	27	0	0	210	21	1,674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시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경기도	240,428	72,128	174,992	17001	850	45	2	16658	1,666	249,639
경기도	249052	74,716	183043	17001	850	45	2	16658	1,666	260,277
수원시	537	161	602	107	5	1	0	30	3	772
성남시	54	16	0	0	0	0	0	21	2	18
부천시	182	55	52	26	1	0	0	33	3	111
안양시	42	13	0	0	0	0	0	30	3	16
안산시	1286	386	726	419	21	0	0	527	53	1,185
용인시	11356	3,407	3239	2831	142	4	0	1275	128	6,915
평택시	11274	3,382	16902	485	24	0	0	710	71	20,379
광명시	1199	360	96	37	2	0	0	91	9	467
시흥시	3045	914	817	364	18	0	0	345	35	1,783
군포시	554	166	17	130	7	0	0	255	26	215
화성시	19934	5,980	29327	4420	221	7	0	1606	161	35,689
이천시	16537	4,961	22445	811	41	0	0	949	95	27,542
김포시	7072	2,122	2750	0	0	0	0	315	32	4,903
광주시	4402	1,321	1426	125	6	0	0	685	69	2,821
안성시	74032	22,210	16969	806	40	33	2	666	67	39,287
하남시	512	154	315	300	15	0	0	72	7	491
의왕시	312	94	75	4	0	0	0	100	10	179
오산시	561	168	268	0	0	0	0	38	4	440
여주군	14280	4,284	12195	991	50	0	0	550	55	16,584
양평군	19948	5,984	4457	219	11	0	0	1591	159	10,611
파천시	380	114	22	0	0	0	0	76	8	144
고양시	4997	1,499	5205	201	10	0	0	447	45	6,759
의정부	234	70	178	889	44	0	0	204	20	313
남양주	10050	3,015	6324	627	31	0	0	1313	131	9,502
파주시	11150	3,345	15273	936	47	0	0	1017	102	18,767
구리시	108	32	178	25	1	0	0	21	2	214
포천시	11250	3,375	16651	1236	62	0	0	1678	168	20,256
양주시	7305	2,192	11002	239	12	0	0	631	63	13,269
동두천	918	275	1143	10	1	0	0	235	24	1,442
가평군	8326	2,498	3193	523	26	0	0	778	78	5,795
연천군	7215	2,165	11196	240	12	0	0	369	37	13,409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시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경상남도	258,240	77,472	28,056	56960	2,848	64	3	7665	767	109,146
경상남도	304669	91,401	31892	56960	2,848	64	3	7665	767	126,910
창원시	4993	1,498	2665	1225	61	0	0	219	22	4,246
마산시	6928	2,078	911	1878	94	0	0	222	22	3,106
진주시	11188	3,356	2225	6495	325	0	0	1254	125	6,032
진해시	327	98	0	807	40	0	0	222	22	161
통영시	2988	896	0	5065	253	0	0	229	23	1,173
사천시	14207	4,262	3574	4175	209	0	0	411	41	8,086
김해시	22846	6,854	2293	727	36	0	0	305	31	9,214
밀양시	24710	7,413	1269	3313	166	0	0	216	22	8,869
거제시	4392	1,318	0	1724	86	0	0	334	33	1,437
양산시	4543	1,363	2208	1317	66	64	3	762	76	3,716

의령군	14019	4,206	2443	1643	82	0	0	263	26	6,757
함안군	12553	3,766	2996	1638	82	0	0	345	35	6,878
창녕군	24667	7,400	2861	687	34	0	0	192	19	10,315
고성군	25067	7,520	3293	2916	146	0	0	476	48	11,007
남해군	15729	4,719	508	7717	386	0	0	153	15	5,628
하동군	20164	6,049	1831	3493	175	0	0	414	41	8,096
산청군	12586	3,776	1074	4200	210	0	0	802	80	5,140
함양군	13960	4,188	562	2933	147	0	0	464	46	4,943
거창군	30668	9,200	915	2771	139	0	0	84	8	10,262
합천군	38134	11,440	264	2236	112	0	0	298	30	11,846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사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경상북도	486,847	146,054	41,320	39599	1,980	20	1	7655	766	190,121
경상북도	559,619	167,886	41130	39599	1,980	20	1	7655	766	211,762
포항시	19,921	5,976	1844	1180	59	0	0	462	46	7,926
경주시	63,109	18,933	13450	1437	72	0	0	765	77	32,531
김천시	27,153	8,146	4341	4538	227	0	0	562	56	12,770
안동시	41,882	12,565	540	2468	123	0	0	435	44	13,272
구미시	34,160	10,248	1364	980	49	0	0	295	30	11,691
영주시	41,576	12,473	1340	777	39	0	0	458	46	13,897
영천시	33,502	10,051	2793	2162	108	0	0	331	33	12,985
상주시	55,345	16,604	3101	2169	108	0	0	774	77	19,890
문경군	27,615	8,285	2105	2406	120	0	0	456	46	10,555
경산군	28,114	8,434	2991	1384	69	0	0	180	18	11,512
군위군	13,116	3,935	1024	218	11	0	0	273	27	4,997
의성군	30,233	9,070	848	1047	52	0	0	436	44	10,014
청송군	5,928	1,778	430	548	27	0	0	47	5	2,241
영양군	4,053	1,216	224	4521	226	0	0	331	33	1,699
영덕군	5,694	1,708	257	741	37	0	0	125	13	2,015
청도군	22,280	6,684	932	1589	79	0	0	108	11	7,706
고령군	16,537	4,961	742	342	17	0	0	80	8	5,728
성주군	13,419	4,026	986	3453	173	20	1	446	45	5,230
칠곡군	11751	3,525	1021	2056	103	0	0	331	33	4,682
예천군	39821	11,946	641	2745	137	0	0	232	23	12,748
봉화군	14729	4,419	156	2104	105	0	0	379	38	4,718
울진군	8978	2,693	0	340	17	0	0	128	13	2,723
울릉군	703	211	0	394	20	0	0	21	2	233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사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전라남도	404,882	121,465	31,619	55436	2,772	148	7	9212	921	156,784
전라남도	424940	127,482	36712	55436	2,772	148	7	9212	921	167,894
목포	455	137	0	566	28	0	0	30	3	168
여수	10153	3,046	0	5083	254	0	0	251	25	3,325
순천	17677	5,303	4542	1493	75	0	0	332	33	9,953
나주	33928	10,178	8845	1822	91	6	0	1089	109	19,224
광양	5203	1,561	202	3943	197	0	0	167	17	1,977
담양	27726	8,318	1521	1151	58	79	4	450	45	9,945
곡성	12029	3,609	1357	1131	57	0	0	269	27	5,049
구례	8400	2,520	410	1718	86	0	0	172	17	3,033
고흥	30735	9,221	1854	2055	103	0	0	630	63	11,240
보성	20362	6,109	2547	5139	257	50	3	655	66	8,981

화순	10675	3,203	1334	7310	366	0	0	678	68	4,970
장흥	44803	13,441	441	2288	114	0	0	501	50	14,046
강진	24947	7,484	267	2573	129	13	1	217	22	7,902
해남	25579	7,674	1491	900	45	0	0	272	27	9,237
영암	29958	8,987	4151	3998	200	0	0	383	38	13,377
무안	34851	10,455	857	1971	99	0	0	342	34	11,445
함평	28240	8,472	4577	847	42	0	0	668	67	13,158
영광	17203	5,161	1417	1670	84	0	0	593	59	6,721
장성	15644	4,693	899	2031	102	0	0	965	97	5,790
완도	11613	3,484	0	1887	94	0	0	201	20	3,598
진도	3490	1,047	0	188	9	0	0	131	13	1,070
신안	11269	3,381	0	5672	284	0	0	216	22	3,686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사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전라북도	273,862	82,159	34,278	59,672	2,984	300	15	9,747	975	120,410
전라북도	294,147	88,244	39,728	29,908	1,495	150	8	5,561	556	130,031
전주시	579	174	108	447	22	6	0	243	24	329
군산시	4,576	1,373	1,060	625	31	0	0	232	23	2,487
익산시	25,775	7,733	2,481	2,604	130	0	0	389	39	10,383
정읍시	60,190	18,057	8,716	743	37	142	7	663	66	26,884
남원시	32,099	9,630	3,171	2,742	137	0	0	173	17	12,955
김제시	35,828	10,748	2,980	1,276	64	2	0	676	68	13,860
완주군	24,167	7,250	2,866	1,352	68	0	0	391	39	10,223
진안군	7,795	2,339	1,043	2,989	149	0	0	261	26	3,557
무주군	6,879	2,064	440	1,398	70	0	0	180	18	2,592
장수군	24,859	7,458	192	2,993	150	0	0	224	22	7,822
임실군	18,268	5,480	5,013	5,623	281	0	0	182	18	10,793
순창군	17,870	5,361	1,118	6,267	313	0	0	281	28	6,820
고창군	15,294	4,588	8,473	705	35	0	0	291	29	13,126
부안군	19,968	5,990	2,067	144	7	0	0	1,375	138	8,202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사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제주도	26,814	8,044	4,907	921	46	24	1	857	86	13,084
제주도	34,869	10,461	5,408	921	46	24	1	857	86	16,002
제주시	20,790	6,237	5,110	561	28	24	1	657	66	11,442
서귀포시	14,079	4,224	298	360	18	0	0	200	20	4,560
시군별	한옥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사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충청남도	308,312	92,494	81,711	32,698	1,635	58	3	#####	1,537	177,379
충청남도	372,604	111,781	89,883	32,698	1,635	58	3	#####	1,537	204,839
천안시	11,832	3,550	15,430	1,393	70	0	0	915	92	19,141
공주시	47,219	14,166	5,534	1,677	84	0	0	1,897	190	19,973
보령시	20,262	6,079	4,137	2,507	125	0	0	777	78	10,419
아산시	16,981	5,094	11,203	2,862	143	0	0	3,228	323	16,763
서산시	31,231	9,369	3,727	3,906	195	0	0	957	96	13,387
논산시	17,649	5,295	4,954	1,972	99	0	0	730	73	10,420
계룡시	578	173	0	1,548	77	0	0	29	3	254
금산군	8,330	2,499	1,951	2,340	117	0	0	294	29	4,596
연기군	19,021	5,706	3,911	821	41	0	0	360	36	9,694
부여군	20,715	6,215	3,118	2,812	141	14	1	994	99	9,573
서천군	11,155	3,347	1,725	2,005	100	0	0	681	68	5,240

청양군	21,025	6,308	561	2,017	101	0	0	541	54	7,023
홍성군	59,011	17,703	5,392	2,110	106	0	0	1,724	172	23,373
예산군	46,701	14,010	12,219	613	31	0	0	1,255	126	26,385
태안군	10,553	3,166	3,005	1,705	85	2	0	248	25	6,281
당진군	30,341	9,102	13,016	2,410	121	42	2	737	74	22,315
시군별	한육우	젓소단위	젓소	산양	젓소단위	면양	젓소단위	시슴	젓소단위	젓소단위합계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충청북도	163,845	49,154	22,922	29,225	1,461	52	3	8,310	831	74,370
충청북도	188,861	56,658	24,801	29,225	1,461	52	3	8,310	831	83,754
청주시	2,664	799	573	1,144	57	0	0	94	9	1,439
충주시	23,438	7,031	1,528	7,085	354	0	0	1,704	170	9,084
제천시	13,064	3,919	382	3,581	179	20	1	461	46	4,527
청원군	49,186	14,756	9,500	3,629	181	2	0	634	63	24,501
보은군	23,669	7,101	2,435	1,720	86	0	0	651	65	9,687
옥천군	15,089	4,527	549	1,034	52	0	0	349	35	5,162
영동군	8,719	2,616	1,179	2,109	105	0	0	981	98	3,998
증평군	4,020	1,206	740	486	24	0	0	153	15	1,986
진천군	14,452	4,336	4,361	1,973	99	30	2	1,344	134	8,931
괴산군	14,338	4,301	671	3,397	170	0	0	914	91	5,234
음성군	15,890	4,767	2,840	1,454	73	0	0	735	74	7,753
단양군	4,332	1,300	43	1,613	81	0	0	290	29	1,452

첨부 3. 전국 시군별 적정수의사 수와 부족한 수의사 수

시군별	젓소단위(행정)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전국	1,314,833	1,052	935	117	1,406	24,951	30
서울특별시	246	0	0	0	0	33	
광주광역시	2,189	2	12	-10	182	37	
대구광역시	8,291	7	16	-9	518	76	
대전광역시	1,535	1	3	-2	512		
대전광역시	1,571	1	3	-2	524	50	
동 구	87	0	0	0	0	0	
중 구	204	0	1	-1	204	0	
서 구	632	1	0	1	0	5	
유성구	612	0	1	-1	612	45	
대덕구	43	0	1	-1	43	0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부산광역시	1,305	1	2	-1	653	944	
울산광역시	8,431	7	9	-2	937	65	
인천광역시	9,341	7	4	3	2,335		
인천광역시	10,384	8	4	4	2,596	111	
중구	123	0	0	0		14	
동구	0	0	0	0		0	
남구	0	0	0	0		0	
연수구	4	0	0	0		0	
남동구	457	0	0	0		44	
부평구	2	0	1	-1		0	
계양구	1,032	1	0	1		34	
서구	578	0	0	0		12	
강화군	8,000	6	2	4	4,000	8	
옹진군	188	0	1	-1	188	5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강원도	77,704	62	54	8	1,439		
강원도	80,947	65	54	11	1,499	394	2
춘천시	6,959	6	6	0	1,160	10	
원주시	5,241	4	2	2	2,621	57	
강릉시	3,659	3	3	0	1,220	22	
동해시	507	0	0	0		3	
태백시	551	0	2	-2	276	-	
속초시	192	0	1	-1	192	-	
삼척시	3,357	3	1	2	3,357	-	
홍천군	9,467	8	5	3	1,893	21	
횡성군	14,846	12	8	4	1,856	1	
영월군	3,526	3	5	-2	705	25	
평창군	7,037	6	6	0	1,173	186	
정선군	2,838	2	2	0	1,419	10	
철원군	12,723	10	5	5	2,545	8	
화천군	2,339	2	1	1	2,339	-	
양구군	2,161	2	2	0	1,081	3	
인제군	1,698	1	2	-1	849	45	

고성군	2,172	2	2	0	1,086	1	
양양군	1,674	1	1	0	1,674	2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경기도	249,639	200	116	84	2,152		
경기도	260,277	208	116	92	2,244	3264	10
수원시	772	1	5	-4	154	0	
성남시	18	0	0	0		2	
부천시	111	0	1	-1	111	64	
안양시	16	0	3	-3	5	0	
안산시	1,185	1	0	1		73	
용인시	6,915	6	7	-1	988	173	
평택시	20,379	16	8	8	2,547	20	
광명시	467	0	0	0		0	
시흥시	1,783	1	1	0	1,783	110	
군포시	215	0	0	0		71	
화성시	35,689	29	15	14	2,379	278	
이천시	27,542	22	8	14	3,443	186	
김포시	4,903	4	0	4		19	
광주시	2,821	2	2	0	1,411	30	
안성시	39,287	31	13	18	3,022	95	
하남시	491	0	0	0		97	
의왕시	179	0	0	0		0	
오산시	440	0	0	0		30	
여주군	16,584	13	5	8	3,317	9	
양평군	10,611	8	5	3	2,122	9	
과천시	144	0	0	0		1520	
고양시	6,759	5	1	4	6,759	4	
의정부	313	0	1	-1	313	5	
남양주	9,502	8	5	3	1,900	45	
파주시	18,767	15	11	4	1,706	105	
구리시	214	0	0	0		16	
포천시	20,256	16	10	6	2,026	201	
양주시	13,269	11	6	5	2,212	36	
동두천	1,442	1	2	-1	721	0	
가평군	5,795	5	4	1	1,449	3	
연천군	13,409	11	3	8	4,470	63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경상남도	109,146	87	136	-49	803		
경상남도	126,910	102	136	-34	933	222	3
창원시	4,246	3	3	0	1,415	17	
마산시	3,106	2	7	-5	444	15	
진주시	6,032	5	9	-4	670	3	
진해시	161	0	1	-1	161	6	
통영시	1,173	1	1	0	1,173	2	
사천시	8,086	6	8	-2	1,011	11	
김해시	9,214	7	7	0	1,316	24	
밀양시	8,869	7	9	-2	985	42	
거제시	1,437	1	2	-1	719	43	
양산시	3,716	3	6	-3	619	21	

의령군	6,757	5	5	0	1,351	0	
함안군	6,878	6	7	-1	983	10	
창녕군	10,315	8	12	-4	860	0	
고성군	11,007	9	7	2	1,572	0	
남해군	5,628	5	4	1	1,407	7	
하동군	8,096	6	6	0	1,349	6	
산청군	5,140	4	9	-5	571	9	
함양군	4,943	4	7	-3	706	0	
거창군	10,262	8	9	-1	1,140	5	
합천군	11,846	9	17	-8	697	1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기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경상북도	190,121	152	180	-28	1,056		
경상북도	211,762	169	180	-11	1,176	466	3
포항시	7,926	6	6	0	1,321	41	
경주시	32,531	26	28	-2	1,162	89	
김천시	12,770	10	8	2	1,596	5	
안동시	13,272	11	10	1	1,327	6	
구미시	11,691	9	8	1	1,461	42	
영주시	13,897	11	7	4	1,985	27	
영천시	12,985	10	10	0	1,299	23	
상주시	19,890	16	15	1	1,326	48	
문경군	10,555	8	7	1	1,508	51	
경산군	11,512	9	14	-5	822	14	
군위군	4,997	4	4	0	1,249	0	
의성군	10,014	8	10	-2	1,001	0	
청송군	2,241	2	5	-3	448	15	
영양군	1,699	1	2	-1	850	4	
영덕군	2,015	2	3	-1	672	8	
청도군	7,706	6	8	-2	963	3	
고령군	5,728	5	7	-2	818	18	
성주군	5,230	4	8	-4	654	7	
칠곡군	4,682	4	2	2	2,341	8	
예천군	12,748	10	9	1	1,416	14	
봉화군	4,718	4	5	-1	944	35	
울진군	2,723	2	3	-1	908	8	
울릉군	233	0	1	-1	233	0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기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전라남도	156,784	125	125	0	1,254		
전라남도	167,894	134	125	9	1,343	194	
목포	168	0	0	0		0	
여수	3,325	3	6	-3	554	0	
순천	9,953	8	8	0	1,244	9	
나주	19,224	15	13	2	1,479	52	
광양	1,977	2	2	0	989	2	
담양	9,945	8	6	2	1,658	2	
곡성	5,049	4	4	0	1,262	2	
구례	3,033	2	4	-2	758	5	
고흥	11,240	9	9	0	1,249	12	
보성	8,981	7	6	1	1,497	0	

화순	4,970	4	7	-3	710	3	
장흥	14,046	11	8	3	1,756	1	
강진	7,902	6	3	3	2,634	15	
해남	9,237	7	8	-1	1,155	0	
영암	13,377	11	5	6	2,675	14	
무안	11,445	9	5	4	2,289	16	
함평	13,158	11	9	2	1,462	0	
영광	6,721	5	10	-5	672	4	
장성	5,790	5	8	-3	724	48	
완도	3,598	3	2	1	1,799	0	
진도	1,070	1	2	-1	535	9	
신안	3,686	3	0	3		0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전라북도	120,410	96	80	16	1,505		
전라북도	130,031	104	80	24	1,625	538	2
전주시	329	0	4	-4	82	53	
군산시	2,487	2	2	0	1,244	3	
익산시	10,383	8	8	0	1,298	38	
정읍시	26,884	22	11	11	2,444	212	
남원시	12,955	10	10	0	1,296	34	
김제시	13,860	11	6	5	2,310	19	
완주군	10,223	8	3	5	3,408	7	
진안군	3,557	3	4	-1	889	3	
무주군	2,592	2	6	-4	432	0	
장수군	7,822	6	3	3	2,607	138	
임실군	10,793	9	8	1	1,349	3	
순창군	6,820	5	4	1	1,705	0	
고창군	13,126	11	8	3	1,641	0	
부안군	8,202	7	3	4	2,734	28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제주도	13,084	10	23	-13	569		
제주도	16,002	13	23	-10	696	20,956	9
제주시	11,442	9	18	-9	636	14,660	
서귀포시	4,560	4	5	-1	912	6,296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충청남도	177,379	142	125	17	1,419		
충청남도	204,839	164	125	39	1,639	229	1
천안시	19,141	15	19	-4	1,007	20	
공주시	19,973	16	10	6	1,997	25	
보령시	10,419	8	4	4	2,605	9	
아산시	16,763	13	7	6	2,395	3	
서산시	13,387	11	13	-2	1,030	15	
논산시	10,420	8	11	-3	947	38	
계룡시	254	0	0	0		0	
금산군	4,596	4	3	1	1,532	18	
연기군	9,694	8	8	0	1,212	4	

부여군	9,573	8	9	-1	1,064	9	
서천군	5,240	4	5	-1	1,048	20	
청양군	7,023	6	5	1	1,405	3	
홍성군	23,373	19	12	7	1,948	7	
예산군	26,385	21	7	14	3,769	49	
태안군	6,281	5	4	1	1,570	8	
당진군	22,315	18	8	10	2,789	1	
시군별	젓소단위	적정수의사수	실제수의사수	부족한수의사	수의사당가축수	마필	마필수의사
	두	명	명	명	두	두수	명
충청북도	74,370	59	50	9	1,487		
충청북도	83,754	67	50	17	1,675	210	
청주시	1,439	1	6	-5	240	5	
충주시	9,084	7	5	2	1,817	44	
제천시	4,527	4	3	1	1,509	38	
청원군	24,501	20	6	14	4,083	42	
보은군	9,687	8	6	2	1,614	27	
옥천군	5,162	4	4	0	1,291	2	
영동군	3,998	3	3	0	1,333	8	
증평군	1,986	2	2	0	993	5	
진천군	8,931	7	4	3	2,233	2	
괴산군	5,234	4	3	1	1,745	33	
음성군	7,753	6	6	0	1,292	3	
단양군	1,452	1	2	-1	726	1	

첨부 4. 전국의 소 전문동물병원의 개업실태 조사

병원명	시·도	시·군·구	이하주소	진료분야	개설자	소진료수의사	시군별수의사수	진료수의사1	진료수의사2	진료수의사3	진료수의사4	진료수의사5
좌천동물병원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좌천리195-4	소	김홍덕	1						
부산유우협동조합	부산시			소	조합장	1	2	박무서				
북부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29번지 19	혼합	문영명	1						
동명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781번지 1	혼합	이영기	1						
대구축협가축진료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700번지 2	소	대구축산업협동조합	4		채태철	김인수	김라원	안진우	
구지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9	소	이상두	1						
옥포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2331-1	소	김선태	1						
동곡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129-5	소	김길홍	1						
달창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416	소	김선희	1						
화원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581	소	김학조	1						
현풍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혼합	박찬식	1						
달성축산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12-4	소	김형강	1						
다사종합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죽곡리23-6	혼합	최대우	1						
포산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5	소	기재용	1						
달성축협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	송경근	1	16					
바울동물병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3번지 3호	소	김재경	2		신동환				

신정동물병원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417	소	최광수	1							
백령동물병원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129-4	소	최진영	1	4						
광산동물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6-31	소	유경수	1							
광주축산농협동물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62-1	소	안명수	2		박승주	김요섭?				
양림동물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4-22	소	김의수	1							
무등동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2-8	소	강판산	1							
바이오컨설팅&신동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131	소	신종봉	4		김희수	김민섭	장용수			
우리동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97-16	소	이갑식	1							
제일동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1-32	소	이재준	1							
노창섭동물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1-25	소	노창섭	1	12						
제일동물병원	대전시	중구	문창동 75-116	혼합	박노태	1							
다원동물병원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한아름(아)상가103	혼합	정상일	1							
이승재동물병원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117-35	혼합	이승재	1	3						
울산제일동물병원	울산	북구	호계동 272-8번지	혼합	박철현	1							
연양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연양 서부 58-2	혼합	허준창	1							
제일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삼남 교동 355-7	소	오필근	1							
벨엘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두동 봉계 510-4 외 14필지 (봉계공설시장 203)	소	채종천	1							
대동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연양 동부 133-3	소	강철수	1							

울산축협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연양 서부 171-8	소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장	2		박상권	박지호			
통일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청량 덕하 577-1	소	박영수	1						
연양동물병원	울산	울주군	연양 동부 255-18	소	김원복	1	9					
가평가축병원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36-7	소	김규섭	2		윤영노				
현리가축병원	경기	가평군	하면 현2리 303-6	소	이호선	1						
경기동물병원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34	혼합	전용호	1	4					
원당가축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1번지 9호	소	조진행	1	1					
평일동물병원	경기	광주시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41번지 2호	소	정영호	1						
우정동물병원	경기	광주시	광주시 실촌읍 삼리 41번지 24호	소	우종호	1	2					
한마음동물병원	경기	김포시	북변동 299-6	혼합	지명규	1						
제일가축병원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238-8	혼합	천양민	1	2					
제일동물병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리) 204-12	소	오남진	1						
이규로동물병원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89-6	소	이규로	1						
강두완동물병원	경기	남양주시		소	강두완	1						
성심동물병원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04-41	소	이경무	1						
태양동물병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7	소	이상직	1	5					
경기동물병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89번지	소	안민규	1						
통일동물병원	경기	동두천시		혼합	김한규	1	2					
부천축협동물병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번지 7호	소, 약품	축협	1	1	여광섭				
에니멀동물병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곡반정동 53블록 7롯데	소	조강모	1		김경진				

수원축협동물병원	경기	수원시		소	조합장	1		장수열				
축산과학원	경기	수원시		혼합		3	5					
신천동물병원	경기	시흥시	신천동 709번지 10호	소	김학훈	1	1					
경기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서인동 26	혼합	이인식	1						
케이엠클리닉	경기	안성시	가사동 24-8	소	이도훈	1						
중앙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2	소	안대섭	1						
고려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도기동 140-7	소	송창호	3		임광택	하현재			
안성종합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서인동 26	소	한중호	1						
우석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인지동 360-2	소	우준기	1						
남양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인지동 360-2	소	하용근	1						
대한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31-7	소	정규진	1						
유수의과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9	소	유효준	2		박민춘				
서부동물병원	경기	안성시	현수동 218-5	소	류명근	1	13					
안양축협동물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7번지 33호 .34호	소	안양축산농 업협동조합	3	3	김경구	백형권	안상완		
김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17-5	소	김광섭	1						
의양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73-3	소	이동규	1						
유안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318-1	소	윤석정	1						
안민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342-2	소	안중옥	1						
광적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728-12	혼합	이홍균	1						
양주동물병원	경기	양주시	덕정동 142-1	혼합	권이심	1	6					
협성동물병원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553-1	혼합	함관남	1						
양동진동물병원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43	소	양동진	1						

양서동물병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59-23	혼합	이갑재	1							
우람동물병원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84	혼합	조인상	1							
유일동물병원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286-1	혼합	류지원	1	5						
애니동물병원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157-11	소	이진호	1							
가남동물병원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561-9	소	이창오	1							
중앙동물병원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11	혼합	허한수	1							
태성진동물병원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200-2	소	태성진	1							
여주동물병원	경기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239-10	소	최성환	1	5						
중앙동물병원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1리 35-6번지	소	최광주	1							
애견동물병원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1리 45-28번지	소	조문재	1							
성심동물병원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6-86번지	소	장승철	1	3						
하나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26-3	소	김기영	1							
모현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208-1	혼합	유영호	1							
백암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20-4	혼합	이지섭	1							
제일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15	혼합	김기호	1							
용인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722-1	소	정명섭	1							
용인축협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소	조관중	1							
우사랑동물병원	경기	용인시		소	강기웅	1	7						
양주축협동물병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0-13	소	양주축협	1	1	동성조					
주영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10번지 3호	소	주영기	1							
설성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93번지 34호	소	김준석	1							
이천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188번지 11호	소	서규석	1							

서울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206번지 1호	소	구자홍	1		황창원				
경기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208번지 7 호	소	안재홍	1						
중부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208번지 7호	소	박윤서	1						
축협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중리동 229번지 6호	소	이천시축산 업협동조합	1		이기영				
다산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장호원	소	황순신	1	8					
적성동물병원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50-8	소	안옥정	1						
우리동물병원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93-19	소	서정효	2		김성훈				
파주유우진료소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9	소	김영찬	3		권영이	김재웅			
고려동물병원	경기	파주시	금촌동 329	소	박승도	1						
금촌종합동물병원	경기	파주시	금촌동 42-5	소	김선일	1						
김희원동물병원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8-3	소	김희원	1						
보람동물병원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588-1	소	이현각, 박 철희	2	11					
믿음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비전동 866번지 11호	소	이원철	1						
송탄경기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서정동 306번지 4 호	소	이정훈	1						
경기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서정동 306번지 4 호	소	신윤교	1						
건국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서정동 308번지 1호	소	한상욱	1						
제갈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신장동 235번지 2호	소	제갈대환	1						
서울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66번지 16호	소	채수근	1						
청북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7번지 8호	소	목선균	1						
평택축협동물병원	경기	평택시		소	한창수	1	8					
신성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리 385	소	송회락	1						
백두산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04	소	이동희	2		이현노				

카우만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10-18	소	김용재	1							
선진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99-8	소	서창호	1							
서울우유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신읍동 192-8	소	김남성	1							
영중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02	소	박낙영	1							
포천대신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신읍동 202-36	소	박선용	2		길광철					
대한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1리492-13	소	윤상철	1	10						
협동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25-24번지	소	정왕진	1							
조암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18번지	소	차경희	1							
현대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남양5동 무지개아파트 103호	소	박정흠	1							
소망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남양동 1266-2번지	소	이성근	1							
한빛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남양동 509번지	소	한윤석	1							
국제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남양동 563번지 무지개아파트 102호	소	김선월	1							
우리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남양동 655-1번지	소	장용규	1							
홍익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30-9번지	소	권순균	2		이재석					
청산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48번지	소	하만용	1							
우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50-11번지	소	우재갑	1							
손수의과병원	경기	화성시	항남읍 평리 30-4번지	소	손용준	1							
발안종합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항남읍 평리 81-70번지	소	김성기	3	15	이병천	김성하				
							116						
춘천철원축협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44-34	소	춘천철원축협	1		하영관					
한독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13-9	소	김정성	1							
대영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소	노대영	1							

동상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 594	소	박영선	1						
제일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89-3	혼합	박재웅	1						
조 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8-11	소	조광희	1	6					
원주축협동물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223-8	소	안사현	1		민경현				
강원동물병원	강원도	원주시		소	서정무	1	2					
강릉축협동물병원	강원도	강릉시	교동162-153	소	강릉축산업협동조합장	1		남궁원				
중앙가축병원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40-1	혼합	곽기중	1						
영동가축병원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37번지	소	황일남	1	3					
태백동물병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31-10	혼합	이영주	1						
홍천관동물병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0-1	소	홍천관	1	2					
동해삼척축협동물병원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9	소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	1	1	김협수				
홍천축협동물병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25	소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	1		장용석				
풍암가축병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10	소	김주성	1						
윤성철동물병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41	소	윤성철	1						
신흥동물병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13	소	황성연	1						
현대가축병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5	소	유희덕	1	5					
강원동물병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845-10	혼합	강영실	1						
영월축협동물병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8-12	소	이석래	1		이성환				
한우협회동물병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91-16	소	조합장	1		유광균				
한마음동물병원	강원도	영월군		소	유인광	1						
김가축동물병원	강원도	영월군		소	김상기	1	5					
횡성축협동물병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7-1	소	고명재	1			윤진수			

섬강	강원도	횡성군	읍하리	소	윤필상	1							
삼양가축병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34	소	남기용	1							
대영가축병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34-32	혼합	김재문	1							
이명렬가축병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09-1	소	이명렬	1							
대한가축병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26-7	소	이인영	1							
횡성종합동물병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58	소	이의연	1							
신횡성동물병원	강원도	횡성군		소	이시창	1	8						
평창축협동물병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	최원철	1							
중앙가축병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1리	소	나병무	1							
동성가축병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58-50	소	이상설	1							
축산과학원한우시험장	강원도	평창군		혼합		2							
한일산업목장	강원도	평창군		소		1	6						
현대가축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소	윤승제	1							
정선가축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소	유흥식	1	2						
춘천철원축협화천지점동물병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1리	소	춘천철원축협	1	1	정일현					
원통가축병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13	혼합	박연창	1							
인제축산업협동조합동물병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7	소	인제축산업협동조합	1	2						
성일동물병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53-39	소	홍성일	1							
박박사 동물병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81-16	소	박후열	1							
문혜동물병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85-6	소	임완섭	1							
서울우유동물병원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80	소	정구연	1							

와수동물병원, 대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39	소	박동선	1	5						
춘천철원축협 양구동물병원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269	소	춘천철원축협(주영노)	1		이 금					
양구동물병원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종리 24-3	소	장영수	1	2						
고성축협동물병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58	소	고성축산업협동조합	1		김연수					
고성동물병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1-16	소	탁찬수	1	2						
설악동물병원	강원도	속초		혼합	심증무	1	1						
대명동물병원	강원도	양양		혼합	서정기	1	1						
							54						
하나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2-21	소	박명호	2		임영철					
청주축협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소	김창식	1							
한국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32	혼합	김재만	1							
제일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245	소	김석희	1							
청주종합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7-1	혼합	고철환	1	6						
열린동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1326	소	박 찬	1							
박동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707	소	박현무	1							
충주축협동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766-28	소	충주축협	1		구춘모					
충주동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19	소	지순환	1							
임정동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임정면 미내리 151	소	김백용	1	5						
강내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173-5	소	권점덕	1							
충북낙협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51-2	소	정상용	1							
오창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53-18	소	최종만	1							
서울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94	소	서병오	1							

우리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538-1	소	윤화영	1							
명성동물병원	충청북도	청원군		소	신점균	1	6						
중앙동물병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388	소	김병도	1							
최상오동물병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6	소	최상오	1							
한국동물병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32-3	소	최영철	1							
서울동물병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40-4	소	강병권	1							
송진우동물병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94-1	소	송진우	1							
이동물의료원	충청북도	보은군		소	이재인	1	6						
옥천동물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상양리 222-201	소	정면희	2			정종관				
손수의과동물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21	소	손용성	1							
청산가축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81-9	소	형도순	1	4						
최종주동물병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62-6	혼합	최종주	1							
영동합동동물병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9	소	강병천	1							
영동합동동물병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9	소	서점기	1	3						
광혜원동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255-5	소	채재병	1			이도규				
오수의과동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6-4	소	오홍세	1							
진천동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62-28	소	김덕중	1							
제일동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148-1	소	이강철	1	4						
대한동물병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도전 418	소	임현준	1							
중부동물병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별곡 333	소	이상문	1	2						
진주동물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2가 27-10	소	김연호	1							
현대동물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00	소	홍인선	1							

협신동물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196-4	소	신태일	1	3						
증평동물병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41	소	김종범	1							
주성동물병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997	소	김창후	1	2						
새마을동물병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1-60번지	소	김세철	1							
김종하동물병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1-32번지	소	김종하	1							
청안동물병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1147번지	소	김덕준	1	3						
금왕동물병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5-10	소	허영재	1							
무극동물병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44-3	소	윤원탁	1							
현대동물병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1-25	소	김영삼	1							
삼성가축병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25-19	소	조성훈	1							
남영가축병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48-15	혼합	곽재영	1							
음성동물병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9-12	소	김재권	1	6						
대관령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 174-39	소	오병부	1							
한국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 189-3	소	성유제	1							
천안공주낙농축산업 협동조합부설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 534-2	소	공주낙협	2			이혜림	손정민			
유구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석남 275-10	소	이동열	1							
공주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 20-10	소	정용서	1							
성삼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 21-3	소	유환모	1							
이기영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 194-3	소	이기영	1							
신동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 197	소	손정훈	1							
충남동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 91-2	소	한기성	1	10						

병천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230번지 1호	소	임동철	1							
한샘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32번지 4호	소	한명현	1							
천성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번지 180호	소	이용준	1							
태성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번지 342호	소	송순경	1							
유일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영성동 116번지	혼합	유일준	1							
서울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영성동 67번지 1호	소	정세영	1							
조은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300	혼합	임춘기	1							
충일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번지 118호	혼합	오재춘	1							
천안축산업협동조합 부설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영성동 127번지 16 호	소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1			김준희				
천안공주낙농축산업 협동조합부설동물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74	소	조합장	2			박춘성	이금영			
축산과학원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혼합		8	19						
서해동물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45-11	소	민경천	1							
차동물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46-4	소	차형도	1							
김동물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소	김중기	1							
충남동물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소	전대규	1	4						
김광수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42번지 23 호	소	김광수	1							
우리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137번지 10호	소	김종희	1							
이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15번지 4 호	소	이성원	1							
초원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18번지 8 호	소	이성호	1							
정강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80번지 3호	소	정강을	1							
명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은천동 1353번지	소	김용선	1							

아산축협동물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혼합	조합장	1	7	김기덕				
김신환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 293-11	소	김신환	1						
여한경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 309-3	혼합	여한경	1						
신화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012-24	혼합	송신화	1						
정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489	소	정재관	1						
홍성낙협산지점 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13-3	소	홍성낙협조 합장	1		이병열				
농협중앙회가축개량 사업소가축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6-10	소	농업협동중 앙회장	2		임연수	박종관			
서울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 139	소	박성호	2		장 영				
해미성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읍내3구 291	소	임승환	1						
현대목장	충청남도	서산시		소		3	13					
제일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31	소	강창식	1						
임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109-3	소	임기수	1						
논산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112-1	소	윤상현	1						
중앙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41-8	소	박병수	1						
충남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35-3	소	문정환	2		이승진				
연무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29-4	소	배기정	1						
가나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51	소	이동현	1						
연산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82-1	소	배규열	1						
금강축산동물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289	소	이상대	1						
논산계룡축협	충청남도	논산시		소	축협	1	11					
가은장 동물병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24-7	혼합	조혜영	1						

우신 동물병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25	소	노용우	1							
노아 동물병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34-2	혼합	홍현식	1	3						
한빛동물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38-1	혼합	임하수	1							
한일동물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99-6	혼합	정기원	1							
김의수동물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51	소	김의수	1							
금남가축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11-7	소	이의균	1							
성신가축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58-4	혼합	배만중	1							
연기동물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18-9	소	이용배	1							
조치원동물병원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40-13	소	이인재	1							
명동물병원?MNHLC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58-2	소	명노일	1	8						
부여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33	소	김삼곤	1							
금강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1-3	소	윤지순	1							
녹십자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1-5	소	현인배	1							
백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07-2	소	백병선	1							
서울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393-3	소	진학무	1							
임천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98	소	윤흥순	1							
홍산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72	소	백선기	1							
세종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91	소	이인백	1							
한라동물병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46-6	소	김재우	1	9						
서천가축병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7	소	김용기	1							
제일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36-3	소	나성진	1							
서해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62-10	소	김경수	1							

장동호동물병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6-2	소	장동호	1							
최가축병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243	소	최영식	1	5						
정산동물병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서정리 156	소	박병찬	1							
중앙동물병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2-13	소	유희만	1							
청양종합동물병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29	혼합	이언석	1							
지팡이동물병원	충청남도	청양군		소	장배홍	1							
청양동물병원	충청남도	청양군	읍내리 175-22	소	이운선	1	5						
갈산 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168-4	소	이종석	1							
김수의과 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385-14	소	김정한	1							
신흥 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385-14	소	김영래	1							
홍성종합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391-15	소	유주호	1							
홍성축협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285-2	소	홍성축협	2		김제명	장호진				
임창일 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83-12	소	임창일	1							
강남 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532-2	혼합	김건수	1							
조은 동물병원, 세종?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403-20	소	박세종	1							
한길 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624	소	이상우	1		김병춘					
홍성낙협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91-10	소	홍성낙협	1		박병수					
충남 동물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285	혼합	전병남	1	12						
예산동물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0-5	소	박희규	1							
협동동물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예산리	소	이기철	1							
중앙동물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27-2	소	김진봉	1							
김태오가축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34-12	소	김태오	1							

새마을가축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79	소	홍완표	1							
흙동물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0-25	소	이대열	1							
동물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소	백종완	1	7						
현대동물병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223-27	혼합	이봉식	1							
명동물병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13-2	소	명수남	1							
최가축병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4-6	소	최기중	1							
두산개발(주)	충청남도	태안군		소		1	4	김영훈					
정가축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26-6	소	정철옥	1							
신성가축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404-43	소	원성일	1							
합덕종합동물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917-6	소	곽수근	1							
우리종합동물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77-3	소	고기진	1							
충남종합동물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10-3	소	정한영	1							
거산동물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233-6	소	이송원	1							
백제가축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3-1	소	김인봉	1							
당진종합동물병원	충청남도	당진군		소	유재권	1	8						
초원 동물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60-50	소	최종철	1							
남문 동물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187-9	소	박은호	1							
흙 동물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260	소	홍용표	1							
전북의료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혼합	전북대학교	1	4	허수영					
연합가축병원	전라북도	군산시	장재동 206-5	소	윤용섭	1							
군옥동물병원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00-5	소	채근석	1	2						

금마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707-4	소	김구호	1							
여산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347	소	최성규	1							
해원이네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609	소	이정훈	1							
익산군산 축협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59	소	조합장	1			김대중				
서울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5-239	소	박흥열	1							
황등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893	소	박종한	1							
김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20	소	김국중	1							
서울동물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1가 229-3	소	이원섭	1	8						
녹십자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3동 96-6	소	김선명	1							
한일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32	소	이기두	1							
연합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26-3	소	김형영	1							
김용태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14	소	김용태	1							
청수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2-11	소	임원호	1							
김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9-2	소	김근섭	1							
모두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9-41	혼합	은연상	1							
대한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164-4	혼합	이춘호	1							
다나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79-2	소	김동호	1							
최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7-7	소	최봉렬	1							
서울동물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14-98	소	김영수	1	11						
운봉가축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06-2	소	이관철	1							
강동물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49-1	소	강을수	1							
동문동물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118-4	혼합	이강석	1							

남원축협동물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63-3	소	남원축협	1		김수용				
청원동물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혼합	신길호	1						
남원제일가축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251-2	소	윤영진	2		임채현				
청원동물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죽향동 16-4	혼합	신길호	1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전라북도	남원시		혼합		2	10					
원평동물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8	소	강형용	1						
진동물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272-9	소	진정운	1						
우리동물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382-6	소	유영중	1						
상남동물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신평동 319	소	강종동	1						
행복을 찾는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373-37	소	이한경	1						
동진강축협	전라북도	김제시		소	조합장	1	6	김현수				
우리가축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82번지	소	곽봉우	1						
고산동물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0-12번지	소	국승관	1						
박동물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25번지	소	박현주	1	3					
안천가축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644	소	신총식	1						
상양가축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66-31	소	노경환	1						
유가축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14-3	소	유경희	1						
진안동물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17-1	소	민병대	1	4					
반딧불동물병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2226	소	김수상	1						
박 동물병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256-4	소	박영수	1						
이무석 동물병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35-2	소	이무석	1						
안성 동물병원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30-12	소	이기철	1						

병구 동물병원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17-27	소	서병구	1							
제일동물병원	전라북도	무주군		소	김제일	1	6						
자연낙농동물병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04-3	소	최명식	1							
부안동물병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4-12	소	최순규	1							
연합동물병원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58	소	채기석	1	3						
장계동물병원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96-4	소	정진홍	1							
장수축협동물병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83-7	소	장수축협	1			문부산				
현대동물병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57-7	소	박혜서	1	3						
갈담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69	소	송호경	1							
관촌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348	소	정경석	1							
오수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63-5	소	이태기	1							
원진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82-12	소	장원진	1							
이가축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일 847-8	소	이용상	1							
임실축협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34	소	임실축협	1			정병철	김민성			
최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484-3	소	최봉규	1							
태산동물병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42	소	이 현	1	8						
박동물병원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3	혼합	박열해	1							
제일동물병원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7	소	제영명	1							
이완섭동물병원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11-8	소	김민영	1			이완섭				
호남동물병원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59-6	소	신용식	1	4						
연합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2-19	혼합	신남식	1							
모양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50-1	소	김광덕	1							

고창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16-68	소	홍순필	1							
시중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10	소	오시중	1							
대산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82-19	소	박영무	1							
상하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939-5	소	유동준	1							
흥덕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558	소	강경원	1							
고창부안축합동물병원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35-6	소	고창부안축 산업협동조 합	1	8	설재만					
협동 동물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7	소	이흥식	1							
현대 동물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11	혼	조종관	1							
백제 동물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7-11	소	김현장	1	3						
현대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7번지 5호	소	김선중	1							
광주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31번지 59호	소	김오빈	1							
고흥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25번지 21호	소	이명환	1							
호남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26번지 8호	소	강재선	1							
서울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71번지 5호	소	유의석	1							
중앙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71번지 3호	소	송준태	1							
녹동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614번지 10호	소	김일한	1							
포두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86번지 1호	소	김도훈	1							
흥교 동물병원	전남	고흥군		소	양세환	1	9						
대동가축병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60	소	한영수	1							
석곡동물병원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32	소	최종삼	1							
옥과동물병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138	소	박도준	1							

심동물병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409-3	소	심명환	1	4	최하나					
광양동물병원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10-46	소	김동선	1							
매일동물병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411-2	소	이승환	1	2						
구례동물병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12	소	박문완	1							
중앙동물병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38	소	김성수	1							
김가축병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47	소	김성규	1							
정가축병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442-3	소	정기영	1	4						
서광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0-7	소	김현경	1							
정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220-6	소	정종범	1							
이영기수의과	전남	나주시	과원동 121-1	소	이영기	1							
최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21-7	소	최상공	1							
건국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이창동 188-7	소	권혁	1							
부자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이창동 78-8	소	안상익	1							
선경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이창동 81	소	김일용	1							
선경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이창동 81	소	형판욱	1							
신정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죽림동 138-44	소	차정태	1							
나주종합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0	소	이철호	1							
나주종합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1	소	서규종	1							
나주종합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2	혼합	나성호	1							
나주종합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소	강성철	1	13						
중앙동물병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68	소	이강수	1							
고려동물병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74-5	소	김종삼	1							

장미동물병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2-10	소	배남철	1							
한일동물병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92-1	소	이상준	1							
담양축협동물병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2	소	박성수	1							
담양축협중앙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소	이강수	1	6						
무안종합동물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144-8	소	김혁진	1							
무안동물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54-2	소	박석진	1							
축협동물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02	소	무안축협	1							
한일동물병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93	소	임금기	1							
시온동물병원	전남	무안군		소	고승룡	1	5						
벌교 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96	소	문광식	1							
흥교 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05-48	소	조영래	1							
호남 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32-7	소	박만승	1							
현대 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94-6	소	홍기강	1							
보성 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88-7	소	안익순	1							
제일 동물병원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927-25	소	정영중	1	6	정정석					
제일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인제동 369-20	소	곽기봉	1							
김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인제동 377-1	소	김성연	1							
순흥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장천동 877-3	소	김반태	1							
이레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남정동 538	소	오명환	1							
전남낙농농협 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남정동 545-7	소	전남낙협	1		김종기					
주암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4	소	최병원	1							
월전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12	소	이정우	1							

산들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6-4	소	박민철	1	8						
한일동물병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23	소	조윤희	1		김명자					
돌산동물병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36-1	소	최원철	1							
여천바이엘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45	소	이상범	1							
여수동물병원	전남	여수시	서교동 224-1	소	최경주	1							
소라동물병원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85-4	소	손경수	1							
우리동물병원	전남	여수시		소	김원윤	1	6						
백수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591	소	정병이	1							
제일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8	소	김상석	1							
영산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산면 봉남리 191	소	김성배	1							
박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171	소	박종일	1							
전남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09	소	김창조	1							
김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5	소	김희환	1							
원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80	소	이양섭	1							
정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63	소	정종대	1							
영광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	소	김병수	1							
영광추협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3	소	이정훈	1	10						
시종동물병원	전남	영암군	시종 만수 935-13	소	김근홍	1							
두리동물병원	전남	영암군	영암 동무 47-15	소	조도성	1							
초원가축병원	전남	영암군	영암 역리 168-8	소	배영수	1							
서광동물병원	전남	영암군	영암 역리 161-2	소	김학룡	1							
제일가축병원	전남	영암군	영암 역리 269	소	최영환	1	5						

대영동물병원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48-3	소	박종욱	1							
청해동물병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82-101	소	이내철	1	2						
중앙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00	소	김은학	1							
김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82	소	김말중	1							
우남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88	소	기우남	1							
서광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21-4	소	양건목	1							
장성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24	혼합	정운조	1							
강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61	혼합	강장성	1							
고려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08-11	소	김건선	1							
현대동물병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38-7	소	김근호	1	8						
명성 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관산읍 남송리 30-37	소	이석윤	1							
현대 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95-2	소	최경선	1							
천관 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80-15	소	신성호	1							
중앙 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88-9	소	유장수	1							
희망 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407	소	양문석	1							
장흥 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38	소	김현도	1							
정남진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52-10	소	김요현	1							
대덕동물병원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05-5	소	김병균	1	8						
에덴동물병원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64-1	소	이정열	1							
진도중앙	전남	진도군	진도읍	소	조근환	1	2						
미래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133	소	최성열	1							
반석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65-6	소	장인성	1							

에덴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69-1	소	박경민	1							
함평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141	소	김유중	1							
대우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1	소	윤길하	1							
영생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1-6	소	노순만	1							
천지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96-2	소	박병은	1							
권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 407	소	권승	1							
김 동물병원	전남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4-2	소	김성완	1	9						
우수영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857번지	소	이정문	1							
다도해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95번지	소	조동순	1							
가나다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소	김제선	1							
전남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04번지	소	윤광현	1							
해남축협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번지	소	이정우	1			김장훈				
청산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소	정승민	1							
현대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310-1	소	김병진	1							
중앙동물병원	전남	해남군		소	김주진	1	8						
사평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61-1번지	소	박윤수	1							
능주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95	소	고재철	1							
서종철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232-1번지	소	서종철	1							
북면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북면 원리 산37번지	소	정호균	1							
아리랑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51	혼합	김기철	1							
백남수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삼리 844	소	백남수	1			강동호				
화순동물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52-1번지	소	유동순	1	7						

경북낙동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강동면 인동리 529	혼합	경북낙협	1								
신광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건천읍 건천리 268	혼합	오기범	1								
장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경주	건천읍 건천리 319	소	장영일	1								
월성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건천읍 건천리 338	소	김성달	1								
다보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구정동 364-5	소	주찬용	1								
경주축협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노서동 119-5	소	경주축협	1		하재훈						
정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경주	노서동 129-7	소	정진화	1								
신라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노서동 129-8	소	김대용	1								
바이엘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노서동 132-19	소	이창훈	1								
대원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동부동 133-7	소	이홍우	2		이상훈						
건국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동천동 953-1	소	박진형	1								
의곡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산내면 의곡리 113	소	김윤석	1								
김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경주	서부동 234	소	김하석	1								
경북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안강2리 305-9	소	최상범	1								
한일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성건동 352-17	소	한기호	1								
다향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성건동 451-11	소	이상호	1								
경북대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안강리 304	소	문승환	1								
중앙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안강리 319	소	이수광	1								
안강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안강리 319	소	손덕락	1								
김병규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안강리 588	소	김병규	1								
청림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안강리 588	소	김영우	1								

달원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양월리 1133	소	손중익	1							
영남가축병원	경상북도	경주	양북면 어일리 1295	소	노정성	1							
가람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외동읍 입실리 1005	소	강용덕	1							
현대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 양월리 1192-10	소	김태해	1							
대관령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소	김철민	1							
가나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주	성건동 698-8	혼합	옥진근	1	28						
우리동물병원	경상북도	구미	선산읍 동부리 508-4	소	이종관	1							
한솔동물병원	경상북도	구미	선산읍 이문리 86-8	소	이구혁	1							
김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구미	선산읍 이문리 91-2	소	김문식	1							
대구가축병원	경상북도	구미	장천면 상장리 890-4	소	양영도	1							
산동가축병원	경상북도	구미	장천면상장리 886	소	서무준	1							
지혜동물병원	경상북도	구미	선산읍 동부리 451-17	소	이원재	1							
파랑새동물병원	경상북도	구미	고아읍 문성리 62-3	혼합	박정우	1							
초원동물병원	경상북도	구미	해평면 월호리 469-13	소	손통익	1	8						
금오산낙협	경상북도	김천	대광동 1088	소	금오산낙협 장	1			김인강				
제일가축병원	경상북도	김천	성내동 10-23	소	이상석	1							
삼양가축병원	경상북도	김천	평화동 245-12	소	김경준	1							
녹십자동물병원 강수의과	경상북도	김천	황금동 102-1	소	강호영	1							
가람동물병원	경상북도	김천	황금동 137-2	소	김용근	1							
두산가축병원	경상북도	김천	황금동 91-4	소	이규락	1							
백두동물병원	경상북도	김천	황금동 167-30	혼합	윤창진	2	8		여운창				
경북가축병원	경상북도	안동	금곡동 124-1	소	조규해	1							

연합가축병원	경상북도	안동	당북동 311-7	소	변봉갑	1							
보경종합동물병원	경상북도	안동	당북동 315-2	혼합	권순탁	1							
보우종합동물병원	경상북도	안동	안기동 235-17	소	신형우	1							
임동가축병원	경상북도	안동	임동면 중평리 322	소	박중태	1							
서울종합동물병원	경상북도	안동	옥야동 340-49	소	강석영	1							
대구가축병원	경상북도	안동	태화동 705-37	소	강호규	1							
풍산가축병원	경상북도	안동	풍산을 안교리 82-11	소	여상근	1							
구담가축병원	경상북도	안동	풍천면 구담리 433	소	정쾌도	1							
안동봉화축협동물병원	경상북도	안동	광석동 20-1	소	조합장	1	10	이승진					
제일 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주	순흥면 읍내1리 349번지	소	석상일	1							
경동 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주	영주시 상망동 249-8번지	소	이동철	1							
영주 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주	영주시 영주1동 7-39번지	소	박병한	1							
청아 동물병원	경상북도	영주	영주시 휴천2동 642-179번지	소	박성우	1							
풍기 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주	풍기읍 서부리 122번지	소	민병익	1							
보람동물병원	경상북도	영주	휴천동 709-44	혼합	임원택	1							
풍기 동물병원	경상북도	영주	영주시 하망동 422-46번지	혼합	이두환	1	7						
한솔동물병원	경상북도	영천	성내동 189	소	서석민	1							
금호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천	금호읍 덕성리 107	소	김인수	1							
성수의과병원	경상북도	영천	성내동 148-5	소	성진환	1							
신령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천	신령면 화성리 868-6	소	김조환	1							
양수의과병원	경상북도	영천	야사동 293-8	소	양성근	1							
박수의과병원	경상북도	영천	완산동 1055	소	박병훈	1							

영천동물병원	경상북도	영천	완산동 1085-1	소	추병수	1						
대관령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천	완산동 1122-3	소	김순표	1						
제일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천	완산동 983	소	허진구	1						
우리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천	완산동 994-24	소	윤해석	1	10					
공검가축병원	경상북도	상주	공검면 양정리 187-1	소	김돈희	1						
옥산가축병원	경상북도	상주	공성면 옥산리 187-5	소	서진백	1						
북부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낙동면 낙동리 734-1	소	장국진	1						
고려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남성동 115	소	박동건	1						
상주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남성동 36-17	소	이상봉	1						
서울가축병원	경상북도	상주	남성동 4	소	안태조	1						
모서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모서면 삼포리 254-3	소	최춘근	1						
가람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성동동 197-1	혼합	이승훈	1						
청리가축병원	경상북도	상주	청리면 원장리 868-1	소	박희춘	1						
함창가축병원	경상북도	상주	함창읍 구항리 128-4	소	임인호	1						
경북종합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함창읍 증촌리 2	소	임철기	1						
화령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화서면 신봉리 128-9	소	김연필	1						
대성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소	최현준	1						
상주축협동물병원	경상북도	상주	서문동 5-5	소	조합장	2	15	박영학	조항돈			
문경가축병원	경상북도	문경	문경을 하리 76-2	소	서영국	1						
종합가축병원	경상북도	문경	흥덕동 200-1	소	김진선	1						
제일가축병원	경상북도	문경	흥덕동 249-10	소	김진영	1						
행복한동물병원	경상북도	문경	모전동 115-11	혼합	신병규	1						

삼양동물병원	경상북도	문경	점촌동 130-2	소	최광호	1							
동원동물병원	경상북도	문경	흥덕동 308-7	소	이동원	1							
점촌동물병원	경상북도	문경		소	문영웅	1	7						
초원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중방동 849-21	소	김소섭	2		권소섭					
하양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하양읍 동서리 630	혼합	서정대	1							
한국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하양읍 동서리521-3	소	송준영	2		윤성우	기재용				
신한국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하양읍	혼합	윤성우	1							
남산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남산면 산양리 48	소	이선희	1							
용성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용성면 당리리 128-3	소	권오진	1							
자인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자인면 서부리 256	소	박병용	1							
경산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중방동 851-5	혼합	이우일	1							
김영복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경산	중방동 864-11	소	김영복	1							
대림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하양읍 금락리 3	혼합	김선일	1							
초원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소	권석원	1							
제일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		혼합	류정렬	1	14						
박성준동물병원	경상북도	군위	군위읍 동부리 324-1	소	박성준	1							
대구동물병원	경상북도	군위	군위읍 서부리 26	소	권춘수	1							
도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군위	군위읍 서부리 290	소	도병천	1							
의흥동물병원	경상북도	군위	의흥면 읍내리 424	소	오규백	1	4						
동산가축병원	경상북도	의성	금성면 대리 59-4	소	박준배	1							
김수의과병원	경상북도	의성	안계면 용기리 469-17	소	김재용	1							
일광가축병원	경상북도	의성	안계면 용기리 827	소	안수진	1							

협동가축병원	경상북도	의성	안계면 용기리 839-2	혼합	이화식	1							
서부가축병원	경상북도	의성	안계면 용기리 850	소	우석관	1							
중앙동물병원	경상북도	의성	안계면 용기리 862-6	소	위익권	1							
의성동물병원	경상북도	의성	의성읍 도동리 936-1	소	양승락	1							
동부가축병원	경상북도	의성	의성읍 중리 870-3	소	김재완	1							
경의가축병원	경상북도	의성	의성읍 후죽리 841-9	소	최재영	1							
다인동물병원	경상북도	의성		소	신우섭	1	10						
서부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양	영양읍 서부리107	소	김현호	1							
입암가축병원	경상북도	영양	입암면 신구리440	소	박용수	1	2						
중앙가축병원	경상북도	청도	금천면 동곡 924	소	이증환	1							
우신동물병원	경상북도	청도	금천면 동곡 993	소	박승렬	1							
창신동물병원	경상북도	청도	매전면 동산 188	소	박영관	1							
청도종합동물병원	경상북도	청도	청도읍 고수 467	소	김종석	1							
고려동물병원	경상북도	청도	청도읍 고수8리 854-1	소	박권상	1							
우성동물병원, 청도축협?	경상북도	청도	청도읍 원정리 534-3	소	문창훈	1							
박동물병원	경상북도	청도	풍각면 송서 578-3	소	박광훈	1							
우리동물병원	경상북도	청도	화양읍 범곡리 140-3	소	김성곤	1	8						
개진가축병원	경상북도	고령	개진면 옥산리 497	소	김기웅	1							
김경호동물병원	경상북도	고령	고령읍 고아리 3-3	소	김경호	1							
진흥동물병원	경상북도	고령	고령읍 지산리 217-7	소	김중련	1							
정수의과병원	경상북도	고령	고령읍 쾌반리 410-3	소	정외환	1							
성산가축병원	경상북도	고령	성산면 어곡리 11	소	김의순	1							

제일동물병원	경상북도	고령	윤수면 봉평리 839-5	소	조흥기	1						
고령가축병원	경상북도	고령	현문리 232	소	나영조	1	7					
영남동물병원	경상북도	성주	경산리 164	소	유영달	1						
성주가축병원	경상북도	성주	경산리 718	소	신성조	1						
초전가축병원	경상북도	성주	대장리 716	소	도상택	1						
화성동물병원	경상북도	성주	도성리 881	소	최운영	1						
현대동물병원	경상북도	성주	성산리 53-32	소	류정원	1						
수륜가축병원	경상북도	성주	신파리 145	소	박청태	1						
청솔동물병원	경상북도	성주	예산리 303-32	소	김진수	1						
서부동물병원	경상북도	성주	창천리 655-2	소	이광수	1	8					
진보가축병원	경상북도	청송	진보면 진안리476	소	김신웅	1						
청송가축병원	경상북도	청송	청송읍 월막리216-2	소	금덕수	1						
안덕가축병원	경상북도	청송	안덕면 명당리 434	소	조택래	1						
삼성동물병원	경상북도	청송		소	***	2	5	0				
동해가축병원	경상북도	영덕	영덕읍 남석리 455-5	소	서재균	1						
경북동물병원	경상북도	영덕	영덕읍 우곡리 336-3	소	손상호	1						
영해가축병원	경상북도	영덕	영해면 성내리 472-1	소	정자용	1	3					
제일동물병원	경상북도	칠곡	왜관을 왜관리 299번지 1호 31 통 로얄맨션 106동 205호	소	김만조	1						
일선동물병원	경상북도	칠곡	지천면 신리 506번지 1동	소	조래홍	1	2					
종합가축병원	경상북도	예천	예천읍 남본리 222-7	혼합	박달오	1						
조재환동물병원, 우리?	경상북도	예천	예천읍 동본리 540	혼합	조재환	1						
대심동물병원	경상북도	예천	예천읍 대심리 742-1	소	이승규	1						

대관령가축병원	경상북도	예천	남본리 222-139	소	전종백	1							
서울가축병원	경상북도	예천	예천읍 남본리 83-4	소	정용만	1							
예천축협동물병원	경상북도	예천	예천읍 노하리74-10	소	예천축협	1		김윤곤					
용궁가축병원	경상북도	예천	용궁면 읍부리 261	소	신정균	1							
손동물병원	경상북도	예천	풍양면 낙상리 146-13	소	손인석	1							
풍양가축병원	경상북도	예천	풍양면 낙상리 163	소	박래정	1	9						
의선동물병원	경상북도	봉화	봉화읍 내성리 242-9	소	김건영	1							
제일가축병원	경상북도	봉화	봉화읍 내성리 243	소	이경희	1							
봉화가축병원	경상북도	봉화	봉화읍 내성리 353	소	전경수	1							
춘양가축병원	경상북도	봉화	춘양면 의양리 44-3	소	송원선	1							
**동물병원	경상북도	봉화		소	하종성	1	5						
대구가축병원	경상북도	울진	울진읍 읍내리 297-6번지	소	권무수	1							
도수의과, ?울진가축병원	경상북도	울진	울진읍 읍내리 543번지	소	도경호	1							
영덕울진축협동물병원	경상북도	울진	울진읍 읍내리 54-2번지(1,2층)	소	축협	1	3	이명주					
학수의과병원	경상북도	포항	덕수 50-5	혼합	김성학	1							
한형래 동물병원	경상북도	포항	오천읍 세계리 842-53	혼합	한형래	1							
김수의과병원	경상북도	포항	용흥 118-16	혼합	김진용	1							
홍경태 동물병원	경상북도	포항	용흥1동 618-39	혼합	홍경태	1							
장기가축병원	경상북도	포항	장기 마현 320	소	정형균	1							
영일동물병원	경상북도	포항	흥해 남성리 327-2	소	김병구	1	6						
울릉가축병원	경상북도	울릉	울릉읍 도2리 577-6번지	혼합	황규열	1	1						

거제가축병원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494-5	혼합	유용상	1							
장승포가축병원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460-3	혼합	이경필	1	2						
건일동물병원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29-6	혼합	정순삼	1							
김영석동물병원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2-5	혼합	김영석	1							
거창축협동물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2-3	혼합	거창축협장	1			박봉수				
현대가축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68-9	혼합	이민순	1							
거창가축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80	혼합	윤동수	1							
송가축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1	혼합	송동섭	1							
보현동물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27-10	혼합	장진만	1							
서울동물병원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89-31	혼합	박정섭	1							
수동물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	혼합	최보현	1	9						
거류가축병원	경남	고성군	거류면당동리171-4	혼합	류철환	1							
현대동물병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동외리270-3	혼합	주덕의	1							
제일가축병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동외리288-15	혼합	최만수	1							
백호종합동물병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송학리260-54	혼합	최재영	2			김동식				
조수의과병원	경남	고성군	회화면배둔리344-2	혼합	조현주	1							
경남축산가축병원	경남	고성군	회화면배둔리819-49	혼합	최정현	1	7						
제일가축병원	경남	김해시	부원동 632-8	혼합	황기태	1							
김해축협동물병원	경남	김해시	서상동 262-11	혼합	김해축협장	3			신도균	문희중	김종원		
해조동물병원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063-1	혼합	권혁호	1							
녹원동물병원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063-1 8통7반	혼합	김동건	1							
강동물병원	경남	김해시		혼합	강기수	1	7						

목자동물병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360-1	혼합	류지관	1						
김석년동물병원,바이엘동물병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424-3	혼합	김석년	1						
감춘영가축병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38-2	혼합	감춘영	1						
이동가축병원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1119	혼합	정봉치	1	4					
현대동물병원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274번지 3호	소	서영준	1						
삼진가축병원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467번지	소	박영수	1						
진동동물병원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488번지 2호	혼합	강호용	1						
우정동물병원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504번지 1호	소	이우녕	1						
진북동물병원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248번지 16	소	공주갑	1						
새마산동물병원	경남	마산시	상남동 165번지	혼합	송세혁	1						
박수의과동물병원	경남	마산시	회성동 449번지 1 호	혼합	박송택	1	7					
가야동물병원, 제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59-12	혼합	문규만	1						
종합동물병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12	혼합	허찬권	1						
혜성동물병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682	혼합	하연수	1						
대웅동물병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723-3	혼합	박대웅	1						
경남동물병원	경남	밀양시	내일동 644	혼합	김영환	1						
무안가축병원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81	혼합	손기태	1						
해동동물병원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81	혼합	박진모	1						
영남가축병원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2-11	혼합	이상원	1						
밀양축협동물병원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0	소	밀양축협장	1	9	박노영				
사천동물병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303-5	소	손우진	1						
사천축협가축병원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3	소	사천축협장	1		문상현				

축석동물병원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201	소	신규용	1						
우리가축병원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48-6	혼합	황민규	1						
곤양가축병원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88-2	혼합	김숙균	1						
제일가축병원	경남	사천시	동금동 55-9	혼합	김수홍	1						
사천수산동물병원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75-4	혼합	이종한	1						
문기근가축병원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6	혼합	문기근	1	8					
남산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188-6	혼합	권상호	1						
단성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206	혼합	오장열	1						
경상동물병원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93-5	혼합	유재선	1						
산청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38	혼합	윤학기	1						
생초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318-4	혼합	송재선	1						
덕산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748	혼합	강두영	1						
단계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663	혼합	정쾌영	1						
신안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2	혼합	이병모	1						
우방가축병원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79-1	혼합		1	9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동물병원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80-8	소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1			박무서			
낙동가축병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408-3	혼합	서영길	1						
(주) 영남동물병원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246-5	혼합	(주) 영남동물병원	1			최현창			
양산연합동물병원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5-6	혼합	김종선	2			김병광			
석계동물병원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272-12	혼합	박병인	1	6					
창녕가축병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신반440-1	혼합	이현순	1						
의령가축병원	경남	의령군	의령읍서동303-1	혼합	하태주	1						

손정원가축병원	경남	의령군	의령읍서동490-40	혼합	손정원	1							
주수의과병원	경남	의령군	의령읍서동508-1	혼합	주현용	2	5	백연희					
영진가축병원	경남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608-5번지	혼합	허만희	1							
진주축협 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상대동 303-45	혼합	진주축협장	1		박정률					
수곡가축병원	경남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22번지	혼합	유철형	1							
제일가축병원	경남	진주시	인사동 180-1번지	혼합	정현택	1							
진주바이엘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호탄동 620-20번지	혼합	구영오	1							
명성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봉곡동 23번-5번지	혼합	정창영	1							
남강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이현동 23-6번지	혼합	최현락	1							
동부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일방성면 창촌리 657-5	혼합	정천우	1							
경남동물병원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783-5	혼합	하규상	1	9						
경남유우동물병원	경남	진해시		소	강영민	1	1						
남지동물병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34-11	혼합	박태명	1							
명성동물병원	경남	창녕군	대지면 구미리 203-3	혼합	명상돈	1							
쌘소동물병원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322-1	혼합	황영균	1							
대합가축병원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438-3	혼합	장민웅	1							
영산가축병원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110-3	혼합	백상근	1							
김수의과병원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231-12	혼합	김현주	1							
이방가축병원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397-1	혼합	조순제	1							
박수의과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065-12	혼합	박재훈	1							
광진동물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37-2	혼합	전광진	1		박철송					
남창가축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94-7	혼합	허원희	1							

창녕축협동물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421-1	소	창녕축협장	1		김일용				
창녕동물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56	혼합	안성진	1	12					
경남유우동물병원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장리 396-1	소	곽창수	1						
권동물병원	경남	창원시	북면 화천리 874-2	혼합	권윤범	1						
중앙동물병원		창원시	서상동	혼합	이재관	1	3					
충무수산동물병원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69번지 한창썬라이즈 105호	혼합	정도권	1	1					
하동동물병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11-8	혼합	정영길	1						
고려동물병원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26-5	혼합	김남수	1						
현대동물병원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23	혼합	장영달	1						
옥종가축병원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01	혼합	황해균	1						
진교가축병원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	혼합	이익춘	1						
하나동물병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24-3	혼합	정창민	1	6					
함안축협동물병원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23-11	소	함안축협장	1		윤경국				
군북가축병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47	혼합	홍성표	1						
대관령동물병원	경남	함안군	철원면 용산리 102	혼합	안병수	1						
철원가축병원	경남	함안군	철원면 용산리 103	혼합	김영개	1						
변정수동물병원		함안군	철원면	혼합	변정수	1						
경상가축병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00-3	혼합	조복제	1						
현대동물병원	경남	함안군	철원면 구성리 649	혼합	박성환	1	7					
중앙동물병원	경남	함양군	수동명 화산리 1251-2	혼합	박상균	1						
고려동물병원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21-3	혼합	김성곤	1						
이수의과동물병원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56-9	혼합	이호원	1						

신성가축병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13-13	혼합	강성훈	1							
형제동물병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28-2	혼합	박근철	1							
현대동물병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72-1	혼합	배정표	1							
진동물병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4-6	혼합	진정인	1	7						
합천축협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합천읍합천리 669-24	혼합	합천축협장	3		이효권	강형모	김무석			
가야농협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8-8	혼합	가야농협장	1		김봉출					
박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가야면야천리 452-2	혼합	박창석	1							
대병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대병면회양리890-4	혼합	강경조	1							
소망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삼가면일부리916-5	혼합	배순호	1							
삼가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삼가면일부리933	혼합	김영길	1							
서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279-10	혼합	서정환	1							
야로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야로면구정리272-7	혼합	윤영배	1							
북부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야로면구정리279-10	혼합	유현석	1							
중앙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초계면초계리1115	혼합	이홍범	1							
초계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초계면초계리85-10	혼합	변근수	1							
제일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합천읍합천리660-3	혼합	박위철	1							
변수의과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합천읍합천리709-2	혼합	변용규	1							
십자가축병원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15	혼합	최근석	1							
우리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15-5	소	김우석	1	17						
금호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394	소, 말	김재호	1							
세화가축병원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299	소, 말	양은범	1							

현흥가축병원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648-5	혼합	김박부	1						
탐라종합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도남동 921-43	소	김경건	1						
희망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51-1	소	고자명	2		양재혁				
제주축협 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073	소말	제주축협	3		고성지	김용철	이찬희		
조천가축병원	제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소	조한성	1						
서부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22-17	소	양성은	1						
제일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094	소말 돼지	강봉문	3		김승일	김수현			
다호문가축병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54-3	소	문병돈	1						
이의중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36-3	소말	이의중	1						
정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소	고정봉	1						
난지축산시험장	제주	제주시		혼합		1	18/23				5	
가람동물병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28-3	소	강성진	1						
동아동물병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64-7	소말	김철	1						
동남가축병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94-3	소말	허봉탁	1						
맑은동물병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83-1	혼합	김도영	1		황인선				
표선가축병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79-1	소	강봉담	1	5//23					

첨부 5. 말진료수의사 명단

말 진료네트워크 협력동물병원

병원명	수의사	연락처	소재지
삼포동물병원	김영균	017-231-1944	경기 과천
	정현석	010-7224-4117	
마사랑동물병원	강순구	011-238-4247	경기 과천
	우영범	011-336-2391	
닥터임동물병원	임병만	016-207-2899	경기 과천
	함상훈	010-2077-2782	
J&C동물병원	황준석	011-9829-5545	경기 이천
	박철규	016-246-2396	
김창식동물병원	김창식	011-9730-3827	경북 대구
내륙생산자협회동물병원	남종현	010-3478-5998	전북 장수
서원동물병원	임진호	010-7234-1955	경남 부산
	한상우	016-708-5148	
제주말전문병원	최종복	011-216-3212	제주
우리동물병원	고재형	011-9487-3932	제주
J 클리닉	고진석	010-8661-5692	제주
	김민정	010-4699-8565	제주
맑은동물병원	김도영	010-7508-6566	제주
다솜동물병원	이광협	010-4101-3966	제주
서진동물병원	이성재	017-201-9252	제주
행복한동물병원	김의령	017-693-4919	제주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속동물병원	고양남	010-5595-0582	제주
서라벌동물병원	이충섭	016-9281-8800	경북 영천
문막동물병원	민경현	011-366-7582	강원 원주
	김원홍	010-4356-7690	
정동물병원	정재관	011-491-6955	충남 서산
행복을찾는동물병원	이한경	011-654-9529	전북 김제
대관령동물병원	김순표	011-810-2494	경북 영천
낙동가축병원	서영길	011-847-6585	경남 양산
서부동물병원	유명근	011-329-1140	경기 안성
발안동물병원	김성일	016-9336-9119	경기 화성

2008 말 임상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최동명	대한동물병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7-30 2층	031-946-3318
2	이성환	평창영월정선 축협 동물병원	강원도 영월군.읍 영흥리 948-12	033-372-2263
3	홍성진	애니스동물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5-1 오성프라자 102	031-713-9981
4	박은호	남문동물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187-9	063-284-5477
5	육진엽	개명동물병원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403-141	02-2619-0888
6	박경훈	피그만클리닉 동물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능곡종합프라자 308	010-2335-8575
7	정일현	춘천철원축협 동물병원	강원도 화천군.읍 하1리	019-380-9302
8	조광희	조동물병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8-1	011-366-5512
9	안희영	아름동물병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2-23	043-731-3935
10	사재범	현대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80-15	054-927-6979
11	김석조	애니팻동물병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02-6080-8895
12	지명규	한마음동물병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99-16	031-982-7588
13	이영식	정동물병원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58-11	010-6388-2010
14	최동학	동인동물병원	대구시 중구 동인4가 332	053-424-4258
15	정학섭	봉선동물병원	광주시 남구 봉선동 1027-6	062-673-7585
16	박영재	박영재동물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98	063-284-7774
17	이기환	애견종합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3-1	031-335-8275
18	민경현	문막동물병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485-5	033-735-7582
19	윤경국	함안축협동물병원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23-11	055-583-4992
20	황정연	우리동물병원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15-5	055-932-5279

연번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21	양성근	양수의과병원	경북 영천시 야사동 293-8	054-334-2366
22	양영철	캣츠앤독동물병원	부산시 금정구 장전 3동 312-7 3층	051-514-5404
23	유주호	홍성종합동물병원	충남 홍성군.읍 대교리 391-15	041-634-2486
24	김구용	에이스동물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3-11	031-875-8090
25	노정석	호평동물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38-1 늘봄타워 103호	031-511-7275
26	채기석	연합동물병원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 산 58	011-652-8183
27	고영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울산시 남구 옥동 146-1(울산대공원 내)	052-256-5322
28	진정운	진동물병원	전북 김제시 요쿨동 288-40	063-544-2864
29	김제일	제일동물병원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593-4	011-654-2835
30	김동호	다나동물병원	전북 정읍시 장명동 79-2	063-537-1041
31	이승욱	서신동물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1-4	063-253-2747
32	온영진	남원제일가축병원	전북 남원시 금동 252-1	063-625-2782
33	김선명	녹십자동물병원	전북 정읍시 시기3동 96-6	063-532-5652
34	이유탉	금비동물병원	대전시 중구 오류동 164-5	010-4430-4672
35	김남영	해맑은동물병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4-5 골드빌 3차 104	010-6416-7579
36	홍지민	도원동물병원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332-18	053-641-0010
37	한연희	해마루동물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031-781-2992
38	문부산	장수축협동물병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83-7	011-9876-3475
39	김성기	발안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향남면 평리 81-70	016-9336-9119
40	이병천	발안동물병원	경기 화성시 향남면 평리 81-70	011-9777-6634
41	서영길	낙동가축병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황전아파트 102동 1404호	011-847-6585

첨부 6. 소진료수의사 설문지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산업동물 진료체계 개편
및 방역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주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교수 김 두
연구원: 충북대학교 교수 모인필
서울대학교 교수 박봉균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절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에 정부의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용 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수행할 전담수의사의 준비와 진료체계의 정비 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정부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인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파악,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및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양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수의분야가 수의사처방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로 수의사처방제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분야가 될 수 있도록 산업동물 수의사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의 답변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작성하신 설문지는 반송봉투에 넣어 반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병원 소재지와 진료권역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 주십시오.
 병원 소재지는 ()도/광역시, ()군/구이며,
 ()도/광역시, ()군/구까지 왕진을 한다.
8. 하루 출장 목장 수는?
 ① 젖소 ()개 ② 비육우·한우 ()개 ③ 돼지 ()개
 ④ 기타 가축(; 개)
9. 순수 진료 두수는 축종별로 1일 평균 대략 몇 두입니까?
 ① 젖소 ()두 ② 비육우·한우 ()두 ③ 돼지 ()두
 ④ 기타 가축(; 두)
10. 1일 평균 왕진거리는 왕복 몇 km 정도입니까? (km)
11.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시나 군 내에서 목장의 평균 거리는? (Km)
12.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시나 군 내에서 가장 먼 목장의 거리는?(km)
13.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시나 군 경계 내에서만 진료한다면 하루 최대 출
 장 가능한 목장 수는?
 (젖소의 경우 개 목장)
 (한우의 경우 개 목장)
 하루 최대 치료 가능한 두 수는? (젖소의 경우 두)
 (한우의 경우 두)
14. 귀하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왕진을 위해 왕
 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몇 시간입니까? ()시간
15. 현재 귀 동물병원의 휴무 일수는? ()
 ① 주 1일 ② 주 2일 ③ 월 1일 ④ 월 2일 ⑤ 무휴
 ⑥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16. 연중 휴가 일수는 몇 일 정도입니까? (일)
 시기는 언제입니까 ?

17. 진료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나열해주시요 (, , ,)
① 내과 ② 외과 ③ 산과(번식포함) ④ 기타()

18. 개업 전 또는 진료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은 임상실무교육 정도는?

- ① 대학 졸업 후 바로 개업 ()
- ② 개인 동물병원에서 인턴연수를 ()년 받았다
- ③ 임상을 업무로 하는 국가기관에서 ()년 근무
- ④ 대단위목장에서 수의사로 ()년 근무
- ⑤ 대학원에서 ()년 수학
- ⑥ 대학동물병원에서 ()년 인턴 수련
- ⑦ 기타 (기술하여 주십시오:)

19. 귀하의 동물병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群) 관리(herd control)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① 번식관리 ()
- ② 발굽관리 ()
- ③ 유방염관리 ()
- ④ 대사관정시험(metabolic profile test) ()
- ⑤ 인공수정 ()
- ⑥ HACCP 용역사업 ()
- ⑦ 질병컨설팅 용역사업 ()
- ⑧ 기타 (기술하여 주십시오:)

20. 보수교육(평생교육)을 받는 기관과 매년 받는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대한수의사회, () 시간
- ② 시/도수의사회, ()시간
- ③ 임상수의학회, () 시간
- ④ 한국우병학회, () 시간
- ⑤ 기업체, () 시간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요;), () 시간

21. 동물약품의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해 산업동물 수의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현재의 수의사 업무 능력으로 처방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22.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업무능력의 증진을 위해 전문 재교육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중복 표시도 가능합니다.

- ① 임상약리학 ()
- ② 처방전 작성법 ()
- ③ 번식관리 ()
- ④ 발급관리 ()
- ⑤ 유방염관리()
- ⑥ 대사관정시험(metabolic profile test) ()
- ⑦ 송아지 건강관리 ()
- ⑧ 외과 수술 ()
- ⑨ HACCP 교육
- 10. 기타 ()

23. 재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소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① 대학교()
- ② 대한수의사회()
- ③ 별도의 전문 보수교육기관()
- ④ 농림수산식품부()
- ⑤ 기타 ()

24. 현재 개업하고 있는 시나 군 지역의 축산 여건과 동물병원의 수를 고려할 때,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가 실행될 경우 현재의 산업동물병원 수의사만으로 축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큰 불편 없이 처방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 ② 아니다 ()

25.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 시/군 내에 몇 명 정도의 수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군; ()명

26. 현재 반려동물(소동물)과 산업동물(소)을 함께 진료하는 경우,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어 진료 건 수가 증가된다면 산업동물

(소)의 진료만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27.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한다면, 항생제의 판매는 축종별로 1일 평균 대략 몇 건입니까?

- ① 젓소 ()건 ② 비육우·한우 ()건 ③ 돼지 ()건
④ 닭 또는 기타 조류 ()건 ⑤ 기타 가축 (;)건

28. 농협, 축협, 공공기관 또는 기업목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관의 명칭과 진료에 참여하는 수의사는 총 몇 명입니까?

- () ()명

29. 축협(또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현재 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약품만을 판매하는 하는 경우, 동물약품 처방제가 실시된다면 대동물 진료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산업동물병원의 업무의 다양화 (일반진료, 군관리, 방역업무, 질병컨설팅과 HACCP 용역 등)와 1인 경영의 문제점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산업동물병원도 여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는 가축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수의사는 공제조합진료소에서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반경 35Km의 진료소당 7.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면 수의사의 업무는 더욱 증가될 것이며, 축산분야에서는 수의분야가 처방제를 수행을 능력이 있는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의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산업동물병원도 적당한 지역 단위로 여러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0. 현재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1인의 수의가가 운영하는 형태인데, 시군 단위로 여러 명의 수의가가 근무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첨부 7. 소진료수의사 설문지 해석

소 전문수의사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를 소 전문수의사 815명에게 배포하여 그 중 229매가 회수되어 분석하였으며 답변하지 않은 일부의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복수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숫자로 분석하여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 전국 소 진료 전문수의사의 현황

1) 연령 분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 전문수의사의 연령대 분포는 표 1에서와 같이 20대가 0.9%, 30대가 11.8%, 40대가 30.7%, 50대가 20.6%, 60대 이상이 35.9%로 각 연령대에 수의사가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출장과 대동물을 주로 다루는 소 임상의 특성상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 은퇴할 나이인 60대 이후에서도 수의사 처방제 설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표 1. 설문에 참여한 소 전문수의사의 연령대

연령대	빈도	백분율
25-30	2	0.9%
30-39	27	11.8%
40-49	70	30.7%
50-59	47	20.6%
60-69	63	27.6%
70 이상	19	8.3%
계	801	100.0%

2) 지역적 분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 전문수의사의 지역적 분포는 표 2에서와 같이 경기도 19.2%, 충청남도 18.2%, 전라남도 13.6%, 경상북도 12.1%, 경상남도 11.2% 등을 보여 대체로 활동하는 수의사가 많은 지역의 수의사가 설문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표 2).

표 2. 설문에 참여한 소 전문수의사의 지역별 분포

지역	빈도	백분율
서울	0	0.0
부산	1	0.5
대구	2	1.0
인천	0	0.0
광주	0	0.0
대전	2	1.0
울산	3	1.4
경기	41	19.2
강원	14	6.5
충북	13	6.1
충남	39	18.2
전북	18	8.4
전남	29	13.6
경북	26	12.1
경남	24	11.2
제주	2	1.0
합계	214	100

3) 소 전문수의사로 임상에 종사한 기간

소 전문수의사로 임상에 종사한 기간을 5년 단위로 보았을 때 10년 이상에서 40년까지 고르게 분포하였고 30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가 39.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년 미만 종사한 수의사가 4.4%를 차지하여 노령의 수의사들이 설문에 비교적 많이 참석하였다. 소 임상에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 수의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3).

표 3.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한 기간 (년)

구분	<5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	합계
합계	10	17	23	38	33	17	38	28	24	228
(%)	(4.4)	(7.5)	(10.1)	(16.7)	(14.5)	(7.5)	(16.7)	(12.3)	(10.5)	(100)

4) 동물병원의 수의사 수

수의사 처방제 실행 시에 처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에서 표 4와 같이 각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1명이 90.0%, 2명이 7.0%, 3명이 1.3%, 4명이 0.9%, 6명이 0.4%, 7명이 0.4%로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1명의 수의사 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표 4. 동물병원의 수의사 수

수의사 수	병원 수	%
1	206	90.0
2	16	7.0
3	3	1.3
4	2	0.9
5	0	0.0
6	1	0.4
7	1	0.4
합계	229	100.0

5) 주된 진료 대상 동물

주된 진료 대상 동물을 1, 2 순위로 응답한 내용에서 한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16.7%, 젓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1.8%이었으며 한우와 젓소 23.2%, 젓소와 한우는 20.2%로서 한 가지 축종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우와 젓소를 진료대상으로 하는 수의사의 비중이 높았다. 소와 반려동물을 함께 진료하는 수의사도 33.8%에 달하여 전문적인 반려동물병원이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소 전문수의사가 반려동물도 함께 진료하고 있었다. 말을 소와 함께 진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3%, 야생동물을 소와 함께 함께 진료하는 경우도 1.3%이었다. 0.9%의 수의사는 소, 돼지, 닭을 함께 진료하였다(표 5).

표 5. 주된 진료 대상 동물

구분	한우	젓소	한우+ 젓소	젓소+ 한우	소+ 말	소+ 반려동물	소+ 야생 동물	소+ 기타 동물	합계
병원 수 (%)	37 (16.7)	4 (1.8)	53 (23.2)	46 (20.2)	3 (1.3)	77 (33.8)	3 (1.3)	2 (0.9)	228 (100)

6) 진료대상 가축 수 (젓소)

젓소를 진료대상으로 하는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의 36.7%가 500두 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27.5%는 500-1,000두의 젓소를 진료하고 있어 64.2%의 수의사들이 1,000두 미만의 젓소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었다. 3,000두 이상의 젓소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6.5%에 해당되었다(표 6).

표 6. 진료대상 가축 수 (젓소, 두)

구분	<500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2,999	3,000- 3,499	3,500- 3,999	>4,000
병원 수 (%)	40 (36.7)	30 (27.5)	8 (7.3)	16 (14.7)	7 (6.4)	1 (0.9)	0 (0.0)	3 (2.8)	4 (3.7)

7) 진료대상 가축 수 (한우 및 비육소)

한우 및 비육소를 진료대상으로 하는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의 28.4%가 1,000두 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17.6%는 1,000-1,999두, 13.6%는 2,000-2,999두의 소를 진료하고 있어 59.6%의 수의사들이 3,000두 미만의 한우 및 비육소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었다. 8,000두 이상의 한우 및 비육소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는 9.7%에 해당되었다(표 7).

표 7. 진료대상 가축 수 (한우 및 비육소, 두)

구분	<1,000	1,000- 1,999	2,000- 2,999	3,000- 3,999	4,000- 4,999	5,000- 5,999	6,000- 6,999	7,000- 7,999	>8,000
병원 수 (%)	50 (28.4)	31 (17.6)	24 (13.6)	22 (12.5)	10 (5.7)	17 (9.7)	4 (2.3)	1 (0.6)	17 (9.7)

8) 왕진지역

왕진지역은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시군 이외의 지역에도 진료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38.2%의 수의사가 개업한 시/군 지역에서만 진료를 하였고 61.8%의 수의사는 개업을 하고 있는 시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의 지역에도 왕진을 다녔다(표 8).

표 8. 왕진 지역

구분	빈도	백분율
시/군 내 진료	83	38.2
시/군 외 진료	134	61.8
합계	217	100

9) 하루 평균 진료 건 수(젖소 환산 단위)

각 동물병원의 하루 진료 건수를 젖소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인 71.5%의 동물병원이 하루 5건 미만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9.5%가 하루 6-10건, 4.5%가 11-15건, 2.5%가 16-20건의 진료를 수행하였으며 하루 30건 이상 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도 2개가 있었다(표 9). 모든 동물병원의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5.2 건이었다.

표 9. 주 당 진료 건 수(젖소 환산 단위)

구분	1-5	6-10	11-15	16-20	21-25	26-30	>30	합계
병원 수	143	39	9	5	1	1	2	200
(%)	(71.5)	(19.5)	(4.5)	(2.5)	(0.5)	(0.5)	(1.0)	(100)

10) 하루 평균 왕진 거리

하루 평균 왕진 거리의 조사에서 38.6%의 수의사가 50km 미만이었고 27.7%의 수의사가 50-100km의 거리를 왕진하였다. 하루 300km 이상 왕진을 다니는 수의사가 0.5%있었으며 (표 10), 모든 수의사의 하루 평균 왕진 거리는 93.3km이었다.

표 10. 하루 평균 왕진 거리 (km)

구분	빈도	백분율
<50	78	38.6
50-100	56	27.7
101-150	44	21.8
151-200	14	6.9
201-250	5	2.5
251-300	4	2.0
>300	1	0.5
합계	202	100

11) 개업하고 있는 시/군 목장의 평균 거리

개업하고 있는 시/군 목장의 평균 거리의 조사에서 10km 미만은 16.6%이었고 46.7%의 목장이 10-19km에 있었다. 5.0%의 수의사가 목장의 평균 거리가 40km 이상의 시/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설문에 응한 수의사가 활동하는 지역 목장의 평균 거리는 17.0km이었다.

표 11. 개업하고 있는 시/군 목장의 평균 거리 (km)

구분	빈도	백분율
<10	33	16.6
10-19	93	46.7
20-29	46	23.1
30-39	17	8.5
>40	10	5.0
합계	199	100

12) 개업하고 있는 시/군 목장의 가장 먼 거리

개업하고 있는 시/군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목장의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수의사의 지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목장이 10km 이내인 경우가 4.2%, 11-20km가 22.1%, 21-30km가 28.4%, 31-40km가 19.5%로서 74.2%의 시/군이 최대 왕진거리가 40km 이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5.8%의 수의사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시/군에서 40km 이상의 거리에 목장이 있는 것으로 설문하였으나 일반적인 행정 단위의 반경을 고려할 때 수의사 자신의 타 시/군에 왕진 가는 거리로 잘 못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12). 전체 수의사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목장의 평균 거리는 35.3km로 조사되었다.

표 12. 개업하고 있는 시군 목장의 가장 먼 거리 (km)

구분	빈도	백분율
10km까지	8	4.2
11-20	42	22.1
21-30	54	28.4
31-40	37	19.5
41-50	19	10.0
51-60	13	6.8
61-70	12	6.3
71-80	4	2.1
81-90	1	0.5
합계	190	100

13) 하루 최대 진료 건 수 (젖소)

젖소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가 각 동물병원의 현재 여건으로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건수를 분석하였다. 하루 5건까지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36.7%이었으며 45.8%가 하루 6-10건, 13.3%가 11-15건, 2.5%가 16-20건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26-30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한 수의사도 2명(1.7%) 있었다(표 13). 모든 동물병원의 하루 최대 진료 건수는 13.6 두이었다.

표 13. 주 당 진료 건 수(젓소)

구분	빈도	백분율
5건까지	44	36.7
6-10	55	45.8
11-15	16	13.3
16-20	3	2.5
21-25	0	0.0
26-30	2	1.7
>30	0	0.0
계	120	100

14) 하루 최대 진료 건 수(한우 및 비육우)

한우 및 비육우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가 각 동물병원의 현재 여건으로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건수를 분석하였다. 하루 10건까지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수의사가 69.1%이었으며 26.1%가 하루 11-20건까지 진료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20건 이상을 진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수의사도 11명(5.7%) 있었다(표 14). 모든 동물병원의 하루 최대 진료 건수는 12.5 두이었다.

표 14. 하루 최대 진료 건 수(한우 및 비육우)

구분	빈도	백분율
10건까지	132	69.1
11-20	50	26.1
21-30	1	0.5
31-40	1	0.5
41-50	4	2.1
51-60	2	1.0
>61	3	1.6
계	191	100

15) 일일 평균 근무 시간

수의사의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은 29.7%가 9시간 이하 근무하였고 60.7%의 수의사는 10-15시간 근무하였다. 9.6%의 수의사는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었다(표 15). 전체 수의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하루 10.7시간이었다.

표 15. 일일 평균 근무 시간

구분	빈도	백분율
<5	17	7.8
5-9	48	21.9
10-15	133	60.7
>15	21	9.6
합계	219	100

16) 휴무 일수

수의사의 휴무 일수의 조사에서 주 1회 이상 휴일을 갖는 수의사는 49.8%에 해당하였으며 50% 이상의 수의사가 휴일이 없거나 월 1-2회의 휴무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6).

표 16. 휴무 일수

구분	빈도	백분율
주 1회	83	38.6
주 2회	24	11.2
월 1회	9	4.2
월 2회	27	12.6
무휴	70	32.6
기타	2	0.9
합계	215	100

17) 주요 수입 과목

진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진료 과목별로 조사한 항목에서 내과(59.9%)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료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그 다음

산과(36.2%) 진료가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외과(2.4)나 기타(1.4%) 진료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17).

표 17. 주요 수입과목

구분	빈도	백분율
내과	124	59.9
외과	5	2.4
산과	75	36.2
기타	3	1.4
합계	207	100

18) 개업 전 임상실무교육

수의사가 개업 전에 임상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나아가 많은 수의사들은 졸업 후 임상 연수과정이 없이 바로 개업을 하였으며(16.5%), 54.1%의 수의사들은 개인 동물병원에서 인턴 연수를 받았다. 그리고 7.8%의 수의사는 국가기관에서 임상업무를 담당하며 임상 연수를 하였으며 7.8%의 수의사는 대단위 목장에서 진료 담당을 담당하면서 임상 연수를 받았다. 그리고 5.6%의 수의사는 대학원과정을 수학하거나 대학동물병원에서 임상 연수를 받았다(표 18).

표 18. 개업 전 임상실무교육

구분	빈도	백분율
대학 졸업 후 바로 개업	36	16.5
개인 동물병원에서 인턴 연수	118	54.1
국가기관에서 임상업무	17	7.8
대단위 목장에서 진료 담당	17	7.8
대학원 수학	6	2.8
대학동물병원에서 연수	6	2.8
기타	18	8.3
합계	218	100

19)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관리 항목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관리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중복으로 답변을 하여 229명의 수의사로 분석한 결과, 59.4%의 수의사가 번식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40.2%가 인공수정, 18.8%가 질병컨설팅 용역관리, 16.6%가 발급관리, 13.5%가 유방염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에서는 수의사들이 높은 비율로 군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군관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질문에 응하였는지 의심스럽다(표 19).

표 19.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관리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번식관리	136	59.4
발급관리	38	16.6
유방염관리	31	13.5
대사관정시험	14	6.1
인공수정	92	40.2
HACCP 용역사업	14	6.1
질병컨설팅 용역사업	43	18.8
기타	7	3.1
합계	229	100

20) 보수교육을 받는 기관

설문에 응답한 소 전문수의사들이 개업 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는 기관들의 조사에서 85.2%의 수의사가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한국우병학회 교육에 38.0%, 대한수의사회 교육에 31.4%, 한국임상수의학회 교육에 16.6% 참여하였다. 10.5%의 수의사는 기업체나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하였다(표 20).

표 20. 보수교육을 받는 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대한수의사회	72	31.4
시/도수의사회	195	85.2
한국임상수의학회	38	16.6
한국우병학회	87	38.0
기업체	5	2.2
기타	19	8.3
합계	229	100

21) 수의사 처방제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동물약품의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해 재교육이 필요한 지를 확인한 조사에서, 71.6%의 수의사들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7.0%의 수의사들은 현재의 수의사 업무 능력으로 처방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21).

표 21. 수의사 처방제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164	71.6
필요하지 않다	39	17.0
무응답	26	11.4
합계	229	100

22) 수의사 처방제를 위한 보수교육 과목의 필요성

동물약품의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해 재교육이 필요한 과목을 조사한 설문에서, 70.7%의 수의사가 임상약리학, 81.2%가 처방전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22).

표 22. 수의사 처방제를 위한 보수교육 과목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임상약리학	128	70.7
처방전 작성법	147	81.2
합계	181	100

23)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위한 재교육 기관

동물약품의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해 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실시에 적합한 기관으로 43.5%의 수의사가 대한수의사로 응답하였고, 28.7%는 별도의 전문 보수교육 기관, 26.8%는 전국의 수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에 응답하였다(표 23).

표 23.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위한 재교육 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전국의 수의과대학	56	26.8
대한수의사회	91	43.5
별도의 전문 보수교육 기관	60	28.7
농림수산식품부	2	0.9
기타	0	0.0
합계	209	100

24) 현재의 시군 수의사 수로 처방제 실시의 가능성

현재 개업하고 있는 시나 군 지역의 축산 여건과 동물병원의 수를 고려할 때,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가 실행될 경우 현재의 산업동물병원 수의사만으로 축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큰 불편 없이 처방제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서, 87.9%의 수의사는 현재의 수의사로 충분히 처방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1%의 수의사만이 자신이 활동하는 시/군에 수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설문하였다(표 24).

표 24. 현재의 시군 수의사 수로 처방제 실시의 가능성

구분	빈도	백분율
충분하다	189	87.9
아니다	26	12.1
합계	215	100

25) 수의사 처방제 실시 시에 혼합동물병원 수의사의 소 전문수의사로의 전환 가능성

현재 반려동물(소동물)과 산업동물(소)을 함께 진료하는 혼합동물병원의 경우, 동물약품 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어 진료 건 수가 증가된다면 산업동물(소)의 진료만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설문에서, 74.5%의 수의사는 소 전문수의사로 전환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5.3%의 수의사는 처방제 실시 후에도 반려동물의 진료와 함께 소를 진료할 계획으로 응답하였다(표 25)

표 25. 수의사 처방제 실시 시에 혼합동물병원 수의사의 소 전문수의사로의 전환 가능성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118	74.7
아니다	40	25.3
합계	158	100

26) 지역별 동물병원의 통합

소 전문동물병원의 활성화와 수의사 처방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 지역별로 동물병원을 통합하는 안에 대한 응답에서 79.9%의 수의사가 찬성하였으며 14.8%의 수의사만이 반대하였다(표 26).

표 26. 지역별 동물병원의 통합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183	79.9
필요 없다	34	14.8
무응답	12	5.2
합계	229	100

27) 통합 동물병원의 운영 주체

시/군별로 통합된 동물병원의 운영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 해당 지역 수의사들끼리의 독자적으로 통합한 병원의 수의사의 신분으로 근무하는 안에 38.0%가 응답하였고, 국가의 행정기관(시/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27.5%가 응답하였으며 농협과 같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에 12.7%가 응답하였다. 7.9%의 수의사는 수의사 원장이 다른 수의사를 고용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에 응답하였다(표 27).

표 27. 통합 동물병원의 운영 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수의사가 공동 운영하는 병원	87	38.0
수의사 원장이 다른 수의사를 고용하는 병원	18	7.9
농협과 같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병원	29	12.7
국가의 행정기관(시/군)에서 운영하는 병원	63	27.5
기타	2	0.9
무응답	15	6.6
필요없음	34	14.8
합계	229	100

첨부 8. 수의과대학 학생 취업분야 설문지

정부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인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동물 진료 분야별 종사 수의사 실태 및 문제점 파악,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및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양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산업동물 분야의 수의사의 수급에 대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현재 수의과대학 몇 학년입니까? ()학년
2.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태어나 성장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도농복합지역 ④ 농촌 및 산간지역 ⑤ 어촌지역
4. 졸업 직후 귀하가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① 산업동물 진료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말 ()
 대·소동물 혼합 ()
② 반려동물 임상
 개 ()
 고양이 ()
③ 야생동물 임상 ()
④ 연구관련 공무원(수의과학연구, 독성연구, 기타 정부연구기관)
⑤ 행정관련 공무원(수의검역, 가축위생,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 ⑧ 대학원 진학 후 교육기관 근무
- ⑨ 군진수의장교
- ① 기타 ()

5. 졸업 10년후 귀하가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 ① 산업동물 진료
 - 한우 ()
 - 젓소 ()
 - 돼지 ()
 - 닭 ()
 - 말 ()
 - 대·소동물 혼합 ()
- ② 반려동물 임상
 - 개 ()
 - 고양이 ()
- ③ 야생동물 임상 ()
- ④ 연구관련 공무원(수의과학연구, 독성연구, 기타 정부연구기관)
- ⑤ 행정관련 공무원(수의검역, 가축위생,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 ⑥ 일반기업(약품회사, 사료회사, 식품회사, 농장, 환경위생 등)
- ⑦ 수의축산관련단체(농협, 마사회 등)
- ⑧ 대학원 진학 후 교육기관 근무
- ⑨ 군진수의장교
- ① 기타 ()

첨부 9. 가금진료수의사 설문지

가금 질병 전문수의사 설문지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양계질병 진료에 종사한 기간은? (년)
3. 수의사면허 취득 연도는? (년)
4. 수의사 면허 취득 후 양계질병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년)
5. 양계질병 진료에 종사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은? ()
 - ① 반려동물 대상 동물병원 수의사
 - ② 공무원
 - ③ 축산물 위생업무 (자체 검사원 또는 관리 수의사)
 - ④ 일반 기업체 직원 (약품, 사료, 식품 등)
 - ⑤ 수의·축산 관련 단체
 - ⑥ 대학원생 및 교직
 - ⑦ 수의장교
 - ⑧ 없다
 - ⑨ 기타(기술하여 주십시오 :)
6. 귀 동물병원의 주된 진료 대상 축종은? 두 가지 이상에 표시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이상에 표시할 경우 1순위에 '1'을 2순위에 '2'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종계() ② 산란계(육추포함) (1) ③ 육계 (2) ④ 기타 가금() ⑤ 소동물 혼합 (3)
 - ⑥ 소 혹은 돼지와 혼합 ()

12. 동물약품 판매에 의한 순수입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13. 방역 업무 지원에 의한 순수입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14. 약품 판매와 기타 진료 외적 수입은 제외하고, 순수 진료에 의한 귀하의 순수입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400만원 ③ 401만원~600만원
④ 601만원~800만원 ⑤ 801만원 이상

15. 매출액에 근거할 때 귀 동물병원은 해당 소재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 ① 상위 ② 중위 ③ 하위 ④ 잘 모르겠음

16. 귀하의 동물병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群)관리(herd control)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① 백신접종관리 ()
② 질병관리 ()
③ 생산성관리 ()
④ HACCP 관리 (0)
⑤ 기타 (기술하여주십시오: 농업경영컨설팅)

17. 귀하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왕진을 위해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몇 시간입니까? (시간)

18. 현재 귀 동물병원의 휴무일수는? ()

-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월 1회 ④ 월 2회 ⑤ 무휴
⑥ 기타 (기술하여 주십시오 :

)

19. 1주일간 평균 왕진 거리는 왕복 몇 km정도 됩니까? (km/주)

20. 1주일간 평균 왕진 횟수는 몇 회 정도입니까? (회/주)

21. 진료요청의 가장 빈번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백신접종 ④ 약품투약 ⑤ 기타 (

22. 진료의 주 수입원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약품판매 ② 컨설팅(정기) ③ 백신접종 ④ HACCP 관리 ⑤ 기타

(양계전문의 제도 및 재교육)

23. 업무능력의 증진을 통해 양계질병 수의사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 재교육기관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4. 재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교육의 바람직한 주체는? ()

- ① 대학
- ② 대한수의사회
- ③ 별도의 전문 보수교육기관

25. 양계전문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는 이유를 아래 글 상자 안에 기술하십시오.

26. 전문의 제도의 사업주체는 무엇이 좋겠습니까? ()

① 양계수의사회

② 대학

③ 별도기구

④ 기타 대안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의 가축공제제도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대한수의사회, 2006.

1. 파견 목적

현재 침체 일로에 있는 국내 대동물 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농업 공제조합 가축공제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파견 일시

2006. 6. 19 - 2006. 6. 25(7 일간)

3. 조사 대상 지역

- 북해도농업공제조합연합회
- 북해도농업공제조합연합회연주소
- 石狩(이시카리) 진료소
- 石狩지역 목장(中澤牧場)
- 북해도수의사회
- 오비히로 축산대학
- 十勝(토카치)농업공제조합 本部
- 十勝농업공제조합 南部진료소
- 남부사업소 관내 영농조합법인 Cosmoagri Dairy Farm
- 十勝 육성우 목장 (나이타이 목장)
- 十勝농업공제조합 幕別(마꾸베즈)진료소
- 十勝농업공제조합 豊頃(도요코로)진료소

4. 조사내용

4.1. 농업공제 제도

4.1.1.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개요

4.1.1.1. 제도의 목적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지리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재해대책은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재해대책에는 보조금이나 금융제도가 있지만, 개개의 농가를 기반으로 한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농업재해보상제도이다. 농업재해보상제도는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농작물, 가축, 과수, 밭작물, 원예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해를 입은 농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농업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1.2. 제도의 기구

농업재해보상제도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市, 町, 村(이 양자를 총칭하여[조합 등]이라 한다),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국가의 농업공제 재보험 특별회계에 의한 3단계 제도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 등은 농가로부터 공제료를 징수하고, 농작물 등에 일정 이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 농가에 공제금을 지불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농가와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이것을 공제관계라 한다). 그러나 한번 큰 재해에 휩쓸리게 되면, 공제금의 지불액이 막대해져 한 조합 등만으로는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등은 공제책임의 일정 부분을 연합회에 보험(보험관계)을 들며, 또한 연합회는 보험책임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재보험(재보험 관계)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4.1.1.3. 제도의 특색

농업재해보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 1) 농작물공제 및 가축공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 2) 농작물공제의 경우 경작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조합 등에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 또한 그 공제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당연가입제). 또한 농가부담 공제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는 조합 등에 강제 징수권이 인정되어 있다.
- 3) 농가가 지불하는 공제료 중 약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 4) 연합회 및 조합 등의 사무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 5) 국가는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에 대하여 재보험을 행하고 있다.

4.1.1.4. 농업공제사업의 종류

농업 재해 보상제도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다음과 같다.

공제사업의 종류	공제 목적	사업의 성질
농작물공제	수도작, 보리, 陸稻	필수사업
가축공제	소, 말, 돼지	필수사업
과수공제	사과, 운집귤, 여름귤, 양갱, 포도, 배, 복숭아, 감, 지정감귤, 비파, 밤, 매실, 자두, 키위, 파인애플	임의사업
밭작물공제	고구마, 대두, 소두, 강낭콩, 호프, 스위트 쿤, 양파, 호박, 사탕수수, 차, 누에	임의사업
원예시설공제	특정 원예시설, 부대시설, 시설 내 농작물, 특정 원예시설 철거비용	임의사업
임의공제	농기구, 건물	임의사업

4.1.1.5. 농업공제사업의 책임분담 방식

농업공제사업은 위험의 지역분산을 꾀하는 의미로 3단계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각각 책임을 분산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제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 등, 연합회 및 국가의 책임 비율이 다르다.

4.1.1.5.1. 농작물공제

통상책임 부분은 조합 등과 연합회가, 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연합회와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통상책임 부분은 조합 등과 연합회의 책임 분담 비율이 8:2로 되어 있다.

4.1.1.5.2. 가축공제

이상 사고(구제역 등의 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통상 사고의 경우에는 조합 등, 연합회 및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 이상사고(국가가 100% 부담)
- 통상사고(조합 등: 20%, 연합회: 30%, 국가: 50%)

4.1.2. 농업공제조합 조직의 개요

4.1.2.1. 조합원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로 되어 있다.

- 주소 요건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

- 업무 요건

- 1) 水稻, 陸稻 또는 보리 경작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소, 말 또는 돼지에 관한 양축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과수공제의 공제목적으로 되어 있는 과수에 관한 재배 업무에 종사하는 자
 - 4) 발작물공제의 공제목적으로 되어 있는 농작물에 관한 재배 업무에 종사하는 자
 - 5) 원예시설공제의 공제목적으로 되어 있는 특정 원예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6) 농가구를 소유하는 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상기의 '1)', '3)' 또는 '4)'만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임의의 생산조직(이하<농업 공제자격단체> 라고 한다)으로 공제료의 분담 및 공제금의 분배방법, 대표자, 그 외에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규약을 정하며, '1)'의 경작, '3)' 및 '4)'의 재배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法人格을 지니지 않는 것.

<당연가입>

농작물공제(水稻, 보리) 및 양잠공제에 관계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자는 모두 조합원으로 된다.

북해도에 있어서는

가. 水稻: 60 아르 이상,

나. 보리: 50 아르 이상의 경작자는 <당연 가입자>로 된다.

4.1.2.2. 총대회(總代會)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 전원에 의한 총회 또는 총회를 대신하는 총대회이며, 연도 초에 통상 총회,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가 개최된다.

<總代會>

총회를 대신 할 것으로서 설치된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다. 단, 조합의 해산 결정은 할 수 없다.

- 총회는 정관에 규정하는 정수(30 인 이상)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 한다.

- 總代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에 정해져 있다.

4.1.2.3. 이사

- 이사는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 이사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정수(5인 이상)에 근거하여 총회(또는 총대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정수 중 적어도 3/4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에 정해져 있다.
- 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공동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또한 이사는 조합장 및 부조합장을 호선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4.1.2.4. 감사

-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 감사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정수(2인 이상)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에 정해져 있다.
- 감사는 매 사업년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한 의견을 언급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없을 때, 총회를 소집한다.

4.1.2.5. 손해평가회

- 손해평가회는 조합장의 자문에 근거하여, 공제사고에 관계되는 손해의 방지 및 손해의 인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는 기관이다.
- 손해평가회는 조합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위원으로 조직한다.
- 손해평가회에는 농작물공제부회, 가축공제부회 등 필요한 부회를 둘 수가 있다..
- 손해평가회의 임무는 3년 이내로 공제규정에 정해져 있다.

4.1.2.6. 손해평가원(손해조사원)

- 손해평가원(손해조사원)은 조합장의 명을 받아 공제목적의 평가, 손해의 인정, 손해의 방지 등에 종사 한다.
- 손해평가원(손해조사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 한다. 임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3년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4.1.2.7. 공제연락원(농업공제조합 부장)

- 공제연락원은 집락(또는 이것에 준하는 지구) 마다 둔다.
- 공제연락원은 공제료의 징수, 손해통지의 수리, 그 밖의 일상의 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담당 지구내의 조합원과의 연락을 담당한다.
- 공제연락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4.1.3. 가축공제의 구조

가축공제는 소, 말 및 돼지가 질병이나 상해로 수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의 진료비나 폐사 또는 폐용으로 된 경우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이다.

4.1.3.1. 보상대상 가축 (공제목적의 종류)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가축은 소, 말 및 돼지의 3가지 축종으로, 공제목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공제목적의 종류>

- 乳用成牛: 젖소의 암컷으로서, 공제료기간개시 시에 출생 후 第5月の 末日を 경과한 것
- 乳用子牛 등: 젖소의 암컷으로서, 공제료기간 개시 시에, 수정 또는 수정난이식 후 240일 이상 경과하고, 출생 후 第5月の 末日を 경과하지 않은 것.
- 肥用成牛: 종모우 이외의 소로서 비육을 목적으로 사양하는 소(젖소의 암컷 중 비육을 목적으로 사양하는 것을 포함) 중에서 공제료기간 개시 시에 출생 후 第5月の 末日を 경과한 것
- 肥用子牛: 종모우 이외의 소로서 비육을 목적으로 사양하는 소(젖소의 암컷 중 비육을 목적으로 사양하는 것을 포함) 중에서 공제료기간 개시 시에 출생 후 第5月の 末日を 경과하지 않은 것
- 그 밖의 肉用成牛: 종모우 이외의 소로서 비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양하는 소(젖소의 암컷도 포함) 중에서 공제료기간개시 시에 출생 후 第5月の 末日を 경과한 것
- 그 밖의 肉用子牛 등: 종모우 이외의 소로서 비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양하는 소(젖소의 암컷도 포함) 중에서 공제료기간개시 시에 수정 또는 수정난이식 후 240일 이상 경과하고, 출생 후 第5月の 末日を 경과하지 않은 것
- 一般 馬: 種牡馬 이외의 말
- 一般 肉豚: 종돈 이외의 돼지로서, 특정 육돈 이외의 육돈(群 단위 인수)
- 特定 肉豚: 종돈 이외의 돼지로, 특정 포괄공제에 관계되는 육돈(群 단위 인수)
- 乳用種 種牡牛: 乳用種에 속하는 種牡牛로서, 종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

- 肉用種 種牡牛: 肉用種에 속하는 種牡牛로 종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
- 種牡馬: 품종에 관계없이 모든 種牡馬로서, 종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
- 種豚: 번식용의 돼지

<자우공제에 대하여>

- 태아를 공제목적으로 하는 자우공제에 대하여는 농가의 선택이며, 재계약 2주간 전까지 유우의 암컷 등과 육용우 등 마다 자우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신청이 가능하다.
- 복합경영 농가는 유우와 육우 양쪽의 子牛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육용종 암소 이외의 유우의 자우(육용종, F1 등의 웅자우)에 대하여는 출생 후 10일을 지난 시점에서 비육용 자우로 공제목적이 변경된다.

4.1.3.2. 가입 가축의 연령 제한

각 축종 모두 가입 시에는 연령 제한(가입자격 취득월령 등)이 정해져 있다.

<가입자격(연령 제한)>

- 소: 출생 후 6개월 째 이상. 단, 소의 자우 등은 태령 240일 이상인 것.
- 말: 출생 후 5개월째 이상. 단, 膽振, 日高에 있어서는 출생 후 제 3개월 째 이상인 것. (가입자격 월령 등의 특례)
- 돼지
 - 종돈은 출생 후 6개월째 이상의 것.
 - 육돈은 출생 후 20일 또는 이유일 어느 쪽부터 8개월 말일까지의 것. (단, 특정 포괄공제의 경우는 상한 없음)

4.1.3.3. 가입의 구조

포괄공제, 특정포괄공제 및 개별공제의 세 가지 공제관계가 있다.

<가입방식>

- 포괄공제

농가마다 사육하고 있는 가축(가축 마다)으로, 가입자격이 있는 전 두수를 가입하는 방식이다. 육돈(일반 육돈)은 群단위로 그 때 그때 인수하여 전 두수를 가입 한다.

대상 가축:

- 유우의 암컷 등 (乳用成牛, 乳用子牛 등)
- 육용우 등 (肥育用成牛, 肥育用子牛, 그 밖의 肉用成牛, 그 밖의 肉用子牛 등)
- 일반 말 (種牡馬 이외의 말)
- 종돈
- 육돈

● 특정 포괄공제

양돈가가 일관경영의 농가 마다 평상시 사양두수를 파악하여 전 두수를 가입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축: 육돈(특정 육돈)

● 개별공제

각 개체 마다 개별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축:

- 乳用種 種牡牛
- 肉用種 種牡牛
- 種牡馬

● 추가인수

포괄공제, 특정포괄공제에서는 가입 후 도입이나 유령축의 자격취득에 따라 가입자격 가축의 두수가 늘어난 경우 자동적으로 포괄공제에 편성되어 공제료를 추가 납입함으로써 공제금액의 증액도 가능하다.

4.1.3.4. 공제사고

4.1.3.4.1. 사망폐용사고(폐사사고)

사망사고(도살에 의한 사망은 제외)와 폐용사고가 있으며, 폐용사고는 사고 내용에 따라 1호-7호로 나뉘어져 있다. 폐사사고로 인정되면 계약비율에 따라 공제금이 지불된다.

<廢用事故의 종류>

제1호 폐용: 질병 또는 불의의 상해에 의해 폐사한 때.

제2호 폐용: 불의의 재앙으로 구조가 불가능하게 된 때.

제3호 폐용: 골절, 과행, 양안 실명 또는 농립수산 대신이 지정하는 질병(예: 혹은 불의의 상해로 치유의 가능성이 없어 사용가치를 소실한 때.

제4호 폐용: 도난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30일을 경과하여도 생사불명인 때.

제5호 폐용: 유우의 암컷, 種牡牛, 種牡馬가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생식기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번식능력을 소실한 때.

제6호 폐용: 유우의 암컷이 치유 가능성이 없는 비유기의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비유능력을 소실한 것이 비유기에 있어서 확실하게 된 때.

제7호 폐용: 소가 출생 시에 기형 또는 불구에 의해 장래에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때.

4.1.3.4.2. 질병상해사고 (病傷事故)

질병 및 상해를 대상으로 한 사고로, 그 치료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초진료 등을 제외)을 보충해주는데, 인수하는 공제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병상급부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또한, 조합의 직영 가축진료소를 이용한 경우는 진료를 받은 것에 따라 조합원의 사고 발생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공제금이 지불된 것으로 본다(現物給付)

<병상 사고와 사고 외(給付外)>

병상사고는 수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과 상해를 말하며, 사람 의료보험의 [보험진료]에 상당 한다. 한편, 거세나 임신감정, 통상 분만의 助産 등은 병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고 외로 취급되고, 그 진료비는 유료(給付 外)로 된다.

4.1.3.4.3. 공제사고의 일부 제외 인수 방식(공제사고의 선택제)

공제사고의 일부를 지불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대신에, 그 만큼의 공제료가 싸지는 (할인) 가입 방식이다. 이것은 다양화하는 축산 농가의 수요에 알맞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가부담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조합원 자신들이 대상으로 되지 않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된다.

4.1.3.5. 계약 보상기간(공제료기간)과 대기 기간

가입한 가축의 계약보상기간(공제료기간)은 공제료 납입 다음 날부터 1년간이다. 또한, 육돈 중 특정 포괄공제(특정 육돈)의 공제료기간은 1년간인데, 포괄공제(일반육돈)는 群마다 7개월 간(생후 20일령-생후 8월 말일)이다. 또한 공제책임이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간을 [대기 기간]이라고 하며,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의 지불을 신청할 수 없다.

<공제료기간과 공제책임기간>

공제료를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을 [공제료기간]이라고 하며, 가축에서는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제책임기간은 양측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때 등, 공제관계가 소멸하는 기간까지이며, 공제료기간과 공제책임기간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 인수와 단기 인수>

일반 인수는 일반 공제료기간의 의미이며, 통상의 계속인수와 같이 공제료기간이 1년간(365일)인 인수이다. 한편, 단기인수는 연도 중도의 신규인수나 가입의 始期, 終期를 통일하는 경우와 같이 공제료기간이 1년간 미만인 인수이다.

<대기 기간>

가축의 공제료기간은 1년간(포괄공제 육돈은 7개월)인데, 신규로 책임이 개시된 후 2주간에는 공제사고가 있어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2주간

을 [대기기간]이라고 하며, 그 기간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책임개시 후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4.1.3.6. 공제금액(계약금액)

공제금액은 계약한 공제금 지분의 최고 한도액이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text{공제금액(계약금액)} = \text{공제가액} \times \text{付保比率(계약비율)}$$

공제가액은 농가가 입는 손해의 계약상 최고 평가액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포괄공제에서는 개개의 가축 평가액의 합계액이다(개별공제에서는 개체의 평가액).

<개체평가액>

가축의 개체평가액은 가장 가까운 가축시장에 있어서 동종 동류의 가축에 대하여, 과거 1년간에 있어서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 또는 계속 시의 평가액이 그대로 공제료기간 중의 평가액(가액)으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년도 설정되는 가축공제 개체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가축의 평가 방식은 과거 1년간의 계약개시 시의 최초에 결정하는 평가제 보험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유우의 자우공제에 있어서 태아 평가액만 예외적으로 공제료기간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平成17년도(2005년도) 태아의 개체평가 기준액>

* 유용종(홀스타인) 1두당	60,000 엔
* 유용종(교잡종)	84,000엔
* ET(黑毛和種)	122,000엔
* 특정 등록우 이외(보통의 육우)의 태아	122,000엔
* 특정 등록우의 태아	166,000엔

평가액은 년 1회(사업년도 마다) 개정된다.

공제료기간개시 시에 검토 한다.

雌雄 同額이다

특정 등록우란 고등 등록우이다.

<付保비율(계약비율)>

付保비율은 농가 마다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공제가액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부보비율은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보상의 충실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최저비율(2-4할 사이로 조합 등 마다 설정)과 최고비율(일율 8할)의 사이에서 선택 된다.

<공제금액의 계산 예>

포괄공제의 경우: [예 1]

유우의 암컷 3두 (가), (나), (다)
부보 비율 80%
공제가액 (가) 50만 (나) 30만 (다) 20만
 합계=100만엔
공제금액 = 100만엔 X 80%= 80만엔

개별공제의 경우: [예 2]

종모마 1두
부보비율 80%
공제가액 100만엔
공제금액 100만엔 X 80%= 80만엔

4.1.3.7. 공제료

공제료는, 그 일부를 국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제료에서 국고 부담분을 뺀 액수가 농가 부담 공제료가 된다. 국고 부담 비율은, 소, 말이 1/2 (50%), 돼지는 2/5 (40%)로 되어있다.

또한, 공제사고의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한 경우는, 그 사고제외에 따라서 할인된 공제료율이 적용된다.

$$\begin{aligned} \text{농가부담 공제료} &= (\text{공제금액} \times \text{공제료적용률}) - \text{국고부담액} \\ \text{국고부담액} &= \text{공제금액}(\text{국고부담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한도액}) \\ &\quad \times \text{공제료표준률} \times \text{국고부담 비율} \end{aligned}$$

<공제료율>

공제료율은, 공제목적의 종류별로 정관 등에 정해진 공제료율 甲, 乙, 丙을 합제한 율로서, 조합 등 별로 과거 3년간의 피해율 실적을 기초로 설정한다.

	공제료율 甲		공제료율 乙	공제료율 丙
	사망 또는 폐용에 의한 보상에 적용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보상 중 의료품 등의 비용에 적용*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보상 중 진료기술료 등에 적용*	이상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폐용)에 적용
유유용 성우의 全道평균율	5.2%	1.8%	3.6%	0.002%
	폐사 부분	병상 부분		이상사고 부분
* 반드시 같이 가입해야 한다.				

甲, 乙, 丙의 합계 적용률 10.602%(표준률 乙 3.5%, 적용률 乙 3.6%)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10.202%로 조정되었음.

<공제료표준률 (표준률)>

주무대신이 과거의 피해율을 기초로 하여 지역 별로 정하고, 국고부담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비율이다.

<공제료적용률 (적용률)>

조합 등이 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율 乙 부분을 주무대신이 정한 표준률과 乙 한도율의 범위 내에서 정관 등에 독자적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농가의 실제 부담공제료의 산정에 사용된다. 표준률을 상회하는 적용률을 설정한 경우는 국고부담은 표준률에 대하여만 한정되므로 농가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고부담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공제료의 국고부담액은 공제금액의 공제료표준률과 국고부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그 기초가 되는 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주무대신이 정한 일정의 한도액(1두 평균액)이 정해져 있다.

<공제료 계산 예>

전기한 공제금액의 포괄공제의 계산 예[예 1]에 연속된다. 이하의 계산식도 동일.

공제료율 10.602% (적용률) ... (b) 10.502% (표준률) ... (c)

공제료 = 80만엔 (a) X 10.602% (b) = 84,816엔 ... (d)

국고 부담액 = 80만엔(a) (한도내) X 10.502% (c) X 1/2 = 42,008엔 ... (e)

농가부담 공제료 = 84,816엔(d) - 42,008엔(e) = 42,808엔

<병상 공제료율의 할인>

가축의 진료비는 환축의 개체평가액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 아님으로, 공제금액의 일정한도(병상급부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를 정하고, 말과 같은 고액의 공제금액을 선택한 경우는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상에 대응하는 공제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병상부분의 공제료율을 할인하고 있다.

- 병상 급부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소, 말, 중돈): 1두 평균 40만엔
- 급부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소의 태아): 1두 평균 8만엔
- 할인으로 간주되는 조치
 - ① 사고제의 인수 방식 (공제사고의 선택제)
 - ② 공제 급부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병상 공제료율의 할인)
 - ③ 위험단계 별 공제료율 (저 피해율의 조합원 등)

4.1.3.8. 공제책임의 분담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이상부분(공제료 丙 부분)은 전액(10할)을 국가에 재보험을 하고 있으나, 공제료 甲(폐사, 병상) 부분은 위험 분산의 관점에서, 전 가축을 조합 등이 2할, 연합회(보험)가 3할, 국가(재보험)가 5할의 책임 비율을 분담하고 있다.

진료기술료에 대한 공제료 乙 부분은, 복해도와 같이 구보험을 적용하는 지역의 경우, 원활한 병상급부와 가축진료소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10할)을 조합이 분담하고 있다.

<보험의 책임분담 비율>

丙 부분 (이상사고에 적용) 국가 10할

甲부분 (死, 廢用) 조합 2할	甲부분 (死, 廢用) 연합회 3할	甲부분 (死, 廢用) 국가 5할
----------------------------	-----------------------------	----------------------------

乙 부분 (병상 기술료 등에 적용) 조합 10할

4.1.3.9. 위험단계별 공제료율

위험 단계별 공제료율이란 조합 등의 선택에 의하여 조합원 등을 피해율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서 공제료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가축공제의 공제료율은 종래, 상부상조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料率 算定 지역 별로 과거의 피해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며, 각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는데, 축산경영의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농가마다 피해 발생 상태에 큰 차이가 발생해 온 점과, 조합 등의 광역화로 인해 일률 원칙의 공제료율에 대한 불만을 지닌 조합원 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을 도입하고 있다.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의 설정방법>

料率算定地域별로 고시된 공제료율을, 과거 3년간의 금액 피해율에 따라서 조합원 등을 그룹별로 나누어, 그 그룹별로 공제료율을 세분화하여 설정한다.

[위험단계수]: 그룹으로 분류한 위험단계의 수

[위험지수]: 최소의 단계별 공제료율에 대한 최대 단계별 공제료율의 비율

위험단계수와 위험지수는 조합 등이 피해 실태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廢死와 病傷의 위험단계>

조합 등의 선택에 따라 공제목적의 종류별 그리고, 廢死, 病傷별로 위험단계와 위험지수 등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廢死와 病傷의 어느 쪽의 위험단계수(위험지수)를 1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4.1.3.10. 지불공제금

4.1.3.10.1. 폐사사고

가. 폐사 지불 공제금의 계산방법

폐사사고에 대하여는, 다음의 A, B의 계산치 중에서, 어느 쪽이든 적은 액수가 공제금으로 지불된다.

$$A = (\text{事故畜의 價額} - \text{肉皮 등 殘存物 價額} - \text{補償金}) \times \text{付保비율}$$

$$B = \text{事故畜의 價額} - (\text{肉皮 등 殘存物 價額} + \text{補償金} + \text{法令殺에 의한 수당금})$$

*육피 등 잔존물 가액:

事故畜 공제가액의 1/2 을 한도로 한다. 또한, 유우의 암컷 등 또는 육용우 등에서 매도가액이 기준액을 밑도는 경우는 기준액을 적용한다.

<폐사사고의 지불공제금 계산 예>:[前記 공제금액의 포괄공제 계산 예 1에 계속된다.]

- 유우의 암컷 등 1두가 3호 폐용사고로 된 경우
- 폐사사고축의 개체평가액 50만엔, 사고 직전의 付保비율 80%
- 도축장에 반출한 육피 등 잔존물 가액 10,000엔, C1 단가 268엔, 肢肉중량 250Kg
- 처리비용 19,070엔
- 육피 등 잔존물 가액의 기준액: 268엔 X 250 Kg - 19,070엔 = 47,930엔
47,930엔 > 10,000엔
- 육피 등 잔존물 가액은 47,930엔(f)으로 한다.
- A= (50만엔 - 47,930엔(f)) X 80만엔/100만엔=361,656엔
- B= 50만엔 - 47,930엔(f) = 452,070엔
- A 와B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든 적은 액수가 지불공제금이 된다.
361,656 엔 < 452,070엔
- 따라서, 육피 잔존물 가액이 1만엔의 경우는 A의 361,656엔으로 된다.

<육피 등 잔존물 가액 기준액의 산정방법>

a. 지육으로 판매한 경우

기준액= 기준단가 (C1, C2) X 지육중량 - 처리경비

(주)처리경비는 육피 등 잔존물을 처리하는데 실제 들어간 제반 경비

b. 생체로 처리한 경우

(주)처리경비는 폐용가축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경비로서, 연합회가 매년도 일정액(17년도는 19,070엔)을 정한다.

기준액 = 기준단가 (C1, C2) X 폐용가축의 체중 X 1/2 - 처리경비

c. C1, C2규격의 단가에 대하여는 연합회가 매년도 일정액을 정한다.

유우의 암컷 등의 1.3.6.호 폐용	유용암컷소의 C1 단가 (평성17년 268엔)
유우의 암컷 등의 5호 폐용	유용암컷소의 C2 단가 (평성17년 298엔)
육용우 등의 1호 폐용	유용비육거세우의 C1 단가 (평성17년 325엔)
육용우 등의 3호 폐용	유용비육거세우의 C2 단가 (평성17년 564엔)

나. 폐사 공제금 지불한도액

과거에 폐사사고가 많았던 농가에 대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와 함께 폐사 공제금 지불한도액이 설정되어, 특정사고 (화재, 자연재해, 법정 ● 届出전염병)이외의 일반사고에 해당하는 폐사사고에 관하여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이 지불된다.

이 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全道の 평균 피해를 기초로 하여 3년마다 개정되는 적용 제외 기준율(道内 일률)이상의 피해를 실적이 있는 경우이며, 폐사사고 저감의식을 계발하기위해, 적용농가에 대해서는 매년도 재검토 된다.

폐사 공제금 지불 한도액= 공제금액 X 폐사 공제금 지불 한도율

*폐사 공제금 지불 한도율은 조합 등 마다, 공제목적 마다 매 3년마다 개정된다.

4.1.3.10.2. 병상사고

1) 병상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

병상사고에 대해서는, 그 치료에 소요된 비용(진료비)이 공제금이 되고, 일정액(병상 공제금 급부 한도액)까지는 무상으로 수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초진비와 급부 외의 의약품비 등은 유료이다).

수의사의 진료내용과 진료비에 제약은 없으나, 공평한 지불을 기하기 위해 진료비를 진료점수표에 의거하여 점수(1점 10엔)로 산정하고, 병상사고 급부기준에 의거하여 지불액을 결정한다.

2) 병상 공제금 급부 한도액

인수하는 공제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병상 공제금 급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병상 급부 한도액은 농가별, 공제목적의 종류별, 가입공제금액(병상 급부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이내)에 따라 결정된다.

병상 공제금 급부 한도액 =

$$\text{공제금액 (병상 급부 대상 공제금액)} \times \text{병상 공제금 지불 한도율}$$

병상 공제금 지불 한도율은 조합 등 별, 공제목적 별로 3년마다 개정된다.

<병상 사고의 지불공제금 계산 예 (전기 공제금액의 포괄공제 계산 [예 1]에 계속된다)>

병상 공제 지불 한도율: 8.3%

병상 급부 대상 공제금액의 한도액: 1두당 40만엔 ... (g)

급부 한도액 = 80만엔 ($\leq 40\text{만엔} \times 3\text{두}$) $\times 8.3\% = 66,400\text{엔}$

공제금: 진료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진료점수표에 의거하여 1점당 10엔을
 공급한 액

병 명: 유방염

왕진거리: 편도 5 km (통상) ... (h)

진료내용: 유즙간이검사 ... (i)

약치 (조제불요) ... (j)

유방 주입약의 약가 ... (k)

(h) (i) (j) (k)

$$\text{진료점수 (B종)} = 187\text{점} + 63\text{점} + 21\text{점} + 15\text{점} = 286\text{점}$$

B종 점수: 진료비 전체 (진료기술료 + 직접비)의 평가에 이용되는 점수

A종 점수: 의약품비 등의 직접비 부분의 평가에 사용되는 점수로, B종 점수의 일부분

*B - A 점수: 진료 기술료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점수

지불공제금 = 286점 X 10엔 = 2,860엔

4.1.3.11. 조합원등의 의무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사업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변동사항 통지 의무]는 매일 변동이 동반되는 가축사양에 있어서 포괄공제의 가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의무이다. 가입 가축에 병상사고와 폐사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히 조합 등에 통지(진료의뢰를 포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발생 통지 의무). 또한, 조합원으로서 통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로서, 손해 발생 방지와 손해 확대 방지, 사고 자체의 발생 방지까지 포함된다. 손해 방지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의무를 태만하게 되면, 면책으로 되어 공제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매일 매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통지의무의 예>

다음의 경우에 조합 등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가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각, 도입, 자격 취득, 상실, 그리고 송아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송아지의 출생)
- 가축이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 가축의 거세, 제각, 그 이외의 큰 수술을 하는 경우
- 방목과 共進會에 출연하는 경우
- 가축에 관리인을 정하거나, 사양장소를 바꾸는 경우
- 가축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

이러한 통지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예를 들면 도입한 소를 조합 등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소가 질병과 사망사고를 당하여도 공제금이 지불 되지 않게 된다. (통지 불이행에 의한 면책으로 진료비도 유료)

4.1.3.12. 손해방지사업

손해방지사업은 가축의 질병과 사망, 폐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잠재하고 있는 질병의 조기 발견 등, 경제손실을 최소한으로 막는 중요한 업무이다. 조합 등은 가축진료소 발족이래, 유방염과 번식장애 등의 검진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의 미연 방어나 사양관리 지도에 의한 생산성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손해방지업무>

- 특정 손해방지 사업: 국가로부터 6할의 보조를 받아, 연합회가 조합 등에 지시하여, 번식장애, 유방염 등을 대상으로 조기발견과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사고의 억제와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일반 손해방지 업무: 조합 등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손해방지를 말한다. 조합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위기관리 지원사업을 각각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행하고 있다.

4.1.3.13. 가축진료소

조합에서는 조합원 부담의 경감과 수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직영 가축진료소를 설치하여, 가입 가축의 진료와 손해 방지 업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해도에서는, 平成16년 4월1일 현재, 86개소의 가축진료소가 설치되어, 수의사 직원 약 700명과 인공수정사 직원 약 120명이 종사하고 있다. 조합의 직영 가축진료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사고 발생 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더불어, 공제금이 지불된 것으로 보는 등, 조합원의 사무수속이 대폭 간소화 되었다. 또한, 가입 가축의 진료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하지 않은 가축의 진료 등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축진료소에서는 주로 다음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 1) 가입가축의 병상사고 진료
- 2) 손해방지
- 3) 인공수정
- 4) 가축의 인수검사·개체평가
- 5) 가축공제의 보급과 가입 추진
- 6) 가축방역 등 축산 제 정책에 대한 협력

4.1.3.14. 일본 농업재해보험 구조의 골자

4.1.3.14.1. 서론

농업은 자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은 기상 변화가 극히 심해 아시아의 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은 태풍, 수해나 기타 기상상의 재해에 의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고 있다. 일본의 농가는 대 재해에 의하여 소규모 농업경영과 생산 상태에 종종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농가 자신이 재해에 의한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였다. 또한 식량의 안정 공급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업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고 일본 농업의 발전에 공헌하는 농업보험 제도를 설립하였다. 이 운영은 농업 분야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서 정

부의 재정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이 업무는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번 개정되어 일본 농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4.1.3.14.2. 농업보험의 종류

농업보험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종류의 보험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또한 그 구조의 내용도 법률과 규칙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 수도 및 다른 곡물 포함
- 가축보험
- 과실과 樹體 보험
- 밭작물보험
- 원예시설

농업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공제조합은 위에 열거한 보험 프로그램 이외에 농가에 재산을 보상하는 보험을 실행하는 것도 허가되어 있다. 이 농업보험은 일본의 주요한 농산물과 많은 작물을 위하여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보험에 부치는 작물

프로그램	보험에 따르는 작물 등
수도작 및 기타 곡물 보험	수도작, 陸稻, 보리, 밀
가축보험	소, 말, 돼지
果實과 樹體 보험	과실: 운집 굴, 여름굴, 기타 감굴,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비파, 앵두, 감, 밤, 매실, 프람, 파인애플, 키위
밭작물 보험	고구마, 대두, 소두, 강낭콩, 사탕수수, 호프, 스위트콘, 차, 양파, 호박
원예시설 보험	작물을 재배하는 원예시설, 내용작물 재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난방기, 환풍기 등의 장치
가옥 보험	가옥과 재산

4.1.3.14.3. 일본 농업보험 구조의 조직구조

일본 농업보험의 구조는 지방의 농가가 자연재해에 의하여 입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협동준비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농업공제조합과 縣廳에 의한 보험이다. 자연재해는 종종 광범위하고 심대한 손실을 농가에 끼치고 있다. 농업보험은 지역사회나 현에서는 충분히 위엄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험 프로그램은 농업공제조합과 市 당국의 책임의 위험을 縣의 연합회에 의해서 再保險하며, 또한 연합회의 책임은 정부에 의해 再再保險하여 분산시키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4.2. 北海道 農業共濟組合聯合會研修所

4.2.1. 사업내용

주로 낙농, 축산 농가의 커다란 받침대로 되어 있는 가축공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이다. 농업공제 단체의 수의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수 및 축산 농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수의의료기술의 개발 보급을 주축으로 하며, 위기관리 지원사업이나 조사, 연구 및 정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낙농왕국 북해도를 수의축산의 전문기술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의사법에 근거한 국가 임상연수사업의 지정시설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도내 공제 단체 직원의 강습 및 연수회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4.2.2. 연혁

- 昭和24년(1949년): 가축위생연구소(오비히로) 설치. 가축진료소 부설(오비히로시 농업공제조합의 가축진료 업무 위탁)
- 昭和28년 12월(1953년): 강습소 설치(삿포르시 月寒)
가축위생연구소는 오비히로 지소로 호칭 변경
가축진료소 병설(토요히라쵸 농업공제조합의 가축진료 업무 위탁)
- 昭和41년 12월(1966년): 가축진료소의 직영 광역화(삿포르시, 에베츠시, 이시카리쵸 일대의 진료업무 위탁)
- 昭和43년 11월(1968년): 강습소 이전 개축(江別市 元野幌). 가축진료소로서 발족 (후진촌, 신조진촌의 가축진료업무 추가 위탁)
- 昭和45년 9월(1970년): 부속寮 이전 개축(江別市 元野幌). 통칭(風鳴寮)
- 昭和59년 8월(1984년): 가축진료 업무를 石狩공제조합으로 이관
- 昭和61년 4월(1986년): 기축임상강습소로 개명
- 昭和62년 3월(1987년): 가축진료 순회차를 개발, 도입
- 平成3년 3월(1991년): 입원 축사 개축
- 平成4년 3월(1992년): 본관 개축
- 平成7년 3월 (1995년): 부속료 개축

- 平成8년 2월(1996년): 가속진료 검진 차(α^2) 도입
- 平成11년 4월(1999년): 연수소로 개명

4.2.3. 주요설비

4.2.3.1. 진료 관계

- 대동물 수술대: 1기
- 대동물 유합식 이동 보정틀: 2기
- 이동식 대동물 마취기
- 대동물용 ventilator
- 진료용 에어테이블
- 심전도혈압감시장치
- 중형 자주식 엑스선 장치
- 전기 메스
- 내시경
- 대동물용 전자 체중계
- 동물용 유방용 오존 주입장치
- 펄스옥시메타
- 초음파 넵플라이자
- 포터블 엑스선 장치
- 난관 통기검사 장치

4.2.3.2. 연수교육 관계

- 컴퓨터: 4대
- 비디오카메라
- 액정 비디오프로젝터
- 슬라이드 영사기
- 전동 스크린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 필름 리코더

4.2.3.3. 임상 검사 관계

- 전자동 혈액가스분석기
- 전자동 생화학분석장치
- 자동혈구계수장치
- 혈액 암모니아 측정기
- 초저온냉동고
- 현미경 및 모니터 장치

- 클린벤치

4.2.3.4. 가축 진료 검진 차(탑재기기)

- 전자동 생화학분석장치
- 전자동 전기영동장치
- 원심분리기
- 컴퓨터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

4.2.3.5. 기타

- 연주소 내 LAN SYSTEM 기기: 1식

4.2.4. 시설

- 본관
- 입원 측사
- 부속료

4.2.5. 업무

4.2.5.1. 조사, 연구, 정보 서비스

복잡다양화하는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손해방지 기술의 개발 등에 노력함과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조사, 연구

여러 가지 질병의 증례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 년도마다 몇 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임상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정보서비스

낙농학원대학 도서관과 제휴한 문헌복사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문헌검사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지(風鳴)의 발행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적시의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4.2.5.2. 위기관리 지원

조합 등이 실시하는 손해방지 활동의 기술을 지원하는 외에 현지에서의 조사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제사고의 현저한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1) 우균검진 순회지도

젖소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사프로필테스트를 활용하여 생산병의 예방과 사양, 영양관리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혈액검사기기를 탑재한 가축진료검진차도 전국 각지를 다니며 낙농가의 지도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 유방염 방제대책 순회지도

착유 입회와 유즙의 세균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유방염 방제대책을 지도하고 있으며, 올바른 착유기술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3) 유용우 정기번식검진 실천지도

유우의 번식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번식검진시스템의 정착을 꾀하고 있다.

4) 진료기술 지원

고도의 진료기술과 근대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난증 환축에 대한 진료 지원, 지도 및 병성감정의 의뢰에 응하고 있다.

5) 컴퓨터 소프트웨어(우균검진 시스템)

대사프로필테스트의 진단과 유우의 사료 계산을 행하는 본 시스템은 수의기술 연수의 교재 및 생산수의료의 필수 아이템일 뿐만 아니라 사료설계 프로그램으로서 수의사나 많은 낙농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4.2.5.3. 강습 및 연수

수의, 축산기술의 향상과 보급 및 정착을 목적으로 수의사나 축산기술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강습회나 연수회 이외에 공제조합 직원의 강습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1) 신규수의사 임상 연수(기술 교육)

새로이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수의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이다. 임상실습을 중심으로 8주간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 高度 임상연수

중견 수의사를 대상으로 고도이고 실천적인 수의기술의 보급을 꾀하기 위한 연수이다. 사양, 영양관리, 유방염 방제, 내과, 외과, 임상번식, 기타 다섯 가지의 전문 코스를 설치하여 2내지 4주간을 단위로 적은 인원(1 내지 3명 이내)을 한 팀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3) 말 번식 향상 기술 연수회

말의 번식장애의 진단과 치료기술의 습득이 목적이다. 가축개량센터-토까치목

장과 오비히로축산대학의 전면적인 협력 하에 봄철 번식 시즌에 3명씩 1주간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4) 가축진료 등 기술 강습회

농림수산성 및 전국 농업공제협회의 위탁으로 농업공제조합 단체 등 수의사의 연구, 체험발표와 신기술, 지식의 연찬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5) 각종 강습회 및 연수회의 강사 파견

연합회, 조합, 관계 기관 등이 주최하는 강습회 및 연수회에 강사로서 직원을 파견하고 올바른 수의 축산 기술의 보급, 계몽에 노력하고 있다.

6) 농업공제조합 등 직원 대상 강습회 및 연수회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 관계(총무, 농작물, 가축, 전산 등)의 강습회 및 연수회를 본 연수소에서 개최하여 인재의 육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4.3. 北海道의 家畜共濟事業과 研修所の 獸醫研修教育業務 要約

4.3.1. 가축공제사업

가축공제사업으로 유우의 암컷, 육용우, 말 및 돼지를 취급하고 있다.

취급하고 있는 가축의 두수는 유우의 암컷 1,358,000두, 육용우 226,000두, 말 22,000두, 돼지 80,000두이다(유우의 암컷, 육용우에는 태아 및 송아지를 포함 < 유우: 568,000두, 육용우: 49,000두>)

4.3.2. 가축진료소의 시설 <법 제96조 2항>

조합 등은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공제에 회부된 가축진료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있다.

- 昭和23년(1948년): 메무로쵸에 처음으로 개설
- 昭和31년(1956년): 전 도내에 431개소(피크)
- 현재 21개 조합 88개소(基幹 診療所)

4.3.3. 전국 가축진료소의 설치 상황

平成17년도(2005년)에 전국 농업공제조합 및 연합회에 288개의 가축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4.3.4. 북해도농업공제조합 가축진료소와 공제조합 수의사

- 21개 조합, 88개의 진료소, 수의사 684명(1개 진료소당 평균 7.7명)
- 수의사 1명당 가입 두수: 약 1,250두(900 ~ 1,600두) (태아 제외)
<# 환산율: 유우: 1, 말: 0.3, 돼지: 0.1>
- 진료건수: 약80만건/연 (농업공제조합 직영 진료소의 분담은 약 90%)
- 수의사는 60세에 농업공제조합을 퇴직한다.
80만건/684명의 수의사 52주간 주 5일 근무 - 4.5건/일/수의사

4.3.5. 공제조합 신규 수의사

- 농업공제조합에서는 퇴직한 수의사 대신에 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 수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 수의는 6년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격을 따고 있다.
- 대학을 갓 졸업한 수의사가 곧 바로 농가에서 가축을 진료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4.3.6. 신규 수의사 기술교육

4.3.6.1. 개요

- 학교를 막 졸업한 수의사에게 농가에서 가축을 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신규 수의사 수는 연간 약 30명이다.
- 4명의 기술 staff가 6명의 연수생을 지도하고 있다.
-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한 연수가 7주간 계속된다.
- 교육 중 연수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4.3.6.2. 연수시간

- 1일 연수시간은 6시간인데, 연수생의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
- 연수의 80% 이상이 실습이다.

4.3.6.3. 연수내용

- 연수내용은 크게 나누면 유방염, 번식관리, 우군검진 및 축사실습의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 임상은 내과검사와 외과수술이다.
- 우군검진은 혈액검사 결과에 의한 영양진단으로, 농가에 출장하여 검진한다.
- 유방염은 원인 조사와 대책에 대한 연수로, 연수기간 중 농가에서 실시한다.
- 번식관리에서는 도살한 소의 난소와 자궁을 이용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아침, 저녁 2회의 축사 실습에서 실습우에 대한 conference를 행한다.

- Conference에서는 착유를 행하고, 필요한 소에는 진찰 및 치료를 실시한다.

4.3.7. 공제조합 중견 수의사

- 지역에 따라 다른데, 수의사는 1일 평균 10-15두의 가축을 진료하고 있다.
- 수의사는 바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직장에서 종합된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 북해도 공제조합연수소가 몇 차례 연수회를 개최하여 중견 수의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여하고 있다.

4.3.8. 중견 수의사 기술교육

4.3.8.1. 우균검진 현지 연수

- 낙농가에 있어서 30두의 혈액검사와 몇 마리의 사료급여 상황으로부터 질병의 발생 원인을 진단한다.
- 진단 결과나 대책을 지도서에 기재하고, 사후 협의회를 거쳐 농가를 지도한다.
- 수강생은 검사부터 지도까지를 실기로서 연수한다.
- 연수회의 개최기간은 2주간이며, 절반은 강의로, 나머지는 농가에서의 실습이다.

4.3.8.2. 유방염 방제 대책(현지 포함) 연수

- 낙농가에 있어서 우사환경, 착유시설, 착유기기 및 착유방법을 확인하는 외에 모든 착유우에 대한 우유의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유방염 발생 원인을 진단한다.
- 검사결과나 대책을 지도서에 기재하고, 사후 협의회를 거쳐 농가를 지도한다.
- 수강생은 검사부터 지도까지를 실기로서 연수한다.
- 연수회의 개최기간은 2주간이며, 절반은 강의로, 나머지는 농가에서의 실습이다.

4.3.8.3. 내과 및 외과 연수

- 내과진단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강의와 실기로 연수한다.
- 도살한 소의 난소와 자궁을 이용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외과수술을 강의로 연수한 후, 이것을 상정한 수술 실기를 연수한다.
(예를 들면, 폐기된 발굽을 사용하여 수술 실기를 연수한다)
- 연수회의 개최기간은 1주간이며, 연수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4.3.9. 손해방지 사업의 구체적 사항

메뉴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국가와 연합회가 비용을 부담)

4.3.9.1. 일반 손해방지 사업

특정 손해방지 사업 이외의 손해방지 사업

- 1) 예방용 의약품, 위생약품의 지도 배포
- 2) 가축군 질병 정보분석 관리사업
 - 전국 농업공제조합이 PC시스템 개발
 - 농업공제조합이 지니고 있는 가축질병 데이터를 다면적으로 분석 처리하는 새로운 손해방지 시스템(2006년도는 새로이 전자력 루틴시스템 등도 개발 예정)
 - 농업공제조합 가축진료소가 활용하여 사양관리의 개선 지도에 활용한다.
 - 유우: 번식장애, 유방염, 운동기병, 주산기병
 - 육우: 번식장애, 감염증, 소화기병
 - 돼지: 번식장애, 감염증, 운동기병
- 3) 우군검진-대사프로필테스트(MPT)
 - *사양, 영양관리 지도
- 4) 유방염 방제(착유입회 및 세균 검사)
- 5) 정기 번식 검진(1회/2주)

4.3.9.2. 특정 손해방지 사업

발증 전 잠재적인 이상을 조기에 적발하고 발병을 예방함에 따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한다.(대상 질병은 국가가 지정)

유우는 번식장애, 케톤증, 금속이물성질환, 간질증, 유방염, Theileria감염증
[平成17년(2005년): 398,049두]

육우는 금속이물성질환, 간질증, 번식장애, 요석증, Theileria감염증
[平成17년(2005년): 11,484두]

5. 일정별 방문기관과 입수 내용

5.1. 방문기관: 북해도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방문일시: 6월 19일 오후

면담인사: 會長理事, 參事, 副參事, 家畜部 部長, 課長

면담내용: 아래와 같음

<조합 관련>

- 1) 일본의 47개 道, 都, 府, 縣에 연합회가 있다
- 2) 북해도에는 212개 市, 町, 村 조합을 22개 공제조합으로 통합하였다. 통합이유

- 는 농가 수(조합원 수)가 감소되어 인건비 절감 등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이다.
- 3) 약 45,000호 중 약 40,000호 농가가 가입 (88.9%). 1978년에 약 10만호 정도에서 약 50% 수준으로 감소. 平成17년(2005년) 가입 가능 233만두 중 175만 두 가입(75.1%).
 - 4) 1948년 공제조합을 처음 설립 시에는 정부에서 1/3 보조. 가축마다 보조율이 달랐다.
 - 5) 처음 농업공제조합에 진료 조직을 만들 때 개업수의사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봉급 책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급료가 높은 사람을 위해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
 - 6) 초기에 농가 가입율이 낮은 것이 문제였으며 수차례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들을 설득하였다.

<수의사 관련>

- 1) 농업공제조합 진료소의 수의사는 농업공제조합 소속 직원으로 단체직원으로 볼 수 있다. 수의사의 봉급은 평균 월 약 100만엔 정도로 공무원 봉급보다 조금 많다.
- 2) 수의사의 근무시간은 일반 사무직과 같으며, 근무시간 외 응급진료 시에는 시간 당 150/100의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다.
- 3) 수의사는 진료소의 진료수의사로서 진료를 담당하거나 공제조합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4) 전국의 288개의 진료소에 약 1,66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북해도에는 22개 조합에 88개의 진료소가 있고, 690명(평균 7.7명)이 근무하고 있다
- 5) 큰 진료소에는 20명 정도, 작은 진료소는 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직 직원이 1-2명 정도 있다.
- 6) 각 단위조합의 진료소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8주간 교육을 시켜 각 단위조합에 배치시킨다.
- 7) 북해도에서는 매년 30명 정도의 수의사가 교체 (정년 인원과 도중 퇴직)되고 있는데, 그 중 여자 수의사가 10명 정도이다.
- 8) 수의사국가고시에 연간 1,000명 정도 합격하는데, 그 중 80명 정도가 농업공제조합에 취직한다. 농업공제조합의 취직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순회하여 취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 9) 공제조합 수의사의 정년은 현재 60세이지만, 앞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한다.
- 10) 퇴직자는 개인병원을 개업하여 일반 손해방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1) 진료대상 두수는 젓소로 환산하여 약 1,250두/수의사(태아는 제외)이다. 젓소는 1, 비육소는 0.3, 말은 1, 돼지는 0.1의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공제조합 보험 관련>

- 1) 수도작과 보리는 100% 가입해야 하는 필수사업이며, 가축은 필수사업이지만 농민은 임의로 가입한다.
- 2) 보험 대상 질병은 모든 질병이 해당된다.
- 3) 단위조합마다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 지역간 경쟁과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4) 예방접종도 가축보건소의 용역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며, 보험 외 수입이 된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요네병, 부루셀라병, 결핵, 돈 콜레라 등)
- 5) 보험료는 가축 두당으로 계산하며 과거 3년간 진료실적을 참조하여 위험단계에 따라 농가마다 적용비율에 차이가 있다. 젓소 두당 약 2,600엔/년 (국가, 농민이 각각 50%씩 분담)
- 6) Herd health management 사업에 정부가 60% 지원
- 7) 인공수정 업무는 22개 조합 중 2개 조합만 실시하지 않으며, 인공수정을 하는 곳에서는 수의사와 인공수정사가 같이 실시하고 있다.
- 8) 연간 정부 보조금이 전국의 축산분야에 330억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220억엔 지원된다.
- 9) 정부가 공제조합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green zone에 해당하기 때문에 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10) 손해방지사업(입수자료 3 참조)
 - 가) 특정손해방지사업(정부가 60% 지원, 처음에는 70% 지원, 두당 연 2회)
 - 나) 일반손해방지사업(특정손해방지사업 이외의 손해방지사업. 농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의사가 service)
 - (1) 종래의 일반손방
 - 예방용의약품, 위생약품의 배포 (구충제, 간단한 치료제, 유방염연고)
 - > 잔류문제로 폐지
 - (2) 가축군 질병정보분석 관리사업
 - 정보분석 관리 서비스
 - 정기변식검진 (2주 간격)
 - 유방염방제(착유입회와 세균검사)
 - 대사프로필 테스트
 - 사양, 영양관리지도
- 11) 공제료 적용률(합계율)에서 50%는 국가, 50%는 농민이 부담하고, 적용률은 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국평균은 10.5-11.0%로서 국가가 3년마다 개정한다.

5.2. 방문기관: 북해도농업공제조합연합회(NOSAI) 연수소

방문일시: 6월 20일 오전

면담인사: 기획연수부 연수과 가축기술연수담당 기술총괄 주간 석천고명, 삼목주관

면담내용: 아래와 같음

- 1) 연수소 Power Point 자료(자료 13 참조)로 발표
- 2) 연수소에서는 신규 수의사 교육, 기존 수의사의 高度臨床研修, 농민들의 기술 교육 실시
- 3) 실습대상동물은 연수소에서 자체 사육하는 소와 말 및 다른 진료소에서 진단을 확실히 내리지 못한 소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한다. 高度臨床研修의 의무시간은 없으며 단위조합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실시한다(자료 13 참조).
- 4) 말의 교육도 실시하며 돼지는 지바현에서 실시한다.
- 5) 자체 연구도 실시한다.
- 6) 靜水진료소는 右측 경부절개수술을 연간 1,000두를 실시하며, 송아지 hernia 수술은 초음파 검진으로 abscess 확인 후 실시한다. 예후 불량한 소는 부검하여 해부실습에 제공한다.
- 7) 임상번식 실습은 연수소와 도축장에서 실시하는데, 오전에 직장검사를 하고 나서 도축 후 자궁과 난소를 떼어내 비교 검토한다. 6회 정도 실습 후에는 진단률의 정확도가 거의 80% 정도로 된다. 초음파 검사를 병용 한다.
- 8) 임상병리검사 중 분량이 많은 혈액 혈청검사(MPT)는 연수소에서 실시하고, 간단한 진단검사는 각 진료소에서 실시한다.
- 9) 교관은 4명 (2명은 석사 49세, 1명은 연수생 37세, 1명은 30세). 교수로 호칭하지 않고 직제의 직급으로 부른다. 5년에 1개월씩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 10) 공제조합 진료소가 개설된 후 대동물 임상이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 11) 공제로 적용률이 높은 목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험단계를 적용하여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12) 기업에 소속된 목장이나 공공기관의 목장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 13) 연수소는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도축장이 있는 편이 좋다.
- 14) 100mA X-ray로 다리 등을 촬영한다.
- 15) 소 수술용 유압식 보정틀 1대 설치(가격: 2,500만엔)
- 16) 공제조합 수의사 사이에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수의사에게 기술을 전수시켜 평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농업공제조합 조직 내에서 수의사별로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 있다.
- 17) 수의사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에 1회 학회에 참석시킨다. 예로서 북해도수의사대회 발표연제의 138개 대동물 연제 중 68 연제를 공제조합 수의사가 발표했다.
- 18) 十勝 농업공제조합에는 현재 17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번식 검진 분과회, 유방염 분과회, 영양관계 분과회를 만들어 수의사들이 연구하고 전문화하고 있다.
- 19) 한국에서도 힘이 있는 공제조합을 만들기를 바란다. 공제조합 제도가 확립되

어 있는 곳에서는 봉급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민을 위하여 일하지만, 개인병원끼리 합쳐서 운영할 경우에 진료가 없으면 수입이 적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 농민의 공제 가입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개업수의사를 촉탁수의사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21) 단위진료소 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고시마현 비육우 기술과 북해도 낙농기술 사이에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

22) 신규 의사 임상 연수회 표준 스케줄

<제 1주>

1. 오리엔테이션
2. 우사실습(1시간): AM 5:00-6:00
3. 직장검사(1시간): AM 7:00-8:00
4. 진찰 및 진단: 2시간
5. 보정 및 일반 진료 手技: 3시간
6. 진료부 작성: 1시간
7. 채혈, 주사법: 3시간
8. 혈액검사의 해석: 2시간
9. 수액요법(탈수, 당 대사장애): 3시간
10. 산-염기 평형: 2시간
11. 저칼슘혈증: 3시간

<제 2주>

1. 牛舎 실습(1시간): AM 5:00-6:00
2. 직장검사(1시간): AM 7:00-8:00
3. 항균성 물질 요법: 3시간
4. 세균검사: 8시간
5. 수술 전 conference: 2시간
6. 번식생리: 3시간
7. 번식장애: 3시간

<제 3주>

1. 牛舎 실습(1시간): AM 5:00-6:00
2. 직장검사(1시간): AM 7:00-8:00
3. 수술 전 conference: 4시간
4. 시험적 개복술: 3시간
5. 외상치유의 기본: 3시간
6. 진료부 작성: 1시간
7. 채혈, 주사법: 3시간
8. 혈액검사의 해석: 2시간
9. 수액요법(탈수, 당 대사장애): 3시간

10. 산-염기 평형: 2시간
11. 저 칼슘혈증: 3시간

<제 4주>

1. 牛舎 실습: 1시간
2. 직장검사 : 1시간
3. 유방염의 치료: 3시간
4. 유방염의 방제(1): 3시간
5. 유방염의 방제(2): 3시간
6. 유방염의 방제(3): 3시간
7. 群의 세균검사: 3시간

<제 5주>

1. 牛舎 실습(1시간): AM 5:00-6:00
2. 직장검사(1시간): AM 7:00-8:00
3. 수술 전 conference: 4시간
4. 자우의 수술: 3시간
5. 말의 진료: 3시간
6. 화상진단: 3시간
7. 방정중절개술: 3시간
8. 분만 시 emergency(3시간)

<제 6주>

1. 우사 실습(1시간): AM 5:00-6:00
2. 직장검사(1시간): AM 7:00-8:00
3. MPT(3시간)
4. 유우의 영양관리(1)(3시간)
5. 유우의 영양관리(2)(3시간)
6. 영양관리의 실제(3시간)

<제 7주>

1. 우사 실습(1시간)
2. 육우(외부강사)(3시간)
3. 가축보험(외부강사)(2시간)
4. 자우 해부(3시간)
5. 수료식

<신규수의사 임상연수회 연수과목>

1. 진료부의 작성법
2. 진찰의 방법
 - 1) 전체의 관찰

- (1) 우사환경에 관하여
- (2) 동거동물에 관하여
- 2) 품고의 청취
- 3) 개체의 관찰
 - (1) 망진
 - (2) 축진
 - (3) 타칭진
- 3. 진단의 방법
- 4. 보정법
 - 1) 동물의 포획
 - 2) 로프 워크
 - 3) 立位保定
 - (1) 두부
 - (2) 다리
 - (3) 鼻保定(牛)
 - (4) 鼻保定(馬)
 - (5) 仔牛, 仔馬의 보정
 - 4) 倒牛法
 - 5) 횡와보정
 - 6) 양와보정
- 5. 외과수술의 기본
 - 1) 소독법
 - (1) 전 처치
 - (2) 소독약
 - (3) 소독
 - 2) 외과기구의 사용법
 - 3) 봉합법
 - (1) 봉합법의 종류
 - (2) 운침
 - 4) 지혈법
- 6. 외과치료의 기본
 - 1) 외상의 진찰, 진단, 예후판정
 - 2) 창상의 병태와 치유과정
 - 3) 창상의 치료
 - 4) 포대법
- 7. 주사법
 - 1) 피하주사
 - 2) 근육내주사
 - 3) 정맥내주사
 - 4) 동맥내주사
 - 5) 관절내강주사
 - 6) 미추경막외주사
 - 7) 척추경막외주사
 - 8) 기관내주사
 - 9) 체강내주사
 - (1) 복강내주사
 - (2) 흉강내주사

- (3) 난소직접주사
- (4) 낭종내직접주사
- (5) 음순점막하주사
- (6) 유방실질내주사
- (7) 설내주사
- (8) 결막하주사
- (9) 조직실질내주사

8. 채혈법

1) 정맥혈

- (1) 미정맥채혈
- (2) 경정맥채혈
- (3) 전대정맥채혈

2) 동맥혈

- (1) 경동맥
- (2) 이동맥

9. 수혈법

- 1) 적합검사
- 2) 채혈
- 3) 수혈
- 4) 효과
- 5) 부작용

10. 마취법

- 1) 진정
- 2) 진신마취
 - (1) 처방
 - (2) 마취관리
 - (3) 우변구급법
- 3) 국소마취
 - (1) 침윤마취
 - (2) 전달마취

11. 투약

- 1) 경구투여
- 2) 경비투여

12. 세정

- 1) 안세정
- 2) 질세정
- 3) 유방세정
- 4) 방광세정
- 5) 위세정
- 6) 자궁세정

13. 압법

- 1) 냉압법
- 2) 온압법
- 3) 약제압법

14. 침구요법

15. 관장

16. 도뇨
17. 사혈
18. 자궁 내 약제주입
19. 황체제거
20. 유방송풍
21. 제병 치료
22. 안과 수술
23. 정치
24. 발치
25. 기관 절개
26. 식도 이물 제거
27. 식도 절개
28. 습벽 교정술
29. 천자술
 - 1) 천흉
 - 2) 천위
 - 3) 천장
30. 제왕절개
 - 1) 술식
 - 2) 송아지 소생법
 - 3) 신생송아지 관리
31. 미이라 변성 태아 적출술
32. 장관 수술
33. 제1위 절개술
34. 제2위 절개술
35. 제3위 절개술
36. 제4위 절개술
37. 제 4위 질환
 - 1) 발생기전
 - 2) 치료
 - (1) 외과적 정복
 - (2) 내과요법
38. 시험적개복술
39. 허니아 정복술
 - 1) 서혜 허니아
 - 2) 음낭 허니아
 - 3) 복벽 허니아
 - 4) 음문 허니아
 - 5) 횡격막 허니아
 - 6) 제 허니아
40. 자궁탈 정복
41. 직장탈 정복
42. 난산 보조
43. 태아의 실위 정복
44. 자궁염전 정복
45. 태반정체 제거
46. 난소 활거

- 47. 유방 절개 수술
- 48. 유두 수술
- 49. 방광 수술
- 50. 요도 절개 수술
- 51. 골절 정복
 - 1) 내고정
 - 2) 외고정
- 52. 탈구 정복
- 53. 거세
 - 1) 牛
 - 2) 馬
- 54. 검사
 - 1) 혈액 일반검사
 - (1) 혈산
 - (2) PCV측정
 - (3) Fib 간이측정
 - (4) 혈액도말 작성, 검경
 - (5) 혈액가스 측정
 - 2) 초음파 검사
 - (1) 개론
 - (2) 체강내 장기 검사
 - (3) 생식기의 검사
 - (4) 조기 임신 감정
 - 3) X-선 검사
 - (1) 개론
 - 4) 내시경 검사
 - 5) 분변검사
 - 6) 뇨검사
 - 7) 미생물학적검사
 - (1) 유방염
 - (2) 호흡기병
 - (3) 외상
- 55. 보액 요법
 - 1) 당대사 장애
 - 2) 탈수증
 - 3) 산-염기 평형 이상
 - 4) 전해질 이상
- 56. 저 칼슘 혈증
 - 1) 유열
 - 2) 저칼슘혈증
- 57. 항균성물질 요법
 - 1) 기초지식
 - 2) 약사법
 - 3) 공중위생상의 책무
- 58. 병리 해부
 - 1) 증례
 - 2) 송아지

<乳房炎>

- 58. 유방염원인균의 검사
 - 1) 동정법
 - 2) 약제 감수성 시험
- 59. 유방염의 치료
 - 1) 원인균의 병성
 - 2) 치료지침
- 60. 유방염 control
 - 1) 올바른 착유수순과 착유위생
 - 2) 원인균의 특징
 - 3) control 방법
 - 4) milker의 기본구조
 - 5) 유검체세포수 정보의 활용
 - 6) 착유입회
 - 7) 균을 대상으로 한 세균검사
 - 8) bulk 유 검사

<繁殖>

- 61. 번식생리
- 62. 번식장애의 진단과 치료법
- 63. 직장검사와 질검사
- 64. 群질병 system

<飼養榮養>

- 65. 유우의 영양
 - 1) 관련 용어
 - 2) 사료의 특성
 - (1) 조사료
 - (2) 농후사료
 - 3) 비유 cycle과 영양에 관한 생리적 변동
 - 4) 영양 밸런스
 - 5) 사료계산법
- 66. 대사프로필 테스트
 - 1) 원리와 실제
 - 2) 문제 우군에 있어서 MPT의 특징
- 67. Body condition score
- 68. 유검성적의 관독법
- 69. 문제 해결을 위한 착안점

5.3. 방문기관: 石狩 農業共濟組合

방문일시: 6월 20일 오후

면담인사: 組合理事長, 參事, 家畜診療課長

면담내용: 아래와 같음

- 1) 1967년 공제조합 시작, 1987년에 포괄공제제도 도입.
- 2) 북해도는 몇 개의 목장이 합쳐 규모를 키워 공동경영을 하는 추세이다.
- 3) 북해도에서 연 300-350개의 목장이 폐업하며 연 3-40개(평균 10개)의 목장이 신규로 시작한다. 폐업 보상은 없다.
- 4) 도태우에 대한 부검은 목장에서 실시할 수 없다(BSE 발생 후). 도태는 보상 문제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지만 7가지 조건이 되면 가능하다.
 - 가) 원인불명으로 급사 가능성이 높은 소, 골절, 파행, 특정 질병, 백혈병, 경제성이 없는 소, 유괴불명, 번식장애, 유방염, 기형.
 - 나) 진료소 수의사가 도태우에 대한 병리소견을 요청하면 회신해 준다. BSE 검사체계 도입 후 도축한 다음 질병진단 feedback이 잘 되지 않는다.
- 5) 대부분의 진료소에서 대부분의 수술을 실시한다. 진료소에서 수술을 실시하면 합병증이 있을 때 대응하기 쉬우며, 무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항생제는 봉합 전에 복강에 600만 단위의 프로케인 페니실린을 주입하고 후처치는 실시하지 않는다. 4일간 납유가 금지되어 있다.
- 6) 소의 운반은 수송업체가 담당하는데, 운송비는 두당 15,000엔이며, 농민이 부담하고 4명의 수송업자가 있다.
- 7) 수의사당 하루 10개 목장을 방문하여 13-14두를 치료한다. 예약진료를 실시하며, 아침에 접수하면 오후에 왕진을 간다. 응급진료 케이스는 근처에 있는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처리한다.
- 8) 각 지역에 몇 개의 개인 동물병원이 있다. 개인병원과 공제조합진료소간의 진료비는 거의 차이가 없다. 개인병원 수의사가 왕진을 갔을 경우에도 대개는 공제조합 진료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주에게 청구한다. 또한, 개인병원이 특화하여 공제조합과 경쟁하고 있다. 공제조합 진료소와 개인병원 사이에 경쟁이 있다. 개인병원이 초진료를 받지 않고 service 하는 등으로 경쟁하지만 진료소는 조직력으로 대응하여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 9) 진료점수 1점당 10엔. B는 목장에 청구. A는 직접비. B-A는 인건비. 공제료율에서 乙은 진료소 수의사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丙은 특별재해공제료이다. 각 목장의 피해율은 3년마다 산정한다. 정부의 표준률은 10%가 상한선이다. 평균 6.6% 적용(위험단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진료비는 아래의 예와 같이 산정한다.

B	B-A	A
53점	45점	8점
*3배 하여 159*10엔	수의사 인건비	직접, 재료비

공제료가 부족할 경우는 부과금을 추가할 수 있다.

공제료 + 부과금 (공제금액 X 1.6%)

- 10) 진료소 수의사의 인사권은 단위조합장에게 있다. 관할구역 내에서 4-5년 간격으로 전보발령을 낸다. 조합장이 인사권의 횡포를 발휘할 가능성은 없다.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남용할 우려는 없으며, 조합원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 (수의사의 확실한 신분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수의사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11) 농업공제조합의 장점으로는 농업공제조합의 설립 이후에 축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단점으로는 농민들이 농업공제조합에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변한다. 보험료를 내면 수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12) 신규 수의사에게 mentor를 지정하여 신규수의사를 교육시키며, 신규수의사가 실수하면 mentor가 책임을 진다. 수의사의 실수는 공제조합이 책임을 지며, 농민이 소송을 하는 경우 잘 설득하여 해결하고 있다. 소동물의 경우에는 malpractice에 대한 보험으로 보험금 1,000만엔에 가입한다.

5.4. 방문기관: 石狩지역 목장(中澤牧場)

방문일시: 6월 20일 오후

- 1) 북해도 목장 당 110두 정도 사육
- 2) 성우 64두 정도 규모의 목장, 두당 산유량 11,500 kg/년, 2회 착유, 방목 안함,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세 식구가 경영하고 있는데, 조사료를 95% 정도 자급하며, 티모시가 주종이고 오차드그라스도 재배. 곡류사료는 구입. NOSAI 진료소만 거래. 사양관리 위험요소를 제거한 이후에 산유량이 증가하였다. 토지가격이 헥타아르 당 300-400만 엔. 포괄공제 실시. 젖소의 평균수명 2.3산. 2주마다 번식기 정기검진 실시.
- 3) 번식장애가 문제, 기립불능이 가끔 발생하고 작년에 3두 도태.

5.5. 방문기관: 북해도수의사회

방문일시: 6월 21일 오전

면담인사: 회장, 사무국장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회원 2,839명, 12개 지부
- 2) 연간 30회 정도 임상강습회 개최
- 3) 연간 15점의 보수교육 필요 (자료 31 참조). 전문의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소동물 임상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 4) 유럽, 미국 및 호주산 유제품이 값싸게 수입되어 낙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해도 우유가 남아 무료로 배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버린다. 본토에 판매는 운반비 부담과 그 지역 낙농가와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홍차 및 커피를 비롯한 다른 음료수가 우유의 소비를 잠식하고 있다. 국민의 비만 문제도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우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우유나 계란 등을 좋아하지 않아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낙농분야의 홍보가 미숙하지 않나 생각된다.
- 5) 미국에서 BSE가 발생되어 소고기 수입을 중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다. 일본인은 수산물을 좋아해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6) 소 사육 농가는 감소하지만 사육두수는 유지되고 있어 목장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우유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 7) <의약분업> 수의사가 환축을 진단한 후에 동물용 의약품 지시서를 발급한다. 양계 및 양돈에서 진단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약사법과 수의사법의 위반이며, 이는 道 위생과에서 감독한다.
- 8) <신임수의사 진출분야> 공제조합 근무 수의사의 봉급은 도청 근무 수의사의 봉급보다 약간 높다. 개인 기업 수의사의 봉급도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incentive가 있을 것이다. 소동물의 경우 인턴 교육기간은 10-15만엔/월 정도를 받으며, 6년제 졸업생은 직급조정 없이 2호봉만 올려준다.
- 9) 수의학분야가 공중위생과 기초과학의 다른 분야와 협동하고 있으며, 북해도 공중위생학회에서는 의사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의사 수는 20만, 수의사는 3만, 간호사는 80만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의사 1명당 의료기사 8명 정도가 있다. 의사, 약사 및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있지만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애로가 많다.
- 10) 동물간호사(animal health technician, vet. technician)는 교육기간이 1-2년이며, 현재 약 2만명 정도 있지만 정식 자격증은 없다. 일본수의사회에서 주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일본수의축산대학(사립)에 2년제 애완동물학과가 신설되었고, 전문학교가 전국에 100개 정도 있으며, 북해도에는 8개가 있다. 애완동물호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성업중이다.
- 11) 북해도대학 수의학부를 졸업한 한국인이 2명 있는데, 일본 수의사 면허증을 받고, 한국 수의사 면허증을 따서 서울에서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 12) 면허시험 중 임상실기시험이 사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 13) 대학 교수의 정년은 대학 마다 조금씩 다른데, 60세, 63세, 65세(국립대), 70세(사립대)로 다양하며 연금문제 때문에 정년을 점차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

5.6. 방문기관: 오비히로축산대학

방문일시: 6월 21일 오후

면담인사: 猪雄 教授(수의내과학), 佐藤 教授(수의방사선학), 山田 教授(수의외과학)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회계법이 2년 전부터 실시된 후, 교실개념이 없어져 모든 교수가 독립적이다. 교수 당 학기마다 30만엔을 지급받아 전기료, 전화료 및 수도료 등을 내고 나면 실습비로 쓸 돈이 별로 없다. 수업이 많으면 더 지급하지만 100만엔을 넘지 않으며 대학교마다 지급액이 달라 기후대학은 15만엔이다.
- 2) 4년 후와 그 후 6년 후에 평가하여 첫 번째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 조치를 받고 두 번째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전국 88개 국립대를 6년 후에 30개로 줄일 예정이다. 평균 대학 입학지원율이 2:1을 넘지 못하면 퇴출시킨다. 수의학과는 인기가 좋아 입시지원율이 8:1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하게 되면, 2:1이 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 각 대학마다 다른 대학에 내어줄 생각이 없어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임상도 교실개념이 없어지고, Dep. of Clinical Science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4) 방사선차량은 투시용 10mA, 촬영용 360kV X-ray를 구비하였고, 초음파도 설치하였다. 그 동안 약 20,000두 정도 진단하였다. 조영제 투여 후 제1, 2위 운동을 확인하였고, 제4위전위증의 진단, 폐렴, 심내막염, hardware disease의 진단에 활용. 목장에서 직접 진단하여 농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창상성제2위복막염의 발생이 많이 감소하였다.

5.7. 방문기관: 十勝 농업공제조합 본부

방문일시: 6월 22일 오전

면담인사: 조합이사장, 참사, 가축부장, 山田 교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조합원 가입율 96-97%, 총 423,006두 가입, 태아는 임신 240일 이후부터 적용.
- 2) 6개사업소 13개 진료소를 조합에서 총괄관리 (통합 전에는 19개 진료소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十幌町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다). 통합 후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축하기도 하였다. 13개 진료소에 168명의 수의사 근무, 본부에 4명 근무, 총 172명. 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사망 후 부인은 70%를 수령.
- 3) 논, 보리, 가축공제는 필수사업.
- 4) 폐우 보상에 33억엔 지불, 질병치료 20만건에 24억엔 지불.
- 5) 인공수정은 10곳의 진료소에서 수정사 9명과 수의사가 실시, 다른 곳에서는 농협에서 실시.
- 6) 가축방역사업은 단독으로 분리할 상황은 아닌데 분리해두었다. 일반 손해방지사업과 관련이 있으나 공제조합 예산으로 실시하며 현재는 번식장애사업 하나만 실시하고 있다.

- 7) 검진차를 활용하여 대사프로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유기, 비유초기, peak기에 30두씩 실시하는데 10만엔, 농가가 30%, 조합이 70%를 부담한다.
- 8) 특정 손해방지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제공한다. 법정전염병(살모넬라증, 요네병) 예방접종이나 검사사업은 시험소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IBR, BVD, PI-3 예방접종은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Akabane는 본토로 이동할 때에 실시한다.
- 9) <공제료 계산방법> 소의 평가액은 출생 후부터 4년간 상승한 후에 점차 감소. 농업공제조합 연합회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각 지부의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한다. Super cow는 연 산유량 20,000 kg 이상이며, BCS가 excellent 이상으로, 기준 평가액에 20% 가산하지만 몇 두 되지 않는다. 공제료율은 3년마다 개정하고 현재 10.202%를 적용하고 있다. 표준률은 국가가 고시하고 적용률은 조합별로 적용하지만 十勝조합은 국가표준률을 적용하고 있다. 농민들은 공제료의 3배 정도를 혜택을 보고 있다. 乙은 진료소 수의사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공제료율은 80% 정도의 농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 10) 많은 농가가 공제조합제도가 없으면 목장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조합 설립 후 처음부터 농민의 80% 이상이 가입하여 대부분의 농가가 공제조합에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11) 목장 별 공제가액 산출을 위해 첫 번 건강검진 시에 data를 작성한다. 농가 별 공제료 계산은 개체별 평가액을 총합한 후에 표준률(10.202%)를 곱하고 거기에 付保率(농가가 가입하고자 하는 비율, 30-80%)을 곱하는데 평균적으로 60%를 원하고 있다.
- 12) 관내에 10개의 개인병원이 있으며 관내의 진료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개업하였다. 수의사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으며 1인당 2000만엔 정도 수입(수백만엔에서 수천만엔). 개업 수의사는 조직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퇴직하고 개업하였다.
- 13) 혈액검사는 十勝 지역 민간 임상병리센터에 의뢰하며, 유방염과 기생충검사는 진료소에서 실시한다.
- 14) 오후에 방문할 진료소는 수술대가 2대이며 3개 지역 4만두를 관할한다. 몇 만두에 수술대 1대 비율로 설치한다. 젖소 1500-1600두에 수의사 1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에 수의사 5명을 채용하였다. 연합회에서 선발. 2년마다 순회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순회근무가 여의치 않다.
- 15) 도태동물은 rendering plant(化製場, 북해도에 2곳)에 보내 재활용(화장품 원료 등)하지만 간혹 도축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수의사가 있는 곳에 요청하면 부검 정보를 알려준다. 수의사가 없는 곳은 video 촬영을 요청하면 보내준다. 주로 퇴직 수의사나 축산직 공무원들이 arbeit한다.
- 16) 공무원 봉급은 23만엔/월, 보너스는 2개월분을 연 2회 지불, 일반적으로 400만엔/연, 신규수의사 봉급은 초임 500만엔/연, 10년 근무하면 700만엔/연. 조합수의사의 평균 연봉은 1200만엔 정도이다. 임금상승은 초기에는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나중에서 상승률이 낮다.

- 17) 본토에는 축탁수의사 제도를 활용하여 수의사가 농업공제조합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급한다.
- 18) 약품유통은 생산회사 - 도매상-(소매상)- 진료소-농민으로 되지만 농민에게 지급될 때에는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하다.
- 19) (과장의견) 공제조합이 너무 조직화되고 통제되고 있어 개인병원이 더 나은 것 같다. 공제조합은 전쟁 후 군인 수의사의 진로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 20) 조합장은 인품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인사권을 남용할 사람은 없고 가축공제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山田 교수)
- 21) 十勝에서 생산하는 우유는 주로 가공용(69엔/L)이고 本州는 시유용(90 엔/L)으로 이용하는데, 과거에 교통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지정하였고, 유업회사를 국가에서 용도별로 지정하였다. 북해도에서 일년에 만든 정도 버린다. 삿포로에서 원유를 本州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本州의 농민들이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雪印乳業에서 생산한 분유를 먹고 중독증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호주 및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국산과 비슷하여 수입업자들이 수입하지 못한다. 북해도에서 감자, 사탕무, 콩, 밀 등을 3년 단위로 윤작하며, 주로 과자 원료로 사용한다. 과자는 북해도에서는 130엔/상자이지만 本州에서는 300엔/상자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잘 팔린다.

5.8. 방문기관: 十勝 NOSAI 남부사업소

방문일시: 6월 22일 오후

면담인사: 사업소장겸 진료소장, 山田 교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大樹(농협에서 AI 담당), 주루이, 廣尾 지역을 담당(뒤의 두 곳에서는 AI 실시).
- 2) 十勝 농업공제조합에서 가장 큰 진료소. 24명의 수의사와 6명의 인공수정사가 근무.
- 3) 공제조합 가입율은 95-96%. 과수공제는 없음.
- 4) 진료소에 2대의 수술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술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진료소에서 수술. 농가에 따라 차에 실을 수 없을 경우에는 농장에서 수술을 하지만 아주 드물다.
- 5) 제1위 절개술은 X-선 차량을 이용하며, 위험성을 홍보하고 자석을 먹인 후 창상성제2위복막염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대체로 관리 문제 때문에 방목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6) Paramedian abomasopexy를 실시하는데 약 15분 소요된다. 양와자세로 보정한 후 국소마취만 실시하며 봉합 전에 600만 단위 PP를 복강 내로 주입. 수술 끝나고 바로 귀가. 4일간 납유 정지, 2주간 도축금지. 위반 시 형무소에 간다. 매몰하여도 위법(BSE 때문).
- 7) 진료소에서 유방염세균검사, 감수성검사, 기생충검사를 실시한다.

5.9. 방문기관: 十勝농업공제조합 남부사업소 관내 영농조합법인
Cosmoagri Dairy Farm

방문일시: 6월 22일 오후

면담인사: 加藤明浩대표이사, 사업소장겸 진료소장, Yamada 교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젖소 610두, 和牛 번식우 50두 규모. 우유생산량 일본 전국 17위. 평균 산유량은 9000 kg/연. 十勝지역 평균 산유량은 9300 kg/연.
- 2) 4개 목장이 4년 전에 합병하여 신설. 4가구 12명이 공동 운영. 2회 착유, 8시간 근무, 1주일에 1회 휴일.
- 3) 합병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시설비(축사, 착유기, 장비) 50%를 보조 받았다. 20년 거치 상황.
- 4) 밭작물 50ha, 초지 200ha. 조사료는 자급. 곡류와 알팔파 구입비 연 1억엔.
- 5) 1985년부터 원유가격이 하락
- 6) 포괄공제에 가입. 농민에게 농업공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7) 폐용 판단기준이 엄격해졌다. 간단한 치료는 개인병원의 수의사에게 진료할 수 있다. 환축우와 번식검진우만 관리사에 모아 검진을 한다. 그 이후 파행이 줄어들었다. 연 3회 삭제를 실시한다. 삭제사 수입은 연 600만 엔 정도.
- 8) 낙농 helper는 단체휴가 시 연 1회 활용한다. 村에 helper 센터가 있으며 일반 농가는 월 1회 이용한다. 목부는 연 200-500만엔 정도의 급료를 줌.
- 9) 미네랄, 비타민, 효모제, 곰팡이 흡착제 등의 질병예방용 첨가제에 월 30-40만엔을 사용한다. 수의사들은 약품보다는 근본적인 관리를 권장한다.
- 10) 체세포관리는 유방염 herd control로 해결한다. SCC는 약 9만(88-110). 체세포는 8-9만/ml. 체세포가 유대가격 기준이 아니다. 30만 이상이면 penalty를 받으며, 한 개면 1개월간 6엔/L 삭감. 세 개면 3개월간 6엔/L 삭감. 2/3 정도의 목장이 SCC 20만 미만이다.

5.10. 방문기관: 十勝 육성우 목장

방문일시: 6월 23일 오전

5.11. 방문기관: 十勝 농업공제조합 幕別사업소

방문일시: 6월 23일 오후

면담인사: 藏本 忠 사업소장 겸 진료소장, 山田 교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관내에서 가장 작은 진료소. 수의사 7명 근무. 수술대 1대
- 2) 인공수정은 농협에서 실시
- 3) 보험가입 동물 중 80% 정도가 젓소 암소
- 4) 네 다리 삭제하는 데 3000엔, 연 2회 실시, 고능력우는 연 3회 실시. 수의사는 시간이 없어서 삭제사가 실시.

5.12. 방문기관: 十勝 농업공제조합 동부사업소

방문일시: 6월 23일 오후

면담인사: 阿部哲男 사업소장 겸 진료소장, 山田 교수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가장 최근에 지은 진료소. 수술대 2대.
- 2) 豊頃진료소 (4개 촌을 담당) - 진료소가 통합되지 않고 각각 설치되어 있음. 5년 전에 건물 신축. 8명 근무. AI는 실시하지 않음. 池田진료소(20km 근처, 수의사 7명)와 우라호로 진료소(20km 근처, 수의사 8명)에서는 AI 실시. 반경 약 35km마다 진료소를 설치.
- 3) 처음 16개 지역이 통합하였으나 池田와 우라호로는 빠져나가 개별적으로 운영.
- 4) 시호로는 농업협동조합의 산하 진료소로 운영됨.
- 5) 공제조합은 농민 측에서 보았을 때는 좋은 제도이지만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반반이다.
- 6) 초기에는 목장에 따라 수의사에 대한 선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의 진료 시에는 수의사에 대한 선호가 있다.
- 7) 지역의 진료소에서 환축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진료소에 진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 8) 이 지역에 NOSAI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개업한 수의사가 1명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원치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목장(학교부속목장 등)을 진료한다. 기업에서 경영하는 부설 목장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자격이 없다.
- 9) Heart failure로 급사하는 소가 많다.

5.13. 방문기관: 오비히로축산대학교 지역공동연구센터

방문일시: 6월 23일 오후

면담인사: 田中一郎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개인병원 수의사의 의견도 들어보았어야 했다.
- 2) 지바, 가고시마, 미야기, 야마가타, 미야자키에서 농업공제조합 운영 중.

- 3) 수의사 진출 - 양계장에 consulting, 동물약품 판매회사.
- 4) 가축보건소의 약사업무 담당계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 감독. 처방전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위반하면 제조회사와 판매점 영업정지. 감독이 강화되어 사람들이 약사법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 5) 요 지시 약품 - 항생제, 호르몬제, 백신 등. 비타민제, 소독제, 등은 제외.
- 6) 농업공제조합의 가입은 전업농가가 적합. 대규모목장은 보험료가 과다하여 가입을 기피할 수도 있다.
- 7) 진료기록부를 철저히 써야한다. 간혹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 농장별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된다.
- 8) 오비히로 이치로교수 - 수의학과 입시율이 8:1 정도. 2:1 이하가 몇 년 유지되면 폐교시켜야 한다. 대학원생은 전원 장학금 지급.

5.14. 방문기관: 오비히로축산대학교 교수 (저녁 식사)

방문일시: 6월 23일 저녁

면담인사: 大星교수(十勝수의사회회장), 山田교수(해부학), 佐藤교수, 山田 교수(외과학)

면담내용: 아래와 같다.

- 1) 농업공제조합도 사람의 의료보험 같이 실시하면 성공할 수 있다.
- 2) 학생들에게 과거만큼 실습을 시킬 수 없다. 실습비 부족, 학생들의 인본적인 태도(특히 여학생들은 고통을 주는 행위를 피한다). 대학입상교육이 불충분하여 NOSAI와 대학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해도대학은 실습은 현장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하여 실습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
- 3) 대학을 법인화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추월하려면 일본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말아라. 과거에 일본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경제성을 따져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서 5,000엔에 할 수 있는 연구를 기업에서 하면 15,000엔이 들 수 있다.
- 4) 농업공제조합을 중도에 퇴직하는 수의사는 봉급이 획일화된 것을 싫어하여 개업하는데, 농업공제조합 근무 시의 명성을 생각하여 돈을 더 벌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하다. 개업 수의사의 실력이 향상되어 공제조합 수의사와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개업 수의사가 진료 분야를 특화하여 경쟁하고 있다.
- 5) 일본의 BSE 발생은 양의 scrapie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 수입하여 북해도 축산시험장에서 사육하던 양에서 발생하였다.
- 6) 아르바이트생 시간당 800-850엔, 일당 10,000엔. 수의사 일당 12,000엔.

6. 입수자료

- 1) 한국 대한수의사회 파견자 시찰 설명자료. 일본의 농업보험의 구조의 골자
- 2) 한국 대한수의사회 파견자 시찰 설명자료. 가축보험(공제)
- 3) 한국 대한수의사회 파견자 시찰 설명자료. 가축진료소와 손해방지사업
- 4) 한국 대한수의사회 파견자 시찰 설명자료
 平成17년도 가축공제사업실적(폐사, 병상 분석자료)
- 5) The Outline of Japan's Agricultural Insurance Scheme
- 6) 북해도농업공제조합연합회 Introduction 책자
- 7) Introduction 자료편
- 8) 농업공제제도의 개요 (직원용 실무개요 텍스트)
- 9) 농업공제와 가축진료소
- 10) 道, 都, 府, 縣 별 농업공제조합 등 수 일람표
- 11) 平成18年度 유우 암컷 등의 공제료율 일람표(조합 등 별)
- 12) Large Animal Clinic and Research Center (Outline)
- 13) 연수소 Power Point 자료
- 14) 북해도의 가축공제사업과 연수소의 수의연수교육
- 15) 平成17년도(제53기) 신규수의사임상연수회 표준 스케줄
- 16) 平成15년 사육동물 진료 연보
- 17) 농업공제단체 가축진료소 경영실태조사보고서(平成16년)
- 18) 石狩 NOSAI의 개요
- 19) 石狩 NOSAI 소식
- 20) 질병별 진료비 접수표
- 21) 가축공제료율등의 내시예정율
- 22) 요율개정에 수반되는 공제료 등 대비 (위험률)
- 23) 인수.폐사.병상실적자료(中澤목장)
- 24) 일본수의사회 소개서
- 25) 동물용의약품지시서
- 26) 출하제한기간지시서
- 27) 약사법
- 28) 平成17년 강습회.연수회 개최상황
- 29) 시민공개 심포지움의 알림
- 30) 북해도수의사회 소개서
- 31) 수의사 생애 연수사업의 안내
- 32) 홋카이도대학교 소개서
- 33) 오비히로축산대학교 개요
- 34) 오비히로축산대학교 지역공동연구센터 활동보고서
- 35) 오비히로축산대학교 Curriculum
- 36) 토까치 NOSAI Information
- 37) NOSAI Report. 사업의 통계

- 38) 平成18년도 가축공제평가기준
- 39) 平成18년도 가축공제 당초 인수 결과보고서(총계)
- 40) 平成18년도 가축공제목적별, 지구별 인수결과
- 41) 平成18년도 가축공제과금율(공제료율)표
- 42) 가축공제평가기준의 별표 1의1
- 43) 平成17년도 적용 가축공제 월령별 평가지수 및 기준액
- 44) 平成17년도 십승농업공제조합 병상건수
- 45) 平成17년도 수술실시두수보고서
- 46) 개체정리부(목장별 공제가액 산출)
- 47) 질병별 진료비 분석표
- 48) 동물용 의약품 사용등기 기록부
- 49) 平成18년도 가축공제 전산 code표
- 50) 가축공제인수통지서
- 51) 平成18년도 당초인수실적
- 52) 병류별집계표(병상)
- 53) 平成17년도 병상사고건수내역
- 54) 平成17년도 병상사고건수내역
- 55) 수술실시두수보고서(平成17년도)
- 56) 병명별집계표 (병상, 장기별)
- 57) 수술실시두수보고서(平成17년도)
- 58) 북해도조사 사진 CD 1장

영국과 미국의 식품생산동물수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 보고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을 필두로 식품위생표준이 엄격해지면서 수의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분야에 취직하려는 지원율이 점점 낮아져서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어, 나라 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략과 수의사에 의한 동물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대한 감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003년 10월에 발표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식품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수의사가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임무를 갖고 식품공급수의학연합(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 이하 FSVMC)이 2004년에 결성되었다. FSVMC의 전제는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은 수의사가 생산과 가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강화된다’는 것이다. FSVMC는 2004년 5월에 Kansas주립대학교 경영대학의 3명의 교수에게 의뢰하여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급과 그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하여 2006년도 미국수의사회지에 3회에 걸쳐서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나라의 식품생산동물수의사의 부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장. 영국 국회 환경식품농촌위원회 연구보고서

1.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략과 수의사에 의한 감시

영국에서 2001년에 구제역이 급격히 발생한 후 영국 정부는 구제역에 대한 조사에 뒤이어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략과 이에 대한 수의사의

감시전략에 관한 협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수의사와 농민이 협동하여 접근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구제역에 관한 조사 과정에 가축전염병의 전파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의사의 총 수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됨에 따라 이미 한계상태에 있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에 대한 전략 수행의 효과를 조사하는 분과위원회를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에 설립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하여 2003년 10월 15일에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략과 수의사에 의한 감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

이 연구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동물건강과 복지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농장에서의 수의서비스의 전망에 대해 조사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현재의 농업소득 수준이 수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런 수의서비스 이용의 감소가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수의서비스 이용의 감소와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감소가 동물건강·복지의 표준 및 가축질병 감시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여 농민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 4)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감소가 국가의수의서비스 수행에 어떤 충격을 주는가?

가.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공급

구제역이 급격히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가 부족하고 부족한 수의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가해졌다. 영국에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국임상수의사회가 2002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전에 비해 농촌에서 일하는 수의사가 20% 감소했으며, 식품생산동물을 위해 일하는 수의사는 전체의 29%에 지나지 않는다. 식품생산동

물 수의사가 감소하는 것은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관심의 감소와 은퇴하는 수의사의 수가 계산된 결과이다. 수의과대학 재학시절에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적절한 경험을 쌓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는 대학도 책임이 있다. 대학이 식품생산동물 환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현존개업수의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지 못하며, 식품생산동물 교육에 진심으로 분발하는 교수가 적은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린다. 영국임상수의사회는 정부가 수의학 교육을 위해 지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임상수의사회는 환경식품농촌부, 수의과학연구소 및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위해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전염병의 감시, 진단 및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장에서 새로운 질병을 처음 목격하는 수의사들을 위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를 재교육시킬 교수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다. 앞으로 수의사의 총수는 남아돌게 될 것이지만 현재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에게 기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의사의 수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지방에서는 식품생산동물의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경험이 있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들이 부족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환경식품농촌부가 영국임상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식품생산동물 수의사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환경식품농촌부는 심각한 동물질병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을때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위험분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 수의사의 수요

영국낙농가협회는 낙농가의 대부분(70% 이상)이 소방대 차원의 동물진료(수의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동물이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불이 난 다음에 소방대원을 불러 진화하듯이, 병에 걸린 다음 비로소 수의서비스를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농민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은 농업소득의 수준이 수의서비스 요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수의사회는 '농민이 소득이 줄면 생산비를

절약해야 하고, 그 방법 중 한 가지가 수의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은 과거 5년간 농가 소득이 감소했고, 농장에서도 수의서비스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수의서비스에 대한 요청이나 공급이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충격이 가해 진다. 가축의 가치의 감소와 농장의 수익성의 감소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동물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 투자가치가 없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병든 동물을 치료하기보다는 도태하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수의서비스 요청이 감소하면 자연히 동물병원 사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 영국수의사회는 전국의 동물병원들이 농장에서 근무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개업수의사들이 하루 일과 중 농장에서 식품생산동물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시간의 비율은 1998년에 20.0%에서 2002년에 9.4%로 감소하였다(표 1).

표 1. 개업수의사들의 동물 종류별 근무 시간의 비율(%)

	1998년	2000년	2002년
소동물	66	68	73.5
말	11	9	8.4
소	14	9	7.5
양	4	2	1.3
돼지	2	1	0.4
가금	0	0	0.2
기타	2	11	8.3

영국낙농가협회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면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전공교수가 감소할 것이고,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부족하면 농장에서의 요청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수의사들은 수의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아지면 질병감시가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만일 우리가 농장에 가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기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질병 또는 일반적인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기록할 기회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에 구제역이 만연했을 때 많은 양들을 그때까지 한번도 수의사에게 보인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농촌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감소하면 동물건강과 복지의 위기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태이다.

다. 수의사의 새로운 수요

수의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환경식품농촌부가 동물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충격을 감소시키고 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의사에 의한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 부분이 상당히 압력을 받으면 환경식품농촌부가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이제 동물의 건강·복지전략을 주시하며, 변화하는 식품안전규칙의 의미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는 이 연구를 통해 동물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전략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2. 영국의 동물건강·복지 전략

유럽연합의 법률에 의하면 식품안전 및 위생의 관리 범위를 '1차 생산자(농민)까지 확대'하기로 되었다. 앞으로 10년간 가축사육자와 그 이해 당사자들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농업정책의 개혁은 동물의 사육 관리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 정부는 국회의 환경식품농촌위원회의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략과 수의사에 의한 감시'에 관한 보고서(2003년 10월)와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법률에

부응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선명한 정책방향(다섯 가지의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2,3).

가. 협동체제 구축

이 전략의 목표는 동물질병의 영향으로부터 사회와 경제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이고 영속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동체제(partnership)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협동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이 협동체제를 위해 기여하고 그 협동체제로부터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동물건강·복지와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책임을 수용해야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질병에는 국경이 없으며 정부는 광범위한 협동 partner 및 이해 당사자와 함께 외래질병의 발생을 제어하고 억제한다. 불법 무역에 대처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제어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세우며 감시를 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협동체제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확실한 역할이 있지만 이것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일하고 그들이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여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 예로서:

1) 수의사에 의한 감시전략

산업체, 대학, 정부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감시원들이 협동으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런 협동체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대조하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정보관리시스템인 RADAR(Rapid Analysis and Detection of Animal related Risk)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대조할 것이다. RADAR는 동물사육자와 수의사는 물론 정부에 무한한 가치의 감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비상계획

외래 질병에 대한 우발 계획은 정부가 지방당국, 경찰, 농민 및 지방

의 다른 인사들과 밀접하게 협동하면서 수행한다.

3) 동물약품

동물사육자는 그들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속 가능한 축산 시스템에서 이 약품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의사와 동물사육자는 수용 가능한 표준에 맞춰 약품을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

나. 동물의 건강과 복지로 인한 이득을 증진: 예방이 치료보다 좋다

적절하고 복지표준에 맞게 관리한 동물은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모든 동물사육자는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져야 하며 관리를 잘 하고 수의서비스와 약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많은 농장에서 해마다 많은 동물이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산성이 떨어져 도태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이것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도태를 해야 한다. 이것은 축산업에 파괴적이며 지방경제와 납세자에게 모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적절하게 관리하여 튼튼하고 건강한 동물은 생산성이 높으며 장기간 생산성을 유지한다. 이런 동물은 판매할 때 특정 질병에 걸려있지 않고 어떤 복지표준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동물건강·복지의 표준을 잘 지키면 항생제와 같은 약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생산가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가축의 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동물사육자와 수의사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추진한다.

1) 동물건강계획과 최선의 이행을 촉구

축산농민은 동물건강계획을 통해 그들의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건강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전염성 질병의 발생과 전파의 위험에 대한 인식
- 질병의 조기 발견

● 약품의 책임 있는 사용을 포함하여 기존의 문제를 제어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대책의 우선순위 정하기

2) 수의사와 수의서비스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정부는 국회 환경식품농촌위원회의 ‘수의사와 수의서비스’에 대한 권장사항과 결론에 대응하여 실무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그룹은 수의사, 동물복지기관, 축산업자 및 정부관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실무그룹은 수의사 직업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이 전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수의사 직업의 미래, 특히 미래에 수의사 교육의 필요성과 수의서비스 시장에 미칠 충격은 이 전략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3) 훈련과 기술

동물사육자는 동물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훈련된 동물사육자의 기술은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며 질병과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지극히 중요하다. 축산업 분야에 이미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귀중한 자원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농민그룹 및 대학과 함께 일할 것이다.

다. 역할과 책임의 이해와 수용

1) 동물주인

모든 동물주인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신체와 복지에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물주인은 그 책임을 수용하기 위해 방법, 기술 및 지식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동물주인은 질병의 징후를 인지하고, 어떤 질병이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며,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주인은 방심하지 않으며,

의심이 가는 모든 질병을 보고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질병예방 및 제어(생물학적 안보)를 잘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특전이다. 동물주인이 그들의 책임을 무시하고 사육하면 정부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장래에는 동물소유를 허가제 또는 면허제로 하며, 책임을 무시하면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게 할 것이다.

가축의 주인은 책임 있는 사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책임 있는 사육을 하지 않아서 사회에 해를 미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재정적 책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도 동물주인들이 책임 있는 사육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득을 주는 데 대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수의사의 역할

수의사는 동물주인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책임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의사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병든 동물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으며, 이것은 아직도 수의사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그러나 수의서비스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수의서비스의 초점을 농장의 건강계획 수립과 같은 ‘질병의 예방’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전문적인 충고가 포함되어야 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의 습관에 필요한 사항과 다른 필요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의사는 동물주인에게 최근의 연구와 양호한 동물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개업수의사들이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이들의 기여를 최대화하도록 이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3) 정부의 역할: 개입하는 이유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에 일임할 경우 목적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달성할 수 없는 아래의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a) 사람의 건강 보호

인수공통전염병(예:살모넬라증)이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다.

(b) 동물의 복지 보호와 증진

개인들 사이에 그리고 기관들 사이에 동물복지의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사회를 대신하여 동물복지의 수준을 정하여 강제하기 위해 개입한다.

(c) 더 광범위한 경제, 환경 및 사회의 이익을 보호

구제역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몇 가지 질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쉽게 다른 농장으로 전파된다. 이런 경우 정부는 동물주인과 함께 이 질병의 예방 제어 및 박멸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d) 국제무역

유럽연합과 국제수역국은 질병을 전파하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역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는 제약 없이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을 무역하기 위해서는 보고해야 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료한 이해의 확보

동물질병의 예방은 복지에 확실한 이익이 되며 비용효과성도 있다. 모든 동물주인은 질병예방에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예방은 비용도 들고 이익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정부결정에 의한 비용과 그것에 의한 이익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효과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행될 수 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 전략에 의한 결과의 일부이다. 이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면 동물의 건강·복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이 전략의 성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 혼자 부담할 것이 아니다. 납세자와 산업계 사이에 동물 건강·복지 비용 분담의 적절한 균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완벽한 자문을 필요로 한다.

마. 표준의 효과적인 이행과 강제

1) 장려와 제재

동물의 건강·복지표준의 개선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장려와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

2) 정부 서비스의 이행

정부의 모든 개입은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강제되어야 한다.

자체평가에 기초를 둔 전체농장접근법(Whole Farm Approach)을 개발하여 가축 주인들이 환경식품농촌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들의 사업관련 정보, 사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최선의 이행을 나타내는 지표 등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소, 양, 염소 및 돼지의 정보를 등록시킨다. 가축의 등록은 가축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과 정부의 경비를 절감할 것이다.

정책의 수행은 SVC(State Veterinary Service)가 주관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정책이행을 개선하며 다른 작전 partner 및 이해당사자와의 밀접한 고리를 구축한다.

3) 우선순위 결정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우선순위의 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의 하나로서 동물질병 profile을 개발하였다. 이 질병 profile은 정부가 감시와 과학적 연구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한편 가축사육자는 그들이 당면한 건강과 복지의 도전을 이해하고, 미래의 위협과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이 profile을 이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ommittee on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Sixteenth Report. Available at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203/cmselect/cmenvfru/703/70302.htm>.
2.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health and welfare strategy for Great Britain. 2004: 1-40.
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health and welfare strategy for Great Britain. Strategy implementation in England: a DEFRA progress report. 2005: pp.1-18.

2장. 미국의 식품공급수의학연합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의 보고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식품생산동물수의사의 수요 예측과 식품공급과 관련된 훈련 경력을 가진 수의사의 공급 가용성의 유지

미국에서는 식품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수의사가 적절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식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임무를 갖고 식품공급수의학연합(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Coalition, 이하 FSVMC)이 2004년에 결성되었다. FSVMC의 전제는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은 수의사가 생산과 가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때 강화된다’는 것이다. FSVMC는 2004년 5월에 Kansas주립대학교 경영대학의 3명의 교수에게 의뢰하여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급과 그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하여 2006년도 미국수의사회지에 3회에 걸쳐서 결과를 발표하였다. FSVMC 위원에는 Academy of Veterinary Consultants, 미국조류병리학자협회, 미국소(牛)수의사회, 미국식품위생수의사회, 미국중소(中小)반추동물수의사회, 미국돼지수의사회, 미국수의과대학협회, USDA-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캐나다수의사회가 FSVMC의 연구에 동참하였다(1,2,3).

미국과 캐나다의 상황과 대책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식품안전에 관한 염려

때문이다.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7 가지 요인 중 5 가지는 식품안전, 인수공통전염병, 생물학적 테러, 동물복지, 동물건강 등으로서 일반적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것들이다. 나머지 요인들은 축산농민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서 축산식품 chain에 들어가는 동물에 대한 추적과 표준규격에 대한 증명이다(3). 그리고 수출 시장 확보도 중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12년 동안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수요’에 대한 연구에서 소, 돼지 및 소형 반추동물 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표 1과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3).

표 1. 12년간 축종 또는 산업별 수의사 수요 및 부족 예측

(2004~2016)

축종 또는 산업분야	수요 증가 (평균, %)	공급 부족 (평균, %)
가금류 진료	4.11	0.06
중소 반추류 진료	7.54	2.23
비육소 진료	7.70	5.40
젖소 진료	8.29	3.80
돼지 진료	9.96	4.42
혼합동물 진료	10.70	6.60
학계	12.58	5.46
산업계 - 제약	12.83	3.30
연방정부 공무원 - Canada	15.44	5.45
연방정부 - 동물건강 공무원	16.29	6.86
연방정부 - 공중보건 공무원	16.75	5.24
연방정부 - 식품안전과 안보담당 공무원	17.46	6.57
주/지방정부 공무원	20.80	4.85
평균	12.46	4.61

현재에도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분야에 수의사가 취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다(2,3). 그러나 미국에서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개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전체 수의사의 75%이며, 그 중 식품생산동물(소, 돼지, 양, 염소 등)만 진료하는 수의사와 반려동물(말 제외)만 진료하는 수의사의 비율은 4%:74%로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4). 캐나다에서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개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전체 수의사의 78%이며, 그 중 대동물(말 포함)만 진료하는 수의사와 반려동물(말 제외)만 진료하는 수의사의 비율은 14%:55%로서 대동물수의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4). 온타리오(2002년도 조사)에서는 대동물수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동물수의사의 50%가 개업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10%가 그 후 5년 이내에 전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의사가 그의 일생 중 대동물 진료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70%이었으나, 그 비율은 1970년대에 점점 감소하여 현재 40%까지 감소하였다. 2002년도 Saskatchewan수의과대학 학생 중 젓소와 비육우 수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4%이었으며, 말 7%, 돼지 0%이었다(4).

개인병원, 대학,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부족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2,4). 축산업은 수의사의 전문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12년간 약 4.6%의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3). 급속히 증가하는 세계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최악의 전염병, 식품안전의 파괴 및 동물건강의 위험 등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난 이런 경향을 ‘아이러니(irony)’라고 표현하고 있다(4).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파악되고 있다.

- 1) 미국에서 식품생산동물 진료업에 종사하다 취업 후 5년 이내에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는 비율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 5년 이내에 전업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는 원인은 전업보다는 새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졸업생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1)

- 2) 20년 전부터 여학생의 수가 증가하여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75-90%를 차지하며 여학생은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보다는 반려동물수의사가 되기를 선호한다(4).
- 3) 농촌 출신학생으로서 식품생산동물의 배경을 갖고있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지방에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서의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데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 밖에 안 된다(4).
- 4)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 근무하다 부상을 받을 기회가 많으며, 나이가 많아지면 조기에 진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한다(2).
- 5) 대응해야 할 왕진 요청이 너무 많다(1,4).
- 6) 역사적으로 갖고있던 농업의 사회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4).
- 7)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이 점점 더 도시 출신 학생들이 선호하는 반려동물수의학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3,4). 이것이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3).
- 8)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의 교육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전통적인 수의학 교육으로는 졸업생들이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 일을 시작할 때 경제적인 활력을 제일 중요시하는 현대 축산농가에 건강과 생산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 수 없다. 그리고 수의사면허제도는 모든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으로는 식품생산동물 전문수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식품생산동물 전문수의사가 되려는 졸업생에게 전문성 있는mentorship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식품생산동물 전문수의사가 될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3,4).
- 9) 지방의 근무환경, 문화생활과 여가활용 기회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과 특전 그리고 배우자의 낮은 취업 기회 때문에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매력적 적다 (1,3,4).
- 10) 공공분야(정부, 교육, 연구, 진단센터, 생태계의 건강)의 식품생산동물 관련 근무에 매력을 느끼는 학생은 아주 소수이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4).

- 11) 식품생산동물 수의사의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인 관심사이며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수의학 분야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4).

국가경제와 사회적인 요구는 물론이고 미래의 수의학 교과과정의 배경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의 연속이 의미하는 것은 (4):

- 1) 지방에서 수의사에 의한 식품생산동물의 진료서비스 상실
- 2) 외래 질병에 대한 축산업의 취약성 증가
- 3) 식품안전성 문제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 증가
- 4) 축산업과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
- 5) 이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국가경제와 생활표준의 위험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 1)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수의사의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group들(미국수의과대학협의회, 미국수의사회, 캐나다수의사회 및 각 주수의사회, 미국소수의사회, 미국돼지수의사회, 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사이에 그 긴박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4).
- 2) 식품생산동물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을 활발하게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1,3,4).
- 3)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야 한다. 논리가 정연하고 정력적인 연설가 그룹을 결성하여 다양한 학생, 직업소유자 및 산업체 그룹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것을 제안한다(2,4)
- 4) 식품생산동물 수의학에 대한 교육을 저학년에서 실시하여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학부 학생들에게 식품생산동물 수의학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졸업할 때 식품생산동물 진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졸업한 수의사들에게는 감독과 mentorship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2,4).

- 5) 수의과대학 예비학과 (우리나라는 예과과정인 이에 해당)에 참여하는 학생과 수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 (우리나라의 본과1학년에 해당)에게 식품생산동물 취급기술을 훈련시켜서 식품생산동물 수의사로 활동할 때의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拂拭)시켜 주어야 한다(2)
- 6) 겸임교수로서 유능한 개업 수의사의 지원을 받는다(4).
- 7) 학생의 훈련을 위해 산업체의 지원을 받는다(예: 장학금, 지도교수제도, 산업체와 대학의 internship) (4).
- 8) 동물병원의 규모를 키워서 동물의 종별로 전문수의사가 서너 명씩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축산농가에게 건강 및 생산관리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개체진료 서비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진료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의보조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2,3,4).
- 9) 수의과대학에서 식품생산동물을 위한 고급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4).
- 10) 식품생산동물 수의사가 된 졸업생에게 근무 헛수를 기준으로 학자금을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도록 촉구한다(2,3,4).
- 11) 식품생산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졸업생들에게 진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병원 설립을 지원한다(2,3).

참고문헌

1. Andrus DM, Gwinner KP, Prince JB.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job satisfaction, changes in occupational area, and commitment to a career in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JAVMA 228(12) 1883-1893, 2006.
2. Gwinner, KP, Prince JB, Andrus DM.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Attracting students into careers in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JAVMA 228(11) 1693-1704, 2006.
3. Prince JB, Andrus DM, Gwinner KP.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future demand, probable shortages, and strategies for creating a better future in food supply veterinary medicine. JAVMA 229(1) 57-69, 2006.
4. Radostits OM. Are too few verterinary graduates choosing food animal practice? What is the problem? Available at: www.aabp.org/members/resources/Endangered.pdf.

대한수역사회 정책연구과제보고서 2008년

각국의 전문수역사 제도 운영 실태와 국내의 전문수역사 준비 상황

1. 서론

근래에 축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직종별/전공별 전문 수역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등 6 개국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였고, 현재 유럽연합 등 6개국과 협정과정에 있어 앞으로 농업과 수역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교류가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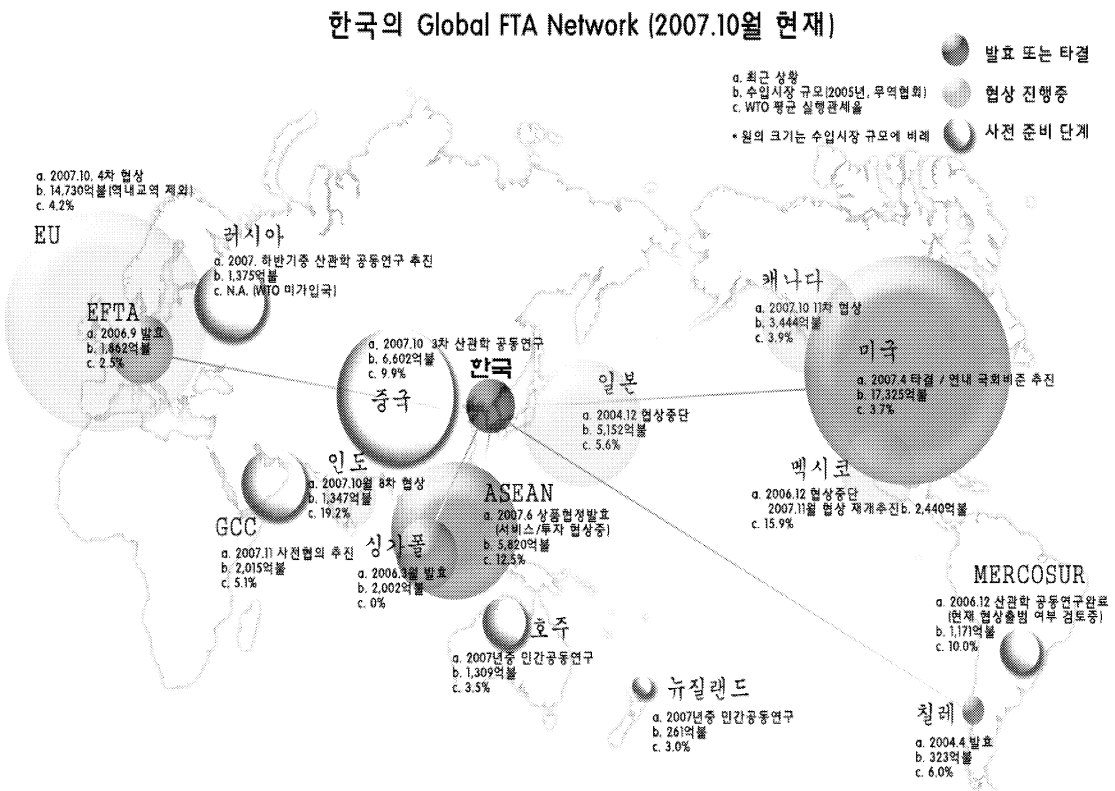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2007년 10월 현재)

전문의제도는 전문화된 고급기술을 함양시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화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자격과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다고 사려된다. 국내 의학 분야에서는 1951년부터 전문의제도가 도입되었고, 한의학(1999년)과 치의학(2003년) 분야에서도 이미 전문의제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외국의 수의학 분야에서도 전문의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의학 분야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는 2002년부터 전문의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연구와 준비를 하여 오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관련 교수, 개업수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106 명이(86%) 전문의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도입에 찬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동물산업은 고전적인 가축의 개념을 떠나 규모화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의학 교육은 수의술 중심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과는 거리가 생기고 있다. 또한 사업화된 동물을 집단으로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의사를 요구받고 있다. 미래의 수의기술인 교육은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의 의사가 여러 동물의 관리하는 것보다는 축종별 전문화되어야 하며 수의학 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의 관련 전문 기술 교육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수의학과 재학생 중 산업동물 임상진료 분야 진출 희망자보다는 반려동물 임상진료 분야 진출 희망자가 많은 실정인데, 이를 적절히 분배/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외국의 수의 전문의 제도

2 - 1. 미국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몇몇 나라, 특히 대부분이 북미나라에서 임상이나 준임상 전문분야에서 고급의 전문훈련을 위한 전문가그룹(Specialty Group) 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50년 처음 2군데의 전문가그룹에서 전문가로서의 인증을 요구하는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병리학자 그룹(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ACVP) 과 수의공중보건의 그룹(American Board of Veterinary Public Health; ABVPH)이었다. 이들의 요구의 추천을 위해 1951년 교육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COE)와 전국 미국수의과대학장 협의회(Association of Deans of American Veterinary Colleges)에 이견이 의뢰되었으며, 미국수의사회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수의전문그룹의 인증에 대하여 기준을 허락했다.

같은 회의에서 미국수의사회 하원은 이 두개 전문가그룹을 인정하였으며, 전문가그룹에 대한 차후 신청의 재검토의 책임을 COE와 미국수의사회 이사회에 맡겼다. 1957년에는 COE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미국수의사회 하원은 실험동물의 전문

의 과정(Americ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ACLAM)을 허락하였다. 1959년에는 COE가 추천하고 하원에서 허락하여 수의전문의를 대한 고문단(Advisory Board on Veterinary Specialties)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하원은 이 고문단에서는 개발한 2개의 문서를 허락했는데, 하나는 '수의 전문의기관의 설치에 관한 시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기관의 규칙과 수의전문의들에 대한 고문단의 역할'이다. 이들에 대한 시행,인준과 규칙들은 하원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개정되었다. 수의전문의에 대한 고문단은 1992년 '수의전문의를 위한 미국이사회(American Board of Veterinary Specialties;ABVS)' 로 개명하였으며, 여기서 제정한 규칙,인준과 시행사항들을 2007년 AVMA이사회에서 허락하였다.

1951년의 2 전문그룹의 인정후 1962년도에는 방사선, 1967년에는 미생물, 1967년에는 외과학 및 독성학의 전문가그룹이 형성되어 그 이후에 계속 형성되어서 현재로는 약 20개의 수의학전문분야의 전문가그룹이 형성되었으며, 2007년 12월기준으로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8,875 명에 이르며 선진 수의학을 이끌고 있다(표1).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수의과대학생들이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을 희망할 경우 신청자들은 연수받고자 하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연수기관도 우선순위로 하여 신청자를 뽑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수의 인턴 및 레지던트 매칭프로그램(Veterinary Internship and Residency Matching Program; VIRMP)'에 의거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거한 전자선출방식으로 선별하게 된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관한 기간은 인턴은 과정이 없는 대학과 있는 대학에서는 1년 정도의 연수기간으로 하고, 레지던트는 약2- 3년 정도의 연수기간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치게 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될 때 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많은 수의영역에서 새로이 전문분야가 발전되고 생기면서 전문의 제도가 발전되고 있다.

표 1. 미국의 수의전문의 통계 (AVMA, 2007년 12월 현재)

Recognized Veterinary Specialty Organizations (RVSO)	Number of Diplomates*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s (ABVP)	819
<i>Avian</i>	125
<i>Beef Cattle</i>	12
<i>Canine & Feline</i>	453
<i>Dairy</i>	34
<i>Equine</i>	78
<i>Feline</i>	77
<i>Food Animal</i>	20
<i>Swine Health Management</i>	20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Toxicology (ABVT)	95
Americ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ACLAM)	686
American College of Poultry Veterinarians (ACPV)	263

American College of Theriogenologists (ACT)		334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Anesthesiologists (ACVA)		158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Behaviorists (ACVB)		41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Clinical Pharmacology (ACVCP)		48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Dermatology (ACVD)		181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Emergency & Critical Care (ACVECC)		234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ACVIM)		1,771
	<i>Cardiology</i>	159
	<i>Small Animal Internal Medicine</i>	904
	<i>Large Animal Internal Medicine</i>	433
	<i>Neurology</i>	151
	<i>Oncology</i>	196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Microbiologists (ACVM)		157
	<i>Bacteriology/Mycology</i>	36
	<i>Immunology</i>	45
	<i>Microbiology</i>	66
	<i>Virology</i>	52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Nutrition (ACVN)		53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Ophthalmologists (ACVO)		298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ACVP)		1,461
	<i>Anatomic Pathology</i>	1,230
	<i>Clinical Pathology</i>	266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 (ACVPM)		578
	<i>Epidemiology</i>	59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Radiology (ACVR)		314
	<i>Radiation Oncology</i>	65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ACVS)		1,192
	<i>Small Animal</i>	168
	<i>Large Animal</i>	100
American College of Zoological Medicine (ACZM)		107
American Veterinary Dental College (AVDC)		95

*Some diplomates are certified in more than one specialty or specialty organization.

2 - 2. 유럽

유럽에서는 1898년에 영국에서 열린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에서 수의사들이 모여 전문 수의사를 만들기 위한 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 실무조직인 European Association for Veterinary Specialisation (EAVS)을 만들었다. 수의 전문의 제도를 위한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후 1992년에 Advisory Committee of Veterinary Training (ACVT)에서 "Report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ans-national Organisation of Veterinary Specialisation"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전공별 전문의의 능력의 차이와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의 전문의의 능력은 졸업 후의 훈련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다.

European Board for Veterinary Specialisation(EBVS <http://www.ebvs.org>)은 EAVS에 의해서 운영되며, EBVS의 회원은 각 수의과대학 또는 학회에서 임명하는 각각 2명의 대표자들로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 EBVS는 실행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매년 봄에 회의를 개최한다.

EBVS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문성 인증
2. 유럽 수의전문의의 설치와 등록 유지
3. 대학의 모니터링을 통한 전문의의 수준을 유지
4. 대중 및 수의 전문영역에 대한 전문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을 강화

유럽의 수의과대학의 전공분야별 전문교육 기구가 있으며 이들은 EBVS의 예비승인을 거쳐 완전한 승인을 얻기 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철저한 전문성에 대한 수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BVS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8년도 현재 유럽에서는 23개의 전문 수의사 분야가 인가되어 있고 전문 수의사 수는 2,113 명에 이른다.(표 2 참조)

유럽의 수의전문의 교육과 관련된 단체는 EAEVE, EVLG, ESVCE, FECAVA, 그리고 FVE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EBVS의 업무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연결될 수 있다.

EAEVE -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http://www.eaeve.org/>)

EVLG - European Veterinary Libraries Group (<http://www.vetmed.fu-berlin.de/evlg/>)

ESVCE - European Society of Veterinary Clinical Ethology (<http://www.esvce.org/>)

FECAVA - Federation of European Companion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s

(<http://www.fecava.org/>)

FVE - Federation of Veterinarians of Europe (<http://www.fve.org/>)

표 2. 유럽의 수의전문의 통계 (EBVS, 2008년 1월 현재)

Abbrev.	Full Name	Provisional recognition	Full recognition	No. of Diplomates
<u>ECAMS</u>	European College of Avian Medicine and Surgery	1993	2005	24
<u>ECAR</u>	European College of Animal Reproduction	1998	2004	168
<u>ECBHM</u>	European College of Bovine Health Management	2003	Not yet received	3
<u>ECEIM</u>	European College of Equine Internal Medicine	2002	Not yet received	40
<u>ECLAM</u>	Europ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2000	Not yet received	74
<u>ECPHM</u>	European College of Porcine Health Management	2004	Not yet received	1
<u>ECPVS</u>	European College of Poultry Veterinary Science	2008	Not yet received	
<u>ECSRHM</u>	European College of Small Ruminant Health Management	2008	Not yet received	
<u>ECVAA</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Anaesthesia and Analgesia	1994	2003	74
<u>ECVBM-C A</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Behavioural Medicine - Companion Animals	2002	Not yet received	6
<u>ECVCN</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Comparative Nutrition	1999	Not yet received	33
<u>ECVCP</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2002	2007	
<u>ECVD</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Dermatology	1992	2006	47
<u>ECVDI</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Diagnostic Imaging	1994	2002	62
<u>ECVIM-CA</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 Companion Animals	1994	2002	142
<u>ECVN</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Neurology	1993	2002	58
<u>ECVO</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Ophthalmology	1992	2003	41
<u>ECVP</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y	1995	2007	263
<u>ECVPH</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Public Health	2000	Not yet received	216
<u>ECVPT</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Pharmacology and Toxicology	1997	Not yet received	53
<u>ECVS</u>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Surgery	1991	2000	21
<u>EVDC</u>	European Veterinary Dentistry College	1998	Not yet received	20
<u>EVPC</u>	European Veterinary Parasitology College	2003	Not yet received	19

유럽에서 수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거친 후에 임상연구를 병행하며 3년간의 수련과정을 갖는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턴 과정

- 일반적으로 일년의 과정.
- 수의학의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 주로 축종별로 구분됨.

- 소동물, 대동물, 말, 야생동물 등 중에서 관심분야를 선택한다.
- 선택한 관심분야에 대해 과별 순환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
 - 내과, 외과, 마취, 병리 등.
- 일반인턴
 - 갓 졸업한 또는 최근에 졸업한 수의사에게 적합하다.
- 전문인턴
 - 한 과에서만 하는 인턴(외과, 중양외과, 안과 등)
 - 일반인턴을 마치거나 임상경험이 있는 수의사에게 적합하다.

레지던트 과정

- 일반적으로 3년의 과정이며, 임상연구를 병행한다.
- 수의학의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임상경험을 쌓는 것.
- 소동물외과, 말내과, 병리, 방사선 등.
-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
- 대부분의 경우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턴을 수료해야 한다.
-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Fellow 또는 Diplomat이라는 명칭이 허용된다.
 - 전문가(specialist)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수의사(specialist)의 개념

- 전문수의사란 해당 과목의 다른 수의사보다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진 등록된 수의사를 말한다.
- 전문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진보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엄격한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 뉴질랜드의 전문수의사 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vetcouncil.org.nz/specialistReg.php>

유럽 수의과대학의 수의 전문의 운영 예로서, 캠브리지 대학의 수의임상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ttp://www.vet.cam.ac.uk/hospital/training.html>)

Veterinary clinical training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재학생
 - 임상전과정 : 1~3학년
 - 임상 과정 : 4~6학년
 - ① 4~5학년
 - 미생물, 병리, 내과, 외과를 배운다. 이 과정은 총 18 units로 나뉘어져 있으며, final Vet MB(part I)를 구성한다. 학생들은 5학년 말에 18 unit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final Vet MB(part II)를 통해 평가 받는다.
 - ② 6학년

- 임상과정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주요 순환과목은 산업동물, 소동물, 말의 내과, 산과, 외과이다. 다양한 임상케이스를 통해 임상기술을 배우고, 유능한 의사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는다. Queen's Veterinary School Hospital(QVSH)에 내원한 임상케이스를 통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임상기술을 배운다.
- 선택프로그램
6학년 말에는 6~8주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선택학습을 할 수 있다. 선택학습 범위는 병원에 관련된 것 뿐 만 아니라 동물원동물 또는 공중보건 등 수의학 전 분야에 걸친 선택이 가능하다.

● 졸업생(전문의 과정 대상)

- Veterinary School, University of Cambridge
왕립수의외과학회(RCVS)와 유럽수의전문의제도위원회(EBVS)에서 자격을 받은 전문의들이 있으며, 이들이 레지던트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Queen's Veterinary School Hospital (QVSH)
RCVS에서 소동물외과(정형외과 및 일반외과)의 인증을 받음.
ECVIM-CA, ECVS, ECVN, ECVA로부터 인증을 받음.
현재 14개의 레지던트 자리가 있다.
매년 과별 책임자가 레지던트의 당해 성취도와 다음 해의 목표를 제시한다.

3. 국내 의료계에서 진료 전문화의 동향과 법규

3 - 1. 전문의 제도의 역사

년도	인의	치의	한의	근거
1952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9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한 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규정을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2002	전공의 연차별		한 의사 전문의의	보건복지부고시

	수련교과과정 개정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중 개정	제 2002-23호
2003.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62호
2007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3-2. 인턴, 전문의 과정 관리 주체와 정원 인가

자격	법률	관리주체	위원회	정원
인의	의료법 제55조제1항	의사회장	대한병원협회, 병원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치의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치과의사회장	법률 수련병원지정	보건복지부장관
한의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u>한의학회장</u>	<u>한방병원협회장</u>	보건복지부장관
수의사	? (수의사법 개정)	? (수의사회장)	예) 전문의제도위원회	? 농림부장관

3-3. 수련 기간

자격	인턴	레지던트	학위	급료
인의	1년	3-4년	가능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
치의	1년	3년	가능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
한의	1년	3년	가능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
일본수의	연구생 2년	일부대학 수련 3년	석/박 공동	등록금 납부 / 일부보조
VMTH	1 year	2 or 3 years 4 year	Not permitted Permitted Master (some)	\$36,156
수의(안)	2년 (안)	-	가능	자체/학교

3-4. 수련내용

자격	병원	연수 및 연구 등	논문	
인의	3-4년 수련	연구 요구	논문 요구	
치의	1년	연구 요구	논문 요구	
한의	의료법 제55조제1항	연구 요구	논문 요구	

	및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수의(안)	2년	연구 요구	논문 요구	
VMTH	Their specialty (70%)	seminars, rounds, research, elective rotations (25%)	one manuscript annual House Officer Seminar	

3-5. 수련병원지정과 정원 결정에 고려되는 인자들

기준 / 인자		인의	치의	한의	수의(안)	주안점
인가 공통기준	치료과수 전문의수 병상/진료수 시설/기구	0	0	0	0	병원의 진단능력에 주점 (진단 및 검사실)
전공과목	전문의수 시설/기구 진료실적	0	0	0	0	전문의의 임상교육능력

3-6. 국내 의료분야 시스템,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연구

3-6-1. 의사 규정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

대한의학회/ <http://kams.or.kr>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18040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기관", "모병원", "자병원"

제2조의2 (전문의의 전공과목)

제3조 (수련)

제4조 (수련기간)

제5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제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 (전공의의 정원)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10·27, 1994·12·23>

제8조 (수련과정)

제9조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78·10·27, 1982·7·23>

- 제10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12·23>
- 제11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제12조 삭제<1999.10.20>
- 제13조 (수련병원등의 변경)
- 제14조 (검직금지)
- 제15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감독) 2·7·23,1994·12·23, 1999.10.20>
-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 제17조 (전문의자격의 인정)
- 제18조 (자격증의 교부)
- 제19조 (전문과목의 표시)
- 제20조 (업무의 위탁)
- 제21조 삭제<1981·9·18>
- 제22조 (시행규칙)

부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040호,2003.6.30>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
부개정 2005. 10. 17.

- 제1조 (목적)
- 제2조 (신설전문과목 수련경력인정)
- 제2조의2 (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등)
-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 제4조 (수련연도의 변경)
- 제5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 제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 제7조 (전공의의 임용)
- 제8조 삭제 [2003.06.12.]
- 제9조 (검직허용 전문과목)
- 제10조 (수련증의 교부)
- 제11조 (전문의 자격시험)
- 제12조 (시험의 시행)
- 제13조 (시험과목 및 방법)
- 제14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 제15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 제16조 (자격인정)
- 제17조 (전문의 자격 인정대상)

제18조 (준용규정)

제19조 (수수료)

부칙

③ (폐지법령) 의사·치과의사전문기자격인정규칙과 전문의수련규정시행세칙은 이를폐지한다.

부칙 [83·5·6]

부칙 [85·11·26]

부칙 [2003.09.18.(치과의사전문회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8조중 "의사·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의사의 면허증"으로 한다.

별표1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계]

별표2 레지던트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2항관계]

별표3 삭제[2003.9.18]

별표4 단일전문과목레지던트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기준[제6조제5항관계]

서식1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

서식2 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신청서

서식3 수련병원실태조서

서식4 수련기관실태조서[예방의학]

서식4의2 수련기관실태조서

서식5 지정서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수련이수예정자명부

서식10 수련증

서식11 응시원서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 (<http://kams.or.kr> 대한의학회)

1. 공통기준

[별표 2]<개정 1983.5.6>

레지던트수련병원기준(제6조제2항관계)

1. 공통기준	
진료과	내과·소아과·일반외과·산부인과·마취과·진단방사선과·임상병리과(이하 "필수 전문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전속전문의	내과·소아과·일반외과·산부인과에는 전속 전문의가 각 2인 이상, 마취과·진단방사선과·임상병리과에는 각 1인 이상의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함.
병상수 및 환자	허가병상수 150이상
진료실적	연간퇴원환자가 실인원 2,000인 이상 부검률이 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시설 및 기구	(1) 필수전문의의 시설 및 기구가 "2. 전문과목별기준"의 시설 및 기구 기준에

적합할것.
 (2)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응급실·수술실·중앙공급실 전공의 숙
 직실·분만실·회복실·강의실·중환자실·의학도서관이 있을 것.

주(1) 전속전문의 수, 시설 및 기구 기준이 전문과목별 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기준을
 갖추면 된다.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전문의수 연 간 환 자 진 료 실 적 시 설 및 기 구

내 과 2인이상 1. 퇴원환자 100인 이상
 2. 외래환자 300인 이상
 (실인원) 1. 심전도기
 2. 안전검사경
 3. 호흡계
 4. 전자류(홍맥천자, 골수천자, 심량천자, 복수천자)
 5. 생검사실

일반외과 2인이상 1. 퇴원환자350인이상(실
 인원)
 2. 외래환자 2,500인이상
 (연인원)

1. 수술실
 2. 회복실

소아과 2인이상 1. 퇴원환자250인이상(실
 인원 신생아 포함)
 2. 외래환자700인이상(실
 인원 육아상당수 포함)

1. 육아상당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신체계측기구 안전
 검사경등)

산부인과 2인이상 1. 퇴원환자450인이상(실
 인원)
 2. 외래환자5,000인이상
 (연인원)

1.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안 과 2인이상 1. 퇴원환자 80인이상(실
 인원)
 2. 외래환자400인이상(연
 인원)
 3. 외래환자가4,000인 미
 만인 경우에는 입원환자
 연인원 1,500인 이상

1. 세격등(Slit lamp)
 2. 검영기(Retinoscope)
 3. 겸안렌즈세트(Trial Lens Set)
 4. 겸안경(Ophthalmoscope)
 5. 주변시야계(Porimeter)
 6. 중심시야계(Campimeter)
 7. 렌즈미터(Lensometer)
 8. 안구돌출계(Exophthalmometer)
 9. 전방우각검사기구일체(Conioscope Apparatus)
 10. 안압계(Tono meter)
 11. 프리즘바세트(Prism Bar Sets)
 12. 안과용전기자석기구(Electric Magnet)

13. 색감검사표(Color Vision Test chart)

14. 다이아터미기구(Diathetmy unit)
 15. 전기소작기(Electric cautery)
 16. 안과대수술용기구(Instruments for Major
 Surgery)
 17. 양안경안경(Binocular Indirect ophthalmoscope)
 18. 암부리오스코프(Amblyoscope)
 19. 각막계(Keratometer)
 20. 이물위치계(Apparatus for Foreign Body
 Localization)
 21. 수술현미경(Surgical Microscope)
 22. 안전카메라(Fundos Camera)

23. 냉동수술장치(Cryosurgical unit)

이비인후 과 2인이상 1. 퇴원환자100인이상(실
 인원)
 2. 외래환자 6,000인이상
 (연인원)

1. 방음장치가 된 청력검사실
 2. 청력계기
 3. 외과용 수술현미경
 4. 각종내시경
 5. 이비인후과 수술기구

피부과 2인이상 1. 퇴원환자 20인 이상
 (실인원)
 2. 외래환자 2,000인이상
 (연인원)

1. 자외선 조사기
 2. 임상사전(환자) 실험실
 3. 병리조직표본 실험실
 4. 현미경
 5. 전기술기구
 6. 냉동요법시설

7. 침보실험?V

8. 피내반응검사?V
 9. 암시야 검사장치

비뇨기과 2인이상 1. 퇴원환자 100인 이상
 (실인원)
 2. 외래환자 800인 이상
 (연인원)

1. 방광경실 및 기구
 2. 기타 비뇨기과용 기구

진단방사 2인이상 1. 일반 엑스선 검사연간

1.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

선과		15,000례 이상(간접촬영 제외) 2. 특수촬영 연간 2,500례 이상	하여 5대 이상 2. 심부치료기 1대이상 또는 동위원소 치료시설을 갖출것.
정형외과	2인이상	1. 퇴원환자 200인 이상 (실인원)	1. 수술실 및 정형외과 수술장비 2. 기재(골절테이블골절 및 절골기구, 손수술기구, 관절성형술기구, 척추수술기구) 3. 케스트실 및 석고봉대 시설 4. 골 견인장치 5. 물리치료실
신경외과	2인이상	1. 퇴원환자 250인 이상 (실인원)	1. 수술실 및 뇌, 척추, 수술기구 2. 회복실 3. 뇌혈관 및 척추조영촬영이 가능한 방사선시설 4. 물리치료실 5. 중환자실 6. 동위원소 뇌주사 진단시설 7. 수술 현미경
마취과	2인이상	500례 이상(전신마취 및 부위마취 포함)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2. 각 수술실에 흡입기 비치 3. 심폐 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 기구 5. 심전도기, 뇌파검사기, 체온측정기, 체온 조절량 비치 6. 혈액가스 분석기
흉곽외과	2인이상	퇴원환자 100인 이상 (실인원)	1. 수술실 2. 흉부 및 심장혈관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시설 3. 흉부 및 심장혈관수술을 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설

4. 중환자실

임상 병리과	200병상미만 1인이상	51병상~100병상 15,000인 이상 101병상~200병상 30,000인 이상	1. 혈액검사실 현미경 (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혈청관대, 혈구용적원침기
	200병상이상 2인이상	210병상 50,000인 이상 (연인원)	혈액응고 검사용항온 수조 타이어, 골수전자침 혈구계산용 기재. 전기냉장고 피펫세척기(혈구계산용) 현미경 사진촬영시설, 혈액소 검사용분광 광도계, 혈액도말, 염색시설 2. 임상화학 검사시설 화학천평 피에이취 측정기, 전기영동장치 전기냉장고, 광전광도계(2개)증류장치, 진탕기
염광 광도계 가스분석장치 항온수조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 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배지멸균용고기, 전기냉장고(시약 보관용) 부란기 전열멸균기, 자불육조 4.면역혈청검사시설 형광현미경, 전기냉장고 (시약 보관용) 항온수조(37℃) 저온냉동기, 면역전기 영동장치 진탕기 항온수조(56℃) 5. 일반검경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원심분리기 항온수조 혈구계산판, 요비중급절계 6. 혈액은행시설 등판, 혈액분획 제조용 원심 분리기 7. 기타시설(공동) 고압증기 멸균기, 저온냉동기(-20℃~-80℃) 환동기 슬라이드 투여기 피펫세척기
혈액저장냉장고, 원심분리기, 혈액형감별형광			

해부 병리과	200병상 미만 1인이상 200병상 이상 2인이상	부검5건 이상 외과병리 1,000건 이상 세포병리학 1,000건 이상	1. 조직표본 관독시설 조직표본 관독실, 현미경 사진촬영 장치 타이프라이터, 현미경(쌍안) 조직표본(보관용) 카비넷 2. 육안표본 검사시설, 육안표본절제실(Grass Specimen Cutting Room) 육안표본 절제용기구 (Dissection Instruments) 중량계량기(Weight)
Balance or Scale) 장기조직사진촬영기구?V			3. 육안표본보조실(Grass Specimen Storage) 4. 조직표본제작실(Laboratory for Histopathology), 마이크로톰(Microtome), 동결전편용 마이크로톰(Microtome for Frozen Section or Cryostat), 조직고정탈수 및 (파라핀)포메시설 ?V 또는 오토테크나콘(Tissue Fixation, paraffin Dehydration and Embedding set),

set)			조직포매용 부란기(Incubator), 조직절편운수조(Water Bath), 조직절편건조기(Tissue Slide Dryer), 조직염색시설 ?V(Tissue Staining set)
			5. 부검시설 부검실 시체보존용 냉장고 부검용기구 (Dissecting Instruments), 장기중량 계량기 (Scale for Autopsy Room), 시체체중 계량기 (Scale for cadabor), 육안장기 사진촬영 기구 ?V. 조직절제실(Cutting Room), 부검대, 장기 보존용 냉장고
성형외과	1인이상	1. 퇴원환자 100인 이상 (실인원) 2. 외래환자 1,200 이상 (연인원)	1. 수술실, 회복실 및 일반적인 의과시설 2. 수술기구, 사진촬영기
신경과	1인이상	퇴원환자 100인 이상 외래환자 500인 이상 (실인원)	1. 환자용 병상 20인이상 2. 중환자실 침대 2이상 3. 뇌파검사기·근전도검사기 및 유발전위파검사기 등 4. 방사선과 시설(뇌혈관촬영·척추조영 촬영·동위 원소 뇌투사진단시설·전산화단층 뇌촬영시설)
재활의학과	1인이상	외래환자7,000이상 (연인원)	1. 진찰실 2. 치료실(면적 200제곱미터이상) : 물리, 작업, 전기진단실 3. 기재 ○운동기기 : 평행봉, Pulley, Stair case, Stroll Restorator, Quadriceps Chair exerciser, Exercise mat. ○견인기 : Tilting Table 등 ○전기치료기 : 저주파 전류 자극기·다이아터미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치료기) ○물치료기 : Pool 또는 Hubbard tank, 회전욕조 (Whiri pool), Paraffin욕조 ○열치료기 : Hydrocollator unit, Cold pack unit ○전기진단기기 : 근전도기(E.M.G)크로박시메타 4. 작업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기
치료 방사선과	1인이상	퇴원환자100인이상 (실인원) 외래환자2,500인이상 (연인원)	1. Co 60이상의 방사선치료 장치 2. 방사선 측정장치 3. 방사선 물질 안전폐기시설

2. 진료과목별 기준

진료과목	시설 및 기구
내과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
소아과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
외과	1. 수술실 2. 회복실
산부인과	1.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진단방사선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마취통증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의 학 과	2. 각 수술실에 흡입기 비치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기구 5. 심전도기
진단검사의 학 과	1. 혈액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것) ·혈침관대 ·혈구용적원침기· 혈액응고검사용항온수조타이머·골수천자검·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 장고·피펫세척기(혈구계산용)·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분 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진단검사의 학 과	1. 혈액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것) ·혈침관대 ·혈구용적원침기· 혈액응고검사용항온수조타이머·골수천자검·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 장고·피펫세척기(혈구계산용)·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분 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검사시설 화학천평·pH측정기·전기영동장치·전기냉장고·광전광도계(1개)·증류 장치·진탕기·염광광도계·가스분석장치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배지멸균용고기·전기냉장고(시약보관 용)·부란기, 자불욕조 4. 면역혈청 검사시설 형광현미경·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항온수조(37℃)·저온냉동기·진 탕기 5. 일반검경 검사시설 혈구계산관·요비중굴절계 6. 혈액은행시설 혈액저장냉장고·원심분리기·혈액형감별형광등관 7. 그 밖은 시설(공동) 고압증기멸균기·환등기·슬라이드투영기·피펫세척기 8. 특례 ○ 저온냉동기 및 항온수조는 다른 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종 이상의 검사기능이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하였을 경 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병 리 과	1. 조직표본 제작시설 2. 부검시설 3. 세포학적 검사시설

전속전문 의 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각과 1인 이상	1. 허가병상수 100이상 2. 연간퇴원환자 실인원 2,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부검률: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입원환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4. 병상이용률 70% 이상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 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중양공급실·인턴숙식시설·분 만실·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이 있을 것

3-6-2. 치과의사 규정

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문과목)
- 제4조(수련)
- 제5조(수련기간)
-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
- 제7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 제9조(수련과정)
- 제10조(국·공립병원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 제11조(수련치과병원의 장의 권한)
- 제12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보관)
- 제13조(수련치과병원의 변경)
- 제14조(겸직금지)
- 제15조(수련치과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감독)
-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 제17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 제18조(자격증의 교부)
- 제19조(업무의 위탁)

나.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 제5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신청)

-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 제9조(수료증의 교부)
- 제10조(행정처분기준)
-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 제12조(시험의 시행)
-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 제16조(자격인정)
- 제17조(준용규정)
- 제18조(수수료)

[별표 1]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기 준
진 료 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3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각 과 1인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1. 허가병상수 5병상 이상 (구강악안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 2.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인 이상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 유니트-의자 7대를 기준으로 하여 4대이상 설치 2. 구내방사선촬영기 1대 및 구외방사선촬영기 1대이상 설치 3.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약국, 치과기공실, 강의실 또는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시 설 및 기 구
구강악안면외과	1. 수술실, 입원실, 회복실 2. 골절단기, 전기소작기, 악골절정복고정기구, 악교정수술기구, 구순구개열 수술기구, 악관절 수술기구
치과보철과	1. 기공실, 도재실 2. 평행측정기, 진공도재소성로, 소환로, 치과용써베이어, 교합기, 유압식가압기, 온성기, 모형트리머, 진공혼합기, 기공용테이블, 흡진기, 기공용 엔진(2대이상), 초음파세척기, 분마연마기, 반조절성교합기, 치과임플란트 보철진료기구
치과교정과	1. 교정기공실, 세미나실, 기록보관실, 방사선촬영실 2. 치과진료대, Spot welder(3대이상), 구강 및 악안면사진 촬영기(1조이상), 석고모형트리머, 두부X선규격촬영기, 전기 납착기, 반조절성 교합기, 교정프라이어세트 및 멸균소독기
소아치과	1. 기공실, 소독실, 회복실 2. 소아치과치료전용 유니트의자, 신체억제장치, 사진기, 흡입마취기, 소아교정기구, 환자감시장치, 응급세트
치주과	1. 수술실 2. 초음파치석제거기, 전기응고기, 치은판막수술기구, 치주보철기구, 치주수술기구세트, 위상차현미경, 흡입마취기, 치아매식수술기, 지각과민처치기, 교합기, 치아동요측정기
치과보존과	1. 기공실 2. 치수검사기, 초음파기기, 기공장비, 전기응고기, 기공기자재, 치아표백기기, 수복용에 필요한 장비, 근관장측정기, 수술용현미경, 구내방사선 촬영기 및 현상장치
구강내과	1. 물리치료실, 기공실, 악기능검사실, 임상검사실, 인성검사실 2. 근전도기기, 전기자극치료기, 하악운동분석기, 악안면신경검사기, 압통측정기, 간이수면검사기, 구취측정기, 레이저, 반조절성교합기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 구내방사선 촬영기(2대이상), 구외방사선 촬영기, 현상시설, 판독시설
구강병리과	1. 사진촬영실, 면역혈청검사실, 2. 현미경, 원심침전기, 전기냉장고, 혈액도말염색시설
예방치과	1. 예방치과진료실, 공중보건학연구실, 구강보건교육실 2. 캐비트론, 자외선치면열구전색기, 위상차현미경, 인규베이트

[별표 2]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기 준
진 료 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4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각 과 1인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1. 허가병상수 5병상 이상 (구강악안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 2.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인 이상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 유니트-의자 7대를 기준으로 하여 4대이상 설치 2. 구내방사선촬영기 1대 및 구외방사선촬영기 1대이상 설치 3.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약국, 치과기공실, 강의실 또는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진료실적(연간)	시 설 및 기 구
구강악안면외과	2인이상	·퇴원환자(실인원) 50인이상 ·외래환자 2,000인이상	인턴수련병원과 동일 ※ 추후 변경 가능
치 과 보 철 과	2인이상	·외래환자 2,000인 이상	"
치 과 교 정 과	2인이상	·교정신환 100예 이상	"

3-6-3. 한의사 규정

1)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전문과목)
 - 제4조 (수련)
 - 제5조 (수련기간)
 - 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 제7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 제8조 (한방전공의의 정원)
 - 제9조 (수련과정)
 - 제10조 (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 제11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 제12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제13조 (수련한방병원의 변경)
 - 제14조 (검직금지)
 - 제15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감독)
 - 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 제17조 (청문)
 - 제18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 제19조 (자격증의 교부)
 - 제20조 (업무의 위탁)
- 부칙

2)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 제3조 (수련기간의 단축)
- 제4조 (수련연도의 변경)
- 제5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 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 제7조 (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 제8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 제9조 (수료증의 교부)
- 제10조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 제11조 (시험의 시행)
- 제12조 (시험과목 및 방법)
- 제13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4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 제15조 (자격인정)

제16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상)

제17조 (준용규정)

제18조 (수수료)

부칙

별표1 일반수련의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2 전문수련의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서식1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

서식2 수련한방병원지정신청서

서식3 수련한방병원지정서

서식4 한방전공의명부[년도]

서식5 수련이수자명부[년도]

서식6 한방전공의기록카드

서식7 수수료예정자명부

서식8 수수료증

서식9 응시원서

서식10 한의사전문의자격증

2. 수의 진료 전문화 체계의 방향

2-1 수의 진료 전문화 필요에 대한 조사

2-1-1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 자료는 설문 자료 참고)

가. 진료전문화 필요성에 85 %가 찬성

나. 인턴/ 레지던트 제도 도입은 83% 가 찬성

다. 학부과정에서 심화과정의 필요성에는 71%가 찬성

라. 진료전문 수련기간에 대한 의견은 1년에서부터 4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50%로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동물 축종과 전문 분야별로 기간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1-2 진료전문화의 방향

- 진료전문화의 방향은 축종별로 사회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향과 한국적인 실정으로 동시에 감안하여 개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 진료전문화 수의사 양성교육 연한은 전문축종별 진료과목별로 그 수련 교육을 권장

하는 협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간을 존중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진료전문화의 교육을 위해 대학들의 특성화 및 향후 학부과정에서

2-1-3 전문 진료 수의사 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술의 질적 향상 선호전공이 뚜렷해짐 임상교육에 매진 국제경쟁력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 간의 위화감 기술장벽으로 다전공 교육연장 교육투자 대비 직업 불안감 증가 실기 미흡 수의사의 개업차단 연구나 업적 미진으로 상대적 불이익 정원 제한으로 유동성 감소 도시집중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의 경비 확보 전문진료 임상 진료권 보호 임상가에 대한 예우 증대 엄정한 규정 준수 장기비전에 대한 인내 	

2-2. 사회의 수의 진료전문화 요구분야

	돼지	소	닭	말	내과	외과	산과	영상 진단	임상 병리	피부과	안과	조직 병리	기타 분야
수요	있다												
지원	기피												
법규	?	?	?	?	?	?	?	?	?	?	?	?	?
전담조직	관련 동물수의사회				임상교육협의회 전문의제도위원							병리 학회	관련 학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 인원제한 대학/관련단체/ 동물별 전문진료 수의사연합				전문과목별 협의회								
재원	정부지원 / 보조금												
인정	?	?	?	?	?	?	?	?	?	?	?	?	?
진료/제한													
안정화/ 수입													

2-3. 수의사의 환경변화

가. 업무변화

내용	과거	현재	비고
진료대상	대동물	소동물	
대동물 진료규모	개체	집단	예방에 중점
진료 내용	치료기술	예방과 컨설팅 능력	
지식	질병	질병 + 사양+시설 +경제	
시대적 요구	다양한 동물 진료능력	전문동물의 종합능력	
수의사 수	다수	소수 전문화	

나. 산업동물과 축주의 변화

내용	과거	현재	비고
동물의 인식	가족 / 생활기반	수익의 수단	애정결핍
규모 / 면적	개체/ 넓다	집단/ 좁다	관리부재 /1개체
사양관리	직접관리	간접관리	수의사와 간접 접촉
동물음식	자연선택 (다양)	인공사육 (규격화)	
질병의 종류	다양	단일/ 새로운 질병출현	
병 해결능력	극진한 보살핌	대처 곤란	
수의/축주 관심의 차이	치료 / 보살핌	사양관리 / 치료	수의사와 반대의 관심 경향
전문지식에 인식부족	차이를 상호인식	지식에 대한 대립	상호 불협화

다. 산업동물 수의사 환경변화

내용	과거	현재	비고
지역	도. 농촌 차이 없음	농촌기피	가족, 교육
수의사의 보람	신뢰	기술인 신뢰부재	보람 감소
수익	상대적 우위	상대적 빈곤	수입감소
시간적 여유	근거리 여유	장거리 여유부족	여유감소
심리적 경쟁	지역 분담 / 없다	전국화 / 치열	위험증가
치료 손실	적다	많다	부담 증가
동물과 대화	많은 경험	경험 부재	예지력 감소

라. 수의사 신규인력의 변화

내용	과거	현재	비고
지식	농촌 상 기반	최상 (1-3%)	최상층
계층	평범	상층	
경제력	평범	높다	
지역	농촌	도시	95% 이상
목적	생활 직업	관심 / 보람	
직업 변경	적다	많다	
동물경험	매우 많다	산업동물 전무/ 적다	

3. 발전방향과 제안

근래에 축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직종별/전공별 전문 수의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등 6 개국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였고, 현재 유럽연합 등 6개국과 협정과정에 있어 앞으로 농업과 수의서비스 분야에서도 국가간 교류가 확대되어갈 전망입니다.

전문의제도는 전문화된 고급기술을 함양시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화함으로써 수의사로서의 자격과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의학 분야에서는 1951년부터 전문의제도가 도입되었고, 한의학(1999년)과 치의학(2003년) 분야에서도 이미 전문의제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외국의 수의학 분야에서도 전문의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의학 분야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 합니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는 2002년부터 전문의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연구와 준비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내 수의계에도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수련과정을 개발하고, 인정기준과 자격부여 법령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아니라, 인의 전문의제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교육부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수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관련 교수, 개업수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106 명이 (86%) 전문의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수의전문의제도 설립과 관련되는 학회/협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 학회/기관

전문 분야	협력 학회/기관	회장	주소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산업동물 (소 전문)	한국우병학회	김 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수의학부대학
산업동물 (양돈 전문)	한국양돈수의사회	강화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번지 (주) 에그리브랜드 퓨리나 코리아
산업동물 (양계 전문)	한국양계수의사회	윤호식	충남 천안시 구성동 480-8 장원동물병원
레저동물 (말 전문)	한국마사회	이우재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수생동물 전문	한국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허강준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실험동물 전문	한국실험동물학회	강종구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위생 전문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박용호 (조병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가축위생학회	신명균 (홍경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2리 727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수의내과 전문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	나기정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외과 전문	수의외과학교수협의회	최석화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산과 전문	수의산과학교수협의회	김용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영상진단전문	수의영상진단학교수협의회	윤정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 전문	한국수의병리학회	강문일 (임채웅)	강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3-1. 전문수의사 관리의 주체

가. 조직

1. 주체: 대한수의사회
2. 담당부서: 대한수의사회에 전문수의사 부서 설립
3. 집행부서: 전문의 제도위원회
4. 실행 및 관리:
 - 소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돼지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가금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내과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외과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산과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영상진단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피부과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어류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기타 수의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위원회

나. 추천 임원(예)

1. 주체: 대한수의사회
2. 담당부서: 대한수의사회에 전문수의사 부서 설립
3. 집행부서: 전문의 제도위원회(현 한수임교협의 전문의 제도위원 등)
4. 실행 및 관리: 각 산업동물 별 및 각 학문 분야별 협회 및 학회

3-2. 조직 업무

1. 주체: 대한수의사회
2. 담당부서: 대한수의사회에 전문수의사 부서 설립

가. 제도적 법률적 관리

- 나. 전문수의사 기록의 관리 관련 서류 발급
- 다. 인정서 발급
- 다. 전문수의사 교육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대책을 마련

3. 집행부서: 전문의 제도위원회

- 가. 전문 수의사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
- 나. 인증을 위한 시험과 규정준수를 관리감독

4. 실행 및 관리: - 축종 및 전공 전문수의교육위원회

- 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한 설정
- 나. 인원 제한과 소요예산 및 교육 장소와 설비확정
- 다. 교육

3-3. 수의진료전문화를 위한 제안

1. 인턴 2년 형 (과도기형)
2. 인턴+전문 혼합형 (산학협동형)
3. 인턴+전문의 분리형 (미래형)

	돼지	소	닭	말	내과	외과	산과	영상 진단	임상 병리	피부 과	안과	조직 병리	기타 동물
본과4년	기본 교육 종료												
산업체 교육 (인턴1년)	특성화 대학연합체계 전문 임상가 / 관련 단체/기관				대학병원/ 인가병원 (교육가능)								
전문의 교육 (3년)	전문 임상가 / 관련 단체/기관 (교육능력 ?)				대학병원 / 인가병원 (교육능력 ?)							진단 기관	
	장학제도운영				교육재원 마련								
전담조직	관련 임상수의사회				임상교육협의회 전문의제도위원							병리 학회	?
운영주체	수의사회												
교육프로 그램	교육환경 / 인원제한 대학/관련단체/전문 수의사의연합				각 과별 프로그램 개발								

3-4. 수의진료전문화를 전문수의교육위원회 구성

가. 제도시행 준비주체를 결정

전문의 분류		현 협회	수의사회
직종	산업동물(돼지, 소, 말, 가금) 어패류 실험동물 수의행정/예방위생전문	한국양돈임상수의사회 등 각기 직종별로 구성될 필요성 있음	한국임상교육협회의 회의 (전문의제도위원회) 를 활성화
학문	내과 외과 산과 영상진단 임상병리 피부과 안과 조직병리	내과교수협의회 외과교수협의회 산과교수협의회 영상진단 교수협의회 피부과교수협의회 병리학회	규정과 제도 시행을 위한 점진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함

나. 수의사회, 한국임상교육협의회 (전문의제도위원회)

- 수련 기간의 합의 (1년-2년, 3년/미시행)
- 인가병원/ 정원에 대한 합의
- 수련기간 기술 표준화

수련 전공별 수의기술 과제 (상/중/하) 분류

- 내과
- 외과
- 영상진단
- 산과
- 안과
- 피부과
- 임상병리
- 산업동물 (돼지, 소, 말, 닭, 기타동물)

다. 운영주체와 관리 및 경비

관리주체

교육목표, 인턴, 전문의의 정의, 신청자격

정원, 채용방법, 교육기간, 교육

인력, 시설 장비 및 교육여권에 관한 기준

라. 각 진료전문 분야별 기술목표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리

- 외국의 수의 전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

3-5. 운영체제와 환경조성

가. 산업동물 전문수의사 양성을 위한 산.학.관 환경 조성

1) 수의사 교육의 변화

- 산업동물에 대한 각 지역대학의 특성화 유도
- 산업동물 대학간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산,학 협력체제

- 산업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 교육의 주체에 대한 협력과 인력유도로 관심증가

3)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식변화

- 전문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정 시스템 마련 과 제도적 보장
- 전문수의 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

4) 산업동물 전문인 후보자에 대한 산,관 투자

- 인력교육을 위한 장학제도
예)군의원 의무 장학제도
- 지역축산업체의 추천 위탁 교육제도
예)사관학교 장교 의대위탁교육
- 농어촌 산업동물 진료 대체복무 제도의 확대
- 전문수의사 재교육을 위한 재투자 제원마련

3-6. 수의사법의 개정요구

가.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진 사회발전에 기여할 ‘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의사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사람의 경우에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진료전문화를 명문화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8088호”(1976.4.15)에 의하여 제정되어 시행규칙은 “보건사회부령 제622호”(1979.2.27)에 의하여 제정되어 1996년(보건복지부령 제20호)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수의사법”의 개정으로 진료전문화를 위한 수의사법의 개정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 수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의 도입에 따르는 비전 (목적)

목표: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국제적인 경쟁력과 선진기술을 익히고 기술개발과 전문화 기술습득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방법: 국내의 여러 대학과 유관기관 및 동물관련 전문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수의 관련 현실업무 수행어려움이 없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수의사의 모든 분야를 잘 할 수 있는 수의사를 양성하는 보다 수의학교육 목표로 전문화 교육기술을 여러 대학이 특성을 가지고 연합하여 개발해야 한다.

대학 또는 학생의 전문화를 위해 선택한 한 분야의 충분한 지식, 기술을 교과과정의 20% 이상 포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각기 수의과대학에서 실무중심적인 전문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이를 정착위한 산업계와 정부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제도 및 향후 전문기술의 안정적 사회기여가 필요하다.

(참고: 산업계와 정부는 소, 돼지, 닭, 어류, 실험동물, 식품위생, 수의공무 등 분야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주문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의과대학에 “산학협력”차원의 재정을 지원 함)

3) FTA 대응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관이 공동으로

“수의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 작성 및 수의대혁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수의학 교육혁신센터” 설립 필요

(참고: 수의학교육은 학부교육뿐 아니라 수의사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의미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 8576호],

제2조 (정의)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4) 졸업 후 ‘전문수의사’ 제도의 도입은 수의사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관련 법령의 정비, 졸업 후 구체적이고 실제의 전문분야별 연수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수의사법”

<신설조항> (전문수의사) ①수의사로서 전문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수의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수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수의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수의사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수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 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수의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 FTA협정에 따른 국내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 약학분야의 경우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SRC) 신규센터(약학분야) 선정.
- 공학분야의 경우 2006년 11월 산·학·관이 공동으로 수립한 ‘공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에서 공대혁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제시,
 - 산업자원부 주관의 전국 50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치 공고 (2007.2.14. 올해 예산 120억원, 5년간 지원),
 - ‘공학교육 글로벌 혁신추진방안’ (청와대 2007. 7. 27. 국가인적자원의위원회 안건)
- 수의학분야의 경우, 이와 같은 국내 전문인력양성 비전과 교육프로그램이 없음.

다. 제안:

수의업과 동물관련 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수의사’ 제도도입이 필요하고 산·학·관이 공동으로 수의학교육혁신센터’ 설립하여 ‘수의과대학 혁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주문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의과대학에 ‘산학협력’ 및 FTA 대응차원의 재정지원으로 수의 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한국 수의 인턴, 전문의 과정 논의 역사

5-1. 전문의제도 위원회 활동

가. 2002년 08월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전문의제도위원회) 구성

전문의제도위원회 위원장 최민철

(위원: 윤화영, 이경갑, 권오덕, 김덕환, 조규완, 강태영, 배춘식, 나기정,

최민철)

2004년1월 30일 한수임교협총회

전문의제도위원회 위원장 사업 설명

인턴수련의 제도의 승인 요청

2004년07월에 한달 간 “2년제수련의제도에관한규정과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청취

2004년09월18일-10월말까지 2년제수련의제도에관한규정과시행규칙(안) 우편 의결

발송(64): 기권(6)/응답58 찬성(40) 반대(8)

2005년 03월 12일 (토요일) 한수임교협총회 (충북대학교)

- 수련의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기술 표준화와 검정 system 을 갖추어야 한다.

2006년 08월 17일 전문의제도의원 및 인턴수련의 지리산 백운모임

- 인턴과정 수련의 애로점 및 운영에관한 어려움 청취 및 미래발전 방향토의

2006년 11월17일 한수임교협총회 전문의제도위원회 위원장 조규완

- 인턴과정수련의 검증을 위한 기술 및 test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향후 인턴 수련 수수료증은 한수임교협회장이 총회에서 한다.

2007년 전문의제도위원회 활동

나. 향후 선결 과제들

- 제도시행 준비주체 결정

수의사회, 한국임상교육협의회 (전문의제도위원회)

- 수련 기간의 합의 (1년-2년, 3년/미시행)

- 수련정원에 대한 합의

- 수련기간 기술 표준화

수련 전공별 수의기술 분류(상/중/하)

내과

외과
 영상진단
 산과
 임상병리

다. 수의사 수련의 관리주체

- 수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농림부에서 실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 전문의제도위원회를 설립하여 수련병원에 대한 심사,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을 책임지게 한다.

5-2. 2년제수련의제도에 관한규정과 시행규칙(안)에 고려된 내용

기준 /인자		내용	주안점
인가 공통 기준	치료과수	내과 외과 산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영상진단과)	병원의 진단능력에 주점 (진단 및 검사실)
	전문의를수	임상 전담	교육수준
	병상/진료수	120 case/1인/년	임상진료경험
	시설/기구	명기	교육 환경

수의사 2년제 인턴 수련의제도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2년제 인턴수련의의 수련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목표) 2년제 인턴수련의제도 교육의 목표는 임상 각 과에서 임상수련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화된 임상수의사를 양성함에 있다.
- 제 3 조 (인턴수련의의 정의) 인턴수련이라 함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수련대학동물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 제 4 조 (신청자격) 2년제 인턴 연수를 신청하는 자는 4년제의 수의학과를 졸업하여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동물병원 및 대학교 이상의 2년간의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자 이거나, 6년제 수의학교육을 받고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
- 제 5 조 (정원) 인턴수련의의 연간 정원은 각 대학의 임상교수수, 연간 동물병원의 진료건수 및 대학병원 진료시설기준에 따라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의 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배정한 규정에 따른다 (별첨참조) .
- 제 6 조 (채용방법) 채용방법은 각 대학 동물병원원장의 모집광고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 (응시원서, 수의사자격증사본, 수의학교육기간의 성적, 연수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를 완비하며 채용은 각 대학의 임상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7 조 (교육기간) 인턴수련의의 교육기간은 2년 (24개월) 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의제도위원회의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 8 조 (교육) 인턴수련의의 교육은 1년차에서는 각 임상과를 계획에 의하여 윤번제로 교육하며, 2년차에서는 신청시 지정한 임상과목에 대하여 심화교육을 가진다.
- 제 9 조 (인턴수련의의 의무) 인턴수련의는 수련과정중 매월 1회 이상의 임상윌레회 증례연구에 참석하며 그 내용을 매월 1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련과정 동안에 2편의 증례보고와 1편 (제1저자) 을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일반근무) 인턴수련의는 임상교수나 주치의의 지도 감독하에 근무하며 진료에 참여한다.
- 제 11 조 (인턴수련의의 평가) 인턴수련의의 수련평가는 수련종료 2개월전

에 제출된 소정의 평가자료를 근거하여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의 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다.

제 12조 (수련증의 교부) 수련증의 교부는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 회장명의로 교부되며 그 시기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13조 (재교육) 인턴수련의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한국수의임상교육협회의회에서 실시하는 재교육을 1회이상 받아야한다. 단 당해연도 수료자는 그 해의 재교육을 면한다.

- 부 칙 -

1. 이 제도는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제도가 설립되기까지 유효하다.
2. 이 규정은 2004. 3. 1. 부터 소급 적용한다.
3. 기타 자세한 시행규칙은 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별첨4-2.

수의사 2년제 인턴 수련의 제도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조 (신청자격)

- ① 동물병원의 연수는 연수한 동물병원장이 연수기간을 명시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학교 이상의 2년간의 교육은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이후에 받은 교육을 말한다.

제 2 조 (정원)

- ① 정원은 전문의제도위원회의 별첨규정을 참조한다.
- ② 차기년도 정원의 배정은 10월에 한다.
-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3 조 (채용방법)

- ① 채용의 절차는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에서 배정된 정원을 각 대학별로 공고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각 대학별로 선발한다.
- ② 채용은 1월말까지 실시하여 응시원서[양식1]사본을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에 통보한다.
- ③ 소정의 서류중 수의사자격증사본은 제출하여야 하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다.
- ④ 소정의 서류중 연수경력증명서[양식2]는 연수를 제공한 동물병원장이 발급한 것으로 연수기간이 명시된 추천서를 말한다.

제 4 조 (교육기간)

- ① 교육의 시작은 3월에 시작한다.
- ② 교육기간의 산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 1) 시작후 연속되지 않은 경우의 기간은 통산할 수 있다.
 - 2) 질병이나 국가의무이행으로 발생한 결손기간은 최대 3개월을 인정한다.
 - 3) 기타 3개월 미만의 결손사항은 전문의제도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인턴수련의의 의무)

- ① 월례보고서 제출은 수련의들 간에 내원한 환자가 중복되지 않게 하며 10개 이상의 증례보고를 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마련한 양식[양식3]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2편의 학회증례보고와 1편의 학회지게재는 인턴수련의가 제 1저자이어야 하며 그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을 전문의제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턴수련의의 평가)

- ① 인턴수련의의 평가의 시기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지도 과목교수의 평가와 심사요구서[양식4]를 받아서 기재출된 서류와 함께

1월에 평가한다.

제 7 조 (재교육)

- ① 재교육은 연 1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미필하는 자는 차후 재교육비의 감액수혜를 받을 수 없다.
- ② 재교육을 연속하여 2년 이상 미필하는 자는 향후 전문의 도입시의 입학자격을 상실한다.
- ③ 위 ①, ②항에 상실한 제한은 2년 연속 재교육을 이수할 때는 복귀된다.

별첨4-3. 인턴 수련의의 연간정원 기준

1. 박사급 전문 임상인의 수

임상과목 교수 2인당 1명의 인턴을 받을 수 있다.

(“임상교수”라 함은 내과, 외과, 산과, 방사선, 임상병리 및 기타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과목의 교수를 말하며, 또한 교수의 진료행위가 동물병원의 수입에 직접 기여하는 과목의 교수를 말한다.)

* 각 대학이 현재 박사급 전문 임상인 수의 비례로 배정되는 intern 수

학교 명	박사급 전문 임상인 수	Internship TO	비고
강원대	6 명	3 명	
건국대	5 명	2 명	
경북대	7 명	3 명	
경상대	8 명	4 명	
서울대	13 명	6 명	
전남대	6 명	3 명	
전북대	5 명	2 명	
제주대	6 명	3 명	
충남대	6 명	3 명	
충북대	7 명	3 명	

* 교수수의 반 올림은 하지 않는다.

2. Case 수

대학병원의 진료 case의 수는 1개월간에 인턴수의사 1인당 최소 10 case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차년에 평가하여 감원 조건이 될 수 있다)

3. 진료시설

한수임교협에서 제시한 최소 대학병원의 각 과별 기준 시설을 130점을 기준하여 100 점 초과시 10점당 1명을 증원 할 수 있다. (이것은 차년에 평가하여 증원조건으로 될 수 있다)

각 임상과별 시설 및 장비(기구) 기준

진료과	시설	장비(기구)
내과	진찰실, 종합치료실, 응급치료실, 내시경실, 내과입원실, 투석실, 공혈견입원실	1.검안 및 검이경 2.진찰대(각 방마다 1대) 3.심전도기 4.내시경기 5.현미경 6. 우드라이트(Wood light) 7. 현미경 8.인공호흡기 9. 심실제세동기 10. 산소 및 산소공급장치 11. X-ray필름 view box 12. 소아용 incubator
내과 : 최대 2 5 점	시설 : 최대 1 0 점	기자재 : 최대 1 5 점
외과	외과진찰실, 외과처치실, 수술준비실, 탈의실, 수술실, 회복실, 외과소독실	1. 가스마취기 2. 인공호흡장치 3. 수술시 환자감시장치 4. 고압멸균소독기(공용 혹은 외과전용) 5. 손 수세장치 6. 수술대 및 수술등 7. 투시장치(C-arm 투시) 8. 수술기구(정형,일반) 9. 미세조작 수술기구
외과 : 최대 2 5 점	시설 : 최대 1 0 점	기자재 : 최대 1 5 점

진료과	시설	장비(기구)
방사선	촬영실 투시 및 특수촬영실 필름현상실	1. X-ray촬영기기(300ma) 2. X-ray투시장치 3. 자동현상기

	필름판독실 필름보관실 CT 실 MRI 실 방사선치료실	4. 필름view box 5. 필름복사기 6. CT 7. MRI 8. 방사선치료장치(Co-60혹은 선형 입자속기)
방사선 : 최대 20 점	시설 : 최대 5 점	기자재 : 최대 15 점

진료과	시설	장비(기구)
임상병리	일반임상병리실 특수임상병리실 동위원소측정실	1. 혈액(CBC) 분석기 2. 자동혈청분석기 3. 전해질 분석기 4. 혈액가스 분석기 5. 현미경 6.요결석분석장치 7.요비중계 8.일반 incubator
임상병리 : 최대 20 점	시설 : 5 점	기자재 : 15 점

진료과	시설	장비(기구)
산과	검사실 치료실 정액분석 및 보존실 인공수정 및 분만실	1.일반현미경 및 monitor 2. 질소탱크(34L이상) 3.소아용 incubator 4.정액동결기 5.CASA(computer aided semen analysis)
산과 : 최대 20 점	시설 : 5 점	장비 : 15 점

진료과	시설	장비(기구)
기타과 1) 야생 및	야생 및 희귀동물 치료 및 입원실	1. 야생동물치료용 스퀴즈박스 2. 야생동물 입원케이지 3. 어류 수욕조 (대, 중, 소)

<p>희귀동물과, 2) 어류 및 어패류질병과, 3) 기타 특수진료 과 (기타 각 대학 이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진료 과목)</p>	<p>어류 및 어패류치료실 기타 특수진료실</p>	<p>4. 기타 특수진료 기기</p>
<p>기타과 : 최대 2 0 점</p>	<p>시설 : 최대 5 점</p>	<p>기자재 : 최대 1 5 점</p>

<양식 1> 대학동물병원 인턴수련의 지원서

성명	(한글) (영문)	수련의 번호 (차후결 정)			사 진 (3.5×4.5cm)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수의사 번호					
수련 병원	대학교동물병원							
진료과목 교수명	서명/인		진료 분야					
주소	우편번호							
본인연락처	(휴대전화) E-mail :		(자택)					
병역	역종		군별		계급		군번	
	복무 기간	19 ~ 19	미필(면제) 사유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비고			
학 력 사 향								
기간	학교명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19 - 19	(고교)			/				
. . . . -	(대학)							
. . . . -	(석사)			수의학과 성적	() / () 만점			
. . . . -								
. . . . -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인턴수련의 수료 심사평가 요구서

수련대학병원		성 명	
수련시작	년 월 일	수련종료	년 월 일
<p>상기 인턴수련의는 대학동물병원 및 ()진료과에서 2년간의 수련을 받았기에 인턴 수련의 수료심사 평가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성명 서명/인</p>			

인턴 수련 2 년간의 증례 및 논문실적

번호	발표연월일	증례 제목	저자명 (인쇄순)	학회 / 게재지명 권 호 page	심사위원인정 점수
1	20				
2				
3				
번호	발표연월일	논 문 제 목	저자명 (인쇄순)	학회 / 게재지명 권 호 page	심사위원인정 점수
1				
2				

※ “심사위원 인정점수”는 심사위원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년/ 월) 임상증례 토의 보고서

수련병원:

성 명:

(서명)

수련의번호:

순 번	진료 월/일	병원 chart 번호	주치의 / 담당수의사명	진 단 명	증 상 및 결 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인턴수련의 정원조정에 적용되므로 동일병원 수련의들 간에는 수련병원 chart 번호 중복 피할 것

 년 월 일에 상기 수련 대학동물병원에서 합동 증례토의를 하였기에 내역을 보고합니다.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각국의 수의사 면허제도

1. 서론

국제 무역의 확대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문직종의 다변화와 전문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의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사 면허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OECD 국가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수의사시험은 기능-계통별 시험으로 치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1974년부터 10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국가면허시험인 수의사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수의학 수업연한이 6년제로 개편되었으며, 수의사 시험과목이 2011년부터 4 시험과목으로 개편된다. 본 난에서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수의사 면허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우리나라 수의사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각국의 수의사 면허제도

2-1. 미국

2-1-1. 미국 수의사 제도의 특징

미국의 수의과대학은 수의학을 ‘학문으로서의 수의학(science of veterinary medicine)이 아니라 기술로서의 수의학(art of veterinary medicine)으로 인식’하고, ‘수의학적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환축이나 동물에게 적용하는 실천’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최소한 1년의 실무임상교육(hands-on clinical education)을 포함한 최소 4년 이상의 수학연도’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미국수의사회(AVMA)를 수의과대학의 인증기관으로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의과대학은 미국수의사회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의학교육내용과 수의사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수의사회의 교육인증기준의 평가항목은 절대평가가 아닌 각 학교의 특성적인 면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창의적인 면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고 절대적인 수치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현황도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대학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수치에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면 AVMA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맞출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미국수의사회의 교육인증기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소속(Institutional Accreditation)

해당 수의과대학은 공신력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소속인가 ?

2) 재정(Finances)

해당 수의과대학의 예산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수준인가(동물병원 포함)?

3)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Organization & Communication)

해당 수의과대학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4) 시설 및 장비(Physical Facilities and Equipment)

수의학 교육(이론 및 실습)에 있어 적합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동물병원 포함) ?

5) 임상교육자원(Resources for Clinical Instruction)

임상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동물병원 포함) ?

6) 도서관 및 정보지원(Library and Informational Resources)

수의학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자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7) 입학(Admission)

명확한 입학생선발기준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가?

8) 학생(Students)

원활한 수의학 교육을 위해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가?

9) 교수 및 행정직원(Faculty and Staff)

해당 수의과대학은 적정 수준의 교수 및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10) 교과과정(Curriculum)

해당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가?

11) 사후평가(Outcome Assessment)

해당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해 졸업생 및 졸업생의 고용주가 만족하는가?

수의학 교과과정은 교과목명, 학점 또는 수업시수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학습목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의학 수업연한이 6년제로 개편된 이후 교과목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 학습목표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4 시험과목별 수의사시험제도와 부합된다.

- a. 동물의 건강과 질병을 분자와 세포수준에서 개체와 집단징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중요한 생물학적 원리와 기전을 이해하여야 한다.
- b. 규칙적이고 간결한 방식의 과학적이고 훈련에 근거한 교육으로 학생은 정상기능, 항상성, 병태생리, 건강과 질병의 기전, 국내·외 동물 질병의 징후와

자연발생을 이해하여야 한다.

- c. 여러 종에 적용할 수 있는 내과와 외과의 이론과 치료기술에 관한 교육. 교육은 질병의 원리와 신체검사, 실험실진단법과 해석의 실무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영상진단, 진단병리, 부검 포함). 동물 개체와 집단의 임상질병을 포함한 예방과 치료, 치료용 개입 (수술 포함), 그리고 환자관리와 간호 (집중간호, 응급의학과 격리절차 포함) 교수는 의학적 판단과 적용할 문제해결을 강조하여야 한다.
- d. 역학, 인수공통전염병, 식품위생, 동물과 환경의 관계, 공공 및 전문 건강관리팀에 기여하는 수의사의 원리에 대하여 강의해야 한다.
- e. 학생이 진단기록부를 기록하는 법과 환자에 관한 기록부에서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 및 동료와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 f. 교과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수의사 윤리, 대중에게 전문서비스의 제공, 개인과 기업의 재정과 관리기술, 수의학의 영역 이해, 진로 기회 및 전문직에 대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
- g.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물의 건강과 안락함(well being)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소질, 행동양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
- h. 학생의 업적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한다.

2-1-2. 미국 수의사 면허취득 과정

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 미국의 수의사면허시험 North American Veterinary Licensing Examination (NAVLE)은 미국의 National Board of Veterinary Medical Examiners (NBVME)에서 관할하고 있다. 미국수의사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나 졸업예정인 자는 미국 수의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NAVLE은 기존의 National Board Exam (NBE)와 Clinical Competency Test (CCT)가 합쳐진 것이다. 수의사 시험은 4월과 11월 년 2회에 있으며 시험 개시일로부터 95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Prometric Testing Center에 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문항은 360 multiple choice questions이며, 60문항씩 6 block으로 나누어 치루게 된다. 시험시간은 각 block 당 65분씩 390분이 주어진다. 동물별 출제 빈도는 small animal; 54%, food animal; 24%, equine; 16%, 기타; 6%이며, computer test로 바뀐 후 전체문항 중 10%는 radiograph, photograph, ECG 등이 출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www.nbvme.org>).

미국이 아닌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미국이 아닌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NAVLE 이외에도 미국수의사회가 요구하는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Veterinary Graduates (ECFVG) 프로그램과 별도로 몇 개 주에서 실시하는 Program for the assessment of veterinary education equivalence (PAVE)를 통과해야 한다. ECFVG는 4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제 1단계는 먼저 미국수의사회의 ECFVG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에 제 2단계로 영어시험[TOEFL, TSE, TWE(2003년 5월부터는 TOEFL, TSE, TWE 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IELTS와 CAEL이 신설되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elts.org나 www.cael.ca에서 볼 수 있다]을 통과한 후에 제 3단계로 200 문항의 기초 및 임상수의학 객관식 필기시험인 Basic and Clinical Services Exam (BCSE)을 통과하고 마지막 제 4단계로 3.5일간의 임상실기시험인 Clinical Proficiency Exam (CPE)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2007년 4월 이후에 바뀐 내용이며, 관련 홈페이지는 www.avma.org 이다.

PAVE는 미국수의사회와 별도로 몇 개의 주가 연합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American Association of Veterinary State Boards (AAVSB)가 주관하고 있으며, 역시 4단계를 거쳐야 하며 Home page는 www.aavsb.org 이다. 제 1단계는 등록이며, 제 2단계는 영어시험, 제 3단계는 Qualifying exam, 제 4단계는 Veterinary Clinical Skills Assessment exam (VCSA)으로 위의 CPE와 유사하나, 이 시험을 보지 않으려면 미국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1년간 인턴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Evaluated clinical experience (ECE)이라 한다.

위의 두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미국 수의사 국가고시인 NAVLE을 보게 되며, 여기에서 통과하면 State board를 응시해서 통과해야 수의사면허를 얻게 된다.

2-1-3. 미국 수의사 면허제도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수의학 교육기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증을 하고,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원은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고 있어, 교육 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자격시험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하여, 자국출신 수의사를 보호하고 실력 있는 외국 수의사를 유치하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교육기관의 인증이 까다로워 시설 설비와 인력 보장을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교육기관만을 너무 중시하여 실제 국가고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2-2. 유럽

2-2-1. 유럽 수의사제도의 특징

수의학 교육은 전통적으로 졸업 시에 모든 수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의사를

배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 수의과대학 졸업 시에 최소 실무능력 (Day one competences)이 필수적이며, 이는 대학졸업자격 또는 수의사시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유럽연합의 22 곳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위원회, 유럽 수의사회²⁾가 참여하여 3년간 진행한 Vet2020 프로그램은 교과과정의 개발을 포함한 교육수단의 조정과 미래의 수의사 요구사항을 연구하는 것이다. 1998년 볼로냐 선언으로 유럽연합은 대학 학점, 학위, 학위체계의 인식과 전문가 이동성 증진과 교육인증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수의학교육인증은 유럽 수의사회와 수의학교육위원회(EAEVE)³⁾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1998년 나폴리에서 열린 수의학교육위원회 총회에서 유럽의 수의과대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교육인증 표준절차(SOP)에 따른 인증을 받은 대학, 방문을 하였으나 인증 기준의 하나 이상이 결격인 대학(category 1 결격), 방문하지 않은 대학으로 구분한다.

표1. 유럽 수의학교육위원회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2007년 7월 현재)⁴⁾

Ankara	(2007 인증)
Bari	(2004 인증)
Berlin	
Bern	
Bologna	(2005 인증)
Brno	(2005 인증)
Bucharest	
Budapest	(2007 인증)
Cambridge	(2005 인증)
Copenhagen	
Dublin	(2004 인증)
Edinburgh	
Ghent	(2004 인증)
Giessen	(2004 인증)
Glasgow	
Helsinki	
Leipzig	
Liverpool	(2005 인증)
Ljubljana	
London	

1)Fernandes TH. European veterinary education: a bridge to quality. Vet. J. 169:210-215, 2005.

2)Federation of Veterinarians of Europe, 35 countries and four sections.

3)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1988년 설립.

4)<http://eaeve.webhase.ch> 2007.10.10. EAEVE/FVE Education

Lublin (2006 인증)
 Lugo
 Lyon (2007 인증)
 Madrid (2006 인증)
 Munich
 Murcia
 Nantes (2007 인증)
 Olsztyn (2005 인증)
 Oslo (2004 인증)
 Thessaloniki
 Toulouse
 Turin
 Uppsala
 Utrecht
 Vienna (2007 인증)
 Warsaw
 Wroclaw
 Zagreb

표2. 유럽 수의학교육위원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의과대학 (2007년 7월 현재)

Barcelona (2005 재평가)
 Bursa (2004 평가)
 Cluj-Napoca(2003 재평가)
 Hannover (2003 재평가)
 Istanbul (2003 평가)
 Konya (2002 평가)
 Kosice (2005 평가)
 Lisbon (2004 재평가)
 Tartu (2004 평가)
 Valencia (2004 평가)
 Zaragoza (2006 평가)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수의학교육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⁵⁾ 수의학교육자문위원회 (ACVT)⁶⁾,를 구성하였다. ACVT는 영구적인 유럽 수의학교육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93년 ACVT는 수의학교육의 최소 기준을 개정하였으며⁷⁾, 수의학교육

5)EC Directive Article 3 1978/1027/EEC, "Veterinary Training Directive"

6)EC Directive 1978/1028/EEC, Advisory Committee on Veterinary Training

위원회는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1994년 구성하였다. 1996년 ACVT와 수의학교육위원회의 공동임시 실무위원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1단계 수의학교육 평가를 재고찰하여, 1999년 수의학교육의 표준평가법을 만들었다. 2000년 ACVT의 수의학교육평가 기능은 삭제되고, 수의학교육위원회와 유럽수의사회의 공동교육위원회 (JEC)⁸⁾가 ACVT의 역할을 인계받았다. 2005년 유럽연합은 자격증의 인증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한 새로운 지시를 하였다. 이중 수의학교육은 부록 4와 부록 5를 충족하는 최소 5년간 이론과 실제 교육이 요구된다. 2004년 수의학교육위원회와 유럽수의사회의 공동교육위원회는 수의학교육평가와 표준평가법을 개정하였다. 평가 주기는 7~10년이며, 매년 유럽의 수의과대학 8~11 곳을 방문평가한다. 5명의 평가 위원은 1978/1027/EEC 부록 1에 의하여 각각 기초수의학, 축산학, 식품위생, 임상수의학 교수, 동물병원 개업수의사로 이루어지며, 1명의 서기를 둔다. 영국은 1966년 수의사법에 의하여 RCVS 회원으로 등록된 후 동물진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지시 2005/36/EC에 있는 국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그 외에 RCVS가 인정한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는 영국에서 동물진료를 할 수 있다.

1992년 ACVT는 유럽의 전문수의사 (veterinary specialisation) 기구⁹⁾ 구성과 기능을 제안하였다. 이후 ACVT의 기준에 따른 유럽 전문수의사위원회 (EBVS)가 설립되었다. 유럽수의사회는 35개 국가의 수의사회와 4개 전문단체로 이루어진다. 즉, 임상수의사 (UEVP), 수의직공무원 (EASVO), 위생수의사(UEVH), 및 교육, 연구 산업계 수의사(EVERI) 단체다.¹⁰⁾

표 4. 영국의 수의학 교과과정 인증기준 (RCVS, 2006.1)

교과목 (Subjects)		관련 과목
기초과목 (Basic subjects)		Physics, chemistry, animal biology, plant biology, statistics (biomathematics) (It has been accepted that some of these subjects will be studied at 'A' level or its equivalent.)
전문과목 (Specific subjects)	Basic sciences	Anatomy (including histology and embryology), physiology, biochemistry, genetics, pharmacology, pharmacy, toxicology, microbiology, immunology, epidemiology, professional ethics
	Clinical sciences	Obstetrics, pathology (including pathological anatomy), parasitology, clinical medicine and surgery (including anaesthetics), clinical lectures on the various domestic animals, poultry and other animal species, preventive medicine, radiology, reproduction and reproductive disorders, veterinary stat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eterinary legislation and forensic medicine, therapeutics, clinical methodology (propadeutics)
	Animal production	Animal production, animal nutrition, agronomy, rural economics, animal husbandry, veterinary hygiene, animal

7)doe III/F/5171/7/92, 1993.2.10.

8)Joint Education Committee

9)<http://www.ebvs.eu> European Board of Veterinary Specialist 2007.11.20.

10)Union of European Veterinary Hygienists, European Association of State Veterinary Officers

		ethology and protection
	Food hygiene	Inspection and control of animal foodstuffs or foodstuffs of animal origin, food hygiene and technology, practical work (including practical work in places where slaughtering and processing of foodstuffs takes place).

2-2-3. 유럽에서의 수의사면허 취득

수의과대학 졸업으로 수의사면허가 부여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수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수의사시험 또는 임시수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으로 수의학교육인증기관은 유럽 수의학교육위원회, 미국의 미국수의사회, 영국의 RCVS가 있다. 영국에서 2006년에 신설된 노팅엄수의과대학이 아직 RCVS의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른 수의과대학은 RCVS의 인증을 받았다. 이중 미국수의사회나 유럽수의학교육위원회인증 받은 대학도 있다.

영국 RCVS는 영국에서 수의사시험을 치루지 않고 동물진료를 할 수 있는 수의학 교육기관을 고시하였으며,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적의 사람은 유럽연합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더라도 별도의 수의사시험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 영국에서(는) 수의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시수의사면허를 발급하여 제한된 범위의 수의사 활동을 허락할 수 있다. 외국의 수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치루는 수의사시험은 4 분야 주관식 시험으로 치루며, 시험문제의 유형은 공개되어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수의사에게 프랑스와 그 영토에서 동물진료와 수의제약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수의사시험을 통하여 특별학위를 인정할 뿐이다.¹¹⁾

2-2-4. 유럽 수의사 면허 제도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유럽수의학교육위원회가 유럽연합회원국가의 수의학 교육기관을 인증하고,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또는 수의사시험을 통해 수의사면허를 받으면 유럽연합회원 국가에서 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유럽연합회원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이 수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동물 진료업에 종사할 수 없는 배타적인 면이 있다. 즉, 수의사면허 소지가 자동적으로 동물 진료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11) a special doctorate for foreigners

2-3. 일본

2-3-1. 일본 수의사 제도의 특징

일본은 명치유신(1868)이후 ‘세계의 지식을 구하여 나라의 기본을 진흥시킨다’는 정책에서 1873년 수의학교가 전문학교로 설립되었으며, 1885년에 수의면허 규칙이 공포되었다. 수의학부의 교육은 1984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었으며, 국립대학 10개, 공립대학 1개, 사립대학 5개로 16개의 대학이 있다. 정원은 약 1,000명 정도이다.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에서 수리학을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외국에서 수의학교를 졸업하거나 면허를 가진 자는 농림수산성 산하의 ‘수의업무 심의회’의 인정에 의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외국에서 졸업하거나 면허를 가져도 심의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수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심의회가 인정하여야 국가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

- 진료를 업무로 하는 수의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학의 수의학 관련 학부 또는 수의학과 부속시설인 사육동물의 진료시설(이하 「진료시설」이라 함) 또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진료 시설에서 임상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수의사법 제16조).
- 지정 진료시설 인정과 취소는 수의업무심의회가 의결하고 장관이 지정/취소한다.
- 임상연수의 실시기간은 6 개월 이상으로 한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제 10조)

2000년까지 교과목 중심의 수의사시험을 시행하였으나, 과목간 내용의 중복 등 불합리한 점과 수의료 현장의 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수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는 수의사시험을 4분야별로 치르고 있다. 전국 대학 수의학 관계자 대표자협의회는 2004년 4월 수의학교육 표준교과과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¹²⁾ 이는 계통별 및 질병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실무이상훈련을 강조한 것이다. 이 표준교과과정은 강의 119 학점, 실습 60 학점; 총 179 학점으로 기초수의학분야는 관습적인 교과목 위주이며, 임상수의학분야는 계통별 질병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계통별 질병중심의 교과과정은 강의 39 학점, 실습 33 학점의 총 72 학점으로 강의; 32.8%, 실습; 55%, 총 학점의 40.2%가 계통별 질병중심 교과과정이다. 임상실습 33 학점 중 임상로테이션은 16 학점이다. 임상로테이션은 16 진료 중 8 진료는 필수이며 나머지 8 진료 중 4 진료를 선택한다.

12) <http://www.v.m.a.u-tokyo.ac.jp/yakuri/kaizen>

2-3-2. 일본의 수의사 국가시험 및 면허취득 과정

일본에서의 수의사 국가시험은 2 일간 실시되며, 1일에 필기시험 A와 필기시험 B, 2일에 실기시험 C와 실기시험 D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필기시험; 180 문항(필기시험 A:기본적 사항 100 문항, 필기시험 B: 위생학 및 임상적 사항 80 문항) 과 실기시험 120 문항(실기시험 C ; 위생학에 관한 사항 및 수의학의 임상적 사항 60 문항, 실기시험 D ; 위생학에 관한 사항 및 수의학의 임상적 사항 6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격기준은 합격자 발표 후에 게시한다. 60% 이상 맞으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2-3-3. 일본 수의사면허 제도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수의학교육 표준교과과정에 수의임상교육의 국제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임상로테이션 개념을 도입하였다. 수의사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교과목 중심에서 4시험과목으로 바꾼 것과 이론시험과 함께 임상실기를 시험내용에 포함하였다. 수의사시험의 문제뿐 아니라 정답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한 문항당 정답이 2개 이상인 이른바 잘 못된 출제된 문항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사시험 운영시 시험문항과 정답을 비공개로 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단점으로는 총 교과과정의 60%가 수의과대학 교수에게 익숙한 관습적인 교과목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교과목간의 학습내용의 중복과 기초수학과 임상수학 교육의 연계부족이다. 국제적인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AVMA, EAEVE, RCVS 인증을 받은 일본 수의과대학은 한 곳도 없다.

2-4. 우리나라의 수의사 면허 및 시험제도

우리나라 수의사 면허번호는 2005년 11월 현재 12,524 호가 발급되었고, 대한수의사회에 의하면 현재 활동 중인 수의사는 총 9,039명이고, 개업수의사 수는 3,285명이고, 비 개업 수의사는 5,754명이다.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2,500여명에는 인턴 수의사, 임상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의사, 해외 이민자,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수의사의 직종별 통계가 중요한 지표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하는 수의사중 임상수의사가 몇 % 인가는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¹³⁾

개업수의사중 진료대상 동물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수의사가 66.7%이고, 산업동물 수의사들은 11.4%에 지나지 않으며,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수의사들은 21.8%로 나타났다. 비개업 수의사가 근무하는 직장은 46.0%가 정부행정기관이고, 정부연구기관도 12.1%에 이르고 있어 전체 58.1%가 공적업무에 종사하고

13) 이홍식, 이승욱, 김은주, 박은경. 대한수의사회 연구보고서. 2007.8.31.

있었다. 민간계약회사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9.1%로 그 다음을 이었고, 식품가공회사가 7.6%였으며, 기타 근무하는 사업체의 종류가 다양하여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20.5%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수의사의 근무 환경은 다양하고, 여러 품종의 동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고, 직업별 분포에 따른 중요도를 파악하여 수의사시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의 수업연한이 4 년에서 6 년으로 개편된 1974 년부터 수의사시험은 교과목 중심의 10 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수의사시험이 수의과대학 졸업자의 수의사 실무능력을 평가하지 못 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2006 년 1월 수의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11 년부터 4 시험과목으로 개편된 수의사시험을 치르게 된다. 현재 수의사국가시험 위원회가 구성되어 4 시험과목별 학습목표 등 구체적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수의과대학은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

1999년 일본 농림수산성이 수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을 작성하면서 4시험과목별 관련 구 교과목을 표기한 바 있었다.¹⁴⁾ 일본 수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에 시험과목별 시험문항 수는 따로 없었다. 2002년 수의학교육협의회가 작성한 농림부 용역보고서나 그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내부 문건에서 4 시험과목별 관련 교과목과 문항 수를 언급된 바가 있으나, 수의사법시행령의 개정과정에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 2011 년부터 개편되는 수의사시험 4 시험과목이 단순히 몇 교과목 시험문항의 합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의과대학과 교수들의 오해다. 2008년에 교과목별 학습목표가 작성되었으며, 시험과목별 학습목표에는 교과목별 구분이 없다. 즉, 4 시험과목별 관련 교과목당 문항 수는 근거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4 시험과목당 관련 교과목이 아니라, 시험과목별 학습목표가 작성된 후 시험내용이 정해지게 된다. 특히, 2011년 수의사국가시험과목의 학습목표에 따라서 2008학년도 2학년 교과과정의 수업내용을 조절하고 평가할 것이 필요하다. 수의사국가시험 학습목표는 2008년 2월까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개편된 일본 수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수나 내용이 우리나라 수의사국가시험과 비슷하다. 일본 수의사국가시험 시험과목 ‘수의학의 기본사항’ 이란 우리나라 수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 ‘기초수의학’ 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기초수의학의 시험내용은 임상실기를 제외한 임상기초를 포함하여 관습적인 해부, 생리, 약리, 병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의사국가시험의 ‘예방수의학’은 일본 수의사국가시험의 ‘위생학’과 같은 개념이다.

2-4-1. 우리나라 수의사면허 제도의 장단점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수의사국가시험이 필기시험만 있었으나, 임상실기시험

14) 일본 농림수산성. 수의사시험출제기준. 1999.11.6.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수의사국가시험을 이론 필기시험만으로 치루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일본 수의사국가시험 300 문항 중 120 문항은 임상실기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이다. 임상케이스를 자료와 함께 제시한 후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임상실기를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임상수의학 교육체계도 임상실기를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수의사국가시험이 교과목 중심이 아니라 수의사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교과과정의 개편 또는 운영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의과대학은 이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교과과정과 수의사시험과목은 교과목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수의과대학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대학에 따라 최소 149 학점에서 160 학점이며, 교육시설, 교수 및 학생의 수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대학에 따라 교육여건과 수의학교육목표에 차이가 있고 수의사로서 기본 학식, 임상기술, 태도에 대한 기준은 없거나 다른 실정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첨부 14. 농업 재해 보상법

농업재해보상법

(昭和 22년 12월 15일 법률 제 185호)

제 1 장 총칙(제1조- 제14조)

제2장 농업공제단체의 조직

제 1 절 조합원(제15조- 제19조)

제2절 설립(제21조-제30조)

제3절 관리(제31조- 제45조의 2)

제4절 해산 및 청산(제46조-제58조)

제 5 절 등기(제59-제82조)

제3장 조합 등의 공제사업

제 1 절 통칙(제83조- 제103조)

제2절 농작물공제(제104조- 제110조의 2)

제3절 가축공제(제111조- 제120조)

제4절 과수공제(제120조의 2- 제120의 11)

제 5 절 발농사물공제(제120조의 12- 제120조의 18)

제6절 원예시설공제(제120조의 19- 제120조의 25)

제7절 임의공제(제120조의 26- 제120조의 28)

제4장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보험사업(제120조- 제132조의 2)

제 5 장 정부의 재보험사업 및 보험사업

제 1 절 재보험사업(제133조- 제141조의 2)

제2절 보험사업(제141조의 3- 제142조)

제 5 장의 2 감독(제142조의 2- 제142조의 7)

제 5 장의 3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의

농업재해보상관계업무(제142조의 8- 제142조의 14)

제6장보칙(제143조- 제145조의 3)

제7장벌칙(제146조- 제148조)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농업재해보상은 농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충해서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해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재해보상은 농업공제조합 또는 市町村(특별구가 있는 곳은, 특별구.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공제사업,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보험사업 및 정부가 실시하는 재보험사업 또는 보험사업으로 한다.

제3조 농업공제조합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농업공제단체라고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농업공제조합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명칭 중에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공제단체가 아닌 것은 그 명칭 중에 농업공제조합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은, 제53조의 2 제4항의 특정 조합 이외의 농업공제조합에 있어서는 1또는 2 이상의 市町村의 구역, 동향의 특정 조합에 있어서는 都道府県の 구역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구역에 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은 都道府県の 구역에 의한다.

제6조 농업공제단체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登記해야 할 사항은,登記한 다음이 아니면 이것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제8조 농업공제단체의 사업년도는 4월 1일로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농업재해보상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3조의 2 국고는, 가축공제에 대해, 조합원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료 가운데, 소 혹은 소의 태아 또는 말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돼지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5 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13조의 3 (생략)

제13조의 4 (생략)

제13조의 5 (생략)

제13조의 6 (생략)

제14조 국고는, 정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 등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사무비를 부담한다.

제2장 농업공제단체의 조직

제1절 조합원

제15조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 및 제3호로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성원 모두가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는(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다)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삭제

3. 소, 말 또는 돼지에 대해 양축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

4. ~ 8. 생략

○2 생략

○3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조합 등으로 한다.

제 16조

제16조 ~ 제 16의 ○3 생략

○4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성립되었을 때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조합 등은 그 때에 모두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이 된다.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성립된 후에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이 성립되었을 때, 및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市町村이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조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5 농업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 및 임원(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에 있어서는 임원 및 대표)의 선거권을 가진다.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조합원에 대해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등의 수에 근거해, 2개 이상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을 줄 수 있다.

제18조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할 수가 있다.

○2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권의 행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외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행할 수가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실시하는 사람은 이것을 출석자로 간주한다.

○4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농업공제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실시하는 것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는 대신 대리권을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제19조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은 아래의 사유로 탈퇴한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제85조의 6 제1항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공제사업의 전부의 폐지)

○2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전항의 사유 이외에 공제관계의 전부의 소멸(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다)에 의해 탈퇴한다. 단,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정관으로 특별히 정했을 경우는 이 규정에 제한되지 않는다.

○3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제관계가 모두 소멸되어도 탈퇴를 하지 않는 자, 기타 그 외에 해당 농업공제조합과의 사이에 공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2절 설립

제20조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람으로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15인 이상이,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둘 이상의 조합 등이 발기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1조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은 미리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일정한 기간 전까지 이것을 설립 준비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 해, 설립 준비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 전까지 설립 준비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 해, 설립 준비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2항의 일정한 기간은 2주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 설립준비회에 있어서, 출석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및 농업공제자격단체(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는 제외하고, 출석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포함시켜서, 농업공제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농업공제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市町村의 직원으로 한다) 중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을 작성할 사람(이하 「정관 등 작성위원」이라고 한다)을 선임하며, 구역 조합원 자격 그 외 정관 작성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 및 공제료 또는 보험료 그 외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 작성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정관 등 작성 위원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설립준비회의 議事는, 출석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사업설명서에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의 과반수의 同意로 결정한다.

제23조 정관 등 작성위원이 정관 및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을 작성했을 때에는 발기인이 일정한 기간 전까지 이것을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해서 창립총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립에 대해 농작물공제 가입 자격자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同意가 없으면 창립총회를 열 수가 없다.

○2 전항의 일정한 기간은 2주간 이상이어야 한다.

○3 정관 등 작성 위원이 작성한 정관 및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의 승인, 사업 계획의 설정, 그 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창립총회에서는 전항의 정관 및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을 수정할 수가 있다. 다만, 구역 및 조합원인 자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5 창립총회의 議事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 회의 날짜까지 발기인에 게 설립에 대한 同意를 표시한 사람의 반수 이상이 출석해,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

○6 전항의 사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실시할 수 있다.

○7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및 民法(明治 29년 법률 제89호)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18조 제2항 중 「전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23조 제6항」이라고, 동조 제3항 중 「전2항」이라고 있는 것은 「제23조 제6항 또는 전항」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정관,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 및 사업 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해,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2 발기인은 행정청의 요구가 있을 때 농업공제단체의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행정청은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설립 수속 또는 정관,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 혹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위반되지 않고, 그 사업이 건전하게 행해져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설립 인가를 해야 한다.

제26조 제24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행정청은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기인에 대해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행정청이 전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통지를 발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 만료의 날에 제24조 제1항의 인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발기인은 행정청에 대해 인가를 증명해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3 행정청이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 제출의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날부터 그 보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算入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5 발기인이 불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訴를 제기했을 경우에 재판소가 그 취소를 판결을 했을 때는 그 판결 확정일에 제24조 제1항의 인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24조 제1항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理事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8조 농업공제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제29조 농업공제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6. 공제사업 또는 보험사업의 종류
7. 임원의 정수 및 선거 또는 선임에 관한 규정
8. 준비금의 액수 및 그 적립 방법
9. 잉여금의 처분 및 부족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
10. 공고의 방법

○2 농업공제조합의 정관에는 전항의 사항의 밖에, 總代會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總代의 정수 및 선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

○3 제1항 제7호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 및 전항의 總代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는 선거기일, 선거에 관한 통지, 후보자의 추천 또는 입후보, 선거관리자, 선거입회인, 투표, 개표 및 당선에 관한 사항, 및 임원 또는 總代를 총회 外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그 취지, 總代의 선거에 대해 선거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선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행정청은 모범정관의 예를 정할 수가 있다.

제30조 농업공제조합은 공제규정에 의해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
3. 공제료 및 사무비에 관한 사항
4. 공제책임에 관한 사항

5. 손해평가회에 관한 사항

6. 前 각 호에 게시한 것의 외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보험규정에 의해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보험금액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및 사무비에 관한 사항

3. 보험책임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회에 관한 사항

5. 前 각 호에 게시한 것의 외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행정청은 모범공제규정 例 또는 모범보험규정 例를 정할 수 있다.

제3절 관리

제31조 농업공제단체에 임원으로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2 이사의 정수는, 다섯 명 이상으로, 감사의 정수는 두 명 이상으로 한다.

○3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조합원이 총회(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 서 선출한다. 단, 농업공제조합의 임원(설립 당시의 임원을 제외하다)은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총회 외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실시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선거해야 할 임원의 정수 이내일 때는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투표를 생략 할 수가 있다.

○5 투표는 한 사람(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조합원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선거권을 주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있어서는 선거권 한 개)에 대해 한 표로 한다.

○6 정관으로 정하는 투표 방법에 따르는 선거의 결과로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제4항 단서규정에 의해 투표를 생략 했을 경우는 해당 후보자)을 당선자로 한다.

○7 임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마다 선거 관리자, 투표소 마다 투표 관리자, 개표소 마다 개표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8 임원의 선거를 했을 때는 선거 관리자는 선거록, 투표 관리자는 투표록, 개표 관리자는 개표록을 만들어 각각 이것에 서명해야 한다.

○9 총회 外에서 임원의 선거를 실시할 때는 투표소는 조합원의 선거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임원은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조합원이 총회(창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가 있다.

○11 농업공제단체의 이사의 정수의 적어도 4분의3은 조합원(농업공제조합에 있어서 법인 등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조합 등의 조합원 등으로서 법인 등이 아닌 것, 조합원인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조합원인 市町村의 직원으로 한다)이가 아니면 안 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는 설립의 同意者(농업공제조합에 있어서는 법인 등의 同意者를 제외하고 同意者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있어서는 同意者인 조합 등의 조합원 등으로서 법인 등이 아닌 것, 同意者인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同意者인 市町村의 직원으로 한다)가 아니면 안 된다.

제32조 役員の 임기는 3년 이내에 정관으로 정한다.

○2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창립총회(농업공제조합의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는 설립위원)에서 정한다. 단, 그 기간은 일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32조의 2 임원은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해 농업공제단체를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원이 그 임무를 태만이 했을 경우 그 임원은 농업공제단체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임원이 그 직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임원은 제삼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40조 제1항에 게시한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혹은 공고를 했을 때도 역시 동일하다.

제33조 이사는 감사 또는 농업공제단체의 사용인, 그리고 감사는 이사 또는 농업공제단체의 사용인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농업공제단체가 이사와 계약을 할 때는 감사가 농업공제단체를 대표한다. 농업공제단체와 이사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다.

제35조 이사는 매사업년도 1회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이사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언제라도 임시총회 또는 總代會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인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 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을 때 이사는 그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總代가 總代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인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 總代會의 소집을 청구했을 때도 역시 동일하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실시하는 것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제출 대신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이유를 해당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은 해당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 전단의 전자적 방법(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다.)에 의해 행해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이유의 제공은 이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준비한 파일의 기록이 되었을 때에 해당 이사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총회 또는 總代會의 소집수속을 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총회 또는 總代會를 소집해야 한다.

제38조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에 대해서 하는 통지 또는 催告(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 그 사람의 주소(농업공제자격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주소, 市町村에 있어서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그 사람이 따로 催告를 받는 장소를 농업공제단체에 통지했을 때는 그 장소를 주소로 하는 것으로써 충족한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달되는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총회 또는 總代會의 소집의 통지는 그 회의 날짜로부터 10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한다.

제39조 이사는 정관,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 및 총회 또는 總代會의 회의록을 각 사무소에 대비하고 두고,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 및 채권자는 전항에 게시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제40조 이사는 통상 총회의 날짜부터 일주일 전까지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부족금처리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것들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 및 채권자는 전항에 게시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다.

○3 제1항에 게시한 서류를 통상 총회에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전항의 감사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이것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 지각에 의해서 인식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첨부에 의해서 해당 감사의 의견서의 첨부에 대신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해, 이사는, 해당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임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해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改選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이사의 전원 또는 감사의 전원에게 동시에 이것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또는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改選의 청구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改選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농업공제단체에 제출해 이것을 해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할 때 농업공제단체는 총회 날짜로부터 7일 전까지 임원에게 그 서면을 송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제42조 임원에게는 민법제44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53조로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 및 상법제2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민법제53조 및 제55조 중 「총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 또는 總代會」라고, 동법제56조 중 「재판소」라고 있는 것은 「행정청」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의 2 농업공제단체는 참사를 선임해, 그 주된 사무소 또는 從인

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행하게 할 수가 있다.

○2 참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

○3 참사에 대해서는 상법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39조로부터 제42조까지 및 상업등기법(昭和 38년 법률 제125호) 제 51조로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 3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에게 참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했을 때 이사는 해당 참사의 해임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이사는 전항의 가부를 결정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참사에게 제2항의 서면을 송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제43조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1. 정관의 변경

2.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의 변경

3. 사무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액수 및 징수 방법

4.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안 또는 부족금 처리안

○2 정관 또는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의 변경(경미한 사항, 그 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3 전항의 인가에 대해서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농업공제단체는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정관 또는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4조 총회의 議事는 이 법률 또는 정관에 특별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것을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의장은 총회에서 이것을 선임한다.

○3 의장은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가담하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제44조의 2 다음 항은 총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해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3 농업공제조합의 합병

제45조 총회에는 민법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64조 중 「제62조」라고 있는 것은 「농업재해보상법 제38조 제3항」이라고 바꿔 읽는다.

제45조의 2 농업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것에 의해 총회에 대신해야 할 總代會를 마련할 수 있다.

○2 總代의 정수는 30명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

○3 總代는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된다.

○4 總代會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總代에는 제31조 제3항으로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와 제41조 및 상법제2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總代會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總代의 선거 및 해산의 의결을 할 수가 없다.

제4절 해산 및 청산

제46조 농업공제단체는 다음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농업공제조합의 합병
3. 파산수속 개시의 결정
4. 제14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명령

○2 해산의 의결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3 전항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제1항 각 호에 게시한 사유에 의하는 것 외에 제5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해산한다.

제47조 농업공제단체가 해산했을 때는 농업공제조합의 합병 및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관계 또는 보험관계가 종료된다.

○2 전항의 경우에 농업공제단체는 아직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8조 농업공제조합이 합병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해야 한다.

○2 합병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3 전항의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농업공제조합이 합병의 의결을 했을 때는 그 의결의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공제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것을 말해야 할 취지를 공고하고,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하게 이것을 최고해야 한다.

○3 전항의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하이면 안 된다.

제50조 채권자가 전조 제2항의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말하지 않았을 때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채권자가 이의를 말했을 때는 농업공제조합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채권자가 변제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탁회사 혹은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 다만, 합병을 해도 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1조 합병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농업공제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법인 등인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해, 임원을 선임하고, 그 외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은 합병하려고 하는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법인 등인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인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위원 선임에는 제4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농업공제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농업공제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4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 합병 후 존속하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한 농업공제조합은 합병에 의해 소멸한 농업공제조합의 권리 의무(해당 농업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청의 허가, 인가 그 외의 처분에 따라 가질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53조의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한 개의 농업공제조합 외에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이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의 구역 모두를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이 성립했을 때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권리 의무(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허가, 인가 그 외의 처분에 근거해 가질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 대해 같다)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2 전항의 인가가 있을 때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권리 의무는 그 때에 있어 해당 인가의 신청과 관련되는 농업공제조합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그 때에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농업공제조합은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때까지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정부와의 사이의 재보험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재보험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 기간(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공제료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농업공제조합(이하 특정 조합이라고 한다.)을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로 간주해,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5 前 각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이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의 수속 및 해당 농업공제조합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을 경우의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정부와의 사이의 재보험관계와 관련되는 경과 조치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54조 농업공제단체가 해산했을 때는 합병 및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과 함께,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대해 타인을 선임했을 때는 이 제한이 없다.
제55조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 없이 농업공제단체의 재산의 상황을 조사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해, 이것을 총회에 제출해 그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6조 청산인은 농업공제단체의 채무를 변제한 다음이 아니면 농업공제단체의 재산을 분배할 수가 없다.

제57조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을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이것을 총회에 제출해 그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8조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는 민법제73조,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로부터 제83조까지 및 非訟事件(비송사건)수속법(메이지 31년 법률 제14호)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7조의 2, 제135조의 25 제2항 및 제3항,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민법제75조 중 「前條」라고 하는 것은 「농업재해보상법 제54조」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 5 절 등기

제59조 설립의 등기는 설립의 인가일(제26조 제2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 있어서 설립의 인가에 관한 증명일)부터 2주간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2 설립의 등기에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제29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10호에 제시된 사항
2. 사무소
3.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자격

○3 농업공제단체는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 이내에 從사무소의 소재지에 전항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0조 농업공제단체의 성립 후 従사무소를 마련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従사무소를 마련한 것을 등기하고, 그 従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이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従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마련한 것을 등기해야 한다.

○2 주된 사무소 또는 従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이 従사무소를 마련했을 때는 그 従사무소를 마련한 것을 등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1조 농업공제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2주간 이내에 구소재지에서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 제59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며, 従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구소재지에서 3주간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 4주간 이내에 동항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従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2조 제5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従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62조의 2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의 변경 혹은 취소할 때는 주된 사무소 및 従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

제63조 농업공제단체가 해산했을 때는 합병 및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従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이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제64조 농업공제조합이 합병을 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従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변경,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농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합병에 의해 설립한 농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제5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기를 해야 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 농업공제단체의 청산이 종료됐을 때는 청산 종료의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 2주간 이내에, 從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 3주간 이내에 청산종료등기를 해야 한다.

제67조 농업공제단체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혹은 지방 법무국 혹은 이러한 지국 또는 이러한 출장소가 관할 등기소가 이것을 관장한다.

○2 각 등기소에 농업공제조합등기부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등기부를 비치한다.

제68조 농업공제단체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정관 및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해야 한다.

○2 합병에 의한 농업공제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전항에 게시한 서면 외,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것 및 이의를 말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신탁을 한 것 또는 합병을 해도 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농업공제조합(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9조 삭제

제70조 농업공제단체의 사무소의 신설 또는 사무소의 이전, 그 외 제59조 제2항의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해야 한다.

○2 농업공제조합의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공제단체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행정청이 농업공제단체의 해산을 명했을 경우에 해산등기는 해당 행정청의 촉탁에 의해 이것을 한다.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농업공제단체의 청산종료의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75조 등기해야 할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서가 도달했을 때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起算한다. 단, 제26조 제2항 및 제 5 항의 경우에는 인가에 관한 증명서가 도달했을 때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起算한다.

제76조 등기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 없이 이것을 공고 해야 한다.

제77조 농업공제단체의 등기에는 상업등기법제2조로부터 제 5 조까지, 제7조로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로부터 제23조의 2까지, 제24조 제1호로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제25조,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56조로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66조, 제70조 및 제107조로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제25조 중 「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한 청구」라고, 동조제3항 중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라고, 동법제56조 제2항 중 「상법제64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재해보상법제59조 제2항」이라고, 동법 제61조 제3항 중 「상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재해보상법 제5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3장 조합 등의 공제사업

제 1 절 통칙

제83조 농업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작물공제
2. 삭제
3. 가축공제
4. 과수공제
5. 발농사물공제
6. 원예시설공제
7. 임의공제

○2 생략

제84조 농업공제조합은 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제1호,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제3호, 과수공제 중 수확 공제에 있어서는 제4호, 과수공제 중 수체 공제에 있어서는 제5호, 발농사물공제에 있어서는 제6호, 원예시설공제에 있어서는 제7호에 게시한 공제목적에 대해, 해당 각 호에 게시한 공제사고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삭제

3.

가. 공제목적

출생 후 5개월째의 말일(농림수산성 장관이 특정의 지역에 대해 그 날의 전날을 정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한 날)을 경과한 소, 출생의 해의 말일(농림수산성 장관이 특정의 지역에 대해 그 날의 전날을 정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한 날)을 경과한 말, 출생 후 5개월째의 말일을 경과한 종돈 및 출생 후 제20일(그 날에 이유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한 날. 이하 같다)로부터 출생 후 8개월째의 말일까지의 육돈(종돈 이외의 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제사고

소, 말 및 종돈에 있어서는 사망(도살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폐용, 질병 및 상해, 소의 태아 및 육돈에 있어서는 사망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2 송아지 등(전항 제3호에 게시한 소 이외의 소 및 소의 태아를 말하며,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른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공제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 제3호의 폐용 및 동항 제5호(참고: 과수에 관한 것임)의 매몰 및 손상의 범위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4 생략

○5 농업공제조합은, 임의공제에 있어서는, 제1항 제일호의 농작물, 동항

제4호의 과수, 동항 제6호의 농작물 및 시설내 농작물 이외의 농작물, 농산물, 특정 원예 시설 및 부대 시설 이외의 건물 및 농기구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생긴 손해 또는 가축의 수송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 대해 공제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85조 농업공제조합은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게시한 공제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 ○12 생략

제85조의 2 농업공제조합(1의 市町村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에 한정한다)은 그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규모가 농림수산성 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 외 政令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을 관할하는 市町村과 협의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市町村에, 해당 市町村이 本章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부쳐 신청 할 수 있다.

○2 농업공제조합은, 전항의 신청을 했을 때는 지체 없게 그 취지를 都道府県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총회의 의결에는 제4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 3 市町村은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해당 市町村의 구역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으로서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로 공제사업을 행 하고 있는 것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그 모든 농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에 상당하는 구역에 있어서 本章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2 市町村은 전항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 및 공제사업의 실시 계획(제85조의 6 제1항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 및 새롭게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이 되는 지역과 관련되는 공제사업의 실시 계획)을 정해 이것을 신청서에 첨부해 都道府県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 都道府県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市町村에 대해 서면으로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신청의 원인이 된 전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농업공제조함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한편 인가 처분과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을 분명히 해 공시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 제2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5조 중 「정관,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이라고 있는 것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5 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26조 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都道府県 지사는, 동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기간 만료 후, 동조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의 판결의 확정 후, 지체 없고,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그 취지를,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을 분명히 해 공시해야 한다.

제85조의 3의 2 市町村의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에는 제29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9호 및 제310조 제1항 각 호에 게시한 사항,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 및 공제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제85조의 4 제85조의 3 제3항의 공시(동조 제 5 항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本條에 있어 같다) 일 이후에 있어서는 해당 공시와 관련되는 농업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제83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해당 공시 이전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목적에 대해 그 공제사고의 발생 때 존재하던 해당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

4 ~ 5. 생략

6. 전 각 호에 게시한 것 외에 해당 공시 시기에 실제로 행하고 있던 공제사업의 잔무

○2 제85조의 3 제3항의 공시가 있을 때는 그 공시 때에 실제로 해당 공시와 관련되는 농업공제조합과 그 조합원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가축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관계는 소멸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관계가 소멸했을 때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은 이러한 공제관계에 대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환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정부는 이러한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 또는 그 보험관계와 관련되는 재보험관계에 대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또는 재보험료를 각각 해당 농업공제조합 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환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환불해야 할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재보험료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불입해야 할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재보험료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상쇄할 수 있다.

○5 생략

제85조의 5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85조의 2 제1항의 신청, 그 신청과 관련되는 市町村의 공제사업의 개시 및 그 신청과 관련되는 농업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의 종료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85조의 6 제85조의 3 제1항의 인가를 받은 市町村(이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이라고 한다.)은 해당 市町村의 구역내의 지역에서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지역을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있어도 본장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2 市町村이 전항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지역과 관련되는 공제사업의 실시 계획을 정해 이것을 신청서에 첨부해 都道府県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 都道府県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 이것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市町村에 대해 서면으로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인가 처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새롭게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이 되는 지역을 분명히 해 공시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85조의 3 제4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 7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대해서는 제83조, 제84조 제1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및 제85조제1항으로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83조제1항 중 「다음대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1호 및 제 3 호로부터 제6호까지 게시한 것으로 한다」라고, 제84조 제2항 및 제4항 중 「공제규정」이라고 있는 것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라고, 제85조 제2항 중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있는 것은 「해당 市町村과의 사이에 농작물공제의 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이라고, 「전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기 전조 제1항」이라고, 「전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전항」이라고, 동조 제3항 중 「전항 전단 혹은 제8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전항 전단 혹은 제8항, 제85조의 8 제2항 제2호 혹은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8항 혹은 제85조의 8 제2항 제1호」라고, 「전항 후단 혹은 제8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전항 후단 혹은 제8항, 제85조의 8 제2항 제2호 혹은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8항 혹은 제85조의 8 제2항 제1호」라고, 동조 제4항 중 「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이라고, 「전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기 전조 제1항」이라고, 동조 제 5 항 및 제6항 중 「전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전항」이라고, 동조 제6항 중 「총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라고, 동조 제8항 중 「제3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제3항」이라고, 「제1항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제1항의 규정」이라고, 「동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동항」이라고, 동조 제9항 중 「제3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제3항」이라고, 동조 제10항 중 「제83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제83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라고, 동조 제 11항중 「전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기 전조 제1항」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85조의 8 생략

제85조의 9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은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당 공제사업의 전부를 폐지할 수가 있다.

○2 市町村은, 전항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조례를 정해 이것을 신청서에 더해 都道府県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市町村이 공제사업의 전부를 폐지했을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의 10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공제사업의 실시 구역의 확장과 관련되는 변경을 제외하다)을 하려고 할 때는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25조 중 「정관,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85조의 11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외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대해 廢置分습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廢置分습과 관련되는 市町村이 행하고 있던 해당 공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및 해당 廢置分습 후의 市町村의 해당 廢置分습과 관련되는 지역에 대한 해당 공제사업의 개시 당시에 있어서의 그 사업의 종류 및 공제목적의 종류 그 외 해당 공제사업의 개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85조의 12 조합 등은 그 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무 가운데 공제료의 징수(제8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체납처분을 제외하다)와 관련되는 것,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련되는 것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가 있다.

○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昭和 22년 법률 제132호) 제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동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행할 수가 있다.

제86조 조합원 등은 공제규정 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공제규정 등」이라고 총칭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해 정액의 공제료를 조합 등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생략

제87조 조합 등은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가 부담하는 사무비 이외의 사무비를 조합원 등에 부과 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政令이 정하는 것에 의한다.

○3 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 되는 부과금의 지불에 총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전2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87조의 2 농업공제조합은 농작물공제와 관련되는 제86조의 공제료 또는 전조 제1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이하 本條에 있어 공제료 등이라고 한다)을 체납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장에 의해, 기한을 지정해, 이것을 독촉해야 한다.

○2 농업공제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했을 경우에 대해, 그 독촉을 받은 사람이 독촉장으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체납과 관련되는 공제료 등 및 이것과 관련되는 제7항의 연체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市町村에 대해 그 징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3 市町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것을 처분한다. 이 경우에는 농업공제조합은 그 징수 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市町村에 교부해야 한다.

○4 市町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에 착수하지 않고, 또는 90일 이내에 이것을 종료하지 않을 때는 농업공제조합은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것을 처분할 수가 있다.

○5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先取特權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뒤잇는 것으로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7 농업공제조합은 공제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료 등을 체납 하는 사람으로부터 체납과 관련되는 공제료 등의 액에 대해 연10·75퍼센트의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비율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완납 또는 재산 압류의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8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이 징수하는 공제료 등에 대해서는 본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昭和 22년 법률 제6십7호) 제23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공제료 혹은 제87조 제1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또는 이것들과 관련되는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공제료의 반환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 및 공제금의 지불을 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이것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제89조 공제금의 지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가 없다.

제90조 조합원 등은 조합 등에 지불해야 할 공제료 및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에 대해 상쇄(相殺)로써 해당 조합 등에 對抗할 수가 없다.

제91조 조합 등이 조합원 등에게 지불하는 공제금의 액수는 해당 조합 등이 정부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로부터 지불을 받은 보험금의 액수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

제92조 공제금의 지불에 부족을 일으킬 때는 조합 등은 政令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금액을 삭감할 수가 있다.

제93조 생략

○2 가축공제, 과수공제, 발농사물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목적의 양수인(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재배 혹은 동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재배 혹은 양잠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공제자격단체 또는 제120조의 3 제1항 혹은 제120조의 13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이하 이 항에 대해 「과수공제 자격 단체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이 해당 과수공제 자격 단체 등이 실시하는 재배 또는 양잠과 관련되는 공제목적에 양도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과수공제 자격 단체 등)은 조합 등의 승낙을 받아 공제관계에 관계되어 양도인(과수공제 자격 단체 등의 구성원이 해당 과수공제 자격 단체 등이 실시하는 재배 또는 양잠과 관련되는 공제목적에 양도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과수공제 자격 단체 등)이 가질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가 있다.

○3 조합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할 수가 없다.

○4 농작물공제의 공제목적의 양수인으로 양도인과 동일한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제목적에 대해 상속 그 외의 포괄 승계경우에는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조합원 등은 공제목적에 대해 통상 해야 할 관리 그 외 손해 방지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

○2 조합 등은 전항의 관리 그 외 손해 방지에 대해 조합원 등을 지도할 수가 있다.

제95조 조합 등은 조합원 등에 손해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해당 조합 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96조 조합 등은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할 수가 있다.

제96의 2 조합 등은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가축공제에 가입한 가축의 진료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있다.

○2 조합 등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가축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 말 또는 돼지에 대해 전항의 시설을 이용시킬 수가 있다.

제97조 생략

제98조 조합원 등은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게 그 취지를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

○2 조합원 등은 공제금의 지불을 받아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지체 없게 그 취지를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98조의 2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과 관련되는 손해액의 인정은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한다.

제99조 다음의 경우에 조합 등은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불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1. 조합원 등이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할 의무를 태만할 때.
2. 조합원 등이 제95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불복종할 때.
3. 조합원 등이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한 통지를 했을 때.
4. 조합원 등이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細目書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공제 細目書에 부실한 기재를 했을 때.

5. 조합원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했을 때.
6. 조합원 등이 제105조 제5항, 제113의 2혹은 제120조의 5 (제120조의 18및 제120조의 25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실한 통지를 했을 때.
7.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조합원 등이 해당 신청을 할 때 실제로 사육 하고 있던 가축으로서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받고 있던 것, 또는 질병 혹은 상해의 원인이 생기고 있던 것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것을 통지하지 않고, 또는 부실한 통지를 했을 때(조합 등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 및 과실에 의해 이것을 인지하지 못 했을 때를 제외하다).

8. 생략

○2 조합 등은 조합원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육돈과 관련되는 제111조의 5의 포괄공제관계에 대해 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했을 경우에 대해, 해당 조합 등과 해당 조합원등과의 사이에 육돈과 관련되는 다른 동조의 포괄공제관계가 가질 때는 그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불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3 생략

○4 생략

제99조의 2 농업공제조합은 그 회계를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계산 구분마다 경리해야 한다.

○2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은 해당 공제사업의 경리에 대해 政令이 정하는 것에 의해 특별회계를 마련해 이것을 실시하고, 그 경비는 해당 공제사업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정하는 것에 의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이월금에

의한 수입으로 해당 공제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년도 이후에, 예산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이월금을 이월시킨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출해야 할 것을 해당 공제사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출한 이월금,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이월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이월금을 이월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월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제100조 조합 등은 매사업년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매회계년도. 다음 조에 있어 같다)의 마지막에 존재하는 공제책임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1조 조합 등은 부족금의 보전에 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매사업년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2조 조합원 등이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고,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일정 年間 조합 등으로부터 공제금의 지불을 받지 않을 때 또는 지불을 받은 공제금이 일정한 액에 못 미칠 때는 해당 조합 등은 해당 조합원 등에 대해서 공제료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제103조 조합 등의 공제사업에는 상법 제640조로부터 제643조까지, 제646조 및 제6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농작물공제

제104조 ~ 제104조의 6 생략

제105조 조합원등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규정 등으로 특별한 규정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농작물공제와 관련되는

공제책임기간이 개시할 때까지 조합 등에 공제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공제細目書を 제출하고, 공제료를 불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공제細目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조합원 등은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지체 없게 그 취지를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106조 ~제110조의 2 생략

제3절 가축공제

제111조 젓소의 암컷 등(젓소의 암컷 및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젓소의 송아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용소 등(젓소의 암컷 등 및 종모우 이외의 소 및 젓소 이외의 소의 태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모우 이외의 말, 종돈 또는 육돈(이하 「포괄공제대상가축」이라고 총칭한다)과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는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제111조의 3 제1항의 가축공제자격자가 육돈 이외의 포괄공제대상가축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마다 그 사람이 사육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으로서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한 소(송아지 등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송아지 등을 포함한다), 동호에 게시한 말 또는 동호에 게시한 종돈인 것을 一體로, 육돈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사육 하는 육돈으로 동호에 게시하는 것을 一體로 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육 구분 마다 조합 등의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신청하고, 조합 등이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종모우 또는 종모마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는 가축 마다,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제111조의 3 제1항의 가축공제 자격자가 자기가 사육 하는 종모우 또는 종모마로서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한 소 또는 말인 것을 조합 등의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신청해, 조합 등이

이것을 승낙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3 포괄공제대상가축(송아지등 및 육돈을 제외한다)의 경우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규정의 예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111조의 2 조합 등과의 사이에 농작물공제의 공제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한 소(12세를 넘는 종모우는 제외한다) 또는 동호에 게시한 말(17세 이상의 종모마는 제외한다)을 사육 하는 것(이하 本項에서는 의무가입자라고 한다)은, 농업공제조합에 있어서는 그 총회에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그 의회에서 그 취지의 의결을 했을 때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가축을 해당 조합 등의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결 후에 해당 의결과 관련되는 조합 등의 의무가입자가 되는 자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한다.

○2 전항의 총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4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의 3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과의 사이에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사람은, 제15조제1항 제3호에 게시한 사람으로 해당 市町村의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이하 가축공제 자격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2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과의 사이에 가축공제의 공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축공제 자격자가 아닌 것으로 될 때는 해당 공제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111조의 4 조합 등은 농업공제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으로부터,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가축공제 자격자로부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았을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낙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111조의 5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이하 포괄공제관계라고 한다)가 성립될 때에는 그 성립에 의해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대해 이미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관계가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될 때에 그 성립하고 있던 공제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111조의 6 조합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관계를 간직하는 사람이 해당 포괄공제관계의 성립 후에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인 소 또는 말 혹은 종돈으로서 제84 제1항 제3호에 게시한 것을 사육하게 되었을 때에는(그 때에 해당 조합 등의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되지 않을 때는 그 공제책임의 시작할 때) 해당 소 혹은 소의 태아로서 동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 말 또는 종돈은 해당 조합 등이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그 사람이 사육 하고 있는 가축이 해당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인 소, 말 혹은 종돈으로서 동호에 게시한 것이 되었을 때 혹은 그 사람이 사육 하고 있는 소 혹은 소의 태아가 동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르렀을 때도 역시 동일하다.

○2 제93조 제2항(동조 제 5 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포괄공제관계에 관계되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해당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 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인 소 또는 말 혹은 종돈으로서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한 것을 사육 하고 있었을 때는 해당 소 혹은 소의 태아로 동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 말 또는 종돈에 대해서도 전항의 전단과 마찬가지로 한다.

○3 조합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이 해당 조합 등의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그 사람이 동시에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에 대해 양축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되었을 때는 제외)에는 해당 가축 또는 소의 태아는 해당 가축공제의 대상 가축(소의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해당 가축이 해당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인 소, 말 또는 돼지로서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었을 때도 역시 동일하다.

제111조의 7 농업공제조합과의 사이에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를 갖는 간직하는 사람이 주소를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외에 이전한 것에 의해 조합원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농업공제조합을 탈퇴했을 경우 그 사람이 해당 공제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탈퇴 전에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승낙을 받았을 때는 해당 공제관계는 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제사업을 행하는 市町村과의 사이에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이 주소를 해당 市町村의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 외에 이전했기 때문에 제11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공제관계가 소멸해야 할 경우에 그 사람이 해당 공제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해당 市町村의 승낙을 받았을 때는 해당 공제관계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전2항의 승낙에는 제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의 8 조합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관계가 갖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련되는 가축의 사육두수와 가축의 사육에 관한 조건이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마다 및 공제료기간 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조합 등에 대해 사망 혹은 폐용의 일부 또는 질병 혹은 상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사고로 하지 않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 내에는,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 제3호의 공제사고 중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것을 공제사고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11조의 9 조합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은 해당 조합 등이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송아지 등을 그 가축공제에 있어서 그 공제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마다 및 공제료기간 마다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조합 등에 대해 송아지 등을 공제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 내에는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송아지 등을 공제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12조 조합 등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은 공제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등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공제료의 지불(제86조 제1항의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공제료의 분할 지불이 되는 경우에 그 제1회의 지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다만, 그 날 이후 제111조의 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대해서는 그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2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은 일년(육돈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육돈과 관련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제규정 등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가 있다.

○3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최초의 공제료기간(육돈과 관련되는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료기간. 제104조 제1항에 대해 같다.)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될 때에 개시한다.

제113조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제1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이하 개별공제관계라고 한다)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에 이것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12세를 넘은 소와 만 17세 이상의 말

2 6세를 넘은 종돈

○2 가축이 전항 각 호에 해당하기에 이르기 전 2년 이내에 새로 개시한 개별공제관계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당하는 때에 속하는 공제료기간 만료 시에 소멸한다.

제113조의 2 조합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은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목적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변동(사망과 폐용은 제외)이 생겼을 때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지체 없게 그 취지를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114조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은 육돈 이외의 포괄공제대상가축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마다, 육돈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111조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육 구분 마다, 개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축 마다 해당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최초의 공제료기간 개시 때에 있어서의 공제가액에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최저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하지 않고, 그 때에 있어서의 공제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가축공제 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최저비율의 기준은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한다.

○3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육돈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공제금액은 사망 또는 폐용에 의해 공제금이 지불되었을 때는 해당 사망 또는 폐용 때에 지불된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4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가액이 제111조의 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목적의 변동에 의해 증가했을 때는 조합원 등은 공제료기간의 중도에 있어도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조합 등에 대해 그 증가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수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조합원 등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공제료기간 가운데 아직 경과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해당 공제금액의 증액은 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 등으로부터 해당 공제료의 지불(제86조제1항의 공제규정 등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공제료의 분할 지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제1회의 지불)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다.

○5 전항의 규정 및 제120조에 대해 준용하는 상법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조합원 등은 새로운 공제료기간 개시의 때에 있어서 조합 등의 승낙을 받아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2항의 규정 또는 제120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상법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후의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변경 때에 있어서의 공제가액에 동항의 최저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하지 않고, 그 때에 있어서의 공제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14의 2 가축공제의 공제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젖소의 암컷 등 및 육용소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 송아지 등을 공제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 및 종모마 이외의 말 및 종돈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마다 및 조합원 등 마다 해당 조합원 등이 실제로 사육 하고 있는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의 價額을 합계한 금액

2. 젖소의 암컷 등 및 육용소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는 송아지 등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마다 및 조합원 등 마다 다음의 價額을 합계한 금액

가. 해당 조합원 등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소의 價額

나. ‘가’의 소의 태아가 그 공제료기간 중에, 제84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소의 태아의 價額

3. 육돈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 등 마다 및 제111조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육 구분 마다, 해당 조합원 등이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료기간 개시 때에 사육 하고 있는 해당 사육 구분과 관련되는 육돈의 價額을 합계한 금액

4. 개별공제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개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의 價額

○2 전항 제1호 혹은 제4호의 가축 또는 동항 제2호 ‘가’의 소(다음 방향으에 게시한 것을 제외한다)의 價額은 최초의 공제료기간 개시 때(그 공제료기간 개시 후 제111조의 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있어서는 그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있어서의 가축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조합 등과 조합원 등의 협의에 의해 새로운 공제료기간 개시 때에 있어서의 가축의 價額에 개정해야 할 취지를 결정했을 때는 그 가축의 價額으로 한다.

○3 제1항 제2호 '1'의 소(그 공제료기간 중에, 동호에 규정하는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소의 태아로 개연과의 있는 것에 한정한다.), 동호 '2'의 소의 태아 및 동항 제3호의 육돈 價額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5조 가축공제의 공제료율은 공제목적의 종류(제8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게시한 공제목적에 대해 공제사고 발생 모양의 유사성을 감안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종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같다)마다,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로 한다.

1. 사망 및 폐용(이것들 중 제3호의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손해 및 질병(제3호의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 대해 같다)과 상해에 의한 손해(질병 및 상해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서 적정한 진료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제금 지불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 같다) 중 다음 호의 진료기술료 등 이외의 것에 대응하는 공제료표준률 甲(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공제료할인표준률 甲을 공제해 얻은 비율. 제10항에 대해 같다)에 밀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비율

2.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손해 중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진료기술료 등」이라고 한다)에 대응하는 공제료표준률(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공제료할인표준률을 공제해 얻은 비율. 제10항에 대해 같다)에 밀돌지 않고,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비율

3. 전염성의 질병 또는 기상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망과 폐용 및 전염성 질병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家畜異常事故」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에서 적정한 진료의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제금 지불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응하는 공제료표준률 丙(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공제료할인표준률 丙을 공제해 얻은 비율.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해 같다)에 밀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비율

○2 전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률甲 및 공제료할인표준률甲, 동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률乙 및 공제료할인표준률乙 및 동항 제3호의 공제료표준률丙 및 공제료할인표준률 丙은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일정 年間に 있어서의 지역별 피해율을 기초로 해서 농림수산성 장관이 해당 지역별로 정한다.

○3 조합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율에 대신해,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지역 마다, 공제사고의 발생 상황 그 외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에 응해 위험단계의 구별을 정해 그 위험단계별의 공제료율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그 위험단계별의 공제료율은 다음의 각 호의 비율 및 제1항 제3호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로 한다.

1. 해당 위험단계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할인표준률 甲을 기초로 해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공제해 얻은 비율. 제11항에 대해 같다)에 밀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비율

2. 해당 위험단계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제1항 제2호의 공제료할인표준률乙 기초로 해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공제해 얻은 비율. 제11항에 대해 같다)에 밀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비율

○4 전항 제1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 및 동항 제2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은 조합 등이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위험단계별의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공제금액(제6항에 규정하는 多種포괄공제에 있어서는 그 공제목적의 종류마다의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 다음 항에 대해 같다)의 합계액의 예상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각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을 산술평균한 율이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률甲에, 각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을 산술평균한 비율이 동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률乙에 각각 일치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제3항 제2호의 率は 동호의 위험단계별의 공제목적의 종류마다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의 예상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 산술평균이 제1항 제2호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6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로서 그 공제목적이 둘 이상의 공제목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하 「多種포괄공제」라고 한다)의 공제료율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으로서 해당 조합원 등이 해당 공제료기간 개시 때(그 공제료기간 개시의 뒤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수의 증액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액이 효력을 일으켰을 때)에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價額(전조 제1항 제2호로의 價額을 포함한다. 제12항에 대해 같다.)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합계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제1항 각 호의 율의 합계율(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에 대해 조합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험단계별의 공제료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되는 위험단계의 동항 각 호의 율 및 제1항 제3호의 율의 합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로 한다.

○7 조합 등은 다종포괄공제와 관련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마다, 과거 일정 연간에 있어 해당 조합 등의 대부분의 조합원 등에 대해 해당 조합원 등 마다의 해당 종류의 가축의 사육두수의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율이 대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당 조합 등의 구역에 있어서 해당 종류의 가축의 사육에 관한 조건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율을 대신해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다음의 각 호의 율을 합제한 율을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해당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와 관련되는 다종포괄공제의 공제료율로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등의 해당 다종포괄공제의 대상이 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價額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합계액의 예상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률甲을 산술평균해 얻은 다종포괄공제료표준률 甲(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할인표준률甲을 기초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율을 공제해 얻은 율. 제10항에 대해 같다)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율

2. 전호의 예상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제1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률을 산술평균해 얻은 다종포괄공제료표준률乙(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제1항 제3호의 공제료할인표준 丙을 기초로 해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공제해 얻은 율. 제10항에 대해 같다)을 정하지 않고, 전호의 예상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제1항 제2호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율을 산술평균해 얻은 다종포괄공제료율乙의 한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비율.

3. 제1호의 예상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제1항 제3호의 공제료표준률丙을 산술평균해 얻은 다종포괄공제료표준률丙(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 때는,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료기간에 대해 적용해야 할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제1항 제3호의 공제료할인표준률 丙를 기초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공제해 얻은 비율.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해 같다)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율

○8 조합 등은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율을 대신해서 다종포괄공제와 관련되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마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지역 마다, 공제사고의 발생상황과 기타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에 응해 위험단계의 구별을 정해 그 위험단계별 공제료율을 정할 수가 있다.

○9 전항의 위험단계별의 공제료율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항 중 「제1항 제3호」라고 하는 것은 「제7항 제3호」라고, 동항 제1호 중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이라고, 동항 제2호 중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제4항 중 「전항 제1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 및 동항 제2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하는 것은 「제9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전항 제1호의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 및 동항 제2호의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공제금액(제6항에 규정하는 다중포괄공제에 있어서는 그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 다음 항에 대해 같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금액」이라고, 「각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이라고,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률甲」이라고 하는 것은 「제7항 제1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률甲」이라고, 「각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동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률 乙」이라고 하는 것은 「동항 제2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률乙」이라고, 제5항 중 「제3항 제2호」라고 하는 것은 「제9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3항 제2호」라고,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의 공제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금액」이라고, 「제1항 제2호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율」이라고 있는 것은

「다중포괄공제료율乙 한도율」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으로 한다.

○10 조합 등은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또는 해당 조합 등과의 사이에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료율에 대해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률甲, 동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률乙 혹은 동항 제3호의 공제료표준률丙 또는 제7항 제1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률甲, 동항 제2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률乙 혹은 동항 제3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률丙을 하회하는 율을 각각 제1항 제1호의 율, 동항 제2호의 율 혹은 동항 제3호의 율 또는 제7항 제1호의 율, 동항 제2호의 율 혹은 동항 제3호의 율로 정할 수가 있다.

○11 전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조합원 등과 관련되는 위험단계의 제3항 제1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 동항 제2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 혹은 제1항 제3호의 공제료표준률丙 또는 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3항 제1호의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甲, 제9항으로 준용하는 제3항 제2호의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률乙 혹은 제7항 제3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률丙을 하회하는 율을 각각 제3항 제1호의 율, 동항 제2호의 율 혹은 제1항 제3호의 율 또는 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3항 제1호의 율, 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3항 제2호의 율 혹은 제7항 제3호의 율로 정할 수가 있다.

○12 제6항의 價額 및 제7항 제1호의 價額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률甲과 공제료할인표준률甲, 동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률乙과 및 공제료할인표준률乙 및 동항 제3호의 공제료표준률丙과 및 공제료할인표준률丙은 3년마다 일반적으로 개정한다.

제116조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포괄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마다, 조합원 등 마다 및 공제료기간 마다, 개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축 마다 및 공제료기간 마다, 공제금액에 부합되고 전조 제2항의 지역별 그리고 그 외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의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사망 또는 폐용으로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의 價額에 의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에 공제금액의 공제價額에 대한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을 때는 100의 80)을 곱해 얻은 액

2.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사고에 의해 조합원 등이 입는 손해(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2 전항 제2호의 손해액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것을 산정한다.

○3 제93조 제2항(동조 제5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의 승계에 의해 동일한 포괄공제대상가축에 대해 2개 이상의 가축공제의 공제관계가 있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다른 공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각 공제관계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공제금(이하 본항에 대해 독립 책임액이라고 한다)의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을 넘을 때는 각 공제관계에 대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은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에 해당 각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폐용으로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의 손해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금액

○4 제1항 제1호의 가축의 價額에는 제114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대해 질병 또는 상해의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합 등이 진료 이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해당 조합 등은 해당 진료 이외의 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의 한도에 대해 공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8조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된 날로부터 2주간(농림수산성령으로 특정의 질병에 대해 2주년을 넘기는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질병 또는 이것에 의하여 생긴 공제사고에 대해서는, 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기간. 이하 보조에 있어 같다.) 이내에 공제사고가 생겼을 때는 조합원 등은 공제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단, 그 공제사고의 원인이 공제책임이 시작된 후에 생겼을 경우와 그 외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제한받지 않는다.

○2 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되는 포괄공제관계에 대해 공제사고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에 의해 새롭게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사고가 된 것이 그 변경의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생겼을 때는 조합원 등은 공제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가 없다.

○3 제114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에 그 증액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공제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공제사고에 의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은 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산정한다.

○4 전2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 조합원 등은 폐용에 관계되는 가축을 도살했을 때는 미리 조합 등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용에 관계되는 공제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단,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도살 했을 때는 이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120조 가축공제에는 상법제637조 , 제644조, 제645조, 제649조 및 제6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 제 6절 과수공제 등 (생략)

제120조의 2 ~ 제120조의 25 생략 (생략)

제7절 임의공제

제120조의 26 농림수산성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의공제의 공제금액에 대해 그 최고 금액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임의공제의 공제금액은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20조의 27 임의공제에는 제111조의 4 및 상법제631조, 제637조, 제639조, 제644조, 제645조 및 제6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의 28 특정 조합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특정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공제료의 지불을 받아 제84조 제 5 항에 게시한 손해와 동종의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사업에는, 제111조의 4 및 상법제631조 제637조, 제639조로부터 제646조까지, 제649조 및 제6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보험사업

제121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조합원인 조합 등이 제83조제1항 제1호 및

제 3 호에 게시한 공제사업에 있어서 그 조합원 등에 대해 가지는 공제책임을 서로 보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업 외, 조합원인 조합 등이 제83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7호까지 게시한 공제사업에 있어서 그 조합원 등에 대해 가지는 공제책임을 서로 보험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제122조 생략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과 그 조합원 또는 가축공제 자격자, 발농사물공제 자격자 혹은 원예시설공제 자격자와의 사이에 가축공제, 발농사물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해당 조합 등과의 사이에 해당 공제관계에 대해 해당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보험사업의 보험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생략

제123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공제금액수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의 2. 생략

2의 3. 생략

3. 생략

4. 임의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공제금액수의 100분의 90이상으로 보험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보험규정으로 전항 제2호 및 제 3 호의 금액에 대신해야 할 금액을 정할 수가 있다.

제124조 생략

○2 생략

○3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계한 것(제1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해 공제규정 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공제료기간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합계한 것에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계수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보험금액수에, 다음 조 제1항 제3호 2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동조 제3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 다음 조 제1항 제3호로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비율(동조 제3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로 진료기술료 등 이외의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2. 공제금액수에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비율(동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4 생략

○5 생략

제125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삭제

3.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 또는 ‘나’의 금액

가.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로 인해 지불하는 것은 조합원인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家畜異常事故로 인해 지불하는 것은 조합원인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

나. 사망 또는 폐용(이러한 것 중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인해 지불하는 것은 조합원인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질병(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 대해 같다) 또는 상해로 인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로 진료기술료 등 이외의 것에 대해 산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家畜異常事故로 인해 지불하는 것은 조합원인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

3의 2. 생략

4. 생략

5. 임의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조합 등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에, 공제금액수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2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를 전항 제3호 ‘가’의 금액 또는 동호 ‘나’의 금액의 어느 쪽의 액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그 조합원인 해당 조합 등이, 그 보험관계의 성립 때까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해, 그 때까지 그 협의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동호 ‘나’의 금액으로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로 한다.

○3 제1항 제3호 ‘가’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에 대해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에는, 제1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동항 단서 중 「조합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인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 제3호의 금액(家畜異常事故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대해 질병 또는 상해의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진료 그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해당 공제책임을 부담하는 조합 등은 해당 진료, 그 외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의 한도에 있어서 공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동항의 액의 한도에 대해 보험금을 해당 조합 등에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7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은,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정기에, 보험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해, 해당 조합원인 조합 등과 그 조합원 등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제관계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사항으로 변경을 일으켰을 때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은, 보험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지체 없이 이것을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28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은, 제94조 제1항의 관리 그 외 손해 방지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제129조 다음의 경우에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지불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1. 조합원이 법령 또는 공제규정 등에 위반해 공제금을 지불했을 때.
2. 조합원이 손해액을 부당하게 인정해 공제금을 지불했을 때.

3. 조합원이 공제규정 등에 위반해 공제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거나, 또는 소멸시키지 않았을 때.
4. 조합원이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한 통지를 했을 때.
5.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했을 때.
6. 조합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태만히 했을 때.
7. 조합원이 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8. 조합원이 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하거나, 또는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실한 통지를 했을 때.

제130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그 회계를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계산 구분 마다 경리해야 한다.

제131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이 보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농업공제조합 연합회에 대해 제소하기 위하여는, 도 도 부 현 농업공제보험 심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02 전 항 심사의 신청은, 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이것을 재판 상의 청구로 간주한다.

제132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보험사업에는,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제87조의 2 제1항, 제6항 및 제7항,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제95조부터 제98조의 2까지, 제99조 제4항,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0조의 2 및 상법 제642조, 제643조, 제646조, 제649조 및 제6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110조의 2 중 「해당 조합 등의 손해평가회」라고 하는 것은,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손해평가회」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2 생략

제132조의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 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농업공제조합,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의 공제사업의 실시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한 사람(제104조 제 5 항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다), 그 구성원의 모든 것이 해당 실시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농작물공제 자격 단체, 가축공제 자격자, 과수공제 자격자, 밭농산물공제 자격자 혹은 원예시설공제 자격자 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농업협동조합 혹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공제료의 지불을 받아 제84조 제 5 항에 게시한 손해와 동종의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사업에는, 제111조의 4 및 상법 제631조, 제637조, 제639조부터 제646조까지, 제649조 및 제6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정부의 재보험사업 및 보험사업

제 1 절 재보험사업

제 133조 정부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밭농산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보험사업에 있어서 그 조합원에 대해 지는 보험책임을 재보험한다.

제 134조 생략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그 조합원과의 사이에 가축공제, 과수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보험사업의 보험관계가 있을 때는, 정부와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의 사이에 해당 보험관계에 대해 해당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재보험사업의 재보험관계를 갖는다.

○3 생략

○4 생략

제 135조 정부의 재보험 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삭제

3.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보험금액수에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 있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136조 생략

○2 생략

○3 정부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재보험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계한 것(제1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제규정 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공제료기간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합계한 것에 제124조 제3항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계수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재보험금액에, 제125조 제1항 제3호 ‘가’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와 관련되는 재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동조 제3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재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 제125조 제1항 제3호 ‘나’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와 관련되는 재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비율(동조 제3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재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로 진료기술료 등 이외의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2. 공제금액수에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비율(동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재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제137조 정부가 지불해야 할 재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삭제

3.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 중에서,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에 재보험 금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家畜異常事故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137조의 2 정부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보험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조합원으로부터 보험료를 분할해 징수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지불해야 할 재보험료를 분할해 지불하게 할 수가 있다.

제138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농림수산성 장관에 대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와 그 조합원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보험관계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변경을 일으켰을 때에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이것을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9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원인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지체 없게 그 취지를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0조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 정부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재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지불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1.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법령 또는 보험규정에 위반해 보험금을 지불했을 때.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손해액을 부당하게 인정해 보험금을 지불했을 때.
3.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재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했을 때.
4.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제13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통지를 했을 때.

제141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호소를 제기하려면 농림어업보험심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1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의 2 정부의 재보험사업에는, 제84조의 2 제6항 및 제88조 내지 제90조 및 상법 제642조, 제643조, 제646조 및 제6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87조의 2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이라고 하는 것은, 「재보험료 납입의 독촉」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제2절 보험사업

제141조의 3 정부는 특정 조합이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로부터 제6호까지 게시한 공제사업에 있어서 그 조합원에 대해서 지는 공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1조의 4 생략

○2 특정 조합과 그 조합원과의 사이에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의 공제관계가 있을 때는, 정부와 해당 특정 조합과의 사이에 해당 공제관계에 대해 해당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보험사업의 보험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제141조의 5 정부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공제금액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 5. 생략

제141조의 6 생략

○2 정부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보험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계한 것(제1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제규정으로 특별히 규정한 공제료기간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합계한 것에 제124조 제3항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계수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보험금액수에 다음 조 제1항 제2호 ‘가’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동조 제3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 다음 조 제1항 제2호 ‘나’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비율(동조 제3항,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로 진료기술료 등 이외의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2. 공제금액수에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비율(동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료율이 정해지는 공제관계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家畜異常事故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

○3 ~ ○8 생략

제141조의 7 정부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 또는 ‘나’의 금액

가.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사고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정 조합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家畜異常事故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정 조합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

나. 사망 또는 폐용(이러한 것 중 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정 조합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질병(家畜異常事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 대해 같다) 또는 상해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정 조합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 중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로 진료기술료 등 이외의 것에 응해 산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家畜異常事故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정 조합이 지불해야 할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

3. ~ 5. 생략

○2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보험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를 전항 제2호 ‘가’의 금액 또는 동호 ‘나’의 금액의 어느 쪽의 액으로 정하는 것은 특정 조합이 그 보험관계의 성립 때까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 제2호 ‘나’의 금액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관계에 대해 정부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에는 제1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 정부의 보험사업에는 제129조 제3호 및 제137조의 2로부터 제141조의 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제129조 제3호 중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합」이라고, 「공제규정 등」이라고 있는 것은 「공제규정」이라고, 제137조의 2로부터 제141조의 2까지의 규정 중 「농업공제조합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합」이라고, 「보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규정」이라고, 「보험료」라고 있는 것은 「공제료」라고, 「재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라고, 「보험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제관계」라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금」이라고, 「재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라고, 「재보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관한 사항」이라고, 「재보험사업」이라고 있는 것은 「보험사업」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5장의 2 감독

제142조의 2 행정청은 조합 등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處分, 정관 또는 공제규정 등 혹은 보험규정을 준수할지 말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때는 조합 등 혹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로부터 그 업무 혹은 회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혹은 회계.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 있어서 같다)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합 등 혹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업무 혹은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가 있다.

제142조의 3 행정청은 조합 등이나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대해 매년 1회를 상례로서 검사해야 한다.

제142조의 4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2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청에 대해 농업공제단체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또는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농업공제단체의 검사를 실시해야 할 취지를 청구했을 때는, 해당 행정청은 해당 농업공제단체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제142조의 5 행정청은 제14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거나 전3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한 경우에 있어서 농업공제단체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근거하고 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또는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해당 농업공제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2 행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또는 보험사업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는 농업공제단체에 대해 이러한 사업에 대해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그 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제142조의 5의 2 都道府県 지사는 제14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거나 동조 혹은 제142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행한 경우에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의 해당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해당 市町村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가 있다.

○2 都道府県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대해 해당 사업의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그 외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2조의 6 농업공제단체가 제1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행정청은 해당 농업공제단체에 대해 기간을 지정해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改選을 명할 수가 있다.

○2 농업공제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행정청은 해당 명령과 관련되는 임원을 해임할 수가 있다.

○3 농업공제단체가 제1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행정청은 해당 농업공제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가 있다.

제142조의 7 행정청은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혹은 總代會의 소집 수속 혹은 의결방법 또는 임원 혹은 대표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르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의결 또는 선거 혹은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의 또는 선거 혹은 당선의 취소를 청구했을 경우에 그 위반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결의 또는 선거 혹은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의 3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의 농업재해보상관계업무

제142조의 8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이하 「신용기금」 이라고 한다)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보험사업 및 조합 등 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불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에 게시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생략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조합 등이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발농사물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불에 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3. 전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신용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총당하기 위해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조합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탁을 받을 수 있다.

제142조의 9 신용기금은 업무 방법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전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이하 「농업재해보상관계업무」라고 한다.)의 일부를 농림중앙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병행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그 외 농림수산성 장관의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신용기금은 業務方法書로 정하는 것에 의해 조합 등과 관련되는 자금의 대부 또는 채무의 보증업무의 일부를 해당 조합 등이 소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4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 및 제1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2조의 10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조합 등은 신용기금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자금 또는 신용기금의 보증과 관련되는 차입금을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발농사물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조합 등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해 동항의 자금 또는 차입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신용기금은 業務方法書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조합 등에 대해 대출금의 辨濟期前的 상황, 위약금의 납부,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2조의 11 신용기금은 농업재해보상 관계 업무와 관련되는 경리에 대해서 농업재해보상 관계 회계를 마련해, 그 외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리와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제142조의 12 신용기금은 농업재해보상 관계 업무에 관해서 농업재해보상 관계 자금을 마련해서, 정부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특정 조합이 해당 농업재해보상 관계 자금을 총당해야 할 것으로 출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로 이것에 총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특정 조합은 전항의 농업재해보상 관계 자금을 총당해야 할 것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기금에 출자할 수가 있다.

○3 제1항의 농업재해보상 관계 자금과 관련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또는 특정 조합이 아니면 그 양도를 받을 수가 없다.

제142조의 13 농림수산성 장관은 다음에 게시한 경우에는 재무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1. 제142조의 9 제1항의 지정을 하려고 할 때.
2. 농업재해보상관계업무에 관해서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법 (平成14년 법률 제128호) 제16조 제1항의 승인을 하려고 할 때.

제142조의 14 농업재해보상 관계업무에 대해서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법 제5조 제6항,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중 「제15조 각 호에 게시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15조 각 호에 게시한

업무 및 농업재해보상관계업무」라고, 동법 제16조제1항 중 「전조 각 호에 게시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조 각 호에 게시한 업무 및 농업재해보상관계업무」라고, 동법 제210조 제1항 중 「또는 중소기업융자 보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융자보증법 또는 농업재해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장 보칙

제143조 조합 등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손해평가회를 둔다.

○2 손해평가회는 공제규정 등 또는 보험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손해의 방지 및 인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조사 심의한다.

○3 손해평가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계되어 학식과 경험을 가지는 사람 가운데 공제규정 등 또는 보험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해 해당 농업공제단체의 이사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의 장이 선임한 위원으로 조직한다.

○4 전3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손해평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143조의 2 都道府県에 都道府県 농업공제보험심사회를 둔다.

○2 都道府県 농업공제보험심사회는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으로 속하게 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 외에 都道府県 지사의 자문에 응해 다음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농업 재해의 발생,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공제금액수, 보험료 및 보험금액(정부와 특정 조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보험관계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 3 그 외 이 법률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3 전2항에 규정하는 것의 외에 都道府県 농업공제보험심사회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144조 농림수산성에 농림어업보험심사회를 둔다.

○2 농림어업보험심사회는 제141조 제1항(제142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森林國營保險法(昭和 12년 법률 제25호) 제22조 제1항, 어선손해등보상법(昭和 27년 법률 제28호) 제138조의 22 제1항 및 어업재해보상법(昭和 39년 법률 제158호) 제147조의 1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전2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농림어업보험심사회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제145조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과수공제, 밭농산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보험사업을 제외하다)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에 대해 지는 책임 및 제1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동항에 규정하는 사람에 대해 지는 책임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의 구역을 그 지구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특정 조합이 실시하는 제83조 제1항 제7호에 게시한 공제사업 및 제120조의 2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준용한다.

제145조의 2 제2장 및 제5장의 2의 규정 중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53조 및 제53조의 2 제1항의 경우 및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 등에 대해서는 都道府県 지사,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장관으로 한다.

제145조의 3 이 법률 제85조 제4항(제85조의 7 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 제1항 및 제143조의 2 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都道府県 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7장 벌칙

제146조 제1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조 제142조의 3혹은 제14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기피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농업공제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농업공제단체의 업무에 관해서 전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그 농업공제단체에 대해서도 동항의 형을 과한다.

제147조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공제단체의 임원 또는 청산인을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2. 이 법률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등기를 했을 때.
3. 농업공제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수가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했을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5.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6. 제39조 제1항 혹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그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제39조 제2항 혹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거절했을 때.
7. 제41조 제4항 (제45조의 2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7의 2.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했을 때.
8. 제49조 또는 제 5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농업공제조합의 합병을 했을 때.
9. 제55조 또는 제57조에 게시한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했을 때.
10.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해 농업공제단체의 재산을 분배했을 때.
11. 제58조에 있어 준용하는 민법 제7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
12. 제58조에 있어 준용하는 민법 제79조 제1항 또는 동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실한 공고를 했을 때.
13. 제58조에 있어 준용하는 민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파산수속 개시의 제기를 태만이 할 때.
14. 제91조(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15. 제99조의 2 제1항 또는 제130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16. 제100조(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1조(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17. 제1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18.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잉여금을 처분하거나 공제금액을 삭감했을 때.
제148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 149조

제 150조의 2 생략

제 150조의 3 국고는 당분간 가축공제의 공제목적인 가축의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를 방지해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보험사업 및 재보험사업의 수지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政令이 정하는 것에 의해, 주무 대신이 정하는 특정의 질병에 의한 가축의 손해에 대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특정 조합 및 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해, 이러한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전항의 교부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특정 조합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省令이 정해, 해당 지시와 관련되는 처치의 내용 및 가축의 두수에 관한 계획을 정해 이것에 대해 주무 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교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회계년도 예산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일반회계로부터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에 이월한다.

제 150조의 3의 2 생략

제 150조의 3의 3 생략

제 150조의 3의 4 생략

제 150조의 3의 5 생략

제 150조의 3의 5의 2

제 150조의 4 생략

제 150조의 5 생략

제 150조의 5의 2

제 150조의 5의 2 육돈은 당분간 출생 후 제8월의 달의 말일을 경과한 후에

있어도 공제규정등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제150조의 5의 3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목적이 되는 육돈과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는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가축공제 자격자(육돈의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전망이 있는 것으로서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한정한다)가 그 사람이 사육 하는 육돈으로서 출생 후 제20일의 날을 경과한 것을 一體로 해서 조합 등의 가축공제 대상이 되기를 신청해, 조합 등이 이것을 승낙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에는 제11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동조 중 「제111조」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3 제1항」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의 5의 4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가축공제의 공제관계(이하 특정 포괄공제관계라고 한다)가 성립되었을 때에 그 성립에 의해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육돈에 대해 이미 포괄공제관계가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될 때에 그 성립하고 있던 포괄공제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의 5의 5 조합 등과의 사이에 특정 포괄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 육돈이 출생 후 제20일의 날을 경과했을 때는, 그 때(그 때에 해당 조합 등의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제책임이 시작된 때)에 해당육돈은 해당 조합 등의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그 사람이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가 성립된 뒤에 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출생 후 제20일의 날을 경과한 육돈을 사육하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다.

○2 제93조 제2항(동조 제 5 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특정 포괄공제관계에 관계되어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 전부터 계속해 출생 후 제20일의 날을 경과한 육돈을 사육하고 있었을 때는 해당 육돈에 대해서도 전항 전단과 마찬가지로 한다.

○3 조합 등과의 사이에 특정 포괄공제관계를 갖는 사람이 해당 조합 등의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는 육돈을 사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그 사람이 동시에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육돈에 대해 양축의 업무를 영위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제외한다)는 그 때의 해당 육돈은 해당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육돈이 아닌 것으로 한다. 해당 육돈이 종돈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다.

제150조의 5의 6 제111조의 8의 규정은 조합 등과의 사이에 특정 포괄공제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 준용한다.

제150조의 5의 7 조합 등과의 사이에 특정 포괄공제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육돈에 성령으로 정하는 변동(사망을 제외하다)이 생겼을 때는 그 때가 속하는 기준기간(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해당 기준 기간 중에 해당 변동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

○2 조합 등과의 사이에 특정 포괄공제관계가 갖는 사람은 제150조의 5의 5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육돈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것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150조의 5의 8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료기간 개시때에 있어서의 공제價額에 공제규정등으로 정하는 최저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미달하지 않고, 그 때에 있어서의 공제價額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가축공제 자격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2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은, 공제금이 지불되었을 때는 그 때가 속하는 기준기간의 다음의 기준기간의 개시때에 그 지불된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에는 제11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동조 제2항 중 「전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8 제1항」이라고, 동조 제4항 중 「제111조의 6 제1항 또는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5 제1항 또는 제2항」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4 전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114조 제4항의 규정 또는 제120조에 대해 준용하는 상법 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후의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은 제1항 및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목적의 변동이 속하는 기준기간의 다음의 기준기간의 개시 때에 있어서의 공제價額에 제1항의 최저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미달되지 않고, 그 때에 있어서의 공제價額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50조의 5의 9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價額은 조합원 등 마다, 해당 조합원등이 실제로 사육 하고 있는 해당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육돈의 價額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육돈의 價額에는 제114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의 5의 10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금은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육돈의 價額에 의해, 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공제규정등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에 공제금액의 해당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속하는 기준기간의 개시때에 있어서의 공제價額에 대한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을 때는 100분의 80)을 곱해 얻은 액(그 액이 조합원 등 마다 및 공제료기간 마다, 공제금액에 따라 및 제150조 제2항의 지역별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의해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액)로 한다.

○2 제116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금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포괄공제대상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육돈」이라고, 「제1항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1항 또는 제150조의 5의 10 제1항의 규정」이라고, 「동항」이라고 있는 것은 「제1항 또는 제150조의 5의 10 제1항」이라고, 동항 제1호 중 「제1항 제1호」라고 하는 것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150조의 5의 10 제1항」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육돈의 價額에는 제114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의 5의 11 제118조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의 지불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제111조의 8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6에 대해 준용하는 제111조의 8 제1항」이라고, 동조 제3항 중 「제114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150의 5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이 그 직전의 공제료기간의 종료 때에 있어서의 공제금액으로부터」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의 5의 12 특정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에 대한 제84조 제1항 제 3 호, 제9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112조 및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84조 제1항 제 3 호 중 「으로부터 출생 후 제8월의 달의 말일까지의」라고 하는 것은 「을 경과했다」라고, 제99조

제1항 제6호 중 「제105조 제 5 항, 제113조의 2 혹은 제120조의 5(제120조의 18 및 제120조의 25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7」이라고, 동항 제7호 중 「제111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3 제1항」이라고, 제120조 제1항 중 「제111조의 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포괄공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포괄공제관계」라고, 동조 제2항 중 「일년(육돈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84조 제1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육돈과 관련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이라고, 동조 제3항 중 「공제료기간(육돈과 관련되는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료기간. 제114조 제1항에 대해 같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료기간」이라고, 제115조 제1항 중 「및 동조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동조 제2항 및 제150조의 5의 2」라고, 동항 및 동조 제3항 중 「제111조의 8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150조의 5의 6에 대해 준용하는 제111조의 8 제1항」이라고 한다.

제150조의 5의 13 생략

제150조의 5의 14 ~ 제150조의 10 생략

제151조 아래의 법률은 폐지한다.

농업보험법

가축보험법

이하의 부칙 생략

첨부 15. 농업 재해 보상법 시행령

農業災害補償法施行令

(昭和 22년 12월 27일 政令 제299호)

최종 개정 : 平成 15년 10월 1일 政令 제448호

제1조 農業災害補償法(昭和 22년 법률 제185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특정조합(법제 53조의 2 제4항의 특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동일함)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은, 조합 등(법제12조 제3항의 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마다,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법제107조 제1항의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을 말함. 이하 동일)마다 합계해서, 그 합계 금액(이하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이라고 함) 중 제1호에 게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공제료의 합계 금액 중 그 조합원 등 (법제12조 제1항의 조합원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의 해당 조합 등에 의한 징수의 상황에 의해,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 중 제2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모든 조합 등 (그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이 해당 조합 등과 관련되는 재보험료 상당 금액(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법제124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 대해 「농작물이상 부분보험료」라고 한다.)의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모든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농작물 이상 부분 보험료의 합계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 같음)을 넘는 조합 등에 한정한다)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공제료의 합계 금액의 총계 중 이러한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의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의 이러한 조합 등에 의한 징수의 상황에 의해,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 중 제3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이, 해당 조합 등이 그 속하는 농업공제조합 연합회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넘는 부분의 금액

2.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이, 해당 조합 등과 관련되는 재보험료 상당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넘는 부분의 금액(그 넘는 부분의 금액이, 해당 조합 등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부터 해당 조합 등과 관련되는 재보험료 상당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을 넘을 때는, 그 공제해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3.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조합 등과 관련되는 재보험료 상당 금액(그 금액이 농작물교부대상부담 금액을 넘을 때는, 그 농작물교부대상부담금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정조합과 관련되는 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특정조합마다,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 마다 합계해, 그 합계해 얻은 금액(이하 이 항에 대해 「특정조합 농작물교부대상 부담금액」이라고 한다)중 제1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특정조합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공제료의 합계 금액 중 그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의 해당 특정조합에 의한 징수의 상황에 의해, 특정조합 농작물교부대상 부담금액 중 제2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도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조합 농작물교부대상 부담금액이, 해당 특정조합이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넘는 부분의 금액

2. 해당 특정조합이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과 관련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특정조합 농작물교부대상 부담금액을 넘을 때는, 그 특정조합 농작물교부대상 부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조의 2 법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특정조합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조합 등 마다,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및 수확공제구분(법제122조 제3항의 수확공제구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같다)마다 합계해, 그 합계해 얻은 금액(이하 이 항에 대해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이라고 한다)중 제1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공제료의 합계 금액 중 그 조합원 등의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의 해당 조합 등에 의한 징수의 상황에 의해,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 중 제2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모든 조합 등(그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지불해야 할 그 조합 등과 관련되는 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조합 등에 한정한다)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공제료의 합계 금액의 총계 중 이러한 조합 등의 조합원 등의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의 이러한 조합 등에 의한 징수의 상황에 의해,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 중 제3호에 게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1.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이, 해당 조합 등이 그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넘는 부분의 금액

2.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이,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넘는 부분의 금액(그 넘는 부분의 금액이, 해당 조합 등이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지불해야 할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부터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을 넘을 때는, 그 공제해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3.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지불해야 할 해당 조합 등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구분과 관련되는 재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을 넘을 때는, 그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정조합과 관련되는 법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해, 동항 중 「농작물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증별」이라고 있는 것은 「수확공제구분」이라고, 「특정조합 농작물교부대상 부담금액」이라고 있는 것은 「특정조합 수확교부대상 부담금액」이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3 생략

제1조의 4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가 부담하는 사무비는, 임직원(공제사업을 행하는 市町村(법제85조의 6 제1항의 공제사업을 행하는 市町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그 외의 직원)의 급료, 수당 및 여비, 사무소비, 회의비 그 외 조합 등 및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행하는 공제사업 및 보험 사업에 관한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조의 5 생략

제1조의 6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조합원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을 줄 때는, 조합원 등의 수에 응해 주는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의 총수는,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주는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의 총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1조의 7 생략

제1조의 8 생략

제2조 생략

제2조의 2 법제85조의 2 제1항의 政令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을 관할하는 市町村이 공제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무를 적절하게 집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
2. 전호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해,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을

관할하는 市町村이 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의 집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액수가 감소하고, 그 외 해당 농업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보다 공제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것.

제2조의 3 市町村의 장은 법제85조의 2 제1항에서 신청하는 것과 관련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공제조합과 市町村과의 협의가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농업공제조합 및 해당 市町村 또는 그 어느 쪽인지 한편으로부터의 신청이 있고 또한 그 신청을 상당히 인정될 때는, 협의를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알선을 한다.

제2조의 4 농업공제조합은, 매사업년도, 법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과 부과방법에 대해, 都道府県 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다.

○2 공제사업을 행하는 市町村은, 매회계년도, 법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 하는 부과금의 액수와 부과방법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금액 및 부과방법을 都道府県 지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했을 때도 같다.

○3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매사업년도, 법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는 그 금액과 부과방법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다.

○4 조합 등은, 매사업년도(공제사업을 행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매회계년도), 법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부과금의 금액과 부과방법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금액 및 부과 방법을 都道府県 지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했을 때도, 같다.

제2조의 5 조합 등(특정조합은 제외)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구분 마다, 법제101조의 준비금(이하 「부족금보전준비금」이라고 한다)을 공제금의 지불에 충당해도 더 부족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공제규정 등(법제86조 제1항의 공제규정 등을 말함. 이하 동일)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삭감할 수가 있다.

○2 생략

○3 생략

제2조의 6 법제99조의 2 제2항의 특별회계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계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략
2. 가축 공제에 관한 계산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계산

제2조의 7 법제111조의 8 제1항의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은, 젓소의 암컷 등 (법제111조 제1항의 젓소의 암컷 등을 말함)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 육용소 등(법제111 제1항의 육용소 등을 말함), 말 또는 종돈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서 제2호에 게시한 대로 한다.

1. 젓소의 암컷으로 법제84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하는 소의 해당공제료기간의 개시 시기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 등의 사육두수(이하 「초기두수」라고 함)가 6마리 이상인(일) 것.
2. 해당 포괄공제관계에 있어서 포괄공제대상가축(법제111조 제1항의

포괄공제대상 가축이라고 함)의 종류인 가축에 대해, 해당공제료기간의
개시 전 5년간에 걸쳐 계속해 양축의 업무를 영위한 경험을 가지는(질) 것.

제2조의 8 생략

제2조의 9 생략

제2조의 10 생략

제2조의 11 생략

제2조의 12 손해평가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 공제규정 등 또는
보험규정으로 정한다.

○2 임기 만료에 의해 퇴임한 위원은 후임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의 13 손해 평가회에 회장을 둔다.

○2 회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3 회장은 회무를 총리 한다.

○4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 14 공제규정 등 또는 보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손해평가회에
부회(部會)를 둘 수가 있다.

○2 부회에 속해야 할 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3 부회에 부회장을 둔다. 부회장은 부회에 속하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 부회장은 부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5 손해평가회는 공제규정 등 또는 보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회의
결의를 손해 평가회의 결의로 할 수가 있다.

○6 부회장에 대해 전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 15 손해 평가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부회의 회의는 부회장이 소집한다.

제2조의 16 제1조의 5 제2항 및 제2조의 4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都道府県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는 地方自治法(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부칙

제 5 조 법제150조의 3 제1항의 교부금의 금액은 동항의 특정 질병에 의한 가축의 손해에 대해 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특정조합 및 법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해당 지시와 관련되는 처치에 대해 이러한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법제150조의 5의 6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111조의 8 제1항의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제84조 제1항 제 3 호 및 제150조의 5의 2의 규정에 의해 공제목적으로 할 수 있는 육돈의 초기두수는 200마리 이상일 것.
2. 육돈에 대해 법제150조의 5의 6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111조의 8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공제료기간의 개시 전 5년간에 걸쳐 계속해 양축의 업무를 영위한 경험을 가질 것.

첨부 16. 농업 재해 보상법 시행규칙

농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昭和 22년 12월 27 일본 農林省令 제95호)

최종 개정 : 平成 17년 4월 1일 農林水産省令 제61호

농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농업공제단체(제1조- 제14조)

제2장. 공제, 보험 및 재보험(제15조- 제40조의 10)

제3장. 교부금(제41조- 제45조)

제4장. 농림어업보험심사회의 심사의 성립(제45조의 2· 제45조의 3)

제5장. 잡칙(제46조)

부칙

제 1 장 농업공제단체

제1조 이 省令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업재해보상법(昭和 22년 법률 제 1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재해보상법시행령(昭和 22년 政令 제299호. 이하 「令」이라 한다)에 있어 사용하는 용어의 例에 의한다.

제1조의 2의 2 농업공제조합이,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者는, 동항 제1호 또는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자로,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둔 者 중, 동항 제3호 및 제7호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동항 제8호에 열거된 자로, 그 구성원의 모든 것이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다음의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者로 한다.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가축 관련 사항 없음)

제1조의 3 법제15조제1항 제8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목적, 共濟料의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의 방법, 대표자, 대표권의 범위, 단체 의사의 결정기관 및 그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1조의 3의 2 법제15조제1항 제8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성원의 농업경영의 안정을 꾀해,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포함할 것.
2. 共濟料의 분담 및 공제금의 배분 방법이 형평을 잃지 않을 것.
3. 대표자 선임의 수속을 분명히 할 것.
4. 해당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

제1조의 6 농업공제조합은, 법제8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의 공제관계의 소멸에 의해 공제관계의 전부가 소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탈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조의 7 법제19조 제3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및 해산 후 그 청산의 종료될 때까지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2조 농업공제단체의 부담에 돌려보내야 할 창립비 및 그 償却方法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조 농업공제단체의 설립의 인가의 신청서에는, 정관,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 및 사업계획서 외에, 창립총회 회의록의 등본, 이사 및 감사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제9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의 회의록에 이것을 준용한다. 단, 동조 중 「농업공제단체의 총회 또는 總代會로 되어 있는 것은 「창립총회」로,

「조합원 또는 총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설립의 동의자」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농업공제조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합원인 자격을 갖는 자의, 법제15조 제1항 각 호 마다의 概數(대략적인 수) 및 농작물공제 가입자격자의 概數
2. 전호에 열거된 사람별 공제목적의 종류(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목적의 종류. 이하 같다)별 개수(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농작물 구분(공제목적의 종류 및 농작물공제의 공제 사고 등에 의한 종별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수, 과수공제 중 수확공제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의 공제사고 등에 의한 종별 개수, 원예시설공제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개수)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예정계획 및 수입지출의 概算

○2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합원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의 수
2.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개수(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농작물 구분별의 개수, 과수공제 중 수확공제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 및 수확공제의 공제 사고 등에 의한 종별 개수, 원예시설공제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개수)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 예정 계획 및 수입 지출의 概算

제 5 조 법제30조 제2항 제 5 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임의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사항,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 共濟料에 관한 사항 및 공제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7조 농업공제단체의 조합원 명부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합원의 이름 또는 명칭(농업공제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법인 및 농업공제자격단체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의 이름,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농업공제조합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다) 및 주소(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농업공제자격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의 주소, 市町村에 있어서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제38조 제1항의 장소의 통지가 있을 때는 그 장소

2. 가입 연, 월, 일

3. 공제목적의 종류(원예시설공제에 있어서는 공제목적)

제8조 법제4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기록은 理事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갖추어진 파일 또는 자기 디스크, CD·ROM 그 외 이것들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확실히 기록 가능한 것을 가지고 만든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한다.

제9조 농업공제단체의 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장은 회의의 회의록을 만들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며, 여기에 의장 및 출석한 조합원 또는 대표 두 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1. 개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 또는 총대 및 그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자와 그 의결권의 총수

3. 議事의 요령

4. 의결한 사항 및 贊否의 수

제10조 법제43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사무소 또는 부속사무소의 소재지 명칭의 변경

2. 관계 법령의 개정(조항의 移動 등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에 수반하는 규정의 정리

제11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 혹은 보험규정 변경의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변경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총회 또는 총대회 의사록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농업공제단체의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서에는 해산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총회 회의록 등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농업공제조합 합병 인가의 신청은, 법제 51조 제1항의 설립 위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농업공제조합의 이사가 해야 한다.

○2 전항의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호에 열거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농업공제조합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합병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3. 합병에 의해 설립하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정관, 공제규정 및 사업계획서
4. 합병계약서 등본
5. 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총대회의 회의록 등본
6.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
7. 법제 49조 제2항에 공고 및催告를 한 것 및異議를 언급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하여 辨濟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며, 혹은 신탁을 한 것 또는 합병을 해도 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에 의해 농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인가 신청서에 전항의 서류 외, 합병에 의해 설립하는 농업공제조합의 임원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및 이들 임원의 선임 및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된 서류의 작성이 법제 51조 제1항의 설립 위원에 의해 실행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의 2 법제 53조의 2 제1항의 권리 의무 승계의 인가 신청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이 되는 농업공제조합 외에 해당 농업공제조합 연합회의 조합원이 없는 때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인 조합 등의 구역의 모든 것을 맞춘 구역을 그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이 성립했을 때로부터 3주간 이내에 해야 한다.

○2 전항의 인가 신청서에는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정관, 공제규정, 사업

계획서 및 동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있어서 해당 농업공제 조합연합회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청산 종료의 신고서에는 결산보고서 및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제2장 공제, 보험 및 재보험

제15조의 7 법제84조 제2항(법 제85조의 7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生肉의 정도는 그 母牛에 대한 수정 또는 수정란이식의 날로부터 起算해 240일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16조 법84조 제3항(법 제85조의 7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법제84조 제1항 제 3호의 廢用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또는 뜻하지 않은 상해(제 3 호에 열거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다.
2. 뜻하지 않은 災厄(=재액, 재앙과 액운)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때
3. 골절, 파행, 양쪽 눈 실명 또는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혹은 뜻하지 않은 상해에 의하여 치유의 전망이 없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때
4. 도난, 그 외의 이유에 의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0일을 믿돌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공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5. 젖소의 암컷, 種牡牛 또는 種牡馬가 치유의 전망이 없는 생식기의 질병 또는 상해를 얻고, 공제책임이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때
6. 젖소의 암컷이 치유의 전망이 없는 비유기의 질병 또는 상해로 공제책임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서 비유능력을 상실한 것이 비유기에 확인될 때

7. 소가 출생시에 기형 또는 불구인 것으로서 장래의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 분명한 때

○2 포괄공제관계의 성립에 의해 법제111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소멸한 개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대한 전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포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은, 해당 개별공제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한 때에 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법제85조의 3 제3항 또는 제5항의 공시를 할 때 그 공시와 관련되는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에 있어서 그 공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공시와 관련되는 市町村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市町村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은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개시한 때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의 4 市町村이 법제8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都道府県 知事에게 제출하는 공제사업 실시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해당 市町村의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이 되는 지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한 사람 및 그 구성원 전부가 해당 지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농작물공제자격단체(법제104조 제5항의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축공제자격자, 과수공제자격자, 발작물 공제자격자 및 원예시설 공제자격자의 각각의 概数 및 농작물 공제자격자의 概数(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새롭게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이 되는 지역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람의 概数)

2. 전호에 게시한 사람별의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概数(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새롭게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이 되는 지역과 관련되는

이러한 概数),

3. 공제사업의 사업예정계획 및 수입지출의 概算

제17조의 5 市町村이 법제8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都道府県 知事に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 외에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 및 공제사업의 실시계획(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 및 새롭게 공제사업의 실시구역이 되는 지역과 관련되는 공제사업의 실시계획)의 의결과 관련되는 해당 市町村의 의회의 회의록의 복사본 및 제17조의 3 제1항의 신청서 및 동조 제2항의 신청사유를 분명히 하는 서류의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의 6 법제8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공제조합에 대한 통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市町村에 대한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 7 제1조의 4의 규정은 법제85조의 3 제3항 또는 제5항 (법제85조의 6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대해 준용한다.

제17조의 8 법제85조의 4 제4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와 관련되는 재보험료는 법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공제조합의 신청에 근거해 법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市町村의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의 가입과 관련되는 재보험료로 한다.

제17조의 9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이 법제85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都道府県 知事에게 제출하는 동조 제1항의 지역과 관련되는 공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해당 지역내에 주소를 갖는, 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하는 사람 및

그 구성원 모두가 해당 지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농작물공제자격단체(법제104조 제5항의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다), 가축공제 자격자, 과수공제 자격자, 밭작물공제 자격자 및 원예시설공제 자격자의 각각의 **概数** 및 농작 공제자격자의 **概数**

2. 전호에 게시한 사람별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概数**

3. 공제사업의 사업예정계획 및 수입지출의 **概算**

제17조의 10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이 법제85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해 都, 道, 府, 縣 지사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신청서의 첨부 서류 외에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에 관한 조례 및 동조 제1항의 지역과 관련되는 공제사업의 실시계획의 의결과 관련되는 해당 市町村 의회의 회의록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의 11 제1조의 4의 규정은 법제85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대해 준용한다.

제17조의 12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이 법제85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都, 道, 府, 縣 지사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신청서의 첨부 서류 외, 공제사업 전부의 폐지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조례의 의결과 관련되는 해당 市町村의 의회의 회의록의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의 13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은, 법제85조의 10 제1항의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의 변경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신청서에 그 변경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해당 조례변경의 의결과 관련되는 해당 市町村 의회의 회의록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이것을 都, 道, 府, 縣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 13의 2 법제85조의 12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제87조 제1항의 賦課金の 징수(법제8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체납처분을 제외)와 관련되는 사무, 동조 제7항의 연체금의 징수(동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체납처분을 제외)와 관련되는 사무, 법제105조 제1항의 공제細目書 또는 가축공제, 과수공제, 발작물공제 혹은 원예시설공제의 신청서의 수리와 관련되는 사무, 농작물과 관련되는 수확물 혹은 누에와 고치의 생산 수량, 농작물과 관련되는 수확물의 품질(특정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인 과수와 관련되는 수확물에 있어서는, 품질 혹은 가격) 또는 시설원예용 시설과 관련되는 자재의 구매 수량 혹은 가격의 조사와 관련되는 사무 및 공제금의 지불과 관련되는 사무(해당 공제금과 관련되는 손해액의 인정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로 한다.

제17조의 14 농업공제조합가 수제2조의 4 제1항 前段의 都, 道, 府, 縣 지사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부과금의 액수 및 부과 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예정계획 및 수입지출의 概算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正副 2통을 都, 道, 府, 縣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농업공제조합은 수제2조의 4 제1항 後段의 규정에 의한 都, 道, 府, 縣 지사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변경과 관련되는 부과금의 액수 또는 부과 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변경의 이유 및 변경과 관련되는 사업예정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正副 2통을 都, 道, 府, 縣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 15 수제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부과금의 액수 및 부과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에 사업예정계획 및 수입지출의 概算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正副 2통을 都, 道, 府, 縣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 16 제17조의 14의 규정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가 수제2조의 4 제3항의 농림수산성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전조의 규정은 수제2조의 4 제4항의 보고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7조의 14 중 「都, 道, 府, 縣 지사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림수산성장관에게」라고, 전조 중 「보고서에 사업 예정 계획 및 수입 지출의 概算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그 正副 2통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고서 正副 2통을」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농업공제단체는 공제규정 또는 보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또는 보험금의 가불을 할 수가 있다.

제19조 수제2조의 5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공제

○2 수제2조의 5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과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제23조 제1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합계해 얻은 금액, 가축공제에 있어서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과 제19조의 3 제2호(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수제2조의 6 제2호. 이하 같다.)의 계산과 관련되는 제23조 제2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합계해 얻은 금액, 과수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과수 구분과 관련되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과 해당 과수 구분과 관련되는 동조 제3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합계해 얻은 금액, 발작물 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발작물 구분과 관련되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과 해당 발작물 구분과 관련되는 동조 제4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합계해 얻은 금액, 원예시설공제에 있어서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과 제19조의 3 제5호(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수제2조의 6 제5호 . 이하 같다)의 계산과 관련되는 제23조 제2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합계해 얻은 금액, 제19조의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에 있어서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을 공제금의 지불에 충당해도 더 부족한 경우인 것으로 한다.

제19조의 3 법제99조의 2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계산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공제에 관한 계산

제20조 조합 등은 매 사업년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매 회계 년도. 이하 같다)의 마지막에 지불준비금으로서 다음의 금액으로부터 정부 또는 그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 및 보험료의 반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공제금의 지불 또는 공제료의 반환을 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아직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예상액
2. 공제금의 지불 또는 공제료의 반환에 관해서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이 있을 때는 그 금액

○2 전항의 규정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이것을 준용한다.

제21조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조합 등은 매 사업 년도의 마지막에 있어서 책임기간이 차기사업년도 또는 차차기사업년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차기 회계년도 또는 차차기 회계년도)에 걸치는 공제에 대해 각각 다음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해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가축공제, 원예시설공제 또는 임의공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년도의 공제료의 합계금액으로부터 정부 또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지불 보험료의 액수를 공제한 잔액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책임 기간에 대한 금액

○2 전항 제2호의 아직 경과하지 않은 책임기간에 대한 금액은 해당 책임기간이 그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첫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 월당 이것을 계산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서 이것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 중 「법제100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 100조」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조합 등은 제19조의 3 제1호(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수제2조의 6 제1호, 이하 같다)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다음의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 중 해당 각 호에 열거된 금액 이상의 금액을 해당 계산과 관련되는 부족금담보준비금으로 해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해당 사업년도 말에 있어서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이 부록 제1의 계산식(특정 조합에 있어서는 부록 제2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그 산출되는 금액이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제1 차 한도액」이라고 한다.) 미만의 금액인 경우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농작물 잉여금 배분액(제19조의 3 제1호의 계산과 관련되는 해당 사업년도의 잉여금의 금액을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과거 수지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관 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정관 등」이라고 총칭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해 얻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1 차 한도액으로부터 해당 부족금담보준비금의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부록 제3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과 제1 차 한도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부터 해당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 중 적은 금액)

2. 해당 사업년도 말에 있어서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이 제1 차 한도액 이상이고 제1 차 한도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인 경우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농작물잉여금 배분액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 차 한도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부터 해당 부족금 담보준비금의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 중의 어느 것인가 적은 금액

○2 조합 등은 제19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계산과 관련되는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 중 그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해당 계산과 관련되는 부족금 담보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3조 조합 등은 제19조의 3 제1호의 계산에 대해,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매사업년도의 잉여금 중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농작물잉여금 배분액으로부터 부족금전보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을 해당 계산과 관련되는 특별적립금으로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3조의 2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 조합 등은 정관 등이 정하는 것에 따라 특별적립금을 할 수가 있다.

1.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발작물 구분별의 발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제19조의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의 구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발작물 구분별의 발작물공제 및 원예시설 공제의 구분) 마다 공제금의 지불에 부족을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 부족금전보준비금의 금액(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부족금전보준비금의 금액, 과수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과수 구분과 관련되는 부족금전보준비금의 금액, 발작물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발작물 구분과 관련되는 부족금전보준비금의 금액)을 그 지불에 총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공제금의 지불에 총당하는 경우

5. 앞의 각 호에 게시한 것 외에 해당 조합 등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관계되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지불에

총당하는 경우

○2 전항 제1호에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적립금을 할 때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의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밭작물 구분별의 밭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제19조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의 구분(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공제목적의 종류별의 농작물 공제, 가축공제, 과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밭작물 구분별의 밭작물 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의 구분) 마다 해야 한다.

○4 제1항 제3호 및 제5호로 게시한 경우에 대해 특별 적립금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결(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 이하 같다)을 거쳐 해야 한다.

○6 앞의 각 항의 규정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앞의 각 항 중에 「특별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23조 제6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특별적립금」이라고, 제1항 중 「공제목적의 종류별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밭작물 구분별의 밭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제19조의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라고 하는 것은 「공제 목적의 종류별의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재보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밭작물공제 재보험 구분별의 밭작물공제, 원예 시설공제, 제19조의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라고, 「공제금」이라고 있는 것은 「보험금」이라고, 「해당 과수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수공제재보험 구분」이라고, 「해당 밭작물 구분」이라고 있는 것은 「해당 밭작물공제재보험 구분」이라고, 「법제95조 후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95조 후단」이라고, 「법제96조 및 법제96조의 2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13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법제96조 및 법제96조의 2

제1항」이라고, 「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이라고 한다)」이라고 하는 것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이라고, 「공제사업」이라고 있는 것은 「보험사업」이라고, 제2항 중 「공제 목적의 종류별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발작물 구분별의 발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제19조의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라고 하는 것은 「공제 목적의 종류별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재보험 구분별의 과수공제, 발작물공제재보험 구분별의 발작물공제, 원예시설 공제, 제19조의 3 제6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 및 동조 제7호에 규정하는 임의공제」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2 조합 등은 가축공제에 관하여 매 사업년도에 조합원 등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에 걸쳐 공제금의 지불을 받지 않거나, 또는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조합원 등이 지불을 받은 공제금의 금액이 해당 기간 중의 공제료 중 해당 조합원 등의 부담에 관련되는 부분의 금액 6 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못 미친 경우(정관 등으로 정했을 경우를 제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6 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기간 중에 공제금의 지불을 받았을 때는 해당 6 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부터 해당 공제금의 금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조합원 등에 대하여 환불을 할 수가 있다.

○3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은 앞의 2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환불 구분 마다 과수공제, 발작물 환불 구분 마다 발작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의 구분 마다, 해당 市町村과의 사이에 공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 해당 市町村에 대해 법제85조의 2 제1항의 신청을 한 농업공제조합(이하 이

항 및 제 5 항에 있어서 「移讓組合」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공제관계를 해당 市町村과의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서 앞 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해 산정한 액을 한도로서 환불할 수가 있다.

2. 법제85조의 3 제3항 또는 제 5 항의 공시일의 전날에 이양조합과의 사이에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의 공제관계가 존재하고, 또한 그 공시일에 해당 공시와 관련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과의 사이에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의 공제 관계를 성립된 자

○4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전부를 폐지했을 경우에 그 폐지된 사업이 행해지고 있던 지역에 있어서 법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 3 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농업공제조합(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 있어서 「사업승계조합」이라고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목적의 종류마다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 환불 구분 마다의 과수공제, 발작물 환불 구분 마다 발작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의 구분 마다, 해당 사업승계조합의 조합원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공제사업을 폐지한 市町村(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 있어 「사업폐지 市町村」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제관계를 해당 사업승계조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해 산정한 액을 한도로 환불할 수가 있다.

2. 사업폐지 市町村이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를 폐지한 날의 전날에 사업폐지 市町村과의 사이에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의 공제관계가 존재하고 또한 그 폐지한 날에 사업승계조합과의 사이에 가축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의 공제 관계를 성립시킨 자

○5 조합 등이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해 환불하는 금액은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환불구분 마다 과수공제, 발작물 환불 구분

마다의 발작물공제 및 원예시설공제의 구분 마다, 특정 조합 이외의 조합 등에 있어서는 특별적립금의 금액(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특별적립금의 금액, 과수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과수 환불 구분에 속하는 과수 구분마다의 특별적립금의 금액을 해당 과수 환불 구분에 대해 합계해 얻은 금액, 발 작물 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발 작물 환불 구분에 속하는 발 작물 구분마다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해당 발 작물 환불 구분에 대해 합계해 얻은 금액,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 또는 사업승계조합이 법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로부터 제6호 (법제85조의 7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공제사업에 대해 이양조합 또는 사업폐지 市町村으로부터 재산의 양도를 받아 실시하는 환불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 또는 사업승계조합이 이양조합 또는 사업폐지 市町村으로부터 양도를 받은 재산의 액수를 감안해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에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구분에 대해 해당 조합 등이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로부터 교부된 금액을 더한 금액, 특정 조합에 있어서는 특별적립금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조합 등 (특정 조합을 제외)은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발 작물 공제 또는 원예시설공제에 관하여 법제95조 후단에 규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법제96조 혹은 법제9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시설을 하고, 또는 환불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공제사업의 종류 마다, 매 사업년도 그 속하는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4 농업공제조합연합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금액(해당 공제사업의 종류 마다, 해당 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 속하는 조합 등의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이 제23조 제6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으로부터 제 5 항까지의 특별적립금의 금액(농작물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와 관련되는 동조 제6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 과수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과수 환불 구분에 속하는 과수공제 재보험 구분마다의 동조 제6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3항의 특별 적립금의 금액을 해당 과수 환불구분에 대해 합계해 얻은 금액, 밭작물 공제에 있어서는 해당 밭작물환불 구분에 속하는 밭작물공제 재보험 구분 마다의 동조 제6항에 대해 준용하는 동조 제4항의 특별적립금의 금액을 해당 밭 작물 환불 구분에 대해 합계해 얻은 금액)을 넘을 때는 그 금액을 조합 등 마다 해당 청구와 관련되는 금액의 비율에 의해 배분한 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농업공제단체의 여유금의 운용은 다음의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1. 금융기관에의 預貯金
2.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그 외 농림수산성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보유
4. 독립 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에의 금전 기탁

제29조 법제111조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짓소의 송아지 등은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것과 같이 한다.

1. 조합 등과의 사이에 짓소의 암컷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육용우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이 없는 자, 짓소의 암컷 이외의 짓소의 송아지(법제84조 제1항 제 3 호에 열거된 소 이외의 소를 말하며, 제15조의

7에 규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른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출생 후 그 사람이 계속 사육 하고 있는 것 및 젖소의 태아(동조에 규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2. 조합 등과의 사이에 젖소의 암컷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이 없고, 또한 육용우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을 지니는 자, 젖소의 태아

3. 조합 등과의 사이에 젖소의 암컷 등 및 육용우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가 있는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이 있는 자, 젖소의 암컷 이외의 젖소의 송아지로 출생 후 계속 사육 하고 있는 것(출생 후 제10일(그 때에 해당 조합 등의 해당 육용우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공제책임이 시작하고 있지 않는 때에는 그 공제 책임이 시작한 때)까지의 것에 한정한다) 및 젖소의 태아

제29조의 2 법제111조 제3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양 구분은 이유하는 날(그 날 이후에 해당 조합원 또는 가축공제 자격자가 사육한 비육돈에 대해서는 그 사육된 날까지의 일자)이 같은 날인 육돈의 군별로 한다.

제29조 2의 2 법제111조 제 3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 등으로부터 해당 포괄공제 대상 가축에 대한 법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받은 것에 대해 제29조의 4 제1호의 이유에 의해 그 승낙을 거절한 것(同號의 이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

2. 해당 포괄공제 대상 가축과 동일한 포괄공제 대상 가축의 종류인 가축에 대해 해당 조합원 등과의 사이에 개별공제 관계가 있는 것(해당 포괄공제 대상 가축에 대해 포괄공제 관계를 지니는 경우는 제외).

제29조의 3 법제111조의 2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래의 각 호에 열거된 경우로 한다.

1. 거래를 위해 일년 이내 사양할 목적으로 사양하는 경우
2. 조합 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법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것에 대해 다음 조 제1호의 이유에 의해 그 승낙을 거절했을 경우로서 해당 가축을 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을 때.
3. 조합 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법제1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것에 대해 다음 조 제 3 호로부터 제 5 호까지의 이유에 의해 그 승낙을 거절했을 경우

제29조의 4 법제111조의 4(법 제114조 제 5 항 후단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는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이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신청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신청인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어느 쪽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1. 그 신청과 관련되는 가축 가운데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 또는 법113조 제1항 각 호로 열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승낙하면 해당 가축과 동일한 포괄공제 대상가축의 종류인 가축을 조합 등의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의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
2. 소 또는 말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과 동시에 법1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축으로서 그 신청을 한 자가 사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것.

3. 그 신청과 관련되는 가축이 발육부전, 쇠약, 기형, 불구 또는 악습이 현저한 것 등 공제규정 등으로 정한 것.
4. 그 신청과 관련되는 가축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상해를 받고 있는 것.
5. 그 신청과 관련되는 가축이 통상의 사양관리 또는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사양관리되거나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또는 그럴 우려가 있으며, 그 사양관리 또는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아 해당 가축과 동종의 가축과 비교해 공제사고의 발생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는 것 등 공제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

제29조의 5 조항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 관계가 있는 자는 법제11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규정 등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해당 공제료 기간이 개시하는 2주일 전 까지, 짓소의 암컷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 5 호의 어느 것인가가, 육용우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 3 호까지 또는 제 5 호의 어느 것인가가, 말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 5 호의 어느 것인가가, 종돈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 5 호의 어느 쪽인가에 열거된 것을 공제사고로 하지 않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화재, 전염성 질병(가축전염병예방법 (昭和 26년 법률 제166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및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 전염병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풍수해 그 외 기상 상의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망 및 폐용 이외의 사망 및 폐용
2. 화재, 전염성 질병 또는 풍수해 그 외 기상 상의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망 및 폐용 이외의 사망 및 폐용 및 질병 및 상해
3. 질병 또는 뜻하지 않은 상해에 의해 죽었을 경우, 뜻하지 않은 재액(災厄)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및 골절, 파행, 양쪽 눈

실명 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농림수산성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혹은 뜻하지 않은 상해로 치유의 전망이 없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 폐용

4. 질병 또는 뜻하지 않은 상해로 죽은 경우, 뜻하지 않은 재액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및 골절, 파행, 양쪽 눈 실명 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농림수산성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혹은 뜻하지 않은 상해로 치유의 전망이 없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 폐용과 질병 및 상해

5. 질병 및 상해

제29조 5의 2 조합 등과의 사이에 포괄공제 관계가 있는 자는 법제111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공제료 기간이 개시하는 2주일 전까지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 6 법113조 제1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市町村이 법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공제조합의 신청에 관한 법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구역에 상당하는 구역에 있어 공제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제11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기산해 2년 이상 전부터 법제8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 해당 농업공제조합의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된 가축을 법제85조의 3 제3항 또는 제5항의 공시일부부터 2주 이내에 해당 市町村의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으로 할 때로 한다.

제29의 7 법제113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1. 해당 개별공제 관계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개별공제 관계로, 해당 市町村에 있어 법제85조의 3 제3항 또는 제 5 항에 공시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새로이 개시한 것인 것.

2. 해당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이 법제11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기산해 2년 이상 전부터 법제8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축공제의 공제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호의 市町村에 대해서 법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농업공제조합의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일 것.

제29조의 8 법제113조의 2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변동은 법제11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소 또는 소의 태아가 제15조의 7에 규정하는 생육의 정도에 이른 것에 의한 변종을 제외) 혹은 법제111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 또는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에 있어서의 소의 출생으로 한다.

제29조의 9 법제114조 제4항 前段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증액의 청구는 해당 공제 목적의 변동일부로부터 2주간 이내로 해야 한다.

○2 법제114조 제4항 後段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의 지불은 전항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로 해야 한다.

제29조 9의 2 법제1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 가운데 동조 제1항 제2호 ‘가’의 소(그 공제료 기간 중에 동호에 규정하는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소의 태아이었던 것에 한한다)에 관련되는 것은 해당소의 태아의 價額과 同額으로 한다.

○2 법제1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 가운데 동조 제1항 제2호 ‘다’의 소의 태아와 관련되는 것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소의 가격을 기초로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의 출생일에 있어서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제1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 등이 정하는 금액 가운데 동조 제1항 제3호의 肉豚과 관련되는 것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肉豚의 가격을 기초로서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제84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肉豚이 되는 날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의 9의 3 법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초진료로 한다.

제29조의 10 법제1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진료기술료 등은 진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초진료 제외)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의약품비
2. 의료용 소모품비
3. 의료용 기구 및 기계의 償却費
4. 왕진용 차량의 수리비 및 償却費
5. 왕진용 차량의 연료비 또는 왕진시의 거마비

제29조의 11 법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콜레라 또는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장관 또는 都道府縣 지사가 가축, 그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일정 구역 내에서의 이동 또는 일정한 구역 외로의 移出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을 경우에 해당 구역내에 있어서 해당 질병에 의한 사망 및 폐용
2.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자금의 융통에 관한 잠정조치법 (昭和 30년 법률 제136호. 이하 「천재지변융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이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 등에 관한 법률(昭和 37년 법률 제150호) 제2조 제1항의
극심한 재해로서 지정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동법8조 제1항의 政令으로
정하는 都 ,道 ,府 ,縣의 구역내의 천재지변용자법 제2조 제 5 항 제1호에
열거된 구역 내에 있어서 해당 천재지변에 의한 가족의 사망 및 폐용
제30조 법제115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一定 年間은 동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율甲 및 공제료할인표준율甲(제29조의 5 제1호에
열거하는 공제사고에 따른 손해 및 동항 제2호에 열거하는 공제사고 중
사망 및 폐용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것을 제외) 및 동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율乙 및 공제료할인표준율乙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제29조의 5
제1호에 열거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 및 동항 제2호에 열거되는
공제사고 중 폐사 및 폐용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법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甲 및 동항 제 3 호의 공제료표준율丙 및
공제료할인표준율丙에 대해서는 과거 20년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것이 어려울 때는 이 한도는 없다.

제30조의 2 법제1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甲을 기초로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해당 공제료
할인표준율甲에 해당 위험단계의 동조 제3항 제1호의 위험단계 공제료
표준율甲의 동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표준율甲에 대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 3 법제1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
乙을 기초로 해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해당 공제료할인표준율乙에 해당
위험단계의 동조 제3항 제2호의 위험단계 공제료표준율乙의 동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료표준율乙에 대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 4 법1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목적의 종류 마다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산정되는 금액의 산출은 해당 다중 포괄공제의 공제금액에 해당 다중 포괄공제의 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소의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조합원 등이 해당 공제료기간 개시 때(그 공제료 기간 개시 후 법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그 증액이 효력을 일으켰을 때)에 있어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의 價額(법제114조의 2 제1항 제2호 ‘나’의 價額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 제34조의 2, 제34조의 2의 2, 제35조의 3 및 제35조의 3의 2에 있어 같다)의 합계액에 대한 해당 가축의 價額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 마다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價額에는, 법제114조의 2 제2항 및 제3항 및 제29조의 9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 5 법제115조 제7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거 3년간 해당 조합 등 대부분의 조합원 등에 대한 해당 조합원 등 마다 해당 종류의 가축의 사양두수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 비율이 대개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법제115조 제 13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비율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사실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것.

2. 과거 3년간 해당 조합 등의 구역에 있어서 해당 종류의 가축의 사양두수의 공제 목적 종류별 비율이 대략 일정하고, 또한 법제115조 제 13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까지의 기간에 있어 해당 비율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사실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것.

3. 과거 3년간 해당 종류의 가축 사양두수의 공제 목적 종류별 비율이 해당 조합 등의 대부분의 조합원등과 관련되는 해당 비율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

거의 없는 것.

○2 법제115조 제7항 제1호의 예상액은 해당 조합 등의 해당 다중 포괄공제의 대상이 된 포괄공제 대상 가축의 과거 3년간 공제 목적의 종류마다 두수 및 평균 價額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30조의 6 법제11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甲을 기초로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동조 제7항 제1호의 예상액을 (重視하여)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마다 해당 공제료할인표준율甲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 7 법제115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乙을 기초로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동조 제7항 제1호의 예상액을 (重視하여)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마다 해당 공제료할인표준율乙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 8 법제115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丙을 기초로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동조 제7항 제1호의 예상액을 (重視하여) 해당 공제 목적의 종류마다 해당 공제료할인표준율丙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 9 법 제115조 제9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甲을 기초로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동조 제7항 제1호의 예상액을 (重視하여) 공제 목적의 종류마다 해당 공제료할인표준율甲을 산술평균 해 얻은 비율에 해당 위험단계의 동조 제9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多種包括危險段階 공제료표준율甲의 동조 제7항 제1호의 多種포괄공제료표준율甲에 대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의 10 법제115조 제9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공제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료할인표준율乙을 기초로서 산정되는 비율의 산출은 동조 제7항 제1호의 예상액을 (重視하여) 공제 목적의 종류 마다 해당 공제료할인표준율乙을 산술평균 해 얻은 비율에 해당 위험단계의 동조 제9항에 있어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다중포괄위험단계 공제료표준율乙의 동조 제7항 제2호의 다중포괄공제료표준율乙에 대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법제11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 제1호의 비율, 동항 제2호의 비율 혹은 동항 제3호의 비율 또는 동조 제7항 제1호의 비율, 동항 제2호의 비율 혹은 동항 제3호의 비율로서 정할 수가 있는 비율은 다음 표에 열거되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가축공제의 공제금액이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과의 사이에 가축공제의 공제 관계가 있는 자가 농림수산성장관의 정하는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
<u>법제115조 제1항 제1호</u> 의 비율로서 정할 수가 있는 비율	$P_1 + Q_1 \times (A \div B)$	$P_1 + Q_1 \times (1 - U)$
<u>법제115조 제1항 제2호</u> 의 비율로서 정할 수가 있는 비율	$R_1 \times (A \div B)$	$R_1 \times (1 - U)$

법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비율로서 정할 수 있는 비율	$S_1 + T_1 \times (A \div B)$	$S_1 + T_1 \times (1 - U)$
법제115조 제7항 제1호의 비율로서 정할 수가 있는 비율	$P_2 + Q_2 \times (A \div B)$	$P_2 + Q_2 \times (1 - U)$
법제115조 제7항 제2호의 비율로서 정할 수가 있는 비율	$R_2 \times (A \div B)$	$R_2 \times (1 - U)$
법제115조 제7항 제3호의 비율로서 정할 수가 있는 비율	$S_2 + T_2 \times (A \div B)$	$S_2 + T_2 \times (1 - U)$

P_1 은 법제1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 중 폐사 및 폐용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

Q_1 은 법제1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로부터 P_1 를 공제한 것

A 는 법제115조 제10항의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금액

B 는 해당 가축공제의 공제금액

U 는 해당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조합원 등의 진료 시설의 이용도를 고려해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비율

R_1 은 법제1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율

S_1 은 법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 중 폐사 및 폐용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

T_1 은 법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로부터 S_1 을 공제한 것

P_2 는 법제11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 중 폐사 및 폐용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

Q₂는 법제11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로부터 P₂를 공제한 것

R₂는 법제115조 제7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율

S₂는 법제115조 제7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 중 폐사 및 폐용에 의한 손해에 대응하는 부분

T₂는 법제115조 제7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로부터 S₂를 공제한 것

제31조의 2 전조의 규정은 법제115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3항 제1호의 비율, 동항 제2호의 비율 혹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비율 또는 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비율, 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비율 혹은 동조 제7항 제3호의 비율로서 정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조 중 「법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있는 것은 「법제115조 제3항 제1호」로, 「법제115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것은 「법제115조 제3항 제2호」로, 「법제115조 제7항 제1호」에 있는 것은 「법제115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1호」, 「법제115조 제7항 제2호」에 있는 것은 「법제115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2호」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의 3 법제116조 제1항 단서(법제125조 제3항 및 제141조의 7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괄공제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그 종류별, 種牡牛 및 種牡馬에 대해서는 공제 목적의 종류별
2. 공제료 기간의 月數別
3. 폐사 또는 폐용에 의해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재, 전염성 질병 또는 풍수해, 그 밖의 기상상의 원인(지진 및 분화를 포함)에 의하는 것과 그 외의 것과의 구별

제32조 법제116조 제1항 제1호의 손해액은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의 價額으로부터 공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해당 가축에 있어 존재하는 이익 및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법제116조 제2항의 손해액은 진료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조합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초진료 제외)의 내용에 따라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점수에 따라 공제사고 마다 계산되는 총 점수와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一點의 價額을 곱하여 얻어지는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손해액은 해당 진료 외의 행위에 따라 조합원 등이 부담한 비용(초진료 제외)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 2 법제118조 제1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공제사고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의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

나.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이 ‘가’의 市町村에 있어 법제85조의 3 제3항 또는 제5항의 공시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해당 市町村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것 (가입되어 있는 것).

다.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이 ‘나’의 공시 시기에 ‘가’의 市町村에 대하여 법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

2. 다음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공제사고가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

나.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이 ‘가’의 포괄공제 관계의 성립에 의해 법제111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소멸한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에 해당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의 전날부터 기산해 2주간 이상
전부터 대상이 되었던 것.

3. 다음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공제사고가 개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

나.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이 해당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의
전날부터 기산해 2주간 이상 전부터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어 있고, 또한 種牡牛 또는 種牡馬로 되었기
때문에 법제111조의 6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해당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가축이 아닌 것으로 된 후
2주간 이내에 ‘가’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것.

4. 다음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공제사고가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가축공제와
관련되는 것.

나.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이 송아지 등(송아지에 있어서는 조합
등과의 사이에 해당 가축공제의 공제 관계가 있는 자가 출생 후 계속
사양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이며, 또한 그 어미 소가 해당
공제사고가 생긴 날의 전날부터 기산해 2주간 이상 전부터 ‘가’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

5. 다음 요건의 모든 것에 적합한 경우

가. 해당 공제사고가 육용우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이고,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

나. 해당 공제사고와 관련되는 가축이 송아지(조합 등과의 사이에
‘가’의 가축공제의 공제 관계가 있는 자가 출생 후 계속 사양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일 것.

다. 해당 송아지가 해당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 전날부터 기산해 2주간

이상 전부터 해당 조합 등과 해당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쪼소의 암컷 등과 관련되는 포괄공제 관계와 관련되는 가축공제로서 송아지 등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것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며, 또한 해당 송아지가 해당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후 법제11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의 가축공제의 대상이 된 것일 것.

제33조의 2의 2 법제118조 제3항의 경우와 관련되는 동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열거되는 경우로 한다.

1. 새로운 공제료 기간의 개시 시기에 있어서 공제가액이 그 직전 공제료 기간의 종료 시기의 공제가액으로부터 증가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2. 그 직전의 공제료 기간 중에 법제114조 제1항의 공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최저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새로운 공제료 기간의 개시 시기의 공제가액에 해당 최저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까지 공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첨부 17. 각국의 수의처방대상 약제의 현황

각국의 동물용 처방약제의 현황

우리나라의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영국의 처방용 약품의 관리규정 및 대상약품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1. 일본

가. 일본의 동물약품 관련 규정

일본은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품을 ‘동물용 의약품등 단속 규칙’(평성 16년 12월 24 일본 농림수산성령 제107호, 최종 개정 : 평성 21년 7월7 일본 농림수산성령 제43호)에 근거하여,

제168조. 법 제 49조 제1항의 농림수산부 장관이 요지시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은 별표 제3과 같다.’고 규정하였다.

(<http://law.e-gov.go.jp/htmldata/H16/H16F17001000107.html> 참조)

(요지시 의약품의 양도에 관한 장부)

제169조. 법 제 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 또는 수여한 의약품의 품명 및 수량
2. 그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한 연월일
3. 처방전을 교부, 또는 지시한 수의사의 이름 및 주소(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이름 및 그 사육 동물 진료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4. 양수인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5. 처방전의 교부 또는 지시의 대상이 된 동물의 종류 및 두수

나. 요지시 의약품 (2009. 12월 기준)

별표 제3 (제168조 관련)

소, 말, 양, 염소, 돼지, 개, 고양이 및 닭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음에 열거하는 것, 그 유도체와 그 염 및 이것들을 함유하는 제제. 그러나 제제의 외용제 [항진균성물질 제제로 눈과 자궁에 적용하는 외용제, 오플록사신(ofloxacin)을 함유 하는 외피용제, 오비플록사신(orbifloxacin)을 함유하는 외피용제, 아이버멕틴(ivermectin)을 함유하는 외피용제(개 또는 고양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함), 황체 호르몬을 함유하는 질내 적용의 외용제,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을 함유하는 눈 적용의 외용제 및 셀라멕틴(Selamectin)을 함유하는 외피용제는 제외]는 제외한다.

1. 아프라마이신 (Apramycin)
2. 아라세프릴 (Alacepril)
3. 이소플루란 (Isoflurane)
4. 개 인터페론 및 그 제재 (Interferon and materials)
5. 아이버멕틴 (Ivermectin) : 개 또는 고양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
6. 인터페론-알파 (Interferon - α)
7. 에이치프로스톤(h-prostone)
8. 에날라프릴 (Enalapril)
9.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10.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11. 황체호르몬 (Progesterone)
12. 옥소린산 (Oxolinic acid)
13. 오사테론 (Osaterone)
14. 오플록사신 (Ofloxacin)
15. 오메프라졸 (Omeprazole)
16. 오르비플록사신 (Orbifloxacin)
17. 올레안도마이신(Oleandomycin)
18. 카나마이신 (Kanamycin)
19. 카바독스(Carbadox)
20. 카프로펜 (Carprofen)
21. 자일라진 (Xylazine)
22. 기타사마이신 (Kitasamycin)

23. 클렌뷰테롤 (Clenbuterol)
24. 클로미프라민 (Clomipramine)
25.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26. 케타민 (Ketamine)
27. 케토프로펜 (Ketoprofen)
28. 겐타마이신 (Gentamicin)
29. 갑상선호르몬 (Thyroid hormone)
30. 콜리스틴 (Colistin)
31. 살리노마이신 (Salinomycin)
32. 사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
33. 디노프로스트 (Dinoprost)
34. 시플록사신 (Ciprofloxacin)
35. 조사마이신 (Josamycin)
36. 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
37. 스피라마이신 (Spiramycin)
38. 스펙티노마이신 (Spectinomycin)
39. 설파닐라마이드(Sulfanilamide)
40. 성선자극호르몬 (Gonadotropic Hormone, Gonadotropin ; GH) :
뇌하수체전엽호르몬 (Anterior pituitary hormone) 제외
41.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Gonadotropic Hormone Release Hormone ; GnRH)
42. 생물학적 제재 중 백신(계두 백신 제외) 및 소의 항 로타바이러스
난황항체
43. 세데카마이신 (Sedecamycin)
44. 세파졸린 (Cefazolin)
45. 세파피린 (Cefapirin)
46. 세팔렉신 (Cephalexin)
47. 세팔로늄 (Cephalonium)
48. 세포베신 (Cefovecin)
49. 세프키놈(Cefquinome)
50. 세프티오퍼(Ceftiofur)
51. 세플록심 (Cefloxim)
52. 셀라멕틴 (Selamectin) : 개 또는 고양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
53. 타이로신 (Tylocine)

54. 다노플록사신 (Danofloxacin)
55. 티아물린 (Tiamulin)
56. 티암페니콜 (Tiamphenicol)
57. 틸미코신(Tilmicosin)
58. 데스트마이신 A(Distamycin A)
59.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60. 테폭살린(Tepoxalin)
61. 테모카프릴(Temocapril)
62. 테르데카마이신(terdecamycin)
63. 트리메토프림 (Trimethoprim)
64. 톨트라즈릴(Toltrazuril)
65. 나리딕산 (Nalidic Acid)
66. 니트록시닐(Nitroxynil)
67. 니트로푸란 또는 나이트로푸란 (Nitrofurantoin)
68. 니메실리드(Nimesulide)
69. 고양이 인터페론 (Feline Interferon)
70. 뇌하수체후엽호르몬 (Posterior Pituitary Hormone)
71. 뇌하수체전엽호르몬 (Anterior Pituitary Hormone)
72. 노보비오신 (Novoviocin)
73. 노플록사신 (Norfloxacin)
74. 하이그로마이신 (Hygromycin)
75. 바시트라신 (Bacitracin)
76. 발네물린(Valnemulin)
77. 바비투레이트 (Barbiturate)
78. 비코자마이신 (Bicozamycin)
79. 비치오놀 (Bithionol)
80. 피모벤단 (Pimobendan)
81. 피리메타민 (Pyrimethamin)
82. 피로콕시브(firocoxib)
83. 부신피질호르몬 (Adrenal Cortical Hormone)
84. 부토파놀 (Butophanol)
85. 프라지오마이신 (Furaziomycin)
86. 플루닉신 (Flunixin)
87. 브로티조람 (Brotizolam)
88. 프로포폴 (Propofol)

89. 브롬페노포스(Bromofenofos, Bromophenofos)
90.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91. 베다프로펜 (Vedaprofen)
92. 베나제프릴 (Benazepril)
93. 페니실린 (Penicilin)
94. 베부플록사신(Vebugloxacin)
95. 포스포마이신(fosfomycin)
96. 마르보플록사신 (Marbofloxacin)
97. 밀베마이신 (Milbemycin) : 개 또는 고양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
98. 미로사마이신 (Mirosamicin)
99. 멜라소민 (Melarsomine)
100. 메록시캄 (Meloxicam)
101. 목시텍틴 (Moxidectin) : 개 또는 고양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
102. 모넨신 (Monensin)
103. 라찌데쿠쥬(ラチデクヂン): 기생충구제제의 일종
104. 라미프릴 (Ramipril)
105. 난포호르몬 (Follicular Hormone)
106. 린코마이신 (Lincomycin)
107. 로메플록사신 (Lomefloxacin)

2. 미국

가. 미국의 동물약품 관련 규정

1) 미국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용(prescription, Rx)과 판매용(over-the-counter, OTC)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처방용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의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CVM)은 FDA Approved Animal Drug Products를 다음의 Homepage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animaldrugsatfda/index.cfm?gb=1&CFID=30375262&CFTOKEN=c914b720d5c68406-0C541264-1143-D1C5-FBD818139720E324>

2)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은 프로그램 정책과 법집행 매뉴얼(GUIDE 1240.2220)을 통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1985년 1월 15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일반적인 법집행 정책(policy)

판매(OTC)약과 처방(prescription)약의 분류

주의(NOTE): 이 가이드는 항생제가 포함된 새로운 동물약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CVM의 현재 생각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지만 다른 유형의 새로운 동물 약품에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CVM은 추후에 이 가이드를 개정하고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그 사이에 제조사들은 자사의 항생제 제품에 대해 CVM과 처방약/판매약 분류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권고한다.

1. 목적:

이 가이드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의 적절한 지시사항(direction)이 비전문가를 위해 작성될 수 있는지, 또는 약물의 특성과 특정 사용설명서(label)에 의하여 처방전(prescription legend) 사용설명서(labeling)의 면제가 요구되는지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정의 개요를 서술한다.

2. 관련법규:

a.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1) Section 502(f)(1) - 약물 또는 기구는 사용설명서에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잘못된 상표를 붙인 것으로 여긴다. (장관이 그러한 요구 사항에서 그러한 약물 또는 기구를 면제하는 규정을 공포하지 않으면)

(2) Section 512(d)(2) - 관련된 요인들은 약물이 제안된 사용설명서에서 처방, 추천 또는 권장된 조건 하에서 사용이 안전한지 결정하는데 고려될 것이다.

b. 연방 규정(regulation) Code:

(1) 21 CFR 201.5 - 사용시 적절한 지시사항을 규정한다.

(2) 21 CFR 201.105 - 지시사항이 작성될 수 없지만 처방 설명서가 있는 동물약품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의 면제.

3. 분류시 일반적인 고려 사항:

a. 법과 규정 하에 동물약품을 처방약과 판매약으로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 이외의 사람이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적절한 지시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또는 처방약 제품의 경우는 능력 부족)이다. 약품관리체계는 궁극적으로 적절한 때에 처방약 제품이 제품 사용에 훈련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관리 방법을 확립하였다(즉, 허가된 의사 또는 허가된 의사에 의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된 비수의사).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이 비전문가를 위해 작성될 수 있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용에 적절한 지시사항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점은 제안된 사용설명서에 처방되거나, 권고되거나 또는 추천된 사용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확실한 지이다.

b. 안전한 사용은 동물의 안전성, 동물에서 비롯된 식품의 안전성,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의 안정성, 동물에 관련된 사람의 안전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약물의 영향에서 안전성을 포함한다.

c. 약품의 효과적인 사용은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는 정확한 진단, 약물이 적절히 투여되며, 질병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의도하는 사용의 면에서 제품의 성공 또는 성공 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은 또한 기대되는 효과가 보이지 않을 때 적시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 과거에는 다양한 투여 경로, 투여 형태와 다양한 동물에 사용된 한 제품이 어떤 경우에는 처방약으로 분류되었고 다른 사용에서는 비처방으로 분류되었다. 기본적인 질문은 사용에 적당한 지시사항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성될 수 있는 지이다. 만약 보통의 식품생산동물 생

산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용설명서 지시사항에 상관없이 그것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없다면, 이 제품의 처방 분류는 이러한 의도된 사용에 관련하여 달라질 것이다. 만약 지시사항이 다른 종은 안 되며 한 동물 종의 특정한 경로로만 투여(정맥주사, 복강내주사 등)되도록 작성되는 경우, 한 가지 사용에는 판매약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 사용에는 처방약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e. 도축이나 우유 폐기 이전의 출하금지 기간이 고려될 수도 있지만 그것 하나로는 처방약과 판매약 자격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각 약물은 사용설명서 상의 사용법과 약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이 작성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지시사항이 임상 현장에서 준수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고려해야 한다.

4. 처방 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의 예:

a. 돼지에서 dichlorvos의 사용 조건이 21 CFR 520.600(e)에 정의되어 있다. 제품은 사료와 함께 섞어주도록 요청되며 각 크기의 돼지를 위한 양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돼지 사육자는 약물을 투여하는데 지적으로 경험이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와 말에서 구충제의 사용은 일부의 사례에서 약물이 농축된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처방전 설명서를 요구한다. 말에서 이러한 상황의 예는 실린지를 이용한 젤 제형의 투여에 비교되게 사료에 dichlorvos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료 위에 뿌린 dichlorvos는 플라스틱 펠릿에 스며들게 한 것으로 위장관을 통과하는 동안 말의 몸으로 천천히 방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지시사항이 작성될 수 있다. 젤 제품은 말과리 유충을 죽이기 위해 혀, 잇몸 그리고 구강의 다른 부위에 적용된다. 이 형태는 점막을 통해서 쉽게 흡수되며 따라서 부작용을 더 잘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로, 비전문가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이 작성될 수 없다.

b. 약품을 투여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 보유의 필요성이 그것이 처방설명서를 갖추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비수의사는 어떤 종에서 위관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용의 경우에 적절한 지시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c. 특정 결핍증 치료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비타민 제제의 사용설명서와 다른 의료/치료 적응증은 제품의 처방설명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타민 B₁₂의 결핍에 의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비타민 B₁₂ 사용의 지시사항을 준비하는 어려움의 예일 수 있다.

d. 합성 및 반합성 페니실린 제품에 대한 CVM의 정책.

(1) 합성 및 반합성 페니실린은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처방설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정책은 일반인들에 의해 이 약물의 광범위한 사용과 관련되어 사람에서 *Staphylococcus* 내성균의 출현의 영향으로 몇 년 전에 FDA Advisory Committee의 관심의 결과로서 개발되었다. 이 정책은 유방 주입 제품을 포함한 동물 약품에 쓰이는 모든 투여 형태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CVM 구성원과 산업체에 의해 절대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2) 이 요건에서 예외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식육생산동물에서 이 제제의 사용에 의해 저항성 세균의 출현으로부터 사람이나 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없을 때 고려될 수 있다.

e. 근본적으로 *Staphylococcus aureus*와 *Streptococcus agalactiae*의 치

료를 위하여, (합성 및 반합성 페니실린 이외의) 유방 주입 제품들이 판매약 사용으로 승인되었다. 이 두 병원체는 젖소 유방염의 95%를 차지한다. CVM의 입장은 만약 두 병원체가 약물이나 약물의 조합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확인되면 판매약 분류를 승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 시작 전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특수한 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바탕일 것이다.

5. 고려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지침:

동물 약품에 대해 일반인들이 사용할 적절한 지시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하는 분야.

a. 대상 동물에 약물의 안정성:

(1) 안정성의 경계. (약간의 과잉 투여가 치사, 동물에게 비가역적인 손상, 근심케 하는 반응, 동물에 장기적으로 비경제성을 초래할 것인지?)

(2) 해독제를 수의사가 또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수의사가 또는 비전문가가 적시에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는가?

(3) 제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는가? 작용의 심각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비전문가가 동물의 병리적 다른 증상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5) 다른 약물, 백신, 살충제 또는 사료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잠재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6) 약물의 오용이 동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질병 특성의 변화 또는 병원체의 변화를 촉진시킬 잠재성이 있는가(예를 들어, 약물 저항성 세균의 출현, 스테로이드성 물질에 의한 면역 억제, 장내 세균총의 변화)?

(7) 동물의 인도적인 치료를 보증하기 위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가?

b. 사람에 대한 안정성:

(1) 약물의 오용이 질병을 감추거나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너무 이른 치료의 중단)?

(2) 약물의 오용이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지 모르는 질병 특성의 변화 또는 병원체의 변화를 촉진시킬 잠재성이 있는가(예를 들어, 약물 저항성 세균)?

(3) 만약 제품이 제대로 취급되지 않으면 제품을 투여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가?

(4) 처방약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현저히 줄여주는가 (제한하는가)?

(5) 부정확한 진단 또는 잘못된 투약이 동물과 연관된 사람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6) 처방약 분류가 올바른 사용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켜 대상 동물에서 얻어진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

(7) 사용에 대한 지시사항이 임상 현장에서 수행하기에 합리적으로 타당한가?

c. 진단의 정확성:

- (1) 약물이 일반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가 또는 진단이 어렵고 다른 질병 상태와 쉽게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가?
- (2) 질병의 증상이 치료방침의 조정에 의하여 긴밀하게 변화되고 투여량의 조정이 필요한가 (예를 들면, 심장병과 디지탈리스요법)?
- (3) 비전문가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가?

d. 약물의 특성:

- (1) 동물 또는 사람에서 오용에 따른 위험성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임신부의 유산)?
- (2) 약물은 "규제된 물질인가"? (DEA에 의해 규제된 등)
- (3) 새로운 시도되지 않은 물질인가? (처방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작용을 적시에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
- (4)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가? (특별한 혼합, 냉동고, 냉장고, 방사성의 약물 등)
- (5) 투여 경로는 무엇인가? (정맥주사, 위관 등)

주의(NOTE): 판매약 사용으로 제안된 약품의 레에서, 약물 제조사는 제품이 비전문가에 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NADE & S&C 사이의 조정:

NADE나 Division of Surveillance에 의해 시판 중인 약의 처방약/판매약 지위의 변경 추가요구서가 접수되면, 다른 사람의 참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NADE와 S&C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팀 수준에서 토론하고 협상하여야 한다. 이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은 명시된 대로 다음 단계와 차후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CVM 프로그램 정책과 절차 매뉴얼 - '1240.2110 -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내에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절차' 참조). 약품 분류 변경을 요청하는 추가요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은 HFV-1의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

나. 미국의 처방용 동물용 의약품 (2009. 12월 기준)

미국의 처방용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제별로 정하지만, 일부 제제의 경우에는 사용 동물, 사용 제형에 따라 처방용 약품이 판매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처방용 제제는 Rx로 표시하였으며 판매용 제제는 OTC로 표시하였다. 처방용 제제이면서 일부의 제품이 판매약으로 분류된 것은 Rx/OTC로 표시하였다. 다른 제제와 혼합제제 형태로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혼합된 제제와 함께 Rx로 표시하였다).

FDA Approved Animal Drug Products (2009. 12월 기준)

2-Mercaptobenzothiazole OTC

Acepromazine Maleate RX

Acetazolamide Sodium RX

Acetylsalicylic Acid - Methylprednisolone RX

Aklomide OTC

Albendazole OTC

Albuterol Sulfate RX

Alfaprostol RX

Altrenogest OTC/RX
Amikacin Sulfate RX
Aminopentamide Hydrogen Sulfate RX
Aminopropazine Fumarate RX
Amitraz RX
Ammonium Chloride OTC
Amoxicillin Trihydrate RX
Amphomycin Calcium - Hydrocortisone Acetate, Kanamycin Sulfate RX
Ampicillin Anhydrous RX
Ampicillin Sodium RX
Ampicillin Trihydrate RX
Amprolium OTC
Apramycin Sulfate OTC
Aromatic Petroleum Derivatives - Ronnel RX
Arsanilic Acid OTC
Arsenamide Sodium RX
Atipamezole HydrochlorideRX
Atropine - Trichlorfon RX
Attapulgit - Kanamycin Sulfate, Bismuth Subcarbonate RX
Azaperone RX
Bacitracin Methylene Disalicylate OTC
Bacitracin Zinc OTC
Balsam Peru Oil OTC
Bambermycins OTC
Benzoic Acid OTC
Beta-aminopropionitrile RX
Betamethasone Acetate RX
Betamethasone Dipropionate RX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RX
Betamethasone Valerate RX
Bicyclohexylammonium Fumagillin OTC
Bismuth Subcarbonate - Kanamycin Sulfate, Attapulgit RX
Boldenone Undecylenate RX
Bovine Somatotropin (Sometribove Zinc) OTC
Bunamidine Hydrochloride RX

Buquinolate OTC
Butacaine Sulfate OTC
Butamisol Hydrochloride RX
Butorphanol Tartrate RX
Cambendazole RX
Caramiphen Edisylate OTC
Carbadox OTC
Carbarsone OTC
Carbomycin OTC
Carfentanil Citrate RX
Carnidazole OTC
Carprofen RX
Castor Oil OTC
Cefadroxil RX
Cefpodoxime proxetil RX
Ceftiofur Crystalline Free Acid RX
Ceftiofur Hydrochloride RX
Ceftiofur Sodium RX
Cephapirin Benzathine OTC
Cephapirin Sodium OTC
Chloral Hydrate - Magnesium Sulfate, Pentobarbital RX
Chloramphenicol RX
Chloramphenicol Palmitate RX
Chlorhexidine Acetate OTC
Chlorhexidine Hydrochloride OTC
Chlorobutanol - Doxylamine Succinate RX
Chloroquine Phosphate - Embutramid, Lidocaine RX
Chlorothiazide RX
Chlorphenesin Carbamate RX
Chlortetracycline OTC
Chlortetracycline Bisulfate OTC
Chlortetracycline Calcium Complex OTC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OTC
Chorionic Gonadotropin RX
Chymotrypsin-Neomycin Palmitate, Trypsin, Hydrocortisone Acetate RX

Citric Acid OTC
Clavulanate Potassium - Amoxicillin Trihydrate RX
Clenbuterol Hydrochloride RX
Clindamycin Hydrochloride RX
Clomipramine Hydrochloride RX
Clopidol OTC
Cloprostenol Sodium RX
Clorsulon OTC
Clotrimazole RX
Cloxacillin Benzathine RX
Cloxacillin Sodium RX
Colistimethate Sodium RX
Colloidal Ferric Oxide OTC
Competitive Exclusion Culture OTC
Copper Naphthenate OTC
Corticotropin RX
Coumaphos OTC
Cupric Glycinate RX
Cuprimyxin RX
Cyclosporine RX
Cythioate RX
Danofloxacin RX
Decoquinatate OTC
Deracoxib RX
Deslorelin Acetate RX
Desoxycorticosterone Pivalate RX
Detomidine Hydrochloride RX
Dexamethasone RX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RX
Dexamethasone-21-isonicotinate RX
Dexmedetomidine hydrochloride RX
Dextrose OTC
Diatrizoate Meglumine - Diatrizoate Sodium RX
Diatrizoate Sodium - Diatrizoate Meglumine RX
Dibucaine Hydrochloride - Secobarbital Sodium RX

Dichlorophene OTC
Dichlorvos OTC
Diclazuril OTC
Diclofenac sodium RX
Dicloxacillin Sodium Monohydrate RX
Diethylcarbamazine Citrate RX
Difloxacin Hydrochloride RX
Dihydrostreptomycin Sulfate OTC
Dimethyl Sulfoxide RX
Dinoprost Tromethamine RX
Dipiperazine Sulfate OTC
Diprenorphine Hydrochloride - Etorphine Hydrochloride RX
Dirilotapide RX
Dithiazanine Iodide RX
Doramectin OTC
Doxapram Hydrochloride RX
Doxycycline Hyclate RX
Doxylamine Succinate RX
Droperidol - Fentanyl Citrate RX
Efrotomycin OTC
Embutramid - Mebezonium Iodide, Tetracaine Hydrochloride RX
- Chloroquine Phosphate, Lidocaine RX
Emodepside - Praziquantel RX
Enalapril Maleate RX
Enrofloxacin RX
Eprinomectin OTC
Epsiprantel RX
Erythromycin OTC
Erythromycin Phosphate OTC
Erythromycin Thiocyanate OTC
Estradiol OTC
Estradiol Benzoate OTC
Estradiol Valerate OTC
Ethopabate OTC
Ethylisobutrazine Hydrochloride RX

Etodolac RX
Etorphine Hydrochloride - Diprenorphine Hydrochloride RX
Famphur OTC
Febantel OTC
Fenbendazole OTC
Fenprostalene RX
Fentanyl Citrate - Droperidol RX
Fenthion OTC
Firocoxib RX
Florfenicol RX
Flumethasone RX
Flumethasone Acetate RX
Flunixin Meglumine RX
Fluocinolone Acetonide RX
Fluoxetine Hydrochloride RX
Fluprostenol Sodium RX
Flurogestone Acetate OTC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RX
Fomepizole RX
Formalin OTC
Furazolidone OTC
Furosemide RX
Gelatin - Sodium Chloride RX
Gentamicin Sulfate RX
Gleptoferron OTC
Glycine OTC
Glycopyrrolate RX
Gonadorelin Diacetate Tetrahydrate RX
Gonadorelin Hydrochloride RX
Griseofulvin RX
Guaifenesin RX
Halofuginone Hydrobromide OTC
Halothane RX
Haloxon OTC
Hemoglobin Glutamer-200 (bovine) RX

Hetacillin Potassium RX
Hexamethyltetracosane OTC
Hyaluronate Sodium RX
Hydrochlorothiazide RX
Hydrocortisone -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RX
Hydrocortisone Acetate - Polymyxin B Sulfate, Bacitracin Zinc,
Neomycin Sulfate RX - Kanamycin Sulfate, Amphomycin Calcium RX
- Tetracaine Hydrochloride, Neomycin Sulfate RX
Hydrogen Peroxide OTC
Hygromycin B OTC
Imidacloprid - Ivermectin RX
- Moxidectin RX
Imidocarb Dipropionate RX
Iodinated Casein OTC
Iodochlorhydroxyquin RX
Iron Dextran Complex OTC
Isoflupredone Acetate RX
Isoflurane RX
Isopropamide Iodide - Prochlorperazine Maleate RX
- Prochlorperazine Edisylate RX
- Prochlorperazine Dimaleate, Neomycin Sulfate RX
Ivermectin RX
Kanamycin Sulfate RX
Ketamine Hydrochloride RX
Ketoprofen RX
Laidlomycin Propionate Potassium OTC
Lasalocid OTC
Levamisole OTC
Levamisole Hydrochloride OTC
Levamisole Phosphate OTC
Levamisole Resinate OTC
Lidocaine -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RX
- Embutramid, Chloroquine Phosphate RX
Lincomycin OTC
Lincomycin Hydrochloride OTC

Lincomycin Hydrochloride Monohydrate RX
Liothyronine Sodium RX
Lufenuron OTC
Luprostiol RX
Maduramicin Ammonium OTC
Magnesium Sulfate – Pentobarbital, Chloral Hydrate RX
Marbofloxacin RX
Maropitant RX
Mebendazole RX
Meclofenamic Acid RX
Medetomidine RX
Megestrol Acetate RX
Melarsomine Dihydrochloride RX
Melatonin OTC
Melengestrol Acetate OTC
Meloxicam RX
Mepivacaine Hydrochloride RX
Methenamine Mandelate – Sulfamethizole RX
Methocarbamol RX
Methoxyflurane RX
Methylprednisolone RX
Methylprednisolone Acetate RX
Metoserpate Hydrochloride OTC
Mibolerone RX
Miconazole Nitrate RX
Milbemycin Oxime RX
Mometasone Furoate Monohydrate–Gentamicin Sulfate,Clotrimazole RX
Monensin OTC
Monensin Sodium OTC
Morantel Tartrate OTC
Moxidectin RX
Mupirocin RX
Myristyl-gamma-picolinium Chloride – Isoflupredone Acetate,
Tetracaine Hydrochloride, Neomycin Sulfate RX
N-butyl Chloride OTC

N-Butylscopolammonium bromide RX
Nalorphine Hydrochloride RX
Naloxone Hydrochloride RX
Naltrexone Hydrochloride RX
Naproxen RX
Narasin OTC
Neomycin Palmitate-Trypsin, HydrocortisoneAcetate, Chymotrypsin RX
Neomycin Sulfate OTC
Neostigmine Methylsulfate RX
Nequinatate OTC
Nicarbazin OTC
Nitarsonate OTC
Nitazoxanide RX
Nitenpyram OTC
Nitrofurazone OTC
Nitromide OTC
Norgestomet OTC
Novobiocin OTC
Novobiocin Sodium OTC
Nystatin OTC
Oleandomycin OTC
Oleate Sodium RX
Omeprazole RX
Orbifloxacin RX
Orgotein RX
Ormetoprim OTC
Oxfendazole RX
Oxibendazole RX
Oxymorphone Hydrochloride RX
Oxytetracycline OTC
Oxytetracycline (Monoalkyl Trimethyl Ammonium Salt) OTC
Oxytetracycline Dihydrate OTC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RX
Oxytocin RX
Penicillin G Benzathine - Penicillin G Procaine RX

Penicillin G Potassium OTC
Penicillin G Procaine OTC
Penicillin V Potassium RX
Pentazocine Lactate RX
Pentobarbital - Magnesium Sulfate, Chloral Hydrate RX
Pentobarbital Sodium RX
Phenothiazine OTC
Phenylbutazone RX
Phenytoin Sodium - Pentobarbital Sodium RX
Phosmet OTC
Pimobendan RX
Piperazine Citrate OTC
Piperazine Dihydrochloride - Trichlorfon, Phenothiazine RX
Piperazine Hydrochloride OTC
Piperazine Monohydrochloride OTC
Piperazine Phosphate OTC
Piperazine-carbon Disulfide Complex RX
Pirlimycin Hydrochloride RX
Pituitary Luteinizing Hormone RX
Poloxalene OTC
Polymyxin B Sulfate OTC
Polyoxyethylene 23 Lauryl Ether OTC
Polysulfated Glycosaminoglycan RX
Ponazuril RX
Porcine Insulin Zinc RX
Potassium Citrate OTC
Potassium Phosphate OTC
Pralidoxime Chloride RX
Praziquantel RX
Prednisolone RX
Prednisolone Acetate RX
Prednisolone Sodium Phosphate RX
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RX
Prednisolone Tertiary Butylacetate RX
Prednisone RX

Primidone RX
Prochlorperazine Dimaleate - Isopropamide Iodide, Neomycin Sulfate
RX
Prochlorperazine Edisylate - Isopropamide Iodide RX
Prochlorperazine Maleate - Isopropamide Iodide RX
Progesterone OTC
Promazine Hydrochloride RX
Proparacaine Hydrochloride RX
Propiopromazine Hydrochloride RX
Propofol RX
Prostalene RX
Pyrantel Pamoate RX/OTC
Pyrantel Tartrate OTC
Pyrilamine Maleate RX
Pyrimethamine - Sulfadiazine Sodium RX
Ractopamine Hydrochloride OTC
Robenidine Hydrochloride OTC
Romifidine Hydrochloride RX
Roxarsone OTC
Salinomycin Sodium OTC
Secobarbital Sodium - Dibucaine Hydrochloride RX
Selamectin RX
Selegiline Hydrochloride OTC
Selenium Disulfide OTC
Semduramicin Sodium OTC
Serum Gonadotropin OTC
Sevoflurane RX
Silver Sulfadiazine - Enrofloxacin RX
Sodium Chloride OTC
Sodium Selenite - Vitamin E RX
Sodium Sulfachloropyrazine Monohydrate OTC
Sodium Sulfate OTC
Spectinomycin Dihydrochloride Pentahydrate OTC
Spectinomycin Hydrochloride Pentahydrate RX
Spectinomycin Sulfate Tetrahydrate OTC

3. 영국

가. 영국의 동물약품 관련 규정

유럽연합은 동물약품과 관련된 유럽연합지시문서 Directive 2001 /82/EC 와 Directive 2004/28/EC를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발표하였으며, 각 회원 국가는 이것을 바탕으로 자국의 동물약품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1,2).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동물약품규정2005(법률문서 2005 No 2745)를 제정하여 모든 조항이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영국에서는 동물약품을 POM-V, POM-VPS, NFA-VPS 및 AVM-GSL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3).

- POM-V (Prescription Only Medicine-Veterinarian)

이 범주에 속하는 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진단하여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수의사와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 POM-VPS (Prescription Only Medicine-Veterinarian, Pharmacist, Suitably Qualified Person)

이 범주에 속하는 동물약품은 인가를 받은 자격자에 의해서만 처방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은 자격자에는 수의사, 약사, 등록된 적절한 자격자가 해당된다. 등록된 적절한 자격자는 훈련을 받고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동물약품의 일부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상점, 마구판매점, 농업자재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약품은 처방을 하기 전에 임상적인 진단과 수의사의 진료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의 판매는 그 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고 인가된 목적에 맞게 투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 약품의 사용법, 특히 주의사항 또는 금기사항에 대한 충고를 해야 한다.

- NFA-VPS (Non-Food Animal-Veterinarian, Pharmacist, Suitably Qualified Person)

이 범주에 속하는 동물약품은 식품생산동물에 사용하지 않는 동물약품으로서 등록된 적절한 자격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약품은 처방을 하기 전에 임상적인 진단과 수의사의 진료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의 판매는 그 약품을 안전하게 투여하고 인가된 목적에 맞게 투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 약품의 사용법, 특히 주의사항 또는 금기사항에 대한 충고를 해야 한다.

- AVM-GSL (Authorized Veterinary Medicine-General Sales List)

이 범주에 속하는 동물약품은 어느 소매업자나 다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아무 제약도 없다.

2009. 12월 현재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약품의 제품은 범주별로 각각:

POM	74종
POM-V	1,219종
POM-VPS	302종
NFA-VPS	49종
AVM-GSL	379종이다.

(<http://www.vmd.gov.uk/ProductInformationDatabase/Search.aspx>)

유럽의 식품위생규정 중 동물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외의 포유동물과 그 이외에 새, 파충류,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새우, 게 등), 꿀벌 등을 포함한다.

인체 의약품을 동물에 투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단,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공될 때는 예외이다.

식품위생규정을 따르지 않고 동물약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위

법이다.

식품위생규정에 따르지 않고 식품생산동물에게 동물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는 동물약품이나 마약과 향정신성동물약품을 선전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식품생산동물의 주인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을 위해 구입한 동물약품의 구입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식품생산동물에 동물약품을 투여한 수의사는 수의사의 이름, 약품명, 투여일과 투여량, 동물의 이름 및 출하제한기간을 동물관리자의 기록문서에 기입하여 주거나 동물관리인이 기입할 수 있도록 문서 형태의 자료를 주어야 한다.

동물관리인이 식품생산동물에 투여하기 위해 동물약품을 구입했을 때는 약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출하제한기간,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생산동물에 투여했을 때는 약품명, 투여일자, 투여량 및 동물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동물관리인은 동물약품을 투여하거나 폐기한 후 구입증빙서류와 사용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5년이 되기 이전에 도축하거나 판매 또는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물약품생산업자는 약품명 생산량 공급량 생산일 공급일 생산번호(batch number) 유효기간 및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한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동물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동물약품 도매업자는 구매와 판매의 모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POM-V 또는 POM-VPS로 분류된 약품을 구매 또는 판매한 공급업자는 거래일자 약품명 거래량 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처방전을 발부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무대신은 식품 내에 미량이라도 존재하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최대잔류허용치를 정할 수 없는 약품은 식품생산동물에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다.

1. Directive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Official Journal L -311, 28/11/2004:1-66.
2. Directive 2004/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2/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al products. Official Journal L - 136, 30/04/2004:58-84.
3. Veterinary Medicines Guidance Note;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 Prescription, Distribution, Categories and Supply.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England. 2009. 10.

나. 영국의 처방용 동물용 의약품 (2009. 12월 기준)

영국에서 동물약품을 POM-V, POM-VPS, NFA-VPS 및 AVM-GSL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유통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제제를 다음 표로 제시하였다.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dvocate Spot-on Solution for Extra-Large Dogs	Bayer Ag	EU/2/03/039/011-012	02/04/2003	Centralised	Imidacloprid, Moxidectin		Dogs	POM
Advocate Spot-on Solution for Large Cats	Bayer Ag	EU/2/3/039/3-4,14&22	02/04/2003	Centralised	Imidacloprid, Moxidectin		Cats	POM
Advocate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Bayer Ag	EU/2/3/039/9-10+17	02/04/2003	Centralised	Imidacloprid, Moxidectin		Dogs	POM
Advocate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Bayer Ag	EU/2/03/039/7-8+16	02/04/2003	Centralised	Imidacloprid, Moxidectin		Dogs	POM
Advocate Spot-on Solution for Small Cats	Bayer Ag	EU/2/3/039/1-2+13	02/04/2003	Centralised	Imidacloprid, Moxidectin	N	Cats	POM
Advocate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Bayer Ag	EU/2/3/039/5-6+15	02/04/2003	Centralised	Imidacloprid, Moxidectin		Dogs	POM
Aivlosin 8.5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Eco Animal Health Ltd	EU/2/04/044/003-004	05/10/2005	Centralised	Acetylisovaleryltylosin (declared active), Acetylisovaleryltylosin Tartrate	N	Pigs	POM
Clomicalm 20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98/007/002	01/04/1998	Centralised	Clomipramine Hydrochloride	N	Dogs	POM
Clomicalm 5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98/007/001	01/04/1998	Centralised	Clomipramine Hydrochloride	N	Dogs	POM
Clomicalm 80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98/007/003	01/04/1998	Centralised	Clomipramine Hydrochloride	N	Dogs	POM
Dexdomitor 0.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Orion Corporation	EU/2/02/033/001-002	30/08/2002	Centralised	Dex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
Dicural 100 mg Coated Tablets for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7/003/010-012	16/01/1998	Centralised	Difloxacin Hydrochloride	N	Dogs	POM
Dicural 100 mg/ml Oral Solution for Chickens and Turkey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7/003/001-003	16/01/1998	Centralised	Difloxacin	N	Chicken, Turkeys	POM
Dicural 15 mg Coated Tablets for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7/003/004-006	16/01/1998	Centralised	Difloxacin Hydrochloride	N	Dogs	POM
Dicural 150 mg Coated Tablets for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7/003/013-015	16/01/1998	Centralised	Difloxacin Hydrochloride	N	Dogs	POM
Dicural 50 mg Coated Tablets for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7/003/007-009	16/01/1998	Centralised	Difloxacin Hydrochloride	N	Dogs	POM
Dicural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7/003/016-018	16/01/1998	Centralised	Difloxacin Hydrochloride	N	Cattle, Dogs	POM
Draxxin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Pfizer Ltd	EU/2/03/041/001-005	11/11/2003	Centralised	Tulathromycin	N	Cattle, Pigs	POM
Equilis StrepE, Lyophilisate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4/043/001	01/04/2005	Centralised	Streptococcus equi	N	Horses	POM
Eurican Herpes 205 Powder and Solvent for Emulsion for Injection	Meriel	EU/2/01/029/001-003	26/03/2001	Centralised	Canine herpesvirus	N	Dogs	POM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Fevaxyn Pentofe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s	Fort Dodge Laboratories	EU/2/96/002/001-003	05/02/1997	Centralised	Chlamydom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
Gonazon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Injection of Female Salmonid Fish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3/040/001	22/07/2003	Centralised	Azagly-nafarelin	N	Salmon, Trout	POM
Ibafilin 15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22/01-2,5-6	13/06/2000	Centralised	Ibafloxacin	N	Dogs	POM
Ibafilin 3% Oral Gel for Dogs and Cat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02/00/22/009-010	13/06/2000	Centralised	Ibafloxacin	N	Cats, Dogs	POM
Ibafilin 3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22/013-014	13/06/2000	Centralised	Ibafloxacin	N	Dogs	POM
Ibafilin 30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22/03-4,7-8	13/06/2000	Centralised	Ibafloxacin	N	Dogs	POM
Ibafilin 7,5% Oral Gel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02/00/22/011-012	13/06/2000	Centralised	Ibafloxacin	N	Dogs	POM
Ibafilin 90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22/015-017	13/06/2000	Centralised	Ibafloxacin	N	Dogs	POM
Ibraxion Emulsion for Injection	Merial Animal Health Ltd	EU/2/99/017/001-006	09/03/2000	Centralised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
Incurin 1 mg Tablet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18/001	24/03/2000	Centralised	Estriol	N	Dogs	POM
Locatim, Oral Solution for Neonatal Calves less than 12 hours of age	Biokema Anstalt	EU/2/99/011/001	29/03/1999	Centralised	Bovine concentrated lactoserum	N	Cattle	POM
Metacam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03-005&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
Metacam 15 mg/ml Oral Suspension for Horse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09&030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Horses	POM
Metacam 2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Pigs and Horse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07-008,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Cattle, Horses, Pigs	POM
Metacam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01&010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Cattle, Pigs	POM
Metacam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06&011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Cats, Dogs	POM
Naxcel 10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Pfizer Ltd	EU/2/05/053/001-002	19/05/2005	Centralised	Ceftiofur, ceftiofur (declared active)	N	Pigs	POM
Neocolipor Suspension for Injection	Merial	EU/2/98/008/001-004	14/04/1998	Centralised	Escherichia coli	N	Pigs	POM
Nobilis IB4-91, Lyophilisate for Suspens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98/006/001-010	09/06/1998	Centralised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s	POM
Nobilis OR Inac Emulsion for Injection for Chicken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2/036/001-002	24/01/2003	Centralised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	N	Chickens	POM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Nobivac Bb for Cat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2/034/001	10/09/2002	Centralised	Bordetella bronchiseptica	N	Cats	POM
Nobivac Piro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4/046/001-003	02/09/2004	Centralised	Babesia canis	N	Dogs	POM
Novem 2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04/042/003-006	02/03/2004	Centralised	Meloxicam	N	Cattle, Pigs	POM
Novem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04/042/001-002	02/03/2004	Centralised	Meloxicam	N	Cattle, Pigs	POM
Pirsue 5 mg/ml Intramammary Solution for Cattle	Pfizer Ltd	EU/2/00/027/001-003	29/01/2001	Centralised	Pirlimycin Hydrochloride	N	Cattle	POM
Porcilis AR-T DF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26/001-004	16/11/2000	Centralised	Bordetella bronchiseptica, Pasteurella multocida	N	Pigs	POM
Porcilis Porcoli 20 ml Emuls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96/001/001	29/03/1996	Centralised	Escherichia coli	N	Pigs	POM
Porcilis Porcoli 50 ml Emuls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96/001/002	29/02/1996	Centralised	Escherichia coli	N	Pigs	POM
Previcox 227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Meril	EU/2/04/045/003-04+6	13/09/2004	Centralised	Firocoxib	N	Dogs	POM
Previcox 57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Meril	EU/2/04/045/001-02+5	13/09/2004	Centralised	Firocoxib	N	Dogs	POM
Profender Spot-on Solution for Large Cats	Bayer Ag	EU/2/5/054/012-017	27/07/2005	Centralised	Emodepside, Praziquantel	N	Cats	POM
Profender Spot-on Solution for Medium Cats	Bayer Ag	EU/2/5/054/006-011	27/07/2005	Centralised	Emodepside, Praziquantel	N	Cats	POM
Profender Spot-on Solution for Small Cats	Bayer Ag	EU/2/5/054/001-005	27/07/2005	Centralised	Emodepside, Praziquantel	N	Cats	POM
Pruban 0.1% Cream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0/024/001	16/11/2000	Centralised	Resocortol Butyrate	N	Dogs	POM
Purevax FeLV	Meril	EU/2/00/019/005-007	13/04/2000	Centralised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
Purevax RC	Meril	EU/2/04/051/001-002	23/02/2005	Centralised	Feline calici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Sodium chloride	N	Cats	POM
Purevax RCCh	Meril	EU/2/04/049/001-002	23/02/2005	Centralised	Chlamydo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
Purevax RCP	Meril	EU/2/04/052/001-002	23/02/2005	Centralised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
Purevax RCP FeLV	Meril	EU/2/04/048/001-002	23/02/2005	Centralised	Feline calici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
Purevax RCPCh	Meril	EU/2/04/050/001-002	23/02/2005	Centralised	Chlamydo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urevax RCPCh FeLV	Merial	EU/2/04/047/001-002	23/02/2005	Centralised	Chlamydom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
Quadrisol 100 mg/ml Oral Gel for Horse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97/005/001&005	04/12/1997	Centralised	Vedaprofen	N	Horses	POM
Rabigen SAG2 Oral Suspension, for Red Foxes and Raccoon Dogs	Virbac S.A.	EU/2/00/021/001-002	06/04/2000	Centralised	Rabies virus	N	Red Foxes	POM
SevoFlo 100% Inhalation Vapour, Liquid for Dogs	Abbott Laboratories Ltd	EU/2/02/035/007	11/12/2002	Centralised	Sevoflurane	N	Dogs	POM
Stronghold 120 mg Spot-on Solution	Pfizer Ltd	EU/2/99/014/005&010	25/11/1999	Centralised	Selamectin	N	Cats, Dogs	POM
Stronghold 15 mg Spot-on Solution	Pfizer Ltd	EU/2/99/014/001&012	25/11/1999	Centralised	Selamectin	N	Cats, Dogs	POM
Stronghold 240 mg Spot-on Solution	Pfizer Ltd	EU/2/99/014/006&011	25/11/1999	Centralised	Selamectin	N	Cats, Dogs	POM
Stronghold 30 mg Spot-on Solution	Pfizer Ltd	EU/2/99/014/003&007	25/11/1999	Centralised	Selamectin	N	Cats, Dogs	POM
Stronghold 45 mg Spot-on Solution	Pfizer Ltd	EU/2/99/014/002&008	25/11/1999	Centralised	Selamectin	N	Cats, Dogs	POM
Stronghold 60 mg Spot-on Solution	Pfizer Ltd	EU/2/99/014/004&009	25/11/1999	Centralised	Selamectin	N	Cats, Dogs	POM
Vaxxitek HVT + IBD	Merial	EU/2/02/032/001	09/08/2002	Centralised	Turkey herpesvirus	N	Chickens	POM
Virbagen Omega 10 MU for Dogs and Cats	Virbac S.A.	EU/2/01/030/002-004	06/11/2001	Centralised	Feline interferon		Cats, Dogs	POM
Virbagen Omega 5 MU for Dogs and Cats	Virbac S.A.	EU/2/01/30/001	06/11/2001	Centralised	Feline interferon	N	Cats, Dogs	POM
Zubrin 100 mg Oral Lyophilisates for Dogs	Schering-Plough Ltd	EU/2/00/028/004-005	13/03/2001	Centralised	Tepoxalin	N	Dogs	POM
Zubrin 200 mg Oral Lyophilisates for Dogs	Schering-Plough Ltd	EU/2/00/028/006-008	13/03/2001	Centralised	Tepoxalin	N	Dogs	POM
Zubrin 50 mg Oral Lyophilisates for Dogs	Schering-Plough Ltd	EU/2/00/028/002-003	13/03/2001	Centralised	Tepoxalin	N	Dogs	POM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CP Injection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5	30/06/1992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N	Horses	POM-V
ACP Injection 2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4	30/06/1992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N	Cats, Dogs	POM-V
ACP Tablets 10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3	24/07/1992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N	Cats, Dogs	POM-V
ACP Tablets 25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2	24/07/1992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N	Cats, Dogs	POM-V
Acticam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Omnipharm Ltd	EU/2/08/088/001-003	09/12/2008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Acticam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Omnipharm Ltd	EU/2/08/088/004	09/12/2008	Centralised	Meloxicam	N	Cats, Dogs	POM-V
Adequan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Janssen-Cilag Ltd	00242/4039	05/01/1996	National	Polysulphated Glycosaminoglycan	N	Horses	POM-V
Adequan 2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Janssen-Cilag Ltd	00242/4040	05/01/1996	National	Polysulphated Glycosaminoglycan	N	Horses	POM-V
Adequan IM 500 mg/5 ml Solution for Injection	Janssen-Cilag Ltd	00242/4042	20/06/199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Polysulphated Glycosaminoglycan	N	Horses	POM-V
Adocam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Niche Generics Ltd	19611/4000	11/08/2008	Mutually Recognised	Meloxicam	N	Dogs	POM-V
Advantage 100 Spot-on Solution for Dogs	Bayer plc	00010/4167	17/03/199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Advantage 250 Spot-on Solution for Dogs	Bayer plc	00010/4166	17/03/199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Advantage 40 mg Spot-on Solution for Small Cats, Small Dogs and Pet Rabbits	Bayer plc	00010/4117	14/08/2001	National	Imidacloprid	N	Cats, Dogs, Rabbits	POM-V
Advantage 40 Spot-on Solution for Cats	Bayer plc	00010/4164	17/03/199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Cats	POM-V
Advantage 40 Spot-on Solution for Dogs	Bayer plc	00010/4168	17/03/199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Advantage 400 Spot-on Solution for Dogs	Bayer plc	00010/4165	25/01/1999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Advantage 80 mg Spot-on Solution for Large Cats and Pet Rabbits	Bayer plc	00010/4134	23/07/2003	National	Imidacloprid	N	Cats, Rabbits	POM-V
Advantage 80 Spot-on Solution for Cats	Bayer plc	00010/4163	17/03/199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Cats	POM-V
Advantix Spot-on Solution for Dogs over 10 kg up to 25 kg	Bayer plc	00010/4138	23/12/2003	Mutually Recognised	Imidacloprid,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POM-V
Advantix Spot-on Solution for Dogs over 25 kg	Bayer plc	00010/4139	23/12/2003	Mutually Recognised	Imidacloprid,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dvantix Spot-on Solution for Dogs over 4 kg up to 10 kg	Bayer plc	00010/4137	23/12/2003	Mutually Recognised	Imidacloprid,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POM-V
Advantix Spot-on Solution for Dogs up to 4 kg	Bayer plc	00010/4136	23/12/2003	Mutually Recognised	Imidacloprid,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POM-V
Advocin 180, 18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Pfizer Ltd	00057/4211	16/11/2001	Mutually Recognised	Danofloxacin Mesylate	N	Cattle	POM-V
Advocin 2.5%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095	27/11/1995	National	Danofloxacin Mesylate	N	Cattle, Pigs	POM-V
Aftopur Alsap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63	07/06/2000	Mutually Recognised	Foot-and-mouth disease virus	N	Cattle, Goats, Sheep	POM-V
Aftopur DOE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62	21/12/2000	Mutually Recognised	Foot-and-mouth disease virus	N	Cattle, Goats, Pigs, Sheep	POM-V
Aivlosin 42.5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Eco Animal Health Ltd	EU/2/04/044/001-002	09/09/2004	Centralised	Acetylisovaleryltylosin (declared active), Acetylisovaleryltylosin Tartrate	N	Pigs	POM-V
Aivlosin 625 mg/g Granules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Chickens	Eco Animal Health Ltd	EU/2/04/044/007-008	09/09/2004	Centralised	Acetylisovaleryltylosin (declared active), Acetylisovaleryltylosin Tartrate	N	Chickens	POM-V
Aivlosin 625 mg/g Granules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Pigs	Eco Animal Health Ltd	EU/2/04/044/009-010	09/09/2004	Centralised	Acetylisovaleryltylosin (declared active), Acetylisovaleryltylosin Tartrate	N	Pigs	POM-V
Aivlosin 8.5 mg Oral Powder for Pigs	Eco Animal Health Ltd	EU/2/04/044/005-006	09/09/2004	Centralised	Acetylisovaleryltylosin (declared active), Acetylisovaleryltylosin Tartrate	N	Pigs	POM-V
Alamycin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37	19/07/2005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Alamycin Aerosol 3.58% w/w Cutaneous Spray,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53	05/06/1984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Alamycin LA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7	20/10/1993	National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Alamycin LA 300 Solution for Injection 300 mg/ml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3	13/12/1993	National	Oxytetracycline	N	Cattle, Pigs, Sheep	POM-V
Alfamed 2.5% w/v Cutaneous Spray, Solution for Cats and Dogs	Alfamed S.A.S.	17902/4014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Cats, Dogs	POM-V
Alfaxan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Jurox (UK) Plc	25296/4000	23/11/2006	Mutually Recognised	Alphaxalone	N	Cats, Dogs	POM-V
Alizin 3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S.A.	05653/4108	23/10/2001	Mutually Recognised	Aglepristone	N	Dogs	POM-V
Alpha Ject 2-2 Emulsion for Injection	Pharmaq AS	21714/4000	11/03/2009	National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virus	N	Salmon	POM-V
Altresyn 4 mg/ml Oral Solution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41	17/02/2009	Mutually Recognised	Altrenogest	N	Pigs	POM-V
Aludex 50 g/l, Concentrate for Cutaneous Solution	Intervet UK Ltd	01708/4408	01/04/1993	National	Amitraz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lvegesic Vet.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Dogs and Cats	Alvetra u. Werfft AG	32802/4000	02/09/2009	Mutually Recognised	Butorphanol Tartrate	N	Cats, Dogs, Horses	POM-V
Amfipen LA 10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33	29/08/1991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Amoxicure, 30% w/w Powder for Oral Solution	Oropharma n.v	13058/4004	02/04/200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Pigeons	POM-V
Amoxinsol 100% w/w Powder for Oral Solu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68	12/08/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hickens, Ducks, Turkeys	POM-V
Amoxinsol 50% w/w Powder for Oral Solu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19	27/07/199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Chickens, Ducks, Pigs, Turkeys	POM-V
Amoxival 40 mg Tablet Cat	Sogeval SA	20749/4000	10/07/1997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POM-V
Amoxival Vet 200 mg Tablets for Dogs	Sogeval SA	20749/4006	21/11/2008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oxival Vet 400 mg Tablets for Dogs	Sogeval SA	20749/4007	21/11/2008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oxycare 200 mg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3	29/12/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ycare 40 mg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2	19/1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ycare LA Suspension for Injection 15% w/v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1	05/1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Amoxycare Palatable Drops Powder for Oral Suspension 50 mg/ml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7	09/02/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ycare Suspension for Injection 15% w/v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0	09/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Amoxycare, 250 mg, Hard Capsules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36	03/05/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oxicillin 40 mg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9	22/09/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icillin Tablets 200 mg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3	17/1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ygen 200 mg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1	29/06/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ygen 40 mg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2	29/06/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Amoxyphen Injection 1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39	26/01/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Amoxyphen LA 1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40	26/01/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moxyvet 250 mg Hard Capsules	European Veterinary Supplies Ltd (C/O Manx Healthcare)	17686/4001	19/03/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pibrittin 15% w/v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58	24/08/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Ampicaps, 250 mg, Hard Capsule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10	24/03/1995	National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picare 250 mg Hard Capsule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35	24/03/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picillinvet 250 mg Hard Capsules	European Veterinary Supplies Ltd (C/O Manx Healthcare)	17686/4000	23/03/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AMX 10 mg/ml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Fish Treatment	Pharmaq AS	21714/4004	17/12/2008	Mutually Recognised	Deltamethrin	N	Salmon, Trout	POM-V
Anarthron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te Healthcare Ltd	27819/4000	01/05/2007	Mutually Recognised	Pentosan Polysulphate Sodium	N	Dogs	POM-V
Animedazon Spray	aniMedica GmbH	24745/4002	23/12/2008	Mutually Recognised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Animeloxan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aniMedica GmbH	24745/4001	15/08/2008	Mutually Recognised	Meloxicam	N	Dogs	POM-V
Anivac VHD	Pharmagal Bio s r .o.	33225/4000	17/10/2008	Mutually Recognised	Rabbit hemorrhagic disease virus	N	Rabbits	POM-V
Antirobe Capsules 150 mg	Pfizer Ltd	00057/4264	09/06/1989	National	Clindamycin Hydrochloride	N	Dogs	POM-V
Antirobe Capsules 150 mg	Quvera Ltd	20860/4001	15/06/2007	National (MAPI)	Clindamycin Hydrochloride	N	Dogs	POM-V
Antirobe Capsules 25 mg	Pfizer Ltd	00057/4263	09/06/1989	National	Clindamycin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Antirobe Capsules 300 mg	Pfizer Ltd	00057/4266	02/05/2002	National	Clindamycin	N	Dogs	POM-V
Antirobe Capsules 75 mg	Pfizer Ltd	00057/4265	09/06/1989	National	Clindamycin Hydrochloride	N	Dogs	POM-V
Antisedan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111	26/09/1989	National	Atipamezol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Apralan G200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108	06/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pramycin	N	Pigs	POM-V
Apralan Soluble Powder 50 g	Minster Veterinary Practice	19950/4000	18/08/2005	National (MAPI)	Apramycin Sulphate	N	Cattle, Chickens, Pigs	POM-V
Apralan Soluble Powder for Oral Solution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84	20/10/1992	National	Apramycin Sulphate	N	Cattle, Chickens, Pigs	POM-V
Aquatet 100% w/w Premix for Fish	Pharmaq Ltd	11003/4002	14/03/1994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Salmon, Trout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quaVac FNM Plus Vaccine	Schering-Plough Ltd	00201/4196	27/07/2001	Mutually Recognised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N	Salmon	POM-V
AquaVac Furovac	Schering-Plough Ltd	00201/4203	25/10/2005	Mutually Recognised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N	Salmon	POM-V
AquaVac Relera	Schering-Plough Ltd	00201/4224	16/10/2006	National	Yersinia ruckeri	N	Trout	POM-V
AquaVac Relera Concentrate for Dip Suspension 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Rainbow Trout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61	15/05/2009	Mutually Recognised	Yersinia ruckeri	N	Trout	POM-V
AquaVac Vibrio Immersion and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226	21/12/2006	Mutually Recognised	Listonella anguillarum	N	Trout	POM-V
AquaVac Vibrio Oral	Schering-Plough Ltd	00201/4225	20/12/2006	Mutually Recognised	Listonella anguillarum	N	Trout	POM-V
Aqupharm 1 0.9% Solution for Infusion	Animalcare Ltd	10347/4006	07/06/1988	National	Sodium Chloride	N	Cats, Dogs	POM-V
Aqupharm 18 Solution for Infusion	Animalcare Ltd	10347/4010	07/06/1993	National	Glucose (declared active), Glucose Anhydrous, Glucos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s, Dogs	POM-V
Aqupharm 3 Solution for Infusion	Animalcare Ltd	10347/4004	07/06/1993	National	Glucose Anhydrous, Glucos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s, Dogs	POM-V
Aqupharm 9 Ringer's Solution for Infusion	Animalcare Ltd	10347/4007	07/06/1988	National	Calcium Chloride Di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N	Cats, Dogs	POM-V
Aqupharm No 11	Animalcare Ltd	10347/4009	07/06/1988	National	Calcium Chloride Di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Lactate (declared activ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Arterva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9	17/06/2005	Mutually Recognised	Equine arteritis virus	N	Horses	POM-V
Atipam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s and Dogs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11	04/03/2008	Mutually Recognised	Atipamezol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Atopica 10 mg Soft Capsule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44	06/10/2003	Mutually Recognised	Cyclosporin A	N	Dogs	POM-V
Atopica 100 mg Soft Capsule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47	06/10/2003	Mutually Recognised	Cyclosporin A	N	Dogs	POM-V
Atopica 25 mg Soft Capsule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45	06/10/2003	Mutually Recognised	Cyclosporin A	N	Dogs	POM-V
Atopica 50 mg Soft Capsule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46	06/10/2003	Mutually Recognised	Cyclosporin A	N	Dogs	POM-V
Atocare 600 µg/ml Solution for Injection	Animalcare Ltd	10347/4016	26/07/1993	National	Atropine Sulphate Monohydrate	N	Cats, Dogs, Horses	POM-V
Aureomycin Ophthalmic Ointment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 1.0% Eye Ointmen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6	11/11/1990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POM-V
Aureomycin Soluble Olets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500 mg Tablet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5	12/11/1990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Baycox 2.5% w/v Oral Solution	Bayer plc	00010/4084	13/02/2004	National	Toltrazuril	N	Chickens	POM-V
Baycox 50 mg/ml Oral Suspension for Piglets, Calves and Lambs	Bayer plc	00010/4170	20/08/2009	National	Toltrazuril	N	Cattle, Pigs, Sheep	POM-V
Baycox 50 mg/ml Suspension	Bayer plc	00010/4152	05/09/2008	National	Toltrazuril	N	Pigs	POM-V
Baycox Bovis 50 mg/ml Oral Suspension	Bayer plc	00010/4144	30/01/2007	Mutually Recognised	Toltrazuril	N	Cattle	POM-V
Baycox Sheep 50 mg/ml Oral Suspension	Bayer plc	00010/4161	20/01/2009	Mutually Recognised	Toltrazuril	N	Sheep	POM-V
Baytril 10% Oral Solution	Bayer plc	00010/4077	11/11/1993	National	Enrofloxacin	N	Chicken, Turkeys	POM-V
Baytril 10%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080	11/11/1993	National	Enrofloxacin	N	Cattle, Pigs	POM-V
Baytril 2.5% Oral Solution	Bayer plc	00010/4078	11/11/1993	National	Enrofloxacin	N	Cattle, Exotic Animals	POM-V
Baytril 2.5%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075	22/04/1992	National	Enrofloxacin	N	Avian spp, Cats, Dogs, Exotic Animals, Reptiles, Small Mammals	POM-V
Baytril 5%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076	22/04/1992	National	Enrofloxacin	N	Cats, Cattle, Dogs, Pigs	POM-V
Baytril Flavour Tablets 15 mg	Bayer plc	00010/4081	20/05/1992	National	Enrofloxacin	N	Cats, Dogs	POM-V
Baytril Flavour Tablets 150 mg	Bayer plc	00010/4083	20/05/1992	National	Enrofloxacin	N	Dogs	POM-V
Baytril Flavour Tablets 50 mg	Bayer plc	00010/4082	22/04/1992	National	Enrofloxacin	N	Dogs	POM-V
Baytril Max 10%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103	14/06/1999	National	Enrofloxacin	N	Cattle	POM-V
Baytril Piglet Doser 0.5% Oral Solution	Bayer plc	00010/4079	11/11/1993	National	Enrofloxacin	N	Pigs	POM-V
Benazecare Flavour 20 mg Tablets for Dogs	Animalcare Ltd	10347/4022	24/08/2006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Benazecare Flavour 5 mg Tablets for Dogs and Cats	Animalcare Ltd	10347/4021	24/08/2006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Betamox 150 mg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71	30/06/1986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Betamox 200 mg Palatable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03	17/11/1987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Betamox 40 mg Palatable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87	22/09/1987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Betamox LA 1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70	30/06/1986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Betamox Palatable Drops Powder for Oral Suspension 50 mg/ml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01	25/02/1988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Bilosin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Bimeda Chemicals Ltd	02676/4165	25/05/2004	National	Tylosin	N	Pigs	POM-V
Bimamix Oral Suspension for Calves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47	12/06/2007	National	Neomycin (declared active), Neomycin Sulphate, Sulfadiazine	N	Cattle	POM-V
Bimotrim Co Injection Solution for Injection	Bimeda Chemicals Ltd	02676/4156	22/12/1992	National	Sulfadoxine, Trimethoprim	N	Cattle, Horses	POM-V
Bimoxyl Capsules, 250 mg, Hard Capsules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11	03/05/1995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Dogs	POM-V
Bimoxyl LA 150 mg/ml, Amoxicillin Suspension for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30	13/12/199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Cattle, Dogs, Pigs, Sheep	POM-V
Binixin 5%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101	25/11/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OM-V
Birnagen Forte As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15	22/06/2007	National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virus	N	Salmon	POM-V
Bisolvon 10 mg/g Oral Powder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2	08/04/2004	National	Bromhex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Pigs	POM-V
Bisolvon 3 mg/ml Solution for Inject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1	08/04/2004	National	Bromhex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Bloat Guard Premix 53% w/w Poloxalene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Agrimin Ltd	04261/4001	13/12/1991	National	Poloxalene	N	Cattle	POM-V
Bonocarp 10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UK Ltd	01708/4538	21/12/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Bonocarp 2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UK Ltd	01708/4536	21/12/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Bonocarp 50 mg Tablets for Dogs	Intervet UK Ltd	01708/4537	21/12/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Bovadox DC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46	24/08/1981	National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Bovadox DC Xtra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1	11/04/1994	National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Bovidec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04	22/09/1995	National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N	Cattle	POM-V
Bovilis Bovipast RSP	Intervet UK Ltd	01708/4458	25/06/1999	Mutually Recognised	Bovine parainfluenza virus 3,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Mannheimia haemolytica	N	Cattle	POM-V
Bovilis BTv8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8	01/04/2008	National	Bluetongue virus	N	Cattle, Sheep	POM-V

Product Name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Bovilis BVD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25	25/06/1999	Mutually Recognised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N	Cattle	POM-V
Bovilis Huskvac	Intervet UK Ltd	01708/4328	23/09/2005	National	Dictyocaulus viviparus	N	Cattle	POM-V
Bovilis IBR Marker Inac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3	19/07/2006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Bovilis IBR Marker Live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2	13/02/2002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Bovilis Ringvac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48	23/09/2005	National	Trichophyton verrucosum	N	Cattle	POM-V
Bovine Tuberculin PP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03326/4017	28/10/2005	National	Mycobacterium bovis subsp. bovis	N	Cattle, Deer, Pigs	POM-V
Bovivac S	Intervet UK Ltd	01708/4415	10/08/1999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attle	POM-V
Bronchi-Shield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2	18/07/2005	Mutually Recognised	Bordetella bronchiseptica	N	Dogs	POM-V
Buprecare 0.3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Animalcare Ltd	10347/4024	28/05/2008	Mutually Recognised	Buprenorphine (Declared active), Buprenorphine Hydrochloride	3	Cats, Dogs	POM-V
Bupregesic Multidose, 0.3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Reckitt Benckiser Healthcare UK Ltd	00063/4002	13/02/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Buprenorphine (Declared active), Buprenorphine Hydrochloride	3	Cats, Dogs	POM-V
Buprenodale 0.3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Dechra Limited	10434/4035	17/02/2009	Mutually Recognised	Buprenorphine (Declared active), Buprenorphine Hydrochloride	3	Cats, Dogs	POM-V
Buscopan 2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and Calv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69	02/02/2004	Mutually Recognised	Hyoscine Butylbromide	N	Cattle, Horses	POM-V
Buscopan Compositum Solution for Inject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65	29/01/2001	National	Hyoscine Butylbromide, Metamizole	N	Cattle, Dogs, Horses	POM-V
Busol - 0.004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Horses and Rabbits	aniMedica GmbH	24745/4000	25/01/2006	Mutually Recognised	Buserelin (declared active), Buserelin Acetate	N	Cattle, Horses, Rabbits	POM-V
Calicide Teflubenzuron 100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Trouw Ltd	01973/4002	18/08/1999	National	Teflubenzuron	N	Salmon	POM-V
Canaural Ear Drops, Suspension for Dogs and Cats	VetXX A/S	24883/4004	09/01/1996	National	Diethanolamine Fusidate, Framycetin Sulphate, Nystatin,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Canidryl 100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11	12/12/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nidryl 20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09	12/12/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nidryl 50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10	12/12/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nigen DHP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2	21/04/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ureomycin Soluble Powder 55 mg/g w/w Powder for Oral Solution for Calve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38	01/10/1995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Aureomycin Topical Powder 2% w/w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1% w/w Benzocaine Cutaneous Powder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75	19/11/1995	National	Benzocaine,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All Animals	POM-V
Aurizon Ear Drops, Suspension	Vetoquinol UK Ltd	08007/4085	19/07/2001	Mutually Recognised	Clotrimazole, Dexamethasone Acetate, Marbofloxacin	N	Dogs	POM-V
Aurofac 200 MA -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20.0% w/w Powder for Oral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73	01/10/1995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Aurofac 250 mg/g Granular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Alpharma Animal Health BVBA	21766/4005	28/09/2007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hickens, Ducks, Pigs, Turkeys	POM-V
Aurofac Granular 10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Alpharma Animal Health BVBA	21766/4004	27/05/2005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hickens, Ducks, Pigs, Turkeys	POM-V
Aurogran 500 50%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53	25/05/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hickens, Pigs, Turkeys	POM-V
Auroto Ear Drops	Dechra Limited	10434/4022	28/09/1990	National	Amethocaine Hydrochloride, Neomycin Sulphate, Thiabendazole	N	Cats, Dogs	POM-V
Avatec 150 G (Game Birds) 15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Alpharma Animal Health BVBA	21766/4002	05/05/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Lasalocid Sodium	N	Game Birds	POM-V
Avian Tuberculin PP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03326/4018	28/10/2005	National	Mycobacterium avium subsp. avium	N	Cattle, Deer, Pigs	POM-V
Avinew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07	23/07/2003	Mutually Recognised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AviPro Gumboro Vac Lyophilisate for Suspension for Chicken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1	18/11/1999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AviPro IBD Xtreme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6	29/05/2008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AviPro ND C131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7	22/08/2007	Mutually Recognised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AviPro Precise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3	23/01/2003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AviPro Salmonella Vac E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2	11/12/2000	National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AviPro Salmonella Vac T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4	10/10/2002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Avipro Thymovac Lyophilisate for Use in Drinking Water	Lohmann Animal Health	16894/4008	28/04/2009	Mutually Recognised	Chicken anaemia virus strain Cux-1	N	Chickens	POM-V
B. Braun Vet Care Hypertonic NaCl Solution (7.5 g/100 ml) Solution for Infusion for Horses, Cattle, Sheep, Goats, Pigs, Dogs and Cats	B. Braun Vet Care GMBH	30026/4002	21/10/2009	Mutually Recognised	Sodium Chloride	N	Cats, Cattle, Dogs, Goats, Horses, Pigs, Sheep	POM-V
Banacep Vet 5 mg Film-Coated Tablet for Dogs	Laboratorios Calier, SA	20634/4002	12/02/2008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Declared Active)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arprogesic 50 mg/ml Small Animal Injection for Cats and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7	02/08/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Cats, Dogs	POM-V
Cartrophen Vet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Arthroparm (Europe) Ltd	15519/4001	07/09/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Pentosan Polysulphate Sodium	N	Dogs	POM-V
Cefadale 300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27	22/08/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cephalexin)	N	Dogs	POM-V
Cefadale 600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25	22/08/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cephalexin)	N	Dogs	POM-V
Cefadale 75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26	22/08/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cephalexin)	N	Cats, Dogs	POM-V
Cefalexin Tablets Virbac 300 mg	Virbac S.A.	05653/4055	22/02/1999	National	Cefalexin (cephalexin)	N	Dogs	POM-V
Cefalexin Tablets Virbac 600 mg	Virbac S.A.	05653/4056	23/02/1999	National	Cefalexin (cephalexin)	N	Dogs	POM-V
Cefalexin Tablets Virbac 75 mg	Virbac S.A.	05653/4054	22/02/1999	National	Cefalexin (cephalexin)	N	Cats, Dogs	POM-V
Cefaseptin 120 mg Film-Coated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98	12/07/1999	National	Cefalexin	N	Dogs	POM-V
Cefaseptin 600 mg Film-Coated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99	12/07/1999	National	Cefalexin (cephalexin)	N	Dogs	POM-V
Cefenil 50 mg/ml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78	02/09/2009	Mutually Recognised	Ceftiofur (Declared Active), Ceftiofur Sodium	N	Cattle, Pigs	POM-V
Cephacare Flavour 250 mg Tablets for Dogs	Animalcare Ltd	10347/4026	19/12/2008	Mutually Recognised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Cephacare Flavour 50 mg Tablets for Cats and Dogs	Animalcare Ltd	10347/4025	19/12/2008	Mutually Recognised	Cefalexin Monohydrate	N	Cats, Dogs	POM-V
Cephacare Flavour 500 mg Tablets for Dogs	Animalcare Ltd	10347/4027	19/12/2008	Mutually Recognised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Cephaguard DC 150 mg Intramammary Ointment	Virbac S.A.	05653/4163	08/02/2005	Mutually Recognised	Cefquinome (Declared Active),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POM-V
Cephorum Film Coated Tablets 250 mg	Forum Products Limited	05928/4004	11/06/1999	National	Cefalexin (cephalexin), Cefalexin (Declared Active)	N	Dogs	POM-V
Cephorum Film Coated Tablets 500 mg	Forum Products Limited	05928/4005	11/05/2005	National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Ceporex 18% w/v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Cats and Dogs	Schering-Plough Ltd	00201/4139	23/12/1992	National	Cefalexin Sodium	N	Cats, Cattle, Dogs	POM-V
Ceporex Vet 250 mg Tablet for Dogs	Schering-Plough Ltd	00201/4075	16/07/1991	National	Cefadroxil Monohydrate, Cefalexin (Declared Active)	N	Dogs	POM-V
Ceporex Vet 50 mg Tablet for Cats and Dogs	Schering-Plough Ltd	00201/4074	16/07/1991	National	Cefadroxil Monohydrate, Cefalexin (Declared Active)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eporex Vet 500 mg Film-Coated Tablet for Dogs	Schering-Plough Ltd	00201/4189	31/03/2003	National	Cefadroxil Monohydrate, Cefalexin (Declared Active)	N	Dogs	POM-V
Ceporex Vet Oral Drops, Granules for Oral Suspension 1000 mg for Cats and Dogs	Schering-Plough Ltd	00201/4076	20/06/1991	National	Cefalexin	N	Cats, Dogs	POM-V
Cepravin Dry Cow 250 mg Intramammary Suspens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18	01/01/1993	National	Cephalonium	N	Cattle	POM-V
Cerenia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Pfizer Ltd	EU/2/06/062/005	29/09/2006	Centralised	Maropitant (declared active)	N	Dogs	POM-V
Cerenia 16 mg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6/062/001	29/09/2006	Centralised	Maropitant (declared active), Maropitant Citrate	N	Dogs	POM-V
Cerenia 160 mg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6/062/004	29/09/2006	Centralised	Maropitant (declared active), Maropitant Citrate	N	Dogs	POM-V
Cerenia 24 mg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6/062/002	29/09/2006	Centralised	Maropitant (declared active), Maropitant Citrate	N	Dogs	POM-V
Cerenia 60 mg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6/062/003	29/09/2006	Centralised	Maropitant (declared active), Maropitant Citrate	N	Dogs	POM-V
Cevac Chlamydia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1	19/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amydomphila abortus	N	Sheep	POM-V
Cevac Transmune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0	20/10/2006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Cevaxel 50 mg/ml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6	18/03/2009	Mutually Recognised	Ceftiofur (Declared Active), Ceftiofur Sodium	N	Cattle, Pigs	POM-V
Chanazine 10% Solution for Inject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6	03/09/1991	National	Xylazine	N	Horses	POM-V
Chanazine 2% Solution for Inject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5	03/09/1991	National	Xylazin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Chloromed 150 mg/g Oral Powder for Calves	Univet Ltd	05150/4001	29/10/2009	Mutually Recognised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Chloromed 15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Calves	Univet Ltd	05150/4000	28/10/2009	Mutually Recognised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Chlorsol 50% Powder for Oral Solu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52	07/08/1995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hickens, Pigs	POM-V
Chorulon 1500 IU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01	18/05/1994	National	Chorionic Gonadotrophin	4	Cattle, Dogs, Horses	POM-V
Chronogest CR, 20 mg Controlled Release Vaginal Sponge for Sheep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42	21/06/2005	Mutually Recognised	Flugestone Acetate	N	Sheep	POM-V
CIDR 1.38 g Vaginal Delivery System for Cattle	Pfizer Ltd	00057/4256	20/02/2008	Mutually Recognised	Progesterone	N	Cattle	POM-V
Circovac, Emulsion and Suspension for Emulsion for Injection for Pigs	Meriel	EU/2/07/075/001-004	21/06/2007	Centralised	Porcine circovirus-2	N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lamoxyl Long Acting 1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126	28/01/1998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Sheep	POM-V
Clamoxyl Palatable Tablets 200 mg	Pfizer Ltd	00057/4146	30/01/199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Clamoxyl Palatable Tablets 40 mg	Pfizer Ltd	00057/4145	19/02/199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Clamoxyl Ready-to-Use 1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107	03/12/1990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Clavaseptin 250 mg Palatable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114	18/06/2004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Clavaseptin 50 mg Palatable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113	18/06/2004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Clavaseptin 500 mg Palatable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115	18/06/2004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Clavucill Tablets 250 mg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48	29/08/2008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Diluted with Microcrystalline Cellulose 1:1	N	Cats, Dogs	POM-V
Clavucill Tablets 50 mg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47	29/08/2008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Diluted with Microcrystalline Cellulose 1:1	N	Cats, Dogs	POM-V
Clavucill Tablets 500 mg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49	29/08/2008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Clinacin 150 mg Tablet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26	12/03/2002	National	Clindamycin	N	Dogs	POM-V
Clinacin 25 mg Tablet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25	12/03/2002	National	Clindamycin	N	Dogs	POM-V
Clinacin 75 mg Tablet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8	26/01/2001	National	Clindamycin (Declared Active), Clindamycin Hydrochloride	N	Dogs	POM-V
Clinagel-Vet, Gentamicin 0.30% w/w Eye Gel	ECUPHAR N.V	32742/4000	23/11/2001	National	Gentamicin (declared active), Gentamicin Sulphate	N	Cats, Dogs	POM-V
Clindacyl 150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103	07/06/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Clindamycin (Declared Active)	N	Dogs	POM-V
Clindacyl 25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104	07/06/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Clindamycin (Declared Active)	N	Dogs	POM-V
Clindacyl 75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87	19/12/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Clindamycin (Declared Active), Clindamycin Hydrochloride	N	Dogs	POM-V
Co Trimazine Tablets 120 mg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3	20/1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s, Dogs	POM-V
Co Trimazine Tablets 480 mg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0	28/08/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Cobactan 2.5% w/v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Intervet UK Ltd	01708/4452	08/11/1993	Mutually Recognised	Cefquinome (Declared Active),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anigen DHPI	Intervet UK Ltd	01708/4519	20/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Canigen KC	Intervet UK Ltd	01708/4492	29/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detella bronchiseptica, Canine parainfluenza virus	N	Dogs	POM-V
Canigen Lepto 2	Intervet UK Ltd	01708/4493	29/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Canigen Parvo-C	Intervet UK Ltd	01708/4539	01/08/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Canigen Pi	Intervet UK Ltd	01708/4491	26/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parainfluenza virus	N	Dogs	POM-V
Canigen Rabies	Intervet UK Ltd	01708/4521	25/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Rabies virus	N	Cats, Dogs	POM-V
Caninsulin 40 IU/ml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44	08/12/1992	National	Insulin	N	Cats, Dogs	POM-V
Carpriev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1	05/09/2003	National	Carprofen	N	Dogs	POM-V
Carprieve 10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3	21/07/2009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ieve 5% w/v Small Animal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9	28/07/2005	National	Carprofen	N	Cats, Dogs	POM-V
Carprieve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5	21/07/2009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Cattle	POM-V
Carprieve Tablets 20 mg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0	05/09/2003	National	Carprofen	N	Dogs	POM-V
Carprodyl 20 mg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9	25/01/2005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dyl 50 mg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0	25/01/2005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dyl F 100 mg,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5	04/06/2008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dyl F 20 mg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3	04/06/2008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dyl F 50 mg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4	04/06/2008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gesic 10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1	05/08/2009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gesic 2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8	12/04/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Carprogesic 5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9	12/04/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opper Sulphate	United Kingdom Agriculture Supply Trade Assoc	02987/4005	06/07/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Copper Sulphate Anhydrous	N	Cattle, Goats, Sheep	POM-V
Coprin	Schering-Plough Ltd	00201/4093	04/06/1997	National	Calcium Copper Edetate, Copper (Declared Active)	N	Cattle	POM-V
Cortavance 0.584 mg/ml Cutaneous Spray Solution for Dogs	Virbac S.A.	EU/2/06/069/001	09/01/2007	Centralised	Hydrocortisone Aceponate	N	Dogs	POM-V
Corvental D 100 mg Hard Capsul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90	16/02/1993	National	Theophylline	N	Dogs	POM-V
Corvental D 200 mg Hard Capsul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91	16/02/1993	National	Theophylline	N	Dogs	POM-V
Corvental D 500 mg Hard Capsul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92	16/02/1993	National	Theophylline	N	Dogs	POM-V
Cotrimoxgen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79	29/06/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Coxi Plus, Sulfadimethoxine Sodium Anhydrous 25% w/w Powder for Oral Solution	Oropharma n.v	13058/4002	14/08/1997	National	Sulphadimethoxine Sodium Anhydrous	N	Pigeons	POM-V
Cronyxin Injection, 5% w/v Solution for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14	14/03/1996	National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OM-V
Crystapen 5 Mega Units 3 g Powder for Solut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061	05/12/1990	National	Benzyl Penicillin Sodium	N	Horses	POM-V
Cyclix 250 microgram/ml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S.A.	05653/4157	09/02/2006	Mutually Recognised	Cloprostenol (declared active), Cloprostenol Sodium	N	Cattle	POM-V
Cyclix Porcine 87.5 microgram/ml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S.A.	05653/4156	21/08/2006	Mutually Recognised	Cloprostenol (declared active), Cloprostenol Sodium	N	Pigs	POM-V
Cyclo Spray, Chlortetracycline HCl 2.45% w/w, Cutaneous Spray for Pigs, Sheep and Cattle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2	14/08/2006	National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Cycloprost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09	09/01/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Dinoprost	N	Cattle	POM-V
Cyclosol LA,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0	24/04/2002	Mutually Recognised	Oxytetracycline	N	Cattle, Pigs	POM-V
Cyla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0	23/02/2006	National	Rabbit hemorrhagic disease virus	N	Rabbits	POM-V
CynoVAX DAPPI + 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41	22/12/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CynoVAX PPI + 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42	22/12/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CZV Avian Tuberculin PPD	CZ VETERINARIA	30824/4000	24/07/2007	Mutually Recognised	Mycobacterium avium subsp. avium	N	Cattle	POM-V
Dalmazin	Fatro S.p.A	11557/4000	27/07/2000	Mutually Recognised	Cloprostenol	N	Cattle,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Danilon Equidos 1.5 g Granules for Top Dressing	Laboratorios Dr Esteve SA	08498/4000	02/08/2001	National	Suxibuzone	N	Horses	POM-V
Deccox, 6%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Sheep and Cattle	Alpharma Animal Health BVBA	21766/4003	28/07/2004	Mutually Recognised	Decoquinatate	N	Cattle, Sheep	POM-V
Delvosteron 100 mg,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21	31/03/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ligestone	N	Cats, Dogs, Ferrets	POM-V
Denagard 10% Premix, for Medicated Feed for Pi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3	10/10/2008	National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N	Pigs	POM-V
Denagard 12.5% w/v Concentrate for Oral Solu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80	31/07/1992	National	Tiamulin Hydrogen Fumarate	N	Chickens, Pigs, Turkeys	POM-V
Denagard 2%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67	31/07/1992	National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Tiamutin 80% Coated	N	Pigs	POM-V
Denagard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79	31/07/1985	National	Tiamulin Hydrogen Fumarate	N	Pigs	POM-V
Denagard 80%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68	07/01/1993	National	Tiamulin Hydrogen Fumarate	N	Pigs	POM-V
Depocillin 30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18	25/09/1996	National	Procaine Penicillin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Sheep	POM-V
Depo-Medrone V 4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51	20/10/1994	National	Methylprednisolone Acetate	N	Cats, Dogs, Horses	POM-V
Deposel Multidose 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7	30/09/1994	National	Barium Selenate, Selenium	N	Cattle, Sheep	POM-V
Detogesic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Vetcare Limited	03379/4000	07/04/2008	Mutually Recognised	Detomid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Devomycin 2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18	24/10/2005	National	Streptomycin Sul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Sheep	POM-V
Devomycin D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34	24/10/2005	National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Streptomycin Sul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Sheep	POM-V
Dexadreson 2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23	04/11/1994	National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Dexafort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24	04/11/1994	National	Dexamethasone Phenylpropionate,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Dilumarex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9	05/01/2006	Mutually Recognised		N	Chickens	POM-V
Diluvac Forte	Intervet UK Ltd	01708/4542	30/09/2008	National		N	Pigs	POM-V
Dimazon 5% w/v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406	27/04/2005	National	Frusem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Dinalgen 300 mg/ml Oral Solution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Cattle and Pigs	Laboratorios Dr Esteve SA	08498/4002	31/03/2009	Mutually Recognised	Ketoprofen	N	Cattle,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Dinalgen 6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Laboratorios Dr Esteve SA	08498/4001	09/04/2009	Mutually Recognised	Ketoprofen	N	Pigs	POM-V
Dolagis 50 mg Tablets for Dogs	Sogeval SA	20749/4005	31/01/2008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Dolethal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34	02/06/1992	National	Pentobarbitone Sodium	3	Cats, Cattle, Dogs	POM-V
Dolorex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 Dog and Cat	Intervet UK Ltd	01708/4535	05/07/2007	Mutually Recognised	Butorphanol (Declared Active), Butorphanol Tartrate	N	Cats, Dogs, Horses	POM-V
Domidine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8	06/12/2006	Mutually Recognised	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POM-V
Domitor 1 mg/ml Solution for Injection	Orion Corporation	03649/4001	31/10/1988	National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Domitor Injection	Quvera Ltd	20860/4002	12/04/2006	National (MAPI)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Domosedan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Orion Corporation	03649/4000	13/02/1985	National	Detomid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Domosedan Gel 7.6 mg/ml Oromucosal Gel	Orion Corporation	06043/4001	06/02/2009	Mutually Recognised	Detomid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Dopram V Injection 2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55	07/09/1994	National	Doxapram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Sheep	POM-V
Dorbene Vet 1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laboratorios SYVA, S.A.	31592/4000	06/12/2007	Mutually Recognised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Dormilan 1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Medetomidine Hydrochloride	Vetpharma Animal Health, S.L	32509/4001	25/03/2009	Mutually Recognised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Doxyseptin 300 mg Film-Coated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100	24/09/1998	National	Doxycycline Hyclate	N	Dogs	POM-V
Droncit Solution for Injection 5.68%	Bayer plc	00010/4098	22/06/1994	National	Praziquantel	N	Cats, Dogs	POM-V
Dunlop's 100% v/v Water for Injections Solvent for Parenteral Us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7	17/05/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N	All Animals	POM-V
Duofast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75	28/0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POM-V
Duowin	Virbac S.A.	05653/4046	24/07/1997	Mutually Recognised	Permethrin (cis:trans 40:60), Pyriproxyfen	N	Dogs	POM-V
Duphacillin 150 mg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78	10/04/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Tr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Duphacort Q 0.2%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55	30/06/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Duphacycline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5	19/07/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Duphacycline Aerosol 3.6% w/w Cutaneous Spray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39	29/06/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Duphacycline LA 20%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60	07/04/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N	Cattle, Pigs, Sheep	POM-V
Duphacycline XL Oxytetracycline 30%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61	24/01/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Duphalyte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03	25/07/2000	National	Calcium Chloride Hexahydrate, Cyanocobalamin, Cyanocobalamin (declared active), Dexpanthenol, Magnesium Sulphate Heptahydrate, Nicotinamide, Potassium Chlor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declared activ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Thiamine Hydrochloride (declared active)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Duphamox 150 mg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092	29/08/1986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Duphamox LA 1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093	21/08/1986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Cattle, Dogs, Pigs, Sheep	POM-V
Duphamox Palatable Drops 50 mg/m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23	19/09/1988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Duphamox Palatable Tablets 200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18	10/12/198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Duphamox Palatable Tablets 40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14	23/11/198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Cats, Dogs	POM-V
Duphape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011	22/07/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igs, Sheep	POM-V
Duphapen + Strep Procaine Penicillin 200 mg &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250 mg Suspens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38	07/04/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
Duphapen Fort Suspension for Injection, 30% w/v [300 mg/m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58	17/07/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igs	POM-V

Cobactan 25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445	09/02/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quinome (Declared Active),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Pigs	POM-V
Cobactan 4.5%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 and Cattle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9	11/06/2008	Mutually Recognised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Horses	POM-V
Cobactan LA 7.5%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Intervet UK Ltd	01708/4528	26/07/2006	Mutually Recognised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POM-V
Cobactan LC, 75 mg, Intramammary Ointment for Lactating Cattle	Intervet UK Ltd	01708/4451	27/03/1996	Mutually Recognised	Cefquinome (Declared Active),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POM-V
Cobactan MC Intramammary Suspension 75 mg Milking Cow	Intervet UK Ltd	01708/4444	29/05/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quinome (Declared Active), Cefquinome Sulphate	N	Cattle	POM-V
Coliscour Oral Solution of Colistin Sulphate 2 MIU/ml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7	03/12/2004	National	Colistin Sulphate	N	Pigs	POM-V
Colvasone 0.2%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09	30/06/1994	National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Combiclav Lactat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0	18/09/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Prednisolone	N	Cattle	POM-V
Combiclav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8	24/09/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POM-V
Combimox Injection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5	09/05/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Dogs	POM-V
Combimox Lactat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4	09/05/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Prednisolone	N	Cattle	POM-V
Combisyn 25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5	30/01/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Combisyn 50 mg Tablets for Dogs and Ca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4	28/01/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Combisyn Lactat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1	30/01/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Prednisolone	N	Cattle	POM-V
Combisyn Palatable Tablets 500 mg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4	18/07/2006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Combisyn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6	13/01/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POM-V
Comforion Vet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 Cattle and Swine	Orion Corporation	06043/4000	21/03/2005	Mutually Recognised	Ketoprofen	N	Cattle, Horses, Pigs	POM-V
Compagel Gel for Hors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9	15/08/2008	Mutually Recognised	2-Hydroxyethyl Salicylate, Heparin Sodium, Menthol Levo	N	Horses	POM-V
Companazone 25 mg Coated Tablet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079	21/05/1993	National	Phenylbutazone	N	Cats, Dogs	POM-V
Convenia 80 mg/ml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Pfizer Ltd	EU/2/06/059/001	19/06/2006	Centralised	Cefovecin (declared active), Cefovecin sodium	N	Cats, Dogs	POM-V

Duramune DAP + L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7	27/06/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corona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Duramune DAPPi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0	09/11/2005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Duramune DAPPi + 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16	02/07/2004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Duramune DAPPi + L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82	11/07/2002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corona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Duramune DAPPi + Lepto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8	19/07/2005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Duramune Pi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49	19/02/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parainfluenza virus	N	Dogs	POM-V
Duramune Pi + 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0	02/04/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parainfluenza 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Duramune Pi + L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1	02/04/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corona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Duramune Puppy DP + 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17	02/07/2004	Mutually Recognised	Canine corona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Durateston,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62	26/04/1993	National	Testosterone Decanoate, Testosterone Isocaproate, Testosterone Phenylpropionate, Testosterone Propionate	4	Cats, Dogs	POM-V
Duvaxyn EHV 1,4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70	14/12/1994	National	Equid herpesvirus 1, Equid herpesvirus 4	N	Horses	POM-V
Duvaxyn IE Plu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06	26/10/2005	National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Duvaxyn IE-T Plu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05	26/10/2005	National	Clostridium tetani,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Duvaxyn R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9	05/09/2008	Mutually Recognised	Equine rotavirus	N	Horses	POM-V
Duvaxyn 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04	26/10/2005	National	Clostridium tetani	N	Horses	POM-V
Duvaxyn WNV – Emul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EU/2/08/086/001-003	21/11/2008	Centralised	West Nile virus	N	Horses	POM-V
Dynaclav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9	18/09/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POM-V
Essotic, Ear Drops Suspension, for Dogs	Virbac S.A.	EU/2/08/085/001	20/11/2008	Centralised	Gentamicin (declared active), Gentamicin Sulphate, Hydrocortisone Aceponate, Miconazole (declared active), Miconazole Nitrate	N	Dogs	POM-V
Eazi-Breed CIDR 1.94 g Vaginal Delivery System	Pfizer Ltd	00057/4255	01/12/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gesterone	N	Cattle	POM-V
Econor 0.5% Premix for Medicated Feed for Pigs	Novartis Animal Health Austria GmbH	EU/2/98/010/023-024	12/03/1999	Centralised	Valnemulin Hydrochloride	N	Pigs	POM-V

Product Name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Econor 1% Premix for Medicated Feed for Pigs	Novartis Animal Health Austria GmbH	EU/2/98/010/004-006	12/03/1999	Centralised	Valnemulin Hydrochloride	N	Pigs	POM-V
Econor 10% Premix for Medicated Feed for Pigs	Novartis Animal Health Austria GmbH	EU/2/98/010/015-018	12/03/1999	Centralised	Valnemulin Hydrochloride	N	Pigs	POM-V
Econor 50% Premix for Medicated Feed for Pigs	Novartis Animal Health Austria GmbH	EU/2/98/010/021-022	12/03/1999	Centralised	Valnemulin Hydrochloride	N	Pigs	POM-V
Effipro 2.5 mg/ml Cutaneous Spray, Solution for Cats and Dogs	Virbac S.A.	05653/4148	01/05/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Cats, Dogs	POM-V
Eficur 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and Cattle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10	07/01/2009	Mutually Recognised	Ceftiofur (Declared Active), Ceftiofur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Enacard Tablets for Dogs 1 mg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4	12/03/1999	National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Enacard Tablets for Dogs 10 mg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7	17/03/1999	National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Enacard Tablets for Dogs 2.5 mg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5	17/03/1999	National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Enacard Tablets for Dogs 20 mg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8	15/03/1999	National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Enacard Tablets for Dogs 5 mg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6	17/03/1999	National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Engemycin 10% DD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07	11/12/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Sheep	POM-V
Engemycin 10% Farm Pack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74	27/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
Engemycin Aerosol 3.58% w/w Cutaneous Spray Solution	Intervet UK Ltd	01708/4337	18/01/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Engemycin LA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38	20/02/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Engemycin Spray, 3.84% w/w, Cutaneous Spray, Suspension for Cattle, Sheep and Pigs	Intervet UK Ltd	01708/4545	13/10/2009	Mutually Recognised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Enrox Flavour 15 mg Tablets for Dogs and Cats	Krka Dd	01656/4007	18/06/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s, Dogs	POM-V
Enrox Flavour 150 mg Tablets for Dogs	Krka Dd	01656/4009	18/06/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Dogs	POM-V
Enrox Flavour 50 mg Tablets for Dogs	Krka Dd	01656/4008	18/06/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Dogs	POM-V
Enroxil Max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Krka Dd	01656/4006	01/08/2007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tle	POM-V
Enroxil Oral Solution 100 mg/ml for Chickens and Turkeys	Krka Dd	01656/4021	09/09/2005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hickens, Turkeys	POM-V

Duphatrim 20 Tablets Trimethoprim 20 mg and Sulfadiazine 100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90	24/07/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Sodium, Trimethoprim	N	Cats, Dogs	POM-V
Duphatrim 80 Tablets Sulfadiazine 400 mg and Trimethoprim 80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89	24/07/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Duphatrim Bolus Trimethoprim 200 mg and Sulfadiazine 1.0 g Table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91	29/07/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POM-V
Duphatrim Equine Formula Trimethoprim 2.6 g and Sulfadiazine 13.0 g Oral Past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88	02/07/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Duphatrim Granules for Horses Trimethoprim 2.5 g and Sulfadiazine 12.5 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72	16/06/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Duphatrim IS Injectable Solution Trimethoprim 40 mg and Sulfadiazine 200 mg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40	25/06/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Duramune DA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5	27/06/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Duramune DAP + 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6	27/06/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Equip F	Pfizer Ltd	00057/4286	17/10/2005	National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Equip FT	Pfizer Ltd	00057/4285	17/10/2005	National	Clostridium tetani,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Equip T	Pfizer Ltd	00057/4288	17/10/2005	National	Clostridium tetani	N	Horses	POM-V
Equipalazone 1 g Oral Paste	Dechra Limited	10434/4006	26/08/1994	National	Phenylbutazone	N	Horses	POM-V
Equipalazone 1 g Oral Powder	Dechra Limited	10434/4005	26/08/1994	National	Phenylbutazone	N	Horses	POM-V
Equipalazone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07	26/08/1994	National	Phenylbutazone	N	Horses	POM-V
Equitrim Equine Oral Paste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28	14/04/1988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Equitrim Granul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44	17/08/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Ermogen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13	07/10/2005	National	Yersinia ruckeri	N	Trout	POM-V
Erythrocin 16.5% w/w Soluble Powder for Oral Solution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00	24/04/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Erythromycin	N	Chickens	POM-V
Erythrocin Proportioner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01	30/05/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Erythromycin	N	Chickens	POM-V
EstroPlan Injection, (250 mg/ml)	Parnell Technologies (UK) Limited	18731/4000	12/02/2002	National	Cloprostenol Sodium	N	Cattle, Horses	POM-V
Estrumate 2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41	18/12/1997	National	Cloprostenol Sodium	N	Cattle, Horses	POM-V
Eurican DHPPi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26	19/06/1997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Eurican L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48	28/10/2005	National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Eurican P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51	28/10/2005	National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Euthatal Solution for Injection 200 mg in 1 ml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12	20/09/1993	National	Pentobarbitone Sodium	3	Cats, Dogs	POM-V
Excenel 1 g Sterile Powder for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28	30/12/1996	National	Ceftiofur	N	Cattle, Horses, Pigs	POM-V
Excenel 4 g Sterile Powder for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26	30/12/1991	National	Ceftiofur	N	Cattle, Horses, Pigs	POM-V
Excenel RTU, 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and Cattle	Pfizer Ltd	00057/4238	21/07/1997	Mutually Recognised	Ceftiofur (Declared Active), Ceftiofur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Excis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10	07/05/1999	Mutually Recognised	Cypermethrin Cis 40 : Trans 60	N	Salmon	POM-V
Feligen RCP	Virbac S.A.	05653/4048	28/10/2005	National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Felimazole 2.5 mg Coated Tablets for Cats	Dechra Limited	10434/4050	19/11/2004	Mutually Recognised	Thiamazole	N	Cats	POM-V
Felimazole 5 mg Coated Tablets for Cats	Dechra Limited	10434/4061	22/01/2002	Mutually Recognised	Thiamazole	N	Cats	POM-V
Feline 3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4	28/10/2005	National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Felocell CVR	Pfizer Ltd	00057/4113	28/10/2005	National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Fenflor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Gosmore Limited	31901/4001	04/07/2007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Cattle	POM-V
Fenflor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Gosmore Limited	31901/4000	04/07/2007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Pigs	POM-V
Fenoflox 0.5% Oral Solution for Piglets	UNIVERSAL FARMA, S.L	19706/4000	07/08/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Pigs	POM-V
Fenoflox 2.5% Oral Solution for Calves	UNIVERSAL FARMA, S.L	19706/4001	07/08/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tle	POM-V
Fertagyl 0.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13	11/08/1994	National	Gonadorelin Acetate	N	Cattle	POM-V
Fevaxyn FeLV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74	18/04/1995	Mutually Recognised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V
Fevaxyn iCH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04	08/09/1995	National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Fevaxyn iCHPChlam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53	08/09/1995	National	Chlamydom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Finadyne 5% w/w Oral Paste	Schering-Plough Ltd	00201/4012	02/02/1989	National	Flunixin Meglumine	N	Horses	POM-V
Finadyne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009	27/08/1987	National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igs	POM-V
Finadyne Granules 25 mg/g	Schering-Plough Ltd	00201/4008	27/08/1987	National	Flunixin Meglumine	N	Horses	POM-V
Fipronil 2.5 mg/ml Cutaneous Spray, Solution for Cats and Dogs	Francodex Sante Animale S.A.S.	32991/4000	17/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Cats, Dogs	POM-V
Flea Spot-on Solution 10% w/v for Large Cats	Bayer plc	00010/4147	03/04/2007	National	Imidacloprid	N	Cats	POM-V
Fleegard 10 mg for Dogs Spot-on Solution	Bayer plc	00010/4111	30/03/2001	National	Pyriproxyfen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Fleegard 20 mg for Dogs Spot-on Solution	Bayer plc	00010/4112	30/03/2001	National	Pyriproxyfen	N	Dogs	POM-V
Fleegard 4 mg for Cats Spot-on Solution	Bayer plc	00010/4108	30/03/2001	National	Pyriproxyfen	N	Cats	POM-V
Fleegard 4 mg for Dogs Spot-on Solution	Bayer plc	00010/4110	30/03/2001	National	Pyriproxyfen	N	Dogs	POM-V
Fleegard 8 mg for Cats Spot-on Solution	Bayer plc	00010/4109	30/03/2001	National	Pyriproxyfen	N	Cats	POM-V
Flexicam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Dechra Veterinary Products A/S	EU/2/06/058/001-3	10/04/2006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Florkem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46	25/08/2009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Cattle, Pigs	POM-V
Florocol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50% w/w for Atlantic Salmon	Schering-Plough Ltd	00201/4029	13/09/1999	National	Florfenicol	N	Salmon	POM-V
Florvetol Cattle Injectable	Schering-Plough Ltd	00201/4221	06/03/200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Florfenicol	N	Cattle	POM-V
Florvetol Swine Injectable	Schering-Plough Ltd	00201/4220	06/03/2007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Florfenicol	N	Pigs	POM-V
Flunixin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Horses and Pi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70	26/11/1998	Mutually Recognised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igs	POM-V
Folliplan, 0.4% w/v Oral Solution	Intervet UK Ltd	01708/4549	07/09/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Altrenogest	N	Pigs	POM-V
Folltropin 700 IU Powder for Solution for Injection	Bioniche Animal Health Europe Ltd	21524/4000	08/11/2004	Mutually Recognised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porcine)	N	Cattle	POM-V
Fortekor 2.5 mg Tablets for Cats and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9	31/03/2003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Benazepril Hydrochloride (Declared Active)	N	Cats, Dogs	POM-V
Fortekor 20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Globalmed Ltd	24939/4009	08/10/2009	National (MAPI)	Benaze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Fortekor 20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30	12/07/1995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Fortekor 5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and Cats	Globalmed Ltd	24939/4008	08/10/2009	National (MAPI)	Benazepril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Fortekor 5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and Ca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29	12/07/1995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Fortekor Flavour 20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0	27/01/2006	National	Benazepril Hydrochloride (Declared Active)	N	Dogs	POM-V
Fortekor Flavour 5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59	27/01/2006	National	Benazepril Hydrochloride (Declared Active), Benazepril Pellets 10 %	N	Dogs	POM-V
Forthyron 200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5	13/04/2005	Mutually Recognised	L Thyroxine Sodium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Enroxil Solution for Injection 100 mg/ml for Cattle and Pigs	Krka Dd	01656/4019	15/03/2006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tle, Pigs	POM-V
Enroxil Solution for Injection 50 mg/ml for Calves, Pigs and Dogs	Krka Dd	01656/4020	15/03/2006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tle, Dogs, Pigs	POM-V
Enterisol Ileitis Lyophilisate and Diluent for Oral Suspension for Pig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3	16/05/2005	Mutually Recognised	Lawsonia intracellularis	N	Pigs	POM-V
Enurace 50, 50 mg Tablets for Dogs	Ecuphar Veterinary Products BV	35163/4000	04/01/2008	Mutually Recognised	Ephedrine (Declared Active), Ephedrine Hydrochloride	N	Dogs	POM-V
Enviracor	Pfizer Ltd	00057/4246	05/11/1999	National	Escherichia coli	N	Cattle	POM-V
Enzaprost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5	08/01/2001	Mutually Recognised	Dinoprost Trometamol	N	Cattle, Pigs	POM-V
Enzovax	Intervet UK Ltd	01708/4523	29/09/2005	National	Chlamydomphila abortus	N	Sheep	POM-V
Epiphen 30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67	11/04/1996	National	Phenobarbital	3	Dogs	POM-V
Epiphen 60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66	11/04/1996	National	Phenobarbital	3	Dogs	POM-V
Epiphen Solution 4% w/v, Oral Drops	Vetoquinol UK Ltd	08007/4081	16/07/2001	National	Phenobarbital	3	Dogs	POM-V
Equibactin Vet (333 mg/g + 67 mg/g) Oral Paste for Horses	LeVet Pharma B.V.	19994/4004	07/07/2008	Mutually Recognised	Sulf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Equidronate 500 mg Lyophilisate for Solution for Infusion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44	11/06/2009	National	Disodium Tiludronate Hemihydrate, Tiludronic Acid (Declared Active)	N	Horses	POM-V
Equifulvin Granules 7.5% Premix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25	28/01/1988	National (Informed Consent)	Griseofulvin	N	Horses	POM-V
Equilis Prequenza Te,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5/057/001-004	08/07/2005	Centralised	Clostridium tetani,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Equilis Prequenza,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5/056/001-004	08/07/2005	Centralised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Equilis Resequin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1	14/12/2000	Mutually Recognised	Equid herpesvirus 1, Equid herpesvirus 4,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Equilis Te,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5/055/001-002	28/03/2006	Centralised	Clostridium tetani	N	Horses	POM-V
Equimidine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Provivo Oy	25929/4000	09/12/2005	National	Detomid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Equinixin 2.5% w/w Granules for Horse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1	09/03/2006	National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N	Horses	POM-V
Equioxx 8.2 mg/g Oral Paste for Horses	Merial	EU/2/08/083/001	25/06/2008	Centralised	Firocoxib	N	Horses	POM-V

Galaxy DAP + L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79	12/11/2009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Galaxy DAPPI + L,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5	11/05/2006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Galaxy DAPPI + L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6	11/05/2006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corona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Galaxy PI + L,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6	11/03/2009	Mutually Recognised	Canine parainfluenza 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Galaxy Puppy D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1	17/12/2007	National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Gallimune 302 ND + IB + ED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5	15/10/2004	Mutually Recognised	Egg drop syndrome 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Gallimune 303 ND + IB + ART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6	15/10/2004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Gallimune 407 ND + IB + EDS + ART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7	15/10/2004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Egg drop syndrome 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Gallimune SE + ST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22	11/06/2007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Gallivac IB88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59	19/02/1999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s	POM-V
Gallivac IBD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2	16/04/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Gallivac SE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08	20/10/2003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Gastrogard 37% w/w Oral Paste for Horse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05	09/01/2003	Mutually Recognised	Omeprazole	N	Horses	POM-V
Gelofusine Veterinary 4% w/v Solution for Infusion	B. Braun Vet Care GMBH	30026/4000	03/06/1992	National	Succinylated Gelatin	N	Cats, Dogs, Horses	POM-V
Genestran 75 micrograms/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Horses and Pigs	aniMedica GmbH	24745/4010	27/11/2008	Mutually Recognised	Cloprostenol (declared active), Cloprostenol Sodium	N	Cattle, Horses, Pigs	POM-V
Genta Equine 10% Solution for Injection	Franklin Pharmaceuticals Ltd	33848/4000	07/07/2009	National	Gentamicin (declared active), Gentamicin Sulphate	N	Horses	POM-V
Gestavet 600 Powder and Solvent for Injection for Swine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11	01/07/2009	Mutually Recognised	Chorionic Gonadotrophin, Serum Gonadotrophin	4	Pigs	POM-V
Gonazon 18.5 mg Implant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3/040/002	22/07/2003	Centralised	Azagly-nafarelin (Declared active), Azagly-nafarelin acetate	N	Dogs	POM-V
Grisol V Granules 7.5%	Vetoquinol UK Ltd	08007/4022	10/11/1989	National (Informed Consent)	Griseofulvin	N	Horses	POM-V
Grisol V Powder 7.5% w/w Oral Powder	Vetoquinol UK Ltd	08007/4032	11/01/1993	National	Griseofulvin	N	Horse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Haemacel, Solution for Infusion 3.5%	Intervet UK Ltd	01708/4421	28/08/1997	National	Polygeline	N	Cats, Dogs, Horses	POM-V
Halocur 0.5 mg/ml Oral Solution for Calve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99/013/001-002	29/10/1999	Centralised	Halofuginone Lactate	N	Cattle	POM-V
Halothane-Vet 100% Inhalation Vapour, Liquid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27	04/10/1988	National	Halothane	N	All Animals, Horses	POM-V
HatchPak Avinew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28	08/08/2008	Mutually Recognised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HatchPak Avinew IB H120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25	05/06/2008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HatchPak IB H120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26	05/06/2008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s	POM-V
Hexamine and Sodium Acid Phosphate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38	18/07/1995	National	Hexamine, Sodium Acid Phosphate Anhydrous	N	Dogs	POM-V
Hexazol LA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2	03/07/2000	National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OM-V
Hiprabovis Pneumos Emulsion for Injection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5	15/05/2007	Mutually Recognised	Histophilus somni, Mannheimia haemolytica	N	Cattle	POM-V
Hipracox Broilers DW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7	23/05/2007	Mutually Recognised	Eimeria acervulina, Eimeria maxima, Eimeria mitis, Eimeria praecox, Eimeria tenella	N	Chickens	POM-V
Hipracox Broilers Oral Suspension for Chickens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4	01/06/2006	Mutually Recognised	Eimeria acervulina, Eimeria maxima, Eimeria mitis, Eimeria praecox, Eimeria tenella	N	Chickens	POM-V
Hipracox Broilers Spray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8	23/05/2007	Mutually Recognised	Eimeria acervulina, Eimeria maxima, Eimeria mitis, Eimeria praecox, Eimeria tenella	N	Chickens	POM-V
Hipragumboro G97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2	26/07/2002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HY-50 Vet 17 mg/ml Solution for Injection	Vet Medic OY	19785/4000	12/06/1998	Mutually Recognised	Sodium Hyaluronate	N	Horses	POM-V
Hyalovet 20 mg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37	07/11/1994	National	Sodium Hyaluronate	N	Horses	POM-V
HydroDoxx 500 mg/g Powder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Chickens and Pigs	Huvepharma N.V.	30282/4012	15/05/2009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Chickens, Pigs	POM-V
Hylartil Vet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50	19/07/1994	National	Sodium Hyaluronate	N	Horses	POM-V
Hyonate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085	19/08/1981	National	Sodium Hyaluronate	N	Horses	POM-V
Hyoresp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89	15/07/1998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HyperCard 10 mg Coated Tablets for Cats	Dechra Limited	10434/4060	16/08/2000	Mutually Recognised	Diltiazem Hydrochloride	N	Cat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Hyperimmune-Equine Plasma	Veterinary Immunogenics Ltd	18513/4000	06/01/2003	National	Equine plasma	N	Horses	POM-V
Hyperimmune-RE Equine Plasma	Veterinary Immunogenics Ltd	18513/4001	03/04/2007	Mutually Recognised	Equine plasma, Rhodococcus equi	N	Horses	POM-V
Hypnorm Solution for Injection	Abbeyvet Export LLP	21757/4000	26/07/1995	National	Fentanyl Citrate, Fluanisone	2	Guinea Pigs, Rabbits, Rats, Small Rodents	POM-V
Imizol 8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07	18/07/1990	National	Imidocarb Dipropionate	N	Cattle	POM-V
Improvac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Pfizer Ltd	EU/2/09/095/001-003	11/05/2009	Centralized	2-10-GnRF-Diphtheria Toxoid conjugate	N	Pigs	POM-V
Imuresp RP	Pfizer Ltd	00057/4245	07/10/2005	National	Bovine parainfluenza virus 3,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Ingelvac CircoFlex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07/079/001-004	13/02/2008	Centralized	Porcine circovirus-2	N	Pigs	POM-V
Ingelvac M Hyo Emulsion for Injection for Pig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67	21/02/2002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Ingelvac MycoFlex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80	04/08/2009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Ingelvac PRRS KV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64	21/09/2000	Mutually Recognised	Porcine respiratory and reproductive syndrome virus	N	Pigs	POM-V
Insuвет Lente 100 IU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79	31/07/1993	National	Insulin Bovine	N	Cats, Dogs	POM-V
Insuвет Neutral 100 IU/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75	04/08/1993	National	Insulin Bovine	N	Cats, Dogs	POM-V
Insuвет Protamine Zinc 100 IU/ml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76	06/09/1993	National	Insulin (Declared active), Insulin Bovine	N	Cats, Dogs	POM-V
Intradine 30.89%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86	02/06/1988	National	Sulphadimidine	N	Cattle, Pigs, Sheep	POM-V
Intra-Epicaine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16	20/12/1990	National	Mepivaca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Intubeaze 20 mg/ml Oromucosal Spray	Dechra Limited	10434/4004	02/09/1996	National	Lidocaine Hydrochloride	N	Cats	POM-V
Isoba 100% w/w Inhalation Vapour, Liquid	Schering-Plough Ltd	00201/4175	02/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Isoflurane	N	Cats, Dogs, Horses, Ornamental Fowl, Reptiles, Small Mammals	POM-V
Isocare 100% w/v Inhalation Vapour, Liquid	Baxter Healthcare Ltd	00116/4000	21/07/1997	National	Isoflurane	N	Cats, Dogs, Horses	POM-V
Isofane 100% w/w Inhalation Vapour, Liquid	Piramal Healthcare UK Limited	29595/4000	28/06/1999	National	Isoflurane	N	Cats, Dogs, Horses, Ornamental Fowl, Reptiles, Small Rodents	POM-V
IsoFlo 100% w/w Inhalation Vapour, Liquid	Abbott Laboratories Ltd	00037/4066	05/03/1996	Mutually Recognised	Isoflurane	N	Cage Birds, Cats, Dogs, Horses, Reptiles, Small Mammals	POM-V

Isoflo Vet 100% w/w Inhalation Vapour, Liquid	Abbott Laboratories Ltd	00037/4067	23/10/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Isoflurane	N	Rabbits	POM-V
Isoflurane-Vet 100% w/w Inhalation Vapour, Liquid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31	15/11/1996	National	Isoflurane	N	Cage Birds, Cats, Dogs, Horses	POM-V
Isolec Solution for Infusion (Compound Sodium Lactate Intravenous Infusion BP (Vet), also known as Hartmann's Solution)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40	02/11/1998	National	Calcium Chloride Di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Lact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Iso-Vet Isoflurane 1000 mg/g Inhalation Vapour, Liquid for Use in Horses, Dogs, Cats, Ornamental Birds, Reptiles, Rats, Mice, Hamsters, Chinchillas, Gerbils, Guinea Pigs and Ferrets	Piramal Healthcare UK Limited	29595/4001	12/08/2009	Mutually Recognised	Isoflurane	N	Cats, Dogs, Horses, Ornamental Fowl, Reptiles, Small Mammals	POM-V
Isoxetol 100% w/w Inhalation Vapour, Liquid	Schering-Plough Ltd	00201/4181	07/08/2002	Mutually Recognised	Isoflurane	N	Cats, Dogs, Ornamental Fowl, Reptiles, Small Mammals	POM-V
Itrafungol 10 mg/ml Oral Solution	Janssen-Cilag Ltd	00242/4054	13/12/2002	Mutually Recognised	Itraconazole	N	Cats	POM-V
Iverin Cattle	Laboratorios Calier, SA	20634/4001	13/08/2004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OM-V
Juramate 250 µg/ml Solution for Injection	Jurox (UK) plc	25296/4001	14/08/2008	National	Cloprostenol, Cloprostenol Sodium	N	Cattle, Horses	POM-V
Karidox 100 mg/ml Oral Solution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Chickens and Pigs	Laboratorios Karizoo S.A	31223/4000	20/08/2008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Chickens, Pigs	POM-V
Katavac CH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2	09/08/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Katavac Eclips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79	29/06/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line calici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Ketaset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37	20/04/1990	National	Ketamine (Declared Active), Ketamine Hydrochloride	4	Cats, Dogs, Horses, Sub Human Primates	POM-V
Ketofen 1% Solution for Injectio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73	18/05/1992	National	Ketoprofen	N	Cats, Dogs	POM-V
Ketofen 10% Solution for Injectio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67	12/02/1992	National	Ketoprofen	N	Cattle, Horses, Pigs	POM-V
Ketofen 20 mg Tablet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76	30/04/1992	National	Ketoprofen	N	Cats, Dogs	POM-V
Ketofen 5 mg Tablet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74	29/04/1992	National	Ketoprofen	N	Cats, Dogs	POM-V
KetoProPig 100 mg/ml Oral Solution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Pig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1	16/07/2008	Mutually Recognised	Ketoprofen	N	Pigs	POM-V
Kloxerate DC 500 mg Intramammary Suspension, Dry Cow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087	10/10/1991	National (Informed Consent)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Kloxerate Gold DC Intramammary Suspens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71	06/06/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Trihydrat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Kloxerate Plus DC Intramammary Suspension, Dry Cow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086	22/04/198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Trihydrat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Forthyron 400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6	13/04/2005	Mutually Recognised	L Thyroxine Sodium	N	Dogs	POM-V
Forthyron 400 Microgram Snap Tablet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12	18/06/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othyroxine sodium	N	Dogs	POM-V
Foston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426	01/09/1991	National	Toldimphos Sodium	N	Cattle, Dogs	POM-V
Framomycin 1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6	25/10/1994	National	Framycetin Sulphate	N	Cattle	POM-V
Frontline Combo Spot-on Cat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0	29/01/2004	Mutually Recognised	(S)-Methoprene, Fipronil	N	Cats	POM-V
Frontline Combo Spot-on Dog L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3	29/01/2004	Mutually Recognised	(S)-Methoprene, Fipronil	N	Dogs	POM-V
Frontline Combo Spot-on Dog M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2	29/01/2004	Mutually Recognised	(S)-Methoprene, Fipronil	N	Dogs	POM-V
Frontline Combo Spot-on Dog 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1	29/01/2004	Mutually Recognised	(S)-Methoprene, Fipronil	N	Dogs	POM-V
Frontline Combo Spot-on Dog XL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4	29/01/2004	Mutually Recognised	(S)-Methoprene, Fipronil	N	Dogs	POM-V
Frontline Spot on Cat	Quvera Ltd	20860/4004	28/01/2005	National (MAPI)	Fipronil	N	Cats	POM-V
Frontline Spray 0.25% w/v Cutaneous Spray Solutio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13	09/12/1994	National	Fipronil	N	Cats, Dogs	POM-V
Frusecare 40 mg Tablet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03	13/05/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Frusemide	N	Cats, Dogs	POM-V
Frusedale 40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33	14/08/1998	National	Frusemide	N	Cats, Dogs	POM-V
Frusemide 40 mg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59	21/05/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Frusemide	N	Cats, Dogs	POM-V
Fuciderm Gel 0.5% w/w Fusidic acid, 0.1% w/w Betamethasone	Dechra Veterinary Products A/S	24883/4001	07/03/1995	National	Betamethasone Valerate, Fusidic Acid	N	Dogs	POM-V
Fucithalmic Vet 10 mg/g Eye Drops, Suspension for Dogs, Cats and Rabbits	VetXX A/S	24883/4003	11/11/1993	National	Fusidic Acid (Declared active), Fusidic Acid Hemihydrate	N	Cats, Dogs, Rabbits	POM-V
Furogen 2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14	13/10/2005	National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N	Salmon	POM-V
Furosemide Tablets BP (Vet) 20 mg	Millpledge Ltd	04409/4001	10/09/1998	National	Frusemide	N	Cats, Dogs	POM-V
Furosemide Tablets BP (Vet) 40 mg	Millpledge Ltd	04409/4000	10/09/1998	National	Frusemide	N	Cats, Dogs	POM-V
Galastop 50 ug/ml Oral Solution	Ceva Vetem S.p.A	28350/4001	22/04/1996	National	Cabergoline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Lincocin Soluble Powder 400 mg/g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237	21/01/1993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N	Pigs	POM-V
Lincocin Sterile Solution 100 mg/ml Sterile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59	20/07/1992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N	Cats, Dogs, Pigs	POM-V
Lincocin Tablets 100 mg	Pfizer Ltd	00057/4252	14/05/1990	National	Lincomycin (Declared Active), Lincomycin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Lincocin Tablets 500 mg	Pfizer Ltd	00057/4253	14/05/1990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Lincoject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3	20/11/2001	National	Lincomycin (Declared Active), Lincomycin Hydrochloride	N	Cats, Dogs, Pigs	POM-V
Linco-Spectin 100 Soluble Powder,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236	22/02/1993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Spectinomycin Sulphate	N	Pigs, Poultry	POM-V
Linco-Spectin Premix for Medicated Feed	Pfizer Ltd	00057/4233	23/12/1994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Spectinomycin Sulphate	N	Pigs	POM-V
Liquidox 100 mg/ml Oral Solution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Chickens and Pigs	Chemo Iberica S.A	21690/4001	20/08/2008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Chickens, Pigs	POM-V
Locovetic 3%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21	17/01/1997	National	Adrenaline Acid Tartrate, Lidoca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Horses	POM-V
Loxicom 0.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EU/2/08/090/001-002	10/02/2009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Lutalyse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60	07/10/2005	National	Dinoprost Trometamol	N	Cattle, Horses, Pigs	POM-V
Luteosyl 0.07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ows and Sows	Laboratorios SYVA, S.A.	31592/4001	08/05/2009	Mutually Recognised	d-Cloprostenol (declared active), d-Cloprostenol Sodium	N	Cattle, Pigs	POM-V
M + PAC	Schering-Plough Ltd	00201/4179	23/05/2002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Malaseb Shampoo	VetXX A/S	24883/4005	14/11/2007	Mutually Recognised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Miconazole Nitrate	N	Cats, Dogs	POM-V
Mamyzin 333.3 mg/ml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62	15/03/2000	National	Penethamate Hydriodide	N	Cattle	POM-V
Maprelin 75 µ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VEYX-PHARMA GMBH	27569/4000	24/06/2009	Mutually Recognised	Peforelin (non uk)	N	Pigs	POM-V
Marbocyl 10% Solution for Injection	Vetoquinol SA	06462/4003	14/02/1997	National	Marbofloxacin	N	Cattle, Pigs	POM-V
Marbocyl 2% Solution for Injection	Vetoquinol SA	06462/4005	25/06/1998	National	Marbofloxacin	N	Cattle, Pigs	POM-V
Marbocyl 20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59	10/02/1995	National	Marbofloxacin	N	Dogs	POM-V
Marbocyl 5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58	10/02/1995	National	Marbofloxacin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Marbocyl 80 mg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60	10/02/1995	National	Marbofloxacin	N	Dogs	POM-V
Marbocyl Bolus 50 mg Tablet	Vetoquinol UK Ltd	08007/4073	05/08/1998	National	Marbofloxacin	N	Cattle	POM-V
Marbocyl P 20 mg Tablet	Vetoquinol UK Ltd	08007/4110	20/06/2003	National	Marbofloxacin	N	Dogs	POM-V
Marbocyl P 5 mg Tablet	Vetoquinol UK Ltd	08007/4109	20/06/2003	National	Marbofloxacin	N	Cats, Dogs	POM-V
Marbocyl P 80 mg Tablet	Vetoquinol UK Ltd	08007/4111	20/06/2003	National	Marbofloxacin	N	Dogs	POM-V
Marbocyl SA 200 mg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79	08/03/1999	National	Marbofloxacin	N	Cats, Dogs	POM-V
Marbocyl Solo 10%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Vetoquinol UK Ltd	08007/4118	14/03/2007	Mutually Recognised	Marbofloxacin	N	Cattle	POM-V
Masivet 150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AB Science	EU/2/08/087/001-002	17/11/2008	Centralised	Masitinib (declared active), Masitinib mesylate	N	Dogs	POM-V
Masivet 50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AB Science	EU/2/08/087/001-002	17/11/2008	Centralised	Masitinib (declared active), Masitinib mesylate	N	Dogs	POM-V
Mastiplan LC, 300 mg/20 mg (Cefapirin/Prednisolone), Intramammary Suspension for Lactating Cows	Intervet UK Ltd	01708/4534	25/05/2007	Mutually Recognised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pirin Sodium, Prednisolone	N	Cattle	POM-V
Medesedan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and Cattle	CP Pharma Handelsgesellschaft mbH	20916/4002	03/08/2007	Mutually Recognised	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POM-V
Medetor 1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 and Cat	CP Pharma Handelsgesellschaft mbH	20916/4001	10/07/2007	Mutually Recognised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Medicinal Oxygen Air Liquide Sante 100% Inhalation Gas for Dogs, Cats and Horses	Air Liquide Sante International	EU/2/06/067/001-002	20/12/2006	Centralised	Oxygen	N	Cats, Dogs, Horses	POM-V
Medrone V Tablets 2 mg	Pfizer Ltd	00057/4227	29/11/1991	National	Methyl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Medrone V Tablets 4 mg	Pfizer Ltd	00057/4225	29/11/1991	National	Methyl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Meflosyl 5%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92	27/03/1998	National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OM-V
Meloxidyl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Ceva Sante Animale	EU/2/06/070/001-003	15/01/2007	Centralised	Meloxicam		Dogs	POM-V
Meloxidyl 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Ceva Sante Animale	EU/2/06/070/004	15/01/2007	Centralised		N	Cats, Dogs	POM-V
Meloxivet 0.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Janssen Animal Health Bvba	EU/2/07/077/001-002	14/11/2007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Mesalin 0.2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46	20/05/1994	National	Oestradiol Benzoate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Metacam 0.5 mg/ml Oral Suspension for Cat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26&033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Cats	POM-V
Metacam 0.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12-013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Metacam 1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16-019&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Metacam 2.5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EU/2/97/004/020-023&	07/01/1998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Metricure 500 mg Intrauterine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316	14/10/2003	National	Cefapirin, Cefapirin Benzathine	N	Cattle	POM-V
Micotil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93	21/08/1991	National	Tilmicosin	N	Cattle, Sheep	POM-V
Microbex	Virbac S.A.	05653/4143	09/06/2009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Dogs	POM-V
Milbemax Film-Coated Tablets for Ca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5	17/04/2003	Mutually Recognised	Milbemycin Oxime (A3 and A4), Praziquantel	N	Cats	POM-V
Milbemax Film-Coated Tablets for Small Cats and Kitten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4	17/04/2003	Mutually Recognised	Milbemycin Oxime (A3 and A4), Praziquantel	N	Cats	POM-V
Milbemax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3	17/04/2003	Mutually Recognised	Milbemycin Oxime (A3 and A4), Praziquantel	N	Dogs	POM-V
Milbemax Tablets for Small Dogs and Puppi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2	17/04/2003	Mutually Recognised	Milbemycin Oxime (A3 and A4), Praziquantel	N	Dogs	POM-V
Millophyline-V 100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24	20/10/1993	National	Etamiphylline Camsylate	N	Cats, Dogs	POM-V
Millophyline-V 14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23	20/10/1993	National	Etamiphylline Camsylate	N	Cats, Dogs, Horses	POM-V
Millophyline-V 200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21	30/05/1996	National	Etamiphylline Camsylate	N	Dogs	POM-V
Millophyline-V 300 mg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20	30/05/1996	National	Etamiphylline Camsylate	N	Dogs	POM-V
Monzaldon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43	21/06/1996	National	Vetrabutine Hydrochloride	N	Dogs, Pigs	POM-V
Multject IMM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62	29/03/1985	National	Neomycin Sulphate, Prednisolone, Procaine Penicillin, Streptomycin Sulphate	N	Cattle	POM-V
Mycen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6	19/07/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Mydiavac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05	12/08/1997	National	Chlamydophila abortus	N	Sheep	POM-V
Myolaxin 15% Solution for Infusion	Vetoquinol UK Ltd	08007/4088	17/11/1995	National	Guaiifenesin	N	Horse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Myprvac Suis Suspension for Injection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1	07/02/2002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Nafpenzal Dry Cow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11	26/08/1976	National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Procaine Penicillin, Sodium Nafcillin	N	Cattle	POM-V
Nargesic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Richter Pharma AG	22080/4000	30/07/2009	Mutually Recognised	Butorphanol (Declared Active), Butorphanol Tartrate	N	Horses	POM-V
Narketan 10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90	23/07/1997	National	Ketamine Hydrochloride	4	Cats, Dogs, Donkeys, Horses	POM-V
Navilox 3% w/w Powder for In-Feed Use	Vetoquinol UK Ltd	08007/4026	10/01/1991	National	Isoxsupr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Nelio 20 mg Tablet for Dogs	Sogeval SA	20749/4016	07/09/2009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Nelio 5 mg Tablet for Cats	Sogeval SA	20749/4012	27/02/2009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Cats	POM-V
Nelio 5 mg Tablet for Dogs	Sogeval SA	20749/4015	07/09/2009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Nemovac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18	25/05/2007	National	Avian pneumovirus	N	Chickens	POM-V
Nemovac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56	16/04/1999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N	Chickens	POM-V
Neopen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04	16/12/1992	National	Buffered Procaine Penicillin Mixture 88 %, Neomycin (declared active), Neomycin Sulphate, Procaine Penicillin (declared active)	N	Cats, Dogs, Horses, Pigs, Sheep	POM-V
Netvax Emulsion for Injection for Chicken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9/093/001-002	16/04/2009	Centralised	Clostridium perfringens	N	Chickens	POM-V
Nisamox 25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2	05/02/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Nisamox 50 mg Tablets for Dogs and Ca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3	03/03/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Nisamox Lactat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32	21/02/2003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Prednisolone	N	Cattle	POM-V
Nisamox Palatable Tablets 500 mg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0	06/06/2006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Nisamox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7	02/05/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POM-V
Nobilis CAV P4	Intervet UK Ltd	01708/4322	02/03/2001	National	Chicken anaemia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Diluent Oculo Nasal	Intervet UK Ltd	01708/4502	09/11/2005	National		N	Poultry	POM-V
Nobilis E. Coli Inac	Intervet UK Ltd	01708/4266	30/12/1994	Mutually Recognised	Escherichia coli	N	Chicken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Kloxerate Plus Milk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089	06/08/1986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Cloxacillin Sodium	N	Cattle	POM-V
Lactaclox Intramammary Infu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44	10/12/1979	National	Ampicillin Sodium, Cloxacillin Sodium Monohydrate	N	Cattle	POM-V
Lactatrim MC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3	04/03/1997	National	Sulphadiazine Sodium, Trimethoprim	N	Cattle	POM-V
Lactovac	Pfizer Ltd	00057/4287	26/08/1998	Mutually Recognised	Bovine coronavirus, Bovine rotavirus, Escherichia coli	N	Cattle	POM-V
Lapinject VHD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2	22/09/2006	Mutually Recognised	Rabbit hemorrhagic disease virus	N	Rabbits	POM-V
Large Animal Diprevon Solution for Injection	Abbeyvet Export LLP	21757/4001	22/09/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Diprenorphine Hydrochloride	N	Deer, Horses	POM-V
Large Animal Etorphilon Solution for Injection	Abbeyvet Export LLP	21757/4002	22/09/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Acepromazine Maleate, Etorphine Hydrochloride	2	Deer, Horses	POM-V
Large Animal Immobilon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1	30/11/1994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Etorphine Hydrochloride	2	Deer, Horses	POM-V
Large Animal Revivon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0	15/12/1994	National	Diprenorphine	N	Deer, Horses	POM-V
Laurabolin 2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53	19/03/1993	National	Nandrolone Laurate	4	Cats, Dogs	POM-V
Laurabolin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254	19/03/1993	National	Nandrolone Laurate	4	Cats, Dogs	POM-V
Leptavoid-H	Schering-Plough Ltd	00201/4200	24/10/2005	National	Leptospira interrogans	N	Cattle	POM-V
Lethobarb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Ayrton Saunders Limited	16431/4000	31/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entobarbitone Sodium	3	All Animals	POM-V
Leucofeligen FeLV/RCP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s	Virbac S.A.	EU/2/09/097/001-002	25/06/2009	Centralised	Feline calici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Leucogen	Virbac S.A.	05653/4049	28/10/2005	Mutually Recognised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V
Leucogen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s	Virbac S.A.	EU/2/09/096/001-002	17/06/2009	Centralised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V
Leukocell 2	Pfizer Ltd	00057/4114	28/10/2005	National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V
Leventa 1 mg/ml Oral Solution for Dogs	Intervet UK Ltd	01708/4527	23/04/2007	Mutually Recognised	L Thyroxine Sodium	N	Dogs	POM-V
Lincocin Forte S Intramammary Solution	Pfizer Ltd	00057/4249	04/01/2000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Neomycin Sulphate	N	Cattle	POM-V
Lincocin Premix 44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	Pfizer Ltd	00057/4232	20/08/1993	National	Lincomycin Hydrochloride	N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Nobilis Gumboro 228E	Intervet UK Ltd	01708/4333	04/04/1997	National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Gumboro D78 Live	Intervet UK Ltd	01708/4237	15/02/1994	National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IBmulti + ND + EDS	Intervet UK Ltd	01708/4367	18/07/2003	National	Egg drop syndrome 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Influenza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1	21/12/2005	National	Avian influenza virus	N	Avian spp	POM-V
Nobilis Influenza H5N2 Emulsion for Injection for Chicken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6/061/001-004	01/09/2006	Centralised	Avian influenza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Influenza H5N6 Emulsion for Injection for Chicken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7/076/001-004	31/01/2008	Centralised	Avian influenza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Influenza H7N1 Emuls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7/073/001-004	14/05/2007	Centralised	Avian influenza virus	N	Chickens, Ducks	POM-V
Nobilis MG 6/85	Intervet UK Ltd	01708/4480	21/02/2002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gallisepticum	N	Chickens	POM-V
Nobilis ND C2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45	25/04/2005	Mutually Recognised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REO + IB + G + ND	Intervet UK Ltd	01708/4332	13/09/2005	National	Avian reo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Reo ERS Inac	Intervet UK Ltd	01708/4540	06/06/2008	Mutually Recognised	Avian reo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REO Inac	Intervet UK Ltd	01708/4329	24/06/1995	National	Avian reo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Rhino CV	Intervet UK Ltd	01708/4505	05/05/2005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RT + IBmulti + G + ND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0	27/04/2000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RT + IBmulti + ND + EDS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9	22/10/2004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Egg drop syndrome 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Nobilis Salenvac	Intervet UK Ltd	01708/4389	28/04/1995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Nobilis Salenvac T	Intervet UK Ltd	01708/4472	17/08/2000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Nobilis Tri-OR Inac	Intervet UK Ltd	01708/4504	27/09/2006	National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	N	Turkeys	POM-V
Nobilis TRT + ND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24	22/04/1999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Turkeys	POM-V
Nobilis TRT Inac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8	01/04/2004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N	Chickens, Turkey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Nobilis TRT Live	Intervet UK Ltd	01708/4235	30/12/1994	National	Avian pneumovirus	N	Turkeys	POM-V
Nobivac DHP	Intervet UK Ltd	01708/4513	28/07/2005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Nobivac DHPPi	Intervet UK Ltd	01708/4359	20/10/2005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Nobivac Ducat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40	18/10/2004	Mutually Recognised	Feline calici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Nobivac Ducat-Chlam	Intervet UK Ltd	01708/4532	14/11/2007	National	Chlamydom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Nobivac FeLV	Virbac S.A.	05653/4059	28/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V
Nobivac Forcat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0	09/02/2006	Mutually Recognised	Chlamydom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Nobivac KC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26	15/11/1999	Mutually Recognised	Bordetella bronchiseptica, Canine parainfluenza virus	N	Dogs	POM-V
Nobivac Lepto 2	Intervet UK Ltd	01708/4360	31/05/2002	National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Nobivac Myxo	Intervet UK Ltd	01708/4369	17/10/2005	National	Rabbit fibroma virus	N	Rabbits	POM-V
Nobivac Parvo-C	Intervet UK Ltd	01708/4361	24/10/2005	National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Nobivac Pi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4	31/01/2002	Mutually Recognised	Canine parainfluenza virus	N	Dogs	POM-V
Nobivac Rabies	Intervet UK Ltd	01708/4325	23/10/2005	National	Rabies virus	N	Cats, Dogs	POM-V
Nobivac Solvent	Intervet UK Ltd	01708/4368	28/10/2005	National		N	Cats, Dogs, Rabbits	POM-V
Nobivac Tricat Trio	Intervet UK Ltd	01708/4533	01/05/2007	Mutually Recognised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Noramp 15% w/v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4	28/10/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Tr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Norbet 0.25 mg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09	06/11/1991	National	Betamethasone	N	Dogs	POM-V
Norixin 5%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7	31/10/1997	Mutually Recognised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OM-V
Norobrittin 15% w/v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04	24/08/1994	National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Norocarp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Horse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77	22/05/2009	National	Carprofen	N	Cattle, Horses	POM-V

Norocarp Large Animal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6	30/01/2006	National	Carprofen	N	Cattle	POM-V
Norocillin 30% w/w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99	20/04/1998	National	Benzyl Penicillin Potassium, Procaine Hydrochloride, Procaine Penicillin (declared active)	N	Cattle, Pigs, Sheep	POM-V
Norocillin LA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57	04/04/1985	National	Benzathine Penicillin, Procaine Penicillin	N	Cats, Dogs, Horses	POM-V
Noroclav 25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2	08/03/2002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Noroclav 50 mg Tablets for Dogs and Ca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1	08/03/2002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Noroclav Injection for Cattle and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5	20/11/2001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Dogs	POM-V
Noroclav Lactat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9	11/02/2002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Prednisolone	N	Cattle	POM-V
Noroclav Palatable Tablets 500 mg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59	26/04/2006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Noroclox DC 500 mg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40	21/11/1979	National	Cloxacillin (Declared Active)	N	Cattle	POM-V
Noroclox DC Xtra 600 mg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6	10/03/1995	National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Norodine 20 Coated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96	20/11/1987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Cats, Dogs	POM-V
Norodine 24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61	01/06/1988	National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Norodine 80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85	28/08/1987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Norodine Bolus Tablet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79	17/12/1986	National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POM-V
Norodine Equine Oral Past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98	19/01/1988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Norodine Granule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4	10/12/1993	National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Norodyl 10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2	21/07/2009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Norodyl 50 mg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6	05/10/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Norodyl Tablets 20 mg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5	05/10/2006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Norofol 1% w/v Emul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75	09/01/2009	National	Propofol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Norofulvin 33.3% w/w Equine Oral Past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55	10/05/1985	National	Griseofulvin	N	Horses	POM-V
Norofulvin 7.5% w/w Granules for Top Dressing Us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84	20/07/1987	National	Griseofulvin	N	Horses	POM-V
Noroprost 0.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0	09/01/1996	National	Dinoprost	N	Cattle	POM-V
Norotyl LA 15% w/v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6	09/02/1998	National	Tylosin	N	Pigs	POM-V
Norvax Compact PD	Intervet UK Ltd	01708/4498	06/05/2005	National	Salmon pancreas disease virus	N	Salmon	POM-V
Nuflor 40 mg/g Oral Powder for Pigs	Intervet UK Ltd	01708/4550	07/08/2009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Pigs	POM-V
Nuflor 4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Swine	Schering-Plough Ltd	00201/4230	06/06/2007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Pigs	POM-V
Nuflor Drinking Water Concentrate for Swine, 23 mg/ml Concentrate for Oral Solu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80	21/02/2002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Pigs	POM-V
Nuflor Injectable Solution 300 mg/ml	Schering-Plough Ltd	00201/4020	13/12/1994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Cattle	POM-V
Nuflor Minidose 4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Intervet UK Ltd	01708/4541	03/10/2008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Cattle	POM-V
Nuflor Swine Injectable 300 mg/ml	Schering-Plough Ltd	00201/4188	19/12/2002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Pigs	POM-V
Occrycetin Bolus 500 mg Table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05	09/08/1991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Octacillin Water Soluble Powder for Chickens 697 mg/g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4	06/09/2004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N	Chickens	POM-V
Onsior 10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08/089/008-011	16/12/2008	Centralised	CGS-34975 (Robenacoxib)	N	Dogs	POM-V
Onsior 20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08/89/012-015	16/12/2008	Centralised	CGS-34975 (Robenacoxib)	N	Dogs	POM-V
Onsior 2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s and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08/089/020	16/12/2008	Centralised	CGS-34975 (Robenacoxib)	N	Cats, Dogs	POM-V
Onsior 40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08/89/016-019	16/12/2008	Centralised	CGS-34975 (Robenacoxib)	N	Dogs	POM-V
Onsior 5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08/89/004-007	16/12/2008	Centralised	CGS-34975 (Robenacoxib)	N	Dogs	POM-V
Onsior 6 mg Tablets for Ca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EU/2/08/089/001-003a	16/12/2008	Centralised	CGS-34975 (Robenacoxib)	N	Cats	POM-V
Opticlox Eye Ointment 16.7% w/w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75	17/12/1986	National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s, Cattle, Dogs, Horses, Sheep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Optimmune Ophthalmic Ointment 2 mg/g Eye Ointment	Schering-Plough Ltd	00201/4025	09/06/1994	National	Cyclosporin A	N	Dogs	POM-V
Oralject Circulon Brand Paste	Vetsearch International (uk) Ltd	06036/4000	02/10/1994	National	Isoxsupr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
Oralject Sedazine Acepromazine (1.20% w/v) Oral Paste Tranquilliser for Horses	Vetsearch International (UK) Ltd	06036/4001	24/01/1990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N	Horses	POM-V
Orbax Oral Suspension 30 mg/ml for Dogs and Cats	Schering-Plough Ltd	00201/4231	20/01/2009	Mutually Recognised	Orbifloxacin	N	Cats, Dogs	POM-V
Orbax Tablets 25 mg	Schering-Plough Ltd	00201/4035	08/06/1998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Orbifloxacin	N	Dogs	POM-V
Orbax Tablets 6.25 mg	Schering-Plough Ltd	00201/4036	08/06/1998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Orbifloxacin	N	Dogs	POM-V
Orbax Tablets 75 mg	Schering-Plough Ltd	00201/4037	08/06/1998	Mutually Recognised	Orbifloxacin	N	Dogs	POM-V
Orbenin Dry Cow 500 mg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185	29/03/1985	National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Orbenin Extra Dry Cow 600 mg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130	09/02/1988	National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Orbenin L.A. 200 mg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179	14/01/1995	National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Sodium	N	Cattle, Sheep	POM-V
Orbenin Ophthalmic Ointment 16.67% w/w Eye Ointment	Pfizer Ltd	00057/4201	14/09/1990	National	Cloxacillin Benzathine	N	Cats, Cattle, Dogs, Horses, Sheep	POM-V
Orbeseal Dry Cow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212	25/06/2002	Mutually Recognised	Bismuth subnitrate	N	Cattle	POM-V
Ornicure, 260 mg Doxycycline Powder for Oral Solution	Oropharma n.v	13058/4001	21/06/1996	National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Cage Birds, Pigeons	POM-V
Orojet Lamb Oral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68	26/07/1996	National	Neomycin Sulphate, Streptomycin Sulphate	N	Sheep	POM-V
Otomax Ear Drops Suspens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54	22/07/1999	Mutually Recognised	Betamethasone Valerate, Clotrimazole, Gentamycin	N	Dogs	POM-V
Ovagen	ICPbio (UK) Ltd	16466/4000	12/06/1992	National	Ovine Pituitary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N	Cattle	POM-V
Ovarelin 50 u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2	28/04/2006	Mutually Recognised	Gonadorelin	N	Cattle	POM-V
Ovarid 20 mg Tablets	Virbac S.A.	05653/4160	30/10/1992	National	Megestrol Acetate	N	Cats, Dogs	POM-V
Ovarid 5 mg Tablets	Virbac S.A.	05653/4161	30/10/1992	National	Megestrol Acetate	N	Cats, Dogs	POM-V
Ovuplant 2.1 mg Implantation Tablets for Horses (Mares)	Dechra Limited	10434/4063	14/01/2005	Mutually Recognised	Deslorelin Acetate	N	Horses	POM-V

Oxycare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4	19/07/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Oxycare 20% w/v LA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6	30/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Oxycare 3.6% w/w Cutaneous Spray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4	30/03/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Ethanolamine,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Oxycare Tablets 100 mg	Animalcare Ltd	10347/4002	22/06/1992	National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Dogs	POM-V
Oxycare Tablets 250 mg	Animalcare Ltd	10347/4003	22/06/1992	National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Dogs	POM-V
Oxycare Tablets 50 mg	Animalcare Ltd	10347/4001	22/06/1992	National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Dogs	POM-V
Oxycomplex NS Solution for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07	11/10/1995	National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
Oxytetrin 20 LA	Schering-Plough Ltd	00201/4103	01/06/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Oxytocin-S 10 iu/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14	29/07/1994	National	Oxytocin Synthetic	N	Cats, Cattle, Dogs, Goats, Horses, Pigs, Sheep	POM-V
Palladia 10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9/100/001	23/09/2009	Centralised	Toceranib (Declared Active), Toceranib Phosphate	N	Dogs	POM-V
Palladia 15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9/100/002	23/09/2009	Centralised	Toceranib (Declared Active), Toceranib Phosphate	N	Dogs	POM-V
Palladia 50 mg Film-Coated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9/100/003	23/09/2009	Centralised	Toceranib (Declared Active), Toceranib Phosphate	N	Dogs	POM-V
Pangram 5%	Virbac S.A.	05653/4013	06/06/1985	National	Gentamicin Sulphate	N	Cats, Dogs	POM-V
Paracox Anticoccidial Vaccine	Schering-Plough Ltd	00201/4151	10/08/1998	National	Eimeria acervulina, Eimeria brunetti, Eimeria maxima, Eimeria mitis, Eimeria necatrix, Eimeria praecox, Eimeria tenella	N	Chickens	POM-V
Paracox-5, Oral Suspens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52	28/06/1999	Mutually Recognised	Eimeria acervulina, Eimeria maxima, Eimeria mitis, Eimeria tenella	N	Chickens	POM-V
Parvovax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21	17/10/2005	National	Porcine parvovirus	N	Pigs	POM-V
Pastobov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73	27/08/1997	Mutually Recognised	Mannheimia haemolytica	N	Cattle	POM-V
Pathocef 250 mg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077	05/06/1985	National	Cefoperazone	N	Cattle	POM-V
Paxcutol 2.5875% w/v Shampoo	Virbac S.A.	05653/4018	20/05/1988	National	Benzoyl Peroxide	N	Dogs	POM-V
Pen & Strep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00	12/03/1991	National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enacare 30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4	01/06/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Benzyl Penicillin Potassium*, Procaine Hydrochloride*,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igs, Sheep	POM-V
Penbenocillin 30% w/v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0	20/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igs, Sheep	POM-V
Pentobarbital for Euthanasia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Ayrton Saunders Limited	16431/4001	31/08/1993	National	Pentobarbitone Sodium	3	All Animals	POM-V
Pentoject, Pentobarbitone Sodium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Animalcare Ltd	10347/4014	21/10/1993	National	Pentobarbitone Sodium	3	Cats, Dogs, Mink, Small Rodents	POM-V
Pethidine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31	18/08/1993	National	Pethidine Hydrochloride	2	Cats, Dogs, Horses	POM-V
PG 600,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12	27/07/1994	National	Chorionic Gonadotrophin, Serum Gonadotrophin	4	Pigs	POM-V
Pharmasin 10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Broilers and Pullets	Huvepharma N.V.	30282/4007	04/11/2009	Mutually Recognised	Tylosin Phosphate	N	Pigs, Poultry	POM-V
Pharmasin 100% w/w Water Soluble Granules for Oral Solution for Pigs, Broilers, Pullets, Turkeys and Calves	Huvepharma N.V.	30282/4000	03/11/2008	Mutually Recognised	Tylosin Tartrate	N	Cattle, Chickens, Pigs, Turkeys	POM-V
Pharmasin 20 mg/g Oral Granules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10	04/11/2009	Mutually Recognised	Tylosin	N	Pigs	POM-V
Pharmasin 25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Broilers and Pullets	Huvepharma N.V.	30282/4009	20/10/2009	Mutually Recognised	Tylosin	N	Pigs, Poultry	POM-V
Phenoxyphen 32.5% Water Soluble Powder for Chickens, Powder for Use in Drinking Water	Dopharma Research B.V.	28365/4000	15/12/2006	Mutually Recognised	Phenoxyethylpenicillin Potassium	N	Chickens	POM-V
Phenylbutazone Tablets 100 mg	JM Loveridge PLC	00531/4046	26/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henylbutazone	N	Dogs	POM-V
Phenylbutazone Tablets 200 mg	JM Loveridge PLC	00531/4047	26/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henylbutazone	N	Dogs	POM-V
Phosphorus Supplement 1.8% w/v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44	06/07/1995	National	Calcium Hypophosphite, Phosphorus (declared active)	N	Cattle	POM-V
Pigzin Premix, 100%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DSM Nutritional Products (UK) Ltd	19108/4000	05/05/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Zinc Oxide	N	Pigs	POM-V
Planate 0.087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099	03/01/1996	National	Cloprostenol Sodium	N	Pigs	POM-V
Planipart Solution for Injection 30 micrograms/ml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41	01/08/1994	National	Clenbuterol Hydrochloride	4	Cattle	POM-V
PLT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7	01/12/1992	National	Cincophen, Prednisolone	N	Dogs	POM-V
Pluset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Laboratorios Calier, SA	20634/4000	19/02/2004	Mutually Recognised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porcine), Luteinising Hormone (Porcine)	N	Cattle	POM-V
PMSG Intervet 5000 IU,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309	03/08/1994	National	Serum Gonadotrophin	N	Cattle, Dogs, Pigs, Sheep	POM-V

Porcilis Begonia DF	Intervet UK Ltd	01708/4306	24/10/2005	Mutually Recognised	Aujeszky's disease virus	N	Pigs	POM-V
Porcilis Begonia IDAL	Intervet UK Ltd	01708/4290	28/10/1994	Mutually Recognised	Aujeszky's disease virus	N	Pigs	POM-V
Porcilis Ery + Parvo	Intervet UK Ltd	01708/4334	16/07/1997	National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Porcine parvovirus	N	Pigs	POM-V
Porcilis Glasse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37	22/03/2004	Mutually Recognised	Haemophilus parasuis	N	Pigs	POM-V
Porcilis M Hyo; Suspension for Injection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49	31/03/2006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Porcilis PCV Emulsion for Injection for Pi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8/91/001-010	12/01/2009	Centralised	Porcine circovirus-2	N	Pigs	POM-V
Porcilis PRRS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27	21/09/2000	Mutually Recognised	Porcine respiratory and reproductive syndrome virus	N	Pigs	POM-V
Posatex, Ear Drops Suspension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08/081/001-003	23/06/2008	Centralised	Mometasone Furoate (declared active), Mometasone Furoate Monohydrate, Orbifloxacin, Posaconazole	N	Dogs	POM-V
Potencil, 10% Premix for Medicated Feed for Pi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16	21/06/1993	National	Phenoxyethylpenicillin Potassium	N	Pigs	POM-V
Poulvac Bursa Plu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30	03/02/1998	National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	POM-V
Poulvac Bursine 2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15	21/03/1994	National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	Chicken, Chickens	POM-V
Poulvac Flufend H5N3 RG Emulsion for Injection for Chickens and Duck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EU/V/06/060/001-002	01/09/2006	Centralised	Avian influenza virus	N	Chickens, Ducks	POM-V
Poulvac IB Primer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17	15/04/2005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s	POM-V
Poulvac IBMM + ARK Powder for Nebuliser Solution for Broiler Chicken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62	25/01/2001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s	POM-V
Poulvac i-IB, ND, EDS, IB, SH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1	11/05/2006	National	Avian pneumovirus, Egg drop syndrome 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
Poulvac iS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3	31/07/2006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Chickens	POM-V
Poulvac Pabac IV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0	28/09/2007	Mutually Recognised	Pasteurella multocida	N	Chickens, Ducks, Turkeys	POM-V
Poulvac SHS Vaccin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14	14/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vian pneumovirus	N	Chickens	POM-V
Poulvac TR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8	16/06/2008	National	Avian pneumovirus	N	Chickens, Turkeys	POM-V
Poulvac TRT Vaccin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13	05/11/1997	Mutually Recognised	Avian pneumovirus	N	Turkey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owerflox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Enrofloxacin	Virbac S.A.	05653/4147	22/07/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tle, Pigs	POM-V
Powerflox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Pigs, Dogs and Cats Enrofloxacin	Virbac S.A.	05653/4146	22/07/2009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s, Cattle, Dogs, Pigs	POM-V
Pracetam 10% Premix for Pigs	Sogeval SA	20749/4003	22/03/2005	Mutually Recognised	Paracetamol	N	Pigs	POM-V
Pracetam 200 mg/g Powder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Pigs	Sogeval SA	20749/4011	13/10/2009	Mutually Recognised	Paracetamol	N	Pigs	POM-V
Prac-tic 137.5 mg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Novartis Sanidad Animal S.L.	EU/2/06/066/004-006	18/12/2006	Centralised	Pyriprole	N	Dogs	POM-V
Prac-tic 275 mg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Novartis Sanidad Animal S.L.	EU/2/06/066/007-009	18/12/2006	Centralised	Pyriprole	N	Dogs	POM-V
Prac-tic 56.25 mg Spot-on Solution for Very Small Dogs	Novartis Sanidad Animal S.L.	EU/2/06/066/001-003	18/12/2006	Centralised	Pyriprole	N	Dogs	POM-V
Prac-tic 625 mg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Novartis Sanidad Animal S.L.	EU/2/06/066/010-012	18/12/2006	Centralised	Pyriprole	N	Dogs	POM-V
Prednicare Tablets 1 mg	Animalcare Ltd	10347/4018	22/12/1992	National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Prednicare Tablets 5 mg	Animalcare Ltd	10347/4017	22/12/1997	National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Prednidale 25 Tablets for Dogs	Dechra Limited	10434/4008	19/11/2007	National	Prednisolone	N	Dogs	POM-V
Prednidale 5 mg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09	14/08/1998	National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Prednisolone 5 mg Tablet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23	15/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Prednisolone Tablets B.P. (Vet) 1 mg	Millpledge Ltd	04409/4002	29/08/1997	National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Prednisolone Tablets B.P. (Vet) 5 mg	Millpledge Ltd	04409/4003	29/08/1997	National	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Pregsure BVD Emul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30	17/02/2005	Mutually Recognised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N	Cattle	POM-V
Prevac Pro	Intervet UK Ltd	01708/4456	01/10/1999	Mutually Recognised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Prevac T Pro	Intervet UK Ltd	01708/4457	25/05/2000	Mutually Recognised	Clostridium tetani,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Previcox 8.2 mg/g Oral Paste for Horses	Merial	EU/2/04/045/007	13/09/2004	Centralised	Firocoxib	N	Horses	POM-V
PRID 1.55 g Progesterone Releasing Intra-Vaginal Device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09	25/04/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gesterone	N	Cattle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rilactone 10 mg Tablets for Dogs	Ceva Sante Animale	EU/2/07/074/001-002	20/06/2007	Centralised	Spirolactone	N	Dogs	POM-V
Prilactone 40 mg Tablets for Dogs	Ceva Sante Animale	EU/2/07/074/003-004	20/06/2007	Centralised	Spirolactone	N	Dogs	POM-V
Prilactone 80 mg Tablets for Dogs	Ceva Sante Animale	EU/2/07/074/005-006	20/06/2007	Centralised	Spirolactone	N	Dogs	POM-V
Prilben Vet 5 mg Film-Coated Tablet for Dogs	Chemo Iberica S.A	21690/4000	04/03/2008	Mutually Recognised	Benazepril Hydrochloride (Declared Active)	N	Dogs	POM-V
Prilenal 1 mg Tablet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3	28/09/2005	Mutually Recognised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Prilenal 10 mg Tablet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6	28/09/2005	Mutually Recognised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Prilenal 2.5 mg Tablet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4	28/09/2005	Mutually Recognised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Prilenal 20 mg Tablet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7	28/09/2005	Mutually Recognised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Prilenal 5 mg Tablet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5	28/09/2005	Mutually Recognised	Enalapril Maleate	N	Dogs	POM-V
Prilium 150 mg Powder for Oral Solution for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107	21/11/2002	Mutually Recognised	Imida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Prilium 300 mg Powder for Oral Solution for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108	21/11/2002	Mutually Recognised	Imida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Prilium 75 mg Powder for Oral Solution for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106	21/11/2002	Mutually Recognised	Imidapril Hydrochloride	N	Dogs	POM-V
Pro Dynam Oral Powder 1 g Phenylbutazone Per Sachet	Dechra Veterinary Products A/S	24883/4000	13/04/1994	National	Phenylbutazone	N	Horses	POM-V
Procare 1% w/v Emul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74	09/01/2009	National	Propofol	N	Cats, Dogs	POM-V
Procyon Cat HCChlam / PFELV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232	11/12/2009	National	Chlamydomphila felis, Feline calici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Procyon Dog DA2PPI/Cv	Schering-Plough Ltd	00201/4228	11/12/2007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corona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Procyon Dog DA2PPI/CvL Lyophilisate and Solv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69	25/08/2004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corona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Procyon Dog DA2PPI/L	Schering-Plough Ltd	00201/4199	13/09/2005	Mutually Recognised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Procyon Dog Lepto	Schering-Plough Ltd	00201/4223	09/10/2006	Mutually Recognised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Procyon Dog Parvo	Schering-Plough Ltd	00201/4233	20/02/2009	Mutually Recognised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romeris Duo 799.5 mg + 799.5 mg Spot-on for Large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06/065/007-008	19/12/2006	Centralised	Amitraz, Metaflumizone	N	Dogs	POM-V
Promeris Duo 999 mg + 999 mg Spot-on for Extra Large Dogs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06/065/009-010	19/12/2006	Centralised	Amitraz, Metaflumizone	N	Dogs	POM-V
Promone E 5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47	29/01/1993	National	Medroxyprogesterone Acetate	N	Dogs	POM-V
Propalin Syrup 40 mg/ml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035	27/01/1993	Mutually Recognised	Phenylpropanolamine Hydrochloride	N	Dogs	POM-V
PropoClear 10 mg/ml Emulsion for Injection for Cats and Dogs, Propofo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77	23/06/2009	Mutually Recognised	Propofol	N	Cats, Dogs	POM-V
PropoFlo 10 mg/ml Emuls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Abbott Laboratories Ltd	00037/4069	17/01/2002	Mutually Recognised	Propofol	N	Cats, Dogs	POM-V
PropoFlo Vet 10 mg/ml Emulsion for Injection	Abbott Laboratories Ltd	00037/4071	06/02/2003	Mutually Recognised	Propofol	N	Dogs	POM-V
Prosolvin 7.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S.A.	05653/4158	31/03/1995	National	Luprostiol	N	Cattle, Horses, Pigs	POM-V
Prostavet	Virbac S.A.	05653/4043	20/06/1996	National	Etiproston Tromethamine	N	Cattle	POM-V
Proteq Flu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Meriel	EU/2/03/037/005	06/03/2003	Centralised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Proteq Flu-Te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Horses	Meriel	EU/2/03/038/005	06/03/2003	Centralised	Clostridium tetani, Equine influenza virus	N	Horses	POM-V
Pulmodox 100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Lavet Pharmaceuticals Ltd	32823/4000	06/11/2008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Hyclate	N	Pigs	POM-V
Pulmodox 500 mg/g Granules for Oral Solution for Pigs	Lavet Pharmaceuticals Ltd	32823/4001	06/11/2008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Hyclate	N	Pigs	POM-V
Pulmodox 60 mg/g Oral Paste for Large Sized Dogs	Virbac S.A.	05653/4111	21/02/2002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Dogs	POM-V
Pulmodox 60 mg/g Oral Paste for Medium Sized Dogs	Virbac S.A.	05653/4110	21/02/2002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Dogs	POM-V
Pulmodox 60 mg/g Oral Paste for Small Dogs	Virbac S.A.	05653/4109	21/02/2002	Mutually Recognised	Doxycycline (Declared Active), Doxycycline Hyclate	N	Dogs	POM-V
Pulmotil AC 250mg/ml concentrate for oral solution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105	04/04/2000	National	Tilmicosin	N	Cattle, Chickens, Pigs, Turkeys	POM-V
Pulmotil G100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95	17/11/1995	National	Tilmicosin	N	Pigs	POM-V
Pulmotil G200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96	17/11/1995	National	Tilmicosin	N	Pigs	POM-V
Pyceze 500 mg/ml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Fish Treatment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00	03/11/2003	Mutually Recognised	Bronopol	N	Salmon, Trout	POM-V

Pyriproxyfen 1% Premix for Dog Virbac	Virbac S.A.	05653/4125	10/06/2005	Mutually Recognised	Pyriproxyfen	N	Dogs	POM-V
Pyroflam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Horses and Pi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53	23/02/2006	Mutually Recognised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N	Cattle, Horses, Pigs	POM-V
Quantum Cat CVRP	Schering-Plough Ltd	00201/4214	28/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line calicivirus, Feline panleukopenia virus, Feline viral rhinotracheitis virus	N	Cats	POM-V
Quantum Cat FeLV	Schering-Plough Ltd	00201/4215	28/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line leukemia virus	N	Cats	POM-V
Quantum Dog 7	Schering-Plough Ltd	00201/4216	28/10/2005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Quantum Dog CPV	Schering-Plough Ltd	00201/4217	28/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Quantum Dog CPV L	Schering-Plough Ltd	00201/4218	28/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Rabisi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50	28/10/2005	National	Rabies virus	N	Cats, Dogs	POM-V
Rapidexon 2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7	21/02/2006	Mutually Recognised	Dexamethasone (Declared Active),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Rapinovet 10 mg/ml Emuls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072	21/12/1987	National	Propofol	N	Cats, Dogs	POM-V
Rearguard 6% w/v Cutaneous Solu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15	20/06/2002	National	Cyromazine	N	Rabbits	POM-V
Receptal, 0.004 mg/ml Solution for Injection	Intervet UK Ltd	01708/4438	28/05/1993	National	Buserelin (declared active), Buserelin Acetate	N	Cattle, Horses, Rabbits, Trout	POM-V
Reconcile	Eli Lilly & Company Ltd	EU/2/08/080/1-4	08/07/2008	Centralised		N	Dogs	POM-V
Regumate Equine 2.2 mg/ml Oral Solution for Horses	Intervet UK Ltd	01708/4503	05/04/2005	Mutually Recognised	Altrenogest	N	Horses	POM-V
Regumate Porcine, 0.4% w/v Oral Solution	Intervet UK Ltd	01708/4443	12/11/1985	National	Altrenogest	N	Pigs	POM-V
Release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WDT-Wirtschaftsgenossenschaft deutscher Tierärzte eG	32829/4000	05/08/2008	Mutually Recognised	Pentobarbitone Sodium	3	Cage Birds, Cats, Cattle, Chickens, Dogs, Guinea Pigs, Horses, Mink, Pigeons, Pigs, Rabbits, Reptiles, Small Rodents	POM-V
Reprocine 0.07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VetCom-Pharma GmbH	20870/4000	21/10/2004	Mutually Recognised	Carbetocin	N	Cattle, Pigs	POM-V
Reproval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Carprofen) for Dogs and Ca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8	02/08/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Cats, Dogs	POM-V
Resflor 300/16.5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Schering-Plough Ltd	00201/4227	19/10/2006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Flunixin (Declared Active), Flunixin Meglumine	N	Cattle	POM-V
Revertor 5 mg/ml -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CP Pharma Handelsgesellschaft mbH	20916/4003	29/05/2008	Mutually Recognised	Atipamezol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Rheumocam 1.5 mg & 2.5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EU/2/07/078/5-8	10/01/2008	Centralised		N		POM-V
Rheumocam 1.5 mg/ml Oral Suspension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EU/2/07/078/001-004	10/01/2008	Centralised	Meloxicam	N	Dogs	POM-V
Rilexine 300 mg Tablets	Virbac S.A.	05653/4133	24/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Rilexine 600 mg Tablets	Virbac S.A.	05653/4132	24/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Rilexine 75 mg Tablets	Virbac S.A.	05653/4131	24/10/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lexin Monohydrate	N	Cats, Dogs	POM-V
Rimadyl 20 mg Tablets	Globalmed Ltd	24939/4004	11/06/2004	National (MAPI)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50 mg Tablets	Globalmed Ltd	24939/4002	11/06/2004	National (MAPI)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Cattle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72	11/11/2008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Cattle	POM-V
Rimadyl for Horses 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194	04/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arprofen	N	Horses	POM-V
Rimadyl Granules 8.75% w/w	Pfizer Ltd	00057/4192	04/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arprofen	N	Horses	POM-V
Rimadyl Palatable Tablets for Dogs 100 mg	Globalmed Ltd	24939/4012	30/09/2009	National (MAPI)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Palatable Tablets for Dogs 100 mg	Pfizer Ltd	00057/4217	14/02/2003	National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Palatable Tablets for Dogs 20 mg	Globalmed Ltd	24939/4010	30/09/2009	National (MAPI)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Palatable Tablets for Dogs 20 mg	Pfizer Ltd	00057/4215	14/02/2003	National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Palatable Tablets for Dogs 50 mg	Globalmed Ltd	24939/4011	30/09/2009	National (MAPI)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Palatable Tablets for Dogs 50 mg	Pfizer Ltd	00057/4216	14/02/2003	National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Small Animal Injection	Quvera Ltd	20860/4006	28/01/2005	National (MAPI)	Carprofen	N	Cats, Dogs	POM-V
Rimadyl Small Animal Solution for Injection 50 mg/ml	Pfizer Ltd	00057/4193	04/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arprofen	N	Cats, Dogs	POM-V
Rimadyl Tablets 20 mg	Pfizer Ltd	00057/4190	04/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arprofen	N	Dogs	POM-V
Rimadyl Tablets 50 mg	Pfizer Ltd	00057/4191	04/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arprofen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Rimifin 100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08	08/11/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Rimifin 20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06	08/11/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Rimifin 50 mg Tablets for Dogs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07	08/11/2007	Mutually Recognised	Carprofen	N	Dogs	POM-V
Rispoval 3 - BRSV - PI3 - BVD	Pfizer Ltd	00057/4234	03/05/2005	Mutually Recognised	Bovine parainfluenza virus 3,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N	Cattle	POM-V
Rispoval 4	Pfizer Ltd	00057/4210	31/05/2001	National	Bovine parainfluenza virus 3,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Rispoval IBR Marker Live	Pfizer Ltd	00057/4223	10/02/1999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Rispoval IBR-Marker Inactivated	Pfizer Ltd	00057/4222	05/02/1999	Mutually Recognised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Rispoval Pasteurella	Pfizer Ltd	00057/4202	02/07/1999	National	Mannheimia haemolytica	N	Cattle	POM-V
Rispoval RS	Pfizer Ltd	00057/4239	13/10/2005	National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N	Cattle	POM-V
Rispoval RS + Pi3 Intranasal	Pfizer Ltd	00057/4231	11/10/2005	Mutually Recognised	Bovine parainfluenza virus 3,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N	Cattle	POM-V
Romidys 1 mg/ml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S.A.	05653/4126	10/02/1999	Mutually Recognised	Romif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Rompun 2% w/v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093	14/12/1995	National	Xylaz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Rompun Dry Substance 500 mg Powder and Solvent for Solution for Injection	Bayer plc	00010/4092	20/08/1993	National	Xylazine Hydrochloride	N	Horses, Zoo Animals	POM-V
Ronaxan 100 mg Tablet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68	27/06/1991	National	Doxycycline Hyclate	N	Dogs	POM-V
Ronaxan 20 mg Tablet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69	27/06/1991	National	Doxycycline Hyclate	N	Cats, Dogs	POM-V
Rotavec Corona	Schering-Plough Ltd	00201/4147	16/03/2000	Mutually Recognised	Bovine coronavirus, Bovine rotavirus, Escherichia coli	N	Cattle	POM-V
Salmosan Powder for Suspension for Fish Treatment containing 50% w/w Azamethiphos	FISH VET GROUP	33459/4000	24/12/1996	National	Azamethiphos	N	Salmon	POM-V
Scabivax Forte	Schering-Plough Ltd	00201/4191	22/09/2003	National	Orf virus	N	Sheep	POM-V
Scalibor Collar (48 cm) for Small and Medium Sized Dogs	Intervet UK Ltd	01708/4482	21/03/2002	Mutually Recognised	Deltamethrin	N	Dogs	POM-V
Scalibor Collar (65 cm Collar) for Large Sized Dogs	Intervet UK Ltd	01708/4481	21/03/2002	Mutually Recognised	Deltamethrin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ebolyse Shampoo for Dogs and Cats	VetXX A/S	24883/4002	29/08/1996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Miconazole Nitrate	N	Cats, Dogs	POM-V
Sedalin 35 mg/ml Oral Gel	Vetoquinol UK Ltd	08007/4089	25/03/1996	National	Acepromazine Maleate	N	Horses	POM-V
Sedator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s and Dogs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9	21/03/2007	Mutually Recognised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Sedaxylan 2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Horses and Cattle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1	04/07/2003	Mutually Recognised	Xylaz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Sededorm 1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Medetomidine Hydrochloride	Vetpharma Animal Health, S.L	32509/4000	31/03/2009	Mutually Recognised	Medetomid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POM-V
Sedivet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Hors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33	15/10/1991	National	Romifidine	N	Horses	POM-V
Selectan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Swine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6	19/12/2007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Cattle, Pigs	POM-V
Selgian 10 mg Film-Coated Tablets	Ceva Sante Animale	14966/4001	22/07/1997	National	Selegiline Hydrochloride	N	Dogs	POM-V
Selgian 20 mg Film-Coated Tablets	Ceva Sante Animale	14966/4004	03/01/2001	National	Selegiline Hydrochloride	N	Dogs	POM-V
Selgian 4 mg Film-Coated Tablets	Ceva Sante Animale	14966/4000	22/07/1997	National	Selegiline Hydrochloride	N	Dogs	POM-V
Sheptadlox DC Intramammary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8	06/04/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Ampicillin (Declared Active), Ampicillin Trihydrate, Cloxacillin (Declared Active), Cloxacillin Benzathine	N	Cattle	POM-V
Shotaflor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Florfenicol	Virbac S.A.	05653/4145	05/02/2008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Cattle	POM-V
Shotaflor 3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Virbac S.A.	05653/4144	05/02/2008	Mutually Recognised	Florfenicol	N	Pigs	POM-V
Slentrol 5 mg/ml Oral Solution for Dogs	Pfizer Ltd	EU/2/07/071/001-003	13/04/2007	Centralised	Dirolapide	N	Dogs	POM-V
Slice	Schering-Plough Ltd	00201/4153	13/01/2000	Mutually Recognised	Emamectin Benzoate	N	Salmon	POM-V
Slice for Rainbow Trout	Schering-Plough Ltd	00201/4182	17/10/2003	National	Emamectin Benzoate	N	Trout	POM-V
Sodium Calciumedetate 250 mg/ml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Injection	Animalcare Ltd	10347/4011	13/01/1995	National	Sodium Calciumedetate Dihydrate	N	Cattle, Dogs	POM-V
Solacyl 100% Powder for Oral Solution for Calves and Pigs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10	28/07/2008	Mutually Recognised	Sodium Salicylate	N	Cattle, Pigs	POM-V
Soloxine 0.1 mg Tablet	Virbac S.A.	05653/4140	08/01/1997	National	L Thyroxine Sodium,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N	Dogs	POM-V
Soloxine 0.2 mg Tablet	Virbac S.A.	05653/4138	08/01/1997	National	L Thyroxine Sodium,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oloxine 0.3 mg Tablet	Virbac S.A.	05653/4137	08/01/1997	National	L Thyroxine Sodium,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N	Dogs	POM-V
Soloxine 0.5 mg Tablet	Virbac S.A.	05653/4139	08/01/1997	National	L Thyroxine Sodium,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N	Dogs	POM-V
Soloxine 0.8 mg Tablet	Virbac S.A.	05653/4141	08/01/1997	National	L Thyroxine Sodium,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N	Dogs	POM-V
Soludox, 500 mg/g, Water Soluble Powder for Pigs	Eurovet Animal Health BV	16849/4003	17/04/2007	National	Doxycycline Hyclate	N	Pigs	POM-V
Solu-Medrone V 125 mg	Pfizer Ltd	00057/4242	24/05/1984	National	Methylprednisolone	N	Cats, Dogs	POM-V
Solu-Medrone V 500 mg	Pfizer Ltd	00057/4243	29/01/1993	National	Methyl 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N	Cats, Dogs	POM-V
Somulose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10	08/03/2004	National	Cinchocaine Hydrochloride, Quinalbarbitone Sodium	2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Spectam Injectable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2	31/03/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Spectinomycin (Declared Active), Spectinomycin Dihydrochloride Pentahydrate	N	Cattle	POM-V
Spectam Scour Halt Oral Solution 50 mg/ml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06	31/07/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Spectinomycin (Declared Active)	N	Pigs, Sheep	POM-V
Spirovac	Pfizer Ltd	00057/4240	27/10/2005	Mutually Recognised	Leptospira borgpetersenii	N	Cattle	POM-V
Spirovac for Cattle	Pfizer Ltd	00057/4269	26/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eptospira borgpetersenii	N	Cattle	POM-V
Sputolosin Powder 5 mg/g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18	30/07/1985	National	Dembrexine Hydrochloride Monohydrate	N	Horses	POM-V
Stabox 5%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lets	Virbac S.A.	05653/4044	02/11/1995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Pigs	POM-V
Stabox 50% Oral Soluble Powder Pig	Virbac S.A.	05653/4115	28/07/2003	Mutually Recognised	Amoxicillin Trihydrate	N	Pigs	POM-V
Startvac Emul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Laboratorios Hipra SA	EU/2/08/092/001-007	11/02/2009	Centralised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N	Cattle	POM-V
Stellamune Mycoplasma	Pfizer Ltd	00057/4106	19/02/1996	National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Stellamune Once	Pfizer Ltd	00057/4206	10/09/2001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Sterilised Water for Injections BP	Dechra Limited	10434/4030	25/10/1994	National		N	All Animals	POM-V
SteroVet; Solution for Infusion for Cattle, Horse, Sheep, Goat, Dog and Cat	B. Braun Vet Care GMBH	30026/4001	17/03/2008	Mutually Recognised	Glucose (declared active), Glucose Monohydrate,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Acid Phosphate Dihydrate, Sodium Chloride, Sodium Lactate (declared active)	N	Cats, Cattle, Dogs, Goats, Horses, Sheep	POM-V
Stomorgyl 10 Film-Coated Tablet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84	30/06/1993	National	Metronidazole, Spiramycin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tomorgyl 2 Film-Coated Tablet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83	30/06/1993	National	Metronidazole, Spiramycin	N	Cats, Dogs	POM-V
Stomorgyl 20 Film-Coated Tablet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85	30/06/1993	National	Metronidazole, Spiramycin	N	Cats, Dogs	POM-V
Streptacare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5	30/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
Stresnil 4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Janssen-Cilag Ltd	00242/4022	17/05/1989	National	Azaperone	N	Pigs	POM-V
Strinacin II Tablet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058	28/06/1990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POM-V
Suiseng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Swine	Laboratorios Hipra SA	17533/4009	05/11/2009	Mutually Recognised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perfringens, Escherichia coli	N	Pigs	POM-V
Suprelorin 4.7 mg Implant for Dogs	Virbac S.A.	EU/2/07/072/001-002	10/07/2007	Centralised	Deslorelin (declared active), Deslorelin Acetate	N	Dogs	POM-V
Surolan Ear Drops and Cutaneous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12	05/09/1985	National	Miconazole Nitrate, Polymyxin B Sulphate, Prednisolone Acetate	N	Cats, Dogs	POM-V
Suvaxyn Aujeszky 783 + o/w, Powder and Solvent for Emul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Holland	EU/2/98/009/001-006	07/08/1998	Centralised	Aujeszky's disease virus	N	Pigs	POM-V
Suvaxyn Ery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2	15/04/2004	Mutually Recognised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N	Pigs	POM-V
Suvaxyn M Hyo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49	15/09/1995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Suvaxyn M Hyo Parasuis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44	21/03/2006	Mutually Recognised	Haemophilus parasuis,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Suvaxyn MH-One Emulsion for Injection for Pig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73	24/10/2008	Mutually Recognised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Suvaxyn Parvo ST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7	12/09/2008	Mutually Recognised	Porcine parvovirus	N	Pigs	POM-V
Suvaxyn Parvo/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12	23/04/2002	Mutually Recognised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Porcine parvovirus	N	Pigs	POM-V
Suvaxyn Respifend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80	17/06/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Mycoplasma hyopneumoniae	N	Pigs	POM-V
Synulox Bolus 500 mg Film-Coated Tablets	Pfizer Ltd	00057/4186	01/11/199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Cattle	POM-V
Synulox Lactat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147	11/12/1986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Prednisolone	N	Cattle	POM-V
Synulox Palatable Drops, Powder for Oral Suspension	Pfizer Ltd	00057/4112	20/08/1990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Synulox Palatable Tablets 250 mg	Pfizer Ltd	00057/4163	20/08/1990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ynulox Palatable Tablets 50 mg	Pfizer Ltd	00057/4164	20/08/1990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Dogs	POM-V
Synulox Palatable Tablets 500 mg	Globalmed Ltd	24939/4003	05/07/2004	National (MAPI)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Synulox Palatable Tablets 500 mg	Pfizer Ltd	00057/4102	19/10/1995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Synulox Ready to Use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152	27/05/1987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Potassium Clavulanate	N	Cats, Cattle, Dogs, Pigs	POM-V
Synutrim Fortesol Powder for Oral Solu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17	04/06/1992	National	Sulphadiazine Sodium, Trimethoprim	N	Chickens, Pigs	POM-V
Synutrim Granular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38	31/03/1993	National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hickens, Pigs, Turkeys	POM-V
Syvazul 1	Laboratorios SYVA, S.A.	31592/4002	27/11/2009	National	Bluetongue virus	N	Sheep	POM-V
Tardak 1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156	23/04/1992	National	Delmadinone Acetate	N	Cats, Dogs	POM-V
Terramycin Aerosol Spray 3.92% w/w Cutaneous Spray	Pfizer Ltd	00057/4091	08/02/1989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
Terramycin Q-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087	27/07/1990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Pigs, Sheep	POM-V
Terramycin Soluble Powder 5% w/w Oral Powder	Pfizer Ltd	00057/4084	01/12/1988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Terramycin Soluble Powder Concentrated 20% w/w Oral Powder	Pfizer Ltd	00057/4083	01/12/1988	National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POM-V
Terramycin/LA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085	27/07/1990	National	Oxytetracycline	N	Cattle, Pigs, Sheep	POM-V
Terrexine 24 Intramammary Suspension	Tulivin Laboratories Ltd	11810/4010	31/03/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Cefalexin Monohydrate, Kanamycin Sulphate	N	Cattle	POM-V
Tetanus Antitoxin Behring	Intervet UK Ltd	01708/4506	14/10/2005	National	Clostridium tetani, Equine plasma	N	Dogs, Horses, Sheep	POM-V
Tetanus Toxoid Concentrated	Intervet UK Ltd	01708/4510	14/10/2005	National	Clostridium tetani	N	Cattle, Dogs, Horses, Pigs, Sheep	POM-V
Tetcin Aerosol Cutaneous Spray Solu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33	09/03/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attle, Pigs, Sheep	POM-V
Tetra-Delta Intramammary Suspension	Pfizer Ltd	00057/4268	29/03/1985	National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Neomycin Sulphate, Novobiocin, Prednisolone,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OM-V
Tetramin 200 Powder Premix for Medicated Feed	Pfizer Ltd	00057/4258	28/0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Oxytetracycline	N	Pigs	POM-V
Tetroxyl L.A. 200 mg/ml Oxytetracycline Solution for Injection	Bimeda Chemicals Ltd	02676/4137	12/11/1990	National	Oxytetracycline (Declared Active), Oxytetracycline Dihydrate	N	Cattle, Pigs, Sheep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Tetsol 800 80% w/w Powder for Oral Solu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8	05/12/1995	National	Tetracycline Hydrochloride	N	Chickens, Pigs	POM-V
Therios 300 mg Palatable Tablets for Dogs	Sogeval SA	20749/4004	27/02/2009	National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Therios 750 mg Palatable Tablets for Dogs	Sogeval SA	20749/4013	27/02/2009	National	Cefalexin (Declared Active), Cefalexin Monohydrate	N	Dogs	POM-V
Thyroxyl 0.1 mg Tablet	Dechra Limited	10434/4011	01/03/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L Thyroxine Sodium xH2O	N	Dogs	POM-V
Thyroxyl 0.2 mg Tablet	Dechra Limited	10434/4012	01/03/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L Thyroxine Sodium xH2O	N	Dogs	POM-V
Thyroxyl 0.3 mg Tablet	Dechra Limited	10434/4013	01/03/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L Thyroxine Sodium xH2O	N	Dogs	POM-V
Thyroxyl 0.5 mg Tablet	Dechra Limited	10434/4014	01/03/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L Thyroxine Sodium xH2O	N	Dogs	POM-V
Thyroxyl 0.8 mg Tablet	Dechra Limited	10434/4015	01/03/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 Thyroxine Sodium (declared active), L Thyroxine Sodium xH2O	N	Dogs	POM-V
Tiacil 0.50% w/v Eye Drops, Solution	Virbac S.A.	05653/4026	29/01/1993	National	Gentamicin Sulphate	N	Cats, Dogs, Rabbits	POM-V
Tiamvet Solution 12.5%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28	14/09/2007	National	Tiamulin Hydrogen Fumarate	N	Pigs	POM-V
Tildren 500 mg, Lyophilisate for Solution for Infusion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7	11/12/2007	National	Disodium Tiludronate Hemihydrate, Tiludronic Acid (Declared Active)	N	Horses	POM-V
Tilmovet 10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04	13/02/2009	Mutually Recognised	Tilmicosin	N	Pigs	POM-V
Tilmovet 100 mg/g Granules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15	14/10/2009	Mutually Recognised	Tilmicosin	N	Pigs	POM-V
Tilmovet 20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03	13/02/2009	Mutually Recognised	Tilmicosin	N	Pigs	POM-V
Tilmovet 250 mg/ml Concentrate for Oral Solution	Huvepharma N.V.	30282/4001	28/10/2008	Mutually Recognised	Tilmicosin	N	Cattle, Chickens, Pigs, Turkeys	POM-V
Tilmovet 4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05	30/10/2008	Mutually Recognised	Tilmicosin	N	Pigs	POM-V
Tivafof, 1% (10 mg/ml) Emulsion for Injection	B. Braun Melsungen AG	03551/4001	14/06/2002	National	Propofol, Propofol (declared active)	N	Cats, Dogs	POM-V
Tolfedine 4% Solution for Injection for Use in Dogs and Cats	Vetoquinol UK Ltd	08007/4048	15/10/1993	National	Tolfenamic Acid	N	Cats, Dogs	POM-V
Tolfedine Tablets 20 mg	Vetoquinol UK Ltd	08007/4047	15/10/1993	National	Tolfenamic Acid	N	Dogs	POM-V
Tolfedine Tablets 6 mg	Vetoquinol UK Ltd	08007/4049	15/10/1993	National	Tolfenamic Acid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Tolfedine Tablets 60 mg	Vetoquinol UK Ltd	08007/4050	15/10/1993	National	Tolfenamic Acid	N	Dogs	POM-V
Tolfine, 4%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Vetoquinol UK Ltd	08007/4063	19/05/1999	National	Tolfenamic Acid	N	Cattle, Pigs	POM-V
Top Drop 100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Bayer plc	00010/4123	28/03/2002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Top Drop 250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Bayer plc	00010/4124	28/03/2002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Top Drop 40 Spot-on Solution for Small Cats	Bayer plc	00010/4120	28/03/2002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Cats	POM-V
Top Drop 40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Bayer plc	00010/4122	28/03/2002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Top Drop 400 Spot-on Solution for Extra Large Dogs	Bayer plc	00010/4125	28/03/2002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Dogs	POM-V
Top Drop 80 Spot-on Solution for Large Cats	Bayer plc	00010/4121	28/03/2002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Cats	POM-V
Torbugesic 1%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43	15/05/1991	National	Butorphanol (Declared Active), Butorphanol Tartrate	N	Cats, Dogs, Horses	POM-V
Torbutrol Tablets 10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87	20/04/1990	National	Butorphanol (Declared Active), Butorphanol Tartrate	N	Dogs	POM-V
Torbutrol Tablets 5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86	20/04/1990	National	Butorphanol (Declared Active), Butorphanol Tartrate	N	Dogs	POM-V
Torphazol 4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aniMedica GmbH	24745/4005	10/12/2009	Mutually Recognised	Butorphanol (Declared Active), Butorphanol Tartrate	N	Cats, Dogs	POM-V
Torvac RSV/BVD	Novartis Animal Vaccines Ltd	18343/4006	26/10/2004	Mutually Recognised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Bovine viral diarrhoea virus	N	Cattle	POM-V
Toxovax Solution for Injection for Sheep	Intervet UK Ltd	01708/4331	19/10/2005	National	Toxoplasma gondii	N	Sheep	POM-V
Tracherine	Pfizer Ltd	00057/4241	13/10/2005	National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N	Cattle	POM-V
Tribrisen 24% Suspens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065	27/03/1990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Cats, Dogs	POM-V
Tribrisen 48% Suspension for Injec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08	30/05/1990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Horses, Pigs	POM-V
Tribrisen Oral Paste	Schering-Plough Ltd	00201/4064	27/03/1990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Tribrisen Tablets	Schering-Plough Ltd	00201/4069	27/03/1990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Trimacare 20 Tablet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6	15/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s,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Trimacare 24%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5	29/10/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Trimacare 80 Tablet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7	21/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Trimacare Tablets Bolu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48	15/05/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POM-V
Trimediazine 15%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Vetoquinol UK Ltd	08007/4023	05/04/1990	National	Sulfadiazine, Trimethoprim	N	Chickens, Pigs, Turkeys	POM-V
Trimediazine BMP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Vetoquinol UK Ltd	08007/4064	11/08/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Trimethoprim	N	Pigs, Turkeys	POM-V
Trimediazine Paste Oral Paste	Vetoquinol UK Ltd	08007/4046	04/08/1993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Trimediazine Plain Oral Powder	Vetoquinol UK Ltd	08007/4036	13/08/1992	National	Sulfadiazine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Horses	POM-V
Trimedoxine 4S Tablet	Vetoquinol UK Ltd	08007/4017	22/06/1988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POM-V
Trimedoxine 80 Tablets	Vetoquinol UK Ltd	08007/4055	11/05/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fadiazine, Trimethoprim	N	Dogs	POM-V
Trinacol Solution for Inject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24	12/11/1987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attle, Dogs, Pigs	POM-V
Trocoxil 20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8/084/002	09/09/2008	Centralised	Mavacoxib	N	Dogs	POM-V
Trocoxil 30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8/084/003	09/09/2008	Centralised	Mavacoxib	N	Dogs	POM-V
Trocoxil 6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8/084/001	09/09/2008	Centralised	Mavacoxib	N	Dogs	POM-V
Trocoxil 75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8/084/004	09/09/2008	Centralised	Mavacoxib	N	Dogs	POM-V
Trocoxil 95 mg Chewable Tablets for Dogs	Pfizer Ltd	EU/2/08/084/005	09/09/2008	Centralised	Mavacoxib	N	Dogs	POM-V
TUR-3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34	23/05/1997	National	Avian paramyxovirus 3, Avian pneumo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Turkeys	POM-V
Twinox 250 mg Film Coated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D.O.O	24619/4000	02/07/2004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Twinox 500 mg Film Coated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D.O.O	24619/4002	02/07/2004	National	Amoxicillin (Declared Active), Amoxicillin Trihydrate, Clavulanic Acid (Declared Active), Potassium Clavulanate	N	Dogs	POM-V
Tylan 200, 2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98	05/01/1996	National	Tylosin	N	Cattle, Pigs	POM-V
Tylan G20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82	23/04/1993	National	Tylosin Phosphate*	N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Tylan G250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104	14/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Tylosin	N	Pigs	POM-V
Tylan G50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109	22/10/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Tylosin Phosphate*	N	Pigs	POM-V
Tylan Soluble Powder for Oral Solution	Eli Lilly & Company Ltd	00006/4091	25/05/1993	National	Tylosin Tartrate	N	Cattle, Chickens, Pigs, Turkeys	POM-V
Tyluvet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23	26/10/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Tylosin	N	Pigs	POM-V
Ubro Red Dry Cow Intramammary Suspens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4	29/03/1985	National	Framycetin Sulphate, Penethamate Hydriodide,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OM-V
Ubro Yellow Milking Cow Intramammary Suspens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5	29/03/1985	National	Dihydrostreptomycin (Declared Active), Dihydrostreptomycin Sulphate, Framycetin Sulphate, Penethamate Hydriodide, Prednisolone	N	Cattle	POM-V
Ubrolexin Intramammary Suspension for Lactating Dairy Cow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8	04/09/2008	Mutually Recognised	Cefalexin Monohydrate, Kanamycin Sulphate	N	Cattle	POM-V
Ultrapen LA 30% Suspen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3	21/01/1997	National	Procaine Penicillin	N	Cattle, Pigs	POM-V
Uniprim 150 Powder 15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	Pfizer Ltd	00057/4270	05/02/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Sulphadiazine, Trimethoprim	N	Chicken, Pigs	POM-V
Urilin Syrup 50 mg per ml	Dechra Limited	10434/4003	28/01/2005	National	Phenylpropanolamine Hydrochloride	N	Dogs	POM-V
Vanguard 7	Pfizer Ltd	00057/4167	28/10/2005	National	Canine adenovirus,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Vanguard CPV	Pfizer Ltd	00057/4169	28/10/2005	National	Canine parvovirus	N	Dogs	POM-V
Vanguard CPV-L	Pfizer Ltd	00057/4170	28/10/2005	National	Canine parvovirus,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Vanguard L	Pfizer Ltd	00057/4291	03/12/2009	National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Vanguard Lepto ci	Pfizer Ltd	00057/4168	25/10/2005	National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Vanguard Lepto for Dogs	Pfizer Ltd	00057/4290	19/08/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Vanguard Rabies	Pfizer Ltd	00057/4284	23/05/2000	National	Rabies virus	N	Cats, Dogs	POM-V
Vasotop 0.625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500	11/05/2005	National	Ramipril	N	Dogs	POM-V
Vasotop 1.25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403	25/02/1999	National	Ramipril	N	Dogs	POM-V
Vasotop 10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501	11/05/2005	National	Ramipril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Vasotop 2.5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404	25/02/1999	National	Ramipril	N	Dogs	POM-V
Vasotop 5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400	25/02/1999	National	Ramipril	N	Dogs	POM-V
Ventipulmin Granules 16 micrograms/gram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40	22/08/1994	National	Clenbuterol Hydrochloride	4	Horses	POM-V
Ventipulmin Solution for Injection 30 micrograms/ml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39	22/08/1994	National	Clenbuterol Hydrochloride	4	Horses	POM-V
Ventipulmin Syrup 25 micrograms/ml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32	29/01/1991	National	Clenbuterol Hydrochloride	4	Horses	POM-V
Veramix Sheep Sponge 60 mg Vaginal Sponge and Cream	Pfizer Ltd	00057/4235	07/06/1995	National	Cetrimid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N	Sheep	POM-V
Vetalar V 10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Pfizer Ltd	00057/4257	15/01/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Ketamine Hydrochloride	4	Cats, Dogs, Horses, Sub Human Primates	POM-V
Vetergesic 0.3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Reckitt Benckiser Healthcare UK Ltd	00063/4000	24/04/1995	National	Buprenorphine (Declared active), Buprenorphine Hydrochloride	3	Cats, Dogs	POM-V
Vetergesic Multidose, 0.3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Dogs and Cats	Reckitt Benckiser Healthcare UK Ltd	00063/4001	11/04/2008	Mutually Recognised	Buprenorphine (Declared active), Buprenorphine Hydrochloride	3	Cats, Dogs	POM-V
Vetflurane 100% Inhalation Vapour, Liquid	Virbac Ltd	11188/4009	02/03/2001	National	Isoflurane	N	Cats, Dogs	POM-V
Vetivex 1 (Sodium Chloride 0.9% w/v Intravenous Infusion B.P. (Vet))	Dechra Limited	10434/4049	09/11/1998	Mutually Recognised	Sodium 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ivex 11 Solution for Infusion (Compound Sodium Lactate Intravenous Infusion BP (Vet))	Dechra Limited	10434/4048	06/02/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alcium Chloride Di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Lact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ivex 18 (Sodium Chloride 0.18% & Glucose 4% Intravenous Infusion B.P (vet))	Dechra Limited	10434/4058	09/12/1998	National	Glucos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ivex 20 (Sodium Chloride 7.2% w/v Intravenous Infusion BP (Vet))	Dechra Limited	10434/4056	18/12/1998	National	Sodium 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ivex 3 (Sodium Chloride 0.9% w/v & Glucose 5% w/v Intravenous Infusion BP (Vet))	Dechra Limited	10434/4055	10/12/1998	National	Glucos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ivex 6 (Glucose 5% w/v Intravenous Infusion BP (Vet))	Dechra Limited	10434/4057	20/10/1998	National	Glucose Monohydr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ivex 9 (Ringers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54	17/11/1998	National	Calcium Chloride Di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etmedin 1.25 mg Flavour Tablet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7	24/07/2007	National	Pimobendan	N	Dogs	POM-V
Vetmedin 1.25 mg Hard Capsul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66	18/07/2001	National	Pimobendan	N	Dogs	POM-V
Vetmedin 2.5 mg Hard Capsul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49	21/07/1999	National	Pimobendan	N	Do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Vetmedin 5 mg Hard Capsule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50	21/07/1999	National	Pimobendan	N	Dogs	POM-V
Vetmedin 5.0 mg Flavour Tablets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76	24/07/2007	National	Pimobendan	N	Dogs	POM-V
Vetmulin 10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11	19/03/2009	Mutually Recognised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N	Pigs	POM-V
Vetmulin 100 mg/g Oral Granules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16	28/10/2009	Mutually Recognised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N	Pigs	POM-V
Vetmulin 162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13	21/10/2009	Mutually Recognised	Tiamulin (declared active),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N	Pigs	POM-V
Vetmulin 20 g/k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06	18/03/2009	Mutually Recognised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N	Pigs	POM-V
Vetmulin 450 mg/g Granules for Use in Drinking Water for Pigs	Huvepharma N.V.	30282/4002	19/03/2009	Mutually Recognised	Tiamulin Hydrogen Fumarate (declared active)	N	Pigs	POM-V
Vetofol 1.0% w/v Emul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4	13/07/2005	National	Propofol	N	Cats, Dogs	POM-V
Vetoryl 10 mg Hard Capsules for Dog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41	13/07/2007	Mutually Recognised	Trilostane	N	Dogs	POM-V
Vetoryl 120 mg Hard Capsule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10	04/04/2005	Mutually Recognised	Trilostane	N	Dogs	POM-V
Vetoryl 30 mg Hard Capsule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26	13/04/2005	Mutually Recognised	Trilostane	N	Dogs	POM-V
Vetoryl 60 mg Hard Capsules	Arnolds Veterinary Products Ltd	01732/4109	04/04/2005	Mutually Recognised	Trilostane	N	Dogs	POM-V
Vetremox 100% w/w Powder for Use in Drinking Water	Alpharma Animal Health Bvba	21766/4001	17/09/1990	National	Amoxicillin Trihydrate	N	Chickens, Turkeys	POM-V
Vetremox Fish 100% w/w Powder for Top-Dressing Use	Pharmaq Ltd	11003/4005	12/04/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Salmon	POM-V
Vetremox Pigeon 100% w/w Powder for Oral Solution	Pharmaq Ltd	11003/4007	19/08/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moxicillin Trihydrate	N	Pigeons	POM-V
Vidalta 10 mg Tablets for Cats	Intervet UK Ltd	01708/4529	21/12/2007	National	Carbimazole	N	Cats	POM-V
Vidalta 15 mg Tablets for Cats	Intervet UK Ltd	01708/4530	21/12/2007	National	Carbimazole	N	Cats	POM-V
Virbacef Powder for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Virbac S.A.	05653/4134	28/09/2007	Mutually Recognised	Ceftiofur (Declared Active), Ceftiofur Sodium	N	Cattle, Pigs	POM-V
Virbagen L	Virbac S.A.	05653/4047	17/10/2005	National	Leptospira interrogans	N	Dogs	POM-V
Virbages 4 mg/ml Oral Solution for Pigs	Virbac S.A.	05653/4136	28/03/2008	Mutually Recognised	Altrenogest	N	Pigs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Virbaxyl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Ltd	11188/4001	09/11/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Xylazine	N	Horses	POM-V
Virbaxyl 2%	Virbac Ltd	11188/4000	09/11/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Xylazin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Vitamin B1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Bimeda Chemicals Ltd	02676/4158	27/05/1993	National	Thiamin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
Vitenium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2	13/10/1994	National	D Alpha Tocopheryl Acetate, Sodium Selenite	N	Cattle, Horses, Sheep	POM-V
Vitesel Emuls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5	18/06/1993	National	Alpha Tocopheryl Acetate, Potassium Selenate	N	Cattle, Pigs, Sheep	POM-V
Vivitonin 100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446	30/09/1994	National	Propentofylline	N	Dogs	POM-V
Vivitonin 50 mg Tablets	Intervet UK Ltd	01708/4417	17/09/1991	National	Propentofylline	N	Dogs	POM-V
Voren 14 0.3% Suspension for Injection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36	26/04/1994	National	Dexamethasone Isonicotinate	N	Cats, Dogs, Horses	POM-V
Voren Suspension for Injection, 1 mg/ml	Boehringer Ingelheim Ltd	00015/4042	12/10/1994	National	Dexamethasone Isonicotinate	N	Cats, Cattle, Dogs, Horses, Pigs	POM-V
Walpole's Buffer Irrigation Solution	Dechra Limited	10434/4042	26/02/1993	National	Acetic Acid Glacial, Sodium Acetate Trihydrate	N	Cats	POM-V
Water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87	15/08/1995	National		N	All Animals	POM-V
Water for Injection 100% v/v Solvent For Parenteral Use (Animalcar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8	14/05/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N	All Animals	POM-V
Water for Injection, Solvent for Parenteral Use	Pfizer Ltd	00057/4244	28/01/1993	National		N	Cats, Dogs	POM-V
Water for Injections 100% v/v Solvent for Parenteral Us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2	17/05/1994	National		N	All Animals	POM-V
Xeden 15 mg Tablet for Cats	Sogeval SA	20749/4008	29/10/2008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Cats	POM-V
Xeden 150 mg Tablet for Dogs	Sogeval SA	20749/4010	29/10/2008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Dogs	POM-V
Xeden 50 mg Tablet for Dogs	Sogeval SA	20749/4009	29/10/2008	Mutually Recognised	Enrofloxacin	N	Dogs	POM-V
Xylacare 2% w/v Solution for Injection	Animalcare Ltd	10347/4020	30/08/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Xylazin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Xylapan 20 mg Solution for Injection	Vetoquinol UK Ltd	08007/4091	22/12/1999	National	Xylaz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
Yarvitan 5 mg/ml Oral Solution for Dogs	Janssen Animal Health Bvba	EU/2/06/063/001-003	14/11/2006	Centralised	Mitrapide	N	Dogs	POM-V

Product Name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Ypozane 1.875 mg Tablets for Dogs	Virbac S.A.	EU/2/06/068/001	11/01/2007	Centralised	Osaterone acetate	N	Dogs	POM-V
Ypozane 15 mg Tablets for Dogs	Virbac S.A.	EU/2/06/068/004	11/01/2007	Centralised	Osaterone acetate		Dogs	POM-V
Ypozane 3.75 mg Tablets for Dogs	Virbac S.A.	EU/2/06/068/002	11/01/2007	Centralised	Osaterone acetate		Dogs	POM-V
Ypozane 7.5 mg Tablets for Dogs	Virbac S.A.	EU/2/06/068/003	11/01/2007	Centralised	Osaterone acetate		Dogs	POM-V
Zactran 15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Merial	EU/2/08/082/001-006	24/07/2008	Centralised	Gamithromycin	N	Cattle	POM-V
Zincotec Zinc Oxide 100% Premix Medicated Feeding Stuff	SCA NuTec (Provimi Ltd)	03941/4000	09/07/1990	National	Zinc Oxide	N	Pigs	POM-V
Zitac Vet 100 mg Tablet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6	22/02/2007	Mutually Recognised	Cimetidine	N	Dogs	POM-V
Zitac Vet 200 mg Tablet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7	22/02/2007	Mutually Recognised	Cimetidine	N	Dogs	POM-V
Zitac Vet 50 mg Tablet for Dogs	Intervet International BV	06376/4055	22/02/2007	Mutually Recognised	Cimetidine	N	Dogs	POM-V
Zolan 100 mg Tablets for Dogs	Virbac S.A.	05653/4113	20/06/2002	Mutually Recognised	Nimesulide	N	Dogs	POM-V
Zolan 50 mg Tablets for Dogs	Virbac S.A.	05653/4112	20/06/2002	Mutually Recognised	Nimesulide	N	Dogs	POM-V
Zulvac 8 Bovi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72	28/07/2008	National	Bluetongue virus	N	Cattle	POM-V
Zulvac 8 Ovi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71	09/04/2009	National	Bluetongue virus	N	Sheep	POM-V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drenacaine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3	07/07/2004	Mutually Recognised	Adrenaline (Declared Active), Adrenaline Acid Tartrate, Procaine Hydrochloride	N	Cattle	POM-VPS
Albacert 2.5% SC Oral Suspens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50	02/04/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Cobalt (Declared Active), Selenium (Declared Active)	N	Cattle, Sheep	POM-VPS
Albenil Low Dose 10% w/v Oral Suspension	Virbac Ltd	11188/4005	25/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Albenil SC 2.5% w/v Oral Suspension	Virbac Ltd	11188/4004	26/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Albensure 10% w/v Oral Suspension	Animax Ltd	14016/4005	26/02/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Albensure 2.5% w/v SC Oral Suspension	Animax Ltd	14016/4006	26/02/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Cobalt Sulphate Heptahydrate, Sodium Selenite	N	Cattle, Sheep	POM-VPS
Albex 10% w/v Oral Suspens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6	01/04/1996	National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Albex 2.5% w/v SC Oral Suspens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5	29/03/1996	National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Allverm 4% Oral Suspension for Sheep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84	18/01/1990	National	Albendazole Oxide	N	Sheep	POM-VPS
Alpha Ject 1200	Pharmaq AS	21714/4001	11/01/2000	National	Aeromonas salmonicida subsp. salmonicida	N	Salmon	POM-VPS
Alstomec 1%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Pigs	Alstoe Ltd (Alstoe Animal Health)	14094/4002	31/07/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igs	POM-VPS
Alstomec Pour-on Solution 0.5%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40	30/01/2006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OM-VPS
Animec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23	21/09/2000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igs	POM-VPS
Animec 18.7 mg/g Oral Paste for Horses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19	12/03/2008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Animec Pour-on Solution 0.5%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38	24/11/2005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OM-VPS
Anivit 4BC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9	28/03/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Ascorbic Acid (E300), Nicotinam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Anivit B12 Solution for Injection 1000 µg/ml	Dales Pharmaceuticals	00123/4128	27/10/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yanocobalamin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Anivit B12 Solution for Injection 250 µg/ml	Dales Pharmaceuticals	00123/4127	27/10/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yanocobalamin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AquaVac ERM	Schering-Plough Ltd	00201/4193	03/08/2004	Mutually Recognised	Yersinia ruckeri	N	Trout	POM-VPS
AquaVac ERM Oral	Schering-Plough Ltd	00201/4195	23/11/2001	Mutually Recognised	Yersinia ruckeri	N	Trout	POM-VPS

Auriplak 1.2 g Insecticidal Ear Tag	Virbac S.A.	05653/4028	27/07/1988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tle	POM-VPS
Autoworm Finisher 6250 mg Pulsatile-Release Intraruminal Device	Pfizer Ltd	00057/4277	21/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Oxfendazole (Declared Active)*	N	Cattle	POM-VPS
Autoworm First Grazer 8750 mg Pulsatile-Release Intraruminal Device	Pfizer Ltd	00057/4280	21/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Oxfendazole (Declared Active)*	N	Cattle	POM-VPS
Autoworm Ready Pulse	Pfizer Ltd	00057/4289	21/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Oxfendazole (Declared Active), Oxfendazole 1250 mg Annular Tablet (Blue)	N	Cattle	POM-VPS
Barricade 5% w/v, Concentrate for Cutaneous Spray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46	22/04/1993	National	Cypermethrin Cis 50: Trans 50	N	Horses	POM-VPS
Battle's MS-25 2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9	03/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Magnesium Sulphate Heptahydrate	N	Cattle, Sheep	POM-VPS
Baymec 5 mg/ml Pour-on for Cattle	Bayer plc	00010/4119	08/01/2002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OM-VPS
Bimectin 1% w/v Solution for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29	21/09/2000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Bimectin 5 mg/ml Pour-on Solution for Cattle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23	29/07/2008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Bimectin Horse Oral Paste 1.87% w/w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42	25/09/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Horses	POM-VPS
Blackleg Vaccine	Pfizer Ltd	00057/4274	19/10/2005	National	Clostridium chauvoei	N	Cattle, Sheep	POM-VPS
Blackleg Vaccine	Intervet UK Ltd	01708/4507	17/10/2005	National	Clostridium chauvoei	N	Cattle, Sheep	POM-VPS
Bloat Guard Drench, 83.33% w/v Poloxalene in an Oral Solution	Agrimin Ltd	04261/4002	03/10/1991	National	Poloxalene	N	Cattle	POM-VPS
Bovex 2.265% w/v Oral Suspension for Cattle and Sheep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8	21/03/1994	National	Oxf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Bravoxin 10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Sheep	Schering-Plough Ltd	00201/4235	01/12/2008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haemolyticum,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sordellii, Clostridium tetani	N	Cattle, Sheep	POM-VPS
Butox Swish, Pour-on Suspension 0.75% w/v	Intervet UK Ltd	01708/4495	27/02/2004	National	Deltamethrin	N	Cattle	POM-VPS
Calciject 20 CM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0	15/11/1994	National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Sheep	POM-VPS
Calciject 20 CMD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9	23/05/2000	National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Glucos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Sheep	POM-VPS
Calciject 40 CM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5	05/07/1994	National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Calciject 40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69	19/03/1986	National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N	Cattle	POM-VPS

Calciject L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4	20/12/1994	National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Calcium Hydroxide,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Calcium Borogluconate 40%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8	19/03/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N	Cattle	POM-VPS
Calcium Borogluconate 40% CM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5	05/07/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Declared Active),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Casofend Low Volume 9.06% w/v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5	27/07/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Oxfendazole	N	Sheep	POM-VPS
Chanaverm 7.5% Oral Solution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2	27/01/1993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Clik 5% Pour-on Suspens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54	15/03/2001	Mutually Recognised	Dicyclanil	N	Sheep	POM-VPS
Closamectin Pour-on Solu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0	04/08/2009	Mutually Recognised	Closantel, Ivermectin	N	Cattle	POM-VPS
Closamectin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54	28/07/2006	Mutually Recognised	Closantel, Ivermectin	N	Cattle	POM-VPS
Clover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2	06/02/2007	Mutually Recognised	Closantel, Ivermectin	N	Cattle	POM-VPS
Colombovac Paratyphus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Pigeon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45	29/09/1998	Mutually Recognised	Salmonella enterica	N	Pigeons	POM-VPS
Colombovac PMV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62	25/02/2005	National	Newcastle disease virus	N	Pigeons	POM-VPS
Colombovac PMV/Pox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72	05/10/1998	National	Newcastle disease virus, Pigeonpox virus	N	Pigeons	POM-VPS
Combinex Cattle Oral Suspens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21	13/08/1991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Triclabendazole	N	Cattle	POM-VPS
Combinex Oral Suspens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20	13/08/1991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Combivit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8	21/12/1993	National	Ascorb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Coopers Ectoforce Sheep Dip 60% w/w Concentrate for Dip Solution	Schering-Plough Ltd	00201/4168	06/04/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Sheep	POM-VPS
Coopers Spot on Insecticide 1% W/V Cutaneous Solution	Pfizer Ltd	00057/4278	21/12/1984	National	Deltamethrin	N	Cattle, sheep	POM-VPS
Copprite 2 g Hard Capsule	Pfizer Ltd	00057/4154	23/09/1993	National	Copper Oxide	N	Sheep	POM-VPS
Copprite 24 g Hard Capsule	Pfizer Ltd	00057/4144	03/05/1994	National	Copper Oxide	N	Cattle	POM-VPS
Copprite 4 g Hard Capsule	Pfizer Ltd	00057/4142	24/09/1993	National	Copper Oxide	N	Cattle, Sheep	POM-VPS

Cosecure Cattle Bolus	Telsol Ltd	18584/4000	24/02/2003	Mutually Recognised	Cobalt (Declared Active), Cobaltic-Cobaltous Oxide, Copper (Declared Active), Cupric Oxide, Selenium (Declared Active), Sodium Selenate Anhydrous	N	Cattle	POM-VPS
Covexin 10 Suspension for Injection for Sheep and Cattle	Pfizer Ltd	00057/4282	11/03/2003	Mutually Recognised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haemolyticum,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sordellii, Clostridium tetani	N	Cattle, Sheep	POM-VPS
Covexin 8	Pfizer Ltd	00057/4281	19/10/2005	National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haemolyticum,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tetani	N	Cattle, Sheep	POM-VPS
Crovect 1.25% w/v Pour-on Solution for Sheep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26	11/03/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Cypermethrin Cis 80:Trans 20	N	Sheep	POM-VPS
Cryomarex Rispens	Meril Animal Health Ltd	08327/4104	30/08/1994	National	Marek's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PS
Cydectin 0.1% w/v Oral Drench for Shee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3	23/04/1996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N	Sheep	POM-VPS
Cydectin 0.5% w/v Pour on Solution for Cattl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4	10/01/1997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N	Cattle	POM-VPS
Cydectin 1% Injectable Solution for Cattl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7	03/02/1995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N	Cattle	POM-VPS
Cydectin 1%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Shee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57	17/07/1998	National	Moxidectin	N	Sheep	POM-VPS
Cydectin 10% LA For Cattl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3	02/11/2005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N	Cattle	POM-VPS
Cydectin 2% w/v LA Solution for Injection for Shee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8	13/01/2009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N	Sheep	POM-VPS
Dalocain Solution for Injection	Dales Pharmaceuticals	00123/4129	07/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Adrenaline Acid Tartrate, Proca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PS
Dalophylline 140 mg Oral Gel	Dechra Limited	10434/4017	17/01/1985	National	Etamiphylline Camsylate	N	Cattle, Sheep	POM-VPS
Dectomax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Sheep	Pfizer Ltd	00057/4094	05/08/1994	National	Doramectin	N	Cattle, Sheep	POM-VPS
Dectomax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for Pigs	Pfizer Ltd	00057/4109	30/10/1997	Mutually Recognised	Doramectin	N	Pigs	POM-VPS
Dectomax Pour-on Solution for Cattle 5 mg/ml	Pfizer Ltd	00057/4110	19/02/1997	Mutually Recognised	Doramectin	N	Cattle	POM-VPS
Deosect 5% w/v Concentrate for Cutaneous Spray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24	26/04/1993	National (Informed Consent)	Cypermethrin Cis 50: Trans 50	N	Horses	POM-VPS
Depidex Drench 0.08% w/v Oral Solution for Sheep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10	19/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Sheep	POM-VPS
Depidex Pour-on Solution 0.5% w/v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64	05/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Dermisol Cream	Pfizer Ltd	00057/4136	11/08/1992	National	Benzoic Acid, Malic Acid Anhydrous, Propylene Glycol, Salicylic Acid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PS

Demisol Multicleanse Cutaneous Solution	Pfizer Ltd	00057/4153	30/04/1992	National	Benzoic Acid, Malic Acid Anhydrous, Propylene Glycol, Salicylic Acid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PS
Dopram V Drops 20 mg/ml Oral Drops,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39	01/10/1991	National	Doxapram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Sheep	POM-VPS
Downland Fluke and Worm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9	22/10/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amisole Hydrochloride, Oxcyclozanide	N	Cattle, Sheep	POM-VPS
Downland Levamisole 7.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333	27/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Downland Low Volume Calcium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1	03/08/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Calcium Hydroxide,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Downlands Calcium Borogluconate 20% w/v PMD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05	23/05/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Glucos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Sheep	POM-VPS
Downlands Calcium Borogluconate 40% w/v CM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4	05/07/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Dunlop's 20% w/v PMD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06	23/05/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Glucos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Sheep	POM-VPS
Dunlop's 4 BC Vitamin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77	21/12/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scorb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Dunlop's 40 CB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6	19/03/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N	Cattle	POM-VPS
Dunlop's 40 CM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6	05/07/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Duphral Extravite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59	21/12/1993	National (Informed Consent)	Ascorb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Duphral Multivitamin 9 Solut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95	08/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lpha Tocopheryl Acetate, Cholecalciferol, Cyanocobalamin, Dexpantenol, Nicotinam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Vitamin A Palmitate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PS
Dysect Cattle Pour-on, Cutaneous Emulsion, Alphacypermethrin 15 g/litr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34	20/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lphacypermethrin	N	Cattle	POM-VPS
Dysect Sheep Pour-on, Alphacypermethrin 12.5 g/l Pour-on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01	10/12/1999	National	Alphacypermethrin	N	Sheep	POM-VPS
Ecomectin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18	27/07/2007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Ecomectin 5 mg/ml Pour-on Solution for Cattle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21	06/08/2007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OM-VPS
Ecomectin 6 mg/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for Pigs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20	23/05/2008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Pigs	POM-VPS
Embotape Oral Paste 40% w/w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43	12/05/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antel Embonate	N	Horses	POM-VPS
Endofluke 100 mg/ml Oral Suspens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37	20/02/2003	Mutually Recognised	Tricla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Endospec SC 10% w/v Oral Suspens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16	02/04/1996	National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Endospec SC 2.5% w/v Oral Suspens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15	02/04/1996	National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Endoworm 2.265% w/v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0	27/07/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Oxfendazole	N	Sheep	POM-VPS
Enovex 0.5% w/v Pour-on Solu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1	19/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Enovex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2	19/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Eprinex Pour-on for Beef and Dairy Cattle (Eprinomecti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57	02/07/1997	National	Eprinomectin	N	Cattle	POM-VPS
Equest Oral Gel 18.92 mg/g Oral Gel for Horses and Ponies	Concept Medical Ltd	17367/4020	29/01/2003	National (MAPI)	Moxidectin	N	Horses	POM-VPS
Equest Oral Gel 18.92 mg/g Oral Gel for Horses and Ponies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69	15/01/1999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N	Horses	POM-VPS
Equest Pramox Oral Gel 19.5 mg/g + 121.7 mg/g Oral Gel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52	29/06/2006	Mutually Recognised	Moxidectin,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Equipax Oral Gel for Horses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04	06/07/2001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Equipax Tabs 150 mg/20 mg Chewable Tablet for Horses	Virbac S.A.	05653/4142	05/09/2008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Equipaste, 1.87% w/w Oral Paste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50	02/12/2009	National	Ivermectin	N	Horses	POM-VPS
Equitape Horse Paste	Bayer plc	00010/4118	31/01/2002	Mutually Recognised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Eqvalan Duo, Oral Paste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205	05/09/2003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Eqvalan Oral Paste For Horses (Ivermectin 1.87% w/w)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77	18/04/1994	National	Ivermectin	N	Donkeys, Horses	POM-VPS
Eraquell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05	16/11/2000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Eraquell Tabs, 20 mg Chewable Tablets for Horses	Virbac S.A.	05653/4159	11/09/2009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Exodus Horse Wormer 40% w/w Oral Paste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41	05/09/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antel Embonate	N	Horses	POM-VPS
Fasimec Duo S 0.1%/5% Oral Suspension for Sheep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1	20/11/2007	National	Ivermectin,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Fasinex 10% Oral Suspension for Cattle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7	18/06/1989	National	Triclabendazole	N	Cattle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Fasinex 100, 10% Oral Suspension for Sheep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2	23/01/2008	National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Fasinex 240, 24% Oral Suspension for Cattle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4	05/08/2008	National	Triclabendazole	N	Cattle	POM-VPS
Fasinex 5% w/v Oral Suspens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8	24/01/1984	National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Fenzol 5% w/v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8	17/03/1995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Electron Fly Ear Tags for Cattle 935 mg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07	26/05/1993	National	Cypermethrin Cis 50: Trans 50	N	Cattle	POM-VPS
Flubenol 5% w/w Oral Powder for Pigs	Janssen-Cilag Ltd	00242/4055	17/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Flubendazole	N	Pigs	POM-VPS
Flubenol 5%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Janssen-Cilag Ltd	00242/4017	17/09/1985	National	Flubendazole	N	Pigs	POM-VPS
Flubenvet 5%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Janssen-Cilag Ltd	00242/4056	17/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Flubendazole	N	Chickens, Game Birds, Geese, Turkeys	POM-VPS
Flukiver 5% w/v Oral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23	01/12/1986	National	Closantel (Declared active), Closantel Sodium	N	Sheep	POM-VPS
Flypor 4% w/v Pour-on Solu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97	11/04/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80:20)	N	Cattle	POM-VPS
Footvax	Schering-Plough Ltd	00201/4212	28/10/2005	National	Dichelobacter nodosus	N	Sheep	POM-VPS
Furexel Combi, Oral Paste	Janssen-Cilag Ltd	00242/4057	28/10/2004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vermectin,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Gleptosil 200 mg per ml Solution for Injection	Alstoe Ltd (Alstoe Animal Health)	14094/4000	30/08/1995	National	Gleptoferron, Iron (Declared Active)	N	Pigs	POM-VPS
Gletvax 6	Pfizer Ltd	00057/4283	28/10/2005	National	Clostridium perfringens, Escherichia coli	N	Pigs	POM-VPS
Glucose 40% w/v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47	20/04/1994	National	Glucose Anhydrous	N	Cattle, Sheep	POM-VPS
Heptavac	Intervet UK Ltd	01708/4508	19/10/2005	National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tetani	N	Pigs, Sheep	POM-VPS
Heptavac P Plus	Intervet UK Ltd	01708/4468	11/06/1997	Mutually Recognised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tetani, Mannheimia haemolytica, Pasteurella trehalosi	N	Sheep	POM-VPS
Hornex 42.7% w/w Cutaneous Paste	R S H Watherstone	03599/4001	08/12/1993	National	Sodium Hydroxide	N	Cattle	POM-VPS
Imaverol 100 mg/ml Concentrate for Cutaneous Emulsion	Janssen-Cilag Ltd	00242/4011	13/08/1985	National	Enilconazole	N	Cattle, Dogs, Horses	POM-VPS
Imposil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Alstoe Ltd (Alstoe Animal Health)	14094/4001	30/08/1995	National	Gleptoferron, Iron (Declared Active)	N	Pigs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Intravit 12 Solution for Injection, 0.05% w/v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6	05/08/1993	National	Cyanocobalamin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PS
Ivermectin Virbac 18.7 mg/g Oral Paste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08	30/07/2000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Horses	POM-VPS
Ivomec Classic Injection for Cattle and Sheep (Ivermecti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88	22/09/1997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Sheep	POM-VPS
Ivomec Classic Pour-on for Cattle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69	19/05/1988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OM-VPS
Ivomec Injection for Pigs (Ivermecti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79	16/06/1993	National	Ivermectin	N	Pigs	POM-VPS
Ivomec Premix for Pigs 0.6% Premix for Medicated Feed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68	12/03/1992	National	Ivermectin	N	Pigs	POM-VPS
Ivomec Super Injection for Cattle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67	27/08/1987	National	Clorsulon, Ivermectin	N	Cattle	POM-VPS
Lambivac	Intervet UK Ltd	01708/4509	17/10/2005	National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tetani	N	Pigs, Sheep	POM-VPS
Levacide 7.5%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49	27/04/1983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cide Drench 3%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54	04/04/1984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cide Low Volume 7.5%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81	03/02/1987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cide Pour-on Solution 20% w/v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8	07/10/1997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POM-VPS
Levacur SC 3% Oral Solution	Intervet UK Ltd	01708/4488	18/04/2002	National	Cobalt Sulphate Hydrate, Levamisole Hydrochloride, Sodium Selenate Anhydrous	N	Cattle, Sheep	POM-VPS
Levadren 7.5% w/v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7	03/02/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fas Diamond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80	22/10/1986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Oxytoclozan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fas Oral Suspension Fluke and Worm Drench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68	17/09/1985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Oxytoclozan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sure 7.5% w/v Oral Solution	Animax Ltd	14016/4004	13/03/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Levatret Low Volume Drench 3% w/v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8	27/04/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Levitape Oral Suspension for Sheep	Ancare UK Ltd	13158/4002	12/04/2002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Praziquantel	N	Sheep	POM-VPS
Lignocaine and Adrenaline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5	25/03/1996	National	Adrenaline Acid Tartrate, Lidoca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PS

Lignol 2.0% w/v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28	31/08/1993	National	Adrenaline Acid Tartrate, Lidocaine Hydrochloride (lignocaine Hydrochloride)	N	Cats, Dogs, Horses	POM-VPS
Locaine 2%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28	04/06/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Adrenaline Acid Tartrate, Lidocaine Hydrochloride	N	Horses	POM-VPS
Louping Ill Vaccine	Schering-Plough Ltd	00201/4206	19/10/2005	National	Louping ill virus	N	Sheep	POM-VPS
Magnidown 2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87	03/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Magnesium Sulphate Heptahydrate	N	Cattle, Sheep	POM-VPS
Magniject 2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9	19/10/1994	National	Magnesium Sulphate Heptahydrate	N	Cattle, Sheep	POM-VPS
Magsul 2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0	03/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Magnesium Sulphate Heptahydrate	N	Cattle, Sheep	POM-VPS
Maximec Horse Oral Paste 18.7 mg/g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45	23/09/2005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Mebadown Super Oral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41	28/0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Cloxacillin, Mecillinam	N	Sheep	POM-VPS
Megacal-M Solution for Injection	Ballinskelligs Veterinary Products	12828/4000	01/02/1999	National	Boric Acid, Calcium Boroglucon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MS222 100% w/w Powder for Solution for Fish Treatment	Pharmaq Ltd	11003/4013	01/09/1992	National	Tricaine Methane Sulphonate	N	Fish, Ornamental Fish, Salmon, Trout	POM-VPS
Multivitamin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1	19/12/1994	National	Alpha Tocopheryl Acetate, Cholecalciferol, Cyanocobalamin, Dexpantenol, Nicotinamide, Pyridoxine Hydrochloride, Riboflavine Sodium Phosphate, Thiamine Hydrochloride, Vitamin A Palmitate	N	Cattle, Horses, Pigs, Sheep	POM-VPS
Nilzan Drench Gold Oral Suspension for Cattle and Sheep	Schering-Plough Ltd	00201/4109	13/03/1986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Oxydozanide	N	Cattle, Sheep	POM-VPS
Nilzan Drench Super Oral Suspension for Cattle and Sheep	Schering-Plough Ltd	00201/4104	03/10/1985	National	Levamisole Hydrochloride, Oxydozanide	N	Cattle, Sheep	POM-VPS
Nobilis AE 1143	Intervet UK Ltd	01708/4281	18/10/2005	National	Avian encephalomyelitis virus	N	Poultry	POM-VPS
Nobilis Diluent CA	Intervet UK Ltd	01708/4270	25/08/1993	National		N	All Animals	POM-VPS
Nobilis Erysipelas	Intervet UK Ltd	01708/4546	26/06/2009	National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N	Turkeys	POM-VPS
Nobilis IB + ND + EDS	Intervet UK Ltd	01708/4275	19/10/2005	National	Egg drop syndrome virus,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	POM-VPS
Nobilis IB H120	Intervet UK Ltd	01708/4284	28/10/2005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s	POM-VPS
Nobilis IB Ma5	Intervet UK Ltd	01708/4283	25/10/2005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Chicken	POM-VPS
Nobilis Ma5 + Clone 30	Intervet UK Ltd	01708/4315	20/02/1997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PS

Nobilis Marexine CA126	Intervet UK Ltd	01708/4289	30/01/1996	National	Turkey herpesvirus	N	Chickens	POM-VPS
Nobilis ND Clone 30 Live	Intervet UK Ltd	01708/4276	24/10/2005	National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Turkeys	POM-VPS
Nobilis Paramyxo P201	Intervet UK Ltd	01708/4489	10/10/2002	Mutually Recognised	Newcastle disease virus	N	Pigeons	POM-VPS
Nobilis Rismavac	Intervet UK Ltd	01708/4294	24/02/1994	National	Marek's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PS
Nobilis Rismavac + CA126	Intervet UK Ltd	01708/4354	13/11/1997	National	Marek's disease virus, Turkey herpesvirus	N	Chickens	POM-VPS
Norcal 20 CMD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03	23/05/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Glucos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Sheep	POM-VPS
Norcal 40 CM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7	05/07/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Norcal 40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7	19/03/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N	Cattle	POM-VPS
Norofas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73	21/12/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losantel, Ivermectin	N	Cattle	POM-VPS
Noromectin 1% w/v Multi Injection Solution for Injec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74	20/10/1999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Noromectin Drench 0.08% w/v Drench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84	25/05/2000	National	Ivermectin	N	Sheep	POM-VPS
Noromectin Paste for Horse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08	28/10/2002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Noromectin Pour 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72	03/09/1999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OM-VPS
Noromectin Premix for Swine 0.6 g/100 g Premix for Medicated Feedingstuff for Swin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72	22/02/2007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Pigs	POM-VPS
Oramec Drench (Ivermecti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1	23/02/1994	National	Ivermectin	N	Sheep	POM-VPS
Osmonds Goldfleece Sheep Dip, 60% w/w Concentrate for Dip Solu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28	01/10/1996	National	Diazinon	N	Sheep	POM-VPS
Ovidown SC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56	07/03/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Cobalt Sulphate Heptahydrate, Oxfendazole, Sodium Selenate Anhydrous	N	Sheep	POM-VPS
Ovipast Plus	Intervet UK Ltd	01708/4401	27/11/1996	Mutually Recognised	Mannheimia haemolytica, Pasteurella trehalosi	N	Sheep	POM-VPS
Ovispec S & C 10% w/v Oral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51	17/12/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Ovispec S & C 2.5% w/v Oral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50	27/11/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Ovivac P Plus	Intervet UK Ltd	01708/4388	27/11/1996	National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perfringens,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tetani, Mannheimia haemolytica, Pasteurella trehalosi	N	Sheep	POM-VPS
Paba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40	28/10/2005	National	Pasteurella multocida	N	Chickens, Ducks, Turkeys	POM-VPS
Panacur 1.5% Pellets	Intervet UK Ltd	01708/4422	27/07/1994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Pigs	POM-VPS
Panacur 10%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35	24/01/1994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Panacur 2.5%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29	27/07/1994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Panacur 4% Powder Premix for Medicated Feed	Intervet UK Ltd	01708/4449	27/07/1994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Pigs	POM-VPS
Panacur Bolus 12 g, Continuous Release Intraruminal Device	Intervet UK Ltd	01708/4447	01/12/1995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POM-VPS
Panacur Equine Granules 22.2% w/w	Intervet UK Ltd	01708/4424	29/01/1993	National	Fenbendazole	N	Horses	POM-VPS
Panacur Equine Guard 10% w/v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66	05/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Horses	POM-VPS
Panacur Equine Guard with Apple and Cinnamon Flavour 10% w/v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41	07/10/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Horses	POM-VPS
Panacur Equine Oral Paste 18.75% w/w	Intervet UK Ltd	01708/4439	29/01/1993	National	Fenbendazole	N	Horses	POM-VPS
Panacur Equine Paste	Globalmed Ltd	24939/4013	07/03/2008	National (MAPI)	Fenbendazole	N	Horses	POM-VPS
Panacur SC 2.5%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34	28/01/1994	National	Fenbendazole	N	Sheep	POM-VPS
Panacur SC 5%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37	21/10/1993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Panomec Injection for Cattle, Sheep and Pigs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93	06/04/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Paracide 62, Diazinon 62% w/v Concentrate for Dip Emulsion	Animax Ltd	14016/4007	13/08/1985	National	Diazinon (Declared Active), Diazinon Stabilised	N	Sheep	POM-VPS
Parafend 2.265% w/v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9	27/07/1994	National	Oxfendazole	N	Sheep	POM-VPS
Parafend LV 9.06% w/v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1	27/07/1994	National	Oxf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Parafend SC Oral Suspension for Sheep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30	07/03/1995	National	Cobalt (Declared Active), Cobalt Sulphate Heptahydrate, Oxfendazole, Selenium (Declared Active), Sodium Selenate Anhydrous	N	Sheep	POM-VPS
Paramectin 0.5% w/v Pour-on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7	12/03/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aramectin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6	31/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Paramectin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Sheep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01	20/08/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Sheep	POM-VPS
Paramectin Drench 0.08% w/v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3	08/11/2006	National	Ivermectin	N	Sheep	POM-VPS
Paramectin Multi Injection 1%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Sheep and Pi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61	16/05/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Porcilis AR-T	Intervet UK Ltd	01708/4304	17/10/2005	National	Bordetella bronchiseptica, Pasteurella multocida	N	Pigs	POM-VPS
Porcilis Coli 6C	Schering-Plough Ltd	00201/4236	01/05/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Clostridium perfringens, Escherichia coli	N	Pigs	POM-VPS
Porcilis Ery	Intervet UK Ltd	01708/4355	07/07/1997	National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N	Pigs	POM-VPS
Porcilis Porcoli Diluvac Forte	Intervet International BV	EU/2/96/001/003-008	29/03/1996	Centralized	Escherichia coli	N	Pigs	POM-VPS
Poulvac A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45	26/10/2005	Mutually Recognised	Avian encephalomyelitis virus	N	Poultry	POM-VPS
Poulvac AE Vac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4	03/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Avian encephalomyelitis virus	N	Poultry	POM-VPS
Poulvac Hitchner B1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5	26/10/2005	National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PS
Poulvac IB H120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57	17/10/2005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Poultry	POM-VPS
Poulvac IBMM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7	24/10/2005	National	Infectious bronchitis virus	N	Poultry	POM-VPS
Poulvac IL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8	26/10/2005	National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virus	N	Chickens	POM-VPS
Poulvac Marek CVI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39	28/10/2005	National	Marek's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PS
Poulvac Marek CVI + HVT to be suspended in Poulvac Marek Diluen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29	24/05/1999	National	Marek's disease virus, Turkey herpesvirus	N	Chickens	POM-VPS
Poulvac MD Vac Lyophilisate and Diluent for Suspension for Injec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46	28/10/2005	National	Turkey herpesvirus	N	Chickens	POM-VPS
Poulvac NDW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18	28/05/1995	National	Newcastle disease virus	N	Chickens	POM-VPS
Premadex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and Swine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02	06/10/2000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igs	POM-VPS
Premadex Pour-on Solution for Cattle 5 mg/ml	Virbac S.A.	05653/4149	23/10/2008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rovid 44% Oral Paste	Chanelle 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Ltd	08749/4005	06/11/2003	Mutually Recognised	Pyrantel Embonate	N	Horses	POM-VPS
Provita Protect for Newborn Calves	Provita Eurotech Ltd	11543/4001	20/12/1995	National	Enterococcus Faecium SF101, Lactobacillus Acidophilus La101, Lactobacillus Acidophilus La107	N	Cattle	POM-VPS
Pyratape P Horse Wormer 40% w/w Oral Paste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13	02/08/1996	National	Pyrantel Embonate	N	Horses	POM-VPS
Qualimec 10 mg/ml Solution for Injection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17	17/05/2007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Qualimec 5 mg/ml Pour-on Solution for Cattle	Eco Animal Health Ltd	13277/4022	29/07/2008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Cattle	POM-VPS
Qualimintic 1.0% w/v Solution for Injection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33	23/05/2002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igs	POM-VPS
Quazitel 2.5% Suspension	Bayer plc	00010/4104	04/02/1999	National	Praziquantel	N	Sheep	POM-VPS
Regulin 18 mg Implant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1	01/01/1993	National	Melatonin	N	Sheep	POM-VPS
Renegade 1.3% w/v Cattle Pour on Cutaneous Emuls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33	20/01/1993	National	Alphacypermethrin	N	Cattle	POM-VPS
Ripercol 75 mg/ml Oral Solution	Janssen-Cilag Ltd	00242/4062	13/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Levamisole Hydrochloride	N	Cattle, Sheep	POM-VPS
Rumbul Rumen Bullet 15 g Continuous Release Intraruminal Device, Sheep/Calves	Agrimin Ltd	04261/4004	05/08/1993	National	Magnesium	N	Cattle, Sheep	POM-VPS
Rumbul Rumen Bullet 40 g Continuous Release Intraruminal Device, Cattle	Agrimin Ltd	04261/4003	27/07/1993	National	Magnesium	N	Cattle	POM-VPS
Rycoben SC 2.50% w/v Oral Suspension for Sheep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82	26/07/2000	National	Albendazole Oxide	N	Sheep	POM-VPS
Solubenol 100 mg/g Oral Emulsion	Janssen-Cilag Ltd	00242/4063	14/07/2006	Mutually Recognised	Flubendazole	N	Chickens, Pigs	POM-VPS
Strongid Caramel 43.72% w/w Oral Paste	Pfizer Ltd	00057/4181	06/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antel Embonate	N	Donkeys, Horses	POM-VPS
Strongid-P Granules 76.736% w/w	Pfizer Ltd	00057/4096	23/05/1994	National	Pyrantel Embonate	N	Donkeys, Horses	POM-VPS
Strongid-P Paste 43.90% w/w	Pfizer Ltd	00057/4097	23/05/1994	National	Pyrantel Embonate	N	Donkeys, Horses	POM-VPS
Sumex Pour-on Solution 0.5%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39	14/11/2007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OM-VPS
Supaverm Oral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25	11/04/1988	National	Closantel, Mebendazole	N	Sheep	POM-VPS
Supremadex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10	17/09/2004	Mutually Recognised	Clorsulon, Ivermectin	N	Cattle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waycop 1.25% w/v Solution for Injec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11	17/05/1996	National	Copper	N	Sheep	POM-VPS
Telmin 2 g Granules	Janssen-Cilag Ltd	00242/4013	13/08/1985	National	Mebendazole	N	Donkeys, Horses	POM-VPS
Telmin 200 mg/g Oral Paste	Janssen-Cilag Ltd	00242/4014	13/08/1985	National	Mebendazole	N	Donkeys, Horses	POM-VPS
Tensolvat Gel	Day Son And Hewitt Ltd	00844/4214	06/05/1991	National	2-Hydroxyethyl Salicylate, Heparin Sodium, Menthol Levo	N	Horses	POM-VPS
Tramazole 2.5% w/v SC Oral Suspension	Tulivin Laboratories Ltd	11810/4007	23/08/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Al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Tribex 10% Oral Suspension for Cattle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34	20/06/2002	Mutually Recognised	Triclabendazole	N	Cattle	POM-VPS
Tribex 5% Oral Suspension for Sheep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33	20/06/2002	Mutually Recognised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Tribovax T	Schering-Plough Ltd	00201/4207	19/10/2005	National	Clostridium chauvoei, Clostridium haemolyticum,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tetani	N	Cattle	POM-VPS
Triclacert 10% Oral Suspension for Cattle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52	11/07/2007	Mutually Recognised	Triclabendazole	N	Cattle	POM-VPS
Triclacert 5% Oral Suspension for Sheep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51	11/07/2007	Mutually Recognised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Triclafas Drench 5% w/v Oral Suspens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47	06/01/2006	National	Triclabendazole	N	Sheep	POM-VPS
Trivacton 6	Meril Animal Health Ltd	08327/4106	31/05/2001	National	Bovine coronavirus, Bovine rotavirus, Escherichia coli	N	Cattle	POM-VPS
Trodax 34% w/v Solution for Injection	Meril Animal Health Ltd	08327/4187	12/09/2005	National	Nitroxylin	N	Cattle, Sheep	POM-VPS
Uniferon 20% Solution for Injection	Pharmacosmos A/S	21674/4000	21/06/1995	National	Iron Dextran	N	Pigs	POM-VPS
Unisolve	Intervet UK Ltd	01708/4269	25/08/1993	National		N	Cattle, Pigeons, Poultry, Rabbits, Sheep	POM-VPS
Valbazen SC 2.5% Total Spectrum Wormer Oral Suspension	Pfizer Ltd	00057/4155	11/06/1993	National	Albendazole	N	Sheep	POM-VPS
Vecoxan 2.5 mg/ml Oral Suspension	Janssen-Cilag Ltd	00242/4044	03/02/1999	National	Diclazuril	N	Cattle, Sheep	POM-VPS
Vectin 0.08% w/v Oral Solution Sheep Wormer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98	18/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N	Sheep	POM-VPS
Vectin 22.75 mg Chewable Tablets for Horses	Intervet UK Ltd	01708/4547	20/02/2009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Vectin Horse Oral Paste 18.7 mg/g	Cross Vetpharm Group Ltd	12597/4031	19/06/2002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Horses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Vetical 40 + M Solution for Injection	Ballinskelligs Veterinary Products	12828/4002	06/03/1995	National	Boric Acid, Calcium Gluconate Monohydrate, Magnesium Hypophosphite Hexahydrate	N	Cattle	POM-VPS
Veticop 20 mg/ml Suspension for Injection	Ballinskelligs Veterinary Products	12828/4001	02/04/1997	National	Copper	N	Sheep	POM-VPS
Vetrazin 6% w/v Pour-on Solution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34	23/12/1988	National	Cyromazine	N	Sheep	POM-VPS
Virbac Ivermectin and Praziquantel Oral Gel Horses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11	20/04/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Ivermectin, Praziquantel	N	Horses	POM-VPS
Virbamec 1%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Cattle, Swine and Sheep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09	30/12/2004	National	Ivermectin	N	Cattle, Pigs, Sheep	POM-VPS
Virbamec Pour-on for Cattle 5 mg/ml	Virbac De Portugal Laboratorios Lda	16971/4003	12/01/2001	Mutually Recognised	Ivermectin	N	Cattle	POM-VPS
Virbamec Super Solution for Injection	Virbac Ltd	11188/4012	26/10/2009	National (MAPI)	Clorsulon, Ivermectin	N	Cattle	POM-VPS
Vitbee 1000, 0.100% w/v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39	26/02/1993	National	Cyanocobalamin	N	Cattle, Horses	POM-VPS
Vitbee 250, 0.025% w/v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43	26/02/1993	National	Cyanocobalamin	N	Cattle, Horses, Sheep	POM-VPS
Willcain Solution for Injection	Dechra Limited	10434/4046	26/07/1994	National	Adrenaline Acid Tartrate, Procaine Hydrochloride	N	Cats, Cattle, Dogs, Horses	POM-VPS
Zanil Fluke Drench	Schering-Plough Ltd	00201/4150	01/09/1972	National	Oxyclozanide	N	Cattle, Sheep	POM-VPS
Zermasect Cattle Pour on Cutaneous Emulsion, Alpha Cypermethrin 15 g/litr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69	07/05/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Alphacypermethrin	N	Cattle	POM-VPS
Zermasect Sheep Pour-on Alphacypermethrin 12.5 g/l Pour-on Solution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70	07/05/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Alphacypermethrin	N	Sheep	POM-VPS
Zermex 0.1% w/v Oral Solution for Shee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1	02/02/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Moxidectin	N	Sheep	POM-VPS
Zermex 0.5% w/v Pour-on Solution for Cattl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2	02/02/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Moxidectin	N	Cattle	POM-VPS
Zermex 1% w/v Solution for Injection for Shee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298	07/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Moxidectin	N	Sheep	POM-VPS
Zermex 10% LA for Cattle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83	19/11/2009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Moxidectin	N	Cattle	POM-VPS
Zermex 2% w/v LA Solution for Injection for Sheep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382	07/12/2009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Moxidectin	N	Sheep	POM-VPS
Zerofen 22% Equine Granule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7	31/07/1998	National	Fenbendazole	N	Horses	POM-VPS
Zerofen 4% w/w Premix for Medicated Feeding Stuff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2	06/07/1995	National	Fenbendazole	N	Pigs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Zerofen Worm Drench 10% w/v Oral Suspension for Sheep and Cattle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1	16/07/1993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Zerofen Worm Drench 2.5% w/v Oral Suspension for Sheep and Cattle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0	16/07/1993	National	Fenbendazole	N	Cattle, Sheep	POM-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4Fleas Fipronil 134 mg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Alfamed S.A.S.	17902/4017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4Fleas Fipronil 268 mg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Alfamed S.A.S.	17902/4018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4Fleas Fipronil 402 mg Spot-on Solution for Very Large Dogs	Alfamed S.A.S.	17902/4019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4Fleas Fipronil 50 mg Spot-on Solution for Cats and Kittens over 8 weeks above 1kg	Alfamed S.A.S.	17902/4015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Cats	NFA-VPS
4Fleas Fipronil 67 mg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Alfamed S.A.S.	17902/4016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Big Cat Wormer Tablets	Bayer plc	00010/4154	30/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Cats	NFA-VPS
Cestem Flavoured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40	19/06/2009	National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declared active),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Cestem XL Flavoured Tablets For Dogs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39	19/06/2009	National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declared active),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og Wormer Tablets	Bayer plc	00010/4158	30/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olpac Tablets for Large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121	14/01/2008	Mutually Recognised	Oxantel (Declared Active), Oxantel Embonate, Praziquantel, Pyr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olpac Tablets for Medium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120	14/01/2008	Mutually Recognised	Oxantel (Declared Active), Oxantel Embonate, Praziquantel, Pyr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olpac Tablets for Small Dogs	Vetoquinol UK Ltd	08007/4119	14/01/2008	Mutually Recognised	Oxantel (Declared Active), Oxantel Embonate, Praziquantel, Pyr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rontal Cat Tablets	Bayer plc	00010/4094	03/08/1994	Nationa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Cats	NFA-VPS
Drontal Cat XL Film-Coated Tablets	Bayer plc	00010/4135	29/01/2004	Nationa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Cats	NFA-VPS
Drontal Oral Suspension for Puppies	Bayer plc	00010/4102	17/04/1998	Mutually Recognised	Febantel, Pyrantel (declared active),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rontal Plus	Quvera Ltd	20860/4012	19/12/2006	National (MAPI)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rontal Plus Flavour Tablets	Bayer plc	00010/4115	08/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rontal Plus Tablets	Bayer plc	00010/4074	30/06/1989	National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rontal Plus XL Flavour Tablets	Bayer plc	00010/4153	31/03/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Drontal Plus XL Tablets	Bayer plc	00010/4126	20/08/2002	National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Product Name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Effipro 134 mg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Virbac S.A.	05653/4152	01/05/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Effipro 268 mg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Virbac S.A.	05653/4153	01/05/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Effipro 402 mg Spot-on Solution for Very Large Dogs	Virbac S.A.	05653/4154	01/05/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Effipro 50 mg Spot-on Solution for Cats	Virbac S.A.	05653/4150	06/05/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Cats	NFA-VPS
Effipro 67 mg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Virbac S.A.	05653/4151	30/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Fiproline 134 mg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Francodex Sante Animale S.A.S.	32991/4003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Fiproline 268 mg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Francodex Sante Animale S.A.S.	32991/4004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Fiproline 402 mg Spot-on Solution for Very Large Dogs	Francodex Sante Animale S.A.S.	32991/4005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Fiproline 50 mg Spot-on Solution for Cats	Francodex Sante Animale S.A.S.	32991/4001	17/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Cats	NFA-VPS
Fiproline 67 mg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Francodex Sante Animale S.A.S.	32991/4002	16/04/2009	Mutually Recognised	Fipronil	N	Dogs	NFA-VPS
Frontline Spot on Cat 10% w/v Spot on Solutio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33	27/11/1996	National	Fipronil	N	Cats	NFA-VPS
Frontline Spot on Dog	Globalmed Ltd	24939/4015	09/05/2008	National (MAPI)	Fipronil	N	Dogs	NFA-VPS
Frontline Spot on Dog 10% w/v Spot on Solution	Merial Animal Health Ltd	08327/4132	27/11/1996	National	Fipronil	N	Dogs	NFA-VPS
Granofen Wormer 222.2 mg Granules for Dogs and Cats	Virbac Ltd	11188/4003	11/02/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Dogs	NFA-VPS
Multiworm Tablets for Cats	Bayer plc	00010/4159	30/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Cats	NFA-VPS
Panacur 18.75% Oral Paste	Intervet UK Ltd	01708/4448	15/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Dogs	NFA-VPS
Panacur Granules 22.2% w/w	Intervet UK Ltd	01708/4427	23/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Dogs	NFA-VPS
Panacur Small Animal 10%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36	29/01/1993	National	Fenbendazole	N	Cats, Dogs	NFA-VPS
Panacur Small Animal 2.5% Oral Suspension	Intervet UK Ltd	01708/4428	29/01/1993	National	Fenbendazole	N	Cats, Dogs	NFA-VPS
Pardale-V Oral Tablets	Dechra Limited	10434/4034	15/04/1993	National	Codeine Phosphate, Paracetamol	5	Dogs	NFA-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lerion 10 Chewable Tablets for Dogs	Intervet UK Ltd	01708/4544	13/02/2009	Mutually Recognised	Oxantel (Declared Active), Oxantel Embonate, Praziquantel, Pyrantel (declared active),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Plerion 5 Chewable Tablets for Dogs	Intervet UK Ltd	01708/4543	13/02/2009	Mutually Recognised	Oxantel (Declared Active), Oxantel Embonate, Praziquantel, Pyrantel (declared active),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Wormazole 220 mg Granule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58	14/08/2001	National	Fenbendazole	N	Dogs	NFA-VPS
Wormazole 440 mg Granule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6	14/08/2001	National	Fenbendazole	N	Dogs	NFA-VPS
Wormazole 880 mg Granule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7	14/08/2001	National	Fenbendazole, Maize Starch	N	Dogs	NFA-VPS
Wormer Tablets for Big Cats	Bayer plc	00010/4155	30/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Cats	NFA-VPS
Wormer Tablets for Big Dogs	Bayer plc	00010/4156	30/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Wormer Tablets for Dogs	Bayer plc	00010/4157	30/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Febantel,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Dogs	NFA-VPS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1:3 Concentrate Teat Dip/Teat Spray Solution and Udder Wash 2.15% w/v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74	02/04/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3TX 1:3 2.15%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98	08/05/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Ace Concentrate, 1.59% w/v, Concentrate for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0	24/04/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Action Actodine New Formula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13	09/06/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Action Actodip Supreme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19	06/0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Action Super Teat Dip 1:3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2.15% w/v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8	02/04/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Actodip Supreme 2.72%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1	02/02/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Alcide Uddergold PM Vet Concentrates (Base and Activator) for Teat Dip Solution for Cattle (Dairy)	Ecolab GmbH & Co OHG	25974/4000	25/05/1994	Mutually Recognised	Chlorous Acid (Declared Active), Lactic Acid, Sodium Chlorite	N	Cattle	AVM-GSL
Animalintex Hoof Treatment Poultice	Robinson Healthcare Ltd	19434/4000	17/07/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Boric Acid, Tragacanth	N	Horses	AVM-GSL
Animalintex Poultice	Robinson Healthcare Ltd	19434/4001	01/09/1992	National	Bassorin E Powder, Boric Acid (Declared Active), Tragacanth (Declared Active)	N	Dogs, Horses	AVM-GSL
Apiguard Gel (25% Thymol)	Vita (Europe) Ltd	17017/4002	23/07/2003	Mutually Recognised	Thymol	N	Bees	AVM-GSL
Apilife Var Bee-Hive Strip for Honey Bees	Chemicals Laif Srl	23101/4000	24/06/2009	Mutually Recognised	Camphor Racemic, Eucalyptus Oil, Menthol Levo, Thymol	N	Bees	AVM-GSL
Apistan	Vita (Europe) Ltd	17017/4000	26/11/1998	National	Tau Fluvalinate	N	Bees	AVM-GSL
Appertex 2.5 mg Tablets	Harkers Ltd	11245/4000	17/09/1992	National	Clazuril	N	Pigeons	AVM-GSL
Armitage Pet Care Felt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7	25/11/1991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Armitage Pet Care Flea and Tick Drops for Dogs 702 mg Spot-on Solution	Mr H.I. Moulds & Mrs S.J. Moulds	20205/4003	20/08/2003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Armitage Pet Care Flea Shampoo for Dogs	Bio-Tech Solutions Ltd	20889/4006	04/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Armitage Pet Care Flea Spray for Cats	Armitage Bros Ltd	02650/4013	17/07/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AVM-GSL
Armitage Pet Care Flea Spray for Dogs	Armitage Bros Ltd	02650/4014	17/07/1996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N	Dogs	AVM-GSL
Armitage Pet Care Insecticidal Flea Shampoo and Conditioner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34	05/06/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Armitage Pet Care Protect Flea and Tick Collar for Dogs 15% w/w	Virbac S.A.	05653/4088	31/10/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Dogs	AVM-GSL
Armitage Pet Care Protect Flea Collar for Cats 15% w/w	Virbac S.A.	05653/4074	27/10/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Cats	AVM-GSL
Avicas, Febantel 15 mg, Tablet	Oropharma n.v	13058/4000	19/05/1994	National	Febantel	N	Pigeons	AVM-GSL
Battles Ketosis Oral Solution	Dales Pharmaceuticals	00123/4119	24/1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Cobalt Sulphate Heptahydrate, Propylene Glycol	N	Cattle, Sheep	AVM-GSL
Bayvarol Strips 3.6 mg	Bayer plc	00010/4090	17/07/1992	Mutually Recognised	Flumethrin	N	Bees	AVM-GSL
BCK Granules	JM Loveridge PLC	00531/4039	26/02/1993	National	Bismuth Subnitrate , Kaolin Light, Vegetable Charcoal (e153)	N	Cats, Dogs	AVM-GSL
Beaphar Cat Flea Powder, Cutaneous Powder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31	03/06/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ts	AVM-GSL
Beaphar Cat Flea Spray, Cutaneous Solution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4	06/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AVM-GSL
Beaphar Dog Flea and Tick Drops, 65% w/w, Cutaneous Solution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83	12/1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Beaphar Dog Flea Powder, Cutaneous Powder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8	03/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Dogs	AVM-GSL
Beaphar Dog Flea Shampoo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6	18/01/1992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Beaphar Dog Flea Spray, Cutaneous Solution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5	06/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Beaphar Ear Drops,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74	14/02/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ocreso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Dogs	AVM-GSL
Beaphar Flea and Tick Collar for Dogs, 15% w/w	Beaphar Ltd	05496/4001	15/01/1985	National	Diazinon Stabilised	N	Dogs	AVM-GSL
Beaphar Flea Collar for Cats, 15% w/w	Beaphar Ltd	05496/4000	15/01/1985	National	Diazinon, Diazinon Stabilised	N	Cats	AVM-GSL
Beaphar Flea Spray 0.25% w/w Cutaneous Spray Solution	Beaphar UK Ltd	13907/4001	08/12/1992	National (Informed Consent)	Propoxur	N	Cats, Dogs	AVM-GSL
Beaphar Soft Cat Flea Collar Twin Pack,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5	23/02/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Beaphar Soft Cat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2	21/11/1991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Beaphar Worming Granules for Cats and Kittens, 222 mg/g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0	08/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AVM-GSL
Beaphar Worming Granules for Small Dogs and Puppies, 222 mg/g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5	08/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Bio-Tech's Anti-Flea and Anti-Tick Drops for Dogs	Bio-Tech Solutions Ltd	20889/4001	25/07/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Bio-Tech's Flea and Tick Drops for Dogs	Bio-Tech Solutions Ltd	20889/4004	25/07/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Bio-Tech's Flea Shampoo for Dogs	Bio-Tech Solutions Ltd	20889/4003	14/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Biozine	Harkers Ltd	11245/4004	20/05/1994	National	Piperazine Dihydrochloride	N	Pigeons	AVM-GSL
Birp Oral Emulsion for Cattle	Dechra Limited	10434/4041	30/03/1994	National	Simethicone	N	Cattle	AVM-GSL
Blockade 0.25% w/w Teat Dip Solution	Delaval International AB	17140/4003	25/09/2001	Mutually Recognised	Iodine	N	Cattle	AVM-GSL
Blu-gard 2.00% w/w Teat Dip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05	29/04/1992	National	Linear Dodecylbenzene Sulphonic Acid	N	Cattle	AVM-GSL
Blu-Gard Teat Spray Solution 2.00% w/w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04	05/06/1992	National	Linear Dodecylbenzene Sulphonic Acid	N	Cattle	AVM-GSL
Bob Martin 15% w/w Flea and Tick Collar for Dogs over 12 weeks old	Virbac S.A.	05653/4091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Dogs	AVM-GSL
Bob Martin 15% w/w Flea Collar for Cats	Virbac S.A.	05653/4097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Cats	AVM-GSL
Bob Martin 2 in 1 Dewormer Tablets for Cats and Kittens	Bayer plc	00010/4145	09/01/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Praziquantel, Pyrantel Embonate	N	Cats	AVM-GSL
Bob Martin All in One Dewormer 100 mg Film Coated Tablets for Small Dogs and Puppie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29	16/04/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Bob Martin All in One Dewormer 500 mg Film Coated Tablets for Dog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28	15/04/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Bob Martin Dog Spot on Solution 1488 mg	Bob Martin (UK) Ltd	00715/4111	13/04/199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Bob Martin Dog Spot on Solution 744 mg	Bob Martin (UK) Ltd	00715/4054	13/04/199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Bob Martin Double Action Spot-on Solution 100 mg for Small to Medium Dogs	Bayer plc	00010/4148	03/04/2007	National	Imidacloprid	N	Dogs	AVM-GSL
Bob Martin Double Action Spot-on Solution 250 mg for Large Dogs	Bayer plc	00010/4149	03/04/2007	National	Imidacloprid	N	Dogs	AVM-GSL
Bob Martin Double Action Spot-on Solution 40 mg for Cats & Small Dogs	Bayer plc	00010/4116	26/03/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Imidacloprid	N	Cats, Dogs	AVM-GSL
Bob Martin Double Action Spot-on Solution 400 mg for Extra Large Dogs	Bayer plc	00010/4150	03/04/2007	National	Imidacloprid	N	Dogs	AVM-GSL
Bob Martin Easy to Use Dewormer Granules for Cats and Kittens 222.2 mg	Bob Martin (UK) Ltd	00715/4068	07/02/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Bob Martin Easy to Use Dewormer Granules for Dogs 888.8 mg	Bob Martin (UK) Ltd	00715/4071	05/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Bob Martin Flea and Tick Spot on Solution 744 mg	Bob Martin (UK) Ltd	00715/4078	13/01/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Bob Martin Flea Cutaneous Powder for Cats & Dogs	Bob Martin (UK) Ltd	00715/4040	12/07/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ts, Dogs	AVM-GSL
Bob Martin Flea Killing Mousse Plus for Cats and Kittens	Bob Martin (UK) Ltd	00715/4067	16/04/1996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ins	N	Cats	AVM-GSL
Bob Martin Flea Shampoo for Dogs and Puppies	Bob Martin (UK) Ltd	00715/4049	01/05/1992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Bob Martin Flea Spray for Dogs & Puppies Cutaneous Spray Solution	Bob Martin (UK) Ltd	00715/4048	04/10/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N	Dogs	AVM-GSL
Bob Martin Flea Tablets 11.4 mg for Cats, Small Dogs and Puppi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6	12/01/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enpyram	N	Cats, Dogs	AVM-GSL
Bob Martin Flea Tablets 57 mg for Large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65	12/01/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enpyram	N	Dogs	AVM-GSL
Bob Martin Permethrin Dog Spot On	Bob Martin (UK) Ltd	00715/4077	17/07/2002	Mutually Recognised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Bob Martin Permethrin Reflective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2	13/06/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Bob Martin Silent Flea Spray for Cats Cutaneous Spray Solution	Bob Martin (UK) Ltd	00715/4047	04/10/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ins	N	Cats	AVM-GSL
Bob Martin Spot On Solution Dewormer 20 mg	Bayer plc	00010/4140	30/11/2004	National (Informed Consent)	Praziquantel	N	Cats	AVM-GSL
Bob Martin Velvet Flea Collar Twin Pack,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3	02/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Bob Martin Velvet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8	07/06/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Bob Martin Vetcare Spot-on 10% for Cats and Kittens	Alfamed S.A.S.	17902/4008	14/07/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Cats	AVM-GSL
Bob Martin Vetcare Spot-on 2% for Large Dogs	Alfamed S.A.S.	17902/4007	14/07/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Dogs	AVM-GSL
Bob Martin Vetcare Spot-on 2% for Medium Dogs	Alfamed S.A.S.	17902/4009	14/07/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Dogs	AVM-GSL
Bolfo 0.25% Flea Spray	Bayer plc	00010/4091	07/10/1992	National	Propoxur	N	Cats, Dogs	AVM-GSL
Bovidip 0.5% w/w Test Dip or Spray Solution	Delaval International AB	17140/4007	05/07/2007	National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ne Complex 28.5% w/w	N	Cattle	AVM-GSL
Bovidip 2% w/v Concentrate for Test Dip or Spray Solution	Delaval International AB	17140/4008	09/07/2007	Mutually Recognised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ne Complex 28.5% w/w	N	Cattle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 Dip,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0.5%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02	12/09/1989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Canac Dog Flea and Tick Collar 15% w/w	Virbac S.A.	05653/4003	23/01/1985	National	Diazinon	N	Dogs	AVM-GSL
Canac One Dose Worming Tablets for Dogs, 500 mg Film-Coated Tablets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6	02/03/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Canac One Dose Worming Tablets for Small Dogs and Puppies, 100 mg Film-Coated Tablets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3	07/03/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Canac Soft Flea Collar for Cats,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35	21/04/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Canovel Insecticidal Conditioning Collar for Dogs 15% w/w	Virbac S.A.	05653/4000	23/10/1984	National	Diazinon	N	Dogs	AVM-GSL
Canovel Insecticidal Flea and Tick 1% w/w Shampoo and Conditioner	Alfamed S.A.S.	17902/4002	14/0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Canovel Long-Acting Flea and Tick 2% w/v Cutaneous Spray Solution	Virbac S.A.	05653/4060	05/03/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Capstar 11.4 mg Tablets for Cats and Small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59	03/08/2001	Mutually Recognised	Nitenpyram	N	Cats, Dogs	AVM-GSL
Capstar 57 mg Tablets for Large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60	03/08/2001	Mutually Recognised	Nitenpyram	N	Dogs	AVM-GSL
Catovel 15% w/w Insecticidal Conditioning Collar for Cats	Virbac S.A.	05653/4085	23/10/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Cats	AVM-GSL
Clinidip 2.5 % w/v Superconcentrate Concentrate for Teat Dip or Teat Spray Solution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11	28/08/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Clinidip L Concentrate 2.0% w/v Concentrate for Teat Dip or Teat Spray Solution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10	28/08/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Coopers Fly Repellent Plus 1.05% Cutaneous Emulsion for Horses	Schering-Plough Ltd	00201/4131	06/05/1986	National	Citronellol, Permethrin (cis:trans 25:75)	N	Horses	AVM-GSL
Coopers Head to Tail Veterinary Flea Powder	Schering-Plough Ltd	00201/4092	23/09/1991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25:75)	N	Cats, Dogs	AVM-GSL
Coopers Head to Tail Veterinary Flea Shampoo	Schering-Plough Ltd	00201/4094	23/09/1991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Copasure 24 g Capsule, Hard	Animax Ltd	14016/4003	24/05/2002	National	Copper Oxide	N	Cattle	AVM-GSL
Copinox Cattle 24 g Capsule, Hard	Animax Ltd	14016/4000	23/12/1999	National	Copper Oxide	N	Cattle	AVM-GSL
Copinox Ewe/Calf 4 g Capsule, Hard	Animax Ltd	14016/4001	23/12/1999	National	Copper Oxide	N	Cattle, Sheep	AVM-GSL
Copinox Lamb 2 g Capsule, Hard	Animax Ltd	14016/4002	23/12/1999	National	Copper Oxide	N	Sheep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Countdown 1:4 2.72%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3	02/02/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Countdown Extra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97	10/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Countdown HE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13	06/01/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Countrywide Farmers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59	25/1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Countrywide Farmers Concentrate Iodin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2.15% w/v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57	26/1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CPF Dairydene Iodine (0.52%) RTU Teat Dip and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34	23/12/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Cyclo 12 mg Spot-On Solution for Small Dogs	Virbac S.A.	05653/4076	27/07/2000	Mutually Recognised	Pyriproxyfen	N	Dogs	AVM-GSL
Cyclo 30 mg Spot-On Solution for Medium Sized Dogs	Virbac S.A.	05653/4079	27/07/2000	Mutually Recognised	Pyriproxyfen	N	Dogs	AVM-GSL
Cyclo 60 mg Spot-On Solution for Cats	Virbac S.A.	05653/4078	27/07/2000	Mutually Recognised	Pyriproxyfen	N	Cats	AVM-GSL
Cyclo 60 mg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Virbac S.A.	05653/4080	27/07/2000	Mutually Recognised	Pyriproxyfen	N	Dogs	AVM-GSL
Dairydene - Iodine RTU Teat Dip and Spray	JohnsonDiversey Ltd	15985/4029	14/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Dairydene Chlorhexidine Gluconate 0.425% w/w RTU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30	14/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Dairydene Iodine 2%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31	23/06/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Defencare 1% w/w Shampoo	Virbac S.A.	05653/4030	30/06/1992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Defendog	Virbac S.A.	05653/4042	06/07/1995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Deosan Iodip Concentrate	JohnsonDiversey Ltd	15985/4008	11/04/1988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Deosan Summer Teatcare Plus (0.425% w/w) Teat Dip and Teat Spray Emuls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11	18/07/1990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Deosan Super Excel 0.52% w/v Teat Dip and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12	06/06/1984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Deosan Super Iodip Iodine 2% w/v Concentrat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07	06/06/1984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Deosan Teatcare Plus 0.425% w/w Teat Dip and Teat Spray Emuls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09	10/06/1987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Deosan Thixodip BA, 4.0% w/w Teat Dip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14	12/12/1991	National	Benzyl Alcohol	N	Cattle	AVM-GSL
Dermoline Insecticidal Shampoo for Horses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13	18/12/1992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Horses	AVM-GSL
Dermoline Sweet Itch Lotion - Pour-on Solution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12	28/08/1992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Horses	AVM-GSL
Diaproof K Powder for Oral Solution	Forum Products Limited	05928/4000	02/02/1988	National	Glucose Monohydrate, Ispaghula Husk, Magnesium Hydroxide, Potassium Chloride, Sodium Acetate Trihydrat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Wheat Bran	N	Cattle	AVM-GSL
Dichlorophen Tablets BP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03	17/11/1995	National	Dichlorophen	N	Cats, Dogs	AVM-GSL
Dipal Concentrate 1.50%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08	31/03/1995	National	Iodine, Kilco K20i	N	Cattle	AVM-GSL
Droncit Spot-on 20 mg Solution	Bayer plc	00010/4105	21/08/2000	National	Praziquantel	N	Cats	AVM-GSL
Droncit Tablets 50 mg	Bayer plc	00010/4097	22/06/1994	National	Praziquantel	N	Cats, Dogs	AVM-GSL
Dual Action Worming Tablets for Cats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05	13/12/1995	National	Dichlorophen, Piperazine Citrate	N	Cats	AVM-GSL
Dual Action Worming Tablets for Dogs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06	13/12/1995	National	Dichlorophen, Piperazine Citrate	N	Dogs	AVM-GSL
Effydral Effervescent Tablet	Fort Dodge Animal Health Ltd	01596/4141	01/03/1993	National	Citric Acid Anhydrous, Glycine, Lactose Monohydr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N	Cattle, Pigs	AVM-GSL
Emprasan Lanolin Teat Dip Concentrate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8	29/01/1993	National	Ethoxylated Lanolin, Iodine, Nonyl Phenol Ethoxylate 12 Mole	N	Cattle	AVM-GSL
EmpraSan Sovereign, 2.7% w/v, Teat Dip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10	08/12/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Emprasan Summer Guard 0.5%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14	06/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Energaid Powder for Oral Solution for Calve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27	08/12/1994	Mutually Recognised	Glucose Anhydrous, Potassium Chloride, Sodium Acetate Anhydrous, Sodium Chloride, Sodium Citrate Dihydrate, Sodium Propionate	N	Cattle	AVM-GSL
Exelpet Wormer for Cats	Masterfoods (Complimentary Petcare) A Div of Mars Uk Ltd	05707/4003	07/01/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AVM-GSL
Exelpet Wormer for Dogs	Masterfoods (Complimentary Petcare) A Div of Mars Uk Ltd	05707/4004	03/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Exspot Insecticide for Dogs	Schering-Plough Ltd	00201/4086	18/02/1992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Farmcare Concentrated Teat Dip 1.50%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06	24/1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Kilco K20i	N	Cattle	AVM-GSL
Farmcare RTU Teat Dip 0.50%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07	24/1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Kilco K20i	N	Cattle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Foot Rot Aerosol - 10% w/w Cutaneous Spray Solution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00	24/04/1992	National	Cetrimide	N	Sheep	AVM-GSL
Forgastrin Oral Powder	Dechra Limited	10434/4040	24/08/1992	National	Attapulgit, Bone Charcoal	N	Cattle, Pigs	AVM-GSL
Forketos Oral Solution for Cattle and Sheep	Dechra Limited	10434/4036	09/06/1993	National	Cobalt Sulphate Heptahydrate, Propylene Glycol	N	Cattle, Sheep	AVM-GSL
Fumidil B Powder for Syrup 20 mg/g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3	01/01/1989	National	Fumagillin (declared active), Fumagillin Bicyclohexylamine Salt	N	Bees	AVM-GSL
Garlic and Fenugreek Sugar Coated Tablets	Dorwest Herbs Ltd	00866/4017	01/09/1992	National	Fenugreek Milled, Garlic Oil	N	Cats, Dogs	AVM-GSL
Garlic Sugar Coated Tablets	Denes Natural Pet Care Ltd	01615/4024	01/09/1993	National	Garlic, Garlic Oil	N	Cats, Dogs	AVM-GSL
Garlic Sugar Coated Tablets	Dorwest Herbs Ltd	00866/4013	01/09/1997	National	Garlic, Garlic Oil	N	Cats, Dogs	AVM-GSL
Genus Concentrat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2.15% w/v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73	02/04/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Iodine	N	Cattle	AVM-GSL
Genus High Emollient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51	15/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Gold Glycodip, 0.6% w/v, Ready-to-Use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1	24/04/1992	National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ne	N	Cattle	AVM-GSL
Golden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99	27/11/2009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Golden Hoof 100% w/w Powder for Cutaneous Solution	Shep Fair Products Ltd	06077/4000	29/04/1985	National	Zinc Sulphate Heptahydrate	N	Sheep	AVM-GSL
Golden Hoof Plus 99.6% w/w Powder for Cutaneous Solution	Shep Fair Products Ltd	06077/4001	24/06/1987	National	Zinc Sulphate	N	Sheep	AVM-GSL
Golden Udder Gel	Mr J J & Mrs M A Zakarias	00292/4007	06/04/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Salicylic Acid, Sulphur	N	Cattle	AVM-GSL
Greenleaf Sugar Coated Tablets	Denes Natural Pet Care Ltd	01615/4025	01/09/1993	National	Ferrous Sulphate Dried, Nettles Powder	N	Cats, Dogs	AVM-GSL
Hamra Blue, 0.40% w/w Teat Dip or Teat Spray Solution	Delaval International AB	17140/4005	13/07/1992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Harkers Pigeon Coccidiosis Treatment 3.84% w/v Concentrate for Oral Solution	Harkers Ltd	11245/4003	18/04/1996	National	Amprolium Hydrochloride	N	Pigeons	AVM-GSL
Hartz Control Pet Care System One Spot Flea and Tick Remedy for Dogs	Mr H.I. Moulds & Mrs S.J. Moulds	20205/4001	10/02/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Remove Swabs	Les Laboratoires Brothier SA	06822/4000	22/12/1988	National	Calcium Alginate	N	All Animals	AVM-GSL
Hemovet Dressings	Les Laboratoires Brothier SA	06822/4001	22/12/1988	National	Calcium Alginate	N	All Animal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Hexodip Extra 0.436%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83	08/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Hi-Craft Flea and Tick Collar for Dogs, 15% w/w	Beaphar Ltd	05496/4018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Dogs	AVM-GSL
Hi-Craft Flea Collar for Cats, 15% w/w	Beaphar Ltd	05496/4024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Cats	AVM-GSL
High Emollient 0.5% w/v Ready to Use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13	30/01/1993	National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ophor 10% Concentrate (AEO/10)	N	Cattle	AVM-GSL
Hyperdrug Veterinary Flea and Tick Drops for Dogs 742 mg Cutaneous Solution	Mr H.I. Moulds & Mrs S.J. Moulds	20205/4000	21/05/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Iodactiv 0.5% w/w Teat Dip Solution	Hypred S.A	14153/4009	31/12/2001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Iodine 2%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22	11/02/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Iodine Glycerine Teat Dip Ready to Use, 0.51%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6	23/05/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Iodypro 0.528% w/w Teat Dip/Teat Spray Solution	Hypred S.A	14153/4001	14/07/1995	National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zed Complex 11.5 %	N	Cattle	AVM-GSL
Ioprotect WS	Hypred S.A	14153/4003	20/10/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ne	N	Cattle	AVM-GSL
Iosan Superdip 0.5% w/w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13	01/06/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Iosan Teat Dip 1.56% w/w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12	01/06/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Johnson's 4Fleas Powder for Cats and Dogs 1.05% w/w Cutaneous Powder	Bio-Tech Solutions Ltd	20889/4002	06/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Cats, Dogs	AVM-GSL
Johnson's 4Fleas Shampoo for Dogs 1.05% w/v	Bio-Tech Solutions Ltd	20889/4005	06/08/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Johnson's 4 Fleas Protector 10% Spot-on Solution for Cats and Kittens	Alfamed S.A.S.	17902/4012	20/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Cats	AVM-GSL
Johnson's 4 Fleas Protector 2% Spot-on Solution for Large Dogs	Alfamed S.A.S.	17902/4010	20/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Dogs	AVM-GSL
Johnson's 4 Fleas Protector 2% Spot-on Solution for Medium Dogs	Alfamed S.A.S.	17902/4011	20/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Dogs	AVM-GSL
Johnson's 4 Fleas Protector 2% Spot-on Solution for Puppies and Small Dogs	Alfamed S.A.S.	17902/4013	20/09/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Pyriproxyfen	N	Dogs	AVM-GSL
Johnson's 4Fleas 11.4 mg Tablets for Cats and Kitten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51	17/11/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enpyram	N	Cats	AVM-GSL
Johnson's 4Fleas 11.4 mg Tablets for Small Dogs and Puppi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50	12/11/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enpyram	N	Dog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Johnson's 4Fleas 57 mg Tablets for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49	12/11/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enpyram	N	Dogs	AVM-GSL
Johnsons Anti Pest Insect Spray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7	08/10/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Dogs, Pigeons	AVM-GSL
Johnsons Anti Scratch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4	01/07/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ts, Dogs	AVM-GSL
Johnson's Anti-Mite and Insect Spray, Cutaneous Spray,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37	22/04/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ge Birds, Pigeons	AVM-GSL
Johnson's Antiseptic Wound Powder 2% w/w, Cutaneous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65	22/0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amine T	N	Cats, Dogs	AVM-GSL
Johnson's Cat & Kitten Easy Worm Syrup 4% w/v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60	06/03/1996	National	Piperazine Hexahydrate	N	Cats	AVM-GSL
Johnson's Cat Flea Powder, Cutaneous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38	13/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ts	AVM-GSL
Johnson's Cat Flea Pump Spray, Cutaneous Solution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24	06/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AVM-GSL
Johnson's Cat Flea Spray, Cutaneous Spray,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75	08/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Dogs	AVM-GSL
Johnson's Diarrhoea Tablets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1	26/03/1993	National	Bismuth Carbonate, Calcium Carbonate	N	Cats, Dogs	AVM-GSL
Johnson's Dog Flea Powder, Cutaneous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0	07/08/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Dogs	AVM-GSL
Johnson's Dog Flea Pump Spray, Cutaneous Solution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9	06/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Johnson's Dog Flea Shampoo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8	18/01/1992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Johnson's Dog Flea Spray, Cutaneous Spray,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5	08/10/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Dogs	AVM-GSL
Johnson's Ear Drops,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9	14/02/1992	National	Chlorocreso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Dogs	AVM-GSL
Johnson's Easy Roundwormer for Kittens & Cats 104 mg Film-Coated tablet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7	24/03/1995	National	Piperazine Phosphate	N	Cats	AVM-GSL
Johnson's Easy Round-Wormer for Puppies and Dogs 416 mg Tablet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6	24/03/1995	National	Piperazine Phosphate	N	Dogs	AVM-GSL
Johnsons Easy Tapewormer for Cats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2	08/12/1994	National	Dichlorophen	N	Cats	AVM-GSL
Johnsons Easy Tapewormer for Dogs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4	08/12/1994	National	Dichlorophen	N	Dogs	AVM-GSL
Johnson's Easy Wormer Granules for Cats and Kittens, 222.22 mg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72	08/01/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Johnson's Easy Wormer Granules for Dogs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71	01/07/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Johnson's Easy Wormer Granules for Puppies and Small Dogs 222.22 mg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73	08/01/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Johnson's Felt Cat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7	21/11/1991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Johnson's Flea & Tick Drops 742 mg for Puppies & Small Dogs, Cutaneous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67	11/04/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Johnson's Flea Guard Collar for Cats	Virbac S.A.	05653/4093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Cats	AVM-GSL
Johnson's Flea-Guard Waterproof Flea and Tick 15% w/w Collar for Dogs	Virbac S.A.	05653/4100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Dogs	AVM-GSL
Johnson's Flea-Guard Waterproof Flea and Tick 15% w/w Collar for Large Dogs	Virbac S.A.	05653/4099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Flash Yellow 47948	N	Dogs	AVM-GSL
Johnson's Insecticidal Flea & Tick Drops 742 mg, Cutaneous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68	10/1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Johnson's Kill-Pest Insect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1	07/08/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ge Birds, Cats, Dogs, Pigeons	AVM-GSL
Johnson's One Dose Easy Wormer for Small Dogs and Puppies, 100 mg Film Coated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36	26/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Johnson's One Dose Easy Wormer for Dogs and Puppies, 500 mg Film Coated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35	26/01/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Johnson's Pigeon Insect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2	07/08/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Pigeons	AVM-GSL
Johnson's Pigeon Insect Spray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6	08/10/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Pigeons	AVM-GSL
Johnson's Puppy Easy Worm Syrup, 4% w/v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61	06/03/1996	National	Piperazine Hexahydrate	N	Dogs	AVM-GSL
Johnson's Puppy Flea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43	01/07/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Dogs	AVM-GSL
Johnson's Rid Mite Insect Powder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39	13/06/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ge Birds, Pigeons	AVM-GSL
Johnson's Scaly Lotion, Cutaneous Solution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0	18/02/1992	National	Chlorocreso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ge Birds	AVM-GSL
Johnson's Twin Wormer for Cats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9	24/03/1995	National	Dichlorophen, Piperazine Phosphate	N	Cats	AVM-GSL
Johnson's Twin Wormer for Dogs	Johnson's Veterinary Products Ltd	01759/4058	24/03/1995	National	Dichlorophen, Piperazine Phosphate	N	Dogs	AVM-GSL
K Dip, 0.5%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14	22/05/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Kaogel VP 19.72% w/v Oral Suspension	Pfizer Ltd	00057/4273	31/01/1985	National	Kaolin Light	N	Cats, Dogs	AVM-GSL
Kaolin Poultice	KL Pharmaceutical Ltd	03436/4001	30/06/1992	National	Boric Acid, Glycerol, Kaolin, Methyl Salicylate, Peppermint Oil, Thymol	N	Horses	AVM-GSL
Kelp Seaweed Sugar Coated Tablets	Dorwest Herbs Ltd	00866/4018	01/09/1992	National	Fucus, Pulv Fucus	N	Cats, Dogs	AVM-GSL
Kenocidin Chlorhexidine Digluconate 5 mg/g, Teat Dip Solution for Cattle (Dairy)	CID Lines NV	22136/4002	05/11/2009	National	Chlorhexidine	N	Cattle	AVM-GSL
Kenocidin SD Chlorhexidine Digluconate 5 mg/g, Teat Dip/Teat Spray Solution for Cattle (Dairy)	CID Lines NV	22136/4003	17/11/2009	National	Chlorhexidine	N	Cattle	AVM-GSL
Kenostart 3 mg/g Teat Dip Solution for Cattle (Dairy), Iodine	CID Lines NV	22136/4000	19/01/2006	Mutually Recognised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ophor Complex 6%	N	Cattle	AVM-GSL
Kenostart Spray and Dip 3 mg/g Teat Dip or Spray Solution for Cattle (Dairy), Iodine	Cid Lines NV	22136/4001	06/09/2006	Mutually Recognised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ophor Complex 6%	N	Cattle	AVM-GSL
Ketol 80% w/v Oral Solution	Intervet UK Ltd	01708/4264	07/06/1993	National	Propylene Glycol	N	Cattle, Sheep	AVM-GSL
Ketosaid 99.96% w/w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72	30/06/1986	National	Propylene Glycol	N	Cattle, Sheep	AVM-GSL
Kidney Sugar Coated Tablets	Denes Natural Pet Care Ltd	01615/4031	01/09/1993	National	Buchu, Cascara, Cayenne, Colophony, Juniper Oil, Parsley Piert. Uva Ursi	N	Cats, Dogs	AVM-GSL
Killitch 25% w/v Cutaneous Emulsion	Carr Day and Martin Limited	01974/4003	24/06/1995	National	Benzyl Benzoate	N	Horses	AVM-GSL
Kitzyme FleaRid Insecticidal Cutaneous Spray Solution	Bob Martin (UK) Ltd	00715/4101	17/07/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N	Cats	AVM-GSL
KL One Minute Poultice	KL Pharmaceutical Ltd	03436/4002	30/06/1992	National	Boric Acid, Kaolin, Methyl Salicylate, Peppermint Oil, Thymol	N	Horses	AVM-GSL
Lanodip 3:1 2.0% w/v, Concentrate for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05	15/01/1986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Lanodip 4:1, 2.82% w/v, Concentrate for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04	15/01/1986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Lanodip Concentrate, 1.6% w/v, Concentrate for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03	23/01/1986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Lanodip Gold Teat Dip RTU	Kilco Chemicals Ltd	01936/4007	19/03/1987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Lanodip Readymix	Kilco Chemicals Ltd	01936/4006	24/04/1987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Lectade Plus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148	20/12/1993	National	Disodium Hydrogen Citrate, Glucose Monohydrate, Glycine, Potassium Acid Phosphate,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Sodium Citrate Dihydrate	N	Cattle	AVM-GSL
Lectade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149	28/04/1993	National	Citric Acid Anhydrous, Glucose Monohydrate, Glycine,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tle, Horses, Pigs, Sheep	AVM-GSL

Lectade Small Animal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221	02/06/2003	National (Informed Consent)	Citric Acid Anhydrous , Glucose Monohydrate, Glycine, Potassium Acid Phosphate,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s, Dogs	AVM-GSL
Leyodip 2.15% w/v Concentrat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94	02/04/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Lice Killing Shampoo for Horses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10	18/1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Horses	AVM-GSL
Life Aid Xtra Powder for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12	29/06/1992	National	Glucose Anhydrous, Potassium Acid Phosph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Acetate Trihydrate, Sodium Chloride, Sodium Citrate Dihydrate, Sodium Propionate	N	Cattle	AVM-GSL
Liquid Life-Aid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074	14/08/1991	National	Glucose Monohydrate, Glycine,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Sodium Chloride, Sodium Propionate	N	Cattle, Pigs, Sheep	AVM-GSL
Luxspray 50V Teat Dip/Spray, Solution - Ready to Use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17	11/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Masocare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10	06/01/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Masocare 1:4 2.72%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53	20/05/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Masocare Extra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85	11/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Masocare High Viscosity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6	20/04/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Masodine 1:3 2.15% w/v Concentrate for Teat Dip and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06	02/04/1986	National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Masodine RTU 0.54% w/v Teat Dip and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09	06/01/1992	National	Alcohol (C13-C15) 11 Mole Ethoxylate, Hydriodic Acid, Iodine, Sodium Sulphate (See Notes), Water Potable	N	Cattle	AVM-GSL
Masodip 0.436%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08	20/12/1991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Masodip Extra 0.436%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55	19/08/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Mastex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2	27/04/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Megodine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52	19/04/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Megodine 1:3 Concentrat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2.15% w/v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49	28/0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Megorex 0.436%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5	12/09/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Milk-Line Teat Plus 0.50%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11	13/06/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Kilco K20i	N	Cattle	AVM-GSL
Mixed Vegetable Tablets	Dorwest Herbs Ltd	00866/4016	01/09/1992	National	Celery Plant, Celery Seed, Horseradish, Parsley, Watercress	N	Cats, Dogs	AVM-GSL

MV Chlorhexidine (0.425%) RTU Teat Dip and Spray Solution	JohnsonDiversey Ltd	15985/4032	06/06/2007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MV Iodine RTU Teat Dip/Spray	JohnsonDiversey Ltd	15985/4033	04/03/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Natura Elasticated Insecticidal Collar for the Cat 8% w/w	Virbac S.A.	05653/4021	19/09/1986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Natura Insecticidal Collar for the Dog 8% w/w	Virbac S.A.	05653/4022	23/09/1986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Natural Herb Tablets	Donwest Herbs Ltd	00866/4020	01/09/1997	National	Cape Aloe, Cascara, Dandelion, Senna Leaf, Valerian	N	Cats, Dogs	AVM-GSL
Norworm 220 mg Granule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13	16/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Norworm 440 mg Granule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3	16/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Norworm 880 mg Granules for Dogs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294	16/01/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Otodex Skin Cream	Petlife International Ltd	13240/4000	04/10/1995	National	Chlorocresol, Lidocaine Hydrochloride, Phenoxyethanol, Zinc Oxide	N	Cats, Dogs	AVM-GSL
Otodex Veterinary Ear Drops Solution for Dogs and Cats	Petlife International Ltd	13240/4001	04/10/1995	National	Chlorbutol, Phenoxyethanol	N	Cats, Dogs	AVM-GSL
Parasitex Insecticidal Collar	Virbac S.A.	05653/4037	01/07/1996	National	Bendiocarb	N	Dogs	AVM-GSL
Pedigree Care Flea and Tick Collar, 15% w/w	Beaphar Ltd	05496/4019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Dogs	AVM-GSL
Peridale 118 mg Capsules	Dechra Limited	10434/4029	29/01/1991	National	Sterculia	N	Cats	AVM-GSL
Peridale 98% w/w Granules	Dechra Limited	10434/4032	29/01/1991	National	Sterculia	N	Dogs	AVM-GSL
Pet Star Cat Flea Collar, 15% w/w	Beaphar Ltd	05496/4020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Cats	AVM-GSL
Pet Star Dog Flea and Tick Collar, 15% w/w	Beaphar Ltd	05496/4017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Dogs	AVM-GSL
Pfizer Scour Formula Extra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151	20/12/1993	National	Disodium Hydrogen Citrate, Glucose Monohydrate, Glycine, Potassium Acid Phosphate,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Sodium Citrate Dihydrate	N	Cattle	AVM-GSL
Pfizer Scour Formula Powder for Oral Solution	Pfizer Ltd	00057/4128	28/04/1993	National	Citric Acid Anhydrous, Glucose Monohydrate, Glycine, Potassium Acid Phosphate,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Sodium Chloride	N	Cattle, Horses, Pigs, Sheep	AVM-GSL
Piperazine Citrate Tablets BP 500 mg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04	13/12/1995	National	Piperazine Citrate	N	Cats, Dogs	AVM-GSL
Piperazine Citrate Worm Tablets	JM Loveridge PLC	00531/4043	14/10/1994	National	Piperazine Citrate	N	Cats, Dog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Preventef Insecticidal Collar for Large Dogs	Virbac S.A.	05653/4084	23/10/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Dogs	AVM-GSL
Proactive 0.15% w/w Teat Dip/Spray Solution	Delaval International AB	17140/4000	05/07/2000	Mutually Recognised	Iodine	N	Cattle	AVM-GSL
Program Oral Suspension for Large Cats 266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9	16/05/1995	National (Informed Consent)	Lufenuron	N	Cats	AVM-GSL
Program Oral Suspension For Small Cats and Kittens 133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6	08/07/1993	National	Lufenuron	N	Cats	AVM-GSL
Program Tablets 204.9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4	08/07/1993	National	Lufenuron	N	Dogs	AVM-GSL
Program Tablets 409.8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5	08/07/1993	National	Lufenuron	N	Dogs	AVM-GSL
Program Tablets 67.8 mg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13	08/07/1993	National	Lufenuron	N	Dogs	AVM-GSL
Propisderm 0.5% w/w Teat Dip Solution	Hypred S.A	14153/4002	18/04/1997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Protect Spot Flea and Tick Drops for Dogs	Mr H.I. Moulds & Mrs S.J. Moulds	20205/4002	20/08/2003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Protocon Gold Gel	Mr J J & Mrs M A Zakarias	00292/4005	06/04/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Salicylic Acid, Sulphur	N	Horses	AVM-GSL
QuarterMate, 0.1% w/w Teat Dip or Teat Spray Solution	Delaval International AB	17140/4004	13/08/1991	National	Iodine, Sodium Iodide	N	Cattle	AVM-GSL
Radiol Insecticidal Soapless Shampoo with Conditioner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11	18/12/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N	Horses	AVM-GSL
Raspberry Leaf Tablets	Dorwest Herbs Ltd	00866/4019	01/09/1992	National	Raspberry Leaf Powder	N	Cats, Dogs	AVM-GSL
Readymix Gold Teat Dip or Spray	Kilco Chemicals Ltd	01936/4010	02/02/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Ready-to-Use Teat Dip/Teat Spray Solution, 0.538% w/v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12	22/06/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lcohol (C9-C11) 6/7 Mole Ethoxylate, Iodine, Quaternised Fatty Amine 15 Mole Ethoxylate	N	Cattle	AVM-GSL
Ruby Teat Guard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7	25/07/1985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Saniphor 5% w/w Cutaneous Spray Solution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107	28/05/1999	National	Povidone Iodine	N	Horses	AVM-GSL
Sapphire 0.436%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0	26/1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Savlon Veterinary Antiseptic Concentrate	Schering-Plough Ltd	00201/4085	23/03/1992	National	Cetrimid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All Animals	AVM-GSL
Scullcap and Valerian Sugar Coated Tablets	Dorwest Herbs Ltd	00866/4021	01/09/1992	National	Gentian Ext., Mistletoe, Scullcap, Valerian	N	Cats, Dogs	AVM-GSL

Product Name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eleen Shampoo 1% w/v	Ceva Animal Health Ltd	15052/4010	28/10/1992	National	Selenium Sulphide	N	Dogs	AVM-GSL
Senospray 70 V Teat Dip/Spray, Solution - Ready to Use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18	11/04/2008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Sergeants Pet Patrol	Bob Martin (UK) Ltd	00715/4102	18/06/1992	National	Phenothrin, Piperonyl Butoxide, Tetramethrin	N	Cats, Dogs	AVM-GSL
Seven Seas Kytzyme Flea Rid Reflective Flea Collar	Virbac S.A.	05653/4098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Cats	AVM-GSL
Seven Seas Vetzyme Flea Rid Reflective Flea Collar for Dogs	Virbac S.A.	05653/4090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Dogs	AVM-GSL
Sherley's Easy Treat Wormer 220 mg Chewables Tablet for Dogs	Janssen-Cilag Ltd	00242/4061	11/05/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Flubendazole	N	Dogs	AVM-GSL
Sherley's Easy Treat Worming Cream 44 mg/ml Oral Paste for Cats and Dogs	Janssen-Cilag Ltd	00242/4060	01/03/2006	National (Informed Consent)	Flubendazole		Cats, Dogs	AVM-GSL
Sherleys Felt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7	25/11/1991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Sherley's Flea and Tick Collar for Dogs, 15% w/w	Beaphar Ltd	05496/4013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Dogs	AVM-GSL
Sherley's Flea Collar for Cats, 15% w/w	Beaphar Ltd	05496/4026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Cats	AVM-GSL
Sherley's Flea Spray, Cutaneous Spray Solution for Cats and Dogs	Beaphar UK Ltd	13907/4000	29/09/1994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Dogs	AVM-GSL
Sherleys Insecticidal Dog Shampoo, 0.2% w/w	Beaphar UK Ltd	13907/4013	09/01/1996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Sherley's Multiwormer for Cats, Tablets	Beaphar UK Ltd	13907/4006	21/09/1994	National	Dichlorophen, Piperazine Citrate	N	Cats	AVM-GSL
Sherleys Multiwormer for Dogs, Tablets	Beaphar UK Ltd	13907/4011	21/09/1994	National	Dichlorophen, Piperazine Citrate	N	Dogs	AVM-GSL
Sherley's One Dose Wormer for Dogs, 500 mg Film Coated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4	30/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Sherley's One Dose Wormer for Small Dogs and Puppies, 100 mg Film Coated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3	30/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Sherley's Rheumatine Tablets for Adult Dogs, 120 mg	Beaphar UK Ltd	13907/4005	21/09/1994	National	Aspirin	N	Dogs	AVM-GSL
Sherley's Worming Cream, 25% w/w, Oral Suspension	Beaphar UK Ltd	13907/4004	21/09/1994	National	Piperazine Citrate	N	Cats, Dogs	AVM-GSL
Sherley's Worming Granules for Cats, 222.22 mg	Beaphar UK Ltd	13907/4015	29/10/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AVM-GSL
Sherley's Worming Granules for Dogs, 444.44 mg	Beaphar UK Ltd	13907/4014	29/10/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Dog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Sherley's Worming Syrup, 9.4% w/v, Oral Solution	Beaphar UK Ltd	13907/4008	21/09/1994	National	Piperazine Citrate	N	Cats, Dogs	AVM-GSL
Silkidip 0.5%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 Ready to Use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09	28/08/1992	National	Iodin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Spartrix 10 mg Tablets	Harkers Ltd	11245/4002	15/09/1992	National	Carnidazole	N	Pigeons	AVM-GSL
Spunhill Gold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5	21/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Iodine	N	Cattle	AVM-GSL
Star Iodocare Concentrat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2.00% w/v	JohnsonDiversey Ltd	15985/4025	24/08/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ne	N	Cattle	AVM-GSL
Star Ready Dip	JohnsonDiversey Ltd	15985/4013	10/03/1988	National	Iodine	N	Cattle	AVM-GSL
Star Teat Ex	JohnsonDiversey Ltd	15985/4002	16/07/1992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Sulphur Colecton (Cats and Dogs)	Mr J J & Mrs M A Zakarias	00292/4001	06/04/1992	National	Salicylic Acid, Sulphur	N	Cats, Dogs	AVM-GSL
Sulphur Colecton (Cattle)	Mr J J & Mrs M A Zakarias	00292/4002	06/04/1992	National	Salicylic Acid, Sulphur	N	Cattle	AVM-GSL
Sulphur Colecton (Horses & Ponies)	Mr J J & Mrs M A Zakarias	00292/4003	06/04/1992	National	Salicylic Acid, Sulphur	N	Horses	AVM-GSL
Summer C Dip,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0.5%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Kilco Chemicals Ltd	01936/4008	31/10/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Super Concentrate Teat Dip or Spray	Kilco Chemicals Ltd	01936/4011	02/04/1997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Iodine	N	Cattle	AVM-GSL
Super Concentrated Teat Dip, 2.12% w/v, Teat Dip Solution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11	22/06/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Alcohol (C9-C11) 6/7 Mole Ethoxylate, Iodine, Quarternised Fatty Amine 15 Mole Ethoxylate	N	Cattle	AVM-GSL
Supercare Summer TG	Kilco Chemicals Ltd	01936/4012	16/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Supertest 0.50%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Ecolab Ltd (Trading as Adams Healthcare)	04509/4009	31/03/1995	National	Iodine, Kilco K20i	N	Cattle	AVM-GSL
Suredip 0.74% w/v Teat Dip/Teat Spray, Solution - Ready to Use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06	14/02/1985	National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Suredip 3.7% Concentrate for Teat Dip or Teat Spray Lactating Cows, Sheep and Goats Chlorhexidine Gluconate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13	25/05/1999	Mutually Recognised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Goats, Sheep	AVM-GSL
Suredip Repel 3.7% w/v Concentrate for Teat Dip or Teat Spray Solution	GEA Farm Technologies LTD	01808/4014	25/05/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N	Cattle, Goats, Sheep	AVM-GSL
Switch 4% w/v Pour-on Solution	Day Son And Hewitt Ltd	00844/4213	21/11/1994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80:20)	N	Donkeys, Horses	AVM-GSL
Tapewormer Tablets for Cats 750 mg	Bob Martin (UK) Ltd	00715/4100	28/07/1994	National	Dichlorophen	N	Cats	AVM-GSL

Tapewormer Tablets for Dogs 750 mg	Bob Martin (UK) Ltd	00715/4097	28/07/1994	National	Dichlorophen	N	Dogs	AVM-GSL
Tri-Lyte Plus Powder for Oral Solution	Norbrook Laboratories Limited	02000/4162	07/04/1998	National (Informed Consent)	Glucose Anhydrous, Potassium Acid Phosphate, Potassium Chloride, Sodium Acetate Trihydrate, Sodium Chloride, Sodium Citrate Dihydrate, Sodium Propionate	N	Cattle	AVM-GSL
Troscan 100 mg Film-Coated Tablet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09	27/01/1994	National	Nitroscanate	N	Dogs	AVM-GSL
Troscan 500 mg Film-Coated Tablet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0	27/01/1994	National	Nitroscanate	N	Dogs	AVM-GSL
Tryplase Capsules	Intervet UK Ltd	01708/4319	02/09/1994	National	Pancreatin	N	Cats, Dogs	AVM-GSL
Twin Pack Two Collars Bob Martin 15% w/w Flea and Tick for Dogs and Puppies over 12 weeks old	Virbac S.A.	05653/4095	23/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Dogs	AVM-GSL
Udder Guard	Kilco (International) Ltd	21357/4003	02/11/1999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Venture 321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2.15% w/v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82	02/12/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F309/A Iodophor**	N	Cattle	AVM-GSL
Venture IO-Care 0.535%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67	03/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Available Iodine (Declared Active)	N	Cattle	AVM-GSL
Venture Satinex 0.436% w/v Ready to Use Teat Dip and Teat Spray Solution	Evans Vanodine International Plc	03940/4084	19/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Chlorhexidine Gluconate (Declared Active),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	N	Cattle	AVM-GSL
Veterinary Wound Powder - 2% w/w Cutaneous Powder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099	27/04/1992	National	Chloramine T	N	Horses	AVM-GSL
Vetzyme Antiseptic Cutaneous Powder	Bob Martin (UK) Ltd	00715/4084	21/09/1995	National	Chloroxyleneol, Salicylic Acid	N	Cats, Dogs	AVM-GSL
Vetzyme Flearid 1% w/w Shampoo for Dogs	Bob Martin (UK) Ltd	00715/4083	31/05/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Vetzyme FleaRid Insecticidal Cutaneous Spray Solution	Bob Martin (UK) Ltd	00715/4092	17/07/1991	National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Vetzyme JDS 1% w/w Insecticidal Dog Shampoo	Bob Martin (UK) Ltd	00715/4098	01/04/1992	National	Permethrin (cis:trans 40:60)	N	Dogs	AVM-GSL
Vetzyme Kitzyne 0.99% w/w Ear Drops Solution for Dogs and Cats	Bob Martin (UK) Ltd	00715/4099	08/12/1985	National	Dichlorophen	N	Cats, Dogs	AVM-GSL
Vetzyme One Dose Wormer for Large Dog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65	23/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Vetzyme One Dose Wormer for Small Dogs and Puppie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066	23/06/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Vetzyme Pet Antiseptic Cutaneous Solution	Bob Martin (UK) Ltd	00715/4103	16/07/1992	National	Cetrimide, Fenticlor	N	Cats, Dogs	AVM-GSL
Vetzyme Skin Cream 0.5% w/w	Bob Martin (UK) Ltd	00715/4081	16/07/1992	National	Cetrimide	N	Cats, Dogs	AVM-GSL

Product Name ↑	MA Holder	Vm No	Date Of Issue	Authorisation Route	Active Substances	Controlled Drug	Target Species	Distribution Category
Whiskas Care Flea Collar, 15% w/w	Beaphar Ltd	05496/4025	15/01/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Cats	AVM-GSL
Whiskas Wormer for Cats	Masterfoods (Complimentary Petcare) A Div of Mars UK Ltd	05707/4005	07/03/2005	National (Informed Consent)	Fenbendazole	N	Cats	AVM-GSL
Wilko 15% Long-Lasting Flea and Tick Collar for Dogs	Virbac S.A.	05653/4103	20/08/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Technical	N	Dogs	AVM-GSL
Wilko 15% Long-Lasting Flea Collar for Cats	Virbac S.A.	05653/4104	20/08/2002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N	Cats	AVM-GSL
Wilko Cat Felt Flea Collar, 18% w/w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1	13/06/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40:60)	N	Cats	AVM-GSL
Wilko Cat Flea Powder, Cutaneous Powder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4	11/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Cats	AVM-GSL
Wilko Cat Flea Spray	Armitage Bros Ltd	02650/4016	12/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Cats	AVM-GSL
Wilko Dog Flea Drops 65% w/w Cutaneous Solution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2	19/04/2000	National (Informed Consent)	Permethrin (cis:trans 25:75)	N	Dogs	AVM-GSL
Wilko Dog Flea Powder, Cutaneous Powder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1	25/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Powder 1.3%	N	Dogs	AVM-GSL
Wilko Dog Flea Spray	Armitage Bros Ltd	02650/4015	18/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Wilko Dual Action Worming Tablets for Cats	Armitage Bros Ltd	02650/4017	13/11/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Dichlorophen, Piperazine Citrate	N	Cats	AVM-GSL
Wilko Insecticidal Dog Shampoo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10	19/10/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Wilko Silent Action Dog Flea Spray	Sinclair Animal and Household Care Ltd	16516/4009	13/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Piperonyl Butoxide, Pyrethrum Extract 25%	N	Dogs	AVM-GSL
Wilko Single Dose Wormer for Dogs and Puppies, 500 mg Film Coated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9	13/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Wilko Single Dose Wormer for Small Dogs and Puppies, 100 mg Film Coated Tablets	Novartis Animal Health UK Ltd	12501/4108	12/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Nitroscanate	N	Dogs	AVM-GSL
Wilko Vinyl Cat Flea Collar, 15% w/w	Beaphar Ltd	05496/4028	19/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Cats	AVM-GSL
Wilko Vinyl Dog Flea and Tick Collar, 15% w/w	Beaphar Ltd	05496/4027	13/09/2001	National (Informed Consent)	Diazinon Stabilised	N	Dogs	AVM-GSL
Zerofen Wormer 888.8 mg Granules for Adult Dogs and Cats	Chanelle Animal Health Ltd	11990/4014	15/08/1995	National	Fenbendazole	N	Cats, Dogs	AVM-GSL
Zincoped 100% w/w Cutaneous Powder for Solution	Battle, Hayward & Bower Ltd	00676/4098	26/01/1991	National	Zinc Sulphate Heptahydrate	N	Sheep	AVM-GSL